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총괄보고서(I)

2005. 6

국가인권위원회
(주)한국리서치

목 차

제1장 조사개요	1
제1절 조사 목적	1
제2절 조사의 기본방향	3
1. 주요 조사 내용	3
2. 조사체계	5
제3절 일반인 표본 설계	6
1. 표본추출방법의 개요	6
2. 표본틀	6
제4절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7
1. 정량 조사의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7
2. 정성 조사의 자료수집	8
제5절 표본특성표	9
1. 일반인 조사의 표본특성표	9
2. 전문가 조사의 표본특성표	10
3.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의 표본특성표	11
제2장 정량조사 결과	13
제1절 인권에 대한 인식	13
1. 우리 사회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13
2.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17
제2절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및 경험	20
1.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및 경험비율	20
2. 기관별 심각성	23
3. 인권침해 경험 시 대응방안 및 만족도	24
제3절 차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26
1. 차별의 심각성 인식 및 경험비율	26
2. 기관별 유형별 심각성	29
3. 차별 경험 시 대응방안 및 만족도	33

제4절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36
1.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36
2.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38
3.	비정규직 문제 관련	40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41
5.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44
제5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46
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46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평가	48
제6절	인권교육의 실태	49
1.	인권교육의 경험	49
2.	인권교육의 필요성	50
제7절	청소년의 인권 실태	52
1.	청소년 인권 사안별 심각성	52
2.	청소년 인권 사안별 경험 여부	53

제3장 정성조사 결과 55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55
제2절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처방안	57
제3절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	61
제4절	사회권 분야에서 시급한 과제 및 인권위 대처 방안	65
제5절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8
제6절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의 국가인권위원회 통합 방안	70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 목적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민주적·반인권적 문화의 청산과 인간다운 삶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들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적, 일시적인 활동에 그침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인권상황 개선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에 대한 기초 자료가 필수요소이다.

우리 사회 인권상황의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 국민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의 인권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명확히 알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우선하는 선결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국민 및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를 기획하였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일반국민들의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한 일반적인 의식수준 및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파악
- 인권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권현안 및 인권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심층적으로 파악
- 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및 인권문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집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 조사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수준을 파악하고, 인권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기초 자료로 활용
- 기존의 각종 실태조사와 실증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
- 우리나라 인권수준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인권관련 인식과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향상시킬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일반국민과 인권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의 인식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원년 자료로 활용

제2절 조사의 기본방향

1. 주요 조사 내용

1) 정량조사 내용

〈표 1-1〉 주요 조사 내용(정량조사)

조사 내용	일반인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 인권 의식 관련 - 우리 사회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 ○	○ ○
○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 인식 -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구제수단 - 직접적인 인권침해의 경험과 대응 - 간접적인 인권침해의 경험	○ ○ ○ ○	○ ○
○ 차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차별 사안별 심각성 인식 - 기관별 및 유형별 차별의 심각성과 구제수단 - 직접적인 차별의 경험과 대응 - 간접적인 차별의 경험	○ ○ ○	○ ○
○ 인권현안 관련 -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 비정규직 문제 관련 - 개인정보 보호 관련 -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 ○ ○ ○ ○	○ ○ ○ ○ ○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평가	○ ○	○ ○
○ 인권교육의 실태 - 인권교육의 경험 - 인권교육의 필요성	○ ○	○
○ 청소년의 인권 실태 - 청소년 인권 사안별 심각성 - 청소년 인권 사안별 경험 여부	○ ○	○

2) 정성조사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및 그 이유
 -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점 및 그 이유

-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점 대응 분야 및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인권분야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 향후 새롭게 대두될 인권문제 및 대응방안
 - 향후 새롭게 대두될 인권문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간 협력의 대상 및 방법

- 사회권 분야의 과제 및 대응방안
 - 사회권 분야의 시급한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 개인정보보호업무와 차별시정업무의 인권위 통합 문제
 -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

- 제2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급하게 대처할 현안
 - 제2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급하게 대처할 현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2. 조사체계

〈표 1-2〉 조사 체계

조사 체계	일반인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조사대상	전국의 15세 이상 성인남녀	인권관련 연구 및 활동가	전국 주요 시민단체 상근 간부 및 대표
유효 응답자수	1,263명	90명	101명 (심층면접조사 50명)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	-	-
조사기간	2005. 1. 24 - 2. 28	2005. 2. 2 - 3. 11	2005. 2. 2 - 3. 11
조사방법	개별면접조사	개별면접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병행	개별면접조사(101명) 심층면접조사(50명)
실사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제3절 일반인 표본 설계

1. 표본추출방법의 개요

본 조사에서는 전국을 16개의 층(7개 특·광역시와 9개 도)으로 층화하여 계통추출하였다.

2. 표본틀

통계청에서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자료를 바탕으로 섬조사구, 집단시설조사구 등을 제외한 일반 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만으로 구성된 총 24,998개의 조사구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통계청이 관리하고 있는 24,998개의 조사구 리스트 중에서 조사시점 현재 통계청에서 이용 중인 조사구를 제외한 23,159개의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틀로 하였으며, 이 중에서 전체 120개의 조사구를 추출하여 조사구별 10명씩을 조사하였다.

제4절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1. 정량 조사의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1) 자료수집방법

정량 조사의 경우,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응답내용을 기입하는 타계식 대인면접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조사대상자

△일반인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 내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전문가 조사는 사전에 확보된 전문가 명단의 해당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는 해당 인권·시민단체에서 상근하는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3) 조사흐름

조사 과정은, 전문 조사원의 실사 → 16개 시도의 실사감독원(Supervisor)의 관리 및 통제 → 조사표 집계 → 검사 요원들에 의한 에디팅(Editing) → 재조사 및 조사표 보완 → 최종 자료검증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4) 자료검증

- 실사감독원에 의한 내부 검증
 - Editing 지침에 따라 일관성 및 논리 검사(Logical check)
 - 연관 항목간의 상관성 검사 및 변수간의 함수관계를 통한 점검
- 보완조사 진행
 - 문제가 발생한 조사표에 대하여 보완조사 실시
 - 해당 조사대상자의 조사내용 전면 재확인

5) 자료처리

자료검증과정과 전화보완조사를 거쳐 최종분석 자료로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쳐 전산입력 되었으며, 입력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통계 패키지 프로그램)를 통해 집계하였다.

2. 정성 조사의 자료수집

1) 자료수집방법

정성 조사의 경우, 조사원이 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를 대상으로 30분 - 1시간 정도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조사대상자

전문가 조사는 사전에 확보한 전문가 명단에 기재된 응답자 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는 해당 인권·시민단체의 상근하는 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3) 조사흐름

조사 과정은, 전문 조사원의 사전 연락 →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뷰 진행 → 인터뷰 내용 녹음 테잎 수거 → 녹음풀이 전문가에 의한 녹음풀이 → 담당연구원에 의한 내용 점검 → 재조사 및 보완조사 실시 → 최종 자료검증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제5절 표본특성표

1. 일반인 조사의 표본특성표

〈표 1-3〉 일반인 조사 표본특성표

	응답자 수 (명)	구성비 (%)		응답자 수 (명)	구성비 (%)
전 체	1263	100.0	전 체	1263	100.0
성별			지역		
남자	626	49.6	서울	273	21.6
여자	637	50.4	부산	99	7.8
연령			대구	66	5.2
15-19세	103	8.2	인천	66	5.2
20대	260	20.6	광주	35	2.8
30대	290	23.0	대전	37	2.9
40대	264	20.9	울산	27	2.1
50대이상	346	27.4	경기	258	20.4
학력			강원	40	3.2
중학생	32	2.5	충북	39	3.1
고등학생	58	4.6	충남	50	4.0
대학생	113	8.9	전북	51	4.0
중졸이하	189	15.0	전남	54	4.3
고졸	503	39.8	경북	72	5.7
대졸 이상	367	29.1	경남	81	6.4
직업			제주	14	1.1
농/축/수산/광업	14	1.1	권역		
자영업	334	26.4	서울	273	21.6
판매/서비스직종사자	167	13.2	인천/경기	324	25.7
생산/기능/노무직	91	7.2	대전/충청	126	10.0
사무직	174	13.8	광주/전라	140	11.1
전문/관리/경영직	73	5.8	대구/경북	138	10.9
주부	163	12.9	부산/울산/경남	208	16.5
학생	189	15.0	강원/제주	54	4.3
무직/퇴직/기타	57	4.5			
소득					
100만원이하	82	6.5			
101-200만원	272	21.5			
201-300만원	388	30.7			
301-400만원	257	20.3			
401만원이상	156	12.4			
모름/무응답	108	8.6			

2. 전문가 조사의 표본특성표

〈표 1-4〉 전문가 조사 표본특성표

		응답자 수 (명)	구성비 (%)
전 체		90	100.0
성별	남자	79	87.8
	여자	11	12.2
연령	30대	11	12.2
	40대	56	62.2
	50대이상	23	25.6
직업	대학교수	54	60.0
	연구소 연구원	8	8.9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9	10.0
	변호사	10	11.1
	공무원	3	3.3
	의사	3	3.3
	기타	3	3.3
전문분야	시민적/정치적 권리	35	38.9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26	28.9
	차별 및 사회적 소수자	26	28.9
	기타	3	3.3
권역	서울	60	66.7
	인천/경기	4	4.4
	대전/충청	8	8.9
	광주/전라	6	6.7
	대구/경북	6	6.7
	부산/울산/경남	6	6.7

3.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의 표본특성표

〈표 1-5〉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 표본특성표(정량조사)

		응답자 수 (명)	구성비 (%)
전 체		101	100.0
성별	남자	58	57.4
	여자	43	42.6
연령	20대	18	17.8
	30대	61	60.4
	40대	16	15.8
	50대이상	6	5.9
권역	서울	74	73.3
	인천/경기	12	11.9
	대전/충청	2	2.0
	광주/전라	5	5.0
	대구/경북	2	2.0
	부산/울산/경남	6	5.9
회원수	100명이하	36	35.6
	101-300명	16	15.8
	301-1000명	19	18.8
	1001-10000명	13	12.9
	10000명이상	8	7.9
	모름/무응답	9	8.9
상근자수	2명이하	15	14.9
	3-5명	35	34.7
	6-10명	23	22.8
	11-20명	16	15.8
	20명이상	11	10.9
	모름/무응답	1	1.0

〈표 1-6〉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 표본특성표(정성조사)

		응답자 수 (명)	구성비 (%)
전 체		50	100.0
성별	남자	35	70.0
	여자	15	30.0
연령	20대	2	4.0
	30대	31	62.0
	40대	13	26.0
	50대이상	4	8.0
권역	서울	36	72.0
	인천/경기	6	12.0
	대전/충청	3	6.0
	광주/전라	2	4.0
	대구/경북	3	6.0
	부산/울산/경남	0	0.0
회원수	100명이하	6	12.0
	101-300명	10	20.0
	301-1000명	8	16.0
	1001-10000명	8	16.0
	10000명이상	3	6.0
	모름/무응답	0	0.0
상근자수		6	
	2명이하	18	36.0
	3-5명	10	20.0
	6-10명	8	16.0
	11-20명	8	16.0
	20명이상	11	22.0
	모름/무응답	1	2.0

제2장 정량조사 결과

제1절 인권에 대한 인식

1. 우리 사회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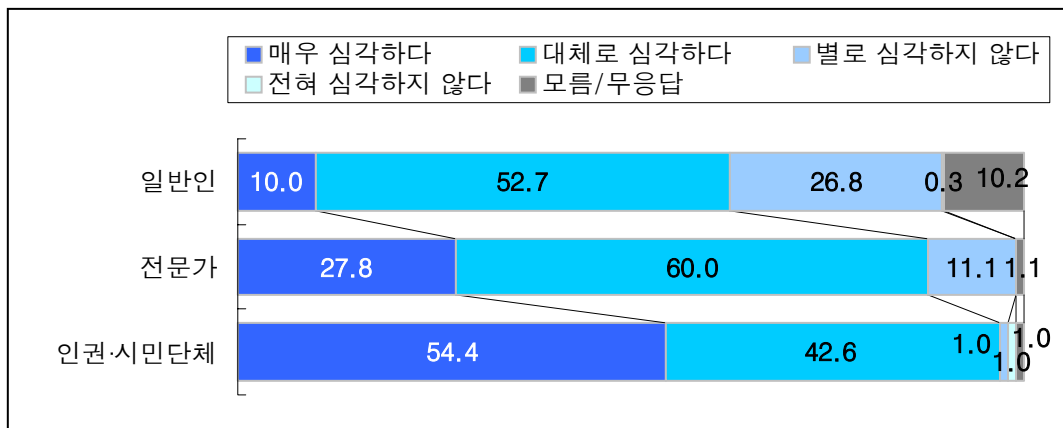
1) 전반적인 인권문제의 심각성 인식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62.7%가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7.2%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6명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87.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97.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우리 사회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심각성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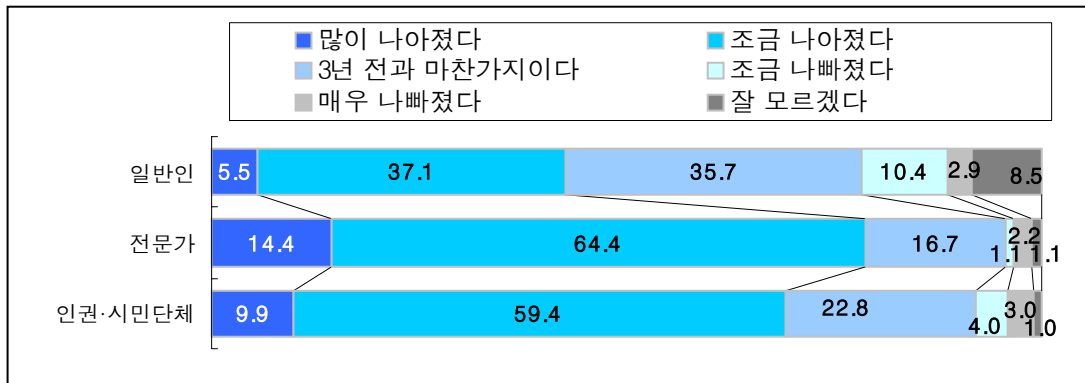
2) 최근 3년간 인권상황의 개선도 평가

일반인 응답자 중 42.6%가 3년 전보다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이 나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13.2%만이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4명 이상이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7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69.3%가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인권상황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보다도 전문가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우리 사회 인권상황의 개선 정도

(단위:%)



3)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한 기관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에 대해, 일반인은 군대(43.4%), 구급시설(30.8%), 경찰(27.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전문가는 사회복지생활시설(54.4%)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구급시설(50.0%)과 군대(4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군대(58.4%), 구급시설(38.6%), 사회복지생활시설(31.7%)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과 방송 및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전문가나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중복응답)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군대	43.4	42.2	58.4
구급시설	30.8	50.0	38.6
경찰	27.9	18.9	26.7
사회복지생활시설	22.3	54.4	31.7
검찰	21.0	5.6	8.9
기업	11.8	10.0	12.9
방송 및 언론기관	11.7	7.8	3.0
국가정보원	9.2	4.4	5.9
학교	8.2	4.4	12.9
기타	7.2	1.1	0.0
무응답	1.0	0.0	0.0

4)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에 대해, 일반인은 장애인(42.3%), 외국인 노동자(24.9%),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22.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전문가의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44.6%)의 인권보호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애인(29.7%)과 비정규직 노동자(27.7%),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26.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42.2%), 구급시설 수용자(31.1%), 사회복지생활시설 수용자(26.7%)라고 응답하여 시설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일반인과 전문가/인권·시민단체 비교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장애인	42.3	29.7	20.0
외국인 노동자	24.9	44.6	42.2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22.1	26.7	22.2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수용자	17.3	10.9	26.7
구금시설의 수용자	17.0	12.9	31.1
수사 피의자	14.6	11.9	14.4
비정규직 노동자	14.4	27.7	16.7
노인	11.8	2.0	2.2
군인	9.3	5.9	11.1
여성	9.3	9.9	6.7
아동	6.4	8.9	2.2
청소년	6.3	2.0	1.1
동성애자	0.6	5.9	2.2
기타	2.1	1.0	0.0
무응답	0.2	0.0	0.0

2.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1)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인권침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보면,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보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 반대(82.3%)', '종교재단 학교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62.7%)' 등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역시,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보장(97.8%)',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 반대(95.6%)', '종교재단 학교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84.4%)' 등의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일반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교육목적에서의 학교 체벌 반대(73.3%)'에 대한 응답이 높아 차이를 보인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도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보장(100.0%)',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 반대(98.0%)', '종교재단 학교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91.1%)' 등의 항목에 대한 동의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인이나 전문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사형제도 폐지(95.0%)', '집회나 시위의 자유 보장(93.1%)' 등에 대한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2-3〉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88.4	10.8	97.8	2.2	100.0	0.0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검문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16.5	82.3	4.4	95.6	2.0	98.0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예배 등 종교 의식을 학생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62.7	36.3	84.4	15.6	91.1	8.9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47.4	51.8	74.4	25.6	89.1	10.9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6	53.1	73.3	26.7	95.0	5.0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33.1	65.3	57.8	42.2	93.1	6.9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75.7	24.0	26.7	73.3	13.9	85.1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10.0	89.4	56.7	42.2	85.1	13.9

* 굵은 글씨의 숫자는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응답비율을 나타냄.

2) 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차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보면,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9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여(83.3%)’,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를 위한 세금이나 요금인상(78.2%)’ 등이 높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에 대해서는 97.1%가 동의하면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나 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78.2%만 동의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역시,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여’,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를 위한 세금이나 요금인상’ 등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가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용인(72.2%)’,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부여(97.0%), '동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 보수와 대우 제공(96.0%)' 등에 대해 높은 의식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4〉 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97.1	2.6	100.0	0.0	100.0	0.0
장애인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납세, 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83.3	16.0	97.8	2.2	98.0	2.0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78.2	21.1	97.8	2.2	95.0	5.0
경쟁사회에서는 출신학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21.8	77.6	21.1	78.9	7.9	92.1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73.7	24.3	80.0	20.0	96.0	4.0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72.0	26.2	86.7	12.2	97.0	1.0
민간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65.1	33.4	78.9	21.1	87.1	12.9
여성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한 비율의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56.7	41.7	75.6	24.4	86.1	12.9
동성애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23.7	71.4	72.2	25.6	91.1	7.9

* 굵은 글씨의 숫자는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응답비율을 나타냄.

제2절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및 경험

1.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및 경험비율

1) 인권침해의 사안별 심각성 인식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과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에 대해 일반인보다는 전문가가, 전문가보다는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과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모두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5〉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

(단위:%)

	일반인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83.8	98.9	99.0
사생활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73.1	95.6	94.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67.0	77.8	90.1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37.8	63.3	89.1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36.1	50.0	82.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34.2	65.6	89.1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29.5	38.9	82.2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26.2	34.4	76.2

2) 인권침해의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 비율

일반인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경험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간접경험비율은 심각성 인식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성 인식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심각성 인식과 직접경험, 간접경험이 모두 높은 인권침해 유형인 반면, ‘사생활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는 심각성 인식과 간접경험이 높으나 직접경험비율은 낮은 인권침해 유형에 해당한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직접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심각성 인식과 간접경험 비율은 낮은 수준을 보인다.

〈표 2-6〉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비율

(단위:%)

	심각성	경험 비율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개인정보 유출	83.8	3.3	19.7
사생활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73.1	0.5	14.8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67.0	2.3	15.0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37.8	1.6	14.0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34.2	2.3	12.9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29.5	1.7	12.6

3) 일반인의 심각성 인식과 경험의 교차 분석

일반인의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을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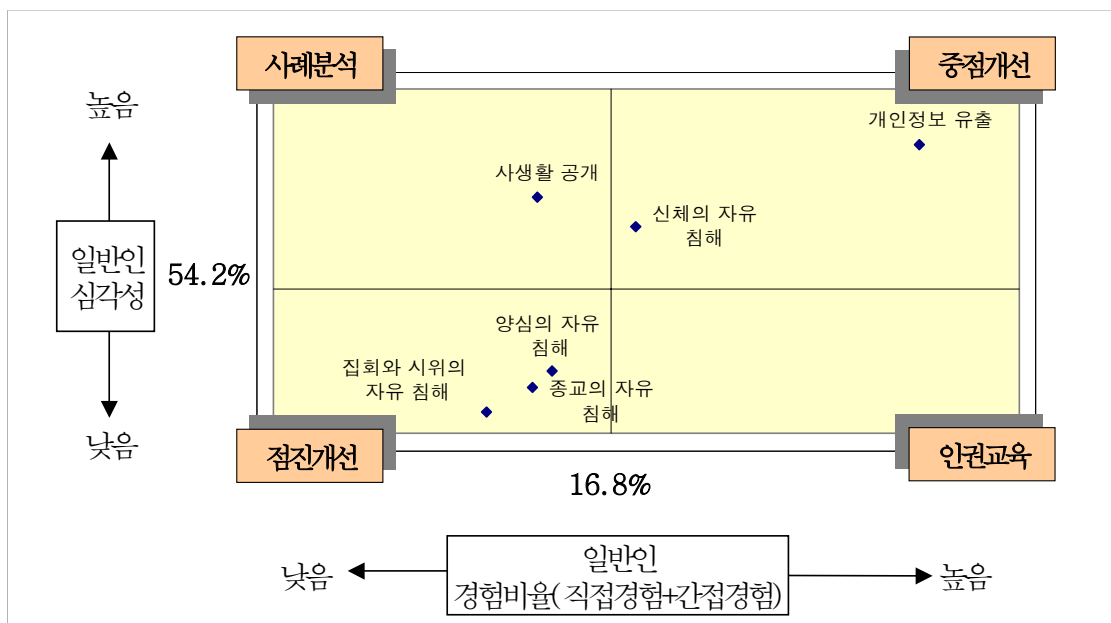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 비율이 모두 높아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중점 개선영역’에는, △개인정보 유출 △신체의 자유 등의 인권침해가 해당하며,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 비율이 모두 낮아 즉각적인 대안보다는 장기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점진개선영역'에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전통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해당한다.

심각성 인식은 낮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높아 일상화된 인권침해로 보이는 '인권교육영역'에는, △성별에 대한 인권침해가 해당하며 인권교육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심각성 인식은 높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낮아 소수에게 해당하는 문제로 보이는 '사례분석영역'에는, △사생활 공개와 관련한 인권침해가 해당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그림 2-3〉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비율 비교-일반인



* 일반인의 경험비율은 직접경험비율과 간접경험비율을 합한 값임.

2. 기관별 심각성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일반인의 경우는 군대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7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찰(72.8%), 검찰(71.8%), 국가정보원(7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송 등 언론기관(23.9%), 기업체(37.7%)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의 경우는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1.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찰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68.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였으나, 방송 등 언론기관(50.0%), 기업체(52.2%)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을 보여 일반인 응답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도 군대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6.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일반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4.1%로 높고, 경찰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1.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일반인보다는 전문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7〉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군대	74.2	87.8	96.0
경찰	72.8	68.9	81.2
검찰	71.8	82.2	92.1
국가정보원	70.2	87.8	91.1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69.5	91.1	94.1
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생활시설	55.5	64.4	81.2
초중고등학교	46.7	68.9	75.2
기업체	37.7	52.2	78.2
방송 등 언론기관	23.9	50.0	83.2

3. 인권침해 경험 시 대응방안 및 만족도

1) 대응방안 및 만족도

인권침해 사안별 인권침해 경험의 대응방안을 단순 합산한 결과, 49%의 경험자가 구체적인 대응을 한 반면, 51.0%의 경험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2명 중 1명 정도는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가 18.2%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7.8%)',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5.2%)',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5.2%)',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5.2%)', '언론기관에 투고나 제보(1.3%)' 등의 대응이 있다.

대응방안별 만족수준에 대해, '언론기관에 투고나 제보'한 1명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높고,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 등도 1명씩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높지만 사례수가 지나치게 적어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표 2-8〉 인권침해 경험 시 대응방안과 만족도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대응 유형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33명(42.9%)	4명(12.1%)	29명(87.9%)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14명(18.2%)	1명(7.1%)	13명(92.9%)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10명(7.8%)	1명(10.0%)	9명(90.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6명(5.2%)	1명(16.7%)	5명(83.8%)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4명(5.2%)	1명(25.0%)	3명(75.0%)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4명(5.2%)	1명(25.0%)	3명(75.0%)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1명(1.3%)	1명(100.0%)	0명(0.0%)
	기타	5명(6.5%)	2명(40.0%)	3명(60.0%)
소계		77명	12명(15.6%)	65명(84.4%)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80명(51.0%)	-	-
합 계		157명	-	-

2)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인권침해를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51.0%의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인권침해 사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구제수단의 효용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9〉 인권침해 경험 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응답수 (명)	별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기타	모름/ 무응답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24)	16	6	2	1	1	0
개인정보 유출	(19)	9	5	4	4	1	0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4)	9	2	2	0	1	0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2)	9	1	2	0	0	0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0)	5	2	1	2	0	0
사생활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1)	1	0	0	0	0	0
전 체	80	49 (61.3%)	16 (20.0%)	11 (13.8%)	7 (8.8%)	3 (3.8%)	0 (0.0%)

제3절 차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1. 차별의 심각성 인식 및 경험비율

1) 차별 사안별 심각성 인식

차별 사안별 심각성과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해 일반인보다는 전문가, 전문가보다는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과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장애로 인한 차별'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보다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차이를 보인다.

〈표 2-10〉 차별 사안별 심각성

(단위:%)

	일반인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79.0	94.4	100.0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75.6	90.0	99.0
장애로 인한 차별	71.7	94.4	100.0
나이에 의한 차별	68.6	82.2	93.1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	52.2	92.2	95.0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49.7	78.9	92.1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48.0	85.6	95.0
성별로 인한 차별	43.6	80.0	91.1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42.4	74.4	78.2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41.7	55.6	81.2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	39.8	66.7	87.1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37.2	72.2	87.1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	35.4	70.0	83.2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	29.2	67.8	86.1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	29.2	67.8	86.1
종교로 인한 차별	20.6	42.2	74.3

2) 차별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 비율

일반인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는, 경험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간접경험비율은 심각성 인식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성 인식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은 심각성 인식과 직접경험, 간접경험이 모두 높은 차별 유형인 반면, ‘장애로 인한 차별’은 심각성 인식과 간접경험은 높으나 직접경험비율은 낮은 차별 유형에 해당한다.

‘성별로 인한 차별’의 경우 직접경험과 간접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심각성 인식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11〉 차별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비율

(단위:%)

	심각성	경험 비율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79.0	5.4	38.5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75.6	5.0	36.7
장애로 인한 차별	71.7	2.1	29.8
나이에 의한 차별	68.6	7.1	39.1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	52.2	0.3	14.9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49.7	2.5	20.8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48.0	0.2	10.6
성별로 인한 차별	43.6	5.1	25.6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42.4	2.0	17.9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41.7	1.6	19.1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	39.8	0.6	14.8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37.2	1.4	14.5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	35.4	0.9	14.9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	29.2	0.5	11.2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	29.2	0.4	18.0
종교로 인한 차별	20.6	1.1	12.5

3) 일반인의 심각성 인식과 경험의 교차 분석

일반인의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을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 비율이 모두 높아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중점 개선영역’에는, △비정규직 △학력/학벌 △장애 △나이 등의 차별이 해당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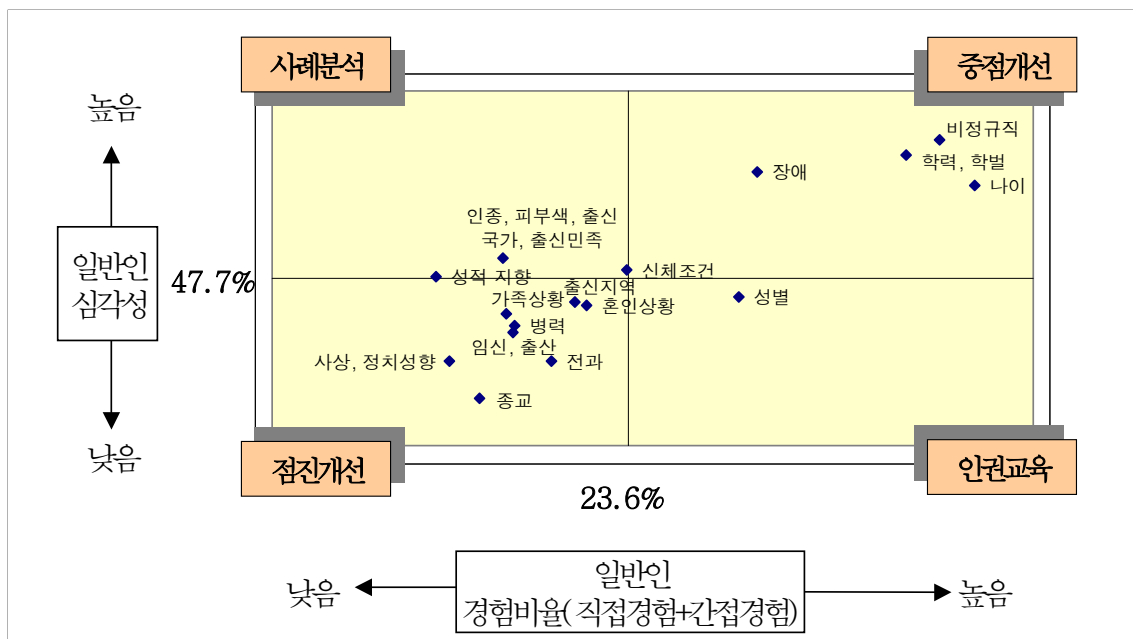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 비율이 모두 낮아 즉각적인 대안보다는 장기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점진개선영역’에는, △출신지역 △혼인상황 △가족상황 △병력 △임신 및 출산 △사상 및 정치성향 △전과 △종교 등의 차별이 해당한다.

심각성 인식은 낮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높아 일상화된 차별로 보이는 ‘인권교육영역’에는, △성별에 대한 차별이 해당하며 인권교육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심각성 인식은 높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낮아 소수자 문제로 보이는 ‘사례분석영역’에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이 해당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 성적 지향은 ‘점진개선영역’과 ‘사례분석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개별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차별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4〉 차별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비율 비교-일반인



* 일반인의 경험비율은 직접경험 비율과 간접경험비율을 합한 값을 활용함.

2. 기관별 유형별 심각성

1) 기관별 심각성

차별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심각하게 차별을 경험한 기관을 묻는 질문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제외한 모든 차별에서 '기업체'라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행정기관'이라는 응답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나이에 의한 차별',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등은 기업으로부터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50% 이상의 높은 수준이다.

한편,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은 '병원이나 요양시설'로부터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종교로 인한 차별'의 경우는 '학교'로부터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은 '대중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다른 차별 사안과 차이를 보인다.

〈표 2-12〉 기관별 심각성-차별 경험자

(단위:%)

	응답수 (명)	기업체	행정기관	병원이나 요양시설	대중서비스 제공기관	학교	기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69	71.1	11.6	0.0	9.0	1.4	6.9
나이에 의한 차별	88	67.1	7.6	2.3	5.9	3.0	14.1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64	56.4	9.6	0.0	3.0	14.3	16.7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20	55.5	15.3	0.0	5.3	0.0	23.9
종교로 인한 차별	14	43.8	6.4	13.5	0.0	15.0	21.3
성별로 인한 차별	65	40.7	12.5	3.1	7.9	9.6	26.2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24	40.4	15.8	4.2	4.1	3.9	31.6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31	37.7	3.0	3.3	22.7	3.0	30.3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17	33.8	11.5	25.9	5.7	0.0	23.1
장애로 인한 차별	26	18.0	7.8	20.3	11.3	7.7	34.9

* 16가지 차별의 종류 중에서 직접경험자가 전체 응답자의 1%(12명)미만인 차별은 지나치게 사례 수가 적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한편,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차별문제가 가장 심각한 기관을 묻는 중복응답 질문에, '경찰', '군대', '검찰', '기업체' 등의 기관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차별 경험자들의 응답과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는 행정기관이나 학교라는 응답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서 차별 경험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13〉 기관별 심각성-전문가/인권·시민단체관계자

(단위:%)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경찰	76.7	17.8	5.6	89.1	4.0	6.9
군대	70.0	24.4	5.6	85.1	9.9	5.0
검찰	67.8	26.7	5.6	80.2	8.9	10.9
기업체	63.3	34.4	2.2	84.2	11.9	4.0
행정기관	48.9	45.6	5.6	71.3	19.8	8.9
종교단체	40.0	52.2	7.8	51.5	37.6	10.9
학교	38.9	58.9	2.2	79.2	17.8	3.0
대중서비스 제공기관	21.1	76.7	2.2	53.5	39.6	6.9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18.9	77.8	3.3	42.6	45.5	11.9

2) 차별 유형별 심각성

직접적인 차별 경험자를 대상으로 심각하게 경험한 차별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인한 차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병력으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종교로 인한 차별'과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입학이나 교육내용과 관련한 차별'을 심각하게 경험했다는 응답이, '장애로 인한 차별'과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을, '병력으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행정기관 이용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4〉 차별 유형별 심각성-차별 경험자

(단위:%)

	응답수 (명)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입학이나 교육내용과 관련한 차별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	기타
나이에 의한 차별	88	71.3	9.4	2.2	7.8	1.2	8.1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64	45.3	19.9	0.0	10.2	1.6	23.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20	44.6	18.8	10.9	0.0	0	25.7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31	41.6	6.5	6.5	6.1	16.3	23.0
종교로 인한 차별	14	36.6	0.0	0.0	35.3	0.0	28.1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69	27.2	54.2	5.9	0.0	0	12.7
장애로 인한 차별	26	26.0	3.4	25.1	3.5	10.2	31.8
성별로 인한 차별	65	20.8	23.0	6.5	5.8	4.8	39.1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24	18.8	28.9	17.0	0.0	0	35.3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17	6.5	4.0	31.2	0.0	0	58.3

* 16가지 차별의 종류 중에서 직접경험자가 전체 응답자의 1%(12명)미만인 차별은 지나치게 사례 수가 적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한편,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도 중복으로 응답한 가장 심각한 차별 유형으로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과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별 경험자와 유사하지만,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15〉 차별 유형별 심각성-전문가 및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단위:%)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88.9	10.0	1.1	87.1	9.9	3.0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	86.7	12.2	1.1	91.1	6.9	2.0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	68.9	27.8	3.3	87.1	11.9	1.0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	52.2	46.7	1.1	80.2	16.8	3.0
입학이나 교육내용과 관련한 차별	35.6	63.3	1.1	61.4	29.7	8.9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차별	33.3	65.6	1.1	62.4	34.7	3.0
대중시설 이용과 관련한 차별	31.1	67.8	1.1	57.4	37.6	5.0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31.1	67.8	1.1	62.4	31.7	5.9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17.8	81.1	1.1	57.4	38.6	4.0

3. 차별 경험 시 대응방안 및 만족도

1) 대응방안 및 만족도

차별 사안별 차별 경험의 대응방안을 단순 합산한 결과, 21.3%만이 구체적인 대응을 한 반면, 78.7%의 경험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이 5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가 20.5%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9.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5.1%)',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5.1%)',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3.8%)', '언론기관에 투고나 제보(2.6%)' 등의 대응이 있다.

대응방안별 만족수준에 대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4명 중 3명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26.2%)',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경험자의 대응이나 만족도와는 차이가 있다.

〈표 2-16〉 차별 경험 시 대응방안과 만족도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대응 유형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42명(53.8%)	11명(26.2%)	30명(71.4%)	1명(0.02%)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16명(20.5%)	3명(18.8%)	12명(75.0%)	1명(0.06%)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7명(9.0%)	1명(14.3%)	6명(85.7%)	0명(0.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4명(5.1%)	3명(75.0%)	0명(0.0%)	1명(25.0%)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4명(5.1%)	1명(25.0%)	2명(50.0%)	1명(25.0%)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3명(3.8%)	0명(0.0%)	3명(100.0%)	0명(0.0%)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2명(2.6%)	0명(0.0%)	1명(50.0%)	1명(50.0%)
	기타	17명(21.8%)	2명(11.8%)	15명(88.2%)	0명(0.0%)
	소계	95명	19명(24.4%)	54명(69.2%)	5명(6.4%)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351명(78.7%)	-	-	-
합 계		446명	-	-	-

2)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78.7%의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차별 사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과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구제수단의 효용성과 구제절차 및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표 2-17〉 차별 경험 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응답수 (명)	별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기타	모름/ 무응답
나이에 인한 차별	78	58	10	8	2	2	0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53	40	7	2	2	4	0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48	34	5	4	3	6	0
성별로 인한 차별	47	40	2	4	4	1	0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27	17	4	3	1	2	1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22	18	2	1	0	2	0
장애로 인한 차별	20	5	1	1	1	1	11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18	17	0	1	0	0	0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13	10	0	0	2	2	0
종교로 인한 차별	11	9	0	2	0	0	0
전 체	337	248 (73.6%)	31 (9.2%)	26 (7.7%)	15 (4.5%)	20 (5.9%)	12 (3.6%)

제4절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1.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1)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 인지도

일반인 1,263명 중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폐 의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6.7%,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43.3%로 나타났다.

2)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하여, 일반인은 33.1%가 일부 조항의 개정을 조건으로 한 유지를, 27.7%는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폐지를 선호하고 있다.

전문가는 47.8%가 조건 없는 완전 폐지를 선호하였으며, 인권·시민단체는 경우는 88.1%가 조건 없는 완전 폐지 입장을 나타내어 일반인이나 전문가와 차이를 보인다.

〈표 2-18〉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에 대한 입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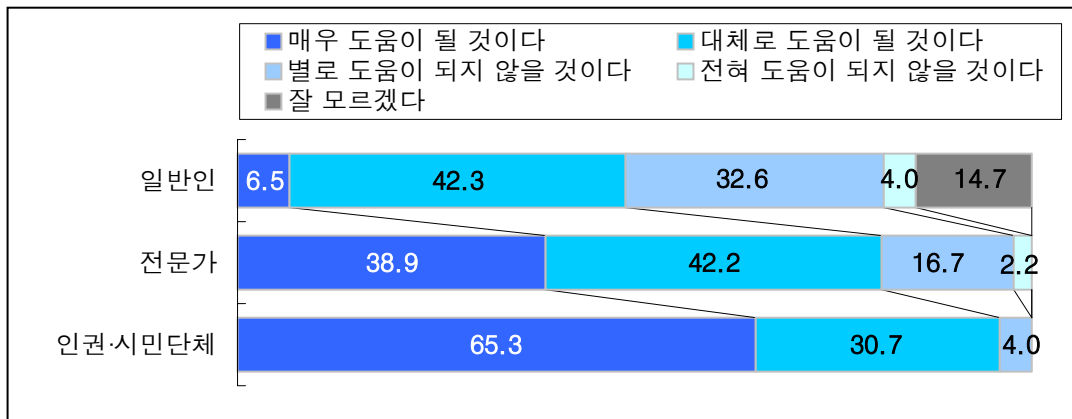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완전 폐지	7.9	47.8	88.1
폐지 및 대체입법	27.7	18.9	6.9
폐지 및 형법 대체	6.0	13.3	1.0
유지 및 일부 개정	33.1	17.8	4.0
현행 유지	8.5	1.1	0.0
잘 모르겠다	16.8	1.1	0.0

3) 국가보안법 개폐로 인한 인권상황 개선도 평가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48.8%, 전문가의 81.1%,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6.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일반인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2-5〉 국가보안법 개폐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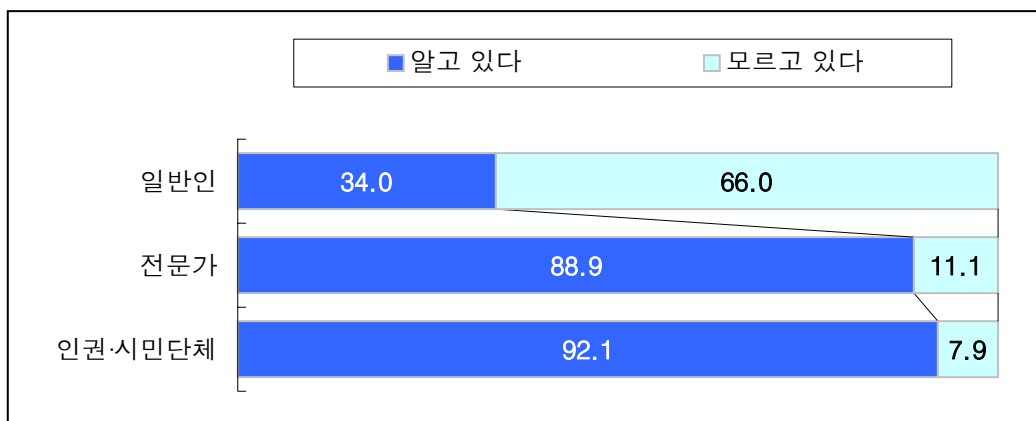


4)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실에 대해, 일반인의 34.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8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92.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6〉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지도

(단위:%)



2.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1)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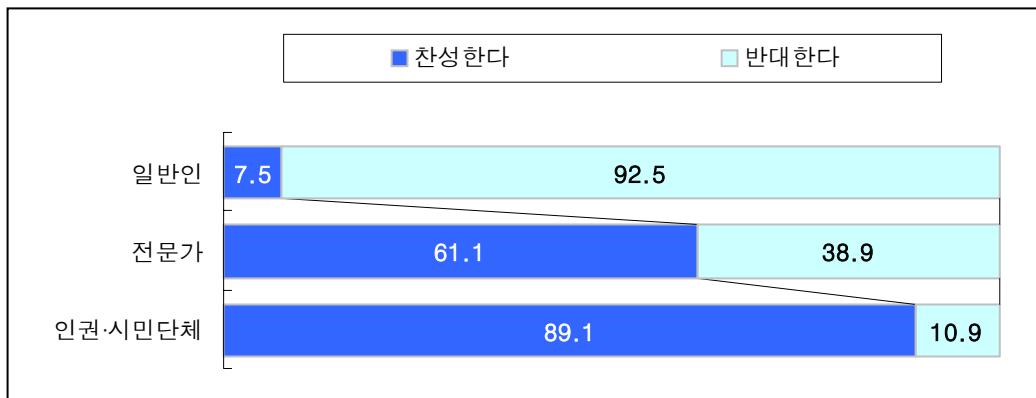
일반인 1,263명 중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3.9%,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6.1%로 나타났다.

2)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일반인은 7.5%만이 찬성하고 92.5%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가는 61.1%, 인권·시민단체는 89.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7>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단위:%)



3)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일반인 응답자 중 36.7%는 현재와 같이 범법자로 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9.5%는 사회봉사기관 등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문가는 63.3%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84.2%가 사회봉사기관 등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19〉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현재와 같이 범법자로 처벌	36.7	3.3	2.0
군복무대신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대체복무 허용	29.5	63.3	84.2
기초군사 훈련을 제외한 공익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근무 허용	15.5	13.3	8.9
비전투 병과에 배치	14.6	18.9	5.0
잘 모르겠다	3.7	1.1	0.0

3. 비정규직 문제 관련

1) 비정규직 문제 인지도

일반인 1,263명 중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4.0%,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6.0%로 나타났다.

2)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일반인 응답자 중 31.3%는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8.8%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5.0%는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역시,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 완화(38.9%)', '정규직과 동일노동 시 동일임금 지급(22.2%)',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20.0%)'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38.6%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4.8%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이나 전문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20〉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 완화	31.3	38.9	17.8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	28.8	20.0	18.8
동일노동 시 동일임금 지급	25.0	22.2	24.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8.7	18.9	38.6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	2.3	0.0	0.0
잘 모르겠다	3.8	0.0	0.0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1)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의 개인신상정보', '신용관련정보 및 금융정보', '가족 구성원의 신상내역 등 가족 관련 정보' 등을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응답하였다.

〈표 2-21〉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신상정보	44.4	25.6	50.5
신용관련정보 및 금융정보	37.0	38.9	26.7
가족 구성원의 신상내역 등 가족 관련 정보	13.2	18.9	11.9
소유 부동산 내역 등 재산 관련 정보	2.6	4.4	2.0
개인의 학력이나 성적 등 교육관련 정보	2.1	1.1	3.0
본인의 진료기록 등 의료 관련 정보	0.6	11.1	5.9

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경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경험과 관련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우려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살 때', '인터넷 동호회에 회원가입을 할 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경험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58.1	87.8	92.1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살 때	48.9	82.2	83.2
인터넷 동호회에 회원가입을 할 때	43.3	76.7	81.2
인터넷 बैं킹으로 거래를 할 때	38.9	71.1	68.3
공공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33.1	50.0	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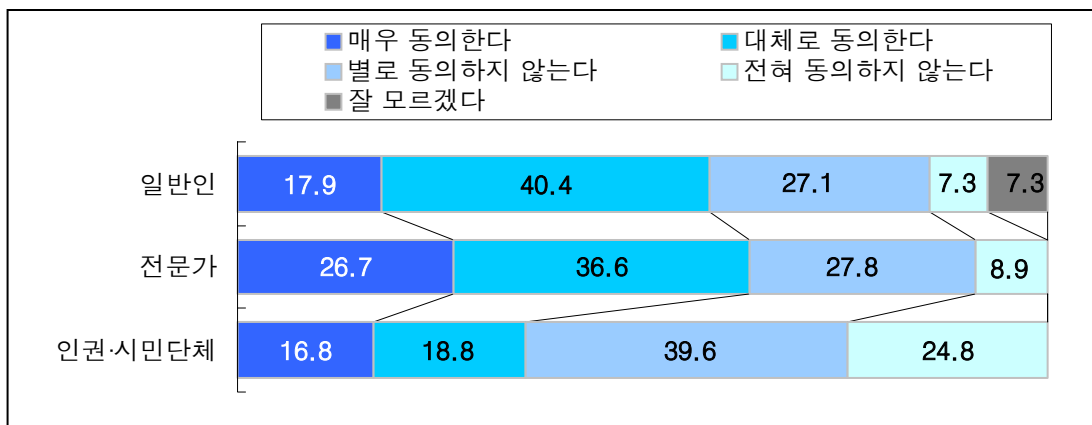
3)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일반인의 58.3%와 전문가의 63.3%가 동의하는 데 반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35.6%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과 전문가는 개인정보 유출보다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에 주목하는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8〉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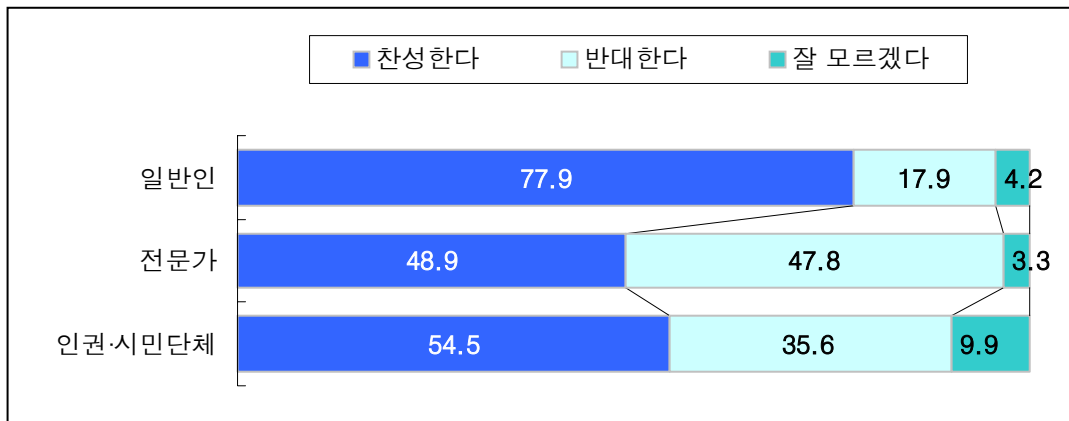


2)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일반인의 77.9%가 동의하는 반면, 전문가는 4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54.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2-9〉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

(단위:%)



5.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1) 학력·학벌 차별 문제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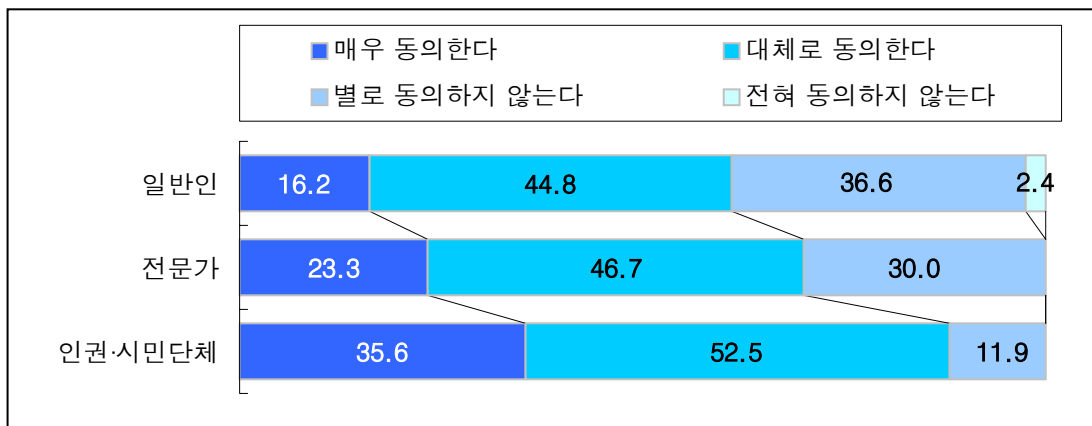
일반인 1,263명 중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7.6%,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2.4%로 나타났다.

2) 입학지원서 학력 미기재 방침의 학력차별 해소 효과 평가

입학지원서 학력 미기재 방침의 학력 차별 해소 효과에 대해, 일반인의 61.0%, 전문가의 70.0%,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8.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10〉 입학지원서 학력 미기재 방침의 학력 차별 해소 효과 평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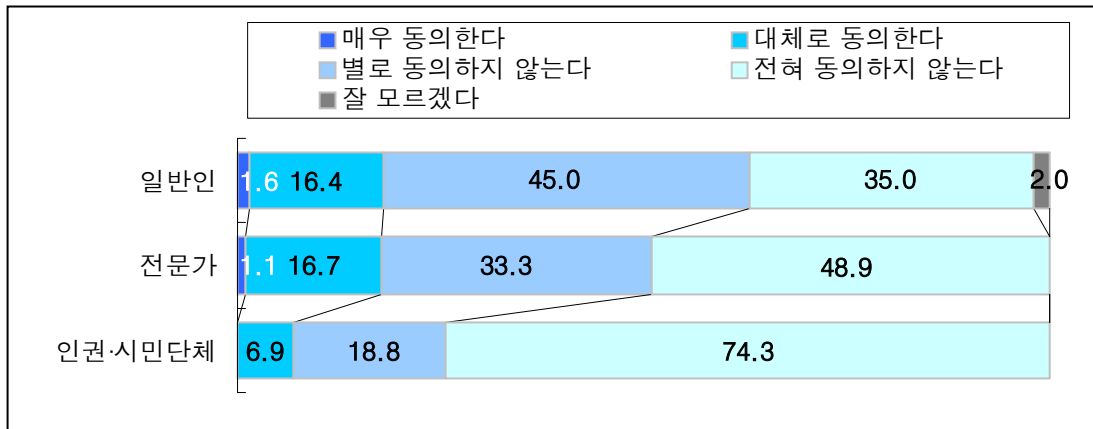


3)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한 입장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해, 일반인의 18.0%, 전문가의 17.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6.9%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11〉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한 입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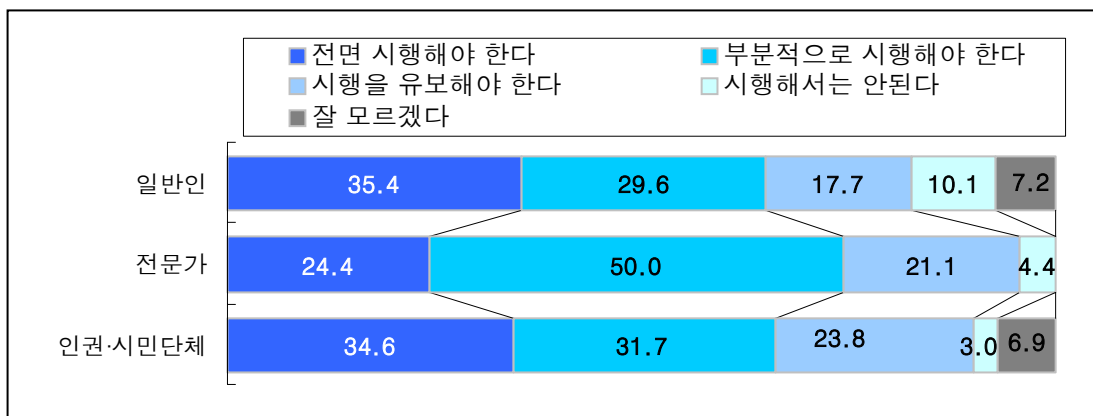


4)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에 대한 입장

지방대 출신 고용할당제에 대해 일반인의 65.0%, 전문가의 74.4%,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66.3%가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2〉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에 대한 입장

(단위:%)



제5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일반인 1,263명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6.9%,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63.1%로 나타났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인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알고 있다는 466명의 일반인 중에서 24.3%, 전체 전문가의 6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60.4%가 독립된 국가기구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인의 35.5%, 전문가의 2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31.7%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23〉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인지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독립된 국가기구	24.3	68.9	60.4
대통령 직속기구	35.5	28.9	31.7
잘 모르겠다	16.8	1.1	4.0
민간기구	12.3	0.0	0.0
국무총리 직속기구	11.1	1.1	4.0

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경로

중복응답으로 질문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일반인은 'TV(78.3%), 신문/잡지(46.2%), 인터넷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중매체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지인 또는 주변사람' 등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24〉 국가인권위원회 인지 경로-중복응답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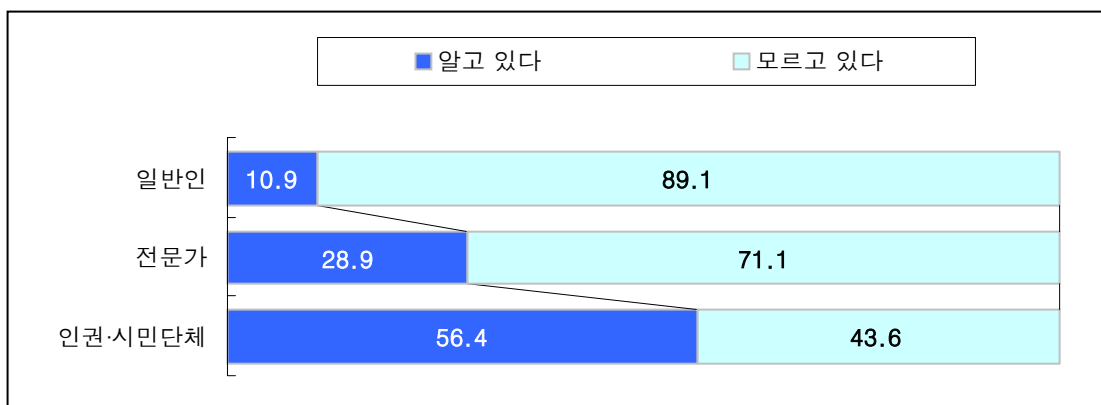
	일반인(466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TV	78.3	46.5	26.7
신문/잡지	46.2	60.0	31.7
인터넷	13.0	41.1	34.7
라디오	7.9	8.9	5.0
지인 또는 주변사람	3.6	27.8	21.8
기타	2.0	0.0	2.0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	1.9	28.9	44.6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1.5	28.9	36.6
모름/무응답	0.0	0.0	2.0

4) 인권상담 전화 1331 인지도

인권상담 전화 1331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466명의 일반인 중 10.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 역시 28.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56.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13〉 인권상담 전화 1331에 대한 인지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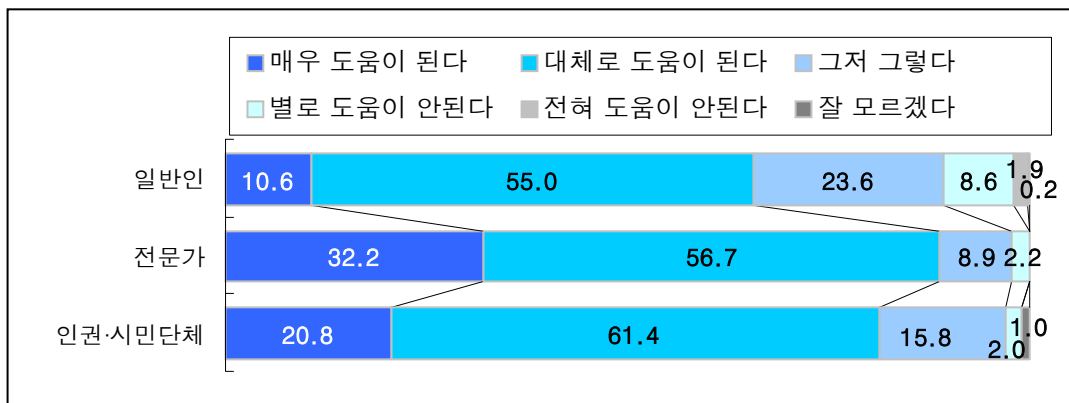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평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기여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65.6%, 전문가의 8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2-14〉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기여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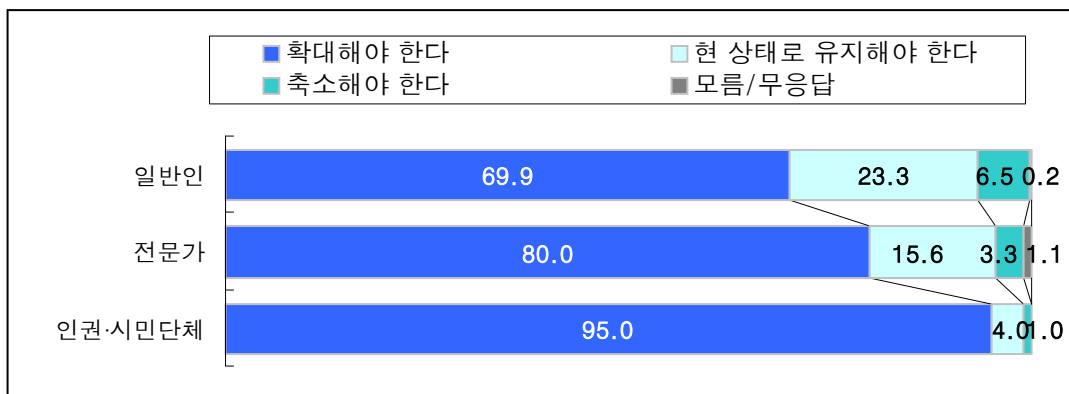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의 확대·축소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일반인의 69.9%와 전문가의 80.0%, 시민단체 관계자의 95.0%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표 2-15〉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확대·축소 여부

(단위:%)



제6절 인권교육의 실태

1. 인권교육의 경험

1) 인권교육의 경험 여부

일반인 1,263명 중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3%,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94.7%로 나타났다.

2)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67명은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해, 43.8%가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교육받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38.6%)', '자신이 속해 있는 곳과 관련된 인권 내용(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5〉 인권교육의 내용-중복응답

(단위:%)

	(응답수)	기본적 인권의 개념 과내용	사회적 약자의 인권 에 대 한 이 해	자 신 이 속 해 있 는 곳 과 관 련 된 인 권 내 용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 우 구 제 절 차 등 에 대 한 교 육	인권존중의 태도 및 인 권 옹 호 를 위 한 실 천 방 법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 현 안 및 국제 인권 동향 에 관 한 이 해	기 타	잘 모 르 겠 다	계
전 체	(67)	43.8	38.6	22.7	12.9	11.6	4.8	1.5	7.1	100.0

3) 인권교육의 주체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67명은 인권교육의 주체에 대해, 55.2%가 학교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30.1%)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권·시민단체의 행사(2.5%)나 정부기관의 교육프로그램(1.6%)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표 2-26〉 인권교육의 주체

(단위:%)

	(응답수)	학교	직장	시민단체의 행사	정부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기타	계
전 체	(67)	55.2	30.1	2.5	1.6	10.6	100.0

2. 인권교육의 필요성

1) 주요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주요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세 종류의 교육과정 모두에 대해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7〉 인권교육의 필요성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92.4	100.0	100.0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	91.8	98.9	99.0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원 교육	91.5	96.7	99.0

2)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

일반인은 사법관계자(16.0%), 경찰(14.0%),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11.7%), 사회적 약자(11.5%), 구급시설 공무원(10.5%)의 순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전문가는 구급시설 공무원(16.7%), 경찰(16.7%), 군인(11.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10.0%) 등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사

법관계자(17.8%), 경찰(13.9%), 교사(12.9%), 군인(9.9%), 중앙 및 지방공무원(9.9%) 등의 순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28〉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사법 관계자	16.0	8.9	17.8
경찰	14.0	16.7	13.9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11.7	7.8	5.0
사회적 약자	11.5	6.7	6.9
구급시설 공무원	10.5	16.7	5.0
중앙 및 지방 공무원	8.0	5.6	9.9
군인	8.0	11.1	9.9
학생	6.9	3.3	7.9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5.2	10.0	2.0
언론인	3.4	6.7	5.0
교사	1.8	4.4	12.9
전문직 종사자	1.7	1.1	2.0
기타	0.7	1.1	2.0
모름/무응답	0.6	0.0	0.0
계	100.0	100.0	100.0

제7절 청소년의 인권 실태

1. 청소년 인권 사안별 심각성

청소년의 인권 사안별 심각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반인보다는 전문가가, 전문가보다는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차별'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과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모두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외에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장애로 인한 차별',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의 경우,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을,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외에 '외모로 인한 차별', '교육활동 선택의 자유 제한'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2-29〉 청소년 인권문제 사안별 심각성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	72.5	91.1	96.0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63.6	86.7	87.1
학교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50.8	88.9	94.1
학교에서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	49.1	81.1	89.1
학교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41.3	80.0	86.1
학교에서 키나 몸무게, 얼굴생김새 등의 외모로 인한 차별	35.8	60.0	87.1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	30.3	57.8	72.3
학교에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23.6	50.0	77.2
정규교과목 이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	23.5	68.9	86.1
학교에서의 선생님에 의한 차별	20.2	58.9	78.2
학생회 등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	19.9	51.1	80.2
학교에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	17.7	56.7	81.2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차별	12.9	53.3	63.4

2. 청소년 인권 사안별 경험 여부

1) 청소년 인권문제 사안별 경험 비율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41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권사안별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학교에서의 선생님에 의한 체벌'이 46.3%,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이 46.0%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체벌(38.8%)'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인이나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은 11.6%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2-30〉 청소년 인권문제 사안별 경험비율

(단위:%)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419명)
학교에서의 선생님에 의한 체벌	46.3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	46.0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체벌	38.8
학교에서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	16.7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16.6
정규교과목 이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	15.4
학생회 등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	14.8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	11.6
학교에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10.0
학교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9.8
학교에서 키나 몸무게, 얼굴생김새 등의 외모로 인한 차별	9.5
학교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5.1
학교에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	4.4

2) 일반인의 심각성 인식과 경험의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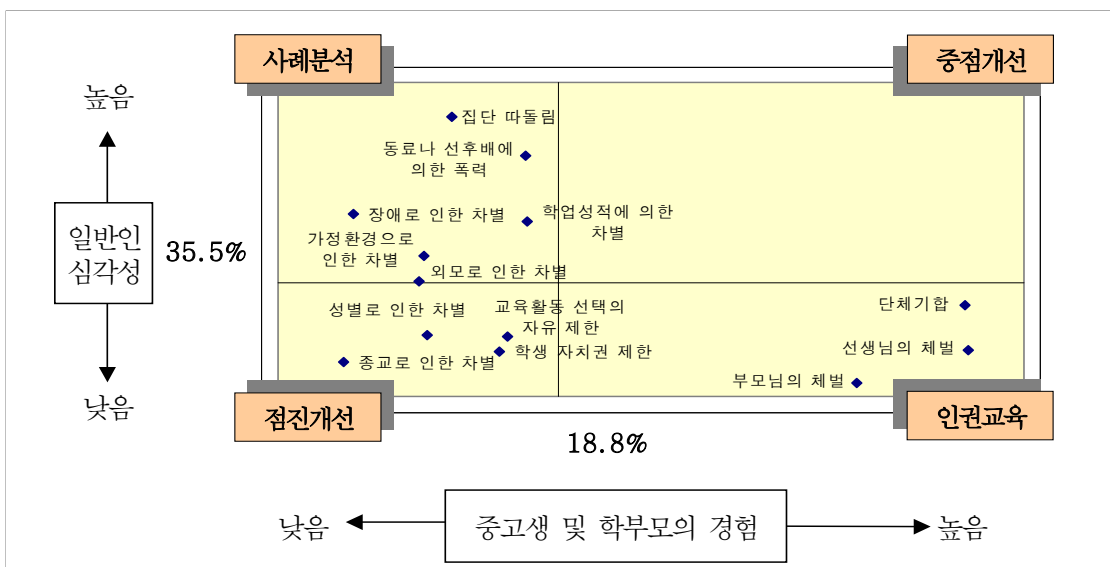
일반인의 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의 직접 경험을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심각성 인식은 높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낮아 소수에 해당하나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로 보이는 '사례분석영역'에는, △집단 따돌림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학업성적에 의한 차별 △장애로 인한 차별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외모로 인한 차별 등이 해당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연구 및 그에 따른 차별화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 비율이 모두 낮아 즉각적인 대안보다는 장기적인 관심과 주의를 요구되는 '점진개선영역'에는, △교육활동 선택의 자유 제한 △학생자치권 제한 △성별로 인한 차별 △종교로 인한 차별 등의 사안이 해당하며,

심각성 인식은 낮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높아 일상화된 인권침해로 보이는 '인권교육영역'에는, △단체기합 △선생님에 의한 체벌 △부모님에 의한 체벌 등이 해당하며 교육상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6〉 청소년 인권문제 심각성과 경험비율 비교-일반인



제3장 정성조사 결과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인식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온 역할과 활동과정에서 성과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응답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차원에서 세 가지 의의를 지적하고,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및 효과 차원에서 긍정적 성과를 지적하였으며, 셋째,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해온 정책 사안들에 대한 점들을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성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의를 지적하였다. 29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적 차원의 독립영역으로서 인권 영역이 확보되고 자리매김한 점을 지적하였고, 두 번째로 23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자체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8명의 전문가가, 인권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 요청기구가 생성된 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이자 대한민국 인권사의 중요한 전환기적 특징으로 인식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및 효과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지적하였다. 첫 번째로 56명의 전문가는 인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지적했고, 두 번째로 26명의 전문가들이 이슈나 사안들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세 번째로 12명의 전문가들이 실제 인권상황 개선 및 법령제도 개선을 지적했다. 네 번째로는 6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진보적 관점의 접근을 지적했으며 다섯 번째로 5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여섯 번째로 3명의 전문가들이 국민들 사인간의 중재 효과를 언급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사안과 관련하여 첫째, 51명의 전문가들이 △국가보안법 △구급시설 인권문제 △네이스 문제 등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성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18명의 전문가들이 △장애인 차별 △성차별 △고용관련 차별 등의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조치를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 14명의 전문가들이 △성적 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사안 등의 사회적 소수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처를 언급하였고,

마지막으로 10명의 전문가들이 △본인의 직접적인 구제 경험들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점에 대한 인식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온 역할과 활동과정에서 개선점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 차원,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차원,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차원에서 개선점을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개선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차원의 개선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34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의 한계를, 둘째, 10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제도적 미비를 지적했다. 셋째, 8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구성의 문제를 언급했고, 넷째, 6명의 전문가들이 전문성 부족을, 다섯째, 4명의 전문가들이 행정 관료화 경향을, 여섯째, 3명의 전문가들이 지방사무소 설치 문제를 개선점으로 언급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27명의 전문가들이 진정처리기간의 지연 및 소극적 대응을, 둘째, 16명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추가대응 및 후속조치의 부재를, 셋째, 14명의 전문가들이 정책 및 법령개선 미흡을 지적하였다. 넷째로는, 14명의 전문가들이 인권단체 및 인권사안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부족을, 다섯째, 13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민 홍보 부족을, 여섯째, 10명의 전문가들이 전시행정, 심도 있는 사안접근 부족을 언급하였다. 일곱째, 8명의 전문가들이 인권문제 사전 대처를 위한 적극성 부족을, 여덟째, 6명의 전문가들이 정치적 중립화 실패를, 아홉째, 3명의 전문가들이 진정사안 결과 공개 방식 문제 등을 개선점으로 언급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점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39명의 전문가들이 편향적인 정책설정으로 인한 다양한 인권 사안 발굴 부족, 둘째, 11명의 전문가들이 과도한 진보성을, 셋째, 7명의 전문가들이 인권감수성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넷째, 5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침해 및 차별 등 인권 사각지대의 현존, 다섯째, 5명의 전문가들이 인권교육 등 인권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부족을 언급하였다.

제2절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처 방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침해나 차별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30명)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23명) △빈곤층 인권(16명) △장애인 인권(16명)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생활인 인권(12명) △북한 인권(11명)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 외에도 전문가들은 △여성 인권 △구금시설과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청소년 인권 △군대 내에서의 인권침해 △국내 체류 조선족 동포들의 인권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한편 △환자 정보 보호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신원확인서에 대한 문제제기 등과 같은, 특이한 소수 의견이 있었다.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내용 설명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국인 노동자 인권

전문가들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항으로,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인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 △법무부나 출입국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받는 인권침해 △체포된 후 본국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수용되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취할 대응방안으로는, △산업연수제 폐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여론 환기 △아동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 의식 개선 교육 실시 등을 제언하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점 △국내인권문제가 곧 세계인권문제가 되는 현실 등을 지적하며,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생존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점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것을 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실태조사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시정 요구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 빈곤층 인권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빈곤층에 속한다고 지목한 사람들은 △노숙자,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결식아동, △신용불량자, △실업자, △극빈자, △수도세나 전기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등이었다.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사회 복지의 확충,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빈곤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할 것을 제언하였다.

○ 장애인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방안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과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가 국가경쟁력 강화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생활인 인권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중 특히 △미신고 시설 △정신요양원 △소년수 생활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였다. 국가전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부패 감시 등을 제언하였다.

○ 북한 인권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한 전문가들의 응답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고, 둘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발굴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족 화해와 협력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라는 것이다.

○ 기타

- 여성 인권

국제결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불법적 결혼 알선 행태의 차단 △외국인 신부와 그의 남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외국인 여성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

- 구금시설과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 △경찰의 수사기록 공개 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 청소년 인권

청소년 인권 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교사에 의한 인권 침해 △왕따 문제 △아이들의 폭력 문제 등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서 겪는 인권 침해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권을 침해 받았을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권 상담센터를 학교 등에 설치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고,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해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군대에서의 인권 침해

△군대 내 인권침해 사례들의 수집 △국방부의 군대 내 인권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군 의문사 사건의 예방과 사후조사를 위한 조치 등을 제언하였다.

- 국내 체류 조선족 동포의 인권

△재외동포법 개정에 부응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 △조선족 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 △순환제식 취업제도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 학력·학벌 차별의 시정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력·학벌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한 전문가는 학벌(학력)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다른 전문가는 법률적인 대응보다는 인권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대비책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진정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정책적 권고 등의 지속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은 인권문제 전반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 강화 △실태조사 내실화 △전문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인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나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위의 권한과 조직의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일부 존재했다.

제3절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정보 인권(28명) △외국인 노동자 인권(25명)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20명) △성적 소수자의 인권(15명) △북한 인권(13명) △외국인 인권(13명) △노인 인권(11명) △장애인 인권(7명) △환경 인권(6명) △과학기술과 인권(5명) 등을 꼽았다.

그 밖의 소수 의견으로 △개인 인권 간의 충돌 △국제인권 △기호의 권리 △재난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역차별 △일상생활 속의 차별 △외모차별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내용 설명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 인권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보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보격차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한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률 개정 및 관리 △개인정보 관련 정책 제시 △적극적인 실태 조사 △정보인권의 개념 확립 △사전예방시스템 도입 △정보인권 보호 프로세스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3D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에 따른 특정 부문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 △외국인인력관리제도의 미비로 인한 불법체류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미래에도 계속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응 방안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편협한 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와 관계되는 사회보장제도 절차 개선 △외국인력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과 계획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재편, 경쟁의 심화와 같은 경제적·사회적 변화 때문에,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빈곤층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인권 감수성의 견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권고 △실태파악 △복지제도 강화 등을 제시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차별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한 전문가는 구체적인 문제 사례들을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빈곤층의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성적 소수자의 인권

성적 소수자 인권문제가 대두되는 방식으로 전문가들은 △다양한 차별 영역과의 맞물림으로 인한 성적 소수자 문제의 확대 △성적 소수자 개념의 분화 △청소년 성적 소수자 문제를 언급했다.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방안으로는 △제도개선과 의식 개혁을 지적했다.

○ 북한 관련 인권

북한과 관련한 인권 문제는 첫째, 탈북자의 인권 문제 해결, 둘째,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루는 것에 대한 제언, 셋째, 통일 이후 이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탈북자와 관련해서, △탈북자들을 위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전문가가 있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다루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 △'내재적 접근법' 등을 활용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이북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준비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외국인 인권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조선족 동포 문제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동포 문제, 혼혈아동이나 국제결혼여성 문제 등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향후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로 언급하였다. 구체적인 제언 내용은, △국내 체류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지적 △혼혈아동에 대한 관심과 교육 △국제결혼여성의 인권침해 구제 △재외동포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초 조사 등이다.

○ 노인 인권

노인 인권 문제는, 구체적으로 △빈곤 문제와 일상적인 인권침해 △노동시장에서의 퇴출과 관련한 차별 △노인복지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일상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사전 예방 조치 등이 지적되었다.

○ 장애인 인권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존재하는 장애인들이 사회가 변화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등 장애인 문제가 보다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 교육권 확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기반을 둔 장애인 차별 권리구제 업무 준비를 지적했다.

○ 환경 인권

전문가들은 환경문제가 인권 문제에 속하는 이유로, △환경오염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인간의 권리와 관계가 있다는 점, △사람의 권리를 생물의 권리까지 확장시켜야 된다는 점을 들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환경권 개념의 연구 및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상위법 체계 개정 노력 △환경 분쟁기구와의 교류와 정보 교환 △환경문제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것 등을 제언하였다.

○ 과학기술과 인권

구체적인 과학기술 관련 인권 문제로 △유전공학과 복제기술과 관련된 생명윤리, 인권침해 논란 △생체인식 기술 발달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관련 사안들이 대두 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한 전문가는 현재 배아 실험과 인공수정에 대한 규제가 매우 미비하며 이에 따라 거의 '생체실험' 수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같은 생명윤리 논란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관련 법률 정비 △장기적인 인권 계획 수립 등을 제언하였다.

제4절 사회권 분야에서 시급한 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처 방안

사회권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이 △빈곤층 문제(22명) △외국인 노동자 문제(16명)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14명) △장애인 문제(14명) △성적소수자 문제(9명) △아동과 청소년 문제(8명)를 꼽았다. 그 외에도 전문가들은 △환자와 관련한 인권 문제 △노인과 관련한 인권 문제 △토지수용자와 관련한 인권 문제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언급하였다.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내용 설명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빈곤층 문제

전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최저생계비 인상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한편 빈곤층에 이미 떨어진 사람과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각각 서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인권의 관점에서 관련 부처의 업무에 대해 견제할 것 △빈곤층에 대한 실태 파악 △선진국 복지제도에 대한 검토 △존재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 외국인 노동자 문제

△산업연수제의 폐지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권 보장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향유권 배려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차별적 시선 교정 △불법체류자 자녀의 인권 보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에 대하여 홍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임금차별 △고용불안 △노동3권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체적으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확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고용 기업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발언과 검토 의견 제시 등을 제언하였다.

○ 장애인 문제

장애인 인권 문제의 대응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사회적 부문에도 적극 개입할 것 △장애인들의 취업 문제에 집중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정부 부처에 장애인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 등을 제언하였다.

○ 성적 소수자 문제

대응방안으로, △학교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 관련 교육 실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범죄나 차별을 막기 위한 법안 마련 △동성애자를 배려한 호적제도 마련 △성전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정신과 진단과 보험처리 실시 등을 제언하였다.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문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이유로,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인권 보호가 갖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 △아동의 인권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아동과 청소년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인권 침해 △학교 생활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 등을 지적하였으나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 기타

- 환자 인권 문제

△한센병이나 에이즈 질환자에 대한 편견 교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빈곤층의 의료권 보장에 대하여는, 상이한 의견들이 있었다.

- 노인 인권 문제

△채용과 해고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을 해소할 것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노인들에게 문화생활을 제공해 줄 것 등을 제안하였다.

- 토지수용자 인권 문제

생활 근거지와 공동체를 잃게 되는 토지 수용자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은 사회권 문제 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입법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인권침해와 차별의 기준 제시 및 차별 기준 자료집 배포 △다수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인권·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사전 예방적 활동과 대안 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사회권 분야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전문가가 있었다. 반면에 다른 전문가는 사회권 중 생활권 보호 문제가 재정(財政)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5절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 정립을 논의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중도적이며 객관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가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한 긴장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세 가지 관점의 이유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지적하였다. 첫째, 23명의 전문가들이 현실과 근접한 인권·시민단체의 인권감수성을 활용하고 현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13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시민단체의 운동성과 활동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 중도적이며 객관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권·시민단체와 중도적이며 객관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였다. 첫째, 24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의 이념적 지형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8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의 규모와 성격이 지나치게 차별적이라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차별성을 감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협력 지원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인권·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은 감시와 견제를 통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10명의 전문가가 언급한 그 이유는 인권·시민단체가 이익단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다. 그들은 인권·시민단체와의 무분별한 협력 관계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경계해

야 한다고 보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대안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둘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용적 측면에서 협력 방안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는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협력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세 가지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의 협력방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마련할 수 있는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방안으로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사업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고 공개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것을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4명의 전문가들이 지역사무소 설치 등을 논의했고, 기타의견으로는 △인권 상담사 인증 체제 도입 △인권·시민단체 전담 인력 확충 △사안별 태스크 포스 운영 △인권·시민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참여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화 등을 언급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의 협력방안으로 운용적 측면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총 31명의 전문가들이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의 공동 사업 진행을 제언했고, 두 번째로 24명의 전문가들이 정보공유 및 정책 피드백을 위한 일상적 의사소통 채널 확보를 제언했다. 다음으로는 21명의 전문가들이 정기적인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개최를, 8명의 전문가들이 인권 교육 및 캠페인 공동개최를, 6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또 다른 6명의 전문가가 법제 연구 등을 통한 정책 대안 개발 지원을 제언했다. 기타의견으로 인권·시민단체를 통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도 등이 있었다.

-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은 다음과 같았다. 23명의 전문가는 인권·시민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했고, 둘째로 15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와의 선별적 협력을, 셋째로 9명의 전문가가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을 제언했다. 기타의견으로는 △국가와 인권·시민단체 연결자 역할 담당 등의 의견이 있었다.

제6절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의 국가인권위원회 통합 방안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차별시정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각의 업무별로 통합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였다.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차별시정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그 사유, 부정적인 견해와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 통합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두 업무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통합되어야 하는 공통적인 이유로 첫째, 14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적 차원의 접근 필요성을 꼽았고, 둘째, 6명의 전문가들이 업무 일원화를 통한 사안 효율성 증대를, 셋째, 6명의 전문가들이 행정비용의 간소화를, 넷째, 2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의식 환기 및 홍보효과를, 다섯째, 1명의 전문가가 접근거리의 단축을 꼽았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업무만 통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는 4명의 전문가들이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 침해에 대한 감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반면, 차별시정업무만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는 25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차별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 통합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두 업무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적인 이유로 첫째, 32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둘째, 21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및 업무 처리 역량 부족을, 셋째, 13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비대화를 지적하였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9명의 전문가들이 관련 부처의 축적된 노하우 손실 및 기술 인프라 부족을, 둘째, 5명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보호업무 성격과 국가인권위원회 성격의 불일치를, 셋째, 2명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 공존이 있음을 말하였다.

반면, 차별시정업무 통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는 첫째, 5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분야 전문성 부족을, 둘째, 한 전문가가 차별시정업무 독점화로 인한 견제와 균형관계 소멸을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할 것을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의 기능과 역할, 둘째, 운용적 측면의 기능과 역할, 셋째, 관계적 측면의 기능과 역할이 그것이다.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각 측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도적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기구와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첫째, 33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의 확대를, 둘째, 31명의 전문가들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확충을, 셋째, 18명의 전문가들이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기구화를, 넷째, 12명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률 개정 및 차별시정정책의 제도화를, 다섯째, 11명의 전문가들이 통합을 위한 구체적 제도 및 기준 마련을 언급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지방사무소 설치를 제안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것을 제안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로 운용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15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 및 권리구제를 지적했고, 둘째, 12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사례조사를, 셋째, 12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유형정리 및 개선책 제시를, 넷째, 6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보호 및 차별 예방 교육을, 다섯째, 5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유출방지 업무를, 여섯째, 3명의 전문가가 차별시정업무의 범위 확대를, 일곱째, 3명의 전문가가 발 빠른 대응, 개방적 자세, 홍보강화를 언급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개별사건 매몰이 아닌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 지향 △사인(私人)간의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관한 공정한 판단기준 견지 △침해사례 구제만으로 제한된 소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관계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개인정보 보호기구와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7명의 전문가가 국가기관에 대한 내부조정자 및 감시자 역할을 언급했고, 둘째, 5명의 전문가가 관련부처와의 협의 조정의 역할을 지적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인권 총괄기구로서의 기관업무 통합 △인권·시민단체와 국가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지적하였다.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정량보고서(Ⅱ)

2005. 6

국가인권위원회
(주) 한국리서치

목 차

I. 개요 및 요약

제1장 조사개요	1
제1절 조사 목적	1
제2절 조사의 기본방향	3
1. 주요 조사 내용	3
2. 조사체계	4
제3절 일반인 표본 설계	5
1. 표본추출방법의 개요	5
2. 표본틀	5
제4절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6
1. 자료수집방법	6
2. 조사대상자	6
3. 조사흐름	6
4. 자료검증	6
5. 자료처리	7
제5절 표본특성표	8
1. 일반인 조사의 표본특성표	8
2. 전문가 조사의 표본특성표	9
3.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의 표본특성표	10
제2장 조사결과 요약	11
제1절 인권에 대한 인식	11
1. 우리 사회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11
2.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15
제2절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및 경험	18
1.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및 경험비율	18
2. 기관별 심각성	21
3. 인권침해 경험 시 대응방안 및 만족도	22
제3절 차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24
1. 차별의 심각성 인식 및 경험비율	24
2. 기관별 유형별 심각성	27
3. 차별 경험 시 대응방안 및 만족도	31

제4절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34
1.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34
2.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36
3.	비정규직 문제 관련	38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39
5.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42
제5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44
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44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평가	46
제6절	인권교육의 실태	47
1.	인권교육의 경험	47
2.	인권교육의 필요성	48
제7절	청소년의 인권 실태	50
1.	청소년 인권 사안별 심각성	50
2.	청소년 인권 사안별 경험 여부	51

제1장 인권의식 관련 53

제1절	우리 사회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58
1.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심각성	58
2.	우리 사회 인권상황의 개선 정도	59
3.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중복응답)	61
4.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중복응답)	62
제2절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64
1.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64
2.	차별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의식	74

제2장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및 경험 85

제1절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 인식	91
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91
2.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93
3.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95
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97
5.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99
6.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101
7.	집회나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103
8.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105

제2절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구제수단	107
1.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	107
2.	효과적인 구제수단	109
제3절	직접적인 인권침해의 경험과 대응	110
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10
2.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113
3.	개인정보 유출	115
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17
5.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20
6.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23
제4절	간접적인 인권침해의 경험	126
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26
2.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127
3.	개인정보 유출	128
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29
5.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30
6.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31

제3장 차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132

제1절	차별 사안별 심각성 인식	140
1.	성별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40
2.	종교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42
3.	장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44
4.	나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46
5.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48
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50
7.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52
8.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54
9.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56
1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58
11.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60
12.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62
13.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64
14.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66
15.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68
16.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70

제2절	기관별 및 유형별 차별의 심각성과 구제수단	172
1.	기관별 차별의 심각성	172
2.	차별 유형별 심각성	173
3.	효과적인 구제수단	175
제3절	직접적인 차별의 경험과 대응	176
1.	성별로 인한 차별	176
2.	종교로 인한 차별	179
3.	장애로 인한 차별	182
4.	나이에 의한 차별	185
5.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188
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191
7.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194
8.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의 이유로 하는 차별	197
9.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199
1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202
11.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	205
12.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	207
13.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209
14.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211
15.	병력으로 인한 차별	213
16.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	216
제4절	간접적인 차별의 경험	219
1.	성별로 인한 차별	219
2.	종교로 인한 차별	221
3.	장애로 인한 차별	222
4.	나이에 의한 차별	223
5.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224
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225
7.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226
8.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	227
9.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228
1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230
11.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	231
12.	사상 및 정치성향으로 인한 차별	233
13.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234
14.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235
15.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236
16.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	237

제4장 인권현안 관련 238

제1절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246

1.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에 대한 인지도 246
2.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에 대한 입장 247
3. 국가보안법 개폐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도 249
4.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지도 251

제2절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253

1.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인지도 253
2.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254
3.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256

제3절 비정규직 문제 관련 258

1.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지도 259
2.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259

제4절 개인정보 보호 관련 262

1.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262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인지도 263
3.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경험 264
4.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 265
5.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 267

제5절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269

1. 학력이나 학벌 차별에 대한 인지도 269
2. 입사지원서 학력 미기재 방침의 학력 차별 해소 효과 평가 270
3.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한 입장 272
4.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에 대한 입장 273

제5장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275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278

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278
2.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인지 279
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 경로(중복응답) 281
4. 인권상담 전화 1331에 대한 인지도 283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평가 285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기여도 285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의 확대·축소 여부 287

제6장 인권교육의 실태 289

제1절 인권교육의 경험 292

- 1. 인권교육 경험 여부 292
- 2. 인권교육의 내용(중복응답) 294
- 3. 인권교육의 주체 296

제2절 인권교육의 필요성 298

- 1. 주요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298
- 2.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 299

제7장 청소년의 인권 실태 301

제1절 청소년 인권 사안별 심각성 인식 304

- 1. 청소년 인권 사안별 심각성 인식 비교 304
- 2. 동료들에 의한 집단 따돌림 306
- 3.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307
- 4. 장애로 인한 차별 308
- 5.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 309
- 6.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310
- 7. 외모로 인한 차별 311
- 8. 단체 기합 312
- 9. 성별로 인한 차별 313
- 10.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 314
- 11. 선생님에 의한 체벌 315
- 12.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 316
- 13.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 317
- 14. 부모님에 의한 체벌 319

제2절 청소년 인권 사안별 경험 여부 320

- 1. 청소년 인권 사안별 경험 여부 320

표 목 차

<표 1-1> 주요 조사 내용	3
<표 1-2> 조사 체계	4
<표 1-3> 일반인 조사 표본특성표	8
<표 1-4> 전문가 조사 표본특성표	9
<표 1-5>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 표본특성표	10
<표 2-1>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중복응답)	13
<표 2-2>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일반인과 전문가/인권·시민단체 비교	14
<표 2-3>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16
<표 2-4> 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17
<표 2-5>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	18
<표 2-6>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비율	19
<표 2-7>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	21
<표 2-8> 인권침해 경험 시 대응방안과 만족도	22
<표 2-9> 인권침해 경험 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23
<표 2-10> 차별 사안별 심각성	24
<표 2-11> 차별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비율	25
<표 2-12> 기관별 심각성-차별 경험자	27
<표 2-13> 기관별 심각성-전문가/인권·시민단체 관계자	28
<표 2-14> 차별 유형별 심각성-차별 경험자	29
<표 2-15> 차별 유형별 심각성-전문가 및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30
<표 2-16> 차별 경험 시 대응방안과 만족도	32
<표 2-17> 차별 경험 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33
<표 2-18>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에 대한 입장	34
<표 2-19>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37
<표 2-20>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38
<표 2-21>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39
<표 2-2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경험	40
<표 2-23>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인지	44
<표 2-24> 국가인권위원회 인지 경로-중복응답	45
<표 2-14>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기여도	46
<표 2-15>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확대·축소 여부	46
<표 2-25> 인권교육의 내용-중복응답	47

<표 2-26> 인권교육의 주체	48
<표 2-27> 인권교육의 필요성	48
<표 2-28>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	49
<표 2-29> 청소년 인권문제 사안별 심각성	50
<표 2-30> 청소년 인권문제 사안별 경험비율	51
<표3-1>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심각성(일반인)	59
<표3-2> 우리 사회 인권상황의 개선정도(일반인)	60
<표3-3>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중복응답)	61
<표3-4>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중복응답)	63
<표3-5>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65
<표3-6> 교도소 수용자의 기본 인권 보장에 대한 의식(일반인)	66
<표3-7>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에 대한 의식(일반인)	67
<표3-8> 종교재단 학교에서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에 대한 의식(일반인) ..	68
<표3-9>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소지품 검사의 부당성에 대한 의식(일반인)	69
<표3-10>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식(일반인)	70
<표3-11> 집회나 시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의식(일반인)	71
<표3-12> 학교에서 교육목적에서의 체벌 허용에 대한 의식(일반인)	72
<표3-13>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한 의식(일반인)	73
<표3-14> 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75
<표3-15>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식(일반인) ·	76
<표3-16>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를 위한 세금, 요금인상에 대한 의식(일반인) ·	77
<표3-17>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여에 대한 의식(일반인) ·	78
<표3-18> 출신학교의 차이 인정에 대한 의식(일반인)	79
<표3-19>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대우에 대한 의식(일반인)	80
<표3-20>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부여에 대한 의식(일반인) ..	81
<표3-21> 민간기업에서의 직원 채용 시 나이 제한의 부당성에 대한 의식(일반인)	82
<표3-22>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식(일반인)	83
<표3-23>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용인에 대한 인식(일반인)	84
<표4-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일반인)	92
<표4-2>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일반인)	94
<표4-3>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일반인)	96
<표4-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일반인)	98
<표4-5>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일반인)	100
<표4-6>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일반인)	102

<표4-7> 집회나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일반인)	104
<표4-8>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일반인)	106
<표4-9>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비교(일반인,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	108
<표4-10>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경험	111
<표4-11>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112
<표4-12> 인권침해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12
<표4-13>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의 경험	113
<표4-14>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114
<표4-15> 개인정보 유출의 경험	115
<표4-16>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116
<표4-17> 인권침해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16
<표4-18>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경험	118
<표4-19>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119
<표4-20>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경험	121
<표4-21>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121
<표4-22> 인권침해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22
<표4-23>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경험	124
<표4-24>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124
<표4-25> 인권침해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25
<표4-26>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간접경험 여부	126
<표4-27>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의 간접경험 여부	127
<표4-28> 개인정보 유출의 간접경험 여부	128
<표4-29>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간접경험 여부	129
<표4-30>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간접경험 여부	130
<표4-31>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간접경험 여부	131
<표5-1> 성별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141
<표5-2> 종교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143
<표5-3> 장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145
<표5-4> 나이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147
<표5-5>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149
<표5-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151
<표5-7>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153
<표5-8>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	155
<표5-9>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157
<표5-1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159

<표5-11>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161
<표5-12>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163
<표5-13>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165
<표5-14>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167
<표5-15> 병력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169
<표5-16>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171
<표5-17> 기관별 차별의 심각성 인식 비교(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173
<표5-18> 유형별 차별의 심각성 인식 비교(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174
<표5-19> 성별로 인한 차별의 경험	177
<표5-20>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178
<표5-21>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78
<표5-22> 종교로 인한 차별의 경험	180
<표5-23>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181
<표5-24>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81
<표5-25> 장애로 인한 차별의 경험	183
<표5-26>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184
<표5-27>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84
<표5-28> 나이로 인한 차별의 경험	186
<표5-29>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187
<표5-30>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87
<표5-31>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의 경험	189
<표5-32>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190
<표5-33>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90
<표5-34>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경험	192
<표5-35>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193
<표5-36>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93
<표5-37>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의 경험	195
<표5-38>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196
<표5-39>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96
<표5-40>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의 이유로 하는 차별의 경험	197
<표5-41>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98
<표5-42>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의 경험	200
<표5-43>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201
<표5-44>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201
<표5-45>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경험	203
<표5-46>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204

<표5-47>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204
<표5-48>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경험	205
<표5-49>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의 경험	207
<표5-50>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208
<표5-51>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208
<표5-52>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경험	209
<표5-53>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210
<표5-54>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210
<표5-55>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의 경험	211
<표5-56>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212
<표5-57> 병력으로 인한 차별의 경험	214
<표5-58>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215
<표5-59>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215
<표5-60>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의 경험	217
<표5-61>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217
<표5-62>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218
<표5-63> 성별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220
<표5-64> 종교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221
<표5-65> 장애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222
<표5-66> 나이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223
<표5-67>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224
<표5-68>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225
<표5-69>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226
<표5-70>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	227
<표5-71>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229
<표5-72>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230
<표5-73>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232
<표5-74> 사상 및 정치성향으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233
<표5-75>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234
<표5-76>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235
<표5-77> 병력으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236
<표5-78>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237
<표6-1>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에 대한 인지도	246
<표6-2>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에 대한 입장	247
<표6-3>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에 대한 입장	248

<표6-4> 국가보안법 개폐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도	250
<표6-5>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지도	252
<표6-6>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인지도	253
<표6-7>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일반인)	255
<표6-8>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256
<표6-9>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일반인)	257
<표6-10>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지도	258
<표6-11>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260
<표6-12>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일반인)	261
<표6-13>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262
<표6-1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인지도	263
<표6-15>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경험	264
<표6-16>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일반인)	266
<표6-17>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일반인)	268
<표6-18> 학력이나 학벌 차별에 대한 인지도	269
<표6-19> 입사지원서 학력 미기재 방침의 학력 차별 해소 효과 평가(일반인) ...	271
<표6-20>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에 대한 입장(일반인)	274
<표7-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278
<표7-2>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인지	279
<표7-3>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인지(일반인)	280
<표7-4>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 경로(중복응답)	282
<표7-5>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 경로(중복응답)	282
<표7-6> 인권상담 전화 1331에 대한 인지도(일반인)	284
<표7-7>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기여도(일반인)	286
<표7-8>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확대·축소 여부(일반인)	288
<표8-1> 인권교육 경험 여부	293
<표8-2> 인권교육의 내용(중복응답)	295
<표8-3> 인권교육의 주체	297
<표8-4> 교육과정별 인권교육의 필요성	298
<표8-5>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일반인,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300
<표9-1> 청소년 인권 사안별 심각성(일반인과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비교)	305

<표9-2> 동료들에 의한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일반인)	306
<표9-3>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의 심각성(일반인)	307
<표9-4> 장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308
<표9-5>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309
<표9-6>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310
<표9-7> 외모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311
<표9-8> 단체 기합의 심각성(일반인)	312
<표9-9> 성별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313
<표9-10>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의 심각성(일반인)	314
<표9-11> 선생님에 의한 처벌의 심각성(일반인)	315
<표9-12>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의 심각성(일반인)	316
<표9-13>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318
<표9-14> 부모님에 의한 처벌의 심각성(일반인)	319
<표9-15> 청소년 인권 사안별 경험 여부	321

그림 목 차

<그림 2-1>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심각성	11
<그림 2-2> 우리 사회 인권상황의 개선 정도	12
<그림 2-3>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비율 비교-일반인	20
<그림 2-4> 차별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비율 비교-일반인	26
<그림 2-5> 국가보안법 개폐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도	35
<그림 2-6>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지도	35
<그림 2-7>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36
<그림 2-8>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	40
<그림 2-9>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	41
<그림 2-10> 입학지원서 학력 미기재 방침의 학력 차별 해소 효과 평가	42
<그림 2-11>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한 입장	43
<그림 2-12>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에 대한 입장	43
<그림 2-13> 인권상담 전화 1331에 대한 인지도	45
<그림 2-14>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기여도	46
<그림 2-15>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확대·축소 여부	46
<그림 2-16> 청소년 인권문제 심각성과 경험비율 비교-일반인	52
<그림3-1>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심각성	58
<그림3-2> 우리 사회 인권상황의 개선정도	60
<그림4-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91
<그림4-2>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93
<그림4-3>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95
<그림4-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97
<그림4-5>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99
<그림4-6>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101
<그림4-7> 집회나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103
<그림4-8>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105
<그림4-9> 효과적인 구제수단(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109
<그림5-1> 성별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40
<그림5-2> 종교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42
<그림5-3> 장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44

<그림5-4> 나이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46
<그림5-5>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48
<그림5-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50
<그림5-7>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52
<그림5-8>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54
<그림5-9>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56
<그림5-1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58
<그림5-11>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60
<그림5-12>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62
<그림5-13>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64
<그림5-14>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66
<그림5-15> 병력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68
<그림5-16>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170
<그림5-17> 효과적인 구제수단(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175
<그림6-1> 국가보안법 개폐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도	249
<그림6-2>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지도	251
<그림6-3>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254
<그림6-4>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	265
<그림6-5>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	267
<그림6-6> 입사지원서 학력 미기재 방침의 학력 차별 해소 효과 평가	270
<그림6-7>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한 입장	272
<그림6-8>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에 대한 입장	273
<그림7-1> 인권상담 전화 1331에 대한 인지도	283
<그림7-2>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기여도	285
<그림7-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확대·축소 여부	287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 목적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민주적·반인권적 문화의 청산과 인간다운 삶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들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적, 일시적인 활동에 그침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인권상황 개선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에 대한 기초 자료가 필수요소이다.

우리 사회 인권상황의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 국민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의 인권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명확히 알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우선하는 선결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국민 및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를 기획하였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일반국민들의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한 일반적인 의식수준 및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파악
- 인권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권 현안 및 인권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심층적으로 파악

-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및 인권문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집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 조사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수준을 파악하고, 인권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기초 자료로 활용
- 기존의 각종 실태조사와 실증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
- 우리나라 인권수준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인권관련 인식과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향상시킬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일반국민과 인권관련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인식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원년 자료로 활용

제2절 조사의 기본방향

1. 주요 조사 내용

〈표 1-1〉 주요 조사 내용

조사 내용	일반인	전문가/인권· 시민단체 관계자
○ 인권 의식 관련 - 우리 사회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 ○	○ ○
○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 인식 -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구제수단 - 직접적인 인권침해의 경험과 대응 - 간접적인 인권침해의 경험	○ ○ ○	○ ○
○ 차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차별 사안별 심각성 인식 - 기관별 및 유형별 차별의 심각성과 구제수단 - 직접적인 차별의 경험과 대응 - 간접적인 차별의 경험	○ ○ ○	○ ○
○ 인권현안 관련 -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 비정규직 문제 관련 - 개인정보 보호 관련 -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 ○ ○ ○ ○	○ ○ ○ ○ ○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평가	○ ○	○ ○
○ 인권교육의 실태 - 인권교육의 경험 - 인권교육의 필요성	○ ○	○
○ 청소년의 인권 실태 - 청소년 인권 사안별 심각성 - 청소년 인권 사안별 경험 여부	○ ○	○

2. 조사체계

〈표 1-2〉 조사 체계

조사 체계	일반인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대상	전국의 15세 이상 성인남녀	인권관련 연구자 및 활동가	전국 주요 인권· 시민단체 상근 간부 및 대표
유효 응답자수	1,263명	90명	101명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	-	-
조사기간	2005. 1. 24 - 2. 28	2005. 2. 2 - 3. 11	2005. 2. 2 - 3. 11
조사방법	타계식 대인면접조사	타계식 대인면접조사	타계식 대인면접조사
실사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제3절 일반인 표본 설계

1. 표본추출방법의 개요

본 조사에서는 전국을 16개의 층(7개 특·광역시와 9개 도)으로 층화하여 계통추출하였다.

2. 표본틀

통계청에서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자료를 바탕으로 섬조사구, 집단시설조사구 등을 제외한 일반 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만으로 구성된 총 24,998개의 조사구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통계청이 관리하고 있는 24,998개의 조사구 리스트 중에서 조사시점 현재 통계청에서 이용 중인 조사구를 제외한 23,159개의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틀로 하였으며, 이 중에서 전체 120개의 조사구를 추출하여 조사구별 10명씩을 조사하였다.

제4절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1. 자료수집방법

본 조사는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응답내용을 기입하는 타계식 대인면접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조사대상자

△일반인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 내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전문가 조사는 사전에 확보된 전문가 명단의 해당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는 해당 인권·시민단체에서 상근하는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3. 조사흐름

조사 과정은, 전문 조사원의 실사 → 16개 시도의 실사감독원(Supervisor)의 관리 및 통제 → 조사표 집계 → 검사 요원들에 의한 에디팅(Editing) → 재조사 및 조사표 보완 → 최종 자료검증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4. 자료검증

- 실사감독원에 의한 내부 검증
 - Editing 지침에 따라 일관성 및 논리 검사(Logical check)
 - 연관 항목간의 상관성 검사 및 변수간의 함수관계를 통한 점검
- 보완조사 진행
 - 문제가 발생한 조사표에 대하여 보완조사 실시
 - 해당 조사대상자의 조사내용 전면 재확인

5. 자료처리

자료검증과정과 전화보완조사를 거쳐 최종분석 자료로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Coding) 과정을 거쳐 전산입력 되었으며, 입력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통계 패키지 프로그램)를 통해 집계하였다.

제5절 표본특성표

1. 일반인 조사의 표본특성표

〈표 1-3〉 일반인 조사 표본특성표

	응답자 수 (명)	구성비 (%)		응답자 수 (명)	구성비 (%)
전 체	1263	100.0	전 체	1263	100.0
성별			지역		
남자	626	49.6	서울	273	21.6
여자	637	50.4	부산	99	7.8
연령			대구	66	5.2
15-19세	103	8.2	인천	66	5.2
20대	260	20.6	광주	35	2.8
30대	290	23.0	대전	37	2.9
40대	264	20.9	울산	27	2.1
50대이상	346	27.4	경기	258	20.4
학력			강원	40	3.2
중학생	32	2.5	충북	39	3.1
고등학생	58	4.6	충남	50	4.0
대학생	113	8.9	전북	51	4.0
중졸이하	189	15.0	전남	54	4.3
고졸	503	39.8	경북	72	5.7
대졸 이상	367	29.1	경남	81	6.4
직업			제주	14	1.1
농/축/수산/광업	14	1.1	권역		
자영업	334	26.4	서울	273	21.6
판매/서비스직종사자	167	13.2	인천/경기	324	25.7
생산/기능/노무직	91	7.2	대전/충청	126	10.0
사무직	174	13.8	광주/전라	140	11.1
전문/관리/경영직	73	5.8	대구/경북	138	10.9
주부	163	12.9	부산/울산/경남	208	16.5
학생	189	15.0	강원/제주	54	4.3
무직/퇴직/기타	57	4.5			
소득					
100만원이하	82	6.5			
101-200만원	272	21.5			
201-300만원	388	30.7			
301-400만원	257	20.3			
401만원이상	156	12.4			
모름/무응답	108	8.6			

2. 전문가 조사의 표본특성표

〈표 1-4〉 전문가 조사 표본특성표

		응답자 수 (명)	구성비 (%)
전 체		90	100.0
성별	남자	79	87.8
	여자	11	12.2
연령	30대	11	12.2
	40대	56	62.2
	50대이상	23	25.6
직업	대학교수	54	60.0
	연구소 연구원	8	8.9
	시민단체 활동가	9	10.0
	변호사	10	11.1
	공무원	3	3.3
	의사	3	3.3
	기타	3	3.3
전문분야	시민적/정치적 권리	35	38.9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26	28.9
	차별 및 사회적 소수자	26	28.9
	기타	3	3.3
권역	서울	60	66.7
	인천/경기	4	4.4
	대전/충청	8	8.9
	광주/전라	6	6.7
	대구/경북	6	6.7
	부산/울산/경남	6	6.7

3.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의 표본특성표

〈표 1-5〉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 표본특성표

		응답자 수 (명)	구성비 (%)
전 체		101	100.0
성별	남자	58	57.4
	여자	43	42.6
연령	20대	18	17.8
	30대	61	60.4
	40대	16	15.8
	50대이상	6	5.9
권역	서울	74	73.3
	인천/경기	12	11.9
	대전/충청	2	2.0
	광주/전라	5	5.0
	대구/경북	2	2.0
	부산/울산/경남	6	5.9
회원수	100명이하	36	35.6
	101-300명	16	15.8
	301-1000명	19	18.8
	1001-10000명	13	12.9
	10000명이상	8	7.9
	모름/무응답	9	8.9
상근자수	2명이하	15	14.9
	3-5명	35	34.7
	6-10명	23	22.8
	11-20명	16	15.8
	20명이상	11	10.9
	모름/무응답	1	1.0

제2장 조사결과 요약

제1절 인권에 대한 인식

1. 우리 사회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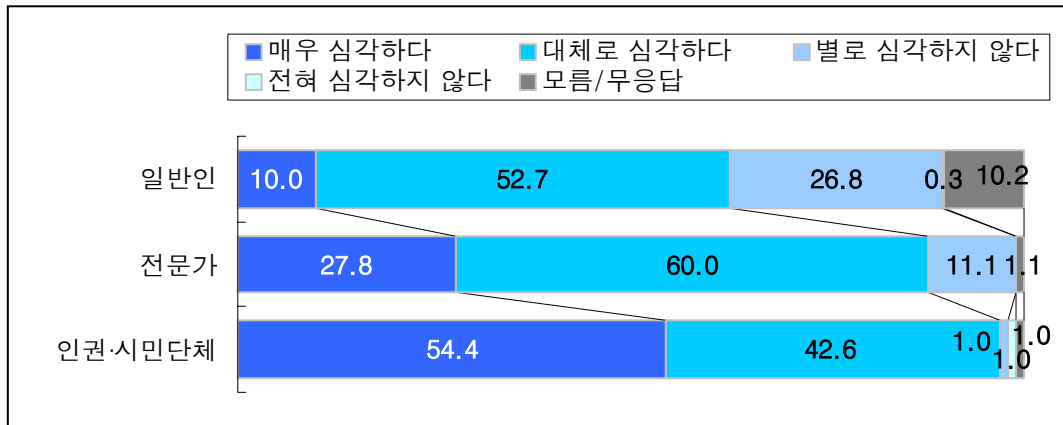
1) 전반적인 인권문제의 심각성 인식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62.7%가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7.2%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6명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87.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97.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우리 사회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심각성

(단위:%)



2) 최근 3년간 인권상황의 개선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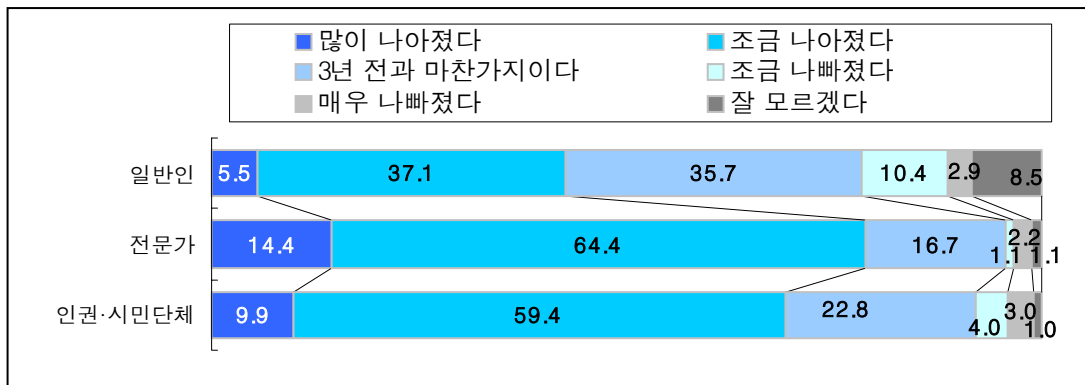
일반인 응답자 중 42.6%가 3년 전보다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이 나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13.2%만이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4명 이상이 인권상황

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7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69.3%가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인권상황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보다도 전문가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우리 사회 인권상황의 개선 정도

(단위:%)



3)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한 기관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에 대해, 일반인은 군대(43.4%), 구급시설(30.8%), 경찰(27.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전문가는 사회복지생활시설(54.4%)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구급시설(50.0%)과 군대(4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군대(58.4%), 구급시설(38.6%), 사회복지생활시설(31.7%)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과 방송 및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전문가나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중복응답)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군대	43.4	42.2	58.4
구급시설	30.8	50.0	38.6
경찰	27.9	18.9	26.7
사회복지생활시설	22.3	54.4	31.7
검찰	21.0	5.6	8.9
기업	11.8	10.0	12.9
방송 및 언론기관	11.7	7.8	3.0
국가정보원	9.2	4.4	5.9
학교	8.2	4.4	12.9
기타	7.2	1.1	0.0
무응답	1.0	0.0	0.0

4)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에 대해, 일반인은 장애인(42.3%), 외국인 노동자(24.9%),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22.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전문가의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44.6%)의 인권보호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애인(29.7%)과 비정규직 노동자(27.7%),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26.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42.2%), 구급시설 수용자(31.1%), 사회복지생활시설 수용자(26.7%)라고 응답하여 시설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일반인과 전문가/인권·시민단체 비교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장애인	42.3	29.7	20.0
외국인 노동자	24.9	44.6	42.2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22.1	26.7	22.2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수용자	17.3	10.9	26.7
구금시설의 수용자	17.0	12.9	31.1
수사 피의자	14.6	11.9	14.4
비정규직 노동자	14.4	27.7	16.7
노인	11.8	2.0	2.2
군인	9.3	5.9	11.1
여성	9.3	9.9	6.7
아동	6.4	8.9	2.2
청소년	6.3	2.0	1.1
동성애자	0.6	5.9	2.2
기타	2.1	1.0	0.0
무응답	0.2	0.0	0.0

2.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1)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인권침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보면,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보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 반대(82.3%)', '종교재단 학교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62.7%)' 등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역시,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보장(97.8%)',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 반대(95.6%)', '종교재단 학교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84.4%)' 등의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일반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교육목적에서의 학교 차별 반대(73.3%)'에 대한 응답이 높아 차이를 보인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도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보장(100.0%)',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 반대(98.0%)', '종교재단 학교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91.1%)' 등의 항목에 대한 동의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인이나 전문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사형제도 폐지(95.0%)', '집회나 시위의 자유 보장(93.1%)' 등에 대한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2-3〉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88.4	10.8	97.8	2.2	100.0	0.0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검문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16.5	82.3	4.4	95.6	2.0	98.0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예배 등 종교 의식을 학생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62.7	36.3	84.4	15.6	91.1	8.9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47.4	51.8	74.4	25.6	89.1	10.9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6	53.1	73.3	26.7	95.0	5.0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33.1	65.3	57.8	42.2	93.1	6.9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75.7	24.0	26.7	73.3	13.9	85.1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10.0	89.4	56.7	42.2	85.1	13.9

* 굵은 글씨의 숫자는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응답비율을 나타냄.

2) 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차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보면,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9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여(83.3%)’,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를 위한 세금이나 요금인상(78.2%)’ 등이 높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에 대해서는 97.1%가 동의하면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나 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78.2%만 동의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역시,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여’,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를 위한 세금이나 요금인상’ 등에 대해 동의한다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가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용인(72.2%)',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부여(97.0%)', '동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 보수와 대우 제공(96.0%)' 등에 대해 높은 의식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4〉 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97.1	2.6	100.0	0.0	100.0	0.0
장애인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납세, 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83.3	16.0	97.8	2.2	98.0	2.0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78.2	21.1	97.8	2.2	95.0	5.0
경쟁사회에서는 출신학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21.8	77.6	21.1	78.9	7.9	92.1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73.7	24.3	80.0	20.0	96.0	4.0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72.0	26.2	86.7	12.2	97.0	1.0
민간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65.1	33.4	78.9	21.1	87.1	12.9
여성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한 비율의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56.7	41.7	75.6	24.4	86.1	12.9
동성애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23.7	71.4	72.2	25.6	91.1	7.9

* 굵은 글씨의 숫자는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응답비율을 나타냄.

제2절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및 경험

1.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및 경험비율

1) 인권침해의 사안별 심각성 인식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과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에 대해 일반인 보다는 전문가가, 전문가보다는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과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모두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5〉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

(단위:%)

	일반인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83.8	98.9	99.0
사생활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73.1	95.6	94.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67.0	77.8	90.1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37.8	63.3	89.1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36.1	50.0	82.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34.2	65.6	89.1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29.5	38.9	82.2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26.2	34.4	76.2

2) 인권침해의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 비율

일반인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경험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간접경험비율은 심각성 인식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성 인식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심각성 인식과 직접경험, 간접경험이 모두 높은 인권침해 유형인 반면, ‘사생활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는 심각성 인식과 간접경험이 높으나 직접경험비율은 낮은 인권침해 유형에 해당한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직접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심각성 인식과 간접경험 비율은 낮은 수준을 보인다.

〈표 2-6〉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비율

(단위:%)

	심각성	경험 비율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개인정보 유출	83.8	3.3	19.7
사생활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73.1	0.5	14.8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67.0	2.3	15.0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37.8	1.6	14.0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34.2	2.3	12.9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29.5	1.7	12.6

3) 일반인의 심각성 인식과 경험의 교차 분석

일반인의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을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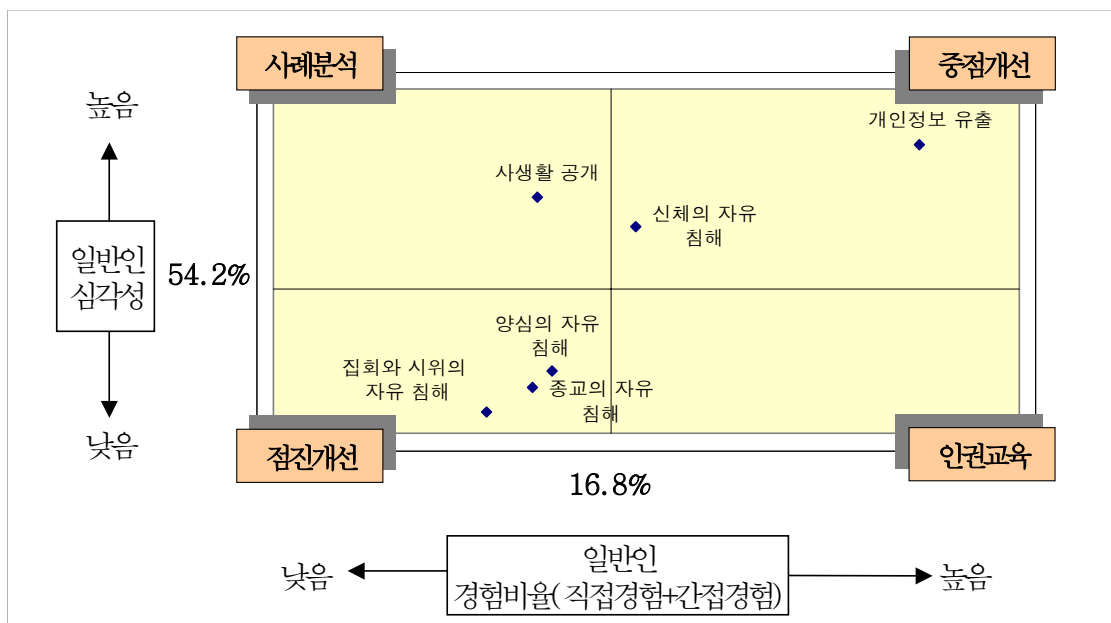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 비율이 모두 높아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중점개선영역’에는, △개인정보 유출 △신체의 자유 등의 인권침해가 해당하며,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 비율이 모두 낮아 즉각적인 대안보다는 장기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점진개선영역’에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전통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해당한다.

심각성 인식은 낮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높아 일상화된 인권침해로 보이는 ‘인권교육영역’에는, △성별에 대한 인권침해가 해당하며 인권교육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심각성 인식은 높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낮아 소수에게 해당하는 문제로 보이는 ‘사례분석영역’에는, △사생활 공개와 관련한 인권침해가 해당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그림 2-3〉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비율 비교-일반인



* 일반인의 경험비율은 직접경험비율과 간접경험비율을 합한 값임.

2. 기관별 심각성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일반인의 경우는 군대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7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찰(72.8%), 검찰(71.8%), 국가정보원(7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송 등 언론기관(23.9%), 기업체(37.7%)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의 경우는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1.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찰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68.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였으나, 방송 등 언론기관(50.0%), 기업체(52.2%)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을 보여 일반인 응답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도 군대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6.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일반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4.1%로 높고, 경찰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1.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일반인보다는 전문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7〉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군대	74.2	87.8	96.0
경찰	72.8	68.9	81.2
검찰	71.8	82.2	92.1
국가정보원	70.2	87.8	91.1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69.5	91.1	94.1
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생활시설	55.5	64.4	81.2
초중고등학교	46.7	68.9	75.2
기업체	37.7	52.2	78.2
방송 등 언론기관	23.9	50.0	83.2

3. 인권침해 경험 시 대응방안 및 만족도

1) 대응방안 및 만족도

인권침해 사안별 인권침해 경험의 대응방안을 단순 합산한 결과, 49%의 경험자가 구체적인 대응을 한 반면, 51.0%의 경험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2명 중 1명 정도는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가 18.2%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7.8%)',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5.2%)',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5.2%)',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5.2%)', '언론기관에 투고나 제보(1.3%)' 등의 대응이 있다.

대응방안별 만족수준에 대해, '언론기관에 투고나 제보'한 1명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높고,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 등도 1명씩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높지만 사례수가 지나치게 적어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표 2-8〉 인권침해 경험 시 대응방안과 만족도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대응 유형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33명(42.9%)	4명(12.1%)	29명(87.9%)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14명(18.2%)	1명(7.1%)	13명(92.9%)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10명(7.8%)	1명(10.0%)	9명(90.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6명(5.2%)	1명(16.7%)	5명(83.8%)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4명(5.2%)	1명(25.0%)	3명(75.0%)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4명(5.2%)	1명(25.0%)	3명(75.0%)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1명(1.3%)	1명(100.0%)	0명(0.0%)
	기타	5명(6.5%)	2명(40.0%)	3명(60.0%)
소계		77명	12명(15.6%)	65명(84.4%)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80명(51.0%)	-	-
합 계		157명	-	-

2)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인권침해를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51.0%의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인권침해 사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구제수단의 효용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9〉 인권침해 경험 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응답수 (명)	별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기타	모름/ 무응답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24)	16	6	2	1	1	0
개인정보 유출	(19)	9	5	4	4	1	0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4)	9	2	2	0	1	0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2)	9	1	2	0	0	0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0)	5	2	1	2	0	0
사생활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1)	1	0	0	0	0	0
전 체	80	49 (61.3%)	16 (20.0%)	11 (13.8%)	7 (8.8%)	3 (3.8%)	0 (0.0%)

제3절 차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1. 차별의 심각성 인식 및 경험비율

1) 차별 사안별 심각성 인식

차별 사안별 심각성과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해 일반인보다는 전문가가, 전문가보다는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과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장애로 인한 차별’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보다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차이를 보인다.

〈표 2-10〉 차별 사안별 심각성

(단위:%)

	일반인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79.0	94.4	100.0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75.6	90.0	99.0
장애로 인한 차별	71.7	94.4	100.0
나이에 의한 차별	68.6	82.2	93.1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	52.2	92.2	95.0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49.7	78.9	92.1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48.0	85.6	95.0
성별로 인한 차별	43.6	80.0	91.1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42.4	74.4	78.2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41.7	55.6	81.2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	39.8	66.7	87.1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37.2	72.2	87.1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	35.4	70.0	83.2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	29.2	67.8	86.1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	29.2	67.8	86.1
종교로 인한 차별	20.6	42.2	74.3

2) 차별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 비율

일반인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는, 경험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간접경험비율은 심각성 인식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성 인식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은 심각성 인식과 직접경험, 간접경험이 모두 높은 차별 유형인 반면, ‘장애로 인한 차별’은 심각성 인식과 간접경험은 높으나 직접경험비율은 낮은 차별 유형에 해당한다.

‘성별로 인한 차별’의 경우 직접경험과 간접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심각성 인식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11〉 차별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비율

(단위:%)

	심각성	경험 비율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79.0	5.4	38.5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75.6	5.0	36.7
장애로 인한 차별	71.7	2.1	29.8
나이로 인한 차별	68.6	7.1	39.1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	52.2	0.3	14.9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49.7	2.5	20.8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48.0	0.2	10.6
성별로 인한 차별	43.6	5.1	25.6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42.4	2.0	17.9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41.7	1.6	19.1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	39.8	0.6	14.8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37.2	1.4	14.5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	35.4	0.9	14.9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	29.2	0.5	11.2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	29.2	0.4	18.0
종교로 인한 차별	20.6	1.1	12.5

3) 일반인의 심각성 인식과 경험의 교차 분석

일반인의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을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 비율이 모두 높아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중점개선영역'에는, △비정규직 △학력/학벌 △장애 △나이 등의 차별이 해당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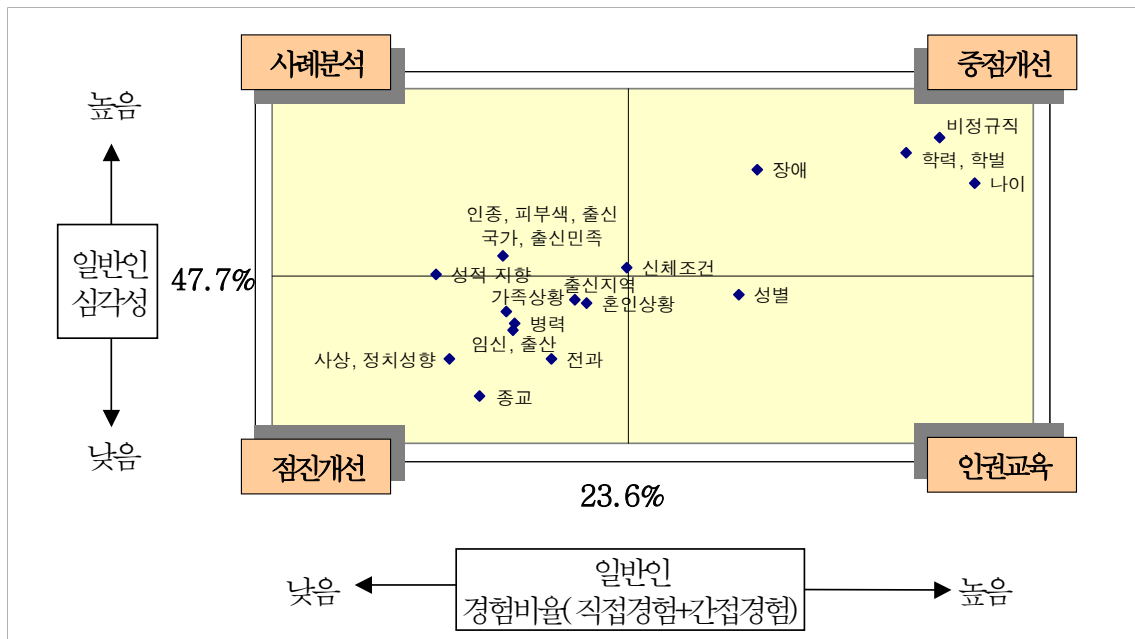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 비율이 모두 낮아 즉각적인 대안보다는 장기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점진개선영역'에는, △출신지역 △혼인상황 △가족상황 △병력 △임신 및 출산 △사상 및 정치성향 △전과 △종교 등의 차별이 해당한다.

심각성 인식은 낮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높아 일상화된 차별로 보이는 '인권교육영역'에는, △성별에 대한 차별이 해당하며 인권교육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심각성 인식은 높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낮아 소수자 문제로 보이는 '사례분석영역'에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이 해당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 성적 지향은 '점진개선영역'과 '사례분석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개별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차별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4> 차별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비율 비교-일반인



* 일반인의 경험비율은 직접경험 비율과 간접경험비율을 합한 값을 활용함.

2. 기관별 유형별 심각성

1) 기관별 심각성

차별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심각하게 차별을 경험한 기관을 묻는 질문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제외한 모든 차별에서 '기업체'라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행정기관'이라는 응답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나이에 의한 차별',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등은 기업으로부터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50% 이상의 높은 수준이다.

한편,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은 '병원이나 요양시설'로부터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종교로 인한 차별'의 경우는 '학교'로부터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은 '대중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다른 차별 사안과 차이를 보인다.

〈표 2-12〉 기관별 심각성-차별 경험자

(단위:%)

	응답수 (명)	기업체	행정기관	병원이나 요양시설	대중서비스 제공기관	학교	기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69	71.1	11.6	0.0	9.0	1.4	6.9
나이에 의한 차별	88	67.1	7.6	2.3	5.9	3.0	14.1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64	56.4	9.6	0.0	3.0	14.3	16.7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20	55.5	15.3	0.0	5.3	0.0	23.9
종교로 인한 차별	14	43.8	6.4	13.5	0.0	15.0	21.3
성별로 인한 차별	65	40.7	12.5	3.1	7.9	9.6	26.2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24	40.4	15.8	4.2	4.1	3.9	31.6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31	37.7	3.0	3.3	22.7	3.0	30.3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17	33.8	11.5	25.9	5.7	0.0	23.1
장애로 인한 차별	26	18.0	7.8	20.3	11.3	7.7	34.9

* 16가지 차별의 종류 중에서 직접경험자가 전체 응답자의 1%(12명)미만인 차별은 지나치게 사례 수가 적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한편,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차별문제가 가장 심각한 기관을 묻는 중복응답 질문에, '경찰', '군대', '검찰', '기업체' 등의 기관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차별 경험자들의 응답과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는 행정기관이나 학교라는 응답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서 차별 경험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13〉 기관별 심각성-전문가/인권·시민단체관계자

(단위:%)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경찰	76.7	17.8	5.6	89.1	4.0	6.9
군대	70.0	24.4	5.6	85.1	9.9	5.0
검찰	67.8	26.7	5.6	80.2	8.9	10.9
기업체	63.3	34.4	2.2	84.2	11.9	4.0
행정기관	48.9	45.6	5.6	71.3	19.8	8.9
종교단체	40.0	52.2	7.8	51.5	37.6	10.9
학교	38.9	58.9	2.2	79.2	17.8	3.0
대중서비스 제공기관	21.1	76.7	2.2	53.5	39.6	6.9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18.9	77.8	3.3	42.6	45.5	11.9

2) 차별 유형별 심각성

직접적인 차별 경험자를 대상으로 심각하게 경험한 차별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인한 차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

답이, '병력으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종교로 인한 차별'과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입학이나 교육내용과 관련한 차별'을 심각하게 경험했다는 응답이, '장애로 인한 차별'과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을, '병력으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행정기관 이용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4〉 차별 유형별 심각성-차별 경험자

(단위:%)

	응답수 (명)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입학이나 교육내용과 관련한 차별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	기타
나이에 의한 차별	88	71.3	9.4	2.2	7.8	1.2	8.1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64	45.3	19.9	0.0	10.2	1.6	23.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20	44.6	18.8	10.9	0.0	0	25.7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31	41.6	6.5	6.5	6.1	16.3	23.0
종교로 인한 차별	14	36.6	0.0	0.0	35.3	0.0	28.1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69	27.2	54.2	5.9	0.0	0	12.7
장애로 인한 차별	26	26.0	3.4	25.1	3.5	10.2	31.8
성별로 인한 차별	65	20.8	23.0	6.5	5.8	4.8	39.1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24	18.8	28.9	17.0	0.0	0	35.3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17	6.5	4.0	31.2	0.0	0	58.3

* 16가지 차별의 종류 중에서 직접경험자가 전체 응답자의 1%(12명)미만인 차별은 지나치게 사례 수가 적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한편,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도 중복으로 응답한 가장 심각한 차별 유형으로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과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별 경험자와 유사하지만,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15〉 차별 유형별 심각성-전문가 및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단위:%)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88.9	10.0	1.1	87.1	9.9	3.0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	86.7	12.2	1.1	91.1	6.9	2.0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	68.9	27.8	3.3	87.1	11.9	1.0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	52.2	46.7	1.1	80.2	16.8	3.0
입학이나 교육내용과 관련한 차별	35.6	63.3	1.1	61.4	29.7	8.9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차별	33.3	65.6	1.1	62.4	34.7	3.0
대중시설 이용과 관련한 차별	31.1	67.8	1.1	57.4	37.6	5.0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31.1	67.8	1.1	62.4	31.7	5.9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17.8	81.1	1.1	57.4	38.6	4.0

3. 차별 경험 시 대응방안 및 만족도

1) 대응방안 및 만족도

차별 사안별 차별 경험의 대응방안을 단순 합산한 결과 21.3%만이 구체적인 대응을 한 반면, 78.7%의 경험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이 5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가 20.5%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9.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5.1%)',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5.1%)',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3.8%)', '언론기관에 투고나 제보(2.6%)' 등의 대응이 있다.

대응방안별 만족수준에 대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4명 중 3명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26.2%)',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경험자의 대응이나 만족도와는 차이가 있다.

〈표 2-16〉 차별 경험 시 대응방안과 만족도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대응 유형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42명(53.8%)	11명(26.2%)	30명(71.4%)	1명(0.02%)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16명(20.5%)	3명(18.8%)	12명(75.0%)	1명(0.06%)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7명(9.0%)	1명(14.3%)	6명(85.7%)	0명(0.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4명(5.1%)	3명(75.0%)	0명(0.0%)	1명(25.0%)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4명(5.1%)	1명(25.0%)	2명(50.0%)	1명(25.0%)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3명(3.8%)	0명(0.0%)	3명(100.0%)	0명(0.0%)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2명(2.6%)	0명(0.0%)	1명(50.0%)	1명(50.0%)
	기타	17명(21.8%)	2명(11.8%)	15명(88.2%)	0명(0.0%)
	소계	95명	19명(24.4%)	54명(69.2%)	5명(6.4%)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351명(78.7%)	-	-	-
합 계		446명	-	-	-

2)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78.7%의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차별 사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과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구제수단의 효용성과 구제절차 및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표 2-17〉 차별 경험 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응답수 (명)	별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기타	모름/ 무응답
나이에 인한 차별	78	58	10	8	2	2	0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53	40	7	2	2	4	0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48	34	5	4	3	6	0
성별로 인한 차별	47	40	2	4	4	1	0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27	17	4	3	1	2	1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22	18	2	1	0	2	0
장애로 인한 차별	20	5	1	1	1	1	11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18	17	0	1	0	0	0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13	10	0	0	2	2	0
종교로 인한 차별	11	9	0	2	0	0	0
전 체	337	248 (73.6%)	31 (9.2%)	26 (7.7%)	15 (4.5%)	20 (5.9%)	12 (3.6%)

제4절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1.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1)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 인지도

일반인 1,263명 중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폐 의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6.7%,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43.3%로 나타났다.

2)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하여, 일반인은 33.1%가 일부 조항의 개정을 조건으로 한 유지를, 27.7%는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폐지를 선호하고 있다.

전문가는 47.8%가 조건 없는 완전 폐지를 선호하였으며, 인권·시민단체는 경우는 88.1%가 조건 없는 완전 폐지 입장을 나타내어 일반인이나 전문가와 차이를 보인다.

〈표 2-18〉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에 대한 입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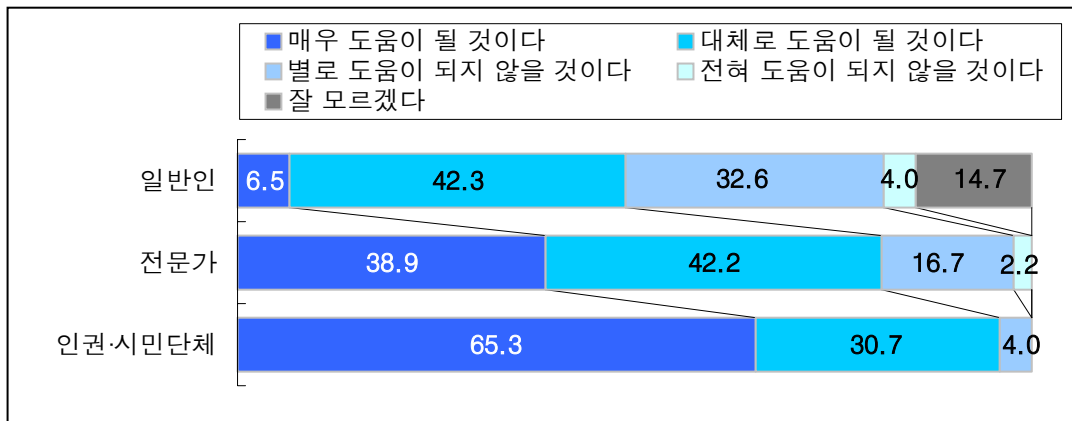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완전 폐지	7.9	47.8	88.1
폐지 및 대체입법	27.7	18.9	6.9
폐지 및 형법 대체	6.0	13.3	1.0
유지 및 일부 개정	33.1	17.8	4.0
현행 유지	8.5	1.1	0.0
잘 모르겠다	16.8	1.1	0.0

3) 국가보안법 개폐로 인한 인권상황 개선도 평가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48.8%, 전문가의 81.1%,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6.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일반인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2-5〉 국가보안법 개폐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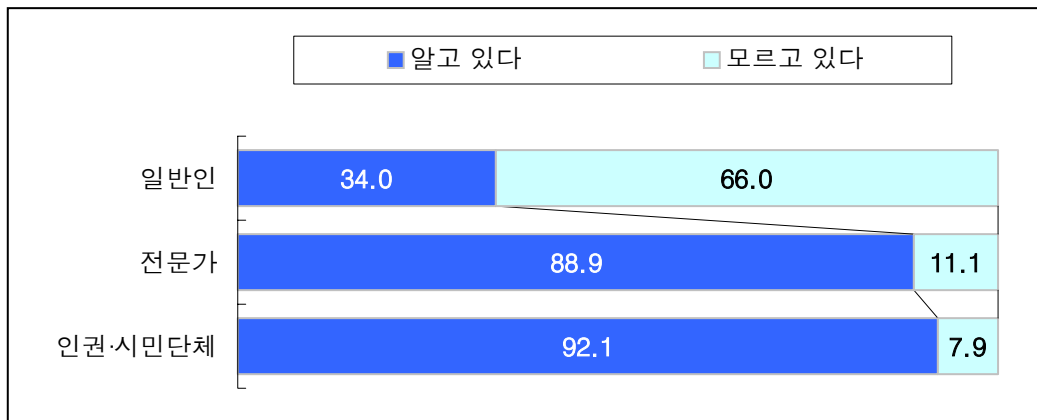


4)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실에 대해, 일반인의 34.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8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92.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6〉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지도

(단위:%)



2.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1)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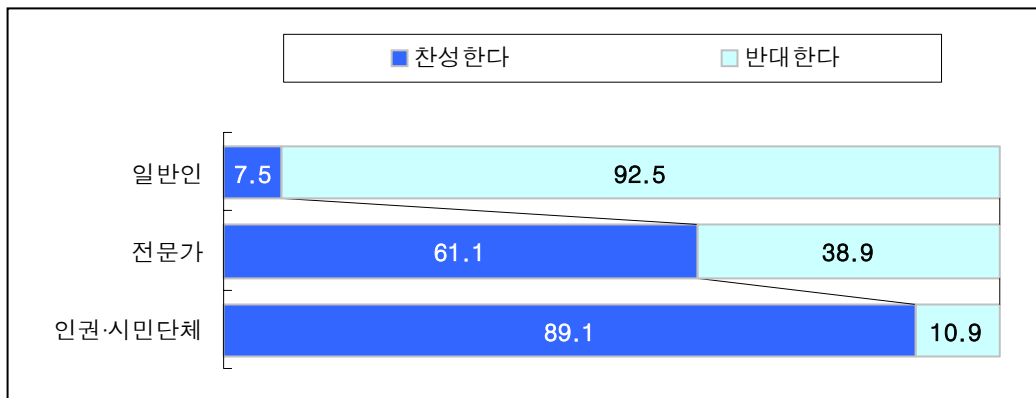
일반인 1,263명 중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3.9%,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6.1%로 나타났다.

2)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일반인은 7.5%만이 찬성하고 92.5%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가는 61.1%, 인권·시민단체는 89.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7>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단위:%)



3)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일반인 응답자 중 36.7%는 현재와 같이 범법자로 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9.5%는 사회봉사기관 등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문가는 63.3%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84.2%가 사회봉사기관 등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19〉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현재와 같이 범법자로 처벌	36.7	3.3	2.0
군복무대신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대체복무 허용	29.5	63.3	84.2
기초군사 훈련을 제외한 공익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근무 허용	15.5	13.3	8.9
비전투 병과에 배치	14.6	18.9	5.0
잘 모르겠다	3.7	1.1	0.0

3. 비정규직 문제 관련

1) 비정규직 문제 인지도

일반인 1,263명 중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4.0%,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6.0%로 나타났다.

2)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일반인 응답자 중 31.3%는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8.8%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5.0%는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역시,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 완화(38.9%)', '정규직과 동일노동 시 동일임금 지급(22.2%)',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20.0%)'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38.6%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4.8%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이나 전문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20〉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 완화	31.3	38.9	17.8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	28.8	20.0	18.8
동일노동 시 동일임금 지급	25.0	22.2	24.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8.7	18.9	38.6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	2.3	0.0	0.0
잘 모르겠다	3.8	0.0	0.0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1)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의 개인신상정보’, ‘신용관련정보 및 금융정보’, ‘가족 구성원의 신상내역 등 가족 관련 정보’ 등을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응답하였다.

〈표 2-21〉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신상정보	44.4	25.6	50.5
신용관련정보 및 금융정보	37.0	38.9	26.7
가족 구성원의 신상내역 등 가족 관련 정보	13.2	18.9	11.9
소유 부동산 내역 등 재산 관련 정보	2.6	4.4	2.0
개인의 학력이나 성적 등 교육관련 정보	2.1	1.1	3.0
본인의 진료기록 등 의료 관련 정보	0.6	11.1	5.9

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경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경험과 관련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우려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살 때’, ‘인터넷 동호회에 회원가입을 할 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경험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58.1	87.8	92.1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살 때	48.9	82.2	83.2
인터넷 동호회에 회원가입을 할 때	43.3	76.7	81.2
인터넷 बैं킹으로 거래를 할 때	38.9	71.1	68.3
공공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33.1	50.0	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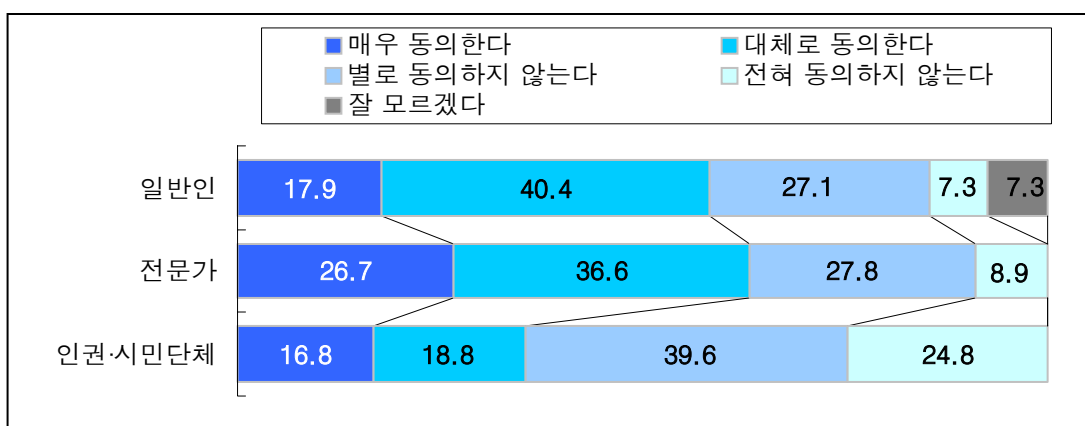
3)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일반인의 58.3%와 전문가의 63.3%가 동의하는 데 반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35.6%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과 전문가는 개인정보 유출보다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에 주목하는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8〉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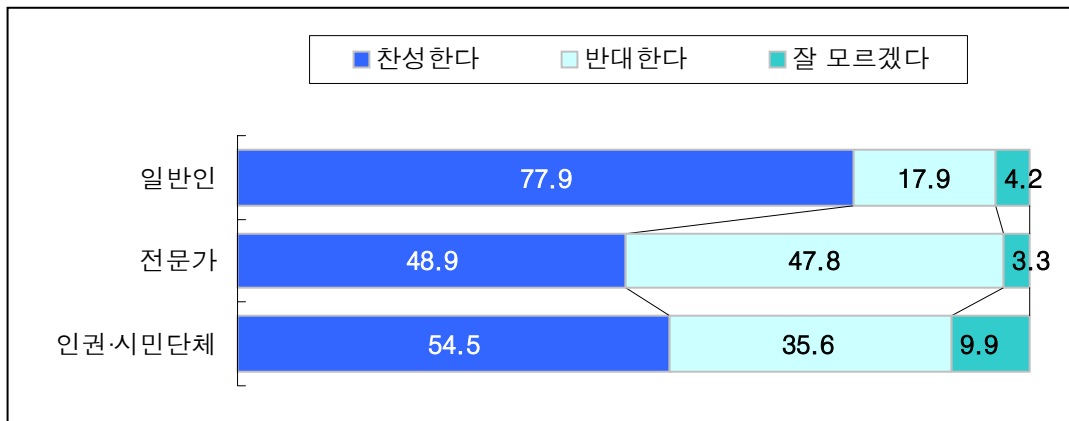


2)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일반인의 77.9%가 동의하는 반면, 전문가는 4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54.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2-9〉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

(단위:%)



5.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1) 학력·학벌 차별 문제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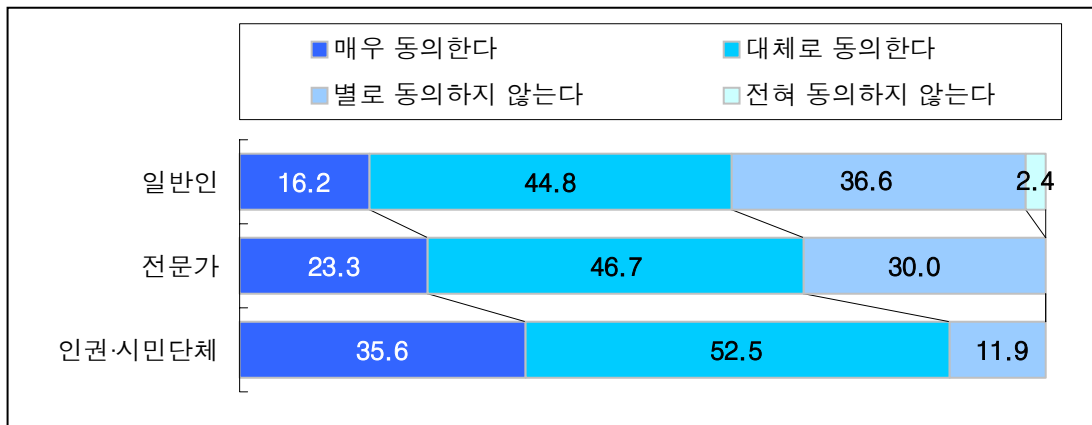
일반인 1,263명 중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7.6%,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2.4%로 나타났다.

2) 입학지원서 학력 미기재 방침의 학력차별 해소 효과 평가

입학지원서 학력 미기재 방침의 학력 차별 해소 효과에 대해, 일반인의 61.0%, 전문가의 70.0%,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8.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10〉 입학지원서 학력 미기재 방침의 학력 차별 해소 효과 평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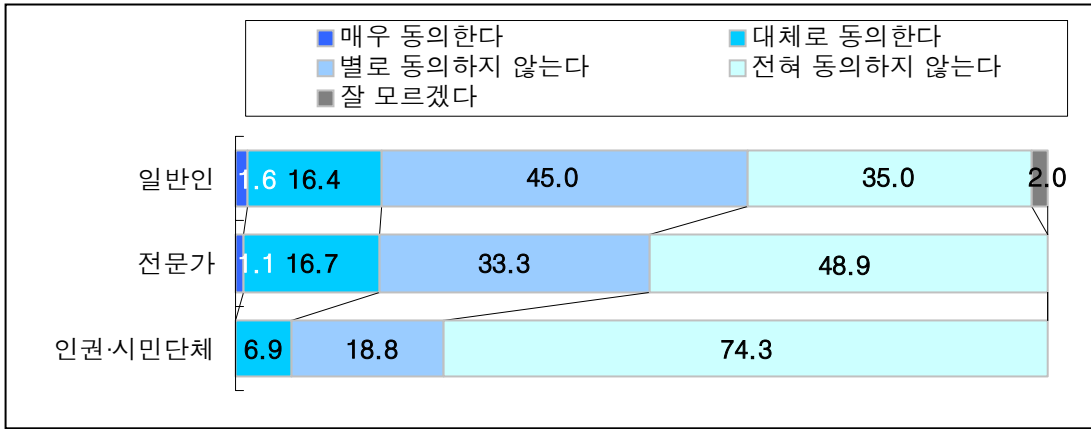


3)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한 입장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해, 일반인의 18.0%, 전문가의 17.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6.9%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11>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한 입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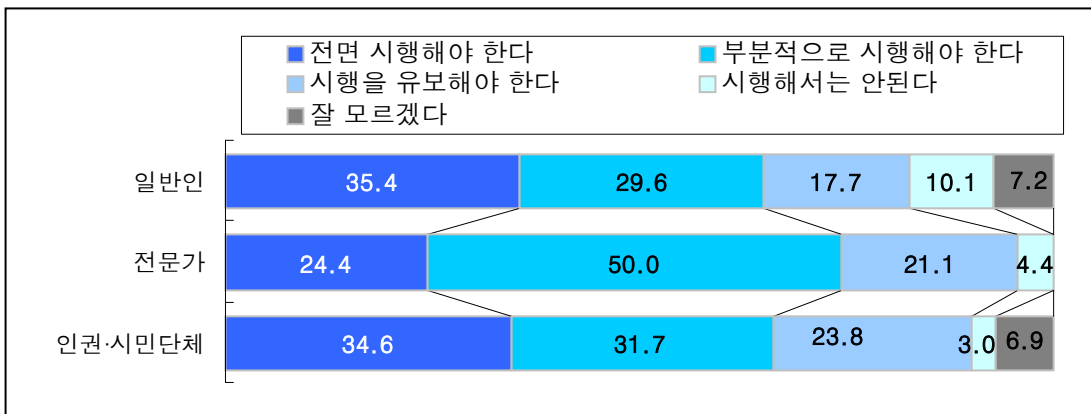


4)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에 대한 입장

지방대 출신 고용할당제에 대해 일반인의 65.0%, 전문가의 74.4%,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66.3%가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2>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에 대한 입장

(단위:%)



제5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일반인 1,263명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6.9%,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63.1%로 나타났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인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알고 있다는 466명의 일반인 중에서 24.3%, 전체 전문가의 6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60.4%가 독립된 국가기구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인의 35.5%, 전문가의 2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31.7%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23〉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인지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독립된 국가기구	24.3	68.9	60.4
대통령 직속기구	35.5	28.9	31.7
잘 모르겠다	16.8	1.1	4.0
민간기구	12.3	0.0	0.0
국무총리 직속기구	11.1	1.1	4.0

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경로

중복응답으로 질문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일반인은 'TV(78.3%), 신문/잡지(46.2%), 인터넷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중매체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지인 또는 주변사람’ 등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24〉 국가인권위원회 인지 경로-중복응답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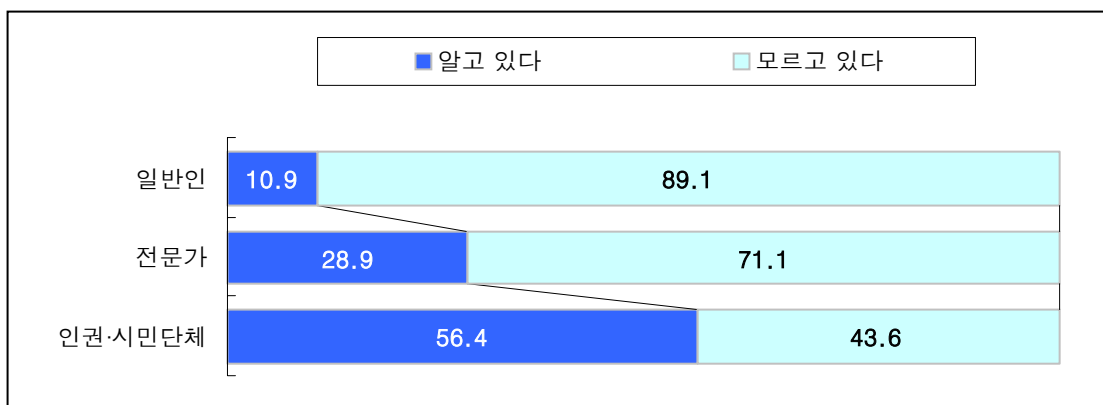
	일반인(466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TV	78.3	46.5	26.7
신문/잡지	46.2	60.0	31.7
인터넷	13.0	41.1	34.7
라디오	7.9	8.9	5.0
지인 또는 주변사람	3.6	27.8	21.8
기타	2.0	0.0	2.0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	1.9	28.9	44.6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1.5	28.9	36.6
모름/무응답	0.0	0.0	2.0

4) 인권상담 전화 1331 인지도

인권상담 전화 1331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466명의 일반인 중 10.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 역시 28.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56.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13〉 인권상담 전화 1331에 대한 인지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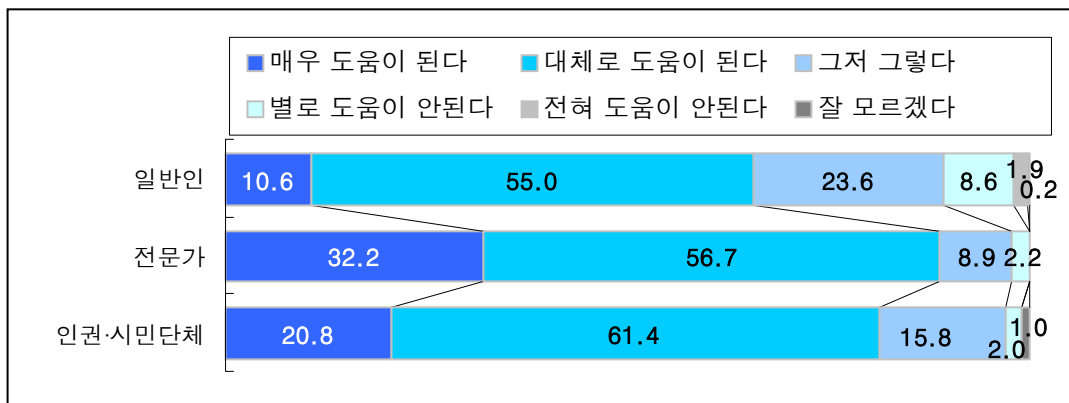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평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기여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65.6%, 전문가의 8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14〉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기여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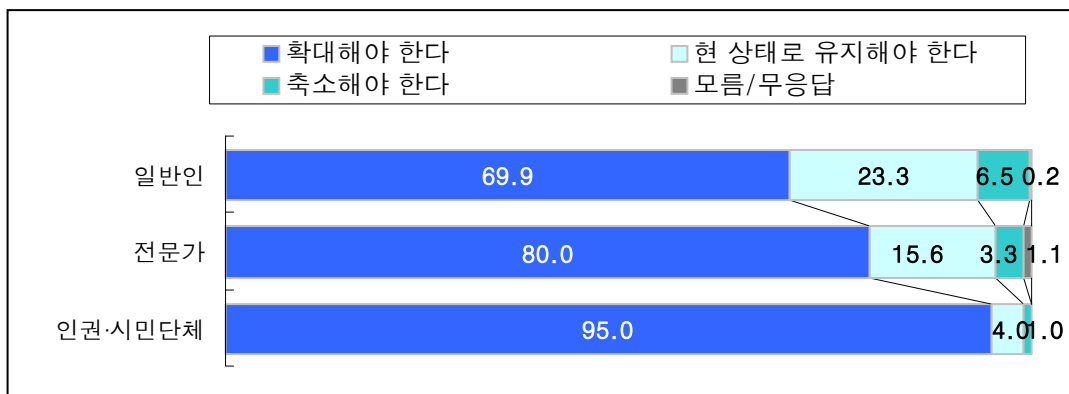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의 확대·축소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일반인의 69.9%와 전문가의 80.0%, 시민단체 관계자의 95.0%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림 2-15〉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확대·축소 여부

(단위:%)



제6절 인권교육의 실태

1. 인권교육의 경험

1) 인권교육의 경험 여부

일반인 1,263명 중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3%,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94.7%로 나타났다.

2)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67명은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해, 43.8%가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교육받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38.6%)', '자신이 속해 있는 곳과 관련된 인권 내용(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5〉 인권교육의 내용-중복응답

(단위:%)

	(응답수)	기본적 인권의 개념 과내용	사회적 약자의 인권 에 대 한 이 해	자 신 이 속 해 있 는 곳 과 관 련 된 인 권 내 용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 한 경 우 구 제 절 차 등 에 대 한 교 육	인권존중의 태도 및 인 권 옹 호 를 위 한 실 천 방 법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 현 안 및 국제 인권 동향 에 관 한 이 해	기 타	잘 모 르 겠 다	계
전 체	(67)	43.8	38.6	22.7	12.9	11.6	4.8	1.5	7.1	100.0

3) 인권교육의 주체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67명은 인권교육의 주체에 대해, 55.2%가 학교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30.1%)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권·시민단체의 행사(2.5%)나 정부기관의 교육프로그램(1.6%)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표 2-26〉 인권교육의 주체

(단위:%)

	(응답수)	학교	직장	시민단체의 행사	정부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기타	계
전 체	(67)	55.2	30.1	2.5	1.6	10.6	100.0

2. 인권교육의 필요성

1) 주요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주요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세 종류의 교육과정 모두에 대해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인권교육의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7〉 인권교육의 필요성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92.4	100.0	100.0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	91.8	98.9	99.0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원 교육	91.5	96.7	99.0

2)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

일반인은 사법관계자(16.0%), 경찰(14.0%),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11.7%), 사회적 약자(11.5%), 구급시설 공무원(10.5%)의 순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전문가는 구급시설 공무원(16.7%), 경찰(16.7%), 군인(11.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10.0%) 등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권·시민

단체 관계자는 사법관계자(17.8%), 경찰(13.9%), 교사(12.9%), 군인(9.9%), 중앙 및 지방공무원(9.9%) 등의 순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28〉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사법 관계자	16.0	8.9	17.8
경찰	14.0	16.7	13.9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11.7	7.8	5.0
사회적 약자	11.5	6.7	6.9
구급시설 공무원	10.5	16.7	5.0
중앙 및 지방 공무원	8.0	5.6	9.9
군인	8.0	11.1	9.9
학생	6.9	3.3	7.9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5.2	10.0	2.0
언론인	3.4	6.7	5.0
교사	1.8	4.4	12.9
전문직 종사자	1.7	1.1	2.0
기타	0.7	1.1	2.0
모름/무응답	0.6	0.0	0.0
계	100.0	100.0	100.0

제7절 청소년의 인권 실태

1. 청소년 인권 사안별 심각성

청소년의 인권 사안별 심각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반인보다는 전문가가, 전문가보다는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차별'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과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모두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외에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장애로 인한 차별',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의 경우,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을,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외에 '외모로 인한 차별', '교육활동 선택의 자유 제한'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2-29〉 청소년 인권문제 사안별 심각성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	72.5	91.1	96.0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63.6	86.7	87.1
학교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50.8	88.9	94.1
학교에서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	49.1	81.1	89.1
학교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41.3	80.0	86.1
학교에서 키나 몸무게, 얼굴생김새 등의 외모로 인한 차별	35.8	60.0	87.1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	30.3	57.8	72.3
학교에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23.6	50.0	77.2
정규교과목 이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	23.5	68.9	86.1
학교에서의 선생님에 의한 차별	20.2	58.9	78.2
학생회 등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	19.9	51.1	80.2
학교에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	17.7	56.7	81.2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차별	12.9	53.3	63.4

2. 청소년 인권 사안별 경험 여부

1) 청소년 인권문제 사안별 경험 비율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41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권사안별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학교에서의 선생님에 의한 차별'이 46.3%,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이 46.0%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차별(38.8%)'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인이나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은 11.6%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2-30〉 청소년 인권문제 사안별 경험비율

(단위:%)

	중고등 학생 및 학부모(419명)
학교에서의 선생님에 의한 차별	46.3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	46.0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차별	38.8
학교에서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	16.7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16.6
정규교과목 이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	15.4
학생회 등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	14.8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	11.6
학교에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10.0
학교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9.8
학교에서 키나 몸무게, 얼굴생김새 등의 외모로 인한 차별	9.5
학교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5.1
학교에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	4.4

2) 일반인의 심각성 인식과 경험의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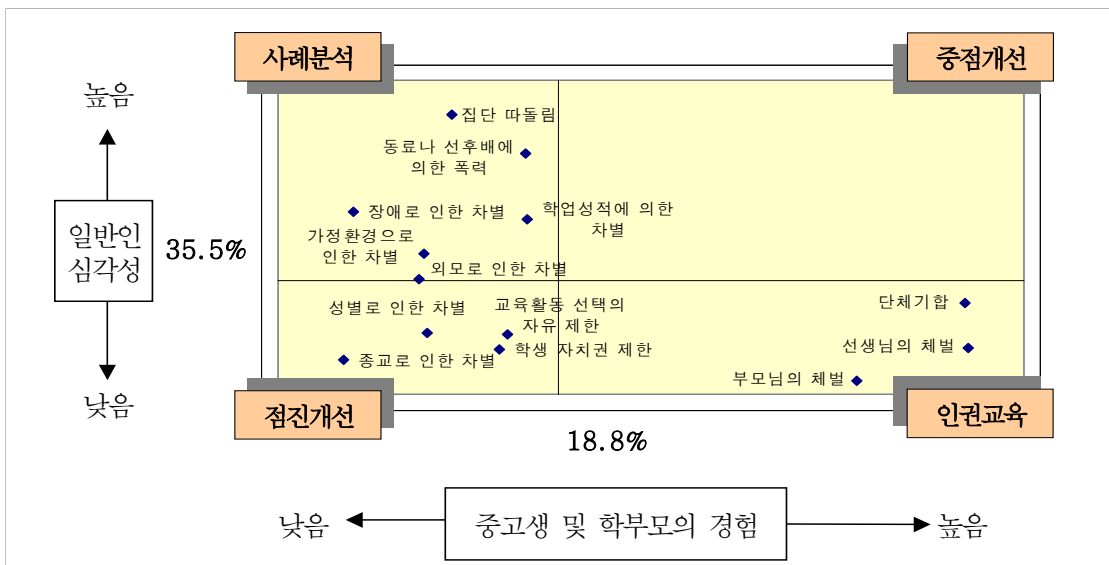
일반인의 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의 직접 경험을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심각성 인식은 높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낮아 소수에 해당하나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로 보이는 '사례분석영역'에는, △집단 따돌림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학업성적에 의한 차별 △장애로 인한 차별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외모로 인한 차별 등이 해당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연구 및 그에 따른 차별화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 비율이 모두 낮아 즉각적인 대안보다는 장기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점진개선영역'에는, △교육활동 선택의 자유 제한 △학생자치권 제한 △성별로 인한 차별 △종교로 인한 차별 등의 사안이 해당하며,

심각성 인식은 낮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높아 일상화된 인권침해로 보이는 '인권교육영역'에는, △단체기합 △선생님에 의한 체벌 △부모님에 의한 체벌 등이 해당하며 교육상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6〉 청소년 인권문제 심각성과 경험비율 비교-일반인



제1장 인권의식 관련

< 결과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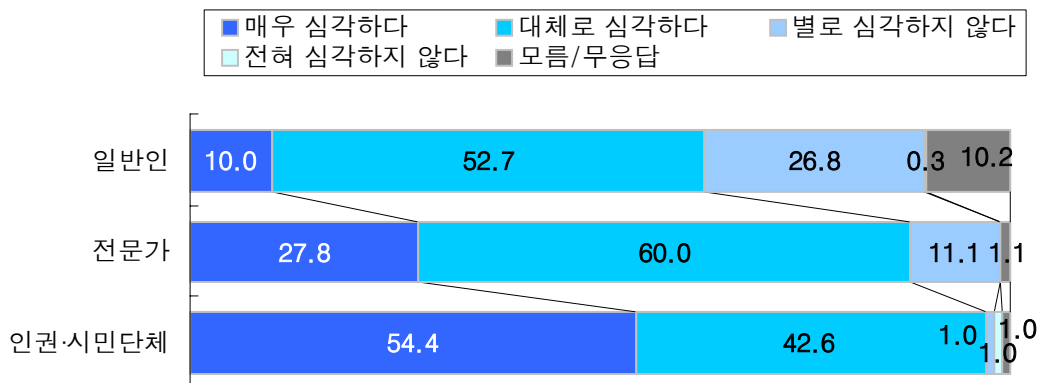
1. 우리사회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62.7%가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7.2%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6명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전문가는 87.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97.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우리 사회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심각성>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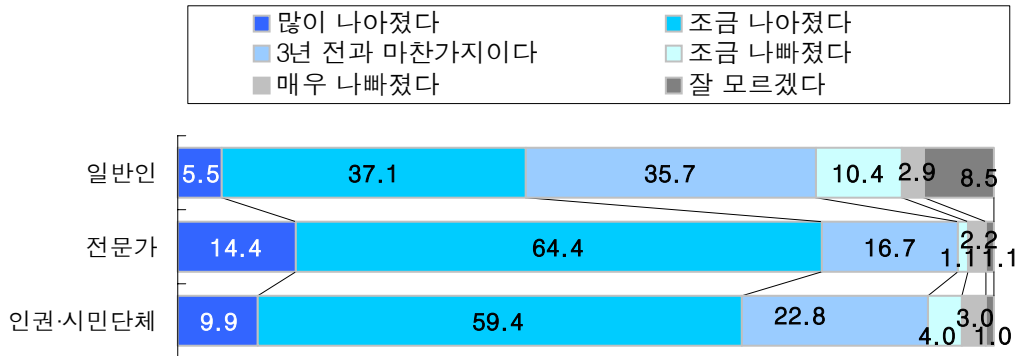


- 일반인 응답자 중 42.6%가 3년 전보다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이 나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13.2%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4명 이상이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전문가는 7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69.3%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인권상황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보다도 전문가의 평가가 긍정적임.

〈우리 사회 인권상황의 개선 정도〉

(단위:%)



■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에 대해, 일반인은 군대(43.4%), 구금시설(30.8%), 경찰(27.9%) 등의 순으로 응답함.

전문가는 사회복지생활시설(54.4%)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구금시설(50.0%)과 군대(4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군대(58.4%), 구금시설(38.6%), 사회복지생활시설(31.7%)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과 방송 및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전문가나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중복응답)〉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군대	43.4	42.2	58.4
구금시설	30.8	50.0	38.6
경찰	27.9	18.9	26.7
사회복지생활시설	22.3	54.4	31.7
검찰	21.0	5.6	8.9
기업	11.8	10.0	12.9
방송 및 언론기관	11.7	7.8	3.0
국가정보원	9.2	4.4	5.9
학교	8.2	4.4	12.9
기타	7.2	1.1	0.0
무응답	1.0	0.0	0.0

▣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에 대해, 일반인은 장애인(42.3%), 외국인 노동자(24.9%),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22.1%) 등의 순으로 응답함.

전문가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44.6%)의 인권보호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애인(29.7%)과 비정규직 노동자(27.7%),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26.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임.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42.2%), 구금시설 수용자(31.1%), 사회복지생활시설 수용자(26.7%)라고 응답하여 시설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일반인과 전문가/인권·시민단체 비교>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장애인	42.3	29.7	20.0
외국인 노동자	24.9	44.6	42.2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22.1	26.7	22.2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수용자	17.3	10.9	26.7
구금시설의 수용자	17.0	12.9	31.1
수사 피의자	14.6	11.9	14.4
비정규직 노동자	14.4	27.7	16.7
노인	11.8	2.0	2.2
군인	9.3	5.9	11.1
여성	9.3	9.9	6.7
아동	6.4	8.9	2.2
청소년	6.3	2.0	1.1
동성애자	0.6	5.9	2.2
기타	2.1	1.0	0.0
무응답	0.2	0.0	0.0

2.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 인권침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보면,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보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 반대(82.3%)’, ‘종교재단 학교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62.7%)’ 등이 높게 나타남.

전문가 역시,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보장(97.8%)’,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 반대(95.6%)’, ‘종교재단 학교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84.4%)’ 등의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일반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교육목적에서의 학교 체벌 반대(73.3%)’에 대한 응답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도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보장(100.0%)’,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 반대(98.0%)’, ‘종교재단 학교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91.1%)’ 등의 항목에 대한 동의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인이나 전문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사형제도 폐지(95.0%)’, ‘집회나 시위의 자유 보장(93.1%)’ 등에 대한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88.4	10.8	97.8	2.2	100.0	0.0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검문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16.5	82.3	4.4	95.6	2.0	98.0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예배 등 종교 의식을 학생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62.7	36.3	84.4	15.6	91.1	8.9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47.4	51.8	74.4	25.6	89.1	10.9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6	53.1	73.3	26.7	95.0	5.0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33.1	65.3	57.8	42.2	93.1	6.9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75.7	24.0	26.7	73.3	13.9	85.1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10.0	89.4	56.7	42.2	85.1	13.9

* 굵은 글씨의 숫자는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응답비율을 나타냄.

■ 차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보면,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9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여(83.3%)',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를 위한 세금이나 요금인상(78.2%)' 등이 높게 나타남.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에 대해서는 97.1%가 동의하면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나 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78.2%만 동의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역시,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여',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를 위한 세금이나 요금인상' 등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가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용인(72.2%)',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부여(97.0%)', '동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 보수와 대우 제공(96.0%)' 등에 대해 높은 의식수준을 보임.

<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단위: %)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97.1	2.6	100.0	0.0	100.0	0.0
장애인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납세, 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83.3	16.0	97.8	2.2	98.0	2.0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78.2	21.1	97.8	2.2	95.0	5.0
경쟁사회에서는 출신학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21.8	77.6	21.1	78.9	7.9	92.1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73.7	24.3	80.0	20.0	96.0	4.0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72.0	26.2	86.7	12.2	97.0	1.0
민간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65.1	33.4	78.9	21.1	87.1	12.9
여성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한 비율의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56.7	41.7	75.6	24.4	86.1	12.9
동성애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23.7	71.4	72.2	25.6	91.1	7.9

* 굵은 글씨의 숫자는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응답비율을 나타냄.

제1절 우리 사회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1.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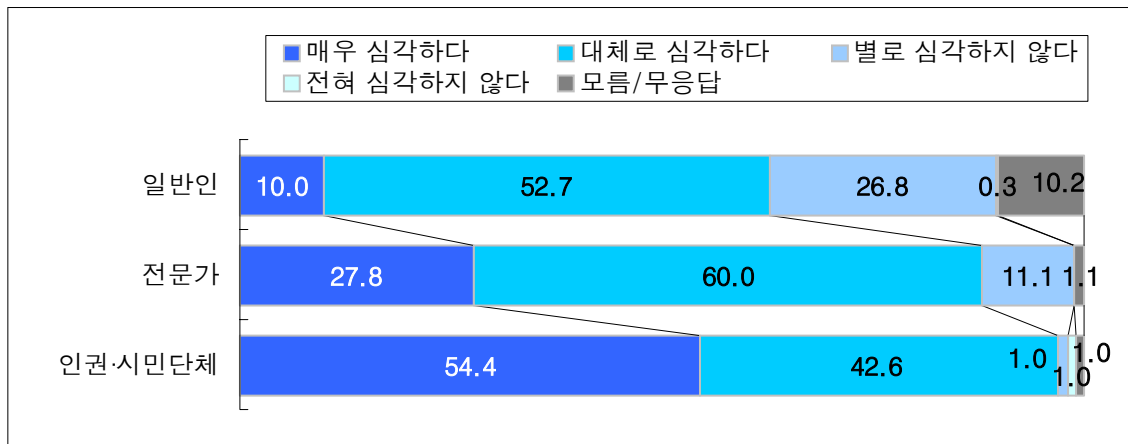
■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일반인의 62.7%, 전문가의 87.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7.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62.7%가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7.2%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6명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87.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97.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우리 사회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1>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응답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55.7%)보다는 여자(69.5%)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월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1〉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 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0.3	26.8	27.2	52.7	10.0	62.7	10.2	100.0
성별									
남자	(626)	0.3	35.0	35.3	48.8	6.9	55.7	9.0	100.0
여자	(637)	0.3	18.8	19.1	56.6	13.0	69.5	11.4	100.0
연령									
15-19세	(103)	0.0	26.4	26.4	49.8	7.5	57.3	16.3	100.0
20대	(260)	0.0	21.1	21.1	54.2	11.3	65.5	13.4	100.0
30대	(290)	0.0	27.8	27.8	52.6	11.8	64.4	7.7	100.0
40대	(264)	0.4	29.7	30.1	54.5	8.9	63.4	6.5	100.0
50대이상	(346)	0.9	28.2	29.1	51.1	9.0	60.1	10.8	100.0
학력									
중학생	(32)	0.0	24.2	24.2	40.7	15.7	56.4	19.4	100.0
고등학생	(58)	0.0	28.6	28.6	55.2	3.2	58.4	13.0	100.0
대학생	(113)	0.0	24.2	24.2	49.6	13.2	62.8	12.9	100.0
중졸이하	(189)	0.5	22.0	22.5	52.4	9.8	62.2	15.3	100.0
고졸	(503)	0.2	27.7	27.9	52.7	10.0	62.7	9.4	100.0
대졸 이상	(367)	0.6	28.9	29.4	54.5	9.6	64.0	6.5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0.0	19.5	19.5	49.5	16.5	66.0	14.4	100.0
101-200만원	(272)	0.0	27.8	27.8	51.3	10.5	61.8	10.4	100.0
201-300만원	(388)	0.0	29.4	29.4	54.1	8.3	62.4	8.2	100.0
301-400만원	(257)	0.8	27.3	28.1	52.8	10.6	63.4	8.4	100.0
401만원이상	(156)	0.7	26.1	26.7	51.0	11.0	62.0	11.3	100.0
모름/무응답	(108)	0.9	20.7	21.6	55.9	6.7	62.6	15.8	100.0

2. 우리 사회 인권상황의 개선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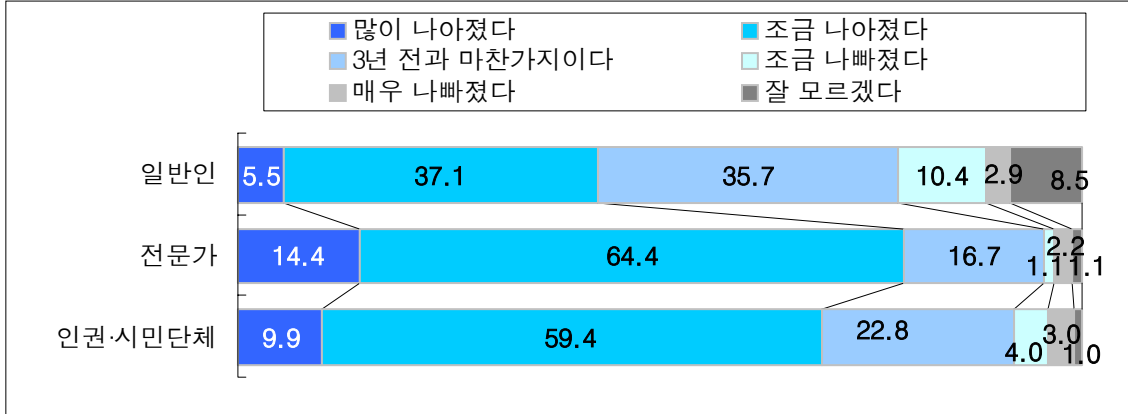
■ 3년 전보다 우리 사회 인권상황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일반인이 42.6%, 전문가 7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69.3%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중 42.6%가 3년 전보다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이 나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13.2%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4명 이상이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7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69.3%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인권상황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보다도 전문가의 평가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3-2〉 우리 사회 인권상황의 개선정도

(단위: %)



일반인 응답에서 인권상황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36.8%)보다 남자(48.5%)가, 연령별로는 30대(49.6%)가 나아졌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3-2〉 우리 사회 인권상황의 개선정도(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많이 나아졌다 (A)	조금 나아졌다 (B)	나아졌다 (A+B)	3년 전과 마찬가지로이다 (C)	조금 나빠졌다 (D)	많이 나빠졌다 (E)	나빠졌다 (D+E)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263)	5.5	37.1	42.6	35.7	10.4	2.9	13.2	8.5	100.0
성별										
남자	(626)	6.9	41.6	48.5	34.6	7.2	1.6	8.8	8.1	100.0
여자	(637)	4.2	32.6	36.8	36.7	13.5	4.1	17.6	8.9	100.0
연령										
15-19세	(103)	2.7	32.8	35.5	31.3	13.5	2.1	15.6	17.6	100.0
20대	(260)	4.0	32.5	36.5	40.3	7.6	4.4	12.0	11.2	100.0
30대	(290)	5.5	44.2	49.6	34.5	6.9	1.9	8.9	7.0	100.0
40대	(264)	5.7	36.6	42.3	38.1	10.6	1.6	12.2	7.4	100.0
50대이상	(346)	7.4	36.2	43.6	32.6	14.2	3.7	17.9	5.9	100.0
학력										
중학생	(32)	0.0	20.4	20.4	34.9	21.5	3.2	24.6	20.0	100.0
고등학생	(58)	6.5	39.9	46.4	22.8	10.7	1.9	12.6	18.3	100.0
대학생	(113)	2.6	38.2	40.8	35.8	6.3	4.5	10.8	12.7	100.0
중졸이하	(189)	4.8	29.7	34.5	34.0	18.3	2.4	20.7	10.8	100.0
고졸	(503)	5.6	34.2	39.8	38.8	11.2	3.5	14.7	6.7	100.0
대졸 이상	(367)	7.0	45.5	52.5	34.3	5.4	1.8	7.2	6.0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6.2	25.7	31.9	41.4	19.0	4.1	23.1	3.6	100.0
101-200만원	(272)	5.6	32.9	38.5	40.3	12.5	1.9	14.4	6.8	100.0
201-300만원	(388)	3.1	44.6	47.7	33.0	8.3	2.6	11.0	8.3	100.0
301-400만원	(257)	6.0	36.1	42.1	35.2	9.5	4.0	13.5	9.2	100.0
401만원이상	(156)	10.2	40.5	50.7	33.0	7.2	3.5	10.7	5.6	100.0
모름/무응답	(108)	5.4	26.6	32.0	34.2	12.3	1.8	14.1	19.7	100.0

3.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중복응답)

▣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에 대해, 일반인은 군대(43.4%), 구급시설(30.8%), 경찰(27.9%) 등을 지적하였으며, 전문가는 사회복지생활시설(54.4%), 구급시설(50.0%), 군대(42.2%) 등을,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군대(58.4%), 구급시설(38.6%), 사회복지생활시설(31.7%) 등을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이라고 응답하였다.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에 대해, 일반인은 군대(43.4%), 구급시설(30.8%), 경찰(27.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전문가는 사회복지생활시설(54.4%)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구급시설(50.0%)과 군대(4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군대(58.4%), 구급시설(38.6%), 사회복지생활시설(31.7%)이라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과 방송 및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전문가나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3〉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중복응답)

(단위: %)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군대	43.4	42.2	58.4
구급시설	30.8	50.0	38.6
경찰	27.9	18.9	26.7
사회복지생활시설	22.3	54.4	31.7
검찰	21.0	5.6	8.9
기업	11.8	10.0	12.9
방송 및 언론기관	11.7	7.8	3.0
국가정보원	9.2	4.4	5.9
학교	8.2	4.4	12.9
기타	7.2	1.1	0.0
무응답	1.0	0.0	0.0

4.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중복응답)

■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에 대해, 일반인은 장애인(42.3%), 외국인 노동자(24.9%),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22.1%) 등을 지적하였으며, 전문가는, 외국인 노동자(44.6%), 장애인(29.7%), 비정규직 노동자(27.7%),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26.7%) 등을,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42.2%), 구금시설 수용자(31.1%), 사회복지생활시설 수용자(26.7%) 등을 지적하였다.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에 대해, 일반인은 장애인(42.3%), 외국인 노동자(24.9%),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22.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44.6%)의 인권보호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애인(29.7%)과 비정규직 노동자(27.7%),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26.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였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42.2%), 구금시설 수용자(31.1%), 사회복지생활시설 수용자(26.7%)라고 응답하여 시설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 및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동성애자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호가 시급하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반인은 전문가나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전문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구금시설 수용자나 사회복지생활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상대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3-4〉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중복응답)

(단위: %)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장애인	42.3	29.7	20.0
외국인 노동자	24.9	44.6	42.2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22.1	26.7	22.2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수용자	17.3	10.9	26.7
구금시설의 수용자	17.0	12.9	31.1
수사 피의자	14.6	11.9	14.4
비정규직 노동자	14.4	27.7	16.7
노인	11.8	2.0	2.2
군인	9.3	5.9	11.1
여성	9.3	9.9	6.7
아동	6.4	8.9	2.2
청소년	6.3	2.0	1.1
동성애자	0.6	5.9	2.2
기타	2.1	1.0	0.0
무응답	0.2	0.0	0.0

제2절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1.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모두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보장’,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 반대’, ‘종교재단 학교에서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 등에 대한 동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사형제도 폐지’, ‘집회나 시위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권침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보면,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보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 반대(82.3%)’, ‘종교재단 학교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62.7%)’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10.0%)’와 ‘교육목적에서의 학교 차별 반대(24.0%)’ 등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역시,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보장(97.8%)’,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 반대(95.6%)’, ‘종교재단 학교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84.4%)’ 등의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일반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교육목적에서의 학교 차별 반대(73.3%)’에 대한 응답은 높은 수준으로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도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보장(100.0%)’,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 반대(98.0%)’, ‘종교재단 학교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91.1%)’ 등의 항목에 대한 동의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인이나 전문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전문가와 달리 ‘사형제도 폐지(95.0%)’, ‘집회나 시위의 자유 보장(93.1%)’ 등에 대한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는 특별히 낮은 항목이 없이 모든 항목에서 85% 이상의 높은 동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표3-5〉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단위: %)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88.4	10.8	97.8	2.2	100.0	0.0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검문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16.5	82.3	4.4	95.6	2.0	98.0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예배 등 종교 의식을 학생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62.7	36.3	84.4	15.6	91.1	8.9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47.4	51.8	74.4	25.6	89.1	10.9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6	53.1	73.3	26.7	95.0	5.0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33.1	65.3	57.8	42.2	93.1	6.9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75.7	24.0	26.7	73.3	13.9	85.1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10.0	89.4	56.7	42.2	85.1	13.9

* 굵은 글씨의 숫자는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응답비율을 나타냄.

○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보장

일반인 응답에서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성별이나 연령, 학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3-6> 교도소 수용자의 기본 인권 보장에 대한 의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 한다 (A)	대체로 동의 한다 (B)	동의 한다 (A+B)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D)	동의 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37.5	51.0	88.4	8.4	2.4	10.8	0.8	100.0
성별									
남자	(626)	38.7	50.2	88.9	7.8	2.5	10.3	0.8	100.0
여자	(637)	36.3	51.7	87.9	9.0	2.2	11.3	0.8	100.0
연령									
15-19세	(103)	43.1	50.3	93.3	4.1	1.8	5.9	0.8	100.0
20대	(260)	38.7	50.0	88.7	9.0	2.4	11.3	0.0	100.0
30대	(290)	43.0	46.0	89.0	7.6	2.0	9.6	1.4	100.0
40대	(264)	37.7	50.9	88.7	9.0	1.5	10.5	0.8	100.0
50대이상	(346)	30.0	56.1	86.0	9.5	3.6	13.1	0.9	100.0
학력									
중학생	(32)	48.3	45.7	93.9	3.5	0.0	3.5	2.6	100.0
고등학생	(58)	38.9	54.5	93.4	3.4	3.2	6.6	0.0	100.0
대학생	(113)	41.7	49.3	91.1	7.1	1.9	8.9	0.0	100.0
중졸이하	(189)	30.9	52.2	83.1	13.0	2.8	15.8	1.1	100.0
고졸	(503)	36.8	52.3	89.1	7.5	2.4	9.8	1.1	100.0
대졸 이상	(367)	39.3	48.8	88.1	9.0	2.4	11.4	0.5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30.1	55.3	85.3	11.0	2.4	13.4	1.3	100.0
101-200만원	(272)	44.0	49.5	93.5	4.6	1.1	5.7	0.8	100.0
201-300만원	(388)	37.2	51.3	88.5	8.6	2.6	11.2	0.2	100.0
301-400만원	(257)	30.8	55.9	86.7	10.6	1.9	12.6	0.8	100.0
401만원이상	(156)	44.8	42.4	87.2	9.0	3.2	12.2	0.6	100.0
모름/무응답	(108)	32.7	50.6	83.3	9.2	4.6	13.8	2.9	100.0

○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

일반인 응답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86.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3-7>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에 대한 의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A)	대체로 동의한다 (B)	동의한다 (A+B)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D)	동의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263)	2.6	13.9	16.5	30.6	51.7	82.3	1.3	100.0
성별									
남자	(626)	3.6	15.0	18.6	26.2	54.6	80.8	0.6	100.0
여자	(637)	1.5	12.9	14.4	34.9	48.9	83.7	1.9	100.0
연령									
15-19세	(103)	2.5	16.7	19.2	28.1	50.1	78.2	2.6	100.0
20대	(260)	2.0	16.6	18.5	31.4	50.1	81.5	0.0	100.0
30대	(290)	3.3	9.9	13.2	24.2	62.0	86.1	0.7	100.0
40대	(264)	2.7	12.1	14.8	31.0	52.2	83.3	2.0	100.0
50대이상	(346)	2.3	15.9	18.2	35.7	44.3	80.0	1.8	100.0
학력									
중학생	(32)	5.3	14.5	19.8	34.4	42.6	77.0	3.2	100.0
고등학생	(58)	1.5	16.8	18.3	27.1	53.2	80.3	1.4	100.0
대학생	(113)	0.9	20.0	20.9	33.2	46.0	79.1	0.0	100.0
중졸이하	(189)	2.8	15.2	18.0	41.3	38.5	79.8	2.2	100.0
고졸	(503)	3.7	14.6	18.3	26.4	54.1	80.5	1.2	100.0
대졸 이상	(367)	1.4	9.9	11.3	30.2	57.5	87.6	1.1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3.9	20.3	24.1	31.6	43.2	74.7	1.1	100.0
101-200만원	(272)	3.0	10.7	13.7	29.7	55.1	84.8	1.6	100.0
201-300만원	(388)	0.9	13.3	14.2	30.2	55.1	85.3	0.5	100.0
301-400만원	(257)	3.4	16.1	19.5	30.2	49.5	79.7	0.8	100.0
401만원이상	(156)	4.3	9.8	14.1	32.2	52.5	84.6	1.3	100.0
모름/무응답	(108)	1.8	20.5	22.3	32.1	41.1	73.2	4.5	100.0

○ 종교재단 학교에서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

일반인 응답에서 종교재단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의무화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데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대졸이상(67.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고등학교 재학생(55.9%)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며, 종교별로는 기독교(56.8%)와 가톨릭(58.0%)이 다른 종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3-8〉 종교재단 학교에서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에 대한 의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A)	대체로 동의한다 (B)	동의한다 (A+B)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D)	동의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263)	31.4	31.3	62.7	20.9	15.4	36.3	1.0	100.0
성별									
남자	(626)	35.0	31.5	66.4	17.1	15.9	33.0	0.6	100.0
여자	(637)	27.9	31.1	59.0	24.8	14.9	39.7	1.3	100.0
연령									
15-19세	(103)	30.4	28.0	58.4	14.8	23.6	38.4	3.2	100.0
20대	(260)	33.2	29.5	62.7	20.7	16.2	36.9	0.4	100.0
30대	(290)	37.6	29.2	66.8	19.9	12.6	32.5	0.6	100.0
40대	(264)	35.5	29.1	64.6	18.9	16.1	34.9	0.4	100.0
50대이상	(346)	22.0	37.0	59.0	25.4	14.1	39.6	1.4	100.0
학력									
중학생	(32)	31.8	28.5	60.3	12.2	25.0	37.1	2.6	100.0
고등학생	(58)	29.8	26.1	55.9	18.4	22.9	41.2	2.9	100.0
대학생	(113)	40.6	25.2	65.8	19.6	14.6	34.2	0.0	100.0
중졸이하	(189)	20.4	42.2	62.5	22.6	13.8	36.4	1.1	100.0
고졸	(503)	29.7	30.0	59.7	23.4	15.8	39.2	1.1	100.0
대졸 이상	(367)	36.8	30.4	67.2	18.3	13.9	32.2	0.6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20.4	40.3	60.6	22.5	12.1	34.7	4.7	100.0
101-200만원	(272)	35.0	28.5	63.5	20.9	15.2	36.1	0.4	100.0
201-300만원	(388)	33.9	27.9	61.8	21.5	16.0	37.5	0.7	100.0
301-400만원	(257)	28.9	33.3	62.2	19.1	18.7	37.8	0.0	100.0
401만원이상	(156)	31.4	34.5	65.9	21.1	12.2	33.3	0.8	100.0
모름/무응답	(108)	27.9	34.1	61.9	22.0	12.9	35.0	3.1	100.0
종교									
기독교	(327)	18.7	38.1	56.8	25.4	17.0	42.3	0.9	100.0
불교	(325)	37.2	30.0	67.3	18.1	14.6	32.7	0.0	100.0
가톨릭	(103)	33.1	24.9	58.0	26.7	13.6	40.2	1.8	100.0
유교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다른 종교	(13)	30.7	45.1	75.7	0.0	24.3	24.3	0.0	100.0
없다	(494)	35.5	28.5	64.0	19.3	15.1	34.4	1.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소지품 검사의 부당성

일반인 응답에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일이 부당하다는 데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5-19세가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재학생이 72.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3-9>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소지품 검사의 부당성에 대한 의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 한다 (A)	대체로 동의 한다 (B)	동의 한다 (A+B)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D)	동의 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13.3	34.2	47.4	36.3	15.6	51.8	0.7	100.0
성별									
남자	(626)	14.7	30.7	45.4	37.0	16.8	53.8	0.8	100.0
여자	(637)	11.9	37.6	49.5	35.5	14.4	49.9	0.6	100.0
연령									
15-19세	(103)	23.1	40.0	63.1	28.0	8.9	36.9	0.0	100.0
20대	(260)	14.1	39.3	53.5	38.0	8.2	46.2	0.4	100.0
30대	(290)	11.6	38.4	50.1	34.0	15.2	49.2	0.7	100.0
40대	(264)	14.0	30.6	44.6	37.1	17.9	55.0	0.4	100.0
50대이상	(346)	10.5	27.7	38.2	38.7	21.7	60.4	1.4	100.0
학력									
중학생	(32)	26.0	24.8	50.8	32.1	17.1	49.2	0.0	100.0
고등학생	(58)	23.4	48.6	72.0	23.5	4.5	28.0	0.0	100.0
대학생	(113)	11.2	36.2	47.3	42.6	10.1	52.7	0.0	100.0
중졸이하	(189)	13.7	26.1	39.8	40.9	18.8	59.7	0.5	100.0
고졸	(503)	11.5	32.6	44.1	37.1	17.7	54.8	1.0	100.0
대졸 이상	(367)	13.4	38.4	51.8	33.1	14.3	47.4	0.8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9.9	28.6	38.5	38.5	23.0	61.5	0.0	100.0
101-200만원	(272)	16.1	36.7	52.8	32.3	13.7	46.0	1.1	100.0
201-300만원	(388)	11.6	31.8	43.4	40.3	16.1	56.3	0.2	100.0
301-400만원	(257)	10.0	39.1	49.2	37.0	13.1	50.1	0.8	100.0
401만원이상	(156)	14.6	32.8	47.4	33.7	18.3	52.0	0.6	100.0
모름/무응답	(108)	20.5	30.7	51.2	32.0	14.9	47.0	1.9	100.0

○ 사형제도 폐지

일반인 응답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별로는 가톨릭(52.8%)과 기독교(52.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3-10〉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A)	대체로 동의한다 (B)	동의한다 (A+B)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D)	동의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263)	18.1	26.4	44.6	27.7	25.5	53.1	2.3	100.0
성별									
남자	(626)	21.9	24.5	46.4	25.9	26.5	52.4	1.2	100.0
여자	(637)	14.4	28.4	42.8	29.4	24.4	53.8	3.4	100.0
연령									
15-19세	(103)	19.5	30.2	49.8	30.7	16.3	47.0	3.3	100.0
20대	(260)	19.1	35.2	54.3	24.3	19.7	43.9	1.8	100.0
30대	(290)	17.8	26.8	44.6	29.1	24.6	53.6	1.8	100.0
40대	(264)	17.4	23.0	40.5	27.0	28.4	55.4	4.1	100.0
50대이상	(346)	17.7	21.1	38.8	28.6	31.0	59.7	1.6	100.0
학력									
중학생	(32)	23.7	34.3	58.0	28.3	13.7	42.0	0.0	100.0
고등학생	(58)	15.9	25.9	41.9	32.2	20.2	52.4	5.8	100.0
대학생	(113)	15.4	30.8	46.1	27.5	23.1	50.6	3.2	100.0
중졸이하	(189)	16.5	20.4	36.9	26.2	34.6	60.8	2.2	100.0
고졸	(503)	17.9	27.4	45.4	25.2	27.2	52.4	2.2	100.0
대졸 이상	(367)	19.9	26.3	46.1	31.0	21.0	51.9	1.9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20.7	24.7	45.4	29.4	22.6	52.0	2.6	100.0
101-200만원	(272)	17.6	24.8	42.4	28.0	28.1	56.1	1.5	100.0
201-300만원	(388)	22.5	27.1	49.6	26.0	23.6	49.6	0.8	100.0
301-400만원	(257)	12.7	27.8	40.5	32.0	25.0	57.1	2.4	100.0
401만원이상	(156)	19.0	25.5	44.5	26.2	25.4	51.7	3.8	100.0
모름/무응답	(108)	13.2	27.6	40.8	22.9	28.8	51.6	7.6	100.0
종교									
기독교	(327)	21.6	30.4	52.0	26.2	18.5	44.6	3.4	100.0
불교	(325)	16.2	25.0	41.2	29.0	26.9	55.9	2.8	100.0
가톨릭	(103)	25.3	27.4	52.8	20.3	25.2	45.5	1.7	100.0
유교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다른 종교	(13)	0.0	22.7	22.7	47.4	29.9	77.3	0.0	100.0
없다	(494)	16.1	24.6	40.6	28.7	29.2	57.8	1.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 집회나 시위의 자유에 대한 보장

일반인 응답에서 교통 혼잡이나 소음발생에도 불구하고 집회나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3-11> 집회나 시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의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 한다 (A)	대체로 동의 한다 (B)	동의 한다 (A+B)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D)	동의 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7.4	25.7	33.1	42.8	22.4	65.3	1.6	100.0
성별									
남자	(626)	8.5	25.4	33.9	43.0	22.2	65.2	0.9	100.0
여자	(637)	6.4	26.0	32.4	42.7	22.7	65.3	2.3	100.0
연령									
15-19세	(103)	14.9	40.5	55.4	31.5	10.2	41.7	2.9	100.0
20대	(260)	8.1	31.5	39.6	41.7	17.2	58.9	1.5	100.0
30대	(290)	9.1	28.1	37.2	41.2	20.9	62.0	0.7	100.0
40대	(264)	7.5	23.0	30.5	42.5	26.1	68.6	0.8	100.0
50대이상	(346)	3.2	17.0	20.2	48.7	28.5	77.2	2.6	100.0
학력									
중학생	(32)	15.6	35.2	50.8	33.8	12.3	46.1	3.2	100.0
고등학생	(58)	16.0	38.3	54.3	32.7	13.1	45.7	0.0	100.0
대학생	(113)	9.8	34.0	43.8	40.9	13.6	54.5	1.7	100.0
중졸이하	(189)	2.7	12.5	15.2	47.3	33.7	81.0	3.8	100.0
고졸	(503)	7.1	24.7	31.8	41.9	24.5	66.5	1.8	100.0
대졸 이상	(367)	7.5	28.5	36.1	44.8	18.8	63.6	0.3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1.0	15.7	26.8	48.4	21.1	69.6	3.7	100.0
101-200만원	(272)	6.1	27.0	33.0	44.5	20.2	64.7	2.3	100.0
201-300만원	(388)	8.4	24.6	33.0	45.0	21.2	66.2	0.8	100.0
301-400만원	(257)	5.2	23.8	29.0	43.7	26.1	69.8	1.2	100.0
401만원이상	(156)	7.6	29.2	36.8	37.5	23.8	61.3	1.9	100.0
모름/무응답	(108)	9.5	33.6	43.2	32.1	22.8	54.9	1.9	100.0

○ 학교에서 교육목적에서의 차별 허용

일반인 응답에서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81.6%)과 40대(8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3-12> 학교에서 교육목적에서의 차별 허용에 대한 의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 한다 (A)	대체로 동의 한다 (B)	동의 한다 (A+B)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D)	동의 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15.8	59.9	75.7	17.7	6.3	24.0	0.3	100.0
성별									
남자	(626)	18.7	59.8	78.5	15.8	5.5	21.4	0.1	100.0
여자	(637)	12.9	60.0	72.9	19.6	7.1	26.6	0.4	100.0
연령									
15-19세	(103)	2.6	51.3	53.9	29.3	16.0	45.3	0.8	100.0
20대	(260)	13.3	61.7	75.0	18.4	6.2	24.6	0.4	100.0
30대	(290)	17.0	55.8	72.8	19.6	7.0	26.5	0.6	100.0
40대	(264)	15.1	65.1	80.3	14.6	5.1	19.7	0.0	100.0
50대이상	(346)	21.1	60.5	81.6	14.5	3.9	18.4	0.0	100.0
학력									
중학생	(32)	0.0	52.0	52.0	25.5	22.6	48.0	0.0	100.0
고등학생	(58)	2.7	43.5	46.2	37.9	15.9	53.8	0.0	100.0
대학생	(113)	7.0	73.6	80.6	13.2	5.3	18.5	0.9	100.0
중졸이하	(189)	20.8	59.4	80.1	13.1	6.7	19.9	0.0	100.0
고졸	(503)	19.3	58.9	78.2	17.2	4.4	21.7	0.2	100.0
대졸 이상	(367)	14.6	60.6	75.2	18.2	6.0	24.3	0.5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6.8	63.1	79.9	16.2	3.9	20.1	0.0	100.0
101-200만원	(272)	20.2	52.6	72.8	20.4	6.9	27.2	0.0	100.0
201-300만원	(388)	16.3	56.8	73.2	19.7	7.2	26.8	0.0	100.0
301-400만원	(257)	13.5	67.2	80.7	13.8	5.1	18.9	0.4	100.0
401만원이상	(156)	14.3	62.9	77.2	15.4	6.2	21.6	1.2	100.0
모름/무응답	(108)	9.7	64.9	74.6	17.9	6.7	24.6	0.8	100.0

○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일반인 응답에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경험과는 관계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13〉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한 의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 한다 (A)	대체로 동의 한다 (B)	동의 한다 (A+B)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D)	동의 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2.9	7.1	10.0	22.9	66.4	89.4	0.6	100.0
성별									
남자	(626)	2.8	7.2	10.0	19.1	70.3	89.4	0.6	100.0
여자	(637)	2.9	7.1	10.1	26.6	62.7	89.3	0.6	100.0
연령									
15-19세	(103)	3.5	14.3	17.8	27.2	55.0	82.2	0.0	100.0
20대	(260)	6.0	9.2	15.2	24.2	59.1	83.3	1.5	100.0
30대	(290)	3.8	9.0	12.7	26.2	60.4	86.6	0.6	100.0
40대	(264)	1.6	3.9	5.5	19.7	74.8	94.5	0.0	100.0
50대이상	(346)	0.6	4.5	5.1	20.3	74.0	94.4	0.6	100.0
학력									
중학생	(32)	6.0	11.2	17.2	19.1	63.7	82.8	0.0	100.0
고등학생	(58)	2.9	15.3	18.2	30.4	51.4	81.8	0.0	100.0
대학생	(113)	6.1	10.9	17.0	21.7	59.5	81.3	1.7	100.0
중졸이하	(189)	2.1	3.4	5.5	21.1	72.9	94.0	0.6	100.0
고졸	(503)	1.9	5.0	6.9	21.8	70.5	92.3	0.8	100.0
대졸 이상	(367)	3.3	9.2	12.6	24.9	62.3	87.2	0.2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0.0	5.0	5.0	15.4	76.0	91.4	3.6	100.0
101-200만원	(272)	3.7	7.5	11.2	22.8	65.7	88.4	0.4	100.0
201-300만원	(388)	3.0	6.1	9.1	21.3	69.4	90.7	0.2	100.0
301-400만원	(257)	0.8	6.3	7.1	26.7	65.8	92.5	0.4	100.0
401만원이상	(156)	5.2	8.2	13.4	22.9	63.1	86.0	0.6	100.0
모름/무응답	(108)	4.1	12.3	16.4	25.8	56.9	82.7	0.9	100.0

2. 차별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의식

■ 차별 관련 현안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모두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여’,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를 위한 세금이나 요금인상’등에 대한 동의가 높게 나타났다.

차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보면,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9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여(83.3%)’,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를 위한 세금이나 요금인상(78.2%)’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용인’에 대해서는 23.7%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아직까지 일반인의 인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에 대해서는 97.1%가 동의하면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나 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78.2%만 동의한다는 점에서, 응답내용이 모순됨을 알 수 있다.

전문가도,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100.0%)’,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여(97.8%)’,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를 위한 세금이나 요금인상(97.8%)’ 등의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용인’에 대해서도 72.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역시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100.0%)’,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여(98.0%)’,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를 위한 세금이나 요금인상(95.0%)’ 등의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외에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부여(97.0%)’, ‘동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 보수와 대우 제공(96.0%)’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높은 의식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3-14〉 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단위: %)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97.1	2.6	100.0	0.0	100.0	0.0
장애인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납세, 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83.3	16.0	97.8	2.2	98.0	2.0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78.2	21.1	97.8	2.2	95.0	5.0
경쟁사회에서는 출신학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21.8	77.6	21.1	78.9	7.9	92.1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73.7	24.3	80.0	20.0	96.0	4.0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72.0	26.2	86.7	12.2	97.0	1.0
민간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65.1	33.4	78.9	21.1	87.1	12.9
여성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한 비율의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56.7	41.7	75.6	24.4	86.1	12.9
동성애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23.7	71.4	72.2	25.6	91.1	7.9

* 굵은 글씨의 숫자는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응답비율을 나타냄.

○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

일반인 응답에서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성별이나 연령, 학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3-15>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 한다 (A)	대체로 동의 한다 (B)	동의 한다 (A+B)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D)	동의 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52.8	44.3	97.1	2.3	0.3	2.6	0.3	100.0
성별									
남자	(626)	52.4	45.3	97.7	1.9	0.2	2.1	0.1	100.0
여자	(637)	53.1	43.4	96.5	2.6	0.5	3.0	0.5	100.0
연령									
15-19세	(103)	55.1	41.0	96.1	2.3	0.8	3.1	0.8	100.0
20대	(260)	56.2	42.3	98.4	1.6	0.0	1.6	0.0	100.0
30대	(290)	57.9	39.6	97.6	1.8	0.0	1.8	0.6	100.0
40대	(264)	56.0	39.8	95.8	3.0	0.8	3.8	0.4	100.0
50대이상	(346)	42.7	54.3	97.1	2.6	0.3	2.9	0.0	100.0
학력									
중학생	(32)	65.2	32.2	97.4	0.0	0.0	0.0	2.6	100.0
고등학생	(58)	47.8	48.6	96.4	2.2	1.4	3.6	0.0	100.0
대학생	(113)	51.1	46.1	97.2	2.8	0.0	2.8	0.0	100.0
중졸이하	(189)	46.1	51.9	98.0	1.4	0.6	2.0	0.0	100.0
고졸	(503)	51.9	44.5	96.4	3.0	0.2	3.2	0.4	100.0
대졸 이상	(367)	57.7	40.1	97.7	1.8	0.3	2.0	0.2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47.5	51.2	98.7	0.0	1.3	1.3	0.0	100.0
101-200만원	(272)	58.2	39.1	97.4	2.6	0.0	2.6	0.0	100.0
201-300만원	(388)	50.7	46.4	97.1	2.4	0.5	2.9	0.0	100.0
301-400만원	(257)	47.3	50.4	97.8	1.5	0.0	1.5	0.7	100.0
401만원이상	(156)	61.9	35.4	97.3	2.0	0.0	2.0	0.7	100.0
모름/무응답	(108)	50.4	43.2	93.6	4.8	0.8	5.6	0.8	100.0

○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를 위한 세금 및 요금인상

일반인 응답에서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를 위해 세금이나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특히 여자(76.0%)보다는 남자(80.4%)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3-16〉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를 위한 세금, 요금인상에 대한 인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 한다 (A)	대체로 동의 한다 (B)	동의 한다 (A+B)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D)	동의 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28.3	49.9	78.2	16.4	4.7	21.1	0.7	100.0
성별									
남자	(626)	30.8	49.7	80.4	14.5	3.9	18.4	1.1	100.0
여자	(637)	25.9	50.1	76.0	18.2	5.5	23.7	0.3	100.0
연령									
15-19세	(103)	27.4	53.3	80.7	15.6	1.8	17.4	1.9	100.0
20대	(260)	29.5	51.7	81.3	15.5	2.8	18.3	0.4	100.0
30대	(290)	32.4	46.7	79.0	16.5	4.2	20.7	0.3	100.0
40대	(264)	25.5	52.6	78.1	14.7	7.2	21.9	0.0	100.0
50대이상	(346)	26.3	48.2	74.5	18.4	5.6	24.0	1.4	100.0
학력									
중학생	(32)	34.9	48.9	83.7	10.5	3.2	13.7	2.6	100.0
고등학생	(58)	20.0	63.0	83.0	15.6	1.4	17.0	0.0	100.0
대학생	(113)	31.8	54.9	86.7	12.3	0.0	12.3	1.0	100.0
중졸이하	(189)	28.1	46.5	74.6	16.7	7.6	24.3	1.0	100.0
고졸	(503)	26.2	48.0	74.2	19.3	6.3	25.6	0.2	100.0
대졸 이상	(367)	31.0	50.7	81.7	14.1	3.2	17.3	1.1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21.8	51.8	73.6	17.8	8.6	26.4	0.0	100.0
101-200만원	(272)	33.6	42.3	75.9	17.0	6.4	23.4	0.7	100.0
201-300만원	(388)	28.7	54.1	82.8	12.7	3.5	16.1	1.1	100.0
301-400만원	(257)	24.5	52.6	77.1	18.2	4.4	22.6	0.4	100.0
401만원이상	(156)	30.9	48.1	79.0	16.4	3.9	20.2	0.7	100.0
모름/무응답	(108)	23.9	48.5	72.5	22.8	4.0	26.8	0.8	100.0

○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여

일반인 응답에서 시험이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 취업이나 진학 등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계층의 동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17>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여에 대한 의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 한다 (A)	대체로 동의 한다 (B)	동의 한다 (A+B)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D)	동의 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24.4	58.8	83.3	12.1	4.0	16.0	0.7	100.0
성별									
남자	(626)	27.3	56.7	84.0	12.0	3.4	15.4	0.6	100.0
여자	(637)	21.6	61.0	82.6	12.1	4.6	16.7	0.7	100.0
연령									
15-19세	(103)	18.8	58.7	77.4	18.2	3.6	21.8	0.8	100.0
20대	(260)	26.5	55.5	82.0	12.3	4.7	17.0	1.0	100.0
30대	(290)	25.7	57.5	83.2	12.0	4.1	16.1	0.7	100.0
40대	(264)	21.9	62.4	84.3	12.0	3.3	15.3	0.4	100.0
50대이상	(346)	25.5	59.8	85.4	10.1	3.9	14.1	0.6	100.0
학력									
중학생	(32)	21.2	54.3	75.5	17.0	4.9	21.9	2.6	100.0
고등학생	(58)	16.5	61.2	77.8	18.6	3.6	22.2	0.0	100.0
대학생	(113)	30.2	53.5	83.7	9.4	6.3	15.7	0.6	100.0
중졸이하	(189)	25.9	57.6	83.6	9.9	5.4	15.3	1.1	100.0
고졸	(503)	26.0	55.6	81.6	13.0	4.6	17.6	0.8	100.0
대졸 이상	(367)	21.3	65.5	86.9	11.1	1.7	12.9	0.3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30.1	53.6	83.7	11.2	2.6	13.8	2.5	100.0
101-200만원	(272)	27.4	56.1	83.5	13.5	3.0	16.5	0.0	100.0
201-300만원	(388)	23.7	61.0	84.7	11.2	3.4	14.6	0.8	100.0
301-400만원	(257)	21.7	59.6	81.3	12.8	5.5	18.3	0.4	100.0
401만원이상	(156)	24.2	56.8	81.0	12.6	5.7	18.4	0.6	100.0
모름/무응답	(108)	22.0	63.3	85.4	9.5	3.7	13.2	1.4	100.0

○ 출신학교의 차이 인정

일반인 응답에서 출신학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사무직(82.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전문/관리/경영직(75.8%)은 낮게 나타났다.

<표3-18> 출신학교의 차이 인정에 대한 의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A)	대체로 동의한다 (B)	동의한다 (A+B)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D)	동의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263)	3.1	18.6	21.8	42.1	35.5	77.6	0.7	100.0
성별									
남자	(626)	3.1	17.2	20.3	41.5	37.9	79.4	0.3	100.0
여자	(637)	3.2	20.0	23.2	42.6	33.2	75.8	1.0	100.0
연령									
15-19세	(103)	0.9	23.2	24.1	41.2	33.9	75.1	0.8	100.0
20대	(260)	3.9	21.2	25.1	42.1	32.8	74.9	0.0	100.0
30대	(290)	3.0	13.5	16.5	42.8	39.8	82.6	1.0	100.0
40대	(264)	4.2	14.5	18.7	41.0	39.5	80.5	0.7	100.0
50대이상	(346)	2.6	22.7	25.3	42.5	31.3	73.8	0.9	100.0
학력									
중학생	(32)	2.9	28.4	31.3	23.8	42.3	66.1	2.6	100.0
고등학생	(58)	0.0	24.8	24.8	51.1	24.1	75.2	0.0	100.0
대학생	(113)	6.4	18.0	24.4	39.7	35.9	75.6	0.0	100.0
중졸이하	(189)	4.2	19.2	23.5	41.3	33.6	74.9	1.7	100.0
고졸	(503)	2.8	17.2	20.0	40.4	39.1	79.5	0.5	100.0
대졸 이상	(367)	2.5	18.7	21.2	45.5	32.7	78.2	0.5	100.0
직업									
농/축/수산/광업	(14)	0.0	0.0	0.0	54.6	45.4	100.0	0.0	100.0
자영업	(334)	3.8	18.6	22.4	38.9	38.0	76.9	0.6	100.0
판매/서비스직종사자	(167)	3.0	18.2	21.2	41.0	37.2	78.2	0.6	100.0
생산/기능/노무직	(91)	1.1	22.5	23.5	40.8	35.6	76.5	0.0	100.0
사무직	(174)	1.3	15.5	16.8	44.5	37.6	82.1	1.2	100.0
전문/관리/경영직	(73)	2.7	20.3	23.0	46.9	28.9	75.8	1.2	100.0
주부	(163)	5.2	14.8	20.0	48.0	30.9	78.8	1.1	100.0
학생	(189)	3.8	22.1	25.9	38.7	34.9	73.6	0.4	100.0
무직/퇴직/기타	(57)	1.7	25.1	26.8	43.1	30.1	73.2	0.0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3.6	18.9	22.6	35.1	41.1	76.3	1.2	100.0
101-200만원	(272)	1.8	19.4	21.2	39.2	39.5	78.8	0.0	100.0
201-300만원	(388)	3.8	16.0	19.8	42.8	36.6	79.4	0.8	100.0
301-400만원	(257)	2.0	18.7	20.7	46.7	31.7	78.5	0.8	100.0
401만원이상	(156)	5.6	19.3	24.9	42.0	33.1	75.1	0.0	100.0
모름/무응답	(108)	2.7	24.6	27.4	40.6	29.4	70.0	2.6	100.0

○ 동일노동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동일 보수 및 대우 제공

일반인 응답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3-19〉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대우에 대한 인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A)	대체로 동의한다 (B)	동의한다 (A+B)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D)	동의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263)	26.2	47.6	73.7	19.7	4.6	24.3	2.0	100.0
성별									
남자	(626)	27.3	46.7	73.9	20.7	4.4	25.0	1.1	100.0
여자	(637)	25.1	48.5	73.6	18.7	4.8	23.5	2.9	100.0
연령									
15-19세	(103)	19.4	38.4	57.8	29.4	4.1	33.5	8.7	100.0
20대	(260)	26.9	48.1	74.9	18.5	5.0	23.6	1.5	100.0
30대	(290)	32.1	44.3	76.4	19.3	3.3	22.6	1.0	100.0
40대	(264)	28.5	48.5	77.0	18.4	4.2	22.6	0.3	100.0
50대이상	(346)	20.8	52.0	72.8	18.9	5.7	24.7	2.5	100.0
학력									
중학생	(32)	17.9	36.5	54.4	28.6	0.0	28.6	17.0	100.0
고등학생	(58)	19.8	41.1	60.9	27.2	7.3	34.5	4.6	100.0
대학생	(113)	23.0	48.6	71.6	19.0	8.8	27.8	0.6	100.0
중졸이하	(189)	23.8	57.9	81.8	11.1	3.7	14.8	3.4	100.0
고졸	(503)	30.5	45.8	76.3	18.8	4.2	22.9	0.8	100.0
대졸 이상	(367)	24.1	46.3	70.5	23.5	4.4	27.9	1.7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26.8	45.4	72.1	15.1	6.1	21.2	6.6	100.0
101-200만원	(272)	29.5	46.5	76.0	17.6	5.3	22.9	1.1	100.0
201-300만원	(388)	29.6	47.1	76.7	19.2	2.3	21.5	1.9	100.0
301-400만원	(257)	22.0	54.4	76.4	19.2	3.9	23.2	0.4	100.0
401만원이상	(156)	21.3	44.2	65.5	23.1	10.7	33.8	0.8	100.0
모름/무응답	(108)	21.6	42.3	63.9	26.4	2.8	29.2	6.9	100.0
고용상태									
정규직	(372)	25.1	49.4	74.6	20.4	4.0	24.4	1.0	100.0
임시직	(44)	19.8	60.0	79.8	14.0	6.3	20.2	0.0	100.0
일용직	(19)	37.4	43.4	80.8	14.2	4.9	19.2	0.0	100.0
계약직	(50)	39.6	39.4	79.0	15.0	1.9	17.0	4.0	100.0
기타	(34)	25.1	50.8	75.8	11.3	6.3	17.5	6.6	100.0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부여

일반인 응답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3-20>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부여에 대한 인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 한다 (A)	대체로 동의 한다 (B)	동의 한다 (A+B)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D)	동의 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24.8	47.2	72.0	15.6	10.6	26.2	1.8	100.0
성별									
남자	(626)	25.7	45.6	71.3	14.9	12.5	27.4	1.3	100.0
여자	(637)	23.9	48.8	72.7	16.3	8.7	25.0	2.3	100.0
연령									
15-19세	(103)	26.3	50.4	76.7	15.6	3.5	19.1	4.2	100.0
20대	(260)	24.3	50.8	75.0	14.6	8.4	23.0	2.0	100.0
30대	(290)	27.2	47.4	74.6	14.6	9.5	24.1	1.3	100.0
40대	(264)	25.0	46.6	71.6	17.1	9.0	26.1	2.3	100.0
50대이상	(346)	22.6	43.9	66.5	16.2	16.3	32.6	0.9	100.0
학력									
중학생	(32)	29.3	50.9	80.2	8.8	5.2	13.9	5.9	100.0
고등학생	(58)	25.7	51.8	77.4	16.8	1.5	18.3	4.3	100.0
대학생	(113)	30.4	47.6	77.9	13.0	5.4	18.4	3.7	100.0
중졸이하	(189)	22.0	44.9	66.8	16.9	14.7	31.6	1.6	100.0
고졸	(503)	24.7	45.6	70.3	15.2	13.2	28.3	1.4	100.0
대졸 이상	(367)	24.2	49.4	73.6	16.9	8.3	25.2	1.1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31.2	51.6	82.8	7.4	9.8	17.2	0.0	100.0
101-200만원	(272)	28.4	41.7	70.1	16.7	12.1	28.8	1.1	100.0
201-300만원	(388)	24.4	47.7	72.1	16.0	10.3	26.3	1.6	100.0
301-400만원	(257)	18.4	52.5	70.9	17.0	11.0	28.0	1.1	100.0
401만원이상	(156)	28.8	43.0	71.8	17.6	9.1	26.8	1.5	100.0
모름/무응답	(108)	21.9	49.5	71.4	11.6	8.9	20.6	8.0	100.0

○ 민간기업에서의 직원 채용 시 나이 제한의 부당성

일반인 응답에서 민간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의 제한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3-21〉 민간기업에서의 직원 채용 시 나이 제한의 부당성에 대한 의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 한다 (A)	대체로 동의 한다 (B)	동의 한다 (A+B)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D)	동의 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22.3	42.9	65.1	25.8	7.5	33.4	1.5	100.0
성별									
남자	(626)	23.7	42.2	65.8	25.1	7.4	32.5	1.6	100.0
여자	(637)	20.9	43.5	64.5	26.5	7.6	34.2	1.4	100.0
연령									
15-19세	(103)	20.3	35.1	55.4	30.5	9.7	40.2	4.4	100.0
20대	(260)	27.0	42.5	69.5	22.8	6.8	29.7	0.8	100.0
30대	(290)	25.2	41.9	67.1	22.8	8.8	31.6	1.4	100.0
40대	(264)	19.9	47.1	67.0	25.1	6.3	31.4	1.6	100.0
50대이상	(346)	18.7	42.9	61.7	29.8	7.2	37.1	1.2	100.0
학력									
중학생	(32)	12.7	32.8	45.5	39.3	9.3	48.6	5.9	100.0
고등학생	(58)	24.0	35.6	59.6	27.5	8.4	35.9	4.5	100.0
대학생	(113)	19.4	48.9	68.3	23.4	7.3	30.7	0.9	100.0
중졸이하	(189)	21.1	41.6	62.8	28.1	7.4	35.5	1.7	100.0
고졸	(503)	22.5	41.5	64.1	25.4	9.2	34.5	1.4	100.0
대졸 이상	(367)	24.0	45.5	69.5	24.6	5.1	29.7	0.8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26.2	42.0	68.2	19.8	9.5	29.3	2.5	100.0
101-200만원	(272)	26.9	39.6	66.5	24.5	8.2	32.7	0.8	100.0
201-300만원	(388)	21.2	43.6	64.8	27.6	6.8	34.4	0.8	100.0
301-400만원	(257)	17.9	47.5	65.4	25.7	7.7	33.4	1.1	100.0
401만원이상	(156)	23.8	40.6	64.4	26.9	8.1	34.9	0.6	100.0
모름/무응답	(108)	19.8	41.1	60.9	26.1	5.7	31.8	7.3	100.0

○ 여성할당제 적용

일반인 응답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49.9%)보다는 여자(63.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3-22〉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 한다 (A)	대체로 동의 한다 (B)	동의 한다 (A+B)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D)	동의 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18.2	38.5	56.7	28.6	13.2	41.7	1.6	100.0
성별									
남자	(626)	13.9	36.0	49.9	32.7	15.9	48.5	1.6	100.0
여자	(637)	22.3	41.0	63.3	24.5	10.5	35.1	1.6	100.0
연령									
15-19세	(103)	22.7	46.1	68.8	16.7	9.4	26.1	5.0	100.0
20대	(260)	20.4	42.1	62.5	24.0	12.7	36.8	0.8	100.0
30대	(290)	19.8	34.1	53.9	33.3	11.7	45.1	1.0	100.0
40대	(264)	16.5	37.7	54.2	29.3	15.0	44.3	1.5	100.0
50대이상	(346)	15.1	37.8	52.9	30.9	14.4	45.4	1.7	100.0
학력									
중학생	(32)	14.6	54.7	69.3	10.9	6.2	17.2	13.5	100.0
고등학생	(58)	24.3	43.2	67.6	17.7	13.2	30.9	1.5	100.0
대학생	(113)	14.0	41.3	55.3	23.8	20.0	43.8	0.9	100.0
중졸이하	(189)	21.6	34.7	56.3	27.9	13.6	41.5	2.2	100.0
고졸	(503)	18.1	39.7	57.9	28.0	12.6	40.6	1.5	100.0
대졸 이상	(367)	17.1	35.7	52.8	34.4	12.3	46.6	0.6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8.4	36.6	55.1	30.2	12.3	42.6	2.4	100.0
101-200만원	(272)	24.8	38.8	63.6	28.4	6.9	35.3	1.1	100.0
201-300만원	(388)	17.5	40.6	58.2	27.0	13.3	40.3	1.5	100.0
301-400만원	(257)	14.8	37.4	52.1	32.4	14.4	46.8	1.1	100.0
401만원이상	(156)	14.6	38.3	53.0	27.7	18.3	46.0	1.0	100.0
모름/무응답	(108)	16.9	34.5	51.3	25.7	18.6	44.3	4.3	100.0

○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용인

일반인 응답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용인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별로는 40대 이상과 30대 이하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3-23>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용인에 대한 인식(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 한다 (A)	대체로 동의 한다 (B)	동의 한다 (A+B)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D)	동의 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3.9	19.9	23.7	26.1	45.3	71.4	4.8	100.0
성별									
남자	(626)	3.5	20.6	24.1	26.6	43.5	70.1	5.8	100.0
여자	(637)	4.3	19.1	23.4	25.6	47.1	72.7	3.9	100.0
연령									
15-19세	(103)	7.3	26.8	34.1	28.4	32.1	60.4	5.5	100.0
20대	(260)	5.3	32.0	37.2	28.0	30.5	58.5	4.2	100.0
30대	(290)	6.2	24.6	30.8	27.1	38.1	65.2	4.0	100.0
40대	(264)	2.7	13.3	15.9	27.5	50.7	78.2	5.9	100.0
50대이상	(346)	0.9	9.7	10.5	22.0	62.4	84.5	5.0	100.0
학력									
중학생	(32)	11.5	15.8	27.3	24.2	39.1	63.2	9.4	100.0
고등학생	(58)	4.7	34.8	39.5	26.8	30.5	57.3	3.2	100.0
대학생	(113)	5.2	32.7	37.9	26.3	29.6	55.8	6.3	100.0
중졸이하	(189)	1.5	9.4	10.9	17.8	67.0	84.7	4.3	100.0
고졸	(503)	2.8	17.0	19.7	26.5	48.8	75.4	4.9	100.0
대졸 이상	(367)	5.5	23.2	28.7	29.8	37.1	66.9	4.4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1	13.7	14.8	24.4	54.9	79.3	5.9	100.0
101-200만원	(272)	4.1	17.3	21.4	25.8	49.9	75.6	3.0	100.0
201-300만원	(388)	3.3	19.7	23.0	23.1	49.2	72.3	4.7	100.0
301-400만원	(257)	4.0	21.1	25.1	31.7	38.2	69.9	5.0	100.0
401만원이상	(156)	3.9	24.8	28.7	24.5	41.6	66.2	5.1	100.0
모름/무응답	(108)	7.3	21.3	28.7	27.9	35.3	63.2	8.2	100.0

제2장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결과 요약 >

1.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및 경험비율

▣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과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에 대해 일반인보다는 전문가가, 전문가보다는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임.

일반인과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한편,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모두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

(단위:%)

	일반인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83.8	98.9	99.0
사생활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73.1	95.6	94.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67.0	77.8	90.1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37.8	63.3	89.1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36.1	50.0	82.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34.2	65.6	89.1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29.5	38.9	82.2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26.2	34.4	76.2

■ 일반인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경험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특히, 간접경험비율은 심각성 인식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성 인식의 한 요인으로 보임.

‘개인정보 유출’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심각성 인식과 직접경험, 간접경험이 모두 높은 인권침해 유형인 반면, ‘사생활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는 심각성 인식과 간접경험이 높으나 직접경험비율은 낮은 인권침해 유형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직접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심각성 인식과 간접경험 비율은 낮은 수준을 보임.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비율>

(단위:%)

	심각성	경험 비율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개인정보 유출	83.8	3.3	19.7
사생활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73.1	0.5	14.8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67.0	2.3	15.0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37.8	1.6	14.0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34.2	2.3	12.9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29.5	1.7	12.6

■ 일반인의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을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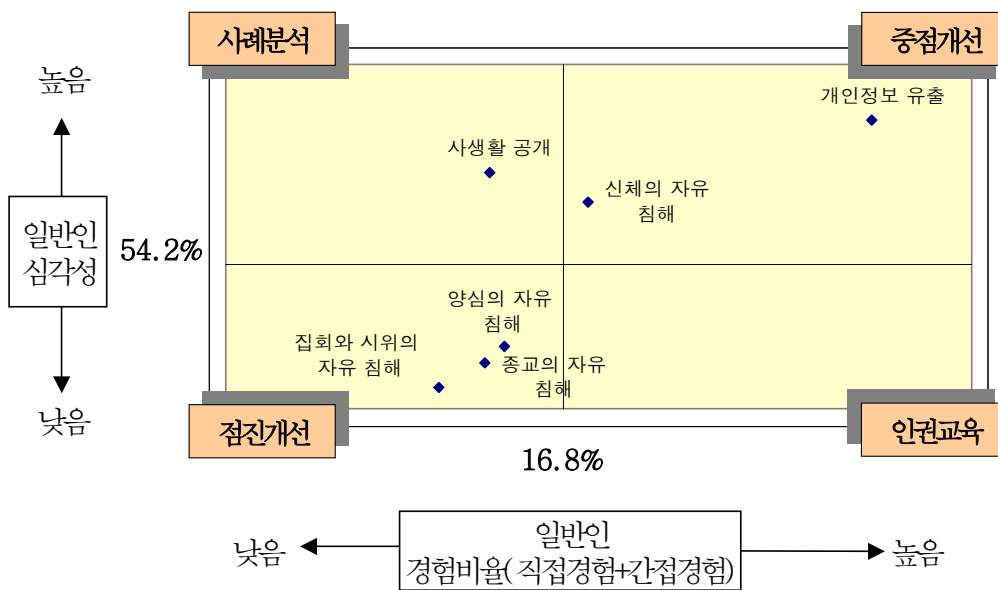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 비율이 모두 높아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중점개선영역'에는, △개인정보 유출 △신체의 자유 등의 인권침해가 해당함.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 비율이 모두 낮아 즉각적인 대안보다는 장기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점진개선영역'에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전통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해당함.

심각성 인식은 낮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높아 일상화된 인권침해로 보이는 '인권교육영역'에는, △성별에 대한 인권침해가 해당하며 인권교육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

심각성 인식은 높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낮아 소수에게 해당하는 문제로 보이는 '사례분석영역'에는, △사생활 공개와 관련한 인권침해가 해당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연구가 요구됨.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비율 비교-일반인〉



* 일반인의 경험비율은 직접경험비율과 간접경험비율을 합한 값임.

2. 기관별 심각성

-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일반인의 경우는 군대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7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찰(72.8%), 검찰(71.8%), 국가정보원(7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송 등 언론기관(23.9%), 기업체(37.7%)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을 보임.

전문가의 경우는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1.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찰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68.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였으나, 방송 등 언론기관(50.0%), 기업체(52.2%)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을 보여 일반인 응답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도 군대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6.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일반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4.1%로 높고, 경찰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1.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일반인보다는 전문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전반적으로 일반인보다는 전문가가 각 기관에서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가보다는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군대	74.2	87.8	96.0
경찰	72.8	68.9	81.2
검찰	71.8	82.2	92.1
국가정보원	70.2	87.8	91.1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69.5	91.1	94.1
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생활시설	55.5	64.4	81.2
초중고등학교	46.7	68.9	75.2
기업체	37.7	52.2	78.2
방송 등 언론기관	23.9	50.0	83.2

3. 인권침해 경험 시 대응방안 및 만족도

□ 인권침해 사안별 인권침해 경험의 대응방안을 단순 합산한 결과, 49%의 경험자가 구체적인 대응을 한 반면, 51.0%의 경험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2명 중 1명 정도는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가 18.2%로 높게 나타났음.

이 외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7.8%)',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5.2%)',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5.2%)',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5.2%)', '언론기관에 투고나 제보(1.3%)' 등의 대응이 있음.

대응방안별 만족수준에 대해, '언론기관에 투고나 제보'한 1명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높고,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 등도 1명씩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높지만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인권침해 경험 시 대응방안과 만족도>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대응 유형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33명(42.9%)	4명(12.1%)	29명(87.9%)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14명(18.2%)	1명(7.1%)	13명(92.9%)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10명(7.8%)	1명(10.0%)	9명(90.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6명(5.2%)	1명(16.7%)	5명(83.8%)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4명(5.2%)	1명(25.0%)	3명(75.0%)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4명(5.2%)	1명(25.0%)	3명(75.0%)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1명(1.3%)	1명(100.0%)	0명(0.0%)
	기타	5명(6.5%)	2명(40.0%)	3명(60.0%)
소계		77명	12명(15.6%)	65명(%)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80명(51.0%)	-	-
합 계		157명	-	-

제1절 인권침해 사안별 심각성 인식

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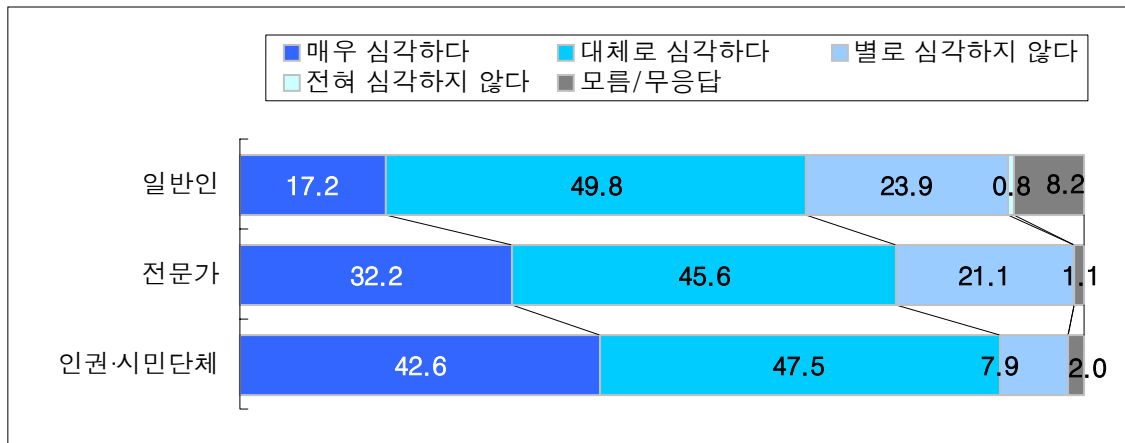
■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일반인의 67.0%, 전문가의 77.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0.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67.0%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4.7%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7명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77.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90.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응답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40대(71.7%)와 30대(71.2%)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인권침해를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51.0%의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인권침해 사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특히,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구제수단의 효용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됨.

〈인권침해 경험 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명)

	응답수 (명)	별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기타	모름/ 무응답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24)	16	6	2	1	1	0
개인정보 유출	(19)	9	5	4	4	1	0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4)	9	2	2	0	1	0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2)	9	1	2	0	0	0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10)	5	2	1	2	0	0
사생활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1)	1	0	0	0	0	0
전 체	80	49 (61.3%)	16 (20.0%)	11 (13.8%)	7 (8.8%)	3 (3.8%)	0 (0.0%)

〈표4-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함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0.8	23.9	24.7	49.8	17.2	67.0	8.2	100.0
성별									
남자	(626)	0.7	25.8	26.5	50.4	17.7	68.1	5.3	100.0
여자	(637)	1.0	22.0	23.0	49.2	16.7	65.9	11.1	100.0
연령									
15-19세	(103)	0.7	23.6	24.3	47.5	16.5	64.0	11.7	100.0
20대	(260)	0.7	22.8	23.5	51.8	18.2	70.0	6.5	100.0
30대	(290)	0.3	20.3	20.6	51.2	20.0	71.2	8.2	100.0
40대	(264)	0.4	19.5	19.9	51.3	20.4	71.7	8.4	100.0
50대이상	(346)	1.8	31.2	32.9	46.8	11.9	58.7	8.4	100.0
학력									
중학생	(32)	2.2	13.1	15.3	52.8	17.1	69.9	14.9	100.0
고등학생	(58)	0.0	25.9	25.9	45.0	19.8	64.7	9.4	100.0
대학생	(113)	0.0	25.2	25.2	44.1	22.9	67.0	7.8	100.0
중졸이하	(189)	2.7	31.1	33.8	45.3	10.8	56.1	10.1	100.0
고졸	(503)	0.6	23.0	23.5	53.4	14.7	68.1	8.4	100.0
대졸 이상	(367)	0.5	21.7	22.2	49.6	21.8	71.4	6.4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2	33.4	34.6	36.0	19.7	55.7	9.7	100.0
101-200만원	(272)	0.4	27.2	27.6	49.2	14.5	63.7	8.7	100.0
201-300만원	(388)	0.5	17.1	17.6	54.6	20.8	75.4	7.0	100.0
301-400만원	(257)	1.5	25.6	27.1	50.9	14.4	65.3	7.6	100.0
401만원이상	(156)	0.6	25.6	26.2	48.7	21.1	69.8	4.0	100.0
모름/무응답	(108)	1.6	26.4	28.0	43.7	10.4	54.1	17.9	100.0

2.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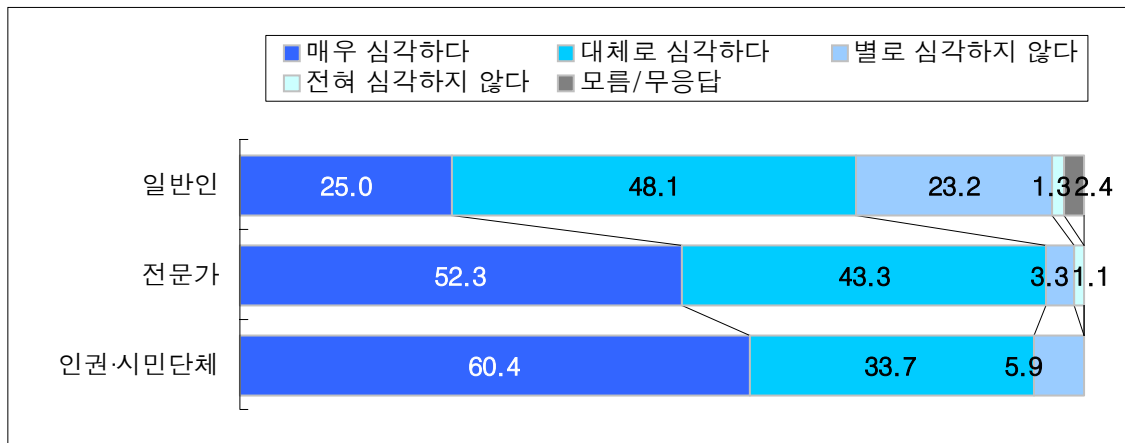
■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일반인은 73.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는 95.6%,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94.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73.1%가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4.4%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7명 이상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95.6%,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94.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가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2〉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응답에서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30대(79.3%)와 20대(79.0%)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4-2〉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함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1.3	23.2	24.4	48.1	25.0	73.1	2.4	100.0
성별									
남자	(626)	0.9	22.7	23.7	50.6	24.4	75.0	1.3	100.0
여자	(637)	1.6	23.7	25.2	45.7	25.5	71.2	3.5	100.0
연령									
15-19세	(103)	0.0	18.8	18.8	50.4	27.8	78.2	3.0	100.0
20대	(260)	1.1	19.1	20.2	53.6	25.4	79.0	0.8	100.0
30대	(290)	1.0	18.1	19.1	45.8	33.5	79.3	1.6	100.0
40대	(264)	1.5	22.1	23.6	50.6	24.3	74.9	1.5	100.0
50대이상	(346)	1.8	32.6	34.4	43.4	17.2	60.6	4.9	100.0
학력									
중학생	(32)	0.0	15.9	15.9	43.7	37.9	81.5	2.6	100.0
고등학생	(58)	0.0	15.8	15.8	52.9	28.8	81.7	2.5	100.0
대학생	(113)	0.9	18.9	19.8	47.4	31.0	78.4	1.8	100.0
중졸이하	(189)	3.2	35.4	38.6	42.0	14.0	56.1	5.3	100.0
고졸	(503)	1.0	24.5	25.5	49.2	23.0	72.2	2.3	100.0
대졸 이상	(367)	1.1	18.2	19.3	49.6	29.8	79.4	1.3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2	30.8	32.0	39.9	20.8	60.7	7.4	100.0
101-200만원	(272)	1.8	23.6	25.4	53.2	19.5	72.8	1.8	100.0
201-300만원	(388)	0.6	23.6	24.1	47.2	27.2	74.4	1.5	100.0
301-400만원	(257)	0.8	24.0	24.8	48.8	24.1	72.9	2.3	100.0
401만원이상	(156)	3.0	21.7	24.8	44.1	29.8	74.0	1.3	100.0
모름/무응답	(108)	1.0	15.2	16.2	49.1	28.9	78.0	5.8	100.0

3.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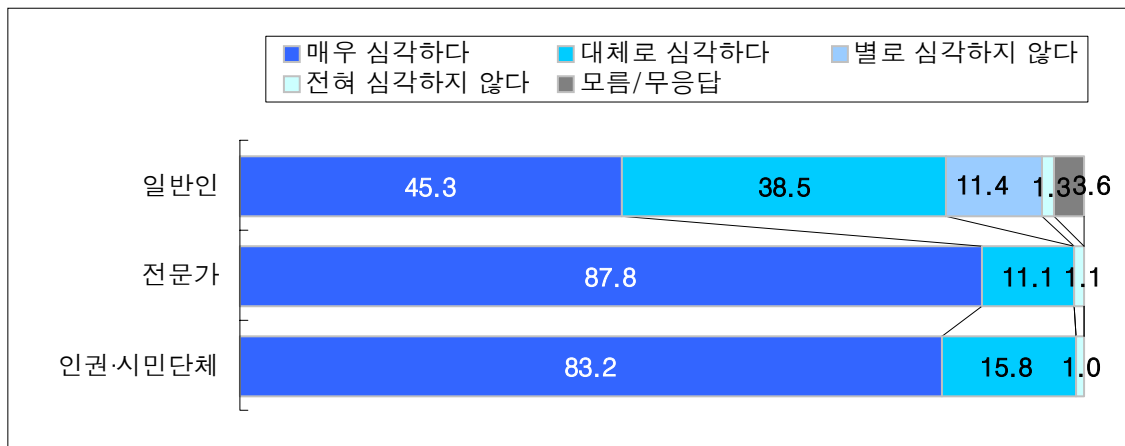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일반인의 83.8%, 전문가의 9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9.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83.8%가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2.7%만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8명 이상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8.9%의 전문가와 99.0%의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3〉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응답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사용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사무직(92.3%)과 전문/관리/경영직(90.8%), 학생(90.3%) 등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4-3〉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함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1.3	11.4	12.7	38.5	45.3	83.8	3.6	100.0
성별									
남자	(626)	1.3	9.3	10.6	40.7	46.6	87.3	2.1	100.0
여자	(637)	1.3	13.4	14.7	36.4	43.9	80.3	5.0	100.0
연령									
15-19세	(103)	0.0	7.1	7.1	49.9	42.2	92.1	0.8	100.0
20대	(260)	0.7	8.2	8.9	33.0	56.9	89.9	1.1	100.0
30대	(290)	1.7	8.6	10.3	34.0	55.1	89.1	0.6	100.0
40대	(264)	0.8	10.3	11.0	39.4	47.2	86.6	2.3	100.0
50대이상	(346)	2.1	18.3	20.4	42.4	27.6	70.0	9.7	100.0
학력									
중학생	(32)	0.0	10.5	10.5	43.2	43.7	86.9	2.6	100.0
고등학생	(58)	0.0	3.4	3.4	56.0	40.6	96.6	0.0	100.0
대학생	(113)	0.9	8.1	9.0	30.4	58.9	89.3	1.7	100.0
중졸이하	(189)	2.2	24.7	26.8	39.4	20.4	59.7	13.4	100.0
고졸	(503)	1.6	10.9	12.4	40.5	44.3	84.8	2.7	100.0
대졸 이상	(367)	0.8	7.6	8.5	34.7	56.0	90.7	0.8	100.0
직업									
농/축/수산/광업	(14)	0.0	17.1	17.1	46.2	21.6	67.8	15.1	100.0
자영업	(334)	1.7	11.1	12.8	37.3	45.3	82.6	4.6	100.0
판매/서비스직종사자	(167)	1.8	11.0	12.8	40.2	43.9	84.1	3.1	100.0
생산/기능/노무직	(91)	1.2	13.0	14.2	48.7	29.1	77.8	8.0	100.0
사무직	(174)	0.0	7.1	7.1	33.5	58.8	92.3	0.6	100.0
전문/관리/경영직	(73)	0.0	9.2	9.2	33.8	57.0	90.8	0.0	100.0
주부	(163)	3.2	19.8	23.1	40.0	33.9	73.9	3.0	100.0
학생	(189)	0.5	7.7	8.2	39.7	50.6	90.3	1.5	100.0
무직/퇴직/기타	(57)	0.0	14.4	14.4	35.9	38.9	74.7	10.9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2.5	20.7	23.2	26.1	33.3	59.4	17.4	100.0
101-200만원	(272)	0.7	15.5	16.2	39.6	41.1	80.7	3.1	100.0
201-300만원	(388)	0.8	7.4	8.2	42.5	46.8	89.2	2.6	100.0
301-400만원	(257)	0.8	10.7	11.5	38.0	48.6	86.6	1.9	100.0
401만원이상	(156)	3.2	10.9	14.1	36.0	49.2	85.1	0.8	100.0
모름/무응답	(108)	1.9	10.7	12.6	36.2	45.6	81.8	5.6	100.0

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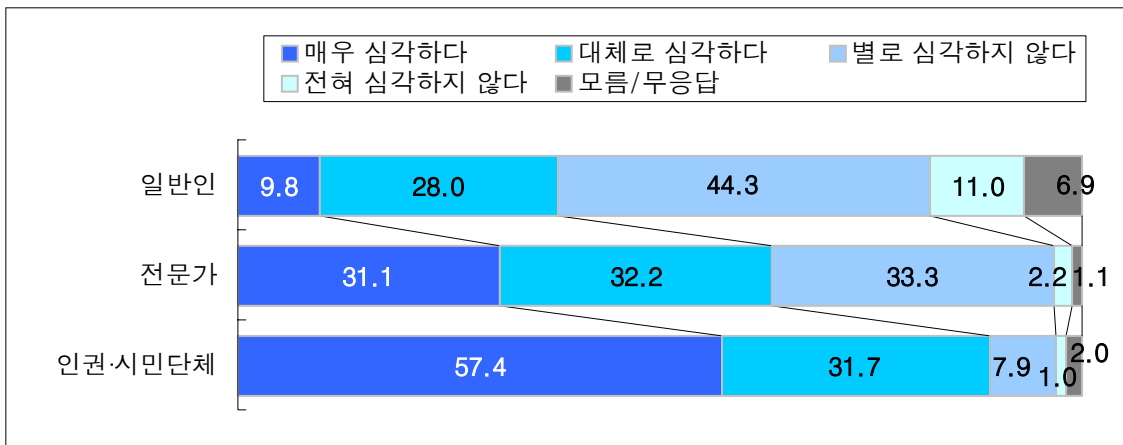
▣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일반인의 37.8%, 전문가의 63.3%,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9.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37.8%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5.3%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문가는 63.3%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89.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는 전문가가, 전문가보다는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응답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30대(43.3%)에서 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함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11.0	44.3	55.3	28.0	9.8	37.8	6.9	100.0
성별									
남자	(626)	13.4	44.9	58.3	26.0	9.6	35.6	6.1	100.0
여자	(637)	8.6	43.8	52.4	30.0	9.9	39.9	7.7	100.0
연령									
15-19세	(103)	7.4	47.3	54.7	23.0	13.7	36.8	8.5	100.0
20대	(260)	11.1	44.4	55.5	27.6	11.1	38.7	5.8	100.0
30대	(290)	8.7	42.4	51.1	32.0	11.3	43.3	5.6	100.0
40대	(264)	12.3	44.6	56.9	27.7	7.6	35.3	7.8	100.0
50대이상	(346)	12.9	44.8	57.7	26.7	7.9	34.7	7.7	100.0
학력									
중학생	(32)	9.1	39.3	48.4	30.8	10.5	41.2	10.3	100.0
고등학생	(58)	6.6	48.6	55.2	22.4	12.9	35.3	9.5	100.0
대학생	(113)	16.5	38.3	54.8	25.6	11.6	37.3	7.9	100.0
중졸이하	(189)	11.2	52.3	63.5	21.9	6.9	28.8	7.7	100.0
고졸	(503)	10.5	42.6	53.0	29.3	10.0	39.3	7.7	100.0
대졸 이상	(367)	10.7	44.3	55.0	30.8	9.8	40.6	4.4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0.7	48.4	59.1	16.9	14.5	31.3	9.6	100.0
101-200만원	(272)	9.1	45.7	54.8	29.9	8.2	38.1	7.1	100.0
201-300만원	(388)	10.3	43.9	54.2	29.9	9.7	39.6	6.2	100.0
301-400만원	(257)	12.2	47.1	59.3	28.6	6.6	35.2	5.5	100.0
401만원이상	(156)	15.4	42.6	58.0	25.4	14.6	40.1	1.9	100.0
모름/무응답	(108)	9.0	35.3	44.4	27.5	10.9	38.3	17.3	100.0

5.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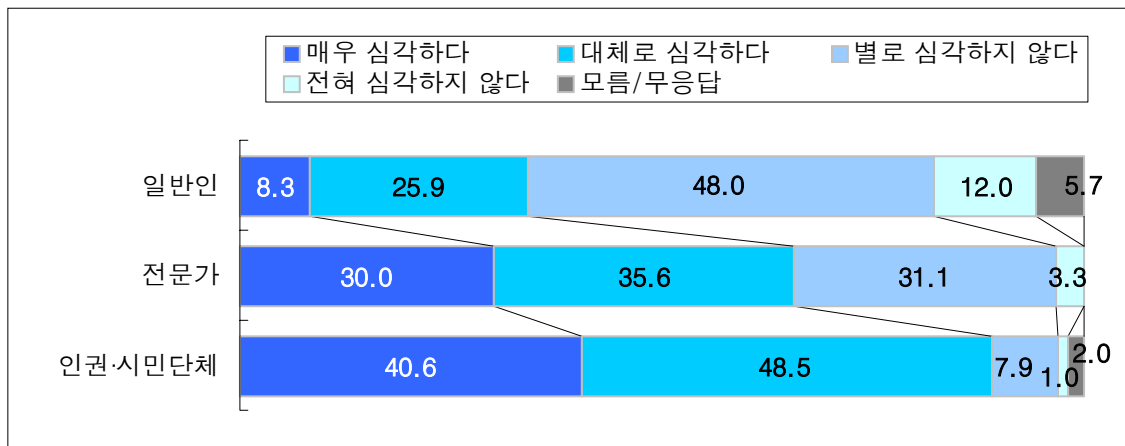
▣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일반인의 34.2%, 전문가의 65.6%,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9.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34.2%만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0.0%만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4명 미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65.6%,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89.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전문가는 일반인보다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인권·시민단체보다는 그 인식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4-5〉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중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종교별로 볼 때 소수종교를 믿는 응답자들의 45.9%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5〉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함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12.0	48.0	60.0	25.9	8.3	34.2	5.7	100.0
성별									
남자	(626)	13.3	47.5	60.8	26.3	8.0	34.3	4.8	100.0
여자	(637)	10.7	48.5	59.2	25.6	8.6	34.2	6.6	100.0
연령									
15-19세	(103)	11.1	46.1	57.3	27.9	7.0	35.0	7.8	100.0
20대	(260)	10.2	41.2	51.3	33.2	10.0	43.2	5.5	100.0
30대	(290)	11.7	43.0	54.7	29.6	11.2	40.9	4.5	100.0
40대	(264)	11.3	52.9	64.1	23.9	7.9	31.8	4.1	100.0
50대이상	(346)	14.4	54.3	68.7	18.4	5.3	23.7	7.6	100.0
학력									
중학생	(32)	19.5	39.8	59.3	29.6	8.5	38.1	2.6	100.0
고등학생	(58)	9.0	49.0	58.0	26.4	6.4	32.8	9.2	100.0
대학생	(113)	8.2	44.9	53.1	30.1	10.7	40.8	6.2	100.0
중졸이하	(189)	14.0	58.9	73.0	14.7	4.8	19.5	7.6	100.0
고졸	(503)	13.9	47.0	60.9	25.0	7.4	32.4	6.7	100.0
대졸 이상	(367)	9.3	45.3	54.6	31.3	11.0	42.3	3.0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0.8	53.4	64.2	12.8	15.6	28.5	7.4	100.0
101-200만원	(272)	11.0	49.6	60.6	28.2	6.1	34.3	5.1	100.0
201-300만원	(388)	12.9	48.0	60.9	25.3	8.1	33.5	5.6	100.0
301-400만원	(257)	12.2	51.0	63.2	24.5	8.4	32.9	3.9	100.0
401만원이상	(156)	12.7	45.5	58.2	32.9	7.5	40.4	1.4	100.0
모름/무응답	(108)	10.5	36.8	47.3	25.8	9.9	35.7	17.0	100.0
종교									
기독교	(327)	9.2	54.8	64.0	24.4	6.1	30.5	5.6	100.0
불교	(325)	15.1	49.6	64.7	22.0	8.5	30.6	4.7	100.0
가톨릭	(103)	13.3	43.5	56.9	23.6	10.0	33.5	9.6	100.0
유교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다른 종교	(13)	37.5	16.6	54.1	22.8	23.1	45.9	0.0	100.0
없다	(494)	10.9	44.3	55.2	30.0	8.9	39.0	5.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6.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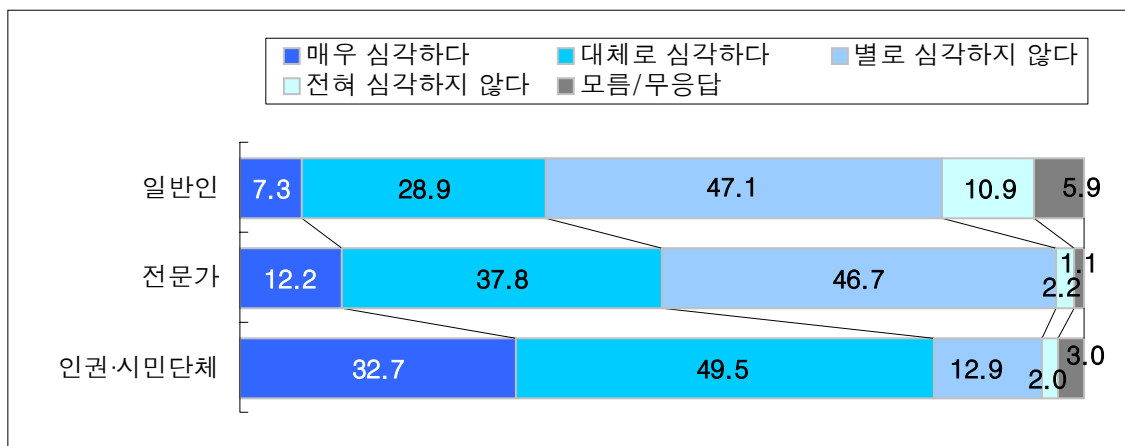
■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일반인의 36.1%, 전문가의 50.0%,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2.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36.1%만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7.9%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4명 미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는 50.0%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82.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과 전문가의 심각성 인식보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심각성 인식이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4-6〉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중에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4-6〉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함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10.9	47.1	57.9	28.9	7.3	36.1	5.9	100.0
성별									
남자	(626)	11.7	47.3	59.0	30.9	6.2	37.1	3.9	100.0
여자	(637)	10.0	46.9	56.9	26.9	8.3	35.1	7.9	100.0
연령									
15-19세	(103)	8.5	53.7	62.1	22.7	8.5	31.3	6.6	100.0
20대	(260)	7.8	40.8	48.6	38.9	8.6	47.5	4.0	100.0
30대	(290)	10.5	44.1	54.6	35.6	7.5	43.1	2.3	100.0
40대	(264)	10.7	49.9	60.7	25.9	7.3	33.2	6.1	100.0
50대이상	(346)	14.3	50.2	64.5	19.8	5.6	25.4	10.1	100.0
학력									
중학생	(32)	12.3	52.9	65.3	17.0	9.2	26.2	8.5	100.0
고등학생	(58)	8.2	58.9	67.1	22.2	6.8	29.0	3.9	100.0
대학생	(113)	7.3	38.2	45.5	32.8	14.4	47.2	7.3	100.0
중졸이하	(189)	13.0	53.7	66.7	15.3	4.5	19.7	13.6	100.0
고졸	(503)	12.4	47.7	60.2	28.2	6.2	34.3	5.5	100.0
대졸 이상	(367)	9.0	43.2	52.2	37.7	7.9	45.6	2.3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7.1	47.8	54.9	18.6	14.7	33.4	11.7	100.0
101-200만원	(272)	8.5	48.4	56.9	31.7	3.3	35.0	8.1	100.0
201-300만원	(388)	11.3	48.4	59.7	29.2	8.0	37.2	3.1	100.0
301-400만원	(257)	12.6	53.3	65.9	23.5	5.6	29.2	5.0	100.0
401만원이상	(156)	13.2	39.1	52.2	38.5	7.2	45.7	2.1	100.0
모름/무응답	(108)	10.7	35.1	45.8	27.2	12.8	40.0	14.2	100.0

7. 집회나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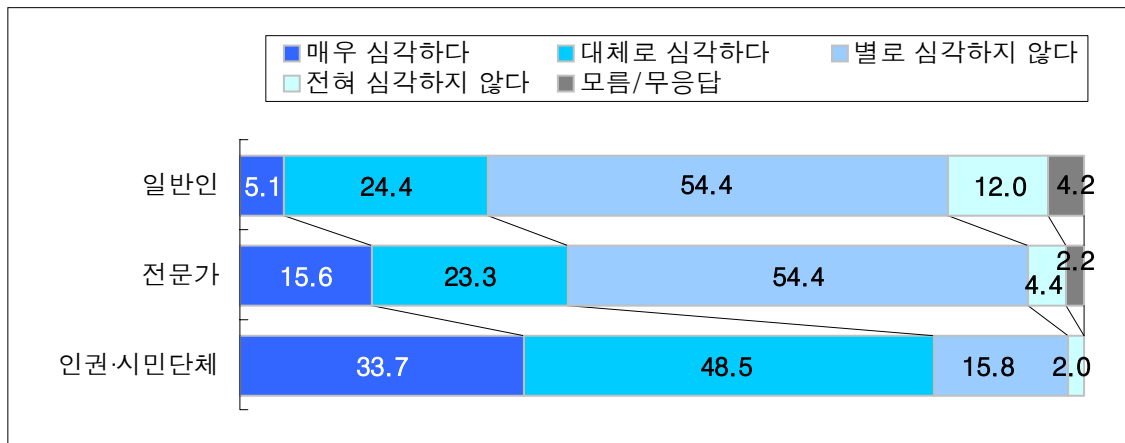
■ 집회나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일반인의 29.5%, 전문가의 3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2.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29.5%만이 집회나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6.3%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3명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역시 38.9%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82.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이나 전문가보다 집회나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7〉 집회나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중에서 집회나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직업별로는 학생(39.2%)과 사무직(36.3%)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7〉 집회나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함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12.0	54.4	66.3	24.4	5.1	29.5	4.2	100.0
성별									
남자	(626)	13.5	53.4	66.9	24.8	5.5	30.3	2.8	100.0
여자	(637)	10.5	55.3	65.8	24.1	4.6	28.7	5.5	100.0
연령									
15-19세	(103)	8.0	50.7	58.7	29.7	6.5	36.2	5.2	100.0
20대	(260)	10.4	49.0	59.4	31.1	6.1	37.2	3.4	100.0
30대	(290)	13.1	49.0	62.1	28.0	4.0	32.0	5.9	100.0
40대	(264)	14.0	55.2	69.3	23.3	4.0	27.3	3.5	100.0
50대이상	(346)	11.8	63.4	75.2	15.7	5.6	21.3	3.5	100.0
학력									
중학생	(32)	12.7	41.0	53.7	34.6	5.9	40.5	5.9	100.0
고등학생	(58)	8.9	54.1	63.1	26.0	8.2	34.1	2.8	100.0
대학생	(113)	10.8	46.5	57.3	28.7	9.6	38.3	4.4	100.0
중졸이하	(189)	12.2	66.3	78.5	14.8	1.8	16.5	5.0	100.0
고졸	(503)	12.7	55.4	68.1	21.3	5.1	26.3	5.5	100.0
대졸 이상	(367)	11.6	50.5	62.1	31.2	4.8	36.1	1.9	100.0
직업									
농/축/수산/광업	(14)	0.0	92.8	92.8	0.0	7.2	7.2	0.0	100.0
자영업	(334)	14.5	55.9	70.4	19.4	5.1	24.4	5.2	100.0
판매/서비스직종사자	(167)	15.3	52.4	67.7	19.6	3.7	23.4	8.9	100.0
생산/기능/노무직	(91)	9.5	61.2	70.7	24.0	2.3	26.3	3.0	100.0
사무직	(174)	7.9	55.2	63.1	31.5	4.8	36.3	0.5	100.0
전문/관리/경영직	(73)	11.1	51.7	62.8	25.4	7.7	33.1	4.1	100.0
주부	(163)	13.4	56.3	69.7	25.1	3.2	28.3	2.0	100.0
학생	(189)	9.8	46.5	56.3	30.4	8.8	39.2	4.5	100.0
무직/퇴직/기타	(57)	10.7	52.5	63.3	29.8	3.6	33.4	3.4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7.3	64.0	71.4	15.8	3.5	19.3	9.4	100.0
101-200만원	(272)	8.9	57.0	65.8	26.2	4.3	30.5	3.6	100.0
201-300만원	(388)	11.8	53.5	65.3	24.1	7.0	31.2	3.5	100.0
301-400만원	(257)	15.7	53.5	69.2	23.2	3.0	26.2	4.6	100.0
401만원이상	(156)	15.7	53.5	69.2	23.6	6.0	29.5	1.2	100.0
모름/무응답	(108)	9.7	47.0	56.7	31.6	4.7	36.3	7.0	100.0

8.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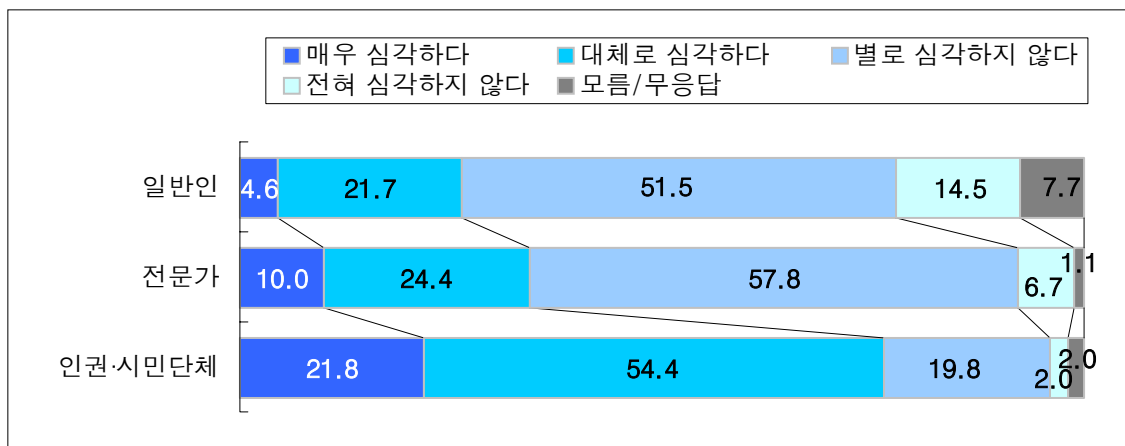
▣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일반인의 26.2%, 전문가의 34.4%,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76.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26.2%만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6.0%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3명 미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역시 34.4%로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76.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이나 전문가보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8개 인권침해 문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심각성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림4-8〉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중에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대학생은 33.8%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4-8〉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함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14.5	51.6	66.0	21.7	4.6	26.2	7.7	100.0
성별									
남자	(626)	15.6	50.7	66.3	23.3	4.2	27.5	6.2	100.0
여자	(637)	13.3	52.5	65.8	20.1	4.9	25.0	9.3	100.0
연령									
15-19세	(103)	12.4	51.3	63.7	22.2	4.4	26.5	9.7	100.0
20대	(260)	14.0	49.4	63.5	26.5	5.8	32.3	4.3	100.0
30대	(290)	14.2	49.5	63.7	25.0	5.0	30.0	6.3	100.0
40대	(264)	15.1	52.9	68.0	21.6	3.6	25.1	6.8	100.0
50대이상	(346)	15.2	54.0	69.1	15.1	4.1	19.2	11.6	100.0
학력									
중학생	(32)	19.1	51.0	70.1	12.2	6.0	18.2	11.7	100.0
고등학생	(58)	8.6	56.1	64.7	25.1	4.4	29.5	5.8	100.0
대학생	(113)	13.3	45.6	58.9	26.7	7.1	33.8	7.3	100.0
중졸이하	(189)	16.5	53.8	70.3	15.9	1.1	17.0	12.6	100.0
고졸	(503)	16.6	51.2	67.8	19.8	4.2	23.9	8.3	100.0
대졸 이상	(367)	11.4	52.1	63.5	26.0	6.0	31.9	4.6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4.3	51.2	65.5	21.0	3.8	24.8	9.7	100.0
101-200만원	(272)	11.3	52.3	63.6	22.6	3.6	26.1	10.3	100.0
201-300만원	(388)	14.0	52.7	66.7	21.8	5.0	26.8	6.5	100.0
301-400만원	(257)	17.2	53.7	70.9	19.3	3.5	22.9	6.2	100.0
401만원이상	(156)	16.3	53.4	69.7	20.5	6.5	26.9	3.4	100.0
모름/무응답	(108)	15.0	38.4	53.4	26.5	5.7	32.1	14.5	100.0

제2절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구제수단

1.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

■ 일반인은 군대(74.2%), 경찰(72.8%), 검찰(71.8%), 국가정보원(70.2%) 등의 순으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91.1%), 군대(87.8%), 국가정보원(87.8%), 검찰(82.2%) 등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군대(96.0%),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94.1%), 검찰(92.1%), 국가정보원(91.1%) 등의 순으로 인권침해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일반인의 경우는 군대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7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찰(72.8%), 검찰(71.8%), 국가정보원(7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 등 언론기관(23.9%), 기업체(37.7%)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전문가의 경우는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1.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찰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68.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방송 등 언론기관(20.0%), 기업체(52.2%)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을 보여 일반인 응답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도 군대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6.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일반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4.1%로 높고, 경찰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1.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일반인보다는 전문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초·중·고등학교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75.2%로 가장 낮게 나타나 다른 응답자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일반인보다는 전문가가 각 기관에서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가보다는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9〉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비교(일반인,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단위: %)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군대	74.2	87.8	96.0
경찰	72.8	68.9	81.2
검찰	71.8	82.2	92.1
국가정보원	70.2	87.8	91.1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69.5	91.1	94.1
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생활시설	55.5	64.4	81.2
초중고등학교	46.7	68.9	75.2
기업체	37.7	52.2	78.2
방송 등 언론기관	23.9	50.0	83.2

2. 효과적인 구제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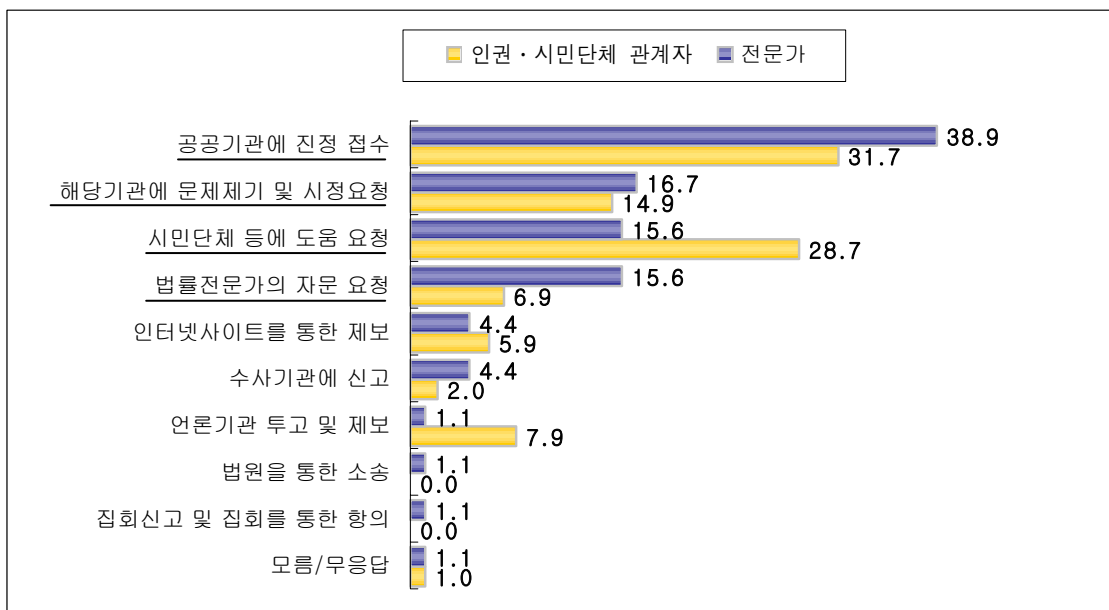
■ 전문가는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38.9%),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요청(16.7%), 인권·시민단체 등에 도움 요청(15.6%), 법률전문가의 자문 요청(15.6%) 등의 순으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시한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31.7%), 인권·시민단체 등에 도움 요청(28.7%),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요청(14.9%), 법률전문가의 자문 요청(6.9%) 등의 순으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시하였다.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는, 전문가의 38.9%가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16.7%)’, ‘인권·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15.6%)’,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도 전문가와 같이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31.7%)’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인권·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28.7%)’이라는 응답이 전문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언론기관에 투고 및 제보(7.9%)’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전문가 의견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림4-9〉 효과적인 구제수단(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단위: %)



제3절 직접적인 인권침해의 경험과 대응

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 응답자 1,263명 중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30명의 응답자는 경험 후의 대응으로,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8명)’,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 자문(5명)’, ‘인권·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3명)’,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3명)’,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2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2명)’ 등이 있으며, 14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3%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7.7%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8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3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9명이다.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40대(3.1%)와 20대(2.2%)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2.5%)과 생산/기능/노무직(2.2%)이 높게 나타났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30명의 응답자는 경험 후의 대응으로,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을 하였다는 응답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였다는 응답이 5명,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응답과 ‘인권·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3명으로 나타났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 30명 중 14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4-10〉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이 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4	0.2	0.7	2.3	97.7	100.0
성별							
남자	(626)	1.9	0.0	1.2	3.1	96.9	100.0
여자	(637)	1.0	0.5	0.1	1.5	98.5	100.0
연령							
15-19세	(103)	0.8	0.0	0.8	1.6	98.4	100.0
20대	(260)	2.2	0.0	0.0	2.2	97.8	100.0
30대	(290)	0.4	0.6	2.0	3.0	97.0	100.0
40대	(264)	3.1	0.4	0.4	3.8	96.2	100.0
50대이상	(346)	0.6	0.0	0.3	0.9	99.1	100.0
학력							
중학생	(32)	2.7	0.0	0.0	2.7	97.3	100.0
고등학생	(58)	0.0	0.0	1.4	1.4	98.6	100.0
대학생	(113)	0.9	0.0	0.0	0.9	99.1	100.0
중졸이하	(189)	1.1	0.0	0.0	1.1	98.9	100.0
고졸	(503)	2.4	0.4	0.9	3.7	96.3	100.0
대졸 이상	(367)	0.6	0.2	0.8	1.6	98.4	100.0
직업							
농/축/수산/광업	(14)	0.0	0.0	0.0	0.0	100.0	100.0
자영업	(334)	2.5	0.3	0.3	3.1	96.9	100.0
판매/서비스직종사자	(167)	1.1	0.0	0.0	1.1	98.9	100.0
생산/기능/노무직	(91)	2.2	0.0	1.1	3.3	96.7	100.0
사무직	(174)	1.1	0.5	0.5	2.2	97.8	100.0
전문/관리/경영직	(73)	1.5	0.0	2.7	4.2	95.8	100.0
주부	(163)	0.0	0.6	0.0	0.6	99.4	100.0
학생	(189)	1.0	0.0	0.4	1.4	98.6	100.0
무직/퇴직/기타	(57)	1.7	0.0	4.9	6.6	93.4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0.0	0.0	1.2	1.2	98.8	100.0
101-200만원	(272)	1.6	0.0	0.3	1.9	98.1	100.0
201-300만원	(388)	1.8	0.5	0.4	2.7	97.3	100.0
301-400만원	(257)	1.2	0.0	0.8	2.0	98.0	100.0
401만원이상	(156)	2.5	0.6	0.6	3.6	96.4	100.0
모름/무응답	(108)	0.0	0.0	1.8	1.8	98.2	100.0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을 하였다는 응답자 8명 중 2명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였으며, '변호사 등 법률 자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인권·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을 하였다는 응답자 중 1명씩이 만족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밖에 대응을 하였다는 응답자는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낮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표4-11〉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1)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8)	2	6	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5)	1	4	0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3)	0	3	0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3)	1	2	0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2)	0	2	0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2)	0	2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14)	-	-	-
합 계	(37)	-	-	-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4명은 그 이유에 대해, 9명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2명)',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2명)'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4-12〉 인권침해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타
전 체	(14)	2	2	9	1

1)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대응방법을 중복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전체 경험자 수가 30명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응방법 응답자의 합계가 7명 많은 37명이 되었음.

2.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 응답자 1,263명 중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0.5%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6명은 경험 후의 대응으로,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2명)’,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 자문(1명)’, ‘인권·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1명)’,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1명)’, ‘언론기관에 투고 및 제보(1명)’ 등이 있으며, 1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0.5%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9.5%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3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명이다.

〈표4-13〉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이외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0.1	0.2	0.2	0.5	99.5	100.0
성별							
남자	(626)	0.2	0.2	0.3	0.7	99.3	100.0
여자	(637)	0.0	0.3	0.0	0.3	99.7	100.0
연령							
15-19세	(103)	0.0	0.0	0.0	0.0	100.0	100.0
20대	(260)	0.4	0.0	0.4	0.8	99.2	100.0
30대	(290)	0.0	0.3	0.3	0.7	99.3	100.0
40대	(264)	0.0	0.8	0.0	0.8	99.2	100.0
50대이상	(346)	0.0	0.0	0.0	0.0	100.0	100.0
학력							
중학생	(32)	0.0	0.0	0.0	0.0	100.0	100.0
고등학생	(58)	0.0	0.0	0.0	0.0	100.0	100.0
대학생	(113)	0.9	0.0	0.0	0.9	99.1	100.0
중졸이하	(189)	0.0	0.0	0.0	0.0	100.0	100.0
고졸	(503)	0.0	0.2	0.2	0.4	99.6	100.0
대졸 이상	(367)	0.0	0.6	0.3	0.9	99.1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0.0	0.0	0.0	0.0	100.0	100.0
101-200만원	(272)	0.0	0.0	0.0	0.0	100.0	100.0
201-300만원	(388)	0.0	0.0	0.0	0.0	100.0	100.0
301-400만원	(257)	0.0	0.4	0.8	1.2	98.8	100.0
401만원이상	(156)	0.6	1.3	0.0	2.0	98.0	100.0
모름/무응답	(108)	0.0	0.0	0.0	0.0	100.0	100.0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6명의 응답자는 경험 후의 대응으로,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자가 2명이며, 그 밖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인권·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 '언론기관에 투고 및 제보'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 6명 중 1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언론기관에 투고 및 제보'하였다는 응답자 1명 이외에는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낮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표4-14〉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²⁾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2)	0	2	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1)	0	1	0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1)	0	1	0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	0	1	0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1)	1	0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1)	-	-	-
합 계	(7)	-	-	-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명은 그 이유에 대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다.

2)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대응방법을 중복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전체 경험자 수가 6명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응방법 응답자의 합계가 1명 많은 7명이 되었음.

3. 개인정보 유출

□ 응답자 1,263명 중 개인정보 유출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40명의 경험 후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10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9명)’, ‘수사기관에 신고(2명)’ 등이 있으며, 19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3.3%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6.8%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30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8명이다.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4.8%)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학력별로는 대학생(4.3%)이 높게 나타났다.

〈표4-15〉 개인정보 유출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2.4	0.2	0.7	3.3	96.8	100.0
성별							
남자	(626)	3.0	0.3	0.3	3.6	96.7	100.0
여자	(637)	1.8	0.1	1.1	3.1	96.9	100.0
연령							
15-19세	(103)	1.4	0.0	0.0	1.4	98.6	100.0
20대	(260)	4.8	0.0	1.1	5.9	94.1	100.0
30대	(290)	1.7	0.3	0.6	2.7	97.3	100.0
40대	(264)	3.6	0.7	1.6	5.9	94.9	100.0
50대이상	(346)	0.6	0.0	0.0	0.6	99.4	100.0
학력							
중학생	(32)	0.0	0.0	0.0	0.0	100.0	100.0
고등학생	(58)	2.5	0.0	0.0	2.5	97.5	100.0
대학생	(113)	4.3	0.0	0.9	5.1	94.9	100.0
중졸이하	(189)	0.0	0.0	0.0	0.0	100.0	100.0
고졸	(503)	2.4	0.2	1.2	3.8	96.2	100.0
대졸 이상	(367)	3.2	0.5	0.5	4.3	96.3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2.4	0.0	1.2	3.6	96.4	100.0
101-200만원	(272)	1.1	0.3	0.3	1.8	98.2	100.0
201-300만원	(388)	2.0	0.3	1.3	3.6	97.0	100.0
301-400만원	(257)	3.8	0.4	0.4	4.6	95.4	100.0
401만원이상	(156)	4.3	0.0	0.6	4.8	95.2	100.0
모름/무응답	(108)	0.9	0.0	0.0	0.9	99.1	100.0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한 40명의 응답자는 경험 후의 대응으로,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10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는 응답이 9명으로 나타났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응답이 2명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한 응답자 40명 중 19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응답자 2명 중 1명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자 10명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는 응답자 9명 중 각각 1명만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4-16>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10)	1	9	0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9)	1	8	0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2)	1	1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19)	-	-	-
합 계	(40)	-	-	-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9명은 그 이유에 대해, 9명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5명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라고 응답하였다.

<표4-17> 인권침해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타
전 체	(19)	5	4	4	9	1

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 응답자 1,263명 중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6%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경험자 21명의 경험 후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5명)',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2명)', '수사기관에 신고(2명)',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1명)' 등이 있으며, 10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6%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8.4%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6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4명이다.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21명의 응답자는 경험 후의 대응으로,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5명,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는 응답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2명이며,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는 응답이 1명으로 나타났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 21명 중 10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는 2명 중 1명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5명 중에서는 1명만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2명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는 1명은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았다.

〈표4-18〉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이 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2	0.1	0.3	1.6	98.4	100.0
성별							
남자	(626)	1.6	0.2	0.3	2.0	98.0	100.0
여자	(637)	0.9	0.0	0.4	1.3	98.7	100.0
연령							
15-19세	(103)	0.0	0.0	1.0	1.0	99.0	100.0
20대	(260)	2.2	0.0	0.5	2.7	97.3	100.0
30대	(290)	1.6	0.0	0.4	2.0	98.0	100.0
40대	(264)	0.3	0.4	0.0	0.7	99.3	100.0
50대이상	(346)	1.2	0.0	0.3	1.5	98.5	100.0
학력							
중학생	(32)	0.0	0.0	0.0	0.0	100.0	100.0
고등학생	(58)	0.0	0.0	1.7	1.7	98.3	100.0
대학생	(113)	2.6	0.0	1.0	3.6	96.4	100.0
중졸이하	(189)	1.6	0.0	0.0	1.6	98.4	100.0
고졸	(503)	1.2	0.2	0.2	1.6	98.4	100.0
대졸 이상	(367)	1.0	0.0	0.3	1.3	98.7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2.3	0.0	1.1	3.3	96.7	100.0
101-200만원	(272)	2.9	0.0	0.8	3.8	96.2	100.0
201-300만원	(388)	0.7	0.0	0.0	0.7	99.3	100.0
301-400만원	(257)	0.4	0.4	0.0	0.8	99.2	100.0
401만원이상	(156)	0.6	0.0	0.0	0.6	99.4	100.0
모름/무응답	(108)	0.9	0.0	0.9	1.8	98.2	100.0

〈표4-19〉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5)	1	4	0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2)	1	1	0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2)	0	2	0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1)	0	1	0
기타	(1)	1	0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10)	-	-	-
합 계	(21)	-	-	-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0명은 그 이유에 대해, 5명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2명)',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2명)',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1명)'라는 응답자도 있다.

5.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 응답자 1,263명 중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30명의 경험 후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2명)’, ‘수사기관에 신고(1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1명)’, ‘기타(2명)’ 등이 있으며, 24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3%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7.7%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9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0명이다.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2.6%)의 경우 직접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30명의 응답자는 경험 후의 대응으로,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2명이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응답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는 응답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 29명 중 24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기타’라는 2명 중 1명만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외에 모든 응답자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았다.

〈표4-20〉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이 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5	0.1	0.8	2.3	97.7	100.0
성별							
남자	(626)	1.3	0.1	0.8	2.2	97.8	100.0
여자	(637)	1.6	0.0	0.8	2.4	97.6	100.0
연령							
15-19세	(103)	1.5	0.0	0.0	1.5	98.5	100.0
20대	(260)	2.7	0.0	2.2	4.9	95.1	100.0
30대	(290)	2.5	0.3	0.3	3.1	96.9	100.0
40대	(264)	0.9	0.0	1.1	2.0	98.0	100.0
50대이상	(346)	0.3	0.0	0.0	0.3	99.7	100.0
학력							
중학생	(32)	0.0	0.0	0.0	0.0	100.0	100.0
고등학생	(58)	2.6	0.0	0.0	2.6	97.4	100.0
대학생	(113)	1.8	0.0	0.9	2.7	97.3	100.0
중졸이하	(189)	0.0	0.0	0.0	0.0	100.0	100.0
고졸	(503)	1.5	0.2	0.3	2.1	97.9	100.0
대졸 이상	(367)	2.1	0.0	1.9	4.0	96.0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2	0.0	0.0	1.2	98.8	100.0
101-200만원	(272)	1.6	0.3	0.6	2.6	97.4	100.0
201-300만원	(388)	1.1	0.0	0.5	1.6	98.4	100.0
301-400만원	(257)	1.6	0.0	0.7	2.3	97.7	100.0
401만원이상	(156)	1.9	0.0	0.7	2.6	97.4	100.0
모름/무응답	(108)	1.9	0.0	2.8	4.7	95.3	100.0
종교							
기독교	(327)	1.4	0.0	0.3	1.7	98.3	100.0
불교	(325)	1.1	0.3	0.9	2.3	97.7	100.0
가톨릭	(103)	1.8	0.0	1.0	2.8	97.2	100.0
유교	(1)	0.0	0.0	0.0	0.0	100.0	100.0
다른 종교	(13)	0.0	0.0	0.0	0.0	100.0	100.0
없다	(494)	1.7	0.0	1.0	2.7	97.3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표4-21〉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2)	0	2	0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1)	0	1	0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1)	0	1	0
기타	(2)	1	1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24)	-	-	-
합 계	(30)	-	-	-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24명은 그 이유에 대해, 16명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6명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라고 응답하였다.

〈표4-22〉 인권침해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타
전 체	(24)	6	1	2	16	1

6.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 응답자 1,263명 중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다.
- 인권침해를 경험한 22명의 경험 후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6명)’, ‘수사기관에 신고(1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1명)’, ‘기타(2명)’ 등이 있으며, 12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7%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8.3%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8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명이다.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0.9%)보다 남자(2.5%)가, 연령별로는 20대(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22명의 응답자는 경험 후의 대응으로,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6명이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응답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는 응답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 22명 중 12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모든 응답자들이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매우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표4-23〉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이 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4	0.1	0.2	1.7	98.3	100.0
성별							
남자	(626)	2.1	0.2	0.3	2.5	97.5	100.0
여자	(637)	0.8	0.1	0.0	0.9	99.1	100.0
연령							
15-19세	(103)	0.8	0.0	0.0	0.8	99.2	100.0
20대	(260)	1.1	0.0	0.4	1.5	98.5	100.0
30대	(290)	3.5	0.6	0.3	4.4	95.6	100.0
40대	(264)	1.2	0.0	0.0	1.2	98.8	100.0
50대이상	(346)	0.3	0.0	0.0	0.3	99.7	100.0
학력							
중학생	(32)	0.0	0.0	0.0	0.0	100.0	100.0
고등학생	(58)	1.5	0.0	0.0	1.5	98.5	100.0
대학생	(113)	3.4	0.0	0.9	4.3	95.7	100.0
중졸이하	(189)	0.0	0.0	0.0	0.0	100.0	100.0
고졸	(503)	0.6	0.4	0.0	1.0	99.0	100.0
대졸 이상	(367)	2.8	0.0	0.3	3.0	97.0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0.0	0.0	0.0	0.0	100.0	100.0
101-200만원	(272)	1.1	0.0	0.0	1.1	98.9	100.0
201-300만원	(388)	2.3	0.0	0.3	2.6	97.4	100.0
301-400만원	(257)	0.4	0.4	0.4	1.1	98.9	100.0
401만원이상	(156)	1.9	0.6	0.0	2.5	97.5	100.0
모름/무응답	(108)	1.9	0.0	0.0	1.9	98.1	100.0

〈표4-24〉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6)	0	6	0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1)	0	1	0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1)	0	1	0
기타	(2)	0	2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12)	-	-	-
합 계	(22)	-	-	-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2명은 그 이유에 대해, 9명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2명은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하였다.

〈표4-25〉 인권침해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 체	(12)	1	2	9

제4절 간접적인 인권침해의 경험

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 응답자 1,263명 중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5.0%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5.0%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5.0%로 응답자 10명 중 2명 미만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10.2%)보다는 남자(19.8%)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연령별로는 30대(20.6%)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4-26〉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5.0	85.0	100.0
성별	남자	(626)	19.8	80.2	100.0
	여자	(637)	10.2	89.8	100.0
연령	15-19세	(103)	9.5	90.5	100.0
	20대	(260)	15.1	84.9	100.0
	30대	(290)	20.6	79.4	100.0
	40대	(264)	15.8	84.2	100.0
	50대 이상	(346)	11.1	88.9	100.0
학력	중학생	(32)	11.1	88.9	100.0
	고등학생	(58)	8.9	91.1	100.0
	대학생	(113)	17.1	82.9	100.0
	중졸이하	(189)	7.5	92.5	100.0
	고졸	(503)	15.1	84.9	100.0
	대졸 이상	(367)	19.3	80.7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9.3	90.7	100.0
	101-200만원	(272)	15.1	84.9	100.0
	201-300만원	(388)	18.0	82.0	100.0
	301-400만원	(257)	14.8	85.2	100.0
	401만원이상	(156)	16.6	83.4	100.0
	모름/무응답	(108)	6.1	93.9	100.0

2.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 응답자 1,263명 중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4.8%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4.8%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5.2%로 응답자 10명 중 2명 미만이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11.0%)보다는 남자(18.7%)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27〉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4.8	85.2	100.0
성별	남자	(626)	18.7	81.3	100.0
	여자	(637)	11.0	89.0	100.0
연령	15-19세	(103)	18.8	81.2	100.0
	20대	(260)	18.7	81.3	100.0
	30대	(290)	18.4	81.6	100.0
	40대	(264)	13.6	86.4	100.0
	50대 이상	(346)	8.6	91.4	100.0
학력	중학생	(32)	18.9	81.1	100.0
	고등학생	(58)	20.9	79.1	100.0
	대학생	(113)	18.9	81.1	100.0
	중졸이하	(189)	5.3	94.7	100.0
	고졸	(503)	12.9	87.1	100.0
	대졸 이상	(367)	19.7	80.3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8.4	91.6	100.0
	101-200만원	(272)	15.6	84.4	100.0
	201-300만원	(388)	16.5	83.5	100.0
	301-400만원	(257)	13.5	86.5	100.0
	401만원이상	(156)	17.1	82.9	100.0
	모름/무응답	(108)	11.5	88.5	100.0

3. 개인정보 유출

▣ 응답자 1,263명 중 개인정보 유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9.7%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9.7%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0.3%로 응답자 10명 중 2명 정도가 개인정보 유출을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15.0%)보다는 남자(24.4%)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28〉 개인정보 유출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9.7	80.3	100.0
성별	남자	(626)	24.4	75.6	100.0
	여자	(637)	15.0	85.0	100.0
연령	15-19세	(103)	28.4	71.6	100.0
	20대	(260)	26.2	73.8	100.0
	30대	(290)	21.0	79.0	100.0
	40대	(264)	20.2	79.8	100.0
	50대이상	(346)	10.7	89.3	100.0
학력	중학생	(32)	33.1	66.9	100.0
	고등학생	(58)	28.4	71.6	100.0
	대학생	(113)	26.2	73.8	100.0
	중졸이하	(189)	5.9	94.1	100.0
	고졸	(503)	16.5	83.5	100.0
	대졸 이상	(367)	26.6	73.4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2.1	87.9	100.0
	101-200만원	(272)	18.9	81.1	100.0
	201-300만원	(388)	19.9	80.1	100.0
	301-400만원	(257)	23.4	76.6	100.0
	401만원이상	(156)	23.0	77.0	100.0
	모름/무응답	(108)	13.3	86.7	100.0

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 응답자 1,263명 중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4.0%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4.0%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6.0%로 응답자 10명 중 2명 미만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17.1%)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29〉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4.0	86.0	100.0
성별	남자	(626)	16.8	83.2	100.0
	여자	(637)	11.2	88.8	100.0
연령	15-19세	(103)	13.7	86.3	100.0
	20대	(260)	17.1	82.9	100.0
	30대	(290)	15.2	84.8	100.0
	40대	(264)	13.7	86.3	100.0
	50대이상	(346)	10.9	89.1	100.0
학력	중학생	(32)	10.4	89.6	100.0
	고등학생	(58)	14.7	85.3	100.0
	대학생	(113)	18.9	81.1	100.0
	중졸이하	(189)	5.3	94.7	100.0
	고졸	(503)	14.5	85.5	100.0
	대졸 이상	(367)	16.3	83.7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3.3	86.7	100.0
	101-200만원	(272)	14.3	85.7	100.0
	201-300만원	(388)	16.0	84.0	100.0
	301-400만원	(257)	12.8	87.2	100.0
	401만원이상	(156)	16.4	83.6	100.0
	모름/무응답	(108)	5.4	94.6	100.0

5.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 응답자 1,263명 중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2.9%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2.9%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7.1%로 응답자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17.3%)의 간접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30〉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2.9	87.1	100.0
성별				
남자	(626)	15.2	84.8	100.0
여자	(637)	10.7	89.3	100.0
연령				
15-19세	(103)	15.0	85.0	100.0
20대	(260)	19.4	80.6	100.0
30대	(290)	15.1	84.9	100.0
40대	(264)	12.0	88.0	100.0
50대이상	(346)	6.3	93.7	100.0
학력				
중학생	(32)	13.1	86.9	100.0
고등학생	(58)	17.3	82.7	100.0
대학생	(113)	16.9	83.1	100.0
중졸이하	(189)	3.7	96.3	100.0
고졸	(503)	10.8	89.2	100.0
대졸 이상	(367)	18.6	81.4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9.5	90.5	100.0
101-200만원	(272)	13.3	86.7	100.0
201-300만원	(388)	12.5	87.5	100.0
301-400만원	(257)	12.5	87.5	100.0
401만원이상	(156)	15.6	84.4	100.0
모름/무응답	(108)	13.3	86.7	100.0

6.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 응답자 1,263명 중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2.6%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2.6%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7.4%로 응답자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생(22.2%)과 고등학생(20.0%)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4-31〉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2.6	87.4	100.0
성별	남자	(626)	15.8	84.2	100.0
	여자	(637)	9.4	90.6	100.0
연령	15-19세	(103)	19.2	80.8	100.0
	20대	(260)	14.0	86.0	100.0
	30대	(290)	17.7	82.3	100.0
	40대	(264)	9.3	90.7	100.0
	50대이상	(346)	7.8	92.2	100.0
학력	중학생	(32)	22.2	77.8	100.0
	고등학생	(58)	20.0	80.0	100.0
	대학생	(113)	14.3	85.7	100.0
	중졸이하	(189)	2.2	97.8	100.0
	고졸	(503)	12.1	87.9	100.0
	대졸 이상	(367)	16.0	84.0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4.5	95.5	100.0
	101-200만원	(272)	13.2	86.8	100.0
	201-300만원	(388)	15.0	85.0	100.0
	301-400만원	(257)	11.6	88.4	100.0
	401만원이상	(156)	15.0	85.0	100.0
	모름/무응답	(108)	7.4	92.6	100.0

제3장 차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결과 요약 >

1. 차별의 심각성 인식 및 경험비율

- 차별 사안별 심각성과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해 일반인보다는 전문가가, 전문가보다는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임.

일반인과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장애로 인한 차별'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보다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차이를 보임.

한편, '종교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모두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차별 사안별 심각성>

(단위:%)

	일반인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79.0	94.4	100.0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75.6	90.0	99.0
장애로 인한 차별	71.7	94.4	100.0
나이로 인한 차별	68.6	82.2	93.1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	52.2	92.2	95.0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49.7	78.9	92.1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48.0	85.6	95.0
성별로 인한 차별	43.6	80.0	91.1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42.4	74.4	78.2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41.7	55.6	81.2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	39.8	66.7	87.1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37.2	72.2	87.1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	35.4	70.0	83.2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	29.2	67.8	86.1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	29.2	67.8	86.1
종교로 인한 차별	20.6	42.2	74.3

■ 일반인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는, 경험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특히, 간접경험비율은 심각성 인식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성 인식의 한 요인으로 보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은 심각성 인식과 직접경험, 간접경험이 모두 높은 차별 유형인 반면, ‘장애로 인한 차별’은 심각성 인식과 간접경험은 높으나 직접경험비율은 낮은 차별 유형임.

‘성별로 인한 차별’의 경우 직접경험과 간접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심각성 인식은 낮은 수준을 보임.

〈차별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비율〉

(단위:%)

	심각성	경험 비율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79.0	5.4	38.5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75.6	5.0	36.7
장애로 인한 차별	71.7	2.1	29.8
나이로 인한 차별	68.6	7.1	39.1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	52.2	0.3	14.9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49.7	2.5	20.8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48.0	0.2	10.6
성별로 인한 차별	43.6	5.1	25.6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42.4	2.0	17.9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41.7	1.6	19.1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	39.8	0.6	14.8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37.2	1.4	14.5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	35.4	0.9	14.9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	29.2	0.5	11.2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	29.2	0.4	18.0
종교로 인한 차별	20.6	1.1	12.5

■ 일반인의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을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 비율이 모두 높아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중점개선영역'에는, △비정규직 △학력/학벌 △장애 △나이 등의 차별이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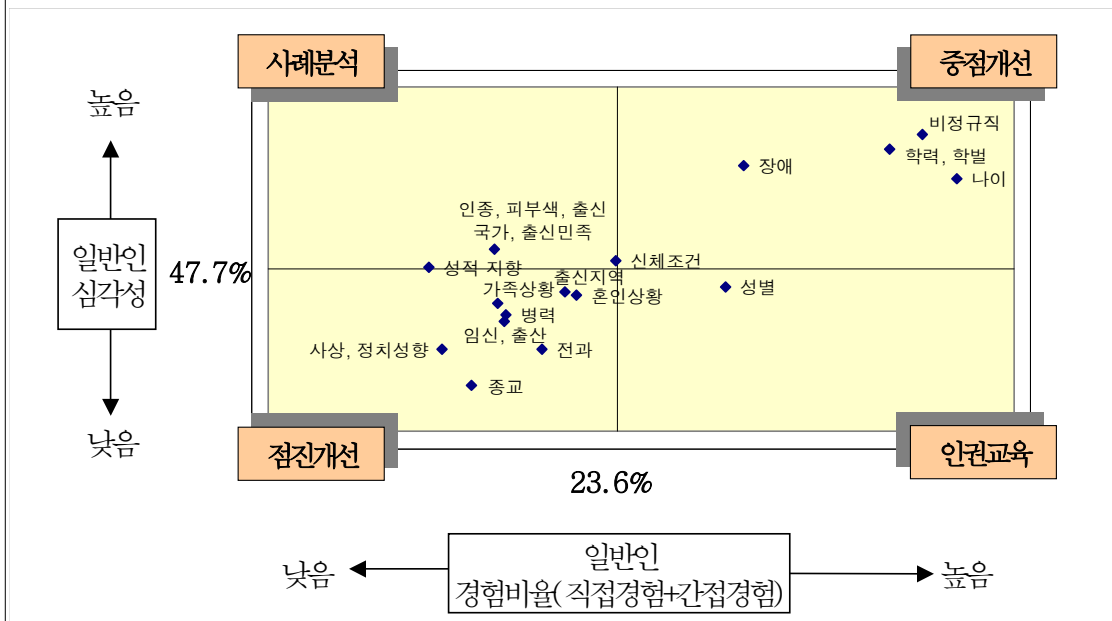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 비율이 모두 낮아 즉각적인 대안보다는 장기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점진개선영역'에는, △출신지역 △혼인상황 △가족상황 △병력 △임신 및 출산 △사상 및 정치성향 △전과 △종교 등의 차별이 해당함.

심각성 인식은 낮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높아 일상화된 차별로 보이는 '사례분석영역'에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이 해당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연구가 요구됨.

심각성 인식은 높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낮아 소수자 문제로 보이는 '사례분석영역'에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이 해당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연구가 요구됨.

※ 성적 지향은 '점진개선영역'과 '사례분석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개별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차별 사안으로 볼 수 있음.

〈차별 사안별 심각성과 경험비율 비교-일반인〉



* 일반인의 경험비율은 직접경험 비율과 간접경험비율을 합한 값을 활용함.



2. 기관별 및 유형별 심각성

▣ 기관별 심각성

차별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심각하게 차별을 경험한 기관을 묻는 질문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제외한 모든 차별에서 '기업체'라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행정기관'이라는 응답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특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나이로 인한 차별',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등은 기업으로부터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50% 이상의 높은 수준임.

한편, '병력으로 인한 차별'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은 '병원이나 요양시설'로부터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종교로 인한 차별'의 경우는 '학교'로부터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은 '대중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다른 차별 사안과 차이를 보임.

<기관별 심각성-차별 경험자>

(단위:%)

	응답수 (명)	기업체	행정기관	병원이나 요양시설	대중서비스 제공기관	학교	기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69	71.1	11.6	0.0	9.0	1.4	6.9
나이로 인한 차별	88	67.1	7.6	2.3	5.9	3.0	14.1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64	56.4	9.6	0.0	3.0	14.3	16.7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20	55.5	15.3	0.0	5.3	0.0	23.9
종교로 인한 차별	14	43.8	6.4	13.5	0.0	15.0	21.3
성별로 인한 차별	65	40.7	12.5	3.1	7.9	9.6	26.2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24	40.4	15.8	4.2	4.1	3.9	31.6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31	37.7	3.0	3.3	22.7	3.0	30.3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17	33.8	11.5	25.9	5.7	0.0	23.1
장애로 인한 차별	26	18.0	7.8	20.3	11.3	7.7	34.9

* 16가지 차별의 종류 중에서 직접경험자가 전체 응답자의 1%(12명)미만인 차별은 지나치게 사례 수가 적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한편,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차별문제가 가장 심각한 기관을 묻는 중복응답 질문에, '경찰', '군대', '검찰', '기업체' 등의 기관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차별 경험자들의 응답과 차이를 보임.

제1절 차별 사안별 심각성 인식

1. 성별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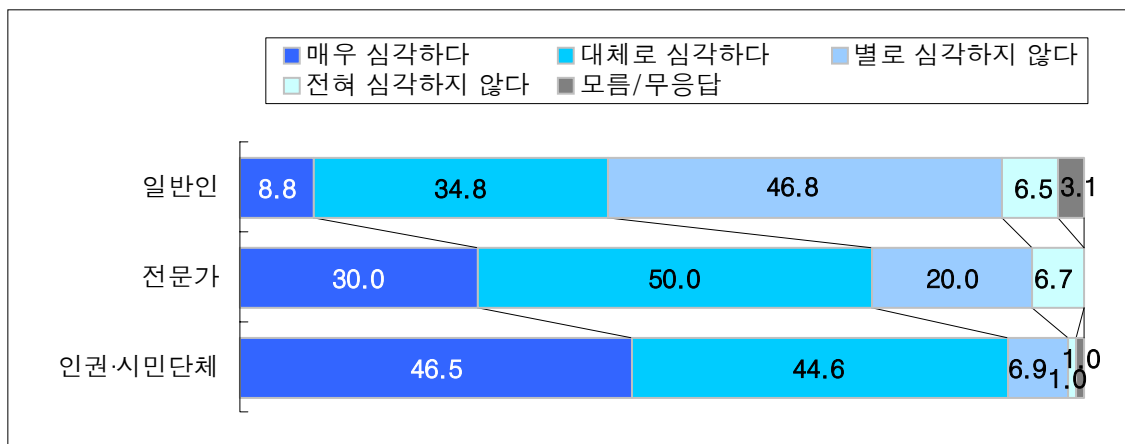
▣ 성별로 인한 차별에 대하여 일반인의 43.6%, 전문가의 80.0%,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1.9%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43.6%가 성별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3.3%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4명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80.0%,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91.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성별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1〉 성별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단위:%)



일반인 응답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38.5%)보다는 여자(48.6%)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는 행정기관이나 학교라는 응답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서 차별 경험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차별 심각성-전문가/인권·시민단체관계자>

(단위:%)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경찰	76.7	17.8	5.6	89.1	4.0	6.9
군대	70.0	24.4	5.6	85.1	9.9	5.0
검찰	67.8	26.7	5.6	80.2	8.9	10.9
기업체	63.3	34.4	2.2	84.2	11.9	4.0
행정기관	48.9	45.6	5.6	71.3	19.8	8.9
종교단체	40.0	52.2	7.8	51.5	37.6	10.9
학교	38.9	58.9	2.2	79.2	17.8	3.0
대중서비스 제공기관	21.1	76.7	2.2	53.5	39.6	6.9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18.9	77.8	3.3	42.6	45.5	11.9

■ 차별 유형별 심각성

직접적인 차별 경험자를 대상으로 심각하게 경험한 차별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 인한 차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병력으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차이를 보임.

특히, '종교로 인한 차별'과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입학이나 교육내용과 관련한 차별'을 심각하게 경험했다는 응답이, '장애로 인한 차별'과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 외에,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을, '병력으로 인한 차별' 경험자는 '행정기관 이용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차별 유형별 심각성-차별 경험자〉

(단위:%)

	응답수 (명)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입학이나 교육내용과 관련한 차별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	기타
나이로 인한 차별	88	71.3	9.4	2.2	7.8	1.2	8.1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64	45.3	19.9	0.0	10.2	1.6	23.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20	44.6	18.8	10.9	0.0	0	25.7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31	41.6	6.5	6.5	6.1	16.3	23.0
종교로 인한 차별	14	36.6	0.0	0.0	35.3	0.0	28.1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69	27.2	54.2	5.9	0.0	0	12.7
장애로 인한 차별	26	26.0	3.4	25.1	3.5	10.2	31.8
성별로 인한 차별	65	20.8	23.0	6.5	5.8	4.8	39.1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24	18.8	28.9	17.0	0.0	0	35.3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17	6.5	4.0	31.2	0.0	0	58.3

* 16가지 차별의 종류 중에서 직접경험자가 전체 응답자의 1%(12명)미만인 차별은 지나치게 사례 수가 적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한편,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중복으로 응답한 가장 심각한 차별 유형으로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과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별 경험자와 유사하지만,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차별 유형별 심각성-차별 경험자〉

(단위:%)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88.9	10.0	1.1	87.1	9.9	3.0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	86.7	12.2	1.1	91.1	6.9	2.0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	68.9	27.8	3.3	87.1	11.9	1.0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	52.2	46.7	1.1	80.2	16.8	3.0
입학이나 교육내용과 관련한 차별	35.6	63.3	1.1	61.4	29.7	8.9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차별	33.3	65.6	1.1	62.4	34.7	3.0
대중시설 이용과 관련한 차별	31.1	67.8	1.1	57.4	37.6	5.0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31.1	67.8	1.1	62.4	31.7	5.9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17.8	81.1	1.1	57.4	38.6	4.0



3. 차별 경험 시 대응방안 및 만족도

- ▣ 차별 사안별 차별 경험의 대응방안을 단순 합산한 결과 21.3%만이 구체적인 대응을 한 반면, 78.7%의 경험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이 5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가 20.5%로 높게 나타났음.

이 외에,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9.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5.1%)',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5.1%)',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3.8%)', '언론기관에 투고나 제보(2.6%)' 등의 대응이 있음.

대응방안별 만족수준에 대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4명 중 3명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26.2%)',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경험자의 대응이나 만족도와는 차이가 있음.

〈차별 경험 시 대응방안과 만족도〉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대응 유형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42명(53.8%)	11명(26.2%)	30명(71.4%)	1명(0.02%)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16명(20.5%)	3명(18.8%)	12명(75.0%)	1명(0.06%)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7명(9.0%)	1명(14.3%)	6명(85.7%)	0명(0.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4명(5.1%)	3명(75.0%)	0명(0.0%)	1명(25.0%)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4명(5.1%)	1명(25.0%)	2명(50.0%)	1명(25.0%)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3명(3.8%)	0명(0.0%)	3명(100.0%)	0명(0.0%)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2명(2.6%)	0명(0.0%)	1명(50.0%)	1명(50.0%)
	기타	17명(21.8%)	2명(11.8%)	15명(88.2%)	0명(0.0%)
소계		95명	19명(24.4%)	54명(69.2%)	5명(6.4%)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351명(78.7%)	-	-	-
합 계		446명	-	-	-



■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78.7%의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차별 사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특히,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과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구제수단의 효용성과 구제절차 및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됨.

〈차별 경험 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명)

	응답수 (명)	별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기타	모름/ 무응답
나이로 인한 차별	78	58	10	8	2	2	0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53	40	7	2	2	4	0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48	34	5	4	3	6	0
성별로 인한 차별	47	40	2	4	4	1	0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27	17	4	3	1	2	1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22	18	2	1	0	2	0
장애로 인한 차별	20	5	1	1	1	1	11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18	17	0	1	0	0	0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13	10	0	0	2	2	0
종교로 인한 차별	11	9	0	2	0	0	0
전 체	337	248 (73.6%)	31 (9.2%)	26 (7.7%)	15 (4.5%)	20 (5.9%)	12 (3.6%)



〈표5-1〉 성별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 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6.5	46.8	53.3	34.8	8.8	43.6	3.1	100.0
성별									
남자	(626)	7.7	51.3	59.0	31.7	6.7	38.5	2.5	100.0
여자	(637)	5.4	42.3	47.8	37.8	10.8	48.6	3.6	100.0
연령									
15-19세	(103)	3.8	32.0	35.8	45.0	16.4	61.3	2.9	100.0
20대	(260)	4.9	36.9	41.8	47.2	9.6	56.7	1.5	100.0
30대	(290)	6.7	43.8	50.5	35.9	11.2	47.1	2.4	100.0
40대	(264)	7.7	46.0	53.7	32.4	9.0	41.3	5.0	100.0
50대이상	(346)	7.6	61.7	69.3	23.3	3.9	27.2	3.5	100.0
학력									
중학생	(32)	4.2	33.7	37.8	46.9	15.3	62.2	0.0	100.0
고등학생	(58)	4.4	26.4	30.7	45.8	18.3	64.1	5.2	100.0
대학생	(113)	2.6	38.2	40.8	43.1	12.6	55.8	3.4	100.0
중졸이하	(189)	9.0	62.2	71.2	22.6	3.3	25.9	2.9	100.0
고졸	(503)	6.8	48.1	54.9	32.6	8.9	41.4	3.7	100.0
대졸 이상	(367)	6.7	44.1	50.8	38.7	8.3	47.0	2.2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6.6	50.1	56.7	30.3	11.9	42.2	1.1	100.0
101-200만원	(272)	6.4	49.0	55.4	34.4	8.3	42.7	1.9	100.0
201-300만원	(388)	4.8	47.7	52.5	37.9	6.5	44.4	3.1	100.0
301-400만원	(257)	11.0	44.9	55.9	33.0	8.0	41.0	3.1	100.0
401만원이상	(156)	4.6	47.1	51.7	33.1	13.3	46.4	1.9	100.0
모름/무응답	(108)	5.4	39.5	44.9	34.5	11.2	45.8	9.3	100.0

2. 종교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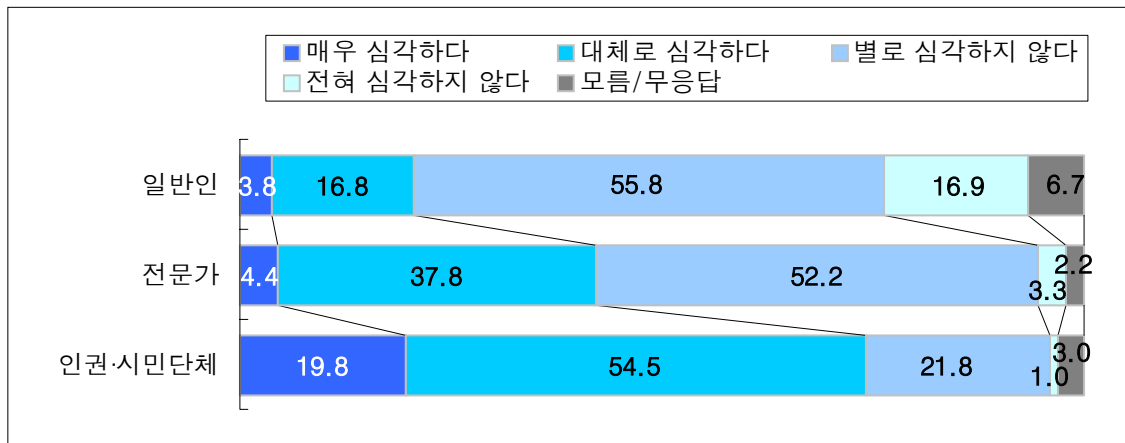
■ 종교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은 20.6%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42.2%,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74.3%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20.6%가 종교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3.3%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2명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42.2%,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74.3%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종교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5-2〉 종교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응답에서 소수종교를 믿는 응답자들의 37.6%가 종교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2〉 종교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 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16.9	55.8	72.7	16.8	3.8	20.6	6.7	100.0
성별									
남자	(626)	17.5	56.6	74.1	16.9	3.7	20.7	5.3	100.0
여자	(637)	16.2	55.1	71.4	16.7	3.9	20.6	8.0	100.0
연령									
15-19세	(103)	16.0	47.8	63.9	20.9	6.8	27.7	8.5	100.0
20대	(260)	15.8	53.9	69.6	19.0	6.1	25.1	5.3	100.0
30대	(290)	12.9	57.1	70.0	19.6	4.5	24.1	5.9	100.0
40대	(264)	18.9	56.8	75.7	15.1	1.5	16.7	7.6	100.0
50대이상	(346)	19.7	58.0	77.6	12.9	2.4	15.3	7.1	100.0
학력									
중학생	(32)	21.7	38.0	59.7	23.4	8.8	32.2	8.0	100.0
고등학생	(58)	13.0	54.3	67.3	18.3	5.2	23.5	9.2	100.0
대학생	(113)	20.5	45.5	66.0	18.5	7.0	25.5	8.5	100.0
중졸이하	(189)	15.7	62.4	78.1	11.4	2.3	13.6	8.2	100.0
고졸	(503)	18.5	55.5	73.9	15.6	3.2	18.8	7.3	100.0
대졸 이상	(367)	14.3	58.0	72.3	19.9	3.8	23.7	4.0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9.8	48.7	68.5	15.6	6.3	21.9	9.6	100.0
101-200만원	(272)	15.2	54.5	69.6	20.4	3.2	23.6	6.8	100.0
201-300만원	(388)	18.8	55.6	74.4	17.3	2.9	20.2	5.5	100.0
301-400만원	(257)	15.6	61.8	77.3	12.9	3.2	16.1	6.6	100.0
401만원이상	(156)	14.9	61.0	76.0	13.9	6.4	20.3	3.7	100.0
모름/무응답	(108)	17.8	44.1	61.9	20.4	4.5	25.0	13.2	100.0
종교									
기독교	(327)	13.7	57.2	70.9	18.9	3.9	22.8	6.4	100.0
불교	(325)	19.6	52.2	71.7	15.4	4.1	19.5	8.8	100.0
가톨릭	(103)	17.7	61.7	79.3	11.5	2.0	13.6	7.1	100.0
유교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다른 종교	(13)	31.5	23.9	55.4	37.6	0.0	37.6	7.0	100.0
없다	(494)	16.7	57.0	73.7	16.7	4.1	20.8	5.5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 장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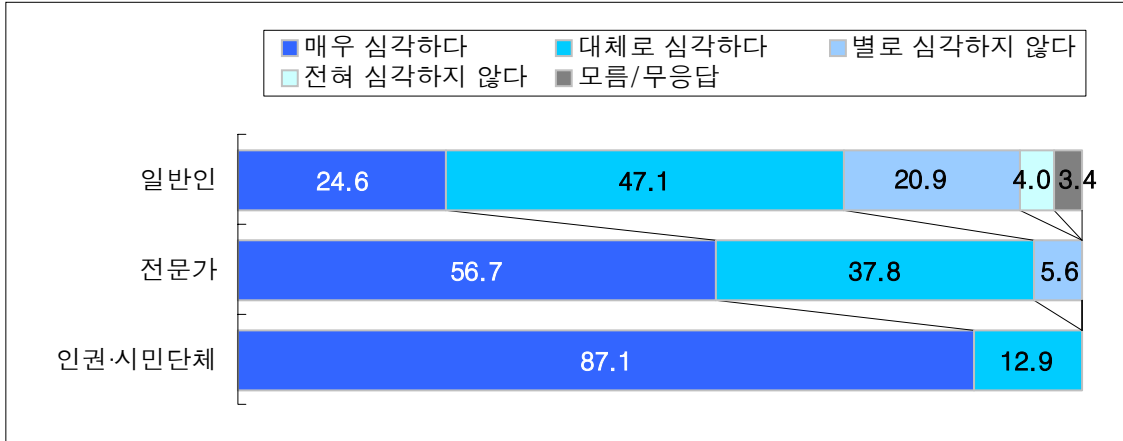
▣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71.7%, 전문가의 94.4%,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100.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71.7%가 장애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4.9%만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7명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4.4%의 전문가와 100.0%의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5-3〉 장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응답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본인이나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응답자의 72.8%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71.5%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3〉 장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 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4.0	20.9	24.9	47.1	24.6	71.7	3.4	100.0
성별									
남자	(626)	4.7	21.1	25.8	47.2	25.1	72.3	1.9	100.0
여자	(637)	3.3	20.7	23.9	47.0	24.2	71.2	4.9	100.0
연령									
15-19세	(103)	2.8	16.1	18.9	42.4	37.6	80.0	1.1	100.0
20대	(260)	2.5	18.9	21.4	40.2	34.7	74.9	3.8	100.0
30대	(290)	3.9	17.2	21.2	49.5	27.1	76.5	2.3	100.0
40대	(264)	5.7	21.3	27.0	50.0	18.8	68.8	4.2	100.0
50대이상	(346)	4.2	26.5	30.7	49.5	15.6	65.1	4.2	100.0
학력									
중학생	(32)	3.9	18.3	22.2	44.7	33.1	77.8	0.0	100.0
고등학생	(58)	2.9	13.3	16.1	39.3	42.6	82.0	1.9	100.0
대학생	(113)	3.8	20.7	24.5	39.0	32.2	71.2	4.3	100.0
중졸이하	(189)	3.3	26.0	29.3	50.5	16.2	66.7	4.0	100.0
고졸	(503)	4.4	21.5	25.9	47.3	22.7	70.0	4.1	100.0
대졸 이상	(367)	4.0	18.8	22.8	49.0	25.7	74.7	2.4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5.0	20.7	25.6	43.3	22.6	65.9	8.5	100.0
101-200만원	(272)	2.9	22.8	25.6	47.3	25.2	72.5	1.9	100.0
201-300만원	(388)	3.8	20.9	24.7	49.0	23.3	72.3	3.0	100.0
301-400만원	(257)	5.3	19.5	24.7	48.7	23.9	72.6	2.6	100.0
401만원이상	(156)	3.4	21.8	25.2	45.7	26.5	72.1	2.6	100.0
모름/무응답	(108)	4.5	18.3	22.8	40.8	28.8	69.6	7.7	100.0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91)	4.2	20.4	24.6	48.8	23.9	72.8	2.6	100.0
장애가 없다	(1072)	4.0	21.0	24.9	46.8	24.8	71.5	3.5	100.0

4. 나이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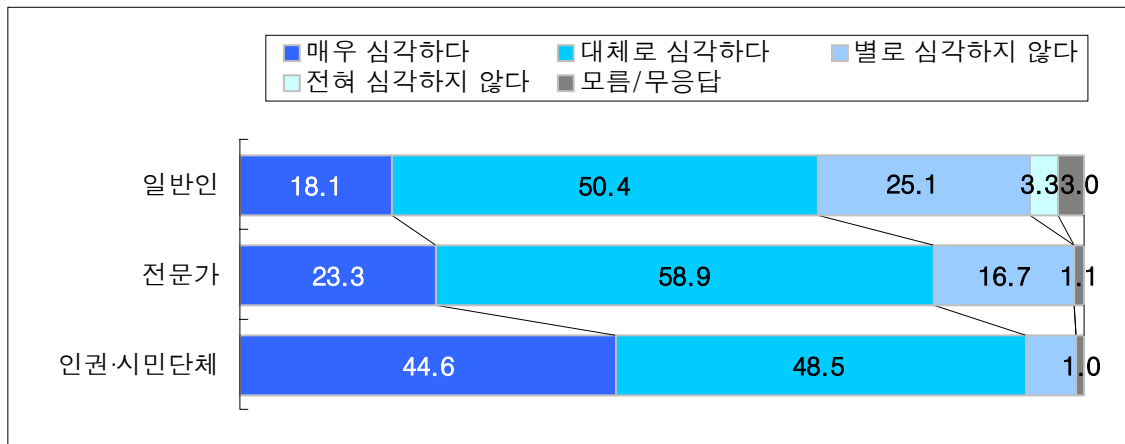
■ 나이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68.6%, 전문가의 82.2%,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3.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68.6%가 나이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8.4%만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7명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의 82.2%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3.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나이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5-4〉 나이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응답에서 나이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볼 때, 학생의 72.4%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4〉 나이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 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3.3	25.1	28.4	50.4	18.1	68.6	3.0	100.0
성별									
남자	(626)	4.9	26.0	30.9	49.6	18.0	67.5	1.6	100.0
여자	(637)	1.9	24.2	26.0	51.3	18.3	69.6	4.4	100.0
연령									
15-19세	(103)	4.1	17.4	21.5	52.6	23.9	76.4	2.1	100.0
20대	(260)	2.0	23.9	25.8	50.1	21.4	71.5	2.7	100.0
30대	(290)	3.8	22.6	26.4	49.8	19.3	69.1	4.5	100.0
40대	(264)	5.9	22.9	28.8	52.0	16.2	68.3	3.0	100.0
50대이상	(346)	1.8	32.0	33.9	49.2	14.5	63.8	2.4	100.0
학력									
중학생	(32)	9.9	12.1	22.0	57.2	17.6	74.9	3.2	100.0
고등학생	(58)	1.9	16.0	17.9	53.3	26.9	80.2	1.9	100.0
대학생	(113)	1.8	28.1	29.9	48.3	18.3	66.6	3.4	100.0
중졸이하	(189)	1.1	32.0	33.1	54.5	10.7	65.1	1.7	100.0
고졸	(503)	3.8	22.7	26.5	49.6	20.1	69.8	3.7	100.0
대졸 이상	(367)	4.0	26.4	30.4	49.0	17.8	66.9	2.8	100.0
직업									
농/축/수산/광업	(14)	0.0	48.1	48.1	44.7	7.2	51.9	0.0	100.0
자영업	(334)	4.3	23.1	27.4	51.8	17.9	69.7	2.9	100.0
판매/서비스직종사자	(167)	3.1	25.9	29.0	50.4	15.4	65.8	5.2	100.0
생산/기능/노무직	(91)	3.5	30.5	33.9	45.4	19.7	65.1	1.0	100.0
사무직	(174)	2.9	24.6	27.5	49.2	20.9	70.1	2.3	100.0
전문/관리/경영직	(73)	4.3	25.1	29.4	51.7	16.1	67.8	2.7	100.0
주부	(163)	2.5	27.4	29.9	49.2	17.5	66.6	3.4	100.0
학생	(189)	2.8	22.2	24.9	50.9	21.4	72.4	2.7	100.0
무직/퇴직/기타	(57)	3.6	24.0	27.7	56.1	12.5	68.7	3.7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3.7	17.6	21.3	55.9	16.7	72.6	6.1	100.0
101-200만원	(272)	2.4	25.6	28.0	53.6	16.4	70.1	1.9	100.0
201-300만원	(388)	2.9	25.9	28.8	52.0	17.2	69.2	2.0	100.0
301-400만원	(257)	4.4	27.0	31.4	46.0	18.6	64.6	4.0	100.0
401만원이상	(156)	4.1	26.4	30.5	45.3	21.6	66.9	2.5	100.0
모름/무응답	(108)	3.6	19.8	23.4	50.4	20.6	71.1	5.6	100.0

5.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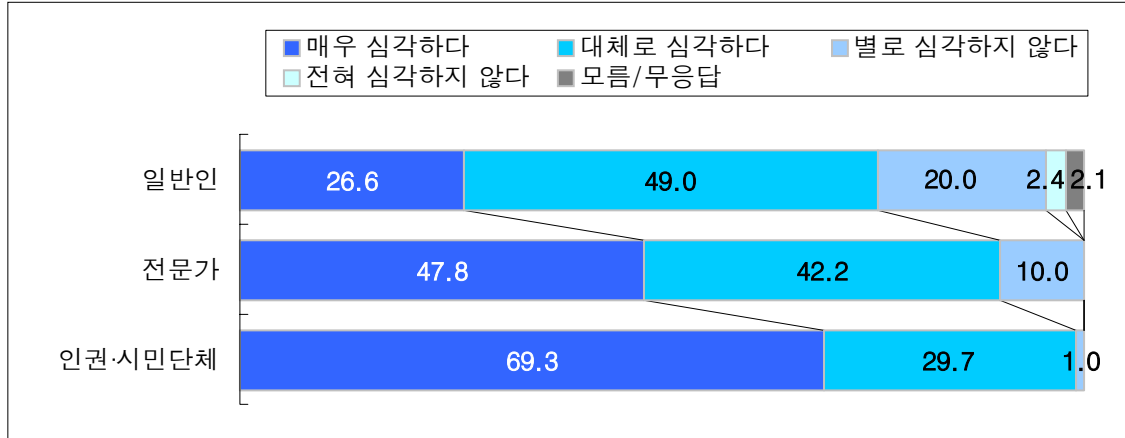
■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75.6%, 전문가의 90.0%,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9.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75.6%가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2.3%만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7명 이상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의 90.0%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9.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5-5〉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중에서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별로 볼 때, 고졸이 7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졸이상 이 72.8%, 중졸이하가 68.4%로 중졸이하 학력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5-5〉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별로 심각하지 않다 (B)	심각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하다 (C)	매우 심각하다 (D)	심각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2.4	20.0	22.3	49.0	26.6	75.6	2.1	100.0
성별									
남자	(626)	3.1	18.4	21.6	52.0	25.5	77.5	0.9	100.0
여자	(637)	1.6	21.5	23.0	46.2	27.6	73.8	3.2	100.0
연령									
15-19세	(103)	1.6	13.5	15.1	41.9	43.0	84.9	0.0	100.0
20대	(260)	1.6	14.9	16.6	47.0	34.5	81.6	1.9	100.0
30대	(290)	2.7	16.0	18.8	47.6	31.5	79.1	2.1	100.0
40대	(264)	4.0	18.9	22.9	53.3	21.2	74.5	2.6	100.0
50대이상	(346)	1.6	29.7	31.3	50.7	15.7	66.3	2.3	100.0
학력									
중학생	(32)	1.7	19.6	21.3	45.6	33.1	78.7	0.0	100.0
고등학생	(58)	1.9	14.9	16.8	37.8	45.5	83.2	0.0	100.0
대학생	(113)	2.8	15.3	18.1	48.0	30.5	78.5	3.4	100.0
중졸이하	(189)	1.8	28.1	29.9	53.0	15.4	68.4	1.6	100.0
고졸	(503)	2.6	16.0	18.6	50.1	28.6	78.6	2.7	100.0
대졸 이상	(367)	2.3	23.4	25.7	48.0	24.8	72.8	1.4	100.0
직업									
농/축/수산/광업	(14)	0.0	40.3	40.3	38.1	21.6	59.7	0.0	100.0
자영업	(334)	3.2	18.0	21.1	52.0	24.6	76.6	2.2	100.0
판매/서비스직종사자	(167)	1.3	21.3	22.6	52.2	22.9	75.1	2.3	100.0
생산/기능/노무직	(91)	0.0	22.8	22.8	47.8	26.3	74.1	3.1	100.0
사무직	(174)	2.8	23.5	26.3	45.5	26.4	71.9	1.8	100.0
전문/관리/경영직	(73)	1.5	27.6	29.1	47.4	23.5	70.9	0.0	100.0
주부	(163)	3.3	20.6	23.9	47.5	25.1	72.7	3.4	100.0
학생	(189)	1.9	15.9	17.9	42.0	38.5	80.6	1.5	100.0
무직/퇴직/기타	(57)	3.6	8.8	12.5	67.7	19.8	87.5	0.0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3.8	22.6	26.5	46.3	22.5	68.9	4.7	100.0
101-200만원	(272)	2.8	21.3	24.1	48.2	26.5	74.7	1.2	100.0
201-300만원	(388)	1.4	18.6	20.0	52.2	26.6	78.8	1.3	100.0
301-400만원	(257)	3.3	21.4	24.7	48.4	23.8	72.1	3.1	100.0
401만원이상	(156)	2.8	19.2	21.9	46.6	30.3	76.8	1.2	100.0
모름/무응답	(108)	1.0	17.0	18.0	47.0	31.3	78.3	3.6	100.0

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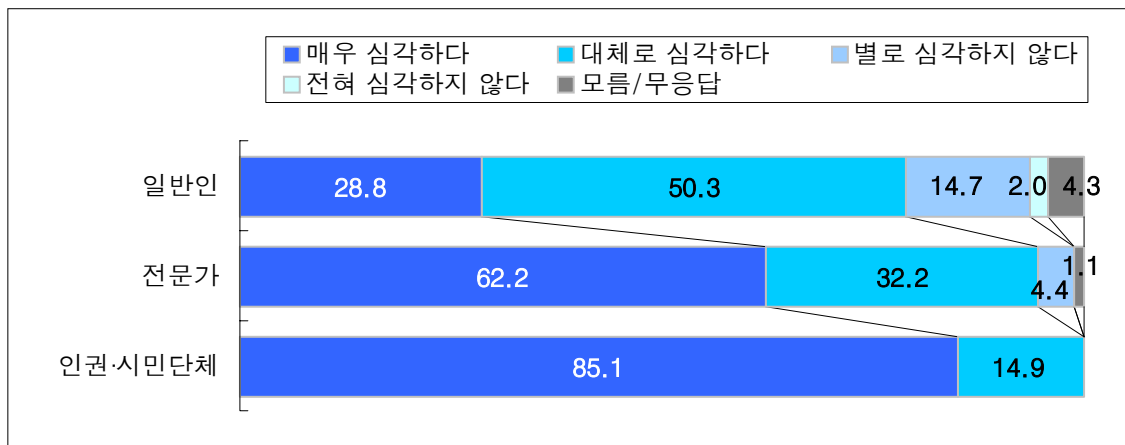
■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79.0%, 전문가의 94.4%,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100.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79.0%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6.7%만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8명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의 94.4%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100.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인의 심각하다는 비율 79.0%는 16가지 차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림5-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중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별로는 40대(82.7%), 직업별로는 생산/기능/노무직(92.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 종사자(81.8%)와 비정규직 종사자(임시직 및 일용직 84.4%, 계약직 79.8%)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정규직 종사자도 비정규직 차별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별로 심각하지 않다 (B)	심각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하다 (C)	매우 심각하다 (D)	심각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2.0	14.7	16.7	50.3	28.8	79.0	4.3	100.0
성별									
남자	(626)	2.6	14.1	16.7	49.8	30.4	80.3	3.1	100.0
여자	(637)	1.4	15.2	16.7	50.7	27.1	77.8	5.5	100.0
연령									
15-19세	(103)	3.0	14.2	17.3	55.4	16.8	72.2	10.5	100.0
20대	(260)	0.8	16.1	17.0	42.2	38.2	80.3	2.7	100.0
30대	(290)	1.4	14.1	15.6	48.4	32.0	80.3	4.1	100.0
40대	(264)	4.4	10.2	14.7	52.0	30.8	82.7	2.6	100.0
50대이상	(346)	1.3	17.5	18.8	55.1	21.1	76.2	5.0	100.0
학력									
중학생	(32)	6.3	14.2	20.6	57.8	7.3	65.1	14.3	100.0
고등학생	(58)	1.9	14.2	16.1	53.5	19.7	73.2	10.7	100.0
대학생	(113)	1.9	19.1	20.9	47.2	28.3	75.5	3.6	100.0
중졸이하	(189)	1.8	15.8	17.6	57.4	20.1	77.5	4.9	100.0
고졸	(503)	2.5	12.9	15.4	48.6	32.1	80.7	3.9	100.0
대졸 이상	(367)	1.2	15.3	16.4	48.7	32.1	80.8	2.7	100.0
직업									
농/축/수산/광업	(14)	0.0	22.9	22.9	54.4	14.5	68.9	8.2	100.0
자영업	(334)	3.1	13.2	16.3	52.4	27.7	80.0	3.6	100.0
판매/서비스직종사자	(167)	1.3	16.7	18.0	48.3	31.4	79.7	2.3	100.0
생산/기능/노무직	(91)	0.0	5.6	5.6	59.0	33.4	92.4	2.0	100.0
사무직	(174)	1.2	15.6	16.8	46.8	34.1	80.9	2.3	100.0
전문/관리/경영직	(73)	0.0	13.9	13.9	57.6	22.9	80.5	5.6	100.0
주부	(163)	2.8	16.8	19.6	44.5	31.1	75.6	4.7	100.0
학생	(189)	2.2	16.5	18.6	50.9	22.6	73.5	7.9	100.0
무직/퇴직/기타	(57)	3.6	15.8	19.4	44.4	28.9	73.3	7.3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2.6	13.9	16.5	53.6	21.4	75.0	8.5	100.0
101-200만원	(272)	1.4	15.0	16.4	53.5	28.5	82.0	1.6	100.0
201-300만원	(388)	0.8	14.8	15.6	49.3	31.2	80.5	3.8	100.0
301-400만원	(257)	4.0	13.0	17.0	51.2	26.4	77.6	5.4	100.0
401만원이상	(156)	2.8	14.5	17.3	49.5	31.6	81.1	1.6	100.0
모름/무응답	(108)	1.7	18.0	19.7	42.2	27.5	69.8	10.5	100.0
고용상태									
정규직	(372)	0.8	14.2	15.0	49.0	32.8	81.8	3.2	100.0
임시직	(44)	0.0	15.3	15.3	55.6	29.0	84.7	0.0	100.0
일용직	(19)	5.5	9.8	15.3	64.6	20.1	84.7	0.0	100.0
계약직	(50)	0.0	16.3	16.3	48.4	31.4	79.8	3.9	100.0
기타	(34)	0.0	12.2	12.2	64.5	19.9	84.4	3.4	100.0

7.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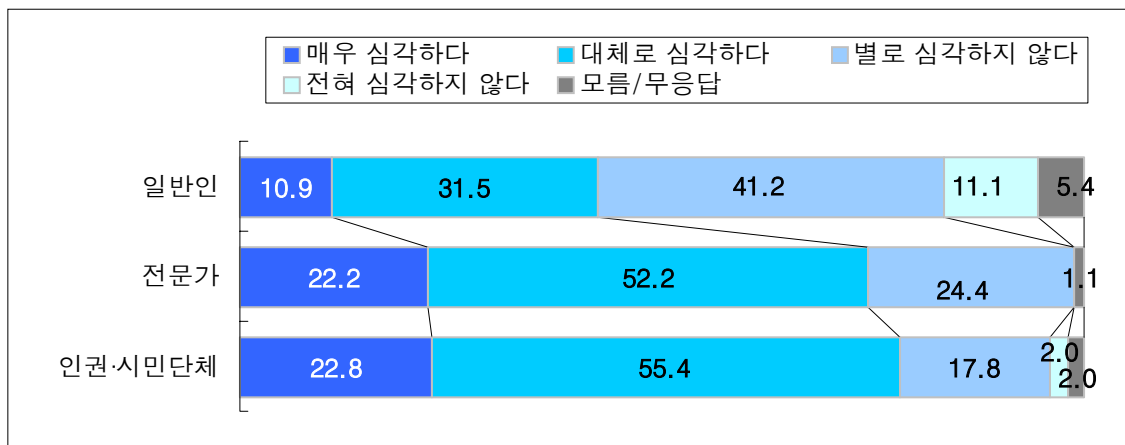
■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42.4%, 전문가의 74.4%,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78.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42.4%만이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2.3%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4명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의 74.4%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78.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7〉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중에서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대전(69.2%)과 전남(54.7%) 출신 응답자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부산(23.9%)과 대구(25.6%) 출신 응답자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표5-7〉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 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11.1	41.2	52.3	31.5	10.9	42.4	5.4	100.0
성별									
남자	(626)	10.7	40.3	51.1	33.8	11.0	44.8	4.1	100.0
여자	(637)	11.3	42.1	53.4	29.1	10.9	40.0	6.6	100.0
연령									
15-19세	(103)	8.7	33.0	41.7	36.8	11.6	48.4	9.8	100.0
20대	(260)	9.6	37.5	47.1	34.7	13.7	48.4	4.5	100.0
30대	(290)	10.1	38.8	48.9	33.1	13.2	46.3	4.7	100.0
40대	(264)	13.4	40.8	54.2	28.6	12.7	41.3	4.5	100.0
50대이상	(346)	11.8	48.8	60.6	28.2	5.3	33.5	5.9	100.0
학력									
중학생	(32)	16.6	29.7	46.3	37.0	8.8	45.8	7.9	100.0
고등학생	(58)	8.1	31.0	39.1	37.7	10.1	47.8	13.1	100.0
대학생	(113)	8.2	39.4	47.6	35.8	9.8	45.5	6.9	100.0
중졸이하	(189)	13.8	50.1	63.9	24.0	6.3	30.3	5.8	100.0
고졸	(503)	11.6	42.4	54.0	29.2	11.6	40.8	5.2	100.0
대졸 이상	(367)	9.7	38.2	47.9	35.6	13.0	48.7	3.4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3.6	44.2	57.8	28.0	8.4	36.4	5.8	100.0
101-200만원	(272)	10.7	44.7	55.3	30.5	10.5	41.0	3.6	100.0
201-300만원	(388)	10.8	39.5	50.3	33.0	12.3	45.3	4.4	100.0
301-400만원	(257)	14.2	41.8	56.0	27.0	7.9	34.9	9.1	100.0
401만원이상	(156)	8.6	41.3	49.9	35.3	13.7	49.0	1.0	100.0
모름/무응답	(108)	7.1	34.7	41.8	35.7	12.4	48.1	10.0	100.0
출신지역									
서울	(64)	8.8	32.6	41.4	45.2	6.9	52.1	6.4	100.0
부산	(31)	25.3	45.0	70.3	15.2	8.7	23.9	5.8	100.0
대구	(64)	14.1	58.3	72.4	15.9	9.7	25.6	2.0	100.0
인천	(12)	7.8	30.3	38.1	45.6	7.4	53.0	8.9	100.0
광주	(12)	0.0	51.2	51.2	32.5	16.3	48.8	0.0	100.0
대전	(16)	0.0	17.8	17.8	49.3	19.9	69.2	13.0	100.0
울산	(6)	15.3	73.9	89.2	0.0	0.0	0.0	10.8	100.0
경기	(99)	10.9	43.3	54.2	27.9	7.0	34.9	10.9	100.0
강원	(51)	11.7	36.2	47.9	30.8	19.4	50.2	1.9	100.0
충북	(75)	6.3	58.0	64.3	24.2	5.4	29.5	6.1	100.0
충남	(140)	10.3	40.4	50.7	30.7	12.2	42.8	6.5	100.0
전북	(135)	7.9	39.4	47.3	34.1	13.3	47.4	5.3	100.0
전남	(186)	8.8	34.3	43.1	40.1	14.6	54.7	2.1	100.0
경북	(157)	11.7	42.9	54.6	32.1	10.4	42.5	2.9	100.0
경남	(166)	17.4	37.4	54.8	29.0	9.1	38.1	7.1	100.0
제주	(17)	19.5	33.1	52.6	33.6	8.2	41.8	5.6	100.0
이북	(28)	5.7	55.6	61.3	21.9	7.1	29.0	9.8	100.0
해외/기타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잘 모르겠다	(3)	0.0	33.6	33.6	32.5	33.9	66.4	0.0	100.0

8.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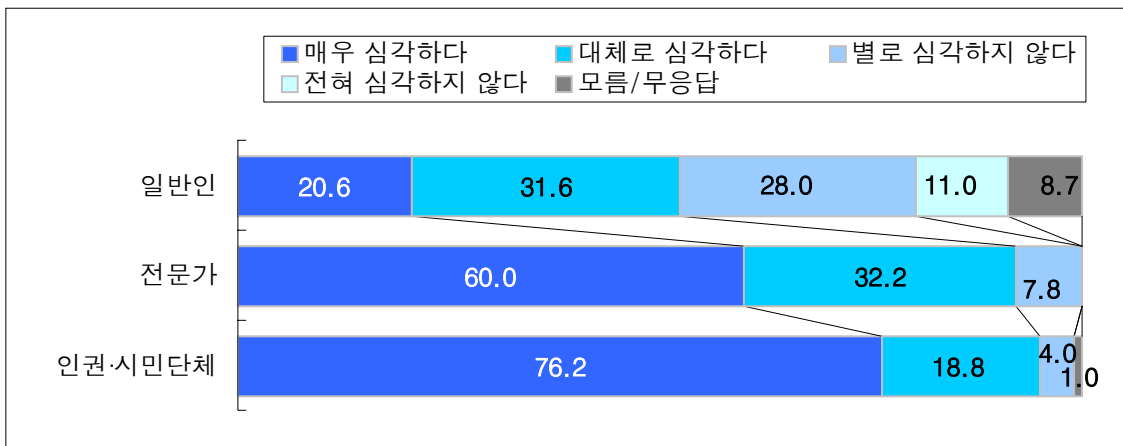
▣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52.2%, 전문가의 92.2%,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5.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52.2%가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9.1%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5명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의 92.2%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5.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8〉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중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5-8〉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 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11.0	28.0	39.1	31.6	20.6	52.2	8.7	100.0
성별									
남자	(626)	11.3	27.8	39.1	32.9	20.1	53.0	7.9	100.0
여자	(637)	10.7	28.3	39.0	30.4	21.1	51.5	9.5	100.0
연령									
15-19세	(103)	10.6	19.7	30.2	29.7	32.5	62.2	7.5	100.0
20대	(260)	8.7	20.1	28.8	36.4	26.3	62.7	8.5	100.0
30대	(290)	9.1	24.5	33.6	36.1	23.6	59.7	6.7	100.0
40대	(264)	12.5	29.1	41.6	28.0	20.6	48.5	9.9	100.0
50대이상	(346)	13.3	38.7	52.1	27.7	10.3	38.0	9.9	100.0
학력									
중학생	(32)	10.6	23.1	33.7	24.5	31.0	55.5	10.8	100.0
고등학생	(58)	11.3	16.6	27.9	32.7	31.9	64.7	7.4	100.0
대학생	(113)	8.0	24.4	32.5	32.8	26.6	59.3	8.2	100.0
중졸이하	(189)	16.2	37.9	54.1	28.9	8.8	37.7	8.2	100.0
고졸	(503)	11.0	29.6	40.5	31.1	18.5	49.7	9.8	100.0
대졸 이상	(367)	9.3	24.2	33.6	33.8	25.0	58.8	7.6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2.5	36.7	49.2	24.5	13.1	37.6	13.2	100.0
101-200만원	(272)	10.8	29.6	40.4	32.9	19.2	52.1	7.5	100.0
201-300만원	(388)	12.0	28.2	40.2	31.5	21.0	52.5	7.3	100.0
301-400만원	(257)	13.2	27.4	40.6	31.9	19.6	51.5	7.8	100.0
401만원이상	(156)	7.7	28.5	36.3	34.1	22.4	56.4	7.3	100.0
모름/무응답	(108)	6.4	17.8	24.2	30.4	28.3	58.7	17.1	100.0

9.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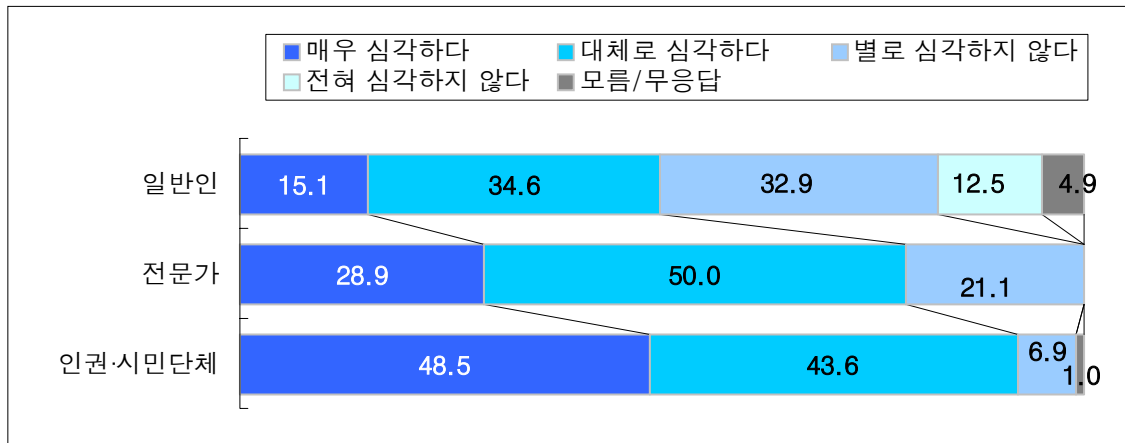
■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49.7%, 전문가의 7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2.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49.7%가 키, 몸무게, 용모 등의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5.4%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5명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의 78.9%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2.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9〉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중에서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5-9〉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 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12.5	32.9	45.4	34.6	15.1	49.7	4.9	100.0
성별									
남자	(626)	13.3	35.1	48.4	35.1	12.6	47.7	3.9	100.0
여자	(637)	11.7	30.7	42.4	34.1	17.5	51.6	5.9	100.0
연령									
15-19세	(103)	9.8	22.1	31.8	44.1	20.0	64.1	4.1	100.0
20대	(260)	9.7	29.1	38.8	33.8	23.5	57.3	3.8	100.0
30대	(290)	11.3	29.4	40.8	40.8	15.5	56.3	3.0	100.0
40대	(264)	14.8	31.7	46.5	31.9	14.8	46.7	6.8	100.0
50대이상	(346)	14.6	42.8	57.4	29.3	7.1	36.4	6.2	100.0
학력									
중학생	(32)	16.3	12.7	29.0	54.2	11.9	66.1	4.9	100.0
고등학생	(58)	10.1	22.9	32.9	42.0	20.5	62.5	4.6	100.0
대학생	(113)	9.8	30.4	40.2	30.8	24.6	55.4	4.4	100.0
중졸이하	(189)	13.9	45.5	59.5	26.8	7.7	34.4	6.1	100.0
고졸	(503)	12.3	32.2	44.5	35.8	14.0	49.8	5.7	100.0
대졸 이상	(367)	12.9	31.4	44.3	35.3	16.8	52.1	3.5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2.7	43.0	55.7	24.1	13.0	37.1	7.2	100.0
101-200만원	(272)	11.3	37.1	48.4	36.2	12.8	49.0	2.6	100.0
201-300만원	(388)	14.5	31.0	45.5	36.1	14.1	50.2	4.2	100.0
301-400만원	(257)	13.3	32.4	45.8	34.4	15.5	49.9	4.3	100.0
401만원이상	(156)	11.6	28.4	40.1	37.1	17.9	55.0	4.9	100.0
모름/무응답	(108)	7.4	28.8	36.2	29.9	20.7	50.6	13.2	100.0

1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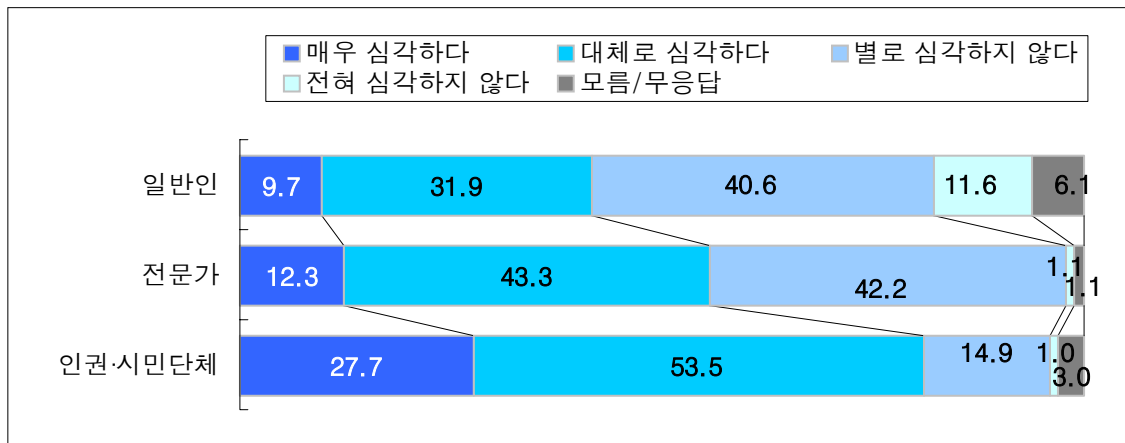
▣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41.7%, 전문가의 55.6%,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1.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41.7%가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2.2%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4명 정도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역시 55.6%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81.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이나 전문가보다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1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중에서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35.4%)보다 여자(47.8%)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51.4%)와 20대(50.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황별로는 동거(77.5%)와 미혼(47.2%)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이혼(42.7%)과 기혼(39.2%)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표5-1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 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11.6	40.6	52.2	31.9	9.7	41.7	6.1	100.0
성별									
남자	(626)	13.7	44.6	58.3	29.1	6.3	35.4	6.3	100.0
여자	(637)	9.5	36.7	46.3	34.7	13.1	47.8	5.9	100.0
연령									
15-19세	(103)	11.3	33.9	45.1	33.2	13.3	46.4	8.4	100.0
20대	(260)	7.5	36.1	43.6	37.8	12.5	50.3	6.1	100.0
30대	(290)	12.3	31.4	43.6	38.5	13.0	51.4	4.9	100.0
40대	(264)	14.7	42.6	57.4	26.9	9.8	36.7	5.9	100.0
50대이상	(346)	11.8	52.4	64.1	25.5	3.9	29.4	6.5	100.0
학력									
중학생	(32)	15.0	30.2	45.3	39.3	6.2	45.6	9.2	100.0
고등학생	(58)	12.3	29.6	41.9	33.8	14.4	48.2	9.9	100.0
대학생	(113)	6.0	41.0	47.0	35.3	11.5	46.8	6.2	100.0
중졸이하	(189)	10.6	53.7	64.2	23.7	4.3	28.0	7.8	100.0
고졸	(503)	12.4	40.2	52.6	30.7	10.5	41.2	6.3	100.0
대졸 이상	(367)	12.3	37.1	49.4	36.0	10.5	46.5	4.1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0.8	43.1	53.9	23.5	13.0	36.5	9.6	100.0
101-200만원	(272)	9.8	46.6	56.3	31.6	7.8	39.4	4.3	100.0
201-300만원	(388)	11.4	39.3	50.6	32.9	10.1	43.0	6.4	100.0
301-400만원	(257)	13.9	40.0	53.9	31.7	7.4	39.0	7.1	100.0
401만원이상	(156)	12.3	38.2	50.5	34.1	12.2	46.2	3.3	100.0
모름/무응답	(108)	10.8	34.0	44.7	33.6	12.8	46.5	8.8	100.0
혼인상태									
기혼	(834)	13.0	42.1	55.1	30.8	8.5	39.2	5.7	100.0
미혼	(388)	8.3	37.2	45.5	35.3	11.9	47.2	7.4	100.0
이혼	(11)	17.7	39.6	57.3	15.6	27.1	42.7	0.0	100.0
사별	(25)	11.7	50.1	61.9	25.3	8.6	33.9	4.3	100.0
동거	(4)	22.5	0.0	22.5	52.2	25.3	77.5	0.0	100.0
기타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11.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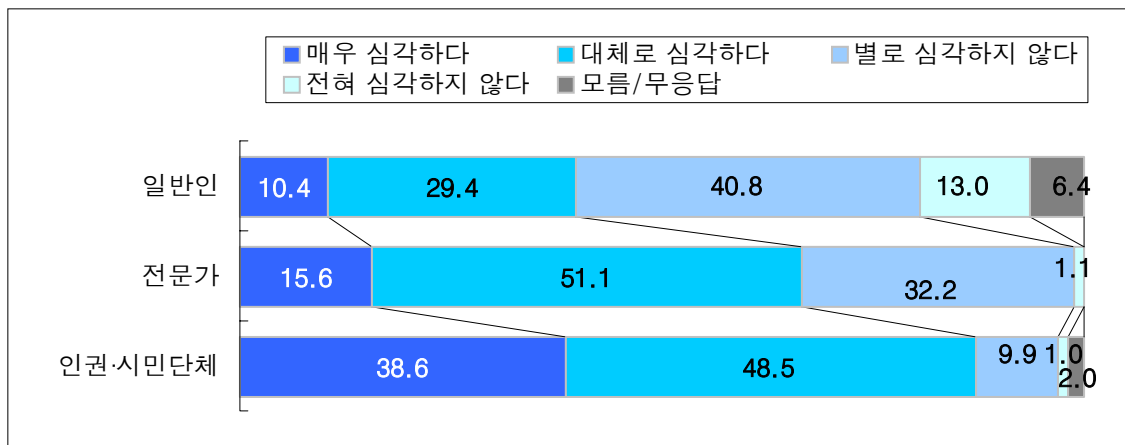
■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39.8%, 전문가의 66.7%,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7.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39.8%가 한 부모가족(편부, 편모), 미혼모가족 등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3.8%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4명 정도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66.7%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87.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이나 전문가보다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11〉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중에서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34.9%)보다 여자(44.6%)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48.9%)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11〉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 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13.0	40.8	53.8	29.4	10.4	39.8	6.4	100.0
성별									
남자	(626)	15.3	43.9	59.3	27.3	7.6	34.9	5.8	100.0
여자	(637)	10.8	37.7	48.5	31.4	13.2	44.6	6.9	100.0
연령									
15-19세	(103)	10.4	33.6	44.0	30.3	14.6	45.0	11.1	100.0
20대	(260)	11.0	38.1	49.1	33.6	12.3	45.9	5.0	100.0
30대	(290)	12.9	33.0	45.9	35.0	13.9	48.9	5.1	100.0
40대	(264)	17.7	38.9	56.5	26.9	10.5	37.5	6.0	100.0
50대이상	(346)	12.0	52.9	64.9	23.0	4.8	27.8	7.4	100.0
학력									
중학생	(32)	10.8	28.5	39.4	34.4	12.2	46.6	14.0	100.0
고등학생	(58)	13.1	30.0	43.1	32.2	14.3	46.5	10.4	100.0
대학생	(113)	7.8	40.8	48.6	34.4	11.6	46.1	5.3	100.0
중졸이하	(189)	10.9	55.3	66.2	23.2	4.0	27.2	6.6	100.0
고졸	(503)	15.1	40.2	55.3	27.2	10.7	37.9	6.8	100.0
대졸 이상	(367)	13.2	36.9	50.0	33.0	12.2	45.3	4.7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8.2	44.5	52.7	26.0	13.3	39.2	8.1	100.0
101-200만원	(272)	10.5	47.2	57.7	28.6	9.0	37.5	4.8	100.0
201-300만원	(388)	15.3	39.2	54.5	28.5	10.4	38.9	6.6	100.0
301-400만원	(257)	15.9	41.3	57.2	27.1	9.3	36.4	6.4	100.0
401만원이상	(156)	11.5	37.4	48.9	34.3	12.4	46.7	4.4	100.0
모름/무응답	(108)	10.3	31.1	41.4	35.5	11.9	47.4	11.1	100.0

12.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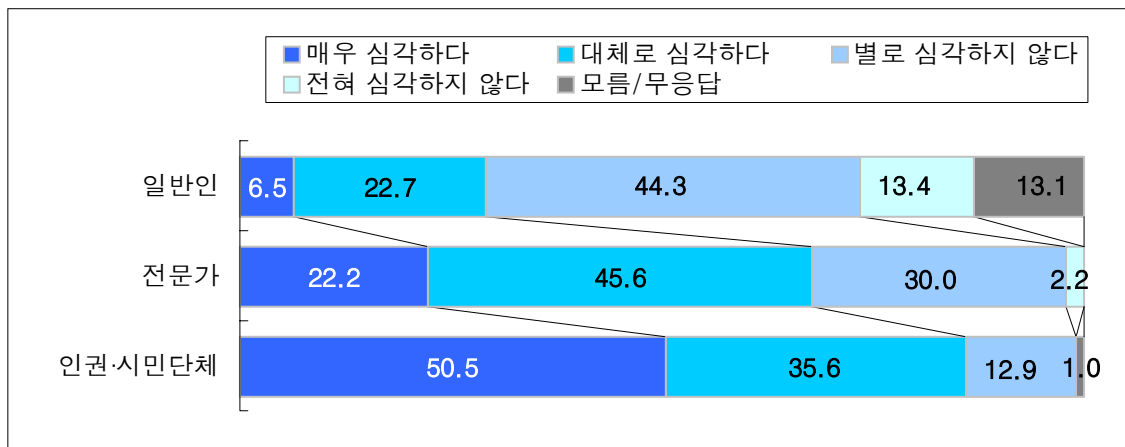
■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29.2%, 전문가의 67.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6.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29.2%가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7.7%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67.8%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86.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12〉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중에서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36.1%)가 높게 나타났다.

〈표5-12〉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 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13.4	44.3	57.7	22.7	6.5	29.2	13.1	100.0
성별									
남자	(626)	15.7	42.9	58.6	22.6	7.2	29.8	11.6	100.0
여자	(637)	11.2	45.7	56.9	22.7	5.9	28.6	14.6	100.0
연령									
15-19세	(103)	9.8	41.3	51.2	24.0	7.4	31.4	17.4	100.0
20대	(260)	11.2	46.5	57.7	24.4	7.0	31.4	10.9	100.0
30대	(290)	12.9	38.8	51.7	27.5	8.6	36.1	12.2	100.0
40대	(264)	18.8	37.9	56.7	23.0	5.7	28.7	14.6	100.0
50대이상	(346)	12.5	53.1	65.6	16.7	4.7	21.4	13.0	100.0
학력									
중학생	(32)	7.0	46.2	53.2	23.1	0.0	23.1	23.8	100.0
고등학생	(58)	10.7	41.4	52.0	25.3	8.2	33.5	14.5	100.0
대학생	(113)	11.4	37.9	49.3	28.4	8.7	37.2	13.5	100.0
중졸이하	(189)	12.0	53.4	65.4	16.5	3.4	19.9	14.7	100.0
고졸	(503)	15.4	43.4	58.8	20.4	7.3	27.6	13.6	100.0
대졸 이상	(367)	13.1	43.1	56.3	26.8	6.7	33.5	10.3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2.4	41.4	53.8	18.8	6.0	24.7	21.5	100.0
101-200만원	(272)	11.2	48.8	60.0	24.5	3.7	28.2	11.8	100.0
201-300만원	(388)	15.0	42.9	57.9	23.8	8.1	32.0	10.2	100.0
301-400만원	(257)	15.3	47.7	63.0	20.1	3.8	23.8	13.2	100.0
401만원이상	(156)	12.6	45.0	57.6	23.1	8.3	31.4	11.0	100.0
모름/무응답	(108)	10.7	31.5	42.2	22.6	12.0	34.5	23.3	100.0

13.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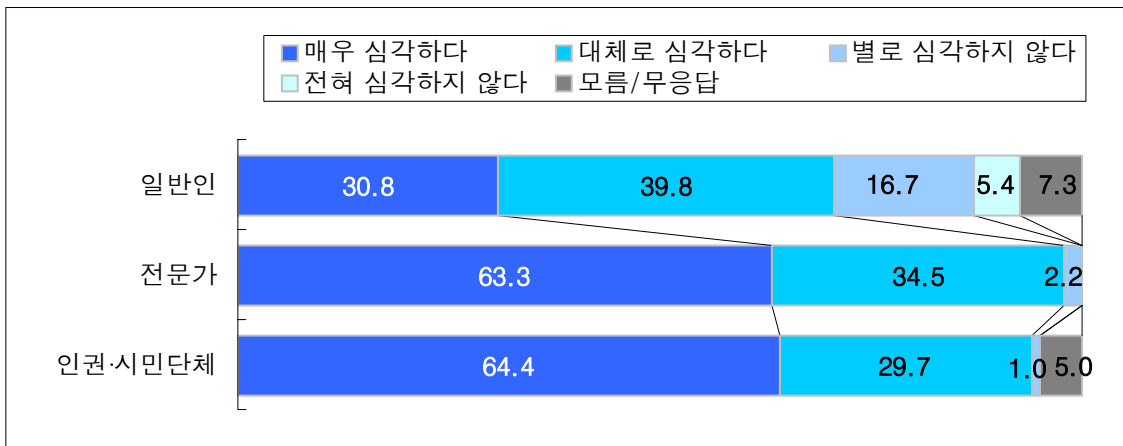
▣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70.6%, 전문가의 97.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4.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70.6%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2.1%만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7명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의 97.8%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4.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문가의 심각하다는 비율 97.8%는 16가지 차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림5-13〉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중에서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77.5%)가 높게 나타났다.

〈표5-13〉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 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5.4	16.7	22.1	39.8	30.8	70.6	7.3	100.0
성별									
남자	(626)	5.7	15.5	21.2	41.8	31.0	72.7	6.0	100.0
여자	(637)	5.2	17.8	22.9	37.9	30.7	68.5	8.5	100.0
연령									
15-19세	(103)	6.3	14.1	20.4	41.2	31.0	72.1	7.5	100.0
20대	(260)	5.0	15.2	20.1	34.3	36.6	70.9	8.9	100.0
30대	(290)	6.1	12.1	18.2	39.8	37.7	77.5	4.3	100.0
40대	(264)	6.4	14.4	20.9	43.6	26.8	70.4	8.7	100.0
50대이상	(346)	4.2	24.1	28.3	40.6	23.7	64.3	7.4	100.0
학력									
중학생	(32)	9.0	7.7	16.7	55.9	19.1	75.0	8.3	100.0
고등학생	(58)	6.1	14.2	20.4	39.0	31.9	71.0	8.7	100.0
대학생	(113)	5.5	18.8	24.3	32.9	32.8	65.8	9.9	100.0
중졸이하	(189)	4.4	24.1	28.5	43.6	23.4	67.1	4.4	100.0
고졸	(503)	6.0	16.1	22.1	37.5	33.3	70.8	7.1	100.0
대졸 이상	(367)	4.7	14.1	18.8	41.8	31.5	73.3	7.9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7.8	19.5	27.3	35.5	27.5	63.0	9.7	100.0
101-200만원	(272)	2.8	17.8	20.6	46.2	28.3	74.5	4.9	100.0
201-300만원	(388)	5.8	18.2	24.1	35.9	33.5	69.4	6.5	100.0
301-400만원	(257)	7.3	13.5	20.8	44.3	25.9	70.1	9.0	100.0
401만원이상	(156)	3.8	18.4	22.1	37.7	33.9	71.6	6.2	100.0
모름/무응답	(108)	6.6	11.0	17.6	33.2	37.3	70.5	11.9	100.0

14.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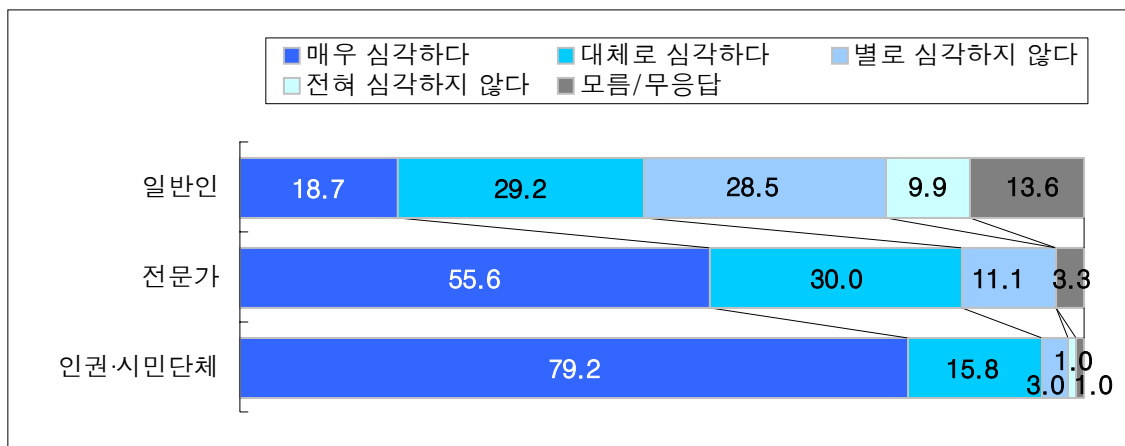
■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48.0%, 전문가의 85.6%,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5.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48.0%가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8.4%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5명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의 85.6%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5.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14〉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중에서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5-14〉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 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9.9	28.5	38.4	29.2	18.7	48.0	13.6	100.0
성별									
남자	(626)	10.7	28.6	39.3	29.2	18.2	47.4	13.3	100.0
여자	(637)	9.1	28.3	37.5	29.2	19.3	48.6	14.0	100.0
연령									
15-19세	(103)	7.8	23.5	31.3	35.9	21.3	57.2	11.5	100.0
20대	(260)	8.5	23.1	31.6	30.5	27.5	58.0	10.5	100.0
30대	(290)	9.8	25.6	35.5	32.4	22.2	54.6	9.9	100.0
40대	(264)	10.4	23.9	34.4	32.0	15.8	47.9	17.8	100.0
50대이상	(346)	11.3	39.8	51.2	21.5	10.7	32.2	16.6	100.0
학력									
중학생	(32)	11.4	15.7	27.2	48.0	6.2	54.2	18.6	100.0
고등학생	(58)	6.1	27.8	33.9	33.2	24.2	57.4	8.7	100.0
대학생	(113)	7.3	24.1	31.3	31.3	26.5	57.8	10.8	100.0
중졸이하	(189)	12.2	42.6	54.8	20.4	9.9	30.4	14.9	100.0
고졸	(503)	10.5	26.8	37.3	31.1	16.8	47.9	14.8	100.0
대졸 이상	(367)	9.2	26.0	35.3	28.3	23.8	52.1	12.6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3.4	32.9	46.3	18.4	16.9	35.3	18.4	100.0
101-200만원	(272)	9.5	31.2	40.7	31.7	15.8	47.5	11.8	100.0
201-300만원	(388)	9.7	29.3	39.1	28.9	19.8	48.7	12.3	100.0
301-400만원	(257)	11.1	27.7	38.7	28.2	17.9	46.1	15.2	100.0
401만원이상	(156)	7.5	27.2	34.8	32.7	18.4	51.1	14.2	100.0
모름/무응답	(108)	9.7	18.8	28.5	29.8	26.4	56.2	15.3	100.0

15.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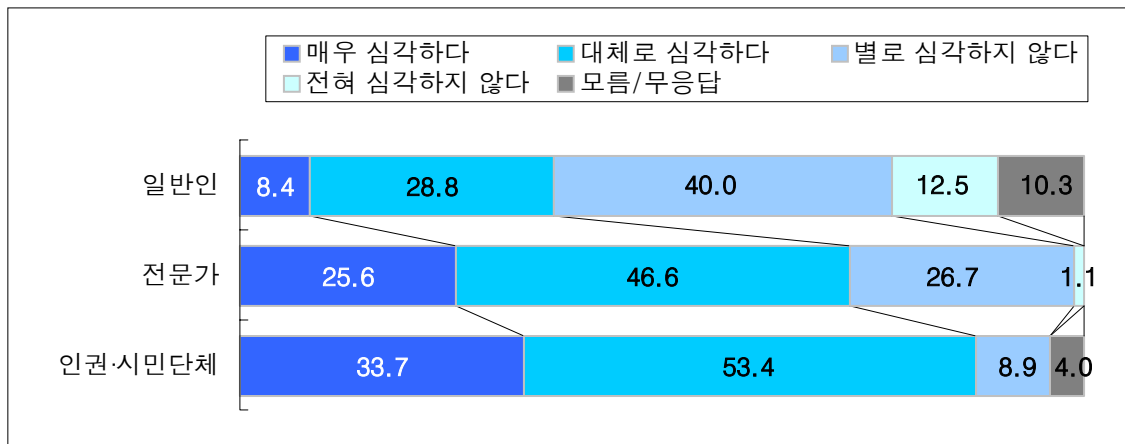
■ 병력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37.2%, 전문가의 72.2%,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7.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37.2%가 병력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2.6%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4명 정도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의 72.2%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7.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병력으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15〉 병력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중에서 병력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47.5%)와 20대(44.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15〉 병력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 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12.5	40.0	52.6	28.8	8.4	37.2	10.3	100.0
성별									
남자	(626)	13.1	41.1	54.3	28.8	9.1	37.9	7.9	100.0
여자	(637)	11.9	39.0	50.9	28.8	7.7	36.5	12.6	100.0
연령									
15-19세	(103)	11.2	35.5	46.6	30.5	12.0	42.5	10.9	100.0
20대	(260)	12.0	37.5	49.5	35.8	8.2	44.0	6.5	100.0
30대	(290)	12.0	33.0	45.1	33.6	13.9	47.5	7.4	100.0
40대	(264)	16.1	36.3	52.4	27.4	5.1	32.4	15.2	100.0
50대이상	(346)	10.9	52.1	63.0	20.0	5.4	25.4	11.5	100.0
학력									
중학생	(32)	14.1	35.6	49.7	42.4	2.8	45.1	5.1	100.0
고등학생	(58)	12.0	32.2	44.2	26.0	14.8	40.9	15.0	100.0
대학생	(113)	10.8	43.6	54.3	32.3	6.3	38.6	7.1	100.0
중졸이하	(189)	9.5	53.4	62.9	20.5	4.0	24.5	12.6	100.0
고졸	(503)	13.7	40.4	54.2	27.7	7.8	35.4	10.4	100.0
대졸 이상	(367)	12.8	33.2	46.1	32.8	11.6	44.4	9.5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0.0	38.8	48.9	29.6	11.1	40.7	10.4	100.0
101-200만원	(272)	10.2	41.7	51.9	33.1	8.2	41.3	6.8	100.0
201-300만원	(388)	11.9	41.1	53.0	29.0	7.8	36.8	10.1	100.0
301-400만원	(257)	17.9	41.4	59.3	23.8	6.7	30.5	10.1	100.0
401만원이상	(156)	12.2	38.4	50.6	32.1	6.9	39.0	10.4	100.0
모름/무응답	(108)	9.6	32.3	41.8	23.6	15.3	38.9	19.3	100.0

16.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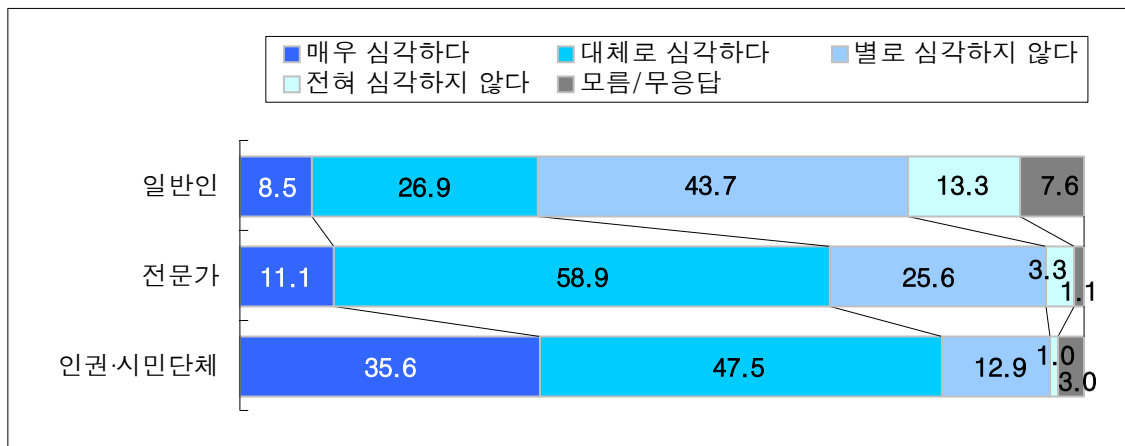
■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35.4%, 전문가의 70.0%,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3.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35.4%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7.1%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4명 정도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의 70.0%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3.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16〉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단위: %)



일반인 중에서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45.8%)와 30대(4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16〉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 하지 않다 (A)	별로 심각 하지 않다 (B)	심각 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 하다 (C)	매우 심각 하다 (D)	심각 하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13.3	43.7	57.1	26.9	8.5	35.4	7.6	100.0
성별									
남자	(626)	14.7	45.1	59.7	26.2	7.6	33.8	6.5	100.0
여자	(637)	12.0	42.5	54.4	27.5	9.4	36.9	8.6	100.0
연령									
15-19세	(103)	11.7	33.8	45.5	31.0	14.8	45.8	8.7	100.0
20대	(260)	12.8	39.0	51.8	29.7	11.0	40.7	7.5	100.0
30대	(290)	11.8	38.8	50.6	32.3	12.2	44.5	4.9	100.0
40대	(264)	16.6	44.2	60.9	25.6	5.2	30.8	8.4	100.0
50대이상	(346)	13.0	54.0	67.0	20.0	4.1	24.1	8.9	100.0
학력									
중학생	(32)	17.2	40.3	57.5	24.0	7.7	31.7	10.8	100.0
고등학생	(58)	13.1	31.0	44.1	33.4	14.4	47.8	8.1	100.0
대학생	(113)	13.3	39.0	52.4	30.1	10.7	40.9	6.8	100.0
중졸이하	(189)	12.9	54.4	67.3	18.3	3.9	22.2	10.5	100.0
고졸	(503)	13.4	45.8	59.3	25.4	8.5	33.9	6.8	100.0
대졸 이상	(367)	13.1	39.1	52.2	31.5	9.4	40.9	6.9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2.3	46.3	58.6	20.8	6.0	26.9	14.5	100.0
101-200만원	(272)	9.1	46.8	55.9	31.6	9.0	40.6	3.5	100.0
201-300만원	(388)	14.4	43.8	58.2	26.9	8.0	34.9	6.9	100.0
301-400만원	(257)	16.7	45.5	62.1	23.5	5.5	28.9	8.9	100.0
401만원이상	(156)	14.1	43.9	58.0	25.5	10.0	35.5	6.5	100.0
모름/무응답	(108)	11.6	29.4	40.9	29.7	16.2	45.8	13.2	100.0

제2절 기관별 및 유형별 차별의 심각성과 구제수단

1. 기관별 차별의 심각성

■ 전문가는 경찰(76.7%), 군대(70.0%), 검찰(67.8%), 기업체(63.3%) 등의 순으로 차별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89.1%), 군대(85.1%), 기업체(84.2%), 검찰(80.2%) 등의 순으로 차별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기관별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전문가의 경우는 경찰의 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76.7%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군대(70.0%), 검찰(67.8%), 기업체(6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중서비스 제공기관(21.1%)과 공공서비스제공기관(18.9%)의 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도 전문가와 같이 경찰(89.1%), 군대(85.1%), 기업체(84.2%), 검찰(80.2%) 등의 기관에서 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기업체의 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검찰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두드러진다.

전반적으로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의 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전문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79.2%)와 행정기관(71.3%)에서의 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20-30%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20% 수준에 그친 대중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53.5%와 42.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5-17〉 기관별 차별의 심각성 인식 비교(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단위: %)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경찰	76.7	17.8	5.6	89.1	4.0	6.9
군대	70.0	24.4	5.6	85.1	9.9	5.0
검찰	67.8	26.7	5.6	80.2	8.9	10.9
기업체	63.3	34.4	2.2	84.2	11.9	4.0
행정기관	48.9	45.6	5.6	71.3	19.8	8.9
종교단체	40.0	52.2	7.8	51.5	37.6	10.9
학교	38.9	58.9	2.2	79.2	17.8	3.0
대중서비스 제공기관	21.1	76.7	2.2	53.5	39.6	6.9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18.9	77.8	3.3	42.6	45.5	11.9

2. 차별 유형별 심각성

■ 전문가는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88.9%),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86.7%),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68.9%) 등의 순으로 차별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91.1%),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87.1%),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87.1%) 등의 순으로 차별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차별 유형별 심각성에 대해, 전문가의 경우는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86.7%)’,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6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은 17.8%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도 전문가와 같이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91.1%)’,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87.1%)’,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87.1%)’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차별의 유형별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전문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20% 이하인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에 대해서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57.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5-18〉 유형별 차별의 심각성 인식 비교(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단위: %)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88.9	10.0	1.1	87.1	9.9	3.0
직원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	86.7	12.2	1.1	91.1	6.9	2.0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	68.9	27.8	3.3	87.1	11.9	1.0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	52.2	46.7	1.1	80.2	16.8	3.0
입학이나 교육내용과 관련한 차별	35.6	63.3	1.1	61.4	29.7	8.9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차별	33.3	65.6	1.1	62.4	34.7	3.0
대중시설 이용과 관련한 차별	31.1	67.8	1.1	57.4	37.6	5.0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31.1	67.8	1.1	62.4	31.7	5.9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17.8	81.1	1.1	57.4	38.6	4.0

3. 효과적인 구제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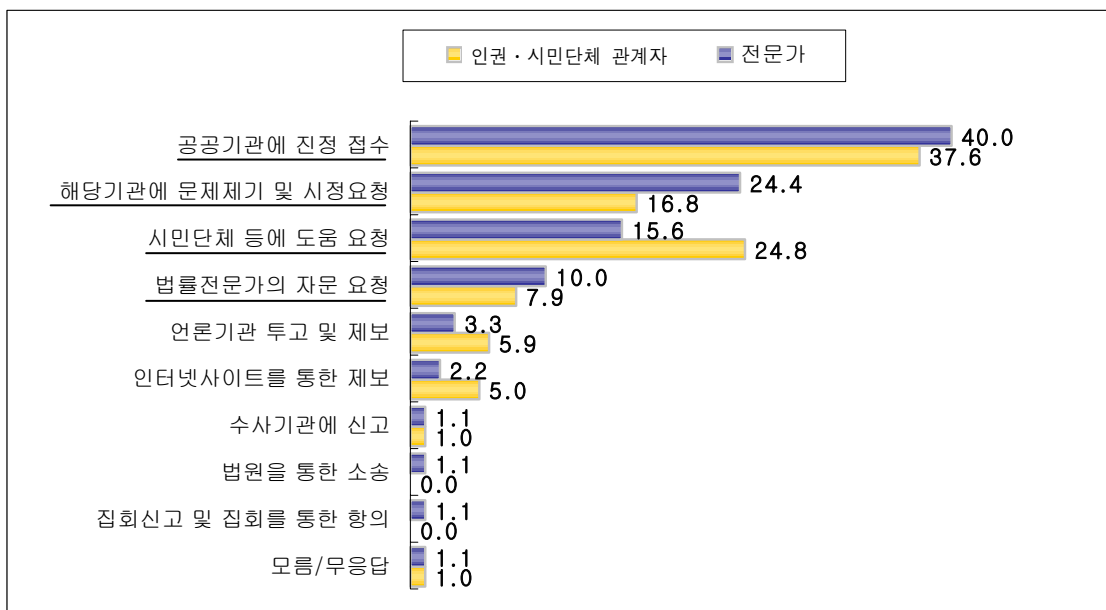
■ 전문가는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40.0%),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요청(24.4%), 인권·시민단체 등에 도움 요청(15.6%), 법률전문가의 자문 요청(10.0%) 등의 순으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시한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37.6%), 인권·시민단체 등에 도움 요청(24.8%),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요청(16.8%), 법률전문가의 자문 요청(7.9%) 등의 순으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시하였다.

차별을 당한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는, 전문가의 40.0%가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24.4%)’, ‘인권·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15.6%)’,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도 전문가와 같이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37.6%)’, ‘인권·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24.8%)’,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16.8%)’,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7.9%)’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인권·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림5-17〉 효과적인 구제수단(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단위: %)



제3절 직접적인 차별의 경험과 대응

1. 성별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성별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자 65명 중 40.7%가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은 '기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23.0%)',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20.8%)', '성과 관련한 언어 및 신체 폭력(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7명)', '인권·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3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2명)',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1명)' 등이 있으며, 48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성별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5.1%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4.9%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51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4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0명이다.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남자(1.2%)보다 여자(6.6%)가 더 높으며, 연령별로는 20대(6.8%)와 30대(6.4%)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65명 중에서,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기업'이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행정기관(12.5%)', '학교(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인한 차별의 유형별로는,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20.8%)', '성과 관련한 언어 및 신체 폭력(15.4%)'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5-19〉 성별로 인한 차별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A)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B)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C)	경험하였다 (A+B+C)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4.0	0.3	0.8	5.1	94.9	100.0
성별							
남자	(626)	1.2	0.3	0.5	2.0	98.0	100.0
여자	(637)	6.6	0.3	1.2	8.1	91.9	100.0
연령							
15-19세	(103)	4.0	0.0	0.0	4.0	96.0	100.0
20대	(260)	6.8	0.0	1.4	8.2	91.8	100.0
30대	(290)	6.4	1.0	0.7	8.1	91.9	100.0
40대	(264)	1.6	0.5	0.3	2.3	97.7	100.0
50대 이상	(346)	1.6	0.0	1.2	2.7	97.3	100.0
학력							
중학생	(32)	4.4	0.0	0.0	4.4	95.6	100.0
고등학생	(58)	4.6	0.0	1.7	6.4	93.6	100.0
대학생	(113)	6.9	0.0	0.9	7.8	92.2	100.0
중졸이하	(189)	0.0	0.0	1.1	1.1	98.9	100.0
고졸	(503)	4.1	0.2	0.4	4.7	95.3	100.0
대졸 이상	(367)	4.7	0.8	1.2	6.8	93.2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3.3	0.0	1.2	4.5	95.5	100.0
101-200만원	(272)	2.7	0.3	0.7	3.8	96.2	100.0
201-300만원	(388)	4.1	0.6	1.2	6.0	94.0	100.0
301-400만원	(257)	3.1	0.0	0.4	3.4	96.6	100.0
401만원이상	(156)	7.1	0.7	1.1	8.8	91.2	100.0
모름/무응답	(108)	4.5	0.0	0.0	4.5	95.5	100.0

성별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을 하였다는 응답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권·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3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는 응답이 2명,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는 응답이 1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65명 중 48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을 하였다는 응답자 7명 중 3명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한 반면, 4명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밖에 대응을 하였다는 응답자는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낮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표5-20〉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7)	3	4	0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3)	0	3	0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2)	0	2	0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1)	0	0	1
기타	(4)	0	4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48)	-	-	-
합 계	(65)	-	-	-

성별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48명은 그 이유에 대해, 40명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4명)',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4명)'라고 응답하였다.

〈표5-21〉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기타
전 체	(47)	40	4	4	2	1

2. 종교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종교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1%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자 14명 중 43.8%가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이 ‘기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36.6%)’, ‘학교의 입학이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한 차별(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 뒤의 대응으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1명)’, ‘기타(2명)’ 등이 있으며, 11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종교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1%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8.9%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9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3명이다.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1.1%)와 30대(1.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1.3%)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교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14명 중에서,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기업’이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행정기관(15.0%)’, ‘병원이나 요양시설(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로 인한 차별의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의 입학이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35.3%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뒤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는 응답이 1명, ‘기타’라는 응답이 2명으로 나타났다. 종교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14명 중 11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5-22〉 종교로 인한 차별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A)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B)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C)	경험하였다 (A+B+C)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0.7	0.2	0.2	1.1	98.9	100.0
성별							
남자	(626)	0.8	0.2	0.2	1.1	98.9	100.0
여자	(637)	0.6	0.2	0.3	1.1	98.9	100.0
연령							
15-19세	(103)	0.0	0.0	0.0	0.0	100.0	100.0
20대	(260)	1.1	0.0	0.0	1.1	98.9	100.0
30대	(290)	1.3	0.3	0.4	2.0	98.0	100.0
40대	(264)	0.3	0.4	0.4	1.2	98.8	100.0
50대이상	(346)	0.3	0.0	0.3	0.5	99.5	100.0
학력							
중학생	(32)	0.0	0.0	0.0	0.0	100.0	100.0
고등학생	(58)	0.0	0.0	0.0	0.0	100.0	100.0
대학생	(113)	0.0	0.0	0.0	0.0	100.0	100.0
중졸이하	(189)	0.0	0.0	0.0	0.0	100.0	100.0
고졸	(503)	0.8	0.2	0.2	1.1	98.9	100.0
대졸 이상	(367)	1.3	0.3	0.6	2.2	97.8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0.0	0.0	0.0	0.0	100.0	100.0
101-200만원	(272)	0.7	0.4	0.7	1.8	98.2	100.0
201-300만원	(388)	0.7	0.0	0.0	0.7	99.3	100.0
301-400만원	(257)	0.4	0.0	0.0	0.4	99.6	100.0
401만원이상	(156)	1.1	0.0	0.7	1.9	98.1	100.0
모름/무응답	(108)	0.9	0.9	0.0	1.8	98.2	100.0
종교							
기독교	(327)	0.6	0.0	0.0	0.6	99.4	100.0
불교	(325)	0.0	0.0	0.0	0.0	100.0	100.0
가톨릭	(103)	0.9	0.0	0.0	0.9	99.1	100.0
유교	(1)	0.0	0.0	0.0	0.0	100.0	100.0
다른 종교	(13)	0.0	7.7	0.0	7.7	92.3	100.0
없다	(494)	1.2	0.2	0.6	2.0	98.0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대응을 하였다는 응답자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낮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표5-23〉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1)	0	1	0
기타	(2)	0	2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11)	-	-	-
합 계	(14)	-	-	-

종교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1명은 그 이유에 대해, 82.5%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17.5%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라고 응답하였다.

〈표5-24〉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전 체	(11)	9	2

3. 장애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장애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2.1%로 나타났다.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차별 경험자 26명 중 20.3%가 ‘병원이나 요양시설’, 18.0%가 ‘기업’, 11.3%가 ‘대중서비스 제공기관’을 지목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26.0%)’,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25.1%)’,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제기 및 시정 요청(3명)’,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2명)’, ‘법률전문가에 자문(1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1명)’ 등이 있으며, 20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장애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1%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7.9%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8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8명이다.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중졸이하(1.1%)와 고졸(1.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26명 중에서,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라는 응답이 2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업(18.0%)’, ‘대중서비스 제공기관(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로 인한 차별의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25.1%로 높게 나타났다.

〈표5-25〉 장애로 인한 차별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A)	나의 배우자가 경 험하였다 (B)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C)	경험하였다 (A+B+C)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0.6	0.1	1.4	2.1	97.9	100.0
성별							
남자	(626)	0.6	0.0	1.2	1.8	98.2	100.0
여자	(637)	0.6	0.1	1.5	2.3	97.7	100.0
연령							
15-19세	(103)	0.0	0.0	0.6	0.6	99.4	100.0
20대	(260)	0.7	0.4	1.3	2.4	97.6	100.0
30대	(290)	0.3	0.0	1.6	1.9	98.1	100.0
40대	(264)	0.8	0.0	1.8	2.6	97.4	100.0
50대 이상	(346)	0.9	0.0	1.0	1.9	98.1	100.0
학력							
중학생	(32)	0.0	0.0	0.0	0.0	100.0	100.0
고등학생	(58)	0.0	0.0	1.0	1.0	99.0	100.0
대학생	(113)	0.0	0.0	0.0	0.0	100.0	100.0
중졸이하	(189)	1.1	0.0	1.3	2.3	97.7	100.0
고졸	(503)	1.0	0.2	1.7	2.9	97.1	100.0
대졸 이상	(367)	0.2	0.0	1.5	1.8	98.2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3.8	1.2	0.0	4.9	95.1	100.0
101-200만원	(272)	0.3	0.0	2.9	3.2	96.8	100.0
201-300만원	(388)	0.8	0.0	1.0	1.8	98.2	100.0
301-400만원	(257)	0.4	0.0	0.4	0.8	99.2	100.0
401만원이상	(156)	0.0	0.0	2.2	2.2	97.8	100.0
모름/무응답	(108)	0.0	0.0	0.5	0.5	99.5	100.0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91)	3.7	0.5	7.9	12.1	87.9	100.0
장애가 없다	(1072)	0.1	0.0	0.2	0.3	99.7	100.0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3명,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는 응답이 2명으로 나타났으며,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는 응답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는 응답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26명 중 20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한 2명 중 1명과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1명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만족한 반면,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한 2명은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았다.

〈표5-26〉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³⁾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3)	0	2	1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2)	1	0	1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1)	1	0	0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1)	0	0	1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20)	-	-	-
합 계	(27)	-	-	-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20명은 그 이유에 대해, 5명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다.

〈표5-27〉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기타	무응답
전 체	(20)	5	1	1	1	1	11

3)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의 대응방법을 중복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전체 경험자 수가 26명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응방법 응답자의 합계가 1명 많은 27명이 되었음.

4. 나이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나이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차별 경험자 88명 중 67.1%가 '기업'을 지목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71.3%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차별 경험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5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5명)',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1명)' 등이 있으며, 78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나이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7.1%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2.9%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61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7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0명이다.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5-19세(6.4%)와 30대(5.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15-19세의 나이가 어린 응답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88명 중에서,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기업'이라는 응답이 67.1%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행정기관(7.6%)', '대중서비스 제공기관(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로 인한 차별의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9.4%로 높게 나타났다.

〈표5-28〉 나이로 인한 차별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A)	나의 배우자가 경 험하였다 (B)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C)	경험하였다 (A+B+C)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4.8	0.7	1.7	7.1	93.0	100.0
성별							
남자	(626)	3.8	0.8	1.7	6.2	93.8	100.0
여자	(637)	5.9	0.6	1.6	8.0	92.3	100.0
연령							
15-19세	(103)	6.4	0.0	1.5	7.9	92.1	100.0
20대	(260)	3.7	0.0	2.0	5.6	94.4	100.0
30대	(290)	5.8	1.6	2.5	9.9	90.5	100.0
40대	(264)	3.5	0.7	1.1	5.3	94.7	100.0
50대이상	(346)	5.3	0.6	1.2	7.1	93.2	100.0
학력							
중학생	(32)	11.0	0.0	0.0	11.0	89.0	100.0
고등학생	(58)	5.4	0.0	2.6	8.0	92.0	100.0
대학생	(113)	0.9	0.0	2.7	3.6	96.4	100.0
중졸이하	(189)	4.9	0.0	0.5	5.4	94.6	100.0
고졸	(503)	5.5	0.4	1.6	7.6	92.4	100.0
대졸 이상	(367)	4.4	1.7	2.1	8.1	92.5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1.1	2.4	1.1	14.6	86.7	100.0
101-200만원	(272)	5.7	0.0	2.4	8.1	91.9	100.0
201-300만원	(388)	3.9	1.4	1.6	7.0	93.4	100.0
301-400만원	(257)	3.1	0.4	1.3	4.8	95.2	100.0
401만원이상	(156)	3.9	0.0	2.5	6.3	93.7	100.0
모름/무응답	(108)	6.5	0.0	0.0	6.5	93.5	100.0

나이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5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는 응답이 5명이며,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1명으로 나타났다. 나이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88명 중 78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5명 중 3명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는 5명 중 2명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한 반면,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1명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았다.

〈표5-29〉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4)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5)	3	2	0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5)	2	3	0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	0	1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78)	-	-	-
합 계	(89)	-	-	-

나사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78명은 그 이유에 대해, 58명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10명)',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8명)'라는 응답자도 있다.

〈표5-30〉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기타
전 체	(78)	58	10	8	2	2

4)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의 대응방법을 중복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전체 경험자 수가 88명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응방법 응답자의 합계가 1명 많은 89명이 되었음.

5.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5.0%로 나타났다.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차별 경험자 64명 중 56.4%가 ‘기업’을 지목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45.3%)’,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19.9%)’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차별 경험 뒤의 대응으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6명)’,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1명)’, ‘수사기관에 신고(1명)’, ‘기타(3명)’ 등이 있으며, 53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5.0%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5.0%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39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6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9명이다.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20대(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에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64명 중에서,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기업’이라는 응답이 56.4%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14.3%)’, ‘행정기관(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의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19.9%로 높게 나타났다.

〈표5-31〉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A)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B)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C)	경험하였다 (A+B+C)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3.1	0.5	1.5	5.0	95.0	100.0
성별							
남자	(626)	3.9	0.2	1.4	5.5	94.5	100.0
여자	(637)	2.2	0.8	1.5	4.5	95.5	100.0
연령							
15-19세	(103)	2.5	0.0	0.8	3.3	96.7	100.0
20대	(260)	5.9	0.4	2.7	8.9	91.1	100.0
30대	(290)	4.1	1.1	2.1	7.3	92.7	100.0
40대	(264)	0.3	0.8	1.5	2.6	97.4	100.0
50대이상	(346)	2.3	0.0	0.3	2.6	97.4	100.0
학력							
중학생	(32)	4.9	0.0	0.0	4.9	95.1	100.0
고등학생	(58)	1.7	0.0	1.4	3.1	96.9	100.0
대학생	(113)	3.6	0.0	0.9	4.5	95.5	100.0
중졸이하	(189)	2.7	0.6	0.6	3.9	96.1	100.0
고졸	(503)	3.3	0.6	1.0	4.9	95.1	100.0
대졸 이상	(367)	2.8	0.5	3.0	6.3	93.7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9.5	0.0	0.0	9.5	90.5	100.0
101-200만원	(272)	3.0	0.4	2.5	5.9	94.1	100.0
201-300만원	(388)	2.6	1.4	1.2	5.2	94.8	100.0
301-400만원	(257)	1.2	0.0	1.2	2.4	97.6	100.0
401만원이상	(156)	2.8	0.0	1.9	4.7	95.3	100.0
모름/무응답	(108)	4.8	0.0	0.8	5.7	94.3	100.0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뒤의 대응으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는 응답이 6명이며,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64명 중 53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는 6명 중 1명 이외에 모든 응답자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았다.

〈표5-32〉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6)	1	5	0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1)	0	1	0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1)	0	1	0
기타	(3)	0	3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53)	-	-	-
합 계	(64)	-	-	-

학력이나 학별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53명은 그 이유에 대해, 40명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7명은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하였다.

〈표5-33〉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기타
전 체	(53)	40	7	2	2	4

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5.4%로 나타났다.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차별 경험자 6명 중 71.1%가 ‘기업’을 지목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54.2%),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27.2%)’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차별 경험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17명)’, ‘공공기관에 진정(1명)’, ‘수사기관에 신고(1명)’,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1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1명)’ 등이 있으며, 48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5.4%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4.6%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36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8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6명이다.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여자(2.1%)보다 남자(3.5%)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70명 중에서,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기업’이라는 응답이 71.1%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행정기관(11.6%)’, ‘대중서비스 제공기관(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유형별로는,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5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27.2%로 높게 나타났다.

〈표5-34〉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A)	나의 배우자가 경 험하였다 (B)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C)	경험하였다 (A+B+C)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2.8	0.6	2.0	5.4	94.6	100.0
성별							
남자	(626)	3.5	0.7	1.3	5.4	94.6	100.0
여자	(637)	2.1	0.6	2.7	5.5	94.5	100.0
연령							
15-19세	(103)	0.0	0.0	1.8	1.8	98.2	100.0
20대	(260)	6.6	0.3	3.2	10.1	89.9	100.0
30대	(290)	3.9	1.4	1.8	7.1	92.9	100.0
40대	(264)	0.8	0.7	1.4	2.9	97.1	100.0
50대 이상	(346)	1.4	0.3	1.8	3.5	96.5	100.0
학력							
중학생	(32)	0.0	0.0	3.2	3.2	96.8	100.0
고등학생	(58)	0.0	0.0	1.4	1.4	98.6	100.0
대학생	(113)	6.3	0.0	0.9	7.2	92.8	100.0
중졸이하	(189)	2.1	0.0	1.1	3.3	96.7	100.0
고졸	(503)	3.0	1.3	1.5	5.9	94.1	100.0
대졸 이상	(367)	2.4	0.3	3.5	6.2	93.8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3.5	0.0	2.4	5.8	94.2	100.0
101-200만원	(272)	3.7	0.4	1.9	6.0	94.0	100.0
201-300만원	(388)	2.2	1.0	1.9	5.1	94.9	100.0
301-400만원	(257)	3.5	1.1	2.3	6.9	93.1	100.0
401만원이상	(156)	3.0	0.0	2.3	5.3	94.7	100.0
모름/무응답	(108)	0.0	0.0	1.7	1.7	98.3	100.0
고용상태							
정규직	(372)	3.9	0.7	2.4	7.0	93.0	100.0
임시직	(44)	2.1	0.0	2.2	4.3	95.7	100.0
일용직	(19)	4.9	0.0	5.5	10.4	89.6	100.0
계약직	(50)	11.8	0.0	1.8	13.6	86.4	100.0
기타	(34)	0.0	3.1	0.0	3.1	96.9	100.0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17명으로 가장 많으며, '공공기관에 진정'과 '수사기관에 신고',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등의 응답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70명 중 48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17명 중 4명과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한 1명은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한 반면, 이외에 모든 응답자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5-35〉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17)	4	13	0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1)	0	1	0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1)	0	1	0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	1	0	0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1)	0	1	0
기타	(1)	0	1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48)	-	-	-
합 계	(70)	-	-	-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48명은 그 이유에 대해, 34명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5명은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하였다.

〈표5-36〉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기타
전 체	(48)	34	5	4	3	6

7.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2.0%로 나타났다.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차별 경험자 25명 중 40.4%가 ‘기업’을 지목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28.9%)’과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18.8%)’,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17.0%)’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차별 경험 뒤의 대응으로는, ‘공공기관에 진정(1명)’, ‘수사기관에 신고(1명)’ 등이 있으며, 22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출신지역으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0%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8.0%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7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6명이다.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30대(2.6%)와 50대 이상(2.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출신지역별로는 전북(4.9%)지역 출신에서 높게 나타났다.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25명 중에서,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기업’이라는 응답이 40.4%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행정기관(15.8%)’, ‘군대(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의 유형별로는,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18.8%,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17.0%로 높게 나타났다.

〈표5-37〉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A)	나의 배우자가 경 험하였다 (B)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C)	경험하였다 (A+B+C)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3	0.2	0.5	2.0	98.0	100.0
성별							
남자	(626)	1.7	0.0	0.6	2.4	97.6	100.0
여자	(637)	0.9	0.5	0.5	1.8	98.5	100.0
연령							
15-19세	(103)	0.0	0.0	0.0	0.0	100.0	100.0
20대	(260)	0.0	0.4	0.4	0.8	99.2	100.0
30대	(290)	2.6	0.0	0.7	3.3	96.7	100.0
40대	(264)	0.3	0.3	0.4	1.0	99.0	100.0
50대 이상	(346)	2.3	0.3	0.9	3.4	97.1	100.0
학력							
중학생	(32)	0.0	0.0	0.0	0.0	100.0	100.0
고등학생	(58)	0.0	0.0	0.0	0.0	100.0	100.0
대학생	(113)	0.0	0.0	0.9	0.9	99.1	100.0
중졸이하	(189)	2.1	0.0	0.0	2.1	97.9	100.0
고졸	(503)	1.5	0.2	0.8	2.4	97.9	100.0
대졸 이상	(367)	1.3	0.5	0.6	2.4	97.6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2	0.0	1.2	2.4	97.6	100.0
101-200만원	(272)	0.8	0.0	0.7	1.5	98.5	100.0
201-300만원	(388)	1.1	0.3	0.0	1.3	98.7	100.0
301-400만원	(257)	1.8	0.0	0.4	2.2	97.8	100.0
401만원이상	(156)	1.3	0.6	0.6	2.5	97.5	100.0
모름/무응답	(108)	2.5	0.8	1.8	5.2	96.5	100.0
출신지역							
서울	(64)	0.0	0.0	0.0	0.0	100.0	100.0
부산	(31)	0.0	0.0	0.0	0.0	100.0	100.0
대구	(64)	0.0	0.0	0.0	0.0	100.0	100.0
인천	(12)	0.0	0.0	0.0	0.0	100.0	100.0
광주	(12)	0.0	0.0	0.0	0.0	100.0	100.0
대전	(16)	0.0	0.0	0.0	0.0	100.0	100.0
울산	(6)	0.0	0.0	0.0	0.0	100.0	100.0
경기	(99)	1.0	0.0	0.0	1.0	99.0	100.0
강원	(51)	0.0	0.0	0.0	0.0	100.0	100.0
충북	(75)	0.0	0.0	0.0	0.0	100.0	100.0
충남	(140)	2.8	0.0	0.8	3.6	96.4	100.0
전북	(135)	4.9	0.8	1.5	7.2	92.8	100.0
전남	(186)	1.0	1.0	1.0	3.0	97.9	100.0
경북	(157)	1.3	0.0	0.0	1.3	98.7	100.0
경남	(166)	0.7	0.0	1.2	1.8	98.2	100.0
제주	(17)	0.0	0.0	0.0	0.0	100.0	100.0
이북	(28)	0.0	0.0	0.0	0.0	100.0	100.0
해외/기타	(1)	0.0	0.0	0.0	0.0	100.0	100.0
잘 모르겠다	(3)	0.0	0.0	0.0	0.0	100.0	100.0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뒤의 대응으로는, '공공기관에 진정'하였다는 응답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25명 중 22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모든 응답자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낮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표5-38〉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1)	0	1	0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1)	0	1	0
기타	(1)	0	1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22)	-	-	-
합 계	(25)	-	-	-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22명은 그 이유에 대해, 18명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2명은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하였다.

〈표5-39〉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기타
전 체	(22)	18	2	1	2

8.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의 이유로 하는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의 이유로 하는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0.3%로 나타났다.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차별 경험자 4명은 각각 ‘행정기관’, ‘기업’, ‘학교’,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을 지목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과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 등을 언급하였다.
 차별 경험자 4명은 차별을 경험한 뒤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의 이유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0.3%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9.7%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명이다.

〈표5-40〉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의 이유로 하는 차별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0.1	0.1	0.1	0.3	99.7	100.0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의 이유로 하는 차별을 경험했다는 4명은,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행정기관’, ‘기업’, ‘학교’,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과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있다.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의 이유로 하는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4명은 모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의 이유로 하는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4명 중 3명은 그 이유에 대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기타'라는 응답이 1명 있다.

〈표5-41〉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타
전 체	(4)	3	1

9.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차별 경험자 31명 중 37.7%가 '기업', 22.7%가 '대중서비스 제공기관'을 지목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41.6%)',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16.3%)'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차별 경험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1명)',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 요청(1명)', '기타(2명)' 등이 있으며, 27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5%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7.5%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9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2명이다.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20대(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학생(4.5%)이 높게 나타났다.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31명 중에서,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기업'이라는 응답이 37.7%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중서비스 제공기관(22.7%)', '군대(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의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16.3%로 높게 나타났다.

〈표5-42〉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A)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 였다 (B)	경험하였다 (A+B)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5	0.9	2.5	97.5	100.0
성별						
남자	(626)	1.0	1.3	2.2	97.8	100.0
여자	(637)	2.0	0.6	2.7	97.3	100.0
연령						
15-19세	(103)	1.1	1.0	2.1	97.9	100.0
20대	(260)	4.2	0.4	4.6	95.4	100.0
30대	(290)	1.3	2.0	3.3	96.7	100.0
40대	(264)	0.4	0.8	1.2	98.8	100.0
50대이상	(346)	0.6	0.6	1.2	98.8	100.0
학력						
중학생	(32)	0.0	0.0	0.0	100.0	100.0
고등학생	(58)	1.9	0.0	1.9	98.1	100.0
대학생	(113)	4.5	0.9	5.5	94.5	100.0
중졸이하	(189)	1.1	0.0	1.1	98.9	100.0
고졸	(503)	1.6	1.4	3.0	97.0	100.0
대졸 이상	(367)	0.8	1.0	1.9	98.1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2	0.0	1.2	98.8	100.0
101-200만원	(272)	1.5	1.1	2.7	97.3	100.0
201-300만원	(388)	2.6	1.1	3.7	96.3	100.0
301-400만원	(257)	0.0	1.1	1.1	98.9	100.0
401만원이상	(156)	1.9	1.2	3.1	96.9	100.0
모름/무응답	(108)	0.9	0.0	0.9	99.1	100.0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과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라는 응답이 2명이다.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31명 중 27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기타'라는 응답자 2명 중 1명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응답자들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낮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표5-43〉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1)	0	1	0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	0	1	0
기타	(2)	1	1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27)	-	-	-
합 계	(31)	-	-	-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27명은 그 이유에 대해, 17명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4명은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3명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라고 응답하였다.

〈표5-44〉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기타	무응답
전 체	(20)	17	4	3	1	2	1

1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6%로 나타났다.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차별 경험자 20명 중 55.5%가 '기업', 15.37%가 '행정기관'을 지목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44.6%)',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18.8%)'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차별 경험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1명)', '기타(1명)' 등이 있으며, 18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6%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8.4%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9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9명이다.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30대(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사별(8.7%)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20명 중에서,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기업'이라는 응답이 55.5%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행정기관(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18.8%)',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10.9%)',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5-45〉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A)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B)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C)	경험하였다 (A+B+C)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0.7	0.2	0.7	1.6	98.4	100.0
성별							
남자	(626)	0.2	0.3	0.3	0.8	99.2	100.0
여자	(637)	1.2	0.1	1.0	2.3	97.7	100.0
연령							
15-19세	(103)	0.0	0.0	0.0	0.0	100.0	100.0
20대	(260)	0.3	0.0	0.9	1.2	98.8	100.0
30대	(290)	1.8	1.0	1.4	4.2	95.8	100.0
40대	(264)	0.0	0.0	0.4	0.4	99.6	100.0
50대이상	(346)	0.6	0.0	0.3	0.9	99.1	100.0
학력							
중학생	(32)	0.0	0.0	0.0	0.0	100.0	100.0
고등학생	(58)	0.0	0.0	0.0	0.0	100.0	100.0
대학생	(113)	0.0	0.0	0.0	0.0	100.0	100.0
중졸이하	(189)	1.2	0.0	0.0	1.2	98.8	100.0
고졸	(503)	0.8	0.2	0.9	1.9	98.1	100.0
대졸 이상	(367)	0.6	0.5	1.0	2.2	97.8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2.7	0.0	0.0	2.7	97.3	100.0
101-200만원	(272)	0.4	0.7	1.1	2.2	97.8	100.0
201-300만원	(388)	0.7	0.2	0.7	1.6	98.4	100.0
301-400만원	(257)	0.2	0.0	0.8	1.0	99.0	100.0
401만원이상	(156)	0.6	0.0	0.4	1.0	99.0	100.0
모름/무응답	(108)	0.8	0.0	0.0	0.8	99.2	100.0
혼인상태							
기혼	(834)	0.5	0.1	0.7	1.3	98.7	100.0
미혼	(388)	0.5	0.3	0.2	0.9	99.1	100.0
이혼	(11)	0.0	8.8	9.8	18.6	81.4	100.0
사별	(25)	8.7	0.0	0.0	8.7	91.3	100.0
동거	(4)	0.0	0.0	25.3	25.3	74.7	100.0
기타	(1)	0.0	0.0	0.0	0.0	100.0	100.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과 '기타'라는 응답이 각각 1명이며,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20명 중 18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2명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낮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표5-46〉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1)	0	1	0
기타	(1)	0	1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18)	-	-	-
합 계	(20)	-	-	-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8명은 그 이유에 대해, 17명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1명 있다.

〈표5-47〉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전 체	(18)	17	1

11.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0.6%로 나타났다.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차별 경험자 8명 중 2명은 ‘행정기관’, 2명은 ‘기업’, 2명은 ‘학교’라고 응답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3명)’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차별 경험자 8명은 차별을 경험한 뒤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0.6%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9.4%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3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4명이다.

〈표5-48〉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0.2	0.1	0.3	0.6	99.4	100.0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8명 중에서,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으로 ‘행정기관’, ‘기업’, ‘학교’라는 응답이 각각 2명씩 나타났다.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학교의 입학이나 이용, 교육내용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각각 1명이다.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뒤의 대응으로는,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8명 모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8명 모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다.

12.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0.6%로 나타났다.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차별 경험자 7명 중 3명이 ‘행정기관’을 지목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2명)’,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1명)’,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1명)’ 등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2명)’,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1명)’,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1명)’, ‘기타(1명)’ 등이 있으며, 4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0.6%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9.5%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5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명이다.

〈표5-49〉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0.4	0.1	0.1	0.6	99.4	100.0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7명 중에서,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행정기관’이라는 응답이 3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군대(1명)’, ‘학교(1명)’, ‘기타(2명)’ 등이 있다.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의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명이며, 그 외에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1명)’,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1명)’, ‘기타(3명)’ 등이 있다.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2명,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응답과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1명, '기타'가 2명이며,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7명 중 4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모든 응답자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낮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표5-50〉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⁵⁾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2)	0	2	0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	0	1	0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1)	0	1	0
기타	(2)	0	2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4)	-	-	-
합 계	(10)	-	-	-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4명 중 3명이 그 이유에 대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하였다.

〈표5-51〉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전 체	(4)	2	1

5)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의 대응방법을 중복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전체 경험자 수가 7명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응방법 응답자의 합계가 3명 많은 10명이 되었음.

13.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0.4%로 나타났다.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차별 경험자 5명 중 4명이 ‘검찰이나 경찰’을 지목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2명)’, 기타(3명)’ 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2명)’, ‘기타(1명)’ 등이 있으며, 3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0.4%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9.6%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4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명이다.

〈표5-52〉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0.3	0.1	0.4	99.6	100.0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5명 중에서,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이라는 응답이 4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업’이라는 응답이 1명 있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명이며, ‘기타’라는 응답이 3명으로 나타났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2명, '기타'라는 응답이 1명이며,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5명 중 3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자 2명 중 1명, '기타'라는 응답자 1명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였다.

〈표5-53〉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⁶⁾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2)	1	1	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1)	1	0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3)	-	-	-
합 계	(6)	-	-	-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3명은 그 이유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1명)',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1명)', '기타(1명)' 등을 제시하였다.

〈표5-54〉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기타
전 체	(3)	1	1	1

6)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의 대응방법을 중복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전체 경험자 수가 5명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응방법 응답자의 합계가 1명 많은 6명이 되었음.

14.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 ▣ 응답자 1,263명 중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0.2%로 나타났다.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차별 경험자 3명 중 2명이 ‘기업’을 지목하였으며, 유형별로는 2명이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이라고 응답하였다.
- 차별 경험자 3명은 차별을 경험한 뒤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0.2%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9.8%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명이다.

〈표5-55〉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0.1	0.1	0.2	99.8	100.0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3명 중에서,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 ‘기업’이라는 응답이 2명이며,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명으로 나타났다.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뒤의 대응으로는, 3명 모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3명 중 1명은 그 이유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2명은 ‘기타’라고 응답하였다.

〈표5-56〉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타
전 체	(3)	1	2

15. 병력으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병력으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4%로 나타났다.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서는, 차별 경험자 17명 중 33.8%가 ‘기업’을, 25.9%가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지목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31.2%)’과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12.4%)’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차별 경험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2명)’, ‘법률전문가에 자문(1명)’, ‘기타(1명)’ 등이 있으며, 13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병력으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4%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8.6%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7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4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6명이다.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1.3%)인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병력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17명 중에서, 33.8%가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으로 ‘기업’을 지목하였으며, ‘병원이나 요양시설’이라는 응답도 25.9%로 높게 나타났다.

차별의 유형별로는 ‘대중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12.4%로 높게 나타났다.

〈표5-57〉 병력으로 인한 차별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A)	나의 배우자가 경 험하였다 (B)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C)	경험하였다 (A+B+C)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0.5	0.4	0.5	1.4	98.7	100.0
성별							
남자	(626)	0.5	0.2	0.5	1.1	99.0	100.0
여자	(637)	0.6	0.6	0.4	1.7	98.3	100.0
연령							
15-19세	(103)	0.0	0.0	0.0	0.0	100.0	100.0
20대	(260)	0.8	0.0	1.0	1.8	98.2	100.0
30대	(290)	0.6	0.8	0.7	2.1	97.9	100.0
40대	(264)	0.3	0.3	0.0	0.6	99.4	100.0
50대이상	(346)	0.6	0.6	0.3	1.6	98.8	100.0
학력							
중학생	(32)	0.0	0.0	0.0	0.0	100.0	100.0
고등학생	(58)	0.0	0.0	0.0	0.0	100.0	100.0
대학생	(113)	0.0	0.0	1.0	1.0	99.0	100.0
중졸이하	(189)	0.6	0.6	0.0	1.1	99.4	100.0
고졸	(503)	1.1	0.6	0.0	1.7	98.3	100.0
대졸 이상	(367)	0.0	0.3	1.3	1.6	98.4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3	1.3	1.2	3.8	96.2	100.0
101-200만원	(272)	0.7	0.0	0.3	1.0	99.0	100.0
201-300만원	(388)	0.7	0.8	0.3	1.7	98.3	100.0
301-400만원	(257)	0.0	0.0	0.9	0.9	99.1	100.0
401만원이상	(156)	0.0	0.0	0.4	0.4	99.6	100.0
모름/무응답	(108)	1.0	1.0	0.0	2.0	99.0	100.0

병력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자가 2명, '법률전문가에 자문'을 구하였다는 응답과 '기타' 응답이 각각 1명이며, 병력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17명 중 13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5-58〉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2)	0	2	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1)	1	0	0
기타	(1)	1	0	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13)	-	-	-
합 계	(17)	-	-	-

병력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3명 중 10명은 그 이유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2명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라고 응답하였다.

〈표5-59〉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응답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기타
전 체	(13)	10	2	2

16.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0.9%로 나타났다.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에 대해서는, 차별 경험자 11명 중 9명이 '기업'을 지목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3명)',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3명)',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2명)' 등을 언급하였다.
차별 경험자 3명은 차별을 경험한 뒤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0.9%이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9.1%로 나타났다. 경험하였다는 응답 중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6명, 배우자가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명, 배우자 외의 가족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3명이다.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30대(1.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1.1%)에서 높게 나타났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11명 중에서, 9명이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한 기관으로 '기업'을 지목하였다.

차별의 유형별로는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과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각각 3명이었으며, 2명의 응답자는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뒤의 대응으로는,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응답자와 '법률전문가에 자문'을 구하였다는 응답자가 각각 1명이며,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11명 중 9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5-60〉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의 경험

(단위: %)

	응답수	내가 경험하였다 (A)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B)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C)	경험하였다 (A+B+C)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0.5	0.2	0.2	0.9	99.2	100.0
성별							
남자	(626)	0.0	0.3	0.2	0.5	99.5	100.0
여자	(637)	0.9	0.2	0.3	1.3	98.8	100.0
연령							
15-19세	(103)	0.0	0.0	0.0	0.0	100.0	100.0
20대	(260)	0.7	0.4	0.3	1.4	98.6	100.0
30대	(290)	1.3	0.7	0.4	2.4	98.0	100.0
40대	(264)	0.0	0.0	0.0	0.0	100.0	100.0
50대이상	(346)	0.0	0.0	0.3	0.3	99.7	100.0
학력							
중학생	(32)	0.0	0.0	0.0	0.0	100.0	100.0
고등학생	(58)	0.0	0.0	0.0	0.0	100.0	100.0
대학생	(113)	0.0	0.0	0.0	0.0	100.0	100.0
중졸이하	(189)	0.0	0.0	0.0	0.0	100.0	100.0
고졸	(503)	0.4	0.0	0.4	0.8	99.2	100.0
대졸 이상	(367)	1.1	0.8	0.2	2.0	98.2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0.0	0.0	0.0	0.0	100.0	100.0
101-200만원	(272)	0.7	0.4	0.4	1.5	98.5	100.0
201-300만원	(388)	0.5	0.2	0.0	0.7	99.3	100.0
301-400만원	(257)	0.0	0.0	0.4	0.4	99.6	100.0
401만원이상	(156)	1.3	0.7	0.4	2.4	98.3	100.0
모름/무응답	(108)	0.0	0.0	0.0	0.0	100.0	100.0

대응방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 및 시정 요청'하였다는 1명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았다.

〈표5-61〉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및 만족도

(단위: 명)

	응답수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1)	0	1	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1)	0	0	1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9)	-	-	-
합 계	(11)	-	-	-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9명 중 7명은 그 이유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2명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라고 응답하였다.

〈표5-62〉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전 체	(9)	7	2

제4절 간접적인 차별의 경험

1. 성별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성별로 인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25.6%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5.6%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74.4%로 응답자 4명 중 1명은 성별로 인한 차별을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직(37.0%)과 전문/관리/경영직(3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63〉 성별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25.6	74.4	100.0
성별	남자	(626)	25.7	74.3	100.0
	여자	(637)	25.4	74.6	100.0
연령	15-19세	(103)	31.8	68.2	100.0
	20대	(260)	32.2	67.8	100.0
	30대	(290)	33.1	66.9	100.0
	40대	(264)	21.2	78.8	100.0
	50대이상	(346)	15.7	84.3	100.0
학력	중학생	(32)	34.3	65.7	100.0
	고등학생	(58)	30.8	69.2	100.0
	대학생	(113)	37.5	62.5	100.0
	중졸이하	(189)	9.6	90.4	100.0
	고졸	(503)	22.7	77.3	100.0
	대졸 이상	(367)	32.4	67.6	100.0
직업	농/축/수산/광업	(14)	7.3	92.7	100.0
	자영업	(334)	19.5	80.5	100.0
	판매/서비스직종사자	(167)	22.4	77.6	100.0
	생산/기능/노무직	(91)	18.9	81.1	100.0
	사무직	(174)	37.0	63.0	100.0
	전문/관리/경영직	(73)	36.0	64.0	100.0
	주부	(163)	19.9	80.1	100.0
	학생	(189)	33.6	66.4	100.0
	무직/퇴직/기타	(57)	26.5	73.5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7.3	82.7
101-200만원		(272)	22.3	77.7	100.0
201-300만원		(388)	27.9	72.1	100.0
301-400만원		(257)	24.1	75.9	100.0
401만원이상		(156)	31.5	68.5	100.0
모름/무응답		(108)	26.8	73.2	100.0

2. 종교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종교로 인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2.5%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종교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2.5%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7.5%로 응답자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종교로 인한 차별을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종교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9.8%)보다는 남자(15.8%)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64〉 종교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2.5	87.5	100.0
성별	남자	(626)	15.3	84.7	100.0
	여자	(637)	9.8	90.2	100.0
연령	15-19세	(103)	15.3	84.7	100.0
	20대	(260)	14.0	86.0	100.0
	30대	(290)	13.3	86.7	100.0
	40대	(264)	11.4	88.6	100.0
	50대이상	(346)	10.7	89.3	100.0
학력	중학생	(32)	15.8	84.2	100.0
	고등학생	(58)	16.6	83.4	100.0
	대학생	(113)	16.2	83.8	100.0
	중졸이하	(189)	6.3	93.7	100.0
	고졸	(503)	11.6	88.4	100.0
	대졸 이상	(367)	14.8	85.2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3.0	87.0	100.0
	101-200만원	(272)	13.8	86.2	100.0
	201-300만원	(388)	12.1	87.9	100.0
	301-400만원	(257)	12.1	87.9	100.0
	401만원이상	(156)	12.1	87.9	100.0
	모름/무응답	(108)	11.6	88.4	100.0

3. 장애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장애로 인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29.8%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9.8%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70.2%로 응답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장애로 인한 차별을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26.5%)보다는 남자(33.1%)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65〉 장애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29.8	70.2	100.0
성별	남자	(626)	33.1	66.9	100.0
	여자	(637)	26.5	73.5	100.0
연령	15-19세	(103)	39.2	60.8	100.0
	20대	(260)	30.3	69.7	100.0
	30대	(290)	33.5	66.5	100.0
	40대	(264)	29.0	71.0	100.0
	50대 이상	(346)	24.0	76.0	100.0
학력	중학생	(32)	40.4	59.6	100.0
	고등학생	(58)	39.4	60.6	100.0
	대학생	(113)	31.8	68.2	100.0
	중졸이하	(189)	22.2	77.8	100.0
	고졸	(503)	28.6	71.4	100.0
	대졸 이상	(367)	32.2	67.8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31.4	68.6	100.0
	101-200만원	(272)	27.9	72.1	100.0
	201-300만원	(388)	27.0	73.0	100.0
	301-400만원	(257)	30.0	70.0	100.0
	401만원이상	(156)	39.0	61.0	100.0
	모름/무응답	(108)	29.3	70.7	100.0

4. 나이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나이로 인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39.1%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나이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9.1%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60.9%로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가 나이로 인한 차별을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나이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36.5%)보다는 남자(41.8%)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66〉 나이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39.1	60.9	100.0
성별	남자	(626)	41.8	58.2	100.0
	여자	(637)	36.5	63.5	100.0
연령	15-19세	(103)	33.7	66.3	100.0
	20대	(260)	38.2	61.8	100.0
	30대	(290)	43.2	56.8	100.0
	40대	(264)	40.9	59.1	100.0
	50대이상	(346)	36.6	63.4	100.0
학력	중학생	(32)	31.3	68.7	100.0
	고등학생	(58)	37.6	62.4	100.0
	대학생	(113)	35.1	64.9	100.0
	중졸이하	(189)	31.1	68.9	100.0
	고졸	(503)	40.9	59.1	100.0
	대졸 이상	(367)	43.0	57.0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36.6	63.4	100.0
	101-200만원	(272)	43.7	56.3	100.0
	201-300만원	(388)	39.5	60.5	100.0
	301-400만원	(257)	36.8	63.2	100.0
	401만원이상	(156)	40.7	59.3	100.0
	모름/무응답	(108)	31.6	68.4	100.0

5.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36.7%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6.7%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63.3%로 응답자 10명 중 4명 미만이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을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33.0%)보다는 남자(40.4%)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67〉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36.7	63.3	100.0
성별					
	남자	(626)	40.4	59.6	100.0
	여자	(637)	33.0	67.0	100.0
연령					
	15-19세	(103)	37.0	63.0	100.0
	20대	(260)	46.2	53.8	100.0
	30대	(290)	41.3	58.7	100.0
	40대	(264)	33.6	66.4	100.0
	50대이상	(346)	28.0	72.0	100.0
학력					
	중학생	(32)	34.5	65.5	100.0
	고등학생	(58)	35.9	64.1	100.0
	대학생	(113)	49.8	50.2	100.0
	중졸이하	(189)	24.0	76.0	100.0
	고졸	(503)	35.2	64.8	100.0
	대졸 이상	(367)	41.6	58.4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36.5	63.5	100.0
	101-200만원	(272)	37.5	62.5	100.0
	201-300만원	(388)	38.1	61.9	100.0
	301-400만원	(257)	33.8	66.2	100.0
	401만원이상	(156)	40.9	59.1	100.0
	모름/무응답	(108)	30.6	69.4	100.0

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38.5%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8.5%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61.5%로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35.4%)보다는 남자(41.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68〉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38.5	61.5	100.0
성별					
	남자	(626)	41.6	58.4	100.0
	여자	(637)	35.4	64.6	100.0
연령					
	15-19세	(103)	20.4	79.6	100.0
	20대	(260)	43.0	57.0	100.0
	30대	(290)	47.7	52.3	100.0
	40대	(264)	40.2	59.8	100.0
	50대이상	(346)	31.5	68.5	100.0
학력					
	중 학생	(32)	18.8	81.2	100.0
	고등 학생	(58)	24.0	76.0	100.0
	대 학생	(113)	37.5	62.5	100.0
	중졸이하	(189)	27.1	72.9	100.0
	고졸	(503)	40.3	59.7	100.0
	대졸 이상	(367)	46.2	53.8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35.6	64.4	100.0
	101-200만원	(272)	38.6	61.4	100.0
	201-300만원	(388)	40.0	60.0	100.0
	301-400만원	(257)	40.5	59.5	100.0
	401만원이상	(156)	41.1	58.9	100.0
	모름/무응답	(108)	26.4	73.6	100.0

7.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7.9%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9%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2.1%로 응답자 10명 중 2명 정도가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30대(2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69〉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7.9	82.1	100.0
성별				
남자	(626)	20.1	79.9	100.0
여자	(637)	15.8	84.2	100.0
연령				
15-19세	(103)	17.3	82.7	100.0
20대	(260)	16.9	83.1	100.0
30대	(290)	22.6	77.4	100.0
40대	(264)	17.6	82.4	100.0
50대 이상	(346)	15.2	84.8	100.0
학력				
중 학생	(32)	14.1	85.9	100.0
고 등 학생	(58)	16.0	84.0	100.0
대 학생	(113)	21.6	78.4	100.0
중졸이하	(189)	11.3	88.7	100.0
고 졸	(503)	17.7	82.3	100.0
대 졸 이상	(367)	21.2	78.8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5.4	84.6	100.0
101-200만원	(272)	18.8	81.2	100.0
201-300만원	(388)	18.4	81.6	100.0
301-400만원	(257)	18.5	81.5	100.0
401만원이상	(156)	18.2	81.8	100.0
모름/무응답	(108)	14.0	86.0	100.0

8.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4.9%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4.9%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5.1%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5-70〉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4.9	85.1	100.0
성별	남자	(626)	16.3	83.7	100.0
	여자	(637)	13.4	86.6	100.0
연령	15-19세	(103)	16.4	83.6	100.0
	20대	(260)	19.1	80.9	100.0
	30대	(290)	15.6	84.4	100.0
	40대	(264)	13.7	86.3	100.0
	50대이상	(346)	11.4	88.6	100.0
학력	중학생	(32)	19.0	81.0	100.0
	고등학생	(58)	14.9	85.1	100.0
	대학생	(113)	21.8	78.2	100.0
	중졸이하	(189)	8.9	91.1	100.0
	고졸	(503)	13.6	86.4	100.0
	대졸 이상	(367)	17.2	82.8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2.3	87.7	100.0
	101-200만원	(272)	16.3	83.7	100.0
	201-300만원	(388)	13.0	87.0	100.0
	301-400만원	(257)	16.0	84.0	100.0
	401만원이상	(156)	17.5	82.5	100.0
	모름/무응답	(108)	13.3	86.7	100.0

9.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20.8%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8%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79.2%로 응답자 10명 중 2명 정도가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29.8%)과 전문/관리/경영직(27.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71〉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20.8	79.2	100.0
성별				
남자	(626)	21.6	78.4	100.0
여자	(637)	20.1	79.9	100.0
연령				
15-19세	(103)	29.7	70.3	100.0
20대	(260)	27.2	72.8	100.0
30대	(290)	23.3	76.7	100.0
40대	(264)	15.5	84.5	100.0
50대이상	(346)	15.4	84.6	100.0
학력				
중학생	(32)	23.2	76.8	100.0
고등 학생	(58)	32.1	67.9	100.0
대 학생	(113)	27.3	72.7	100.0
중졸이하	(189)	8.0	92.0	100.0
고졸	(503)	21.6	78.4	100.0
대졸 이상	(367)	22.5	77.5	100.0
직업				
농/축/수산/광업	(14)	7.3	92.7	100.0
자영업	(334)	17.6	82.4	100.0
판매/서비스직종사자	(167)	17.4	82.6	100.0
생산/기능/노무직	(91)	17.0	83.0	100.0
사무직	(174)	23.4	76.6	100.0
전문/관리/경영직	(73)	27.4	72.6	100.0
주부	(163)	16.8	83.2	100.0
학생	(189)	29.8	70.2	100.0
무직/퇴직/기타	(57)	24.9	75.1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3.1	86.9	100.0
101-200만원	(272)	22.5	77.5	100.0
201-300만원	(388)	18.6	81.4	100.0
301-400만원	(257)	21.4	78.6	100.0
401만원이상	(156)	24.8	75.2	100.0
모름/무응답	(108)	23.9	76.1	100.0

1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9.1%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9.1%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0.9%로 응답자 10명 중 2명 정도가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30대(2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72〉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9.1	80.9	100.0
성별	남자	(626)	18.0	82.0	100.0
	여자	(637)	20.2	79.8	100.0
연령	15-19세	(103)	19.0	81.0	100.0
	20대	(260)	20.1	79.9	100.0
	30대	(290)	26.5	73.5	100.0
	40대	(264)	15.7	84.3	100.0
	50대이상	(346)	14.8	85.2	100.0
학력	중 학생	(32)	19.4	80.6	100.0
	고등 학생	(58)	16.7	83.3	100.0
	대 학생	(113)	14.6	85.4	100.0
	중졸이하	(189)	6.9	93.1	100.0
	고졸	(503)	20.8	79.2	100.0
	대졸 이상	(367)	24.8	75.2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0.5	89.5	100.0
	101-200만원	(272)	18.1	81.9	100.0
	201-300만원	(388)	19.5	80.5	100.0
	301-400만원	(257)	21.2	78.8	100.0
	401만원이상	(156)	21.5	78.5	100.0
	모름/무응답	(108)	18.1	81.9	100.0

11.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4.8%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4.8%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5.2%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관리/경영직(22.0%)과 학생(18.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73〉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4.8	85.2	100.0
성별	남자	(626)	14.1	85.9	100.0
	여자	(637)	15.5	84.5	100.0
연령	15-19세	(103)	16.6	83.4	100.0
	20대	(260)	18.0	82.0	100.0
	30대	(290)	16.0	84.0	100.0
	40대	(264)	13.3	86.7	100.0
	50대 이상	(346)	12.0	88.0	100.0
학력	중학생	(32)	18.9	81.1	100.0
	고등학생	(58)	16.9	83.1	100.0
	대학생	(113)	18.8	81.2	100.0
	중졸이하	(189)	4.8	95.2	100.0
	고졸	(503)	15.0	85.0	100.0
	대졸 이상	(367)	17.8	82.2	100.0
직업	농/축/수산/광업	(14)	8.6	91.4	100.0
	자영업	(334)	15.3	84.7	100.0
	판매/서비스직종사자	(167)	12.6	87.4	100.0
	생산/기능/노무직	(91)	8.8	91.2	100.0
	사무직	(174)	14.8	85.2	100.0
	전문/관리/경영직	(73)	22.0	78.0	100.0
	주부	(163)	13.0	87.0	100.0
	학생	(189)	18.2	81.8	100.0
	무직/퇴직/기타	(57)	14.3	85.7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3.5	86.5
101-200만원		(272)	14.0	86.0	100.0
201-300만원		(388)	14.7	85.3	100.0
301-400만원		(257)	16.2	83.8	100.0
401만원이상		(156)	15.6	84.4	100.0
모름/무응답		(108)	13.9	86.1	100.0

12. 사상 및 정치성향으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사상 및 정치성향으로 인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1.2%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사상 및 정치성향으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1.2%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8.8%로 응답자 10명 중 1명 정도가 사상 및 정치성향으로 인한 차별을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사상 및 정치성향으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30대(13.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74〉 사상 및 정치성향으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1.2	88.8	100.0
성별	남자	(626)	12.7	87.3	100.0
	여자	(637)	9.7	90.3	100.0
연령	15-19세	(103)	12.6	87.4	100.0
	20대	(260)	10.0	90.0	100.0
	30대	(290)	13.8	86.2	100.0
	40대	(264)	9.3	90.7	100.0
	50대이상	(346)	10.9	89.1	100.0
학력	중 학생	(32)	16.6	83.4	100.0
	고 등 학생	(58)	13.1	86.9	100.0
	대 학생	(113)	10.6	89.4	100.0
	중졸이하	(189)	4.2	95.8	100.0
	고졸	(503)	11.1	88.9	100.0
	대졸 이상	(367)	14.4	85.6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9.5	90.5	100.0
	101-200만원	(272)	11.5	88.5	100.0
	201-300만원	(388)	11.2	88.8	100.0
	301-400만원	(257)	11.1	88.9	100.0
	401만원이상	(156)	12.6	87.4	100.0
	모름/무응답	(108)	9.8	90.2	100.0

13.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8.0%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8.0%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2.0%로 응답자 10명 중 2명 정도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14.0%)보다는 남자(22.1%)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75〉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8.0	82.0	100.0
성별				
남자	(626)	22.1	77.9	100.0
여자	(637)	14.0	86.0	100.0
연령				
15-19세	(103)	20.9	79.1	100.0
20대	(260)	18.4	81.6	100.0
30대	(290)	18.8	81.2	100.0
40대	(264)	20.6	79.4	100.0
50대이상	(346)	14.2	85.8	100.0
학력				
중 학생	(32)	22.4	77.6	100.0
고 등 학생	(58)	20.9	79.1	100.0
대 학생	(113)	20.1	79.9	100.0
중졸이하	(189)	9.2	90.8	100.0
고 졸	(503)	18.1	81.9	100.0
대 졸 이상	(367)	20.9	79.1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7.7	82.3	100.0
101-200만원	(272)	18.7	81.3	100.0
201-300만원	(388)	18.2	81.8	100.0
301-400만원	(257)	19.7	80.3	100.0
401만원이상	(156)	17.2	82.8	100.0
모름/무응답	(108)	12.9	87.1	100.0

14.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0.6%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0.6%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9.4%로 응답자 10명 중 1명만이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5-76〉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0.6	89.4	100.0
성별	남자	(626)	11.7	88.3	100.0
	여자	(637)	9.5	90.5	100.0
연령	15-19세	(103)	15.4	84.6	100.0
	20대	(260)	14.2	85.8	100.0
	30대	(290)	10.4	89.6	100.0
	40대	(264)	9.4	90.6	100.0
	50대이상	(346)	7.5	92.5	100.0
학력	중 학생	(32)	17.0	83.0	100.0
	고등 학생	(58)	16.1	83.9	100.0
	대 학생	(113)	15.6	84.4	100.0
	중졸이하	(189)	3.8	96.2	100.0
	고졸	(503)	10.4	89.6	100.0
	대졸 이상	(367)	11.4	88.6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0.5	89.5	100.0
	101-200만원	(272)	10.8	89.2	100.0
	201-300만원	(388)	10.3	89.7	100.0
	301-400만원	(257)	11.0	89.0	100.0
	401만원이상	(156)	11.1	88.9	100.0
	모름/무응답	(108)	9.5	90.5	100.0

15. 병력(病歷)으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병력으로 인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4.5%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병력으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4.5%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5.5%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병력으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11.5%)보다는 남자(17.5%)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77〉 병력으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4.5	85.5	100.0
성별	남자	(626)	17.5	82.5	100.0
	여자	(637)	11.5	88.5	100.0
연령	15-19세	(103)	12.0	88.0	100.0
	20대	(260)	19.7	80.3	100.0
	30대	(290)	15.8	84.2	100.0
	40대	(264)	11.0	89.0	100.0
	50대이상	(346)	12.8	87.2	100.0
학력	중학생	(32)	14.0	86.0	100.0
	고등학생	(58)	13.4	86.6	100.0
	대학생	(113)	16.3	83.7	100.0
	중졸이하	(189)	6.6	93.4	100.0
	고졸	(503)	14.5	85.5	100.0
	대졸 이상	(367)	18.1	81.9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6.8	83.2	100.0
	101-200만원	(272)	14.0	86.0	100.0
	201-300만원	(388)	13.9	86.1	100.0
	301-400만원	(257)	15.3	84.7	100.0
	401만원이상	(156)	14.1	85.9	100.0
	모름/무응답	(108)	14.3	85.7	100.0

16.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

▣ 응답자 1,263명 중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4.9%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에서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4.9%이며,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5.1%로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30대(2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78〉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의 간접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14.9	85.1	100.0
성별	남자	(626)	14.4	85.6	100.0
	여자	(637)	15.4	84.6	100.0
연령	15-19세	(103)	15.4	84.6	100.0
	20대	(260)	16.5	83.5	100.0
	30대	(290)	23.3	76.7	100.0
	40대	(264)	11.1	88.9	100.0
	50대이상	(346)	9.5	90.5	100.0
학력	중학생	(32)	14.4	85.6	100.0
	고등학생	(58)	11.3	88.7	100.0
	대학생	(113)	14.5	85.5	100.0
	중졸이하	(189)	4.3	95.7	100.0
	고졸	(503)	15.3	84.7	100.0
	대졸 이상	(367)	20.6	79.4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0.6	89.4	100.0
	101-200만원	(272)	14.6	85.4	100.0
	201-300만원	(388)	16.1	83.9	100.0
	301-400만원	(257)	13.5	86.5	100.0
	401만원이상	(156)	18.4	81.6	100.0
	모름/무응답	(108)	13.1	86.9	100.0

제4장 인권현안 관련

< 결과 요약 >

1.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 ▣ 일반인 1,263명 중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폐 의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6.7%,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43.3%로 나타남.
- ▣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하여, 일반인은 33.1%가 일부 조항의 개정을 조건으로 한 유지를, 27.7%는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폐지를 선호함.

전문가는 47.8%가 조건 없는 완전 폐지를 선호하였으며, 인권·시민단체의 경우는 88.1%가 조건 없는 완전 폐지 입장을 나타내어 일반인이나 전문가와 차이를 보임.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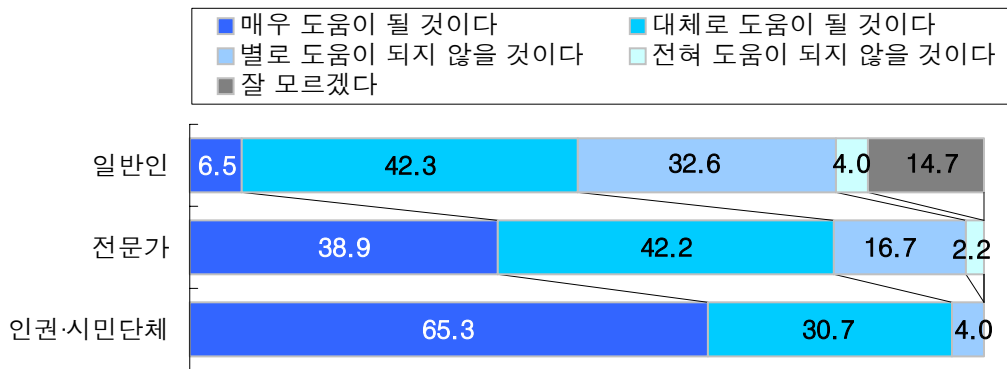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완전 폐지	7.9	47.8	88.1
폐지 및 대체입법	27.7	18.9	6.9
폐지 및 형법 대체	6.0	13.3	1.0
유지 및 일부 개정	33.1	17.8	4.0
현행 유지	8.5	1.1	0.0
잘 모르겠다	16.8	1.1	0.0

■ 국가보안법 개폐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48.8%, 전문가의 81.1%,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6.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일반인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

〈국가보안법 개폐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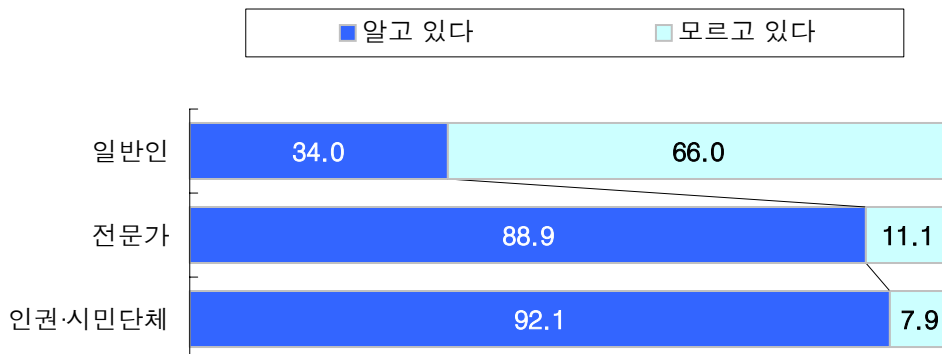
(단위:%)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실에 대해, 일반인의 34.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8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92.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지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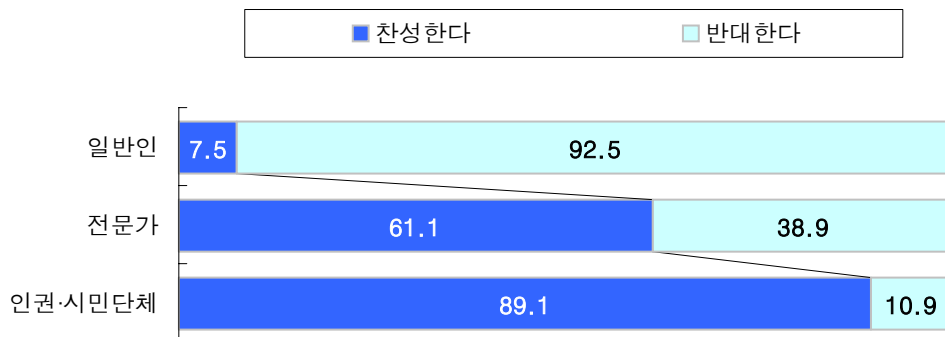


2.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 일반인 1,263명 중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3.9%,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6.1%로 나타남.
-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일반인은 7.5%만이 찬성하고 92.5%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가는 61.1%, 인권·시민단체는 89.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단위:%)



-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일반인 응답자 중 36.7%는 현재와 같이 범법자로 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9.5%는 사회봉사기관 등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함.

반면, 전문가는 63.3%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84.2%가 사회봉사기관 등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과 차이를 보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현재와 같이 범법자로 처벌	36.7	3.3	2.0
군복무대신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대체복무 허용	29.5	63.3	84.2
기초군사 훈련을 제외한 공익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근무 허용	15.5	13.3	8.9
비전투 병과에 배치	14.6	18.9	5.0
잘 모르겠다	3.7	1.1	0.0

제1절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1.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에 대한 인지도

■ 일반인 1,263명 중 국가보안법의 개폐 의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6.7%,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43.3%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56.7%가 국가보안법의 개폐 의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3.3%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6명 정도가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68.9%)와 30대(64.9%)에서, 성별로는 여자(45.0%)보다 남자(68.6%)가 높게 나타났다.

〈표6-1〉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응답수	매우 잘 알고 있다 (A)	조금 알고 있다 (B)	알고 있다 (A+B)	잘 모르고 있다 (C)	전혀 모르고 있다 (D)	모르고 있다 (C+D)	계
전 체	(1,263)	5.9	50.8	56.7	35.4	7.9	43.3	100.0
성별								
남자	(626)	9.7	58.9	68.6	26.0	5.4	31.4	100.0
여자	(637)	2.2	42.8	45.0	44.5	10.4	55.0	100.0
연령								
15-19세	(103)	0.0	27.2	27.2	49.7	23.0	72.8	100.0
20대	(260)	4.6	39.6	44.2	46.4	9.4	55.8	100.0
30대	(290)	7.0	58.0	64.9	30.5	4.6	35.1	100.0
40대	(264)	4.9	64.0	68.9	25.6	5.5	31.1	100.0
50대이상	(346)	8.6	50.1	58.7	34.3	7.0	41.3	100.0
학력								
중학생	(32)	0.0	15.7	15.7	55.7	28.7	84.3	100.0
고등학생	(58)	1.7	30.0	31.8	48.2	20.0	68.2	100.0
대학생	(113)	6.1	44.8	51.0	40.1	9.0	49.0	100.0
중졸이하	(189)	3.1	39.7	42.8	44.2	12.9	57.2	100.0
고졸	(503)	5.8	54.1	60.0	33.5	6.5	40.0	100.0
대졸 이상	(367)	8.7	60.0	68.7	28.0	3.3	31.3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4.7	32.8	37.5	47.5	15.0	62.5	100.0
101-200만원	(272)	7.7	45.0	52.8	38.5	8.7	47.2	100.0
201-300만원	(388)	4.7	56.4	61.1	33.3	5.6	38.9	100.0
301-400만원	(257)	4.8	52.5	57.2	36.7	6.0	42.8	100.0
401만원이상	(156)	10.2	55.9	66.1	25.4	8.5	33.9	100.0
모름/무응답	(108)	3.5	46.9	50.4	37.0	12.7	49.6	100.0

3. 비정규직 문제 관련

- 일반인 1,263명 중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4.0%,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6.0%로 나타남.
-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일반인 응답자 중 31.3%는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8.8%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5.0%는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함.

전문가 역시,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 완화(38.9%)', '정규직과 동일노동 시 동일임금 지급(22.2%)',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20.0%)'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38.6%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4.8%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이나 전문가와 차이를 보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 완화	31.3	38.9	17.8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	28.8	20.0	18.8
동일노동 시 동일임금 지급	25.0	22.2	24.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8.7	18.9	38.6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	2.3	0.0	0.0
잘 모르겠다	3.8	0.0	0.0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의 개인신상정보', '신용관련정보 및 금융정보', '가족 구성원의 신상내역 등 가족 관련 정보' 등을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응답함.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신상정보	44.4	25.6	50.5
신용관련정보 및 금융정보	37.0	38.9	26.7
가족 구성원의 신상내역 등 가족 관련 정보	13.2	18.9	11.9
소유 부동산 내역 등 재산 관련 정보	2.6	4.4	2.0
개인의 학력이나 성적 등 교육관련 정보	2.1	1.1	3.0
본인의 진료기록 등 의료 관련 정보	0.6	11.1	5.9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경험과 관련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우려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살 때', '인터넷 동호회에 회원가입을 할 때'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경험>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58.1	87.8	92.1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살 때	48.9	82.2	83.2
인터넷 동호회에 회원가입을 할 때	43.3	76.7	81.2
인터넷 बैं킹으로 거래를 할 때	38.9	71.1	68.3
공공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33.1	50.0	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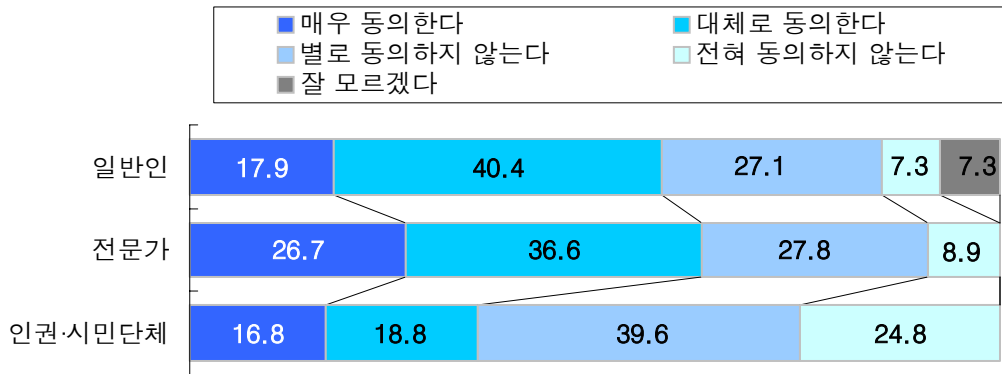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일반인의 58.3%와 전문가의 63.3%가 동의하는 데 반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35.6%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과 전문가는 개인정보 유출보다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에 주목하는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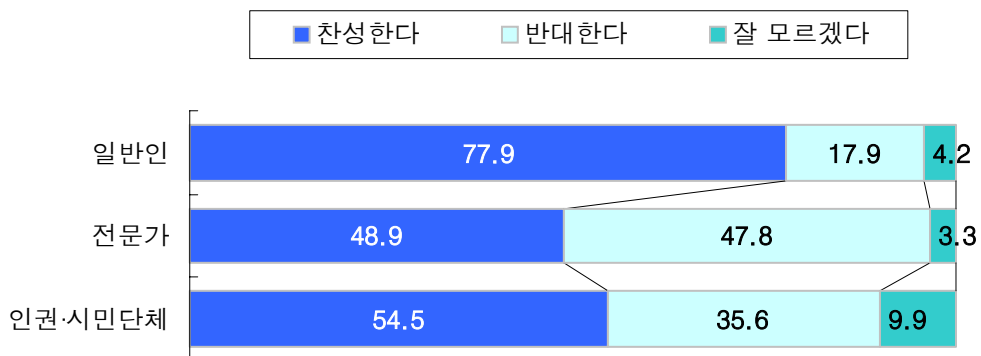
(단위:%)



-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일반인의 77.9%가 동의하는 반면, 전문가는 4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54.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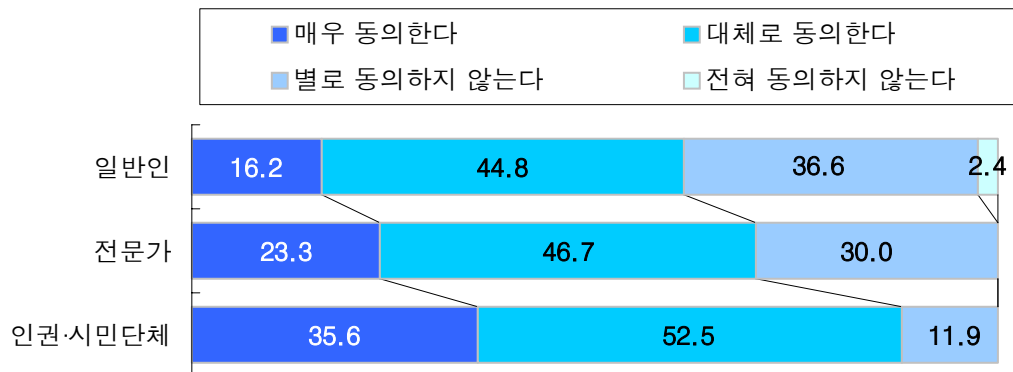


5.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 일반인 1,263명 중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7.6%,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2.4%로 나타남.
- 입사지원서 학력 미기재방침의 학력 차별 해소 효과에 대해, 일반인의 61.0%, 전문가의 70.0%,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8.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입학지원서 학력 미기재 방침의 학력 차별 해소 효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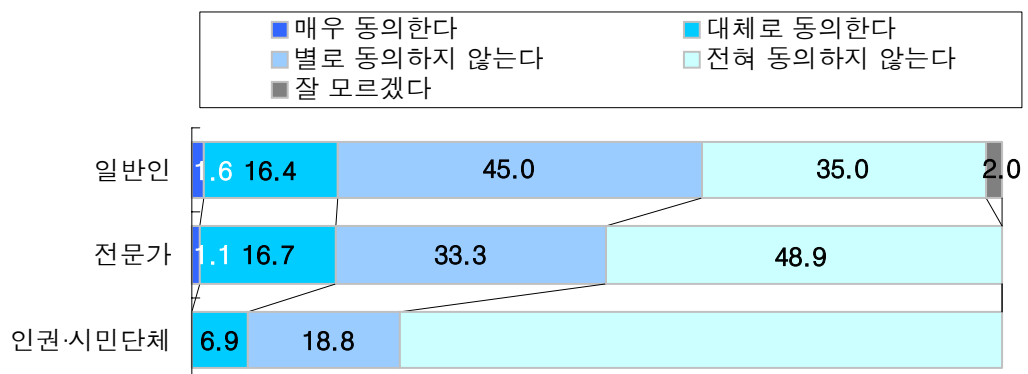
(단위:%)



-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해, 일반인의 18.0%, 전문가의 17.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6.9%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함.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한 입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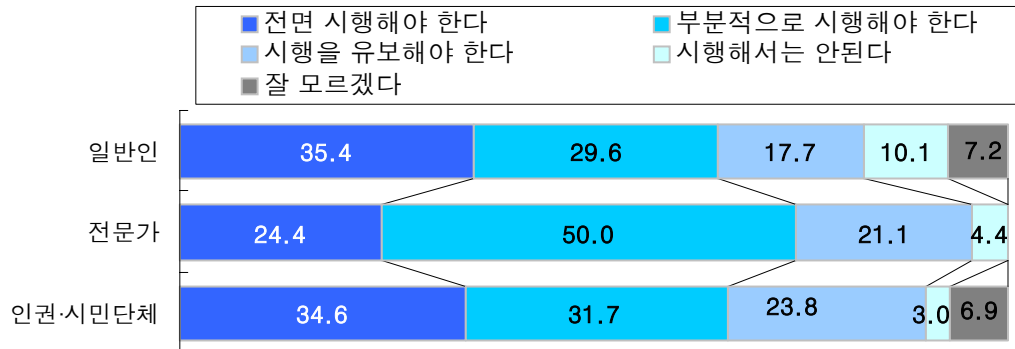




- ▣ 지방대 출신 고용할당제에 대해 일반인의 65.0%, 전문가의 74.4%,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66.3%가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임.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에 대한 입장〉

(단위:%)





2.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에 대한 입장

▣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하여, 일반인은 33.1%가 일부 조항의 개정을 조건으로 한 유지 입장을, 27.7%는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폐지 입장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47.8%, 인권·시민단체는 88.1%가 조건 없는 완전 폐지 입장을 나타내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 입장에 대해, 일반인은 33.1%가 일부 조항의 개정을 조건으로 한 유지 입장인 반면, 27.7%는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폐지 입장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소수 의견으로 현재 법안의 유지(8.5%), 조건 없는 완전 폐지(7.9%), 폐지 후 형법으로 대체(6.0%) 등이 있다.

반면, 전문가는 47.8%, 인권·시민단체는 88.1%가 조건 없는 완전 폐지 입장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조건 없는 완전 폐지와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폐지, 형법 대체를 전제로 한 폐지 등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6.0%에 달하고 있다.

〈표6-2〉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에 대한 입장

(단위: %)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완전 폐지	7.9	47.8	88.1
폐지 및 대체입법	27.7	18.9	6.9
폐지 및 형법 대체	6.0	13.3	1.0
유지 및 일부 개정	33.1	17.8	4.0
현행 유지	8.5	1.1	0.0
잘 모르겠다	16.8	1.1	0.0

일반인 응답에서 대체 입법 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대 (32.5%)와 20대(31.1%), 광주/전라(51.3%) 거주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개정 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41.4%)와 50대 이상 (34.9%), 부산/울산/경남(43.9%) 및 대전/충청(43.0%) 거주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6-3〉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에 대한 입장

(단위: %)

	응답수	조건없는 대체입법 폐지 후 일부개정 현행대로 잘 모르						계
		완전폐지	후 폐지	형법대체	후 유지	유지	겠다	
전 체	(1,263)	7.9	27.7	6.0	33.1	8.5	16.8	100.0
성별								
남자	(626)	9.4	30.6	6.7	34.3	7.6	11.3	100.0
여자	(637)	6.4	24.8	5.3	31.8	9.4	22.3	100.0
연령								
15-19세	(103)	2.8	29.1	2.5	28.3	5.3	32.1	100.0
20대	(260)	7.0	31.1	5.4	27.6	3.5	25.5	100.0
30대	(290)	13.6	32.5	9.8	29.9	4.0	10.2	100.0
40대	(264)	7.2	25.5	8.2	41.4	7.7	10.1	100.0
50대이상	(346)	5.9	22.3	2.7	34.9	17.7	16.6	100.0
학력								
중학생	(32)	3.2	28.5	2.0	21.8	8.0	36.5	100.0
고등학생	(58)	3.2	25.2	1.5	31.3	4.9	33.9	100.0
대학생	(113)	6.1	39.2	6.0	26.5	0.0	22.2	100.0
중졸이하	(189)	4.2	17.9	3.2	31.7	14.6	28.5	100.0
고졸	(503)	8.1	26.9	6.3	34.7	11.1	12.9	100.0
대졸 이상	(367)	11.2	30.6	8.2	34.7	5.1	10.2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2.4	22.5	0.0	29.5	18.3	27.3	100.0
101-200만원	(272)	10.2	26.7	5.6	29.9	11.2	16.4	100.0
201-300만원	(388)	7.8	32.1	6.8	33.2	7.6	12.4	100.0
301-400만원	(257)	5.6	26.1	7.4	37.9	7.4	15.6	100.0
401만원이상	(156)	12.6	26.2	7.0	36.3	3.8	14.2	100.0
모름/무응답	(108)	5.2	24.2	4.2	26.8	6.7	32.8	100.0
권역								
서울	(273)	9.3	20.6	5.2	32.8	9.8	22.3	100.0
인천/경기	(324)	8.4	29.6	8.2	29.2	7.1	17.6	100.0
대전/충청	(126)	7.4	28.8	6.4	43.0	8.5	5.9	100.0
광주/전라	(140)	12.3	51.3	5.0	20.1	0.9	10.4	100.0
대구/경북	(138)	2.3	22.9	2.3	31.2	14.3	27.0	100.0
부산/울산/경남	(208)	7.2	18.7	6.3	43.9	10.8	13.1	100.0
강원/제주	(54)	4.1	34.9	7.7	30.7	6.6	15.9	100.0

3. 국가보안법 개폐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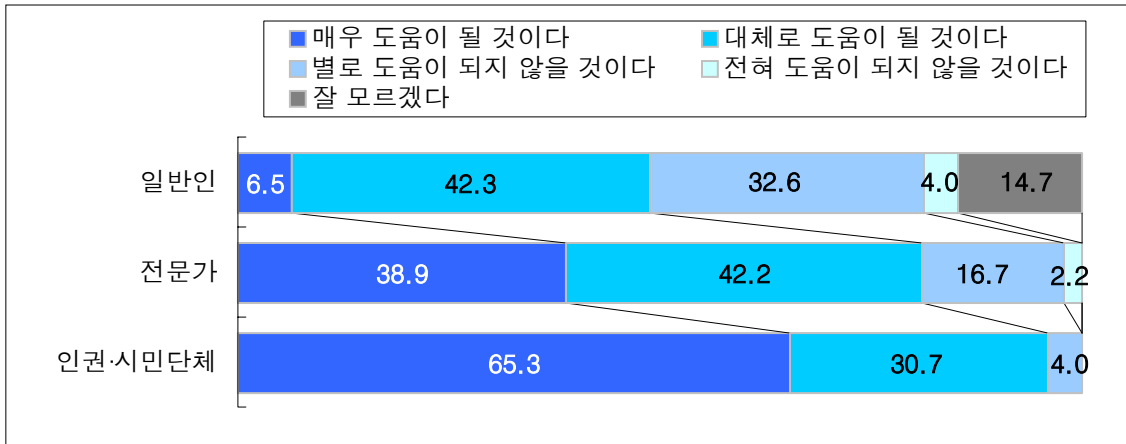
■ 국가보안법 개폐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48.8%, 전문가의 81.1%,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6.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일반인 응답자 중 48.8%는 인권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36.5%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5명 정도는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의 81.1%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6.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1> 국가보안법 개폐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도

(단위: %)



일반인 응답에서 국가보안법 개폐가 인권상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자(44.7%)보다 남자(53.0%)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58.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6-4〉 국가보안법 개폐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도

(단위: %)

	응답수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A)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B)	도움이 된다 (A+B)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C)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D)	도움이 안된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6.5	42.3	48.8	32.6	4.0	36.5	14.7	100.0
성별									
남자	(626)	8.5	44.5	53.0	30.9	4.5	35.4	11.6	100.0
여자	(637)	4.6	40.2	44.7	34.2	3.4	37.6	17.7	100.0
연령									
15-19세	(103)	5.4	36.8	42.2	30.0	1.4	31.4	26.4	100.0
20대	(260)	5.1	44.0	49.1	31.4	1.4	32.9	18.0	100.0
30대	(290)	11.0	47.1	58.0	28.4	2.6	31.0	10.9	100.0
40대	(264)	6.6	43.6	50.3	35.7	6.0	41.7	8.0	100.0
50대이상	(346)	4.1	37.6	41.7	35.2	6.2	41.4	16.9	100.0
학력									
중학생	(32)	2.5	40.6	43.0	31.3	2.2	33.5	23.5	100.0
고등학생	(58)	4.4	32.7	37.0	29.0	3.1	32.0	30.9	100.0
대학생	(113)	7.1	38.4	45.5	36.2	3.3	39.5	15.0	100.0
중졸이하	(189)	2.7	32.5	35.2	36.7	4.5	41.2	23.6	100.0
고졸	(503)	5.9	43.7	49.6	33.2	4.9	38.1	12.3	100.0
대졸 이상	(367)	9.9	48.2	58.1	29.1	2.9	31.9	9.9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3.5	26.7	30.2	41.6	4.9	46.5	23.3	100.0
101-200만원	(272)	7.6	41.4	49.0	31.5	4.3	35.8	15.2	100.0
201-300만원	(388)	6.6	47.0	53.6	29.6	4.3	33.9	12.5	100.0
301-400만원	(257)	5.1	42.3	47.4	38.9	2.3	41.3	11.4	100.0
401만원이상	(156)	8.0	46.4	54.4	31.5	3.8	35.4	10.2	100.0
모름/무응답	(108)	7.2	33.3	40.5	25.3	5.3	30.5	29.0	100.0

4.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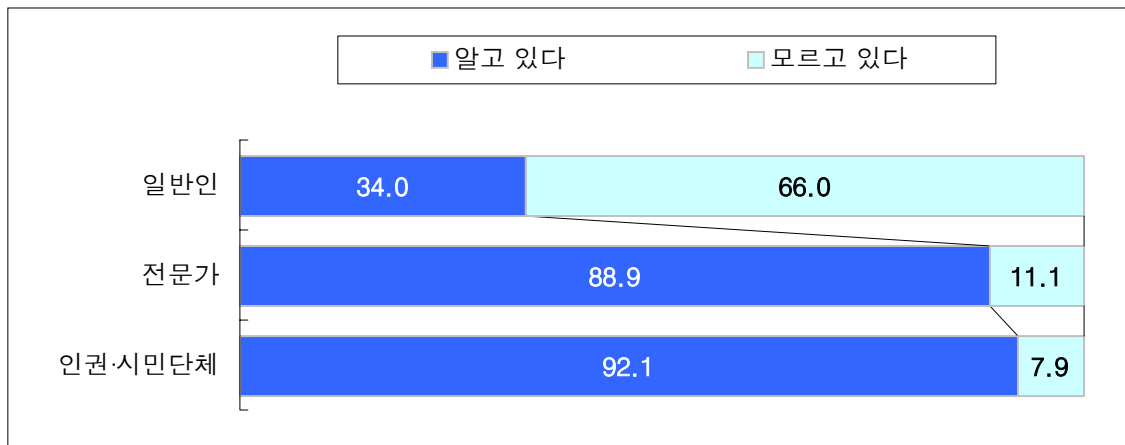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실에 대해, 일반인의 34.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8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92.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34.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66.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3명 이상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88.9%가 알고 있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도 92.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거의 모든 응답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2〉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지도

(단위: %)



일반인 응답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28.1%)보다 남자(39.9%)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연령별로는 30대(44.5%)와 40대(42.4%)가 높게 나타났다.

〈표6-5〉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지도

(단위: %)

		응답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계
전 체		(1,263)	34.0	66.0	100.0
성별	남자	(626)	39.9	60.1	100.0
	여자	(637)	28.1	71.9	100.0
연령	15-19세	(103)	10.3	89.7	100.0
	20대	(260)	23.7	76.3	100.0
	30대	(290)	44.5	55.5	100.0
	40대	(264)	42.4	57.6	100.0
	50대 이상	(346)	33.5	66.5	100.0
학력	중학생	(32)	0.0	100.0	100.0
	고등학생	(58)	13.8	86.2	100.0
	대학생	(113)	28.8	71.2	100.0
	중졸이하	(189)	23.9	76.1	100.0
	고졸	(503)	35.1	64.9	100.0
	대졸 이상	(367)	45.3	54.7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26.5	73.5	100.0
	101-200만원	(272)	34.4	65.6	100.0
	201-300만원	(388)	38.4	61.6	100.0
	301-400만원	(257)	28.7	71.3	100.0
	401만원이상	(156)	43.3	56.7	100.0
	모름/무응답	(108)	21.5	78.5	100.0

제2절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1.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인지도

▣ 일반인 1,263명 중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3.9%,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6.1%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73.9%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6.1%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7명 이상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67.5%)보다 남자(80.4%)가 높게 나타났다.

〈표6-6〉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응답수	매우 잘 알고 있다 (A)	조금 알고 있다 (B)	알고 있다 (A+B)	잘 모르고 있다 (C)	전혀 모르고 있다 (D)	모르고 있다 (C+D)	계
전 체	(1,263)	12.8	61.1	73.9	23.4	2.7	26.1	100.0
성별								
남자	(626)	17.6	62.9	80.4	17.4	2.2	19.6	100.0
여자	(637)	8.1	59.4	67.5	29.3	3.2	32.5	100.0
연령								
15-19세	(103)	5.4	51.6	57.0	34.5	8.5	43.0	100.0
20대	(260)	13.9	55.7	69.6	25.4	5.0	30.4	100.0
30대	(290)	12.9	64.9	77.8	20.7	1.5	22.2	100.0
40대	(264)	12.2	65.6	77.9	21.0	1.1	22.1	100.0
50대 이상	(346)	14.6	61.3	75.9	22.6	1.5	24.1	100.0
학력								
중 학생	(32)	0.0	48.7	48.7	33.3	18.0	51.3	100.0
고 등 학생	(58)	9.5	50.3	59.8	36.4	3.8	40.2	100.0
대 학생	(113)	18.2	50.0	68.3	26.3	5.4	31.7	100.0
중졸 이하	(189)	12.6	58.7	71.4	28.1	0.6	28.6	100.0
고졸	(503)	13.4	61.1	74.5	22.5	3.0	25.5	100.0
대졸 이상	(367)	12.1	68.5	80.6	18.3	1.1	19.4	100.0
소득								
100만원 이하	(82)	10.7	49.4	60.1	39.9	0.0	39.9	100.0
101-200만원	(272)	13.7	60.9	74.6	22.4	3.0	25.4	100.0
201-300만원	(388)	13.4	64.1	77.5	20.2	2.2	22.5	100.0
301-400만원	(257)	9.4	67.0	76.4	21.2	2.4	23.6	100.0
401만원 이상	(156)	17.2	58.5	75.7	20.7	3.6	24.3	100.0
모름/무응답	(108)	11.7	49.4	61.1	33.7	5.2	38.9	100.0

2.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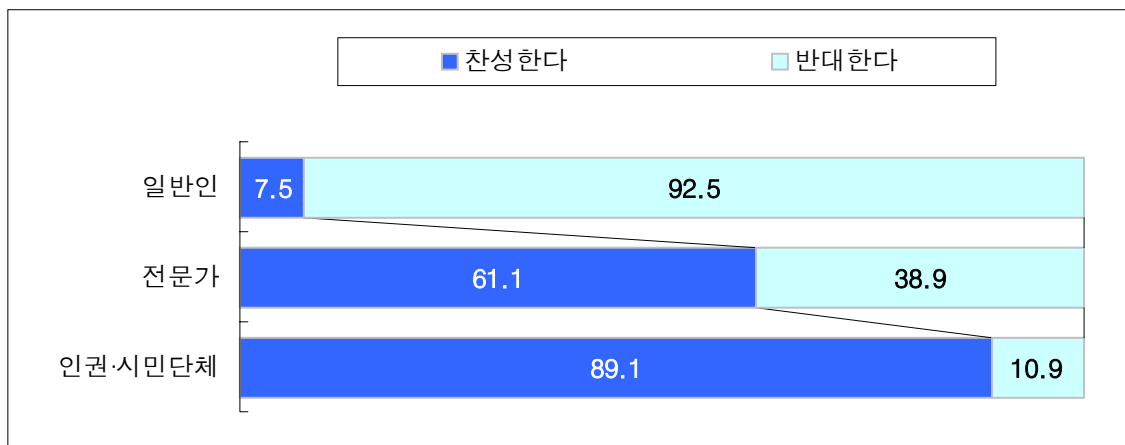
■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일반인은 7.5%만이 찬성하였으며, 92.5%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61.1%, 인권·시민단체는 89.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일반인은 7.5%만이 찬성하였으며, 92.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61.1%,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89.1%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의 인식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찬성비율이 일반인의 반대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6-3>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단위: %)



일반인 응답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대(12.8%)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별로는 소수 종교(14.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6-7〉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일반인)

(단위: %)

	응답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계
전 체	(1,263)	7.5	92.5	100.0
성별				
남자	(626)	7.6	92.4	100.0
여자	(637)	7.3	92.7	100.0
연령				
15-19세	(103)	8.8	91.2	100.0
20대	(260)	12.8	87.2	100.0
30대	(290)	8.9	91.1	100.0
40대	(264)	5.2	94.8	100.0
50대이상	(346)	3.6	96.4	100.0
학력				
중학생	(32)	6.3	93.7	100.0
고등학생	(58)	12.2	87.8	100.0
대학생	(113)	14.3	85.7	100.0
중졸이하	(189)	4.9	95.1	100.0
고졸	(503)	3.7	96.3	100.0
대졸 이상	(367)	11.1	88.9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6.4	93.6	100.0
101-200만원	(272)	10.2	89.8	100.0
201-300만원	(388)	5.4	94.6	100.0
301-400만원	(257)	5.9	94.1	100.0
401만원이상	(156)	9.1	90.9	100.0
모름/무응답	(108)	9.8	90.2	100.0
종교				
기독교	(327)	7.4	92.6	100.0
불교	(325)	7.3	92.7	100.0
가톨릭	(103)	7.0	93.0	100.0
유교	(1)	0.0	100.0	100.0
다른 종교	(13)	14.8	85.2	100.0
없다	(494)	7.6	92.4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3.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일반인 응답자 중 36.7%는 현재와 같이 범법자로 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9.5%는 사회봉사기관 등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문가는 63.3%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84.2%가 사회봉사기관 등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일반인 응답자 중 36.7%는 현재와 같이 범법자로 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9.5%는 사회봉사기관 등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문가는 63.3%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84.2%가 사회봉사기관 등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8〉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단위: %)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현재와 같이 범법자로 처벌	36.7	3.3	2.0
군복무대신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대체복무 허용	29.5	63.3	84.2
기초군사 훈련을 제외한 공익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근무 허용	15.5	13.3	8.9
비전투 병과에 배치	14.6	18.9	5.0
잘 모르겠다	3.7	1.1	0.0

일반인 응답에서 현재와 같이 범법자로 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5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30대(37.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6-9〉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일반인)

(단위: %)

	응답수	군복무 대신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	공익요원 근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되 기초군사훈련을 면제한다	위생병이나 취사병과 같이 전투와 관계없는 업무에 배치한다	현재와 같이 범법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263)	29.5	15.5	14.6	36.7	3.7	100.0
성별							
남자	(626)	28.3	13.4	15.1	39.3	3.8	100.0
여자	(637)	30.6	17.6	14.0	34.2	3.6	100.0
연령							
15-19세	(103)	34.3	22.8	17.2	15.6	10.1	100.0
20대	(260)	29.0	13.1	18.9	34.4	4.6	100.0
30대	(290)	37.2	14.7	14.9	28.8	4.4	100.0
40대	(264)	32.6	11.5	16.5	37.0	2.4	100.0
50대이상	(346)	19.6	18.9	8.8	51.2	1.5	100.0
학력							
중학생	(32)	25.3	24.4	16.6	17.9	15.8	100.0
고등학생	(58)	41.1	16.6	19.8	17.7	4.8	100.0
대학생	(113)	28.3	19.3	18.6	26.3	7.6	100.0
중졸이하	(189)	23.3	18.3	6.3	48.8	3.3	100.0
고졸	(503)	26.4	15.2	14.5	41.1	2.7	100.0
대졸 이상	(367)	35.8	12.4	16.6	32.3	2.8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27.7	18.3	12.1	38.3	3.6	100.0
101-200만원	(272)	28.1	17.8	12.2	40.7	1.2	100.0
201-300만원	(388)	32.8	12.7	12.9	36.6	5.1	100.0
301-400만원	(257)	29.4	14.2	19.0	34.8	2.5	100.0
401만원이상	(156)	26.8	18.3	14.1	37.0	3.9	100.0
모름/무응답	(108)	26.6	17.1	18.5	30.2	7.7	100.0

제3절 비정규직 문제 관련

1.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지도

▣ 일반인 1,263명 중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4.0%,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6.0%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74.0%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6.0%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7명 이상이 비정규직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82.1%)와 30대(81.8%)에서, 성별로는 여자(68.4%)보다 남자(79.6%)가 높게 나타났다.

〈표6-10〉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응답수	매우 잘 알고 있다 (A)	조금 알고 있다 (B)	알고 있다 (A+B)	잘 모르고 있다 (C)	전혀 모르고 있다 (D)	모르고 있다 (C+D)	계
전 체	(1,263)	9.4	64.6	74.0	24.0	2.1	26.0	100.0
성 별								
남자	(626)	12.4	67.3	79.6	18.5	1.8	20.4	100.0
여자	(637)	6.5	61.9	68.4	29.3	2.3	31.6	100.0
연 령								
15-19세	(103)	0.8	33.3	34.2	55.9	10.0	65.8	100.0
20대	(260)	7.8	65.7	73.6	24.5	1.9	26.4	100.0
30대	(290)	10.9	71.0	81.8	17.1	1.0	18.2	100.0
40대	(264)	10.1	72.0	82.1	17.5	0.4	17.9	100.0
50대 이상	(346)	11.4	62.0	73.4	24.7	1.9	26.6	100.0
학 력								
중 학생	(32)	0.0	15.0	15.0	66.0	19.0	85.0	100.0
고 등 학 생	(58)	3.2	38.0	41.2	53.0	5.8	58.8	100.0
대 학 생	(113)	5.2	64.2	69.4	27.9	2.6	30.6	100.0
중 졸 이 하	(189)	13.2	54.6	67.7	29.9	2.3	32.3	100.0
고 졸	(503)	10.3	68.5	78.8	19.7	1.4	21.2	100.0
대 졸 이 상	(367)	9.4	73.0	82.3	17.1	0.5	17.7	100.0
소 득								
100만원 이하	(82)	8.2	49.4	57.6	39.8	2.6	42.4	100.0
101-200만원	(272)	9.9	65.6	75.6	21.6	2.8	24.4	100.0
201-300만원	(388)	12.2	66.7	78.9	19.5	1.6	21.1	100.0
301-400만원	(257)	5.7	71.9	77.6	21.3	1.1	22.4	100.0
401만원 이상	(156)	10.5	61.3	71.8	26.4	1.8	28.2	100.0
모름/무응답	(108)	6.2	53.1	59.4	36.7	4.0	40.6	100.0

2.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일반인 응답자 중 31.3%는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8.8%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5.0%는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역시,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 완화(38.9%)’, ‘정규직과 동일노동 시 동일임금 지급(22.2%)’,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20.0%)’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38.6%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4.8%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일반인 응답자 중 31.3%는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8.8%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5.0%는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역시,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 완화(38.9%)’, ‘정규직과 동일노동 시 동일임금 지급(22.2%)’,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20.0%)’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38.6%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4.8%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이나 전문가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11〉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단위: %)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 완화	31.3	38.9	17.8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	28.8	20.0	18.8
동일노동 시 동일임금 지급	25.0	22.2	24.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8.7	18.9	38.6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	2.3	0.0	0.0
잘 모르겠다	3.8	0.0	0.0

일반인 응답에서 고용상태별로 선호하는 해결방안으로는, 정규직은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 완화(34.7%)’를, 임시직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35.4%)’을, 일용직은 ‘동일노동 시 동일임금 지급(49.0%)’, 계약직 역시 ‘동일노동 시 동일임금 지급(33.3%)’을 해결방안으로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고용상태에 따라 선호하는 방안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6-12〉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일반인)

(단위: %)

	응답수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정규직원과 같은 일을 하면 임금도 같은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규직원과 임금이나 대우의 차이를 가능한 줄여야 한다	비정규직도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가능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263)	2.3	25.0	31.3	28.8	8.7	3.8	100.0
성별								
남자	(626)	1.9	24.1	32.8	28.6	9.8	2.9	100.0
여자	(637)	2.7	25.8	29.9	29.1	7.7	4.8	100.0
연령								
15-19세	(103)	1.5	21.8	30.5	25.4	5.9	14.8	100.0
20대	(260)	1.5	20.3	30.0	37.8	7.2	3.1	100.0
30대	(290)	2.3	24.1	37.2	26.1	8.6	1.7	100.0
40대	(264)	2.7	23.9	29.0	30.0	11.5	3.0	100.0
50대이상	(346)	2.8	31.0	29.3	24.6	8.8	3.5	100.0
학력								
중학생	(32)	2.2	10.5	38.5	16.4	15.8	16.6	100.0
고등학생	(58)	1.5	29.4	31.4	25.4	0.0	12.3	100.0
대학생	(113)	1.7	16.0	36.1	32.4	8.5	5.3	100.0
중졸이하	(189)	2.3	37.9	23.9	25.1	4.9	5.9	100.0
고졸	(503)	3.0	26.3	30.1	28.2	10.1	2.3	100.0
대졸 이상	(367)	1.7	19.9	34.6	32.2	9.7	1.9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5.4	29.4	32.0	25.8	3.8	3.6	100.0
101-200만원	(272)	2.2	27.4	31.1	26.8	9.0	3.5	100.0
201-300만원	(388)	2.1	26.9	30.7	28.0	8.5	3.8	100.0
301-400만원	(257)	1.5	23.9	28.7	31.0	11.6	3.2	100.0
401만원이상	(156)	2.5	19.2	37.2	30.8	6.6	3.6	100.0
모름/무응답	(108)	2.4	19.6	30.9	31.5	8.7	6.9	100.0
고용상태								
정규직	(372)	2.0	22.7	34.7	28.7	9.8	2.2	100.0
임시직	(44)	0.0	25.5	27.7	35.4	6.8	4.6	100.0
일용직	(19)	0.0	49.0	34.7	16.3	0.0	0.0	100.0
계약직	(50)	0.0	33.3	31.4	26.1	5.4	3.8	100.0
기타	(34)	3.5	37.4	27.2	25.1	3.5	3.3	100.0

제4절 개인정보 보호 관련

1.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의 개인신상정보’, ‘신용관련정보 및 금융정보’, ‘가족 구성원의 신상내역 등 가족 관련 정보’ 등을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응답하였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의 개인신상정보’, ‘신용관련정보 및 금융정보’, ‘가족 구성원의 신상내역 등 가족 관련 정보’ 등을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응답하였다.

일반인과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전문가는 ‘신용관련정보 및 금융정보’라는 응답이 더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유 부동산 내역 등 재산관련 정보’와 ‘개인의 학력이나 성적 등 교육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표6-13〉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단위: %)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신상정보	44.4	25.6	50.5
신용관련정보 및 금융정보	37.0	38.9	26.7
가족 구성원의 신상내역 등 가족 관련 정보	13.2	18.9	11.9
소유 부동산 내역 등 재산 관련 정보	2.6	4.4	2.0
개인의 학력이나 성적 등 교육관련 정보	2.1	1.1	3.0
본인의 진료기록 등 의료 관련 정보	0.6	11.1	5.9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인지도

▣ 일반인 1,263명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2.3%,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67.5%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32.3%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7.5%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3명 정도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37.1%)에서, 성별로는 여자(25.6%)보다 남자(39.1%)가 높게 나타났다.

〈표6-1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응답수	매우 잘 알고 있다 (A)	조금 알고 있다 (B)	알고 있다 (A+B)	잘 모르고 있다 (C)	전혀 모르고 있다 (D)	모르고 있다 (C+D)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263)	2.1	30.1	32.3	60.7	6.7	67.5	0.2	100.0
성별									
남자	(626)	3.0	36.2	39.1	54.8	6.1	60.9	0.0	100.0
여자	(637)	1.3	24.3	25.6	66.5	7.4	73.9	0.5	100.0
연령									
15-19세	(103)	0.9	19.7	20.6	61.0	18.4	79.4	0.0	100.0
20대	(260)	0.4	30.7	31.1	62.8	5.8	68.6	0.3	100.0
30대	(290)	1.3	32.5	33.8	60.2	6.0	66.2	0.0	100.0
40대	(264)	4.6	32.5	37.1	59.4	3.4	62.9	0.0	100.0
50대 이상	(346)	2.6	29.1	31.7	60.5	7.1	67.6	0.7	100.0
학력									
중학생	(32)	0.0	20.7	20.7	57.6	21.7	79.3	0.0	100.0
고등학생	(58)	1.5	18.4	19.9	63.1	17.0	80.1	0.0	100.0
대학생	(113)	0.9	36.7	37.6	55.4	6.3	61.6	0.8	100.0
중졸이하	(189)	1.5	18.7	20.3	68.9	10.2	79.1	0.6	100.0
고졸	(503)	3.0	31.3	34.3	60.9	4.8	65.7	0.0	100.0
대졸 이상	(367)	1.9	35.2	37.1	57.8	4.8	62.6	0.3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2	17.5	18.6	66.3	13.5	79.9	1.5	100.0
101-200만원	(272)	2.7	29.4	32.1	61.8	6.1	67.9	0.0	100.0
201-300만원	(388)	2.6	31.8	34.4	58.3	7.3	65.6	0.0	100.0
301-400만원	(257)	1.5	29.8	31.3	64.8	3.6	68.3	0.3	100.0
401만원이상	(156)	2.0	35.6	37.6	56.2	6.2	62.4	0.0	100.0
모름/무응답	(108)	1.7	28.4	30.2	59.3	9.6	68.9	1.0	100.0

3.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경험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경험과 관련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우려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살 때’, ‘인터넷 동호회에 회원가입을 할 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해 본 경험과 관련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인은 58.1%가 제약을 느끼거나 망설임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87.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92.1%가 제약을 느끼거나 망설임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살 때’, ‘인터넷 동호회에 회원가입을 할 때’ 등에 대해 제약을 느끼거나 망설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라는 응답은 낮게 나타나, 주로 온라인(On-line) 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15〉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경험

(단위: %)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58.1	87.8	92.1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살 때	48.9	82.2	83.2
인터넷 동호회에 회원가입을 할 때	43.3	76.7	81.2
인터넷 बैं킹으로 거래를 할 때	38.9	71.1	68.3
공공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33.1	50.0	70.3

4.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일반인의 58.3%와 전문가의 63.3%가 동의하는 데 반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35.6%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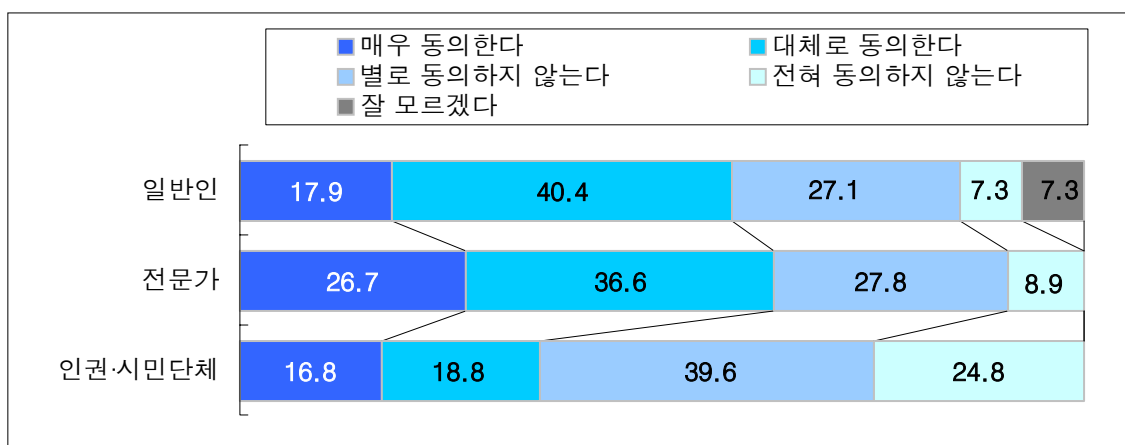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58.3%가 인터넷 실명제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4.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6명 정도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역시, 63.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35.6%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과 전문가는 개인정보 유출보다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에 주목하는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림6-4〉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

(단위: %)



일반인 중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6-16〉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A)	대체로 동의한다 (B)	동의한다 (A+B)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C)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D)	동의하지 않는다 (C+D)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263)	17.9	40.4	58.3	27.1	7.3	34.4	7.3	100.0
성별									
남자	(626)	21.3	40.5	61.7	25.5	7.3	32.8	5.4	100.0
여자	(637)	14.5	40.4	54.9	28.7	7.3	36.0	9.1	100.0
연령									
15-19세	(103)	15.1	46.4	61.6	28.3	9.3	37.6	0.8	100.0
20대	(260)	16.6	44.5	61.1	30.3	8.2	38.5	0.4	100.0
30대	(290)	22.1	38.2	60.3	31.3	5.1	36.3	3.4	100.0
40대	(264)	18.2	43.1	61.3	27.4	7.8	35.2	3.5	100.0
50대이상	(346)	15.7	35.4	51.2	20.8	7.3	28.2	20.7	100.0
학력									
중학생	(32)	13.3	52.5	65.8	25.6	8.6	34.2	0.0	100.0
고등학생	(58)	16.1	44.9	61.0	31.0	8.1	39.0	0.0	100.0
대학생	(113)	18.1	49.7	67.8	23.0	8.4	31.3	0.9	100.0
중졸이하	(189)	9.7	31.6	41.3	18.1	10.4	28.5	30.2	100.0
고졸	(503)	20.4	38.4	58.8	28.2	7.2	35.5	5.8	100.0
대졸 이상	(367)	19.1	43.2	62.4	31.1	5.1	36.2	1.4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9.7	30.5	40.2	22.6	10.0	32.5	27.2	100.0
101-200만원	(272)	15.5	42.1	57.6	27.1	7.4	34.5	7.9	100.0
201-300만원	(388)	19.0	38.0	57.0	31.0	7.0	38.1	5.0	100.0
301-400만원	(257)	16.1	44.7	60.8	27.6	6.6	34.1	5.1	100.0
401만원이상	(156)	26.7	43.7	70.4	19.8	7.2	26.9	2.7	100.0
모름/무응답	(108)	17.4	37.7	55.1	26.3	7.5	33.8	11.0	100.0

5.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

▣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일반인의 77.9%가 동의하는 반면, 전문가는 4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54.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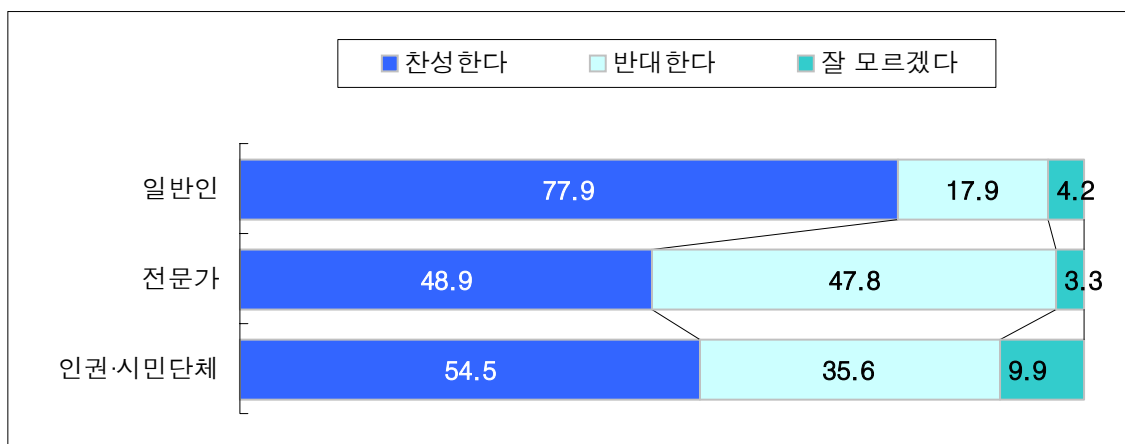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77.9%가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7.9%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8명 정도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의 48.9%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54.5%가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를 볼 때, 일반인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예방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성폭력 예방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6-5〉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

(단위: %)



일반인 중에서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13.8%)보다는 남자(22.0%)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32.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6-17〉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일반인)

(단위: %)

	응답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263)	77.9	17.9	4.2	100.0
성별					
남자	(626)	73.6	22.0	4.4	100.0
여자	(637)	82.2	13.8	4.1	100.0
연령					
15-19세	(103)	60.4	32.0	7.6	100.0
20대	(260)	82.0	16.1	1.9	100.0
30대	(290)	79.7	15.9	4.4	100.0
40대	(264)	78.5	16.8	4.8	100.0
50대이상	(346)	78.1	17.4	4.4	100.0
학력					
중학생	(32)	65.0	27.4	7.6	100.0
고등학생	(58)	55.8	36.3	7.9	100.0
대학생	(113)	79.8	17.4	2.7	100.0
중졸이하	(189)	80.8	15.4	3.8	100.0
고졸	(503)	78.3	17.5	4.2	100.0
대졸 이상	(367)	79.9	16.0	4.1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76.2	20.1	3.7	100.0
101-200만원	(272)	80.2	17.8	2.1	100.0
201-300만원	(388)	78.5	18.3	3.2	100.0
301-400만원	(257)	78.0	16.2	5.8	100.0
401만원이상	(156)	79.1	16.7	4.3	100.0
모름/무응답	(108)	69.6	20.6	9.8	100.0

제5절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1. 학력이나 학벌 차별에 대한 인지도

▣ 일반인 1,263명 중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7.6%,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2.4%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77.6%가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2.4%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8명 정도가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74.1%)보다 남자(81.2%)가 높게 나타났다.

〈표6-18〉 학력이나 학벌 차별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응답수	매우 잘 알고 있다 (A)	조금 알고 있다 (B)	알고 있다 (A+B)	잘 모르고 있다 (C)	전혀 모르고 있다 (D)	모르고 있다 (C+D)	계
전 체	(1,263)	10.2	67.4	77.6	21.4	0.9	22.4	100.0
성별								
남자	(626)	11.3	70.0	81.2	18.2	0.6	18.8	100.0
여자	(637)	9.2	64.9	74.1	24.6	1.3	25.9	100.0
연령								
15-19세	(103)	7.7	51.3	59.0	37.5	3.4	41.0	100.0
20대	(260)	11.7	72.0	83.8	15.9	0.4	16.2	100.0
30대	(290)	12.0	70.3	82.3	17.0	0.6	17.7	100.0
40대	(264)	10.7	69.5	80.2	19.8	0.0	19.8	100.0
50대이상	(346)	7.9	64.8	72.7	25.8	1.6	27.3	100.0
학력								
중학생	(32)	3.2	51.3	54.5	40.6	4.9	45.5	100.0
고등학생	(58)	13.7	47.6	61.3	37.0	1.7	38.7	100.0
대학생	(113)	14.2	68.6	82.9	16.2	0.9	17.1	100.0
중졸이하	(189)	9.0	55.0	64.0	34.3	1.7	36.0	100.0
고졸	(503)	10.4	70.2	80.5	18.7	0.8	19.5	100.0
대졸 이상	(367)	9.4	74.2	83.7	16.0	0.3	16.3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4.6	58.7	63.3	33.0	3.7	36.7	100.0
101-200만원	(272)	9.8	68.6	78.4	20.8	0.7	21.6	100.0
201-300만원	(388)	12.3	64.8	77.1	22.2	0.8	22.9	100.0
301-400만원	(257)	5.7	71.5	77.2	22.8	0.0	22.8	100.0
401만원이상	(156)	13.6	72.4	86.0	12.0	2.0	14.0	100.0
모름/무응답	(108)	13.6	63.6	77.2	22.2	0.6	22.8	100.0

2. 입사지원서 학력 미기재 방침의 학력 차별 해소 효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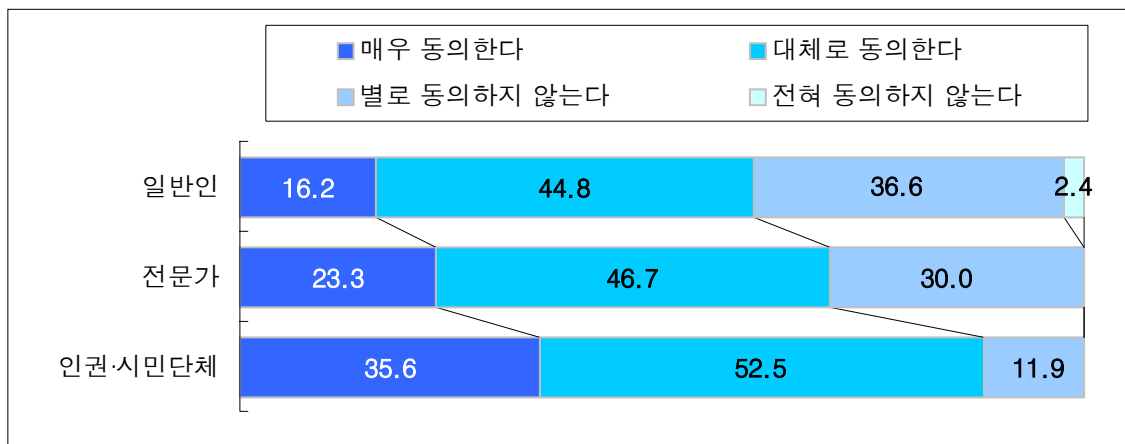
■ 입사지원서 학력 미기재방침의 학력 차별 해소 효과에 대해, 일반인의 61.0%, 전문가의 70.0%,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8.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61.0%가 입사지원서의 학력 미기재가 학력차별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39.0%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6명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70.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88.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이나 전문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6-6〉 입사지원서 학력 미기재 방침의 학력 차별 해소 효과 평가

(단위: %)



일반인 응답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중졸이하(68.3%)의 학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생산/기능/노무직(6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6-19〉 입사지원서 학력 미기재 방침의 학력 차별 해소 효과 평가(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도움이 된다 (A)	대체로 도움이 된다 (B)	도움이 된다 (A+B)	별로 도움이 안된다 (C)	전혀 도움이 안된다 (D)	도움이 안된다 (C+D)	계
전 체	(1,263)	16.2	44.8	61.0	36.6	2.4	39.0	100.0
성별								
남자	(626)	20.1	43.4	63.4	34.0	2.5	36.6	100.0
여자	(637)	12.4	46.2	58.6	39.1	2.2	41.4	100.0
연령								
15-19세	(103)	10.3	49.9	60.2	36.2	3.6	39.8	100.0
20대	(260)	16.0	41.6	57.6	41.3	1.2	42.4	100.0
30대	(290)	18.5	44.7	63.2	35.4	1.4	36.8	100.0
40대	(264)	19.5	41.2	60.7	36.6	2.7	39.3	100.0
50대이상	(346)	13.8	48.5	62.3	34.2	3.5	37.7	100.0
학력								
중학생	(32)	8.1	47.7	55.8	38.9	5.3	44.2	100.0
고등학생	(58)	13.8	45.9	59.7	36.2	4.2	40.3	100.0
대학생	(113)	22.0	33.1	55.1	44.3	0.6	44.9	100.0
중졸이하	(189)	11.9	56.4	68.3	28.9	2.7	31.7	100.0
고졸	(503)	16.3	43.8	60.1	37.5	2.4	39.9	100.0
대졸 이상	(367)	17.6	43.3	60.9	36.8	2.2	39.1	100.0
직업								
농/축/수산/광업	(14)	14.3	39.2	53.6	46.4	0.0	46.4	100.0
자영업	(334)	18.8	43.6	62.4	34.3	3.3	37.6	100.0
판매/서비스직종사자	(167)	13.0	47.9	60.9	38.4	0.6	39.1	100.0
생산/기능/노무직	(91)	15.4	49.2	64.6	31.1	4.3	35.4	100.0
사무직	(174)	19.1	42.4	61.4	37.4	1.1	38.6	100.0
전문/관리/경영직	(73)	19.9	42.0	61.9	35.5	2.6	38.1	100.0
주부	(163)	10.5	48.7	59.2	38.1	2.7	40.8	100.0
학생	(189)	17.1	40.9	58.0	39.5	2.5	42.0	100.0
무직/퇴직/기타	(57)	12.2	49.6	61.8	36.3	1.9	38.2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1.6	56.4	67.9	28.5	3.6	32.1	100.0
101-200만원	(272)	17.8	46.2	64.1	34.0	1.9	35.9	100.0
201-300만원	(388)	16.8	44.7	61.5	37.6	1.0	38.5	100.0
301-400만원	(257)	14.4	42.1	56.5	40.8	2.7	43.5	100.0
401만원이상	(156)	19.0	41.3	60.4	35.7	4.0	39.6	100.0
모름/무응답	(108)	13.8	44.2	58.1	37.4	4.5	41.9	100.0

3.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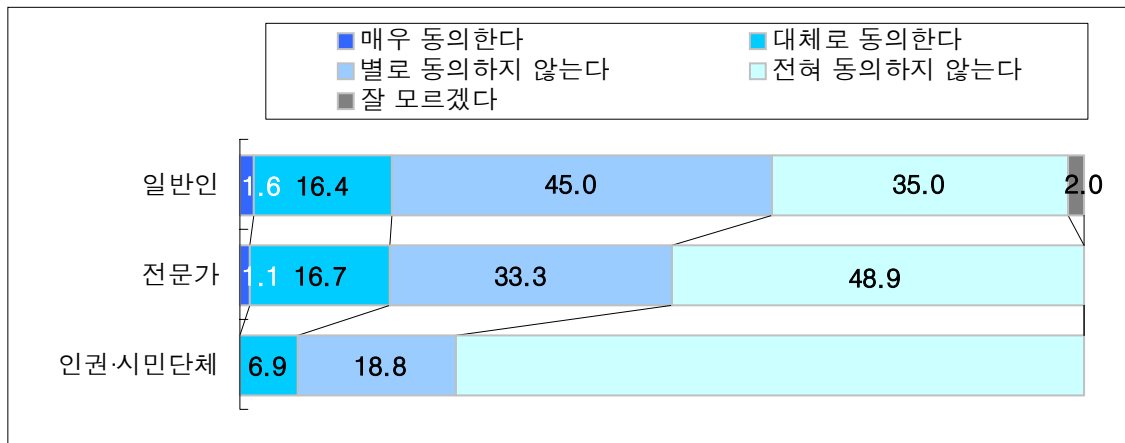
■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해, 일반인의 18.0%, 전문가의 17.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6.9%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18.0%가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0.0%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2명 미만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역시 17.8%만이 동의하였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6.9%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이나 전문가보다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7>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한 입장

(단위: %)



4.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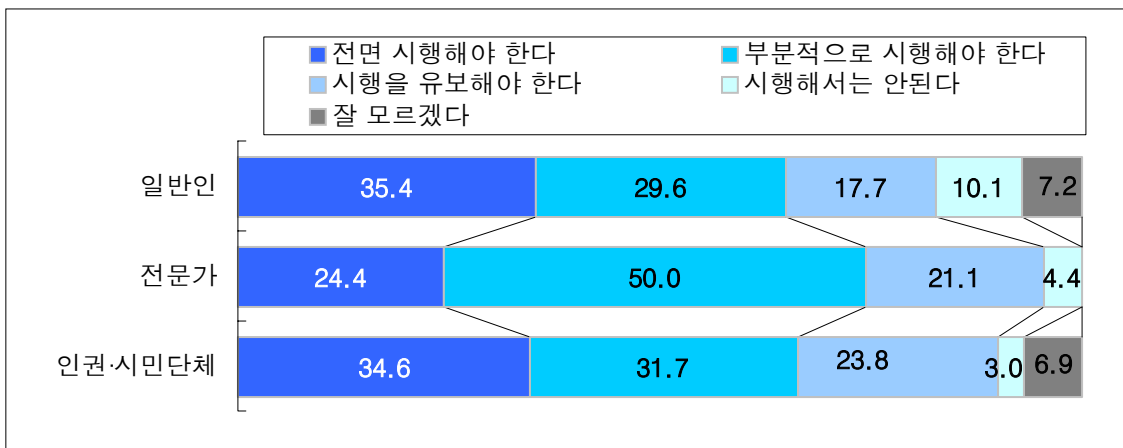
▣ 지방대 출신 고용할당제에 대해 일반인의 65.0%, 전문가의 74.4%,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66.3%가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65.0%가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에 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7.8%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6명 이상이 시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74.4%가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다소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인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66.3%가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6-8〉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에 대한 입장

(단위: %)



일반인 중에서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천/경기(53.3%)와 서울(56.3%) 등 시행 시 불이익이 우려되는 수도권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표6-20〉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에 대한 입장(일반인)

(단위: %)

	응답수	모든 분야 에 전면적 으로 시행 해야 한다 (A)	특정 분야 에 부분적 으로 시행 해야 한다 (B)	시행해야 한다 (A+B)	시행을 유 보하고, 다 른 대안을 우선 시행 한다 (C)	부작용이 많으므로 시행해서 는 안 된다 (D)	시행 해서는 안된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35.4	29.6	65.0	17.7	10.1	27.8	7.2	100.0
성별									
남자	(626)	36.0	29.3	65.2	17.5	11.8	29.3	5.4	100.0
여자	(637)	34.8	30.0	64.8	17.9	8.4	26.3	8.9	100.0
연령									
15-19세	(103)	26.5	40.3	66.8	14.6	4.0	18.6	14.5	100.0
20대	(260)	30.3	35.0	65.3	19.7	9.2	28.9	5.8	100.0
30대	(290)	33.9	29.0	62.9	21.9	10.7	32.6	4.4	100.0
40대	(264)	38.0	25.6	63.6	19.3	12.5	31.7	4.7	100.0
50대이상	(346)	41.1	26.0	67.2	12.4	10.3	22.7	10.1	100.0
학력									
중학생	(32)	32.5	34.6	67.1	4.7	6.9	11.6	21.3	100.0
고등학생	(58)	22.3	41.8	64.1	23.3	1.7	25.0	10.9	100.0
대학생	(113)	23.8	36.5	60.3	21.5	13.0	34.5	5.2	100.0
중졸이하	(189)	40.7	26.3	67.0	12.2	6.7	18.9	14.1	100.0
고졸	(503)	39.7	26.5	66.3	16.4	11.6	28.0	5.8	100.0
대졸 이상	(367)	32.6	31.2	63.8	21.4	10.6	32.0	4.2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40.5	26.6	67.1	13.7	8.4	22.1	10.8	100.0
101-200만원	(272)	37.0	29.7	66.7	14.5	13.9	28.4	5.0	100.0
201-300만원	(388)	38.0	29.5	67.4	18.0	7.7	25.7	6.9	100.0
301-400만원	(257)	33.2	32.0	65.2	20.9	9.0	29.9	4.9	100.0
401만원이상	(156)	34.3	24.9	59.2	20.9	13.8	34.7	6.1	100.0
모름/무응답	(108)	25.3	33.6	58.9	15.8	7.5	23.3	17.8	100.0
권역									
서울	(273)	23.8	32.5	56.3	19.3	14.3	33.6	10.1	100.0
인천/경기	(324)	24.1	29.2	53.3	25.5	12.4	37.9	8.8	100.0
대전/충청	(126)	37.8	38.2	76.0	15.0	9.0	24.0	0.0	100.0
광주/전라	(140)	55.6	20.9	76.4	15.7	5.6	21.3	2.3	100.0
대구/경북	(138)	39.2	25.6	64.8	10.4	12.7	23.0	12.2	100.0
부산/울산/경남	(208)	47.9	30.3	78.2	14.3	3.5	17.8	4.0	100.0
강원/제주	(54)	46.0	28.4	74.4	7.0	8.0	15.1	10.5	100.0

제5장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 결과 요약 >

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 일반인 1,263명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6.9%,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63.1%로 나타남.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알고 있다는 466명의 일반인 중에서 24.3%, 전체 전문가의 6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60.4%가 독립된 국가기구임을 정확히 알고 있음.

반면, 일반인의 35.5%, 전문가의 2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31.7%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인지>

(단위:%)

	일반인(466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독립된 국가기구	24.3	68.9	60.4
대통령 직속기구	35.5	28.9	31.7
잘 모르겠다	16.8	1.1	4.0
민간기구	12.3	0.0	0.0
국무총리 직속기구	11.1	1.1	4.0

- 중복응답으로 질문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일반인은 TV(78.3%), 신문/잡지(46.2%), 인터넷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중매체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지인 또는 주변사람' 등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임.

〈국가인권위원회 인지 경로-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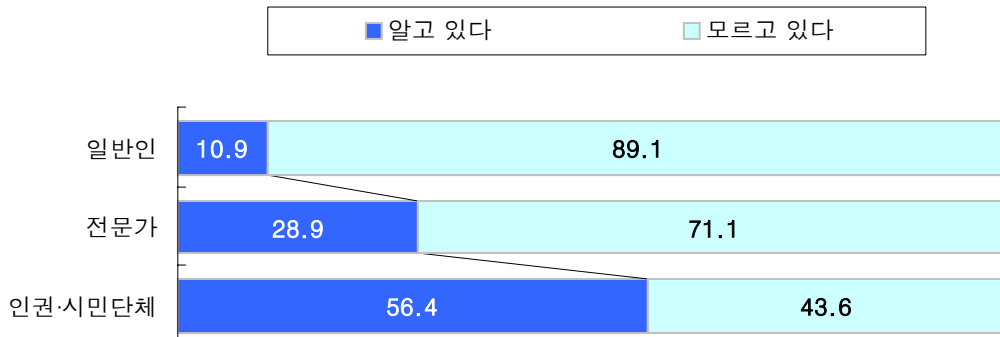
(단위:%)

	일반인(466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TV	78.3	46.5	26.7
신문/잡지	46.2	60.0	31.7
인터넷	13.0	41.1	34.7
라디오	7.9	8.9	5.0
지인 또는 주변사람	3.6	27.8	21.8
기타	2.0	0.0	2.0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	1.9	28.9	44.6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1.5	28.9	36.6
모름/무응답	0.0	0.0	2.0

■ 인권상담 전화 1331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466명의 일반인중 10.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 역시 28.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56.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인권상담 전화 1331에 대한 인지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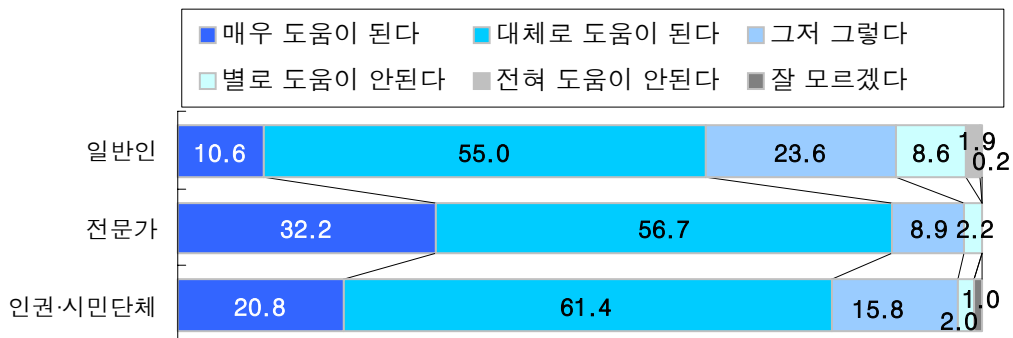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65.6%, 전문가의 8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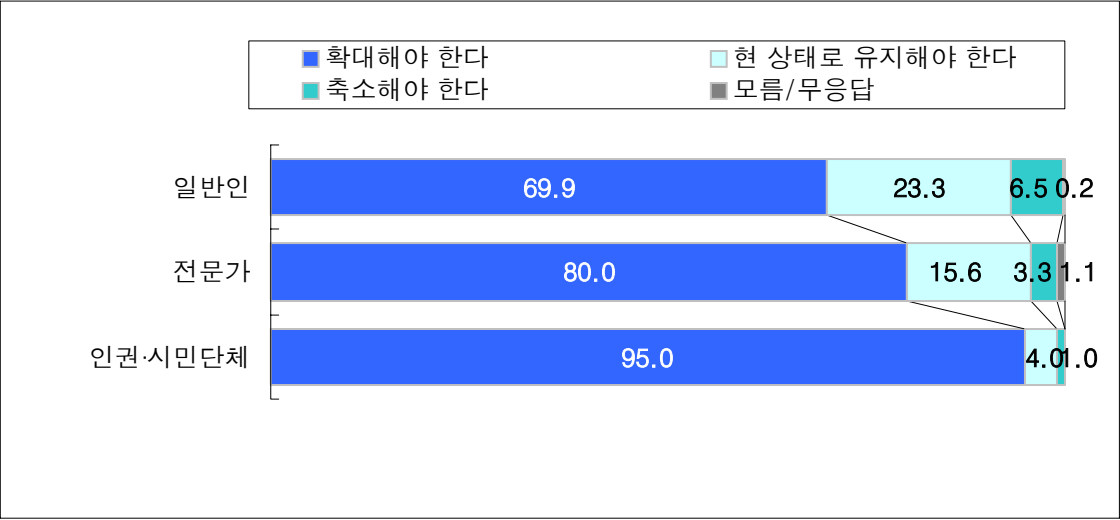
(단위:%)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일반인의 69.9%와 전문가의 80.0%,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5.0%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확대·축소 여부>

(단위:%)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 일반인 1,263명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6.9%,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63.1%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36.9%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3.1%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4명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 응답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46.9%)와 30대(45.9%)에서, 성별로는 여자(26.5%)보다 남자(47.5%)가 높게 나타났다.

〈표7-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응답 수	매우 잘 알고 있다 (A)	조금 알고 있다 (B)	알고 있다 (A+B)	잘 모르고 있다 (C)	전혀 모르고 있다 (D)	모르고 있다 (C+D)	계
전 체	(1,263)	1.8	35.2	36.9	47.9	15.2	63.1	100.0
성별								
남자	(626)	2.9	44.6	47.5	40.4	12.1	52.5	100.0
여자	(637)	0.6	25.9	26.5	55.3	18.1	73.5	100.0
연령								
15-19세	(103)	0.8	10.0	10.8	57.2	32.0	89.2	100.0
20대	(260)	0.4	24.9	25.3	59.3	15.5	74.7	100.0
30대	(290)	2.1	43.8	45.9	42.4	11.7	54.1	100.0
40대	(264)	2.3	44.5	46.9	42.9	10.2	53.1	100.0
50대 이상	(346)	2.3	36.0	38.4	45.1	16.6	61.6	100.0
학력								
중학생	(32)	0.0	9.6	9.6	58.1	32.3	90.4	100.0
고등학생	(58)	0.0	12.3	12.3	55.7	32.0	87.7	100.0
대학생	(113)	1.7	26.4	28.1	57.9	14.0	71.9	100.0
중졸 이하	(189)	2.1	20.4	22.5	50.1	27.4	77.5	100.0
고졸	(503)	2.4	37.3	39.7	46.8	13.5	60.3	100.0
대졸 이상	(367)	1.1	48.5	49.6	43.1	7.3	50.4	100.0
소득								
100만원 이하	(82)	1.2	21.1	22.3	47.2	30.5	77.7	100.0
101-200만원	(272)	2.2	36.3	38.5	45.1	16.4	61.5	100.0
201-300만원	(388)	1.3	39.5	40.8	47.5	11.7	59.2	100.0
301-400만원	(257)	1.7	31.6	33.2	54.5	12.3	66.8	100.0
401만원 이상	(156)	2.6	44.3	46.9	40.9	12.2	53.1	100.0
모름/무응답	(108)	1.7	22.7	24.4	51.6	24.0	75.6	100.0

2.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인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일반인의 24.3%, 전문가의 6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60.4%가 독립된 국가기구임을 정확히 알고 있는 반면, 일반인의 35.5%, 전문가의 2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31.7%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일반인 466명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독립된 국가기구라고 정확하게 응답한 비율은 24.3%에 불과하여 4명 중 1명 정도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6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60.4%가 독립된 국가기구로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여전히 10명 중에서 3-4명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인의 35.5%와 전문가의 2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31.7%가 대통령 직속기구라고 응답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30% 내외의 응답자가 독립된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잘못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7-2〉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인지

(단위: %)

	일반인(466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독립된 국가기구	24.3	68.9	60.4
대통령 직속기구	35.5	28.9	31.7
잘 모르겠다	16.8	1.1	4.0
민간기구	12.3	0.0	0.0
국무총리 직속기구	11.1	1.1	4.0

일반인 응답에서 독립된 국가기구라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27.8%)보다는 여자(22.3%)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 직속기구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비율은, 40대(45.0%)와 30대(40.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18.1%)보다는 남자(45.5%)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7-3〉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인지(일반인)

(단위: %)

		응답수	대통령 직속기구	독립된 국가기구	국무총리 직속기구	민간기구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466)	35.5	24.3	11.1	12.3	16.8	100.0
성별								
	남자	(297)	45.5	22.3	11.0	7.7	13.6	100.0
	여자	(169)	18.1	27.8	11.3	20.3	22.5	100.0
연령								
	15-19세	(11)	19.4	33.5	22.3	24.8	0.0	100.0
	20대	(66)	10.8	32.3	13.6	26.2	17.1	100.0
	30대	(133)	40.2	25.6	5.3	10.5	18.4	100.0
	40대	(124)	45.0	21.0	11.3	8.6	14.0	100.0
	50대 이상	(133)	35.7	21.4	14.6	9.4	19.0	100.0
학력								
	중학생	(3)	0.0	44.3	25.6	30.1	0.0	100.0
	고등학생	(7)	44.4	33.3	8.2	14.1	0.0	100.0
	대학생	(32)	12.5	40.1	6.1	19.1	22.2	100.0
	중졸이하	(43)	38.7	19.4	9.0	4.9	28.0	100.0
	고졸	(200)	30.9	22.9	12.6	16.4	17.3	100.0
	대졸 이상	(182)	44.2	23.5	10.7	7.9	13.6	100.0
소득								
	100만원이하	(18)	53.0	15.3	4.9	11.0	15.8	100.0
	101-200만원	(105)	34.9	24.2	13.0	15.3	12.6	100.0
	201-300만원	(159)	33.8	20.9	12.9	13.2	19.2	100.0
	301-400만원	(85)	36.7	24.9	12.0	9.9	16.4	100.0
	401만원이상	(73)	37.7	28.9	7.0	9.1	17.3	100.0
	모름/무응답	(26)	26.6	36.5	5.7	11.8	19.4	100.0

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 경로(중복응답)

▣ 중복응답으로 질문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일반인은 ‘TV(78.3%), 신문/잡지(46.2%), 인터넷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중매체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지인 또는 주변사람’ 등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인다.

중복응답으로 질문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466명의 일반인 중 78.3%가 TV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문/잡지(46.2%), 인터넷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문가는 신문/잡지(60.0%)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TV(46.5%)나 인터넷(41.1%)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28.9%)’,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28.9%)’, ‘지인 또는 주변사람(27.8%)’ 등이라는 응답이 높아 일반인과 차이를 보였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는, 대중매체보다도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44.6%)’,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36.6%)’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일반인이나 전문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여자는 주로 TV를, 남자는 신문/잡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을, 연령이 높을수록 신문/잡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7-4〉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 경로(중복응답)

(단위: %)

	일반인(466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TV	78.3	46.5	26.7
신문/잡지	46.2	60.0	31.7
인터넷	13.0	41.1	34.7
라디오	7.9	8.9	5.0
지인 또는 주변사람	3.6	27.8	21.8
기타	2.0	0.0	2.0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	1.9	28.9	44.6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1.5	28.9	36.6
모름/무응답	0.0	0.0	2.0

〈표7-5〉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 경로(중복응답)

(단위: %)

	응답수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국가인권 위원회 인 터넷 홈페 이지	국가인권 위원회 발 간 홍보자 료	지인 또는 주변 사람 들을 통해	기타	계
전 체	(466)	78.3	7.9	46.2	13.0	1.5	1.9	3.6	2.0	100.0
성별										
남자	(297)	73.5	9.3	52.2	12.8	2.0	2.0	4.0	1.9	100.0
여자	(169)	86.6	5.5	35.8	13.2	0.7	1.8	2.8	2.2	100.0
연령										
15-19세	(11)	55.2	5.1	51.4	23.9	0.0	0.0	7.9	7.1	100.0
20대	(66)	73.7	1.5	29.2	18.5	3.2	1.5	2.9	6.0	100.0
30대	(133)	75.5	9.2	44.8	20.9	1.6	3.0	3.7	2.2	100.0
40대	(124)	87.0	6.6	51.6	11.1	0.7	0.9	3.8	1.4	100.0
50대이상	(133)	77.2	11.4	50.6	3.0	1.4	2.1	3.1	0.0	100.0
학력										
중학생	(3)	69.9	18.6	74.4	18.6	0.0	0.0	0.0	25.6	100.0
고등학생	(7)	44.4	0.0	21.0	43.4	0.0	0.0	12.3	0.0	100.0
대학생	(32)	74.8	3.4	28.4	18.0	0.0	3.2	3.0	12.7	100.0
중졸이하	(43)	76.6	7.0	46.3	0.0	0.0	0.0	9.7	0.0	100.0
고졸	(200)	83.4	8.7	47.1	11.1	2.0	2.0	2.4	0.9	100.0
대졸 이상	(182)	75.2	8.2	48.8	15.8	1.7	2.1	3.2	1.5	100.0
소득										
100만원이하	(18)	79.3	11.4	42.5	0.0	0.0	10.3	5.3	0.0	100.0
101-200만원	(105)	70.6	8.6	42.8	13.2	0.9	1.0	4.9	1.9	100.0
201-300만원	(159)	82.2	6.4	47.1	11.3	0.6	1.9	3.7	1.7	100.0
301-400만원	(85)	80.3	8.6	47.9	13.8	3.8	0.0	2.2	3.2	100.0
401만원이상	(73)	80.6	10.2	50.5	16.9	1.3	4.1	3.9	2.8	100.0
모름/무응답	(26)	71.7	4.0	39.8	17.3	3.8	0.0	0.0	0.0	100.0

4. 인권상담 전화 1331에 대한 인지도

■ 인권상담 전화 1331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466명의 일반인 중 10.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 역시 28.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56.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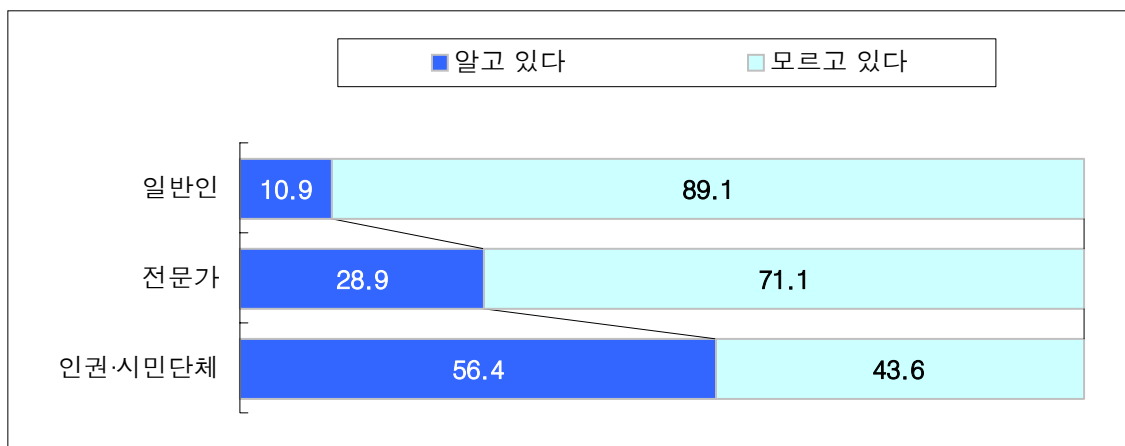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466명의 일반인 응답자 중 10.9%만이 인권상담 전화 1331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89.1%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1명만이 인권상담 전화 1331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역시 28.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권상담 전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56.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이나 전문가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업무상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50%를 약간 넘는 인지도는 낮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7-1〉 인권상담 전화 1331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일반인 응답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생산/기능/노무직(21.1%)이, 소득별로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20.8%)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7-6〉 인권상담 전화 1331에 대한 인지도(일반인)

(단위: %)

	응답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계
전 체	(466)	10.9	89.1	100.0
성별				
남자	(297)	11.3	88.7	100.0
여자	(169)	10.2	89.8	100.0
연령				
15-19세	(11)	0.0	100.0	100.0
20대	(66)	8.9	91.1	100.0
30대	(133)	9.5	90.5	100.0
40대	(124)	11.9	88.1	100.0
50대이상	(133)	13.5	86.5	100.0
학력				
중학생	(3)	0.0	100.0	100.0
고등학생	(7)	0.0	100.0	100.0
대학생	(32)	9.4	90.6	100.0
중졸이하	(43)	9.2	90.8	100.0
고졸	(200)	14.4	85.6	100.0
대졸 이상	(182)	8.4	91.6	100.0
직업				
농/축/수산/광업	(4)	0.0	100.0	100.0
자영업	(133)	15.2	84.8	100.0
판매/서비스직종사자	(53)	5.3	94.7	100.0
생산/기능/노무직	(43)	21.1	78.9	100.0
사무직	(88)	12.2	87.8	100.0
전문/관리/경영직	(48)	10.6	89.4	100.0
주부	(45)	0.0	100.0	100.0
학생	(37)	5.3	94.7	100.0
무직/퇴직/기타	(15)	6.7	93.3	100.0
소득				
100만원이하	(18)	20.8	79.2	100.0
101-200만원	(105)	10.8	89.2	100.0
201-300만원	(159)	9.5	90.5	100.0
301-400만원	(85)	12.5	87.5	100.0
401만원이상	(73)	11.1	88.9	100.0
모름/무응답	(26)	7.5	92.5	100.0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평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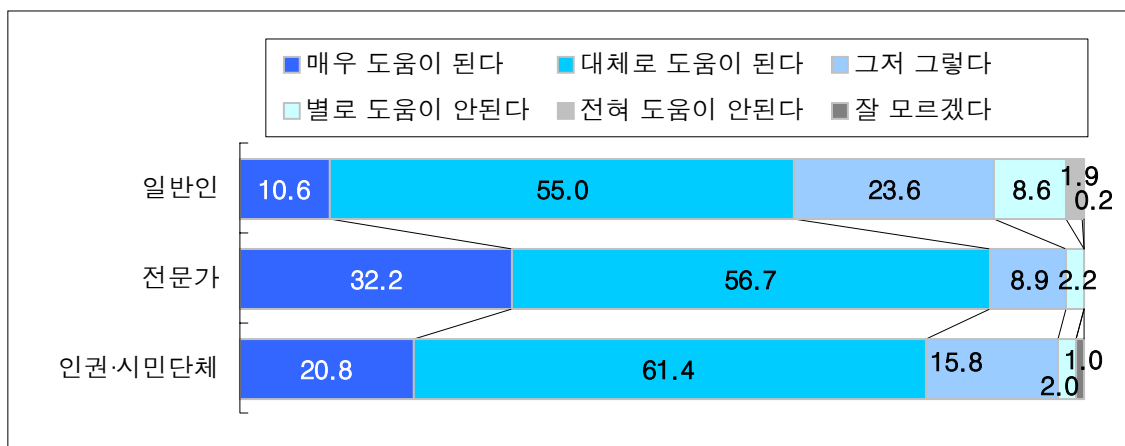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65.6%, 전문가의 8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인지하고 있는 466명의 일반인 응답자 중 65.6%가 인권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10.5%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6명 이상이 인권상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의 88.9%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7-2〉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기여도

(단위: %)



일반인 응답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72.3%)에서, 직업별로는 사무직(75.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7-7〉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기여도(일반인)

(단위: %)

	응답수	매우 도움이 된다 (A)	대체로 도움이 된다 (B)	도움이 된다 (A+B)	그저 그렇다 (C)	별로 도움이 안 된다 (D)	전혀 도움이 안 된다 (E)	도움이 안된다 (D+E)	무응답	계
전 체	(466)	10.6	55.0	65.6	23.6	8.6	1.9	10.5	0.2	100.0
성별										
남자	(297)	11.1	55.9	67.0	22.5	8.2	2.0	10.2	0.4	100.0
여자	(169)	9.7	53.5	63.2	25.7	9.3	1.8	11.1	0.0	100.0
연령										
15-19세	(11)	0.0	83.0	83.0	7.1	0.0	0.0	0.0	10.0	100.0
20대	(66)	4.7	54.2	58.9	30.1	6.4	4.6	11.0	0.0	100.0
30대	(133)	13.6	58.7	72.3	20.2	6.6	0.8	7.4	0.0	100.0
40대	(124)	7.8	48.7	56.5	30.0	10.3	3.2	13.5	0.0	100.0
50대이상	(133)	13.9	55.3	69.2	19.4	10.7	0.7	11.4	0.0	100.0
학력										
중학생	(3)	0.0	74.4	74.4	25.6	0.0	0.0	0.0	0.0	100.0
고등학생	(7)	0.0	85.8	85.8	0.0	0.0	14.2	14.2	0.0	100.0
대학생	(32)	6.3	65.6	71.8	18.2	3.5	6.5	10.0	0.0	100.0
중졸이하	(43)	9.9	61.8	71.7	11.2	12.4	4.7	17.1	0.0	100.0
고졸	(200)	10.9	50.2	61.1	26.3	10.6	1.5	12.1	0.6	100.0
대졸 이상	(182)	11.7	55.4	67.1	25.5	6.9	0.5	7.4	0.0	100.0
직업										
농/축/수산/광업	(4)	50.1	24.3	74.4	25.6	0.0	0.0	0.0	0.0	100.0
자영업	(133)	9.7	54.1	63.7	23.7	11.8	0.8	12.6	0.0	100.0
판매/서비스직종사자	(53)	5.7	47.5	53.2	31.6	13.3	1.8	15.2	0.0	100.0
생산/기능/노무직	(43)	13.6	56.7	70.2	22.8	7.0	0.0	7.0	0.0	100.0
사무직	(88)	13.1	62.2	75.3	19.3	3.3	2.1	5.4	0.0	100.0
전문/관리/경영직	(48)	12.3	56.7	69.0	20.9	8.3	1.8	10.1	0.0	100.0
주부	(45)	8.9	50.8	59.7	28.2	9.6	2.5	12.1	0.0	100.0
학생	(37)	5.3	65.4	70.7	15.0	3.0	8.2	11.2	3.0	100.0
무직/퇴직/기타	(15)	14.1	33.9	48.0	39.3	12.7	0.0	12.7	0.0	100.0
소득										
100만원이하	(18)	20.8	58.6	79.4	10.3	5.4	4.9	10.3	0.0	100.0
101-200만원	(105)	4.2	67.2	71.4	21.8	6.8	0.0	6.8	0.0	100.0
201-300만원	(159)	12.0	55.0	66.9	20.6	10.4	1.3	11.7	0.7	100.0
301-400만원	(85)	13.1	45.3	58.4	33.0	7.5	1.1	8.5	0.0	100.0
401만원이상	(73)	10.8	53.6	64.4	24.4	7.0	4.2	11.2	0.0	100.0
모름/무응답	(26)	11.2	40.1	51.3	26.0	15.1	7.5	22.6	0.0	100.0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의 확대·축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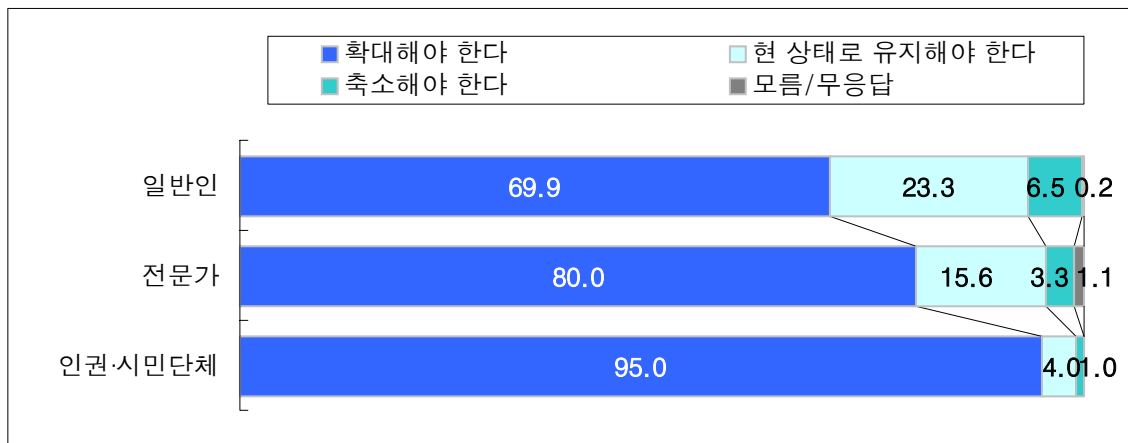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일반인의 69.9%와 전문가의 80.0%, 시민단체 관계자의 95.0%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인지하고 있는 466명의 일반인 응답자 중 69.9%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3.3%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6.5%만이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는 80.0%,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95.0%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7-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확대·축소 여부

(단위: %)



일반인 응답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남자(67.7%)보다 여자(73.9%)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7-8〉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확대·축소 여부(일반인)

(단위: %)

	응답수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역할이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역할이나 기능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무응답	계
전 체	(466)	69.9	6.5	23.3	0.2	100.0
성별						
남자	(297)	67.7	8.2	23.7	0.4	100.0
여자	(169)	73.9	3.5	22.6	0.0	100.0
연령						
15-19세	(11)	35.2	7.7	47.1	10.0	100.0
20대	(66)	78.5	4.6	16.9	0.0	100.0
30대	(133)	78.8	3.5	17.7	0.0	100.0
40대	(124)	67.8	8.3	24.0	0.0	100.0
50대이상	(133)	61.8	8.7	29.5	0.0	100.0
학력						
중학생	(3)	48.7	0.0	51.3	0.0	100.0
고등학생	(7)	22.3	26.2	51.5	0.0	100.0
대학생	(32)	84.6	0.0	15.4	0.0	100.0
중졸이하	(43)	55.5	9.7	34.8	0.0	100.0
고졸	(200)	70.2	6.8	22.4	0.6	100.0
대졸 이상	(182)	72.7	5.9	21.4	0.0	100.0
소득						
100만원이하	(18)	67.4	10.6	21.9	0.0	100.0
101-200만원	(105)	70.4	6.5	23.1	0.0	100.0
201-300만원	(159)	67.7	6.4	25.2	0.7	100.0
301-400만원	(85)	70.1	5.7	24.2	0.0	100.0
401만원이상	(73)	67.9	9.0	23.1	0.0	100.0
모름/무응답	(26)	88.8	0.0	11.2	0.0	100.0

제6장 인권교육의 실태

< 결과 요약 >

1. 인권교육의 경험

- 일반인 1,263명 중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3%,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94.7%로 나타남.
-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67명은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해, 43.8%가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교육받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38.6%)', '자신이 속해 있는 곳과 관련된 인권 내용(2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인권교육의 내용-중복응답>

(단위:%)

	응답수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과 내용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자신이 속해 있는 곳과 관련된 인권내용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구제절차 등에 대한 교육	인권존중의 태도 및 인권옹호를 위한 실천방법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현안 및 국제인권동향에 관한 이해	기타	잘 모르겠다
전 체	(67)	43.8	38.6	22.7	12.9	11.6	4.8	1.5	7.1

-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67명은 인권교육의 주체에 대해, 55.2%가 학교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30.1%)이 높게 나타남.

반면, 인권·시민단체의 행사(2.5%)나 정부기관의 교육프로그램(1.6%)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함.

<인권교육의 주체>

(단위:%)

	(응답수)	학교	직장	시민단체의 행사	정부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기타	계
전 체	(67)	55.2	30.1	2.5	1.6	10.6	100.0

2. 인권교육의 필요성

- 주요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세 종류의 교육과정 모두에 대해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인권교육의 필요성〉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92.4	100.0	100.0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	91.8	98.9	99.0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원 교육	91.5	96.7	99.0

- 일반인은 사법관계자(16.0%), 경찰(14.0%),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11.7%), 사회적 약자(11.5%), 구급시설 공무원(10.5%)의 순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한편, 전문가는 구급시설 공무원(16.7%), 경찰(16.7%), 군인(11.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10.0%) 등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사법관계자(17.8%), 경찰(13.9%), 교사(12.9%), 군인(9.9%), 중앙 및 지방공무원(9.9%) 등의 순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계
사법 관계자	16.0	8.9	17.8	42.7
경찰	14.0	16.7	13.9	44.6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11.7	7.8	5.0	24.5
사회적 약자	11.5	6.7	6.9	25.1
구급시설 공무원	10.5	16.7	5.0	32.2
중앙 및 지방 공무원	8.0	5.6	9.9	23.5
군인	8.0	11.1	9.9	29.0
학생	6.9	3.3	7.9	18.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5.2	10.0	2.0	17.2
언론인	3.4	6.7	5.0	15.1
교사	1.8	4.4	12.9	19.1
전문직 종사자	1.7	1.1	2.0	4.8
기타	0.7	1.1	2.0	3.8
모름/무응답	0.6	0.0	0.0	0.6
계	100.0	100.0	100.0	300.0

제1절 인권교육의 경험

1. 인권교육 경험 여부

■ 일반인 1,263명 중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3%,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94.7%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 1,263명 중 5.3%만이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4.7%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 응답에서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10.2%)와 20대(9.3%)에서, 직업별로는 전문/관리/기능직(12.1%)과 사무직(10.0%), 학생(9.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8-1〉 인권교육 경험 여부

(단위: %)

	응답수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계
전 체	(1,263)	5.3	94.7	100.0
성별				
남자	(626)	5.7	94.3	100.0
여자	(637)	5.0	95.0	100.0
연령				
15-19세	(103)	10.2	89.8	100.0
20대	(260)	9.3	90.7	100.0
30대	(290)	6.0	94.0	100.0
40대	(264)	2.1	97.9	100.0
50대이상	(346)	2.9	97.1	100.0
학력				
중학생	(32)	12.9	87.1	100.0
고등학생	(58)	9.5	90.5	100.0
대학생	(113)	9.7	90.3	100.0
중졸이하	(189)	1.1	98.9	100.0
고졸	(503)	3.4	96.6	100.0
대졸 이상	(367)	7.5	92.5	100.0
직업				
농/축/수산/광업	(14)	0.0	100.0	100.0
자영업	(334)	2.0	98.0	100.0
판매/서비스직종사자	(167)	4.2	95.8	100.0
생산/기능/노무직	(91)	3.2	96.8	100.0
사무직	(174)	10.0	90.0	100.0
전문/관리/경영직	(73)	12.1	87.9	100.0
주부	(163)	1.8	98.2	100.0
학생	(189)	9.8	90.2	100.0
무직/퇴직/기타	(57)	5.3	94.7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5.8	94.2	100.0
101-200만원	(272)	4.0	96.0	100.0
201-300만원	(388)	5.3	94.7	100.0
301-400만원	(257)	6.4	93.6	100.0
401만원이상	(156)	7.5	92.5	100.0
모름/무응답	(108)	2.7	97.3	100.0

2. 인권교육의 내용(중복응답)

■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67명은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해, 43.8%가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과 내용'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38.6%)', '자신이 속해 있는 곳과 관련된 인권 내용(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67명의 일반인 중에서, 43.8%가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38.6%)', '자신이 속해 있는 곳과 관련된 인권 내용(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내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5-19세의 경우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61.5%)'가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인데 반해, 20대는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과 내용(54.8%)'이라고 응답하여 연령에 따라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8-2〉 인권교육의 내용(중복응답)

(단위: %)

	응답수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과 내용	사회적 약자의 인권 에 대해 이해	자신이 있 는 곳 과 관 련 된 인 권 내 용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구제 절차 등에 대 한 교육	인권 존중의 태도 및 인 권 옹호 를 위 한 실천 방법	한국사회의 주요 인 권 현안 및 국제 인권 동향에 관 한 이해	기타	잘 모르 겠다
전 체	(67)	43.8	38.6	22.7	12.9	11.6	4.8	1.5	7.1
성별									
남자	(35)	43.7	27.0	19.9	12.0	14.3	2.9	0.0	10.8
여자	(32)	43.8	51.5	25.8	13.8	8.7	6.9	3.1	3.1
연령									
15-19세	(11)	31.8	61.5	7.5	33.0	15.8	0.0	0.0	0.0
20대	(24)	54.8	36.8	29.1	3.8	0.0	4.0	4.0	12.3
30대	(17)	40.4	40.9	23.0	19.1	11.4	13.0	0.0	5.5
40대	(5)	36.4	47.1	28.9	0.0	19.6	0.0	0.0	0.0
50대이상	(10)	39.5	9.7	19.0	9.7	31.8	0.0	0.0	8.9
학력									
중학생	(4)	56.3	21.3	0.0	45.7	40.2	0.0	0.0	0.0
고등학생	(6)	18.2	100.0	0.0	28.2	0.0	0.0	0.0	0.0
대학생	(11)	45.7	45.5	27.4	0.0	0.0	8.8	8.8	18.1
중졸이하	(2)	0.0	0.0	0.0	0.0	100.0	0.0	0.0	0.0
고졸	(17)	58.4	18.0	27.9	18.9	11.1	7.3	0.0	5.2
대졸 이상	(27)	40.7	41.7	27.3	7.2	7.8	3.7	0.0	7.0
소득									
100만원이하	(5)	0.0	0.0	37.8	0.0	43.5	0.0	0.0	18.6
101-200만원	(11)	50.4	30.0	19.0	9.5	0.0	9.5	9.1	9.1
201-300만원	(21)	53.2	28.7	29.0	4.9	0.0	0.0	0.0	9.3
301-400만원	(17)	29.6	56.2	18.0	34.6	23.1	0.0	0.0	6.1
401만원이상	(12)	62.1	48.4	21.0	7.5	7.5	18.9	0.0	0.0
모름/무응답	(3)	29.9	63.1	0.0	0.0	36.9	0.0	0.0	0.0

3. 인권교육의 주체

■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67명은 인권교육의 주체에 대해, 55.2%가 학교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30.1%)이 높게 나타났다. 인권·시민단체의 행사(2.5%)나 정부기관의 교육프로그램(1.6%)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67명의 일반인 중에서, 55.2%가 학교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30.1%)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권·시민단체의 행사(2.5%)나 정부기관의 교육프로그램(1.6%)을 통해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인권교육의 주체를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40.4%)보다는 여자(71.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40대(72.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18.8%)보다는 남자(40.2%)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8-3〉 인권교육의 주체

(단위: %)

	응답수	학교	직장	시민단체의 행사	정부기관 의 교육 프로그램	기타	계
전 체	(67)	55.2	30.1	2.5	1.6	10.6	100.0
성별							
남자	(35)	40.4	40.2	4.8	3.1	11.5	100.0
여자	(32)	71.6	18.8	0.0	0.0	9.5	100.0
연령							
15-19세	(11)	100.0	0.0	0.0	0.0	0.0	100.0
20대	(24)	76.0	7.2	0.0	0.0	16.8	100.0
30대	(17)	38.3	50.3	0.0	0.0	11.4	100.0
40대	(5)	12.4	72.5	15.2	0.0	0.0	100.0
50대이상	(10)	9.9	59.3	8.9	11.0	10.9	100.0
학력							
중학생	(4)	100.0	0.0	0.0	0.0	0.0	100.0
고등학생	(6)	100.0	0.0	0.0	0.0	0.0	100.0
대학생	(11)	73.5	8.8	0.0	0.0	17.7	100.0
중졸이하	(2)	0.0	0.0	0.0	50.2	49.8	100.0
고졸	(17)	55.5	39.3	5.2	0.0	0.0	100.0
대졸 이상	(27)	36.2	46.0	3.0	0.0	14.8	100.0
소득							
100만원이하	(5)	37.4	21.0	18.6	0.0	22.9	100.0
101-200만원	(11)	61.9	0.0	0.0	0.0	38.1	100.0
201-300만원	(21)	66.4	29.0	0.0	0.0	4.6	100.0
301-400만원	(17)	43.6	45.6	5.0	0.0	5.9	100.0
401만원이상	(12)	50.7	49.3	0.0	0.0	0.0	100.0
모름/무응답	(3)	63.1	0.0	0.0	36.9	0.0	100.0

제2절 인권교육의 필요성

1. 주요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 주요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일반인의 92.4%, 전문가 및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10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 정규 교육에서 일반인의 91.8%, 전문가의 9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기업의 사원 교육에서도 일반인의 91.5%, 전문가의 96.7%,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인은 세 종류의 교육과정 모두에서 92% 내외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세 종류의 교육과정 모두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해 일반인의 92.4%와 전문가 및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100.0% 모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더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8-4〉 교육과정별 인권교육의 필요성

(단위: %)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92.4	100.0	100.0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	91.8	98.9	99.0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원 교육	91.5	96.7	99.0

2.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

■ 일반인은 사법관계자(16.0%), 경찰(14.0%),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11.7%), 사회적 약자(11.5%), 구금시설 공무원(10.5%)의 순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구금시설 공무원(16.7%), 경찰(16.7%), 군인(11.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10.0%)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사법관계자(17.8%), 경찰(13.9%), 교사(12.9%), 군인(9.9%), 중앙 및 지방공무원(9.9%) 등의 순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에 대해, 일반인의 경우는 사법관계자라는 응답이 1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찰(14.0%),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11.7%), 사회적 약자(11.5%), 구금시설 공무원(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1.7%)와 교사(1.8%), 언론인(3.4%) 등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전문가의 경우는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공무원과 경찰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군인(11.1%)과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10.0%) 등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적 약자(6.7%)나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7.8%)의 인권교육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였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도 사법관계자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일반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교사(12.9%), 군인(9.9%), 중앙 및 지방공무원(9.9%) 등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일반인이나 전문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구금시설 공무원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에 불과하여 다른 응답자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표8-5〉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일반인,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단위: %)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계
사법 관계자	16.0	8.9	17.8	42.7
경찰	14.0	16.7	13.9	44.6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11.7	7.8	5.0	24.5
사회적 약자	11.5	6.7	6.9	25.1
구급시설 공무원	10.5	16.7	5.0	32.2
중앙 및 지방 공무원	8.0	5.6	9.9	23.5
군인	8.0	11.1	9.9	29.0
학생	6.9	3.3	7.9	18.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5.2	10.0	2.0	17.2
언론인	3.4	6.7	5.0	15.1
교사	1.8	4.4	12.9	19.1
전문직 종사자	1.7	1.1	2.0	4.8
기타	0.7	1.1	2.0	3.8
모름/무응답	0.6	0.0	0.0	0.6
계	100.0	100.0	100.0	300.0

제7장 청소년의 인권 실태

< 결과 요약 >

1. 청소년 인권 사안별 심각성

- 청소년의 인권 사안별 심각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반인보다는 전문가가, 전문가보다는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차별'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임.

일반인과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모두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장애로 인한 차별',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전문가의 경우,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을,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외에 '외모로 인한 차별', '교육활동 선택의 자유 제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청소년 인권문제 사안별 심각성>

(단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	72.5	91.1	96.0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63.6	86.7	87.1
학교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50.8	88.9	94.1
학교에서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	49.1	81.1	89.1
학교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41.3	80.0	86.1
학교에서 키나 몸무게, 얼굴생김새 등의 외모로 인한 차별	35.8	60.0	87.1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	30.3	57.8	72.3
학교에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23.6	50.0	77.2
정규교과목 이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	23.5	68.9	86.1
학교에서의 선생님에 의한 차별	20.2	58.9	78.2
학생회 등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	19.9	51.1	80.2
학교에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	17.7	56.7	81.2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차별	12.9	53.3	63.4

2. 청소년 인권 사안별 경험 여부

-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41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권사안별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의한 차별'이 46.3%,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이 46.0%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의한 차별(38.8%)'이 높게 나타남.

일반인이나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은 11.6%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낮은 비율을 보임.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4.4%)'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5.1%)' 등은 경험 비율이 낮게 나타남.

<청소년 인권문제 사안별 심각성>

(단위:%)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419명)
학교에서의 선생님에 의한 체벌	46.3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	46.0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체벌	38.8
학교에서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	16.7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16.6
정규교과목 이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	15.4
학생회 등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	14.8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	11.6
학교에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10.0
학교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9.8
학교에서 키나 몸무게, 얼굴생김새 등의 외모로 인한 차별	9.5
학교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5.1
학교에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	4.4

■ 일반인의 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의 직접 경험을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심각성 인식은 높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낮아 소수에 해당하나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로 보이는 '사례분석영역'에는, △집단 따돌림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학업성적에 의한 차별 △장애로 인한 차별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외모로 인한 차별 등이 해당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연구 및 그에 따른 차별화된 대안 마련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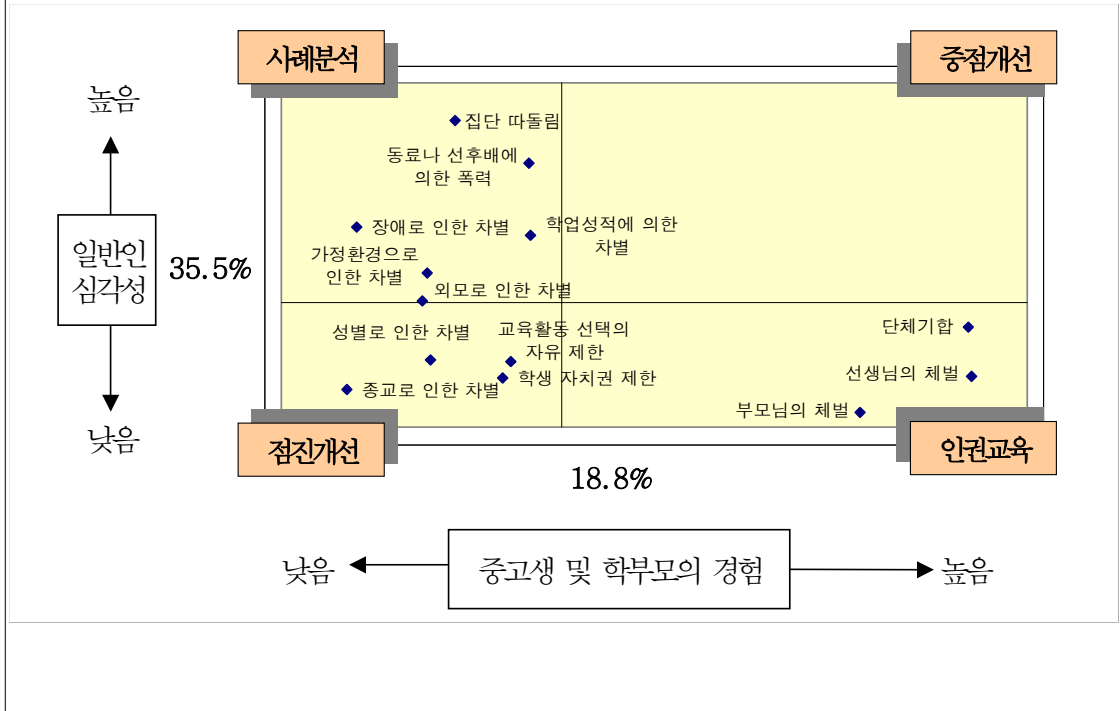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 비율이 모두 낮아 즉각적인 대안보다는 장기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점진개선영역'에는, △교육활동 선택의 자유 제한 △학생자치권 제한 △성별로 인한 차별 △종교로 인한 차별 등의 사안이 해당함.

심각성 인식은 낮지만, 직·간접 경험 비율은 높아 일상화된 인권침해로 보이는 '인권교육영역'에는, △단체기합 △선생님에 의한 체벌 △부모님에 의한 체벌 등이 해당하며 교육상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보임.

심각성 인식과 직·간접 경험 비율이 모두 높아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중점개선영역'에는, 해당하는 사안이 없음.

〈청소년 인권문제 심각성과 경험비율 비교-일반인〉



제1절 청소년 인권 사안별 심각성 인식

1. 청소년 인권 사안별 심각성 인식 비교

■ 일반인과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모두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장애로 인한 차별',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의 경우,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을,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외에 '외모로 인한 차별', '교육활동 선택의 자유 제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청소년의 인권 사안별 심각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반인보다는 전문가가, 전문가보다는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차별'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과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모두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장애로 인한 차별',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의 경우,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을,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외에 '외모로 인한 차별', '교육활동 선택의 자유 제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9-1> 청소년 인권 사안별 심각성(일반인과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비교)

(단위: %)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 관계자(101명)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	72.5	91.1	96.0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63.6	86.7	87.1
학교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50.8	88.9	94.1
학교에서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	49.1	81.1	89.1
학교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41.3	80.0	86.1
학교에서 키나 몸무게, 얼굴생김새 등의 외모로 인한 차별	35.8	60.0	87.1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	30.3	57.8	72.3
학교에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23.6	50.0	77.2
정규교과목 이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	23.5	68.9	86.1
학교에서의 선생님에 의한 체벌	20.2	58.9	78.2
학생회 등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	19.9	51.1	80.2
학교에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	17.7	56.7	81.2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체벌	12.9	53.3	63.4

2. 동료들에 의한 집단 따돌림

▣ 동료들에 의한 집단 따돌림에 대해 일반인은 72.5%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는 91.1%,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96.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72.5%가 동료들에 의한 집단 따돌림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5.8%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7명 이상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동료들에 의한 집단 따돌림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54.3%)보다 중학생(72.6%)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2〉 동료들에 의한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별로 심각하지 않다 (B)	심각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C)	매우 심각하다 (D)	심각하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4.6	21.2	25.8	48.5	24.0	72.5	1.7	100.0
성별									
남자	(626)	3.7	21.8	25.5	48.5	24.7	73.2	1.3	100.0
여자	(637)	5.5	20.6	26.1	48.5	23.3	71.8	2.1	100.0
연령									
15-19세	(103)	6.6	30.2	36.7	43.2	18.0	61.3	2.0	100.0
20대	(260)	3.0	18.5	21.6	46.0	31.7	77.7	0.7	100.0
30대	(290)	3.8	16.1	19.9	49.2	28.4	77.6	2.5	100.0
40대	(264)	4.0	24.1	28.1	50.4	19.6	70.0	1.9	100.0
50대이상	(346)	6.6	22.5	29.0	49.8	19.7	69.5	1.5	100.0
학력									
중학생	(32)	2.7	21.7	24.5	46.5	26.1	72.6	2.9	100.0
고등학생	(58)	10.1	33.7	43.8	42.4	11.9	54.3	1.9	100.0
대학생	(113)	3.5	22.2	25.7	42.6	31.6	74.3	0.0	100.0
중졸이하	(189)	6.1	21.9	28.0	50.8	19.1	69.8	2.1	100.0
고졸	(503)	4.4	20.8	25.2	47.4	25.8	73.2	1.6	100.0
대졸 이상	(367)	3.8	19.0	22.8	51.7	23.5	75.2	2.0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5.0	19.2	24.2	46.7	26.8	73.4	2.3	100.0
101-200만원	(272)	2.4	20.9	23.3	53.7	22.6	76.4	0.4	100.0
201-300만원	(388)	2.6	22.8	25.4	48.3	24.2	72.5	2.1	100.0
301-400만원	(257)	6.0	23.8	29.9	47.8	21.1	69.0	1.2	100.0
401만원이상	(156)	9.0	15.6	24.7	46.7	27.2	74.0	1.4	100.0
모름/무응답	(108)	7.9	19.3	27.2	41.3	27.1	68.3	4.5	100.0

3.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에 대해 일반인의 63.6%, 전문가의 86.7%, 인권·시민 단체 관계자의 87.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63.6%가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4.1%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6명 이상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56.0%)보다 중학생(76.0%)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3〉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별로 심각하지 않다 (B)	심각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C)	매우 심각하다 (D)	심각하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5.8	28.2	34.1	41.1	22.5	63.6	2.3	100.0
성별									
남자	(626)	5.4	29.3	34.7	42.8	21.7	64.5	0.8	100.0
여자	(637)	6.2	27.2	33.4	39.5	23.3	62.8	3.8	100.0
연령									
15-19세	(103)	7.1	28.8	35.9	41.9	19.5	61.4	2.7	100.0
20대	(260)	5.5	22.5	28.1	45.5	25.3	70.8	1.1	100.0
30대	(290)	6.8	23.5	30.3	40.5	26.3	66.9	2.8	100.0
40대	(264)	4.7	31.6	36.4	40.2	22.3	62.5	1.1	100.0
50대이상	(346)	5.6	33.8	39.4	38.8	18.2	57.0	3.6	100.0
학력									
중학생	(32)	6.0	15.1	21.1	49.5	26.5	76.0	2.9	100.0
고등학생	(58)	9.3	32.9	42.2	41.1	14.9	56.0	1.8	100.0
대학생	(113)	5.3	30.9	36.2	36.5	26.4	63.0	0.9	100.0
중졸이하	(189)	4.9	33.6	38.5	40.0	16.6	56.6	4.9	100.0
고졸	(503)	5.5	27.3	32.8	40.4	24.8	65.2	2.0	100.0
대졸 이상	(367)	6.3	26.4	32.7	43.4	22.0	65.4	2.0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4.9	32.1	37.0	31.4	27.9	59.3	3.7	100.0
101-200만원	(272)	4.1	28.9	33.0	46.7	18.8	65.5	1.5	100.0
201-300만원	(388)	4.0	27.8	31.9	41.6	24.0	65.6	2.5	100.0
301-400만원	(257)	7.4	26.9	34.3	43.1	20.1	63.2	2.5	100.0
401만원이상	(156)	7.0	31.1	38.0	33.2	28.1	61.3	0.7	100.0
모름/무응답	(108)	11.7	24.3	36.0	39.5	19.9	59.4	4.6	100.0

4. 장애로 인한 차별

▣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50.8%, 전문가의 8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4.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50.8%가 장애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5.2%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5명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9-4〉 장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별로 심각하지 않다 (B)	심각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C)	매우 심각하다 (D)	심각하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10.7	34.5	45.2	37.3	13.5	50.8	4.0	100.0
성별									
남자	(626)	11.2	34.0	45.2	38.3	13.7	52.1	2.8	100.0
여자	(637)	10.3	35.0	45.3	36.2	13.4	49.6	5.1	100.0
연령									
15-19세	(103)	13.9	37.6	51.5	32.5	12.1	44.6	3.9	100.0
20대	(260)	9.1	31.2	40.2	35.4	22.0	57.4	2.3	100.0
30대	(290)	8.1	30.5	38.6	39.8	16.4	56.3	5.1	100.0
40대	(264)	11.4	38.4	49.8	37.1	9.5	46.6	3.6	100.0
50대이상	(346)	12.8	36.4	49.2	38.0	8.3	46.3	4.5	100.0
학력									
중학생	(32)	8.2	36.3	44.5	42.5	13.0	55.5	0.0	100.0
고등학생	(58)	15.1	39.8	54.9	29.2	10.4	39.6	5.5	100.0
대학생	(113)	9.8	33.8	43.6	30.4	25.0	55.4	1.0	100.0
중졸이하	(189)	11.9	38.1	50.0	39.2	5.4	44.6	5.4	100.0
고졸	(503)	10.5	34.0	44.5	38.4	13.7	52.1	3.4	100.0
대졸 이상	(367)	10.4	32.4	42.8	37.7	14.5	52.2	5.0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7.7	28.9	36.5	39.7	19.2	58.9	4.6	100.0
101-200만원	(272)	7.5	33.2	40.8	42.1	13.3	55.4	3.8	100.0
201-300만원	(388)	9.8	36.0	45.8	36.4	13.8	50.2	4.0	100.0
301-400만원	(257)	15.6	36.3	51.9	34.5	10.2	44.7	3.4	100.0
401만원이상	(156)	13.7	34.8	48.5	34.1	14.6	48.7	2.8	100.0
모름/무응답	(108)	8.9	31.5	40.4	37.4	15.6	53.0	6.6	100.0

5.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

▣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49.1%, 전문가의 81.1%,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9.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49.1%가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8.1%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5명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54.3%)과 고등학생(51.2%)간에 차이 없이 높게 나타났다.

〈표9-5〉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별로 심각하지 않다 (B)	심각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C)	매우 심각하다 (D)	심각하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10.0	38.1	48.1	37.9	11.2	49.1	2.8	100.0
성별									
남자	(626)	10.1	37.8	47.9	38.5	11.2	49.7	2.3	100.0
여자	(637)	10.0	38.3	48.3	37.3	11.2	48.5	3.2	100.0
연령									
15-19세	(103)	11.9	35.4	47.3	39.2	12.7	51.9	0.8	100.0
20대	(260)	8.9	31.9	40.8	41.2	16.9	58.1	1.1	100.0
30대	(290)	9.3	32.2	41.4	42.5	13.4	55.9	2.7	100.0
40대	(264)	11.2	42.0	53.2	37.0	7.8	44.8	2.0	100.0
50대이상	(346)	10.2	45.5	55.6	31.9	7.2	39.1	5.3	100.0
학력									
중학생	(32)	9.1	36.6	45.7	40.7	13.6	54.3	0.0	100.0
고등학생	(58)	14.5	34.4	48.8	40.1	11.1	51.2	0.0	100.0
대학생	(113)	11.0	32.4	43.4	33.3	22.4	55.7	0.9	100.0
중졸이하	(189)	9.8	45.9	55.7	32.4	7.1	39.5	4.8	100.0
고졸	(503)	10.5	37.8	48.3	38.0	10.5	48.5	3.2	100.0
대졸 이상	(367)	8.6	36.9	45.5	41.4	10.6	52.1	2.4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5.2	40.6	45.8	39.9	8.5	48.4	5.8	100.0
101-200만원	(272)	7.0	41.2	48.2	40.4	8.8	49.2	2.6	100.0
201-300만원	(388)	10.7	37.9	48.6	37.4	11.6	49.0	2.3	100.0
301-400만원	(257)	14.0	38.0	52.0	35.3	10.0	45.2	2.7	100.0
401만원이상	(156)	10.7	36.2	46.9	34.4	18.1	52.4	0.6	100.0
모름/무응답	(108)	8.5	32.0	40.5	43.0	10.9	53.9	5.6	100.0

6.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41.3%, 전문가의 80.0%,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6.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41.3%가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5.3%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4명 정도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48.3%)와 20대(46.3%)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54.9%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9-6〉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별로 심각하지 않다 (B)	심각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C)	매우 심각하다 (D)	심각하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10.6	44.6	55.3	32.1	9.2	41.3	3.4	100.0
성별									
남자	(626)	11.4	43.2	54.5	33.8	9.3	43.1	2.4	100.0
여자	(637)	9.9	46.0	56.0	30.4	9.1	39.5	4.5	100.0
연령									
15-19세	(103)	15.6	52.6	68.2	24.7	4.4	29.0	2.8	100.0
20대	(260)	10.0	41.4	51.4	35.3	10.9	46.3	2.4	100.0
30대	(290)	10.3	37.6	47.9	35.3	12.9	48.3	3.9	100.0
40대	(264)	10.8	48.0	58.8	32.0	5.6	37.6	3.5	100.0
50대이상	(346)	9.9	47.9	57.8	29.2	9.0	38.2	4.0	100.0
학력									
중학생	(32)	11.4	43.3	54.7	39.3	2.9	42.2	3.2	100.0
고등학생	(58)	18.1	57.0	75.0	18.8	4.4	23.2	1.7	100.0
대학생	(113)	10.8	45.8	56.6	30.8	9.8	40.6	2.8	100.0
중졸이하	(189)	9.6	49.5	59.1	28.7	7.5	36.2	4.7	100.0
고졸	(503)	11.9	42.1	54.0	33.5	8.9	42.4	3.6	100.0
대졸 이상	(367)	8.1	43.4	51.5	33.7	11.7	45.4	3.1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4.9	35.7	40.6	37.2	17.7	54.9	4.6	100.0
101-200만원	(272)	7.0	47.1	54.1	36.4	7.7	44.0	1.8	100.0
201-300만원	(388)	11.9	42.5	54.5	33.3	8.6	41.9	3.7	100.0
301-400만원	(257)	14.6	46.9	61.5	27.9	6.6	34.4	4.0	100.0
401만원이상	(156)	8.9	44.7	53.6	30.7	14.5	45.2	1.3	100.0
모름/무응답	(108)	12.5	47.1	59.6	25.1	7.6	32.7	7.6	100.0

7. 외모로 인한 차별

▣ 외모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35.8%, 전문가의 60.0%,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7.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35.8%가 외모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9.6%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3명 이상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외모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48.1%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9-7〉 외모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별로 심각하지 않다 (B)	심각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C)	매우 심각하다 (D)	심각하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15.0	44.6	59.6	28.2	7.6	35.8	4.6	100.0
성별									
남자	(626)	15.9	45.1	61.0	28.0	6.9	34.9	4.1	100.0
여자	(637)	14.1	44.1	58.2	28.5	8.3	36.8	5.0	100.0
연령									
15-19세	(103)	15.3	49.1	64.4	25.4	6.7	32.1	3.5	100.0
20대	(260)	16.1	36.0	52.1	36.0	9.7	45.7	2.2	100.0
30대	(290)	14.5	39.5	54.0	32.0	8.2	40.2	5.8	100.0
40대	(264)	17.2	47.5	64.7	24.4	7.1	31.4	3.8	100.0
50대이상	(346)	12.8	51.8	64.6	23.0	6.2	29.2	6.1	100.0
학력									
중학생	(32)	15.9	36.1	51.9	37.1	11.0	48.1	0.0	100.0
고등학생	(58)	16.9	53.6	70.5	21.6	3.2	24.8	4.7	100.0
대학생	(113)	17.5	41.4	58.9	26.7	14.4	41.1	0.0	100.0
중졸이하	(189)	13.6	51.0	64.6	25.2	3.8	29.1	6.4	100.0
고졸	(503)	14.5	41.7	56.2	30.8	8.0	38.9	5.0	100.0
대졸 이상	(367)	15.4	45.5	60.9	27.0	7.3	34.2	4.8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9.6	45.3	54.9	28.0	8.7	36.7	8.4	100.0
101-200만원	(272)	12.1	48.6	60.7	29.5	5.3	34.8	4.5	100.0
201-300만원	(388)	16.7	42.9	59.6	26.5	8.8	35.3	5.1	100.0
301-400만원	(257)	17.7	44.4	62.2	27.6	7.0	34.7	3.2	100.0
401만원이상	(156)	14.5	49.0	63.5	26.7	8.6	35.3	1.2	100.0
모름/무응답	(108)	14.8	33.9	48.7	35.0	8.2	43.2	8.1	100.0

8. 단체 기합

▣ 단체 기합에 대해 일반인의 30.3%, 전문가의 57.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72.3%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30.3%가 단체 기합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6.6%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단체 기합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별로 볼 때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35.7%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9-8〉 단체 기합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별로 심각하지 않다 (B)	심각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C)	매우 심각하다 (D)	심각하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13.4	53.3	66.6	23.5	6.7	30.3	3.1	100.0
성별									
남자	(626)	14.9	53.9	68.8	22.5	6.5	29.0	2.2	100.0
여자	(637)	11.9	52.6	64.5	24.5	7.0	31.5	4.0	100.0
연령									
15-19세	(103)	11.7	45.7	57.4	28.7	11.2	39.9	2.7	100.0
20대	(260)	13.0	45.9	58.9	29.9	10.5	40.4	0.8	100.0
30대	(290)	15.5	49.7	65.2	25.3	5.1	30.4	4.5	100.0
40대	(264)	12.1	59.2	71.3	21.1	5.7	26.8	1.9	100.0
50대이상	(346)	13.3	59.6	72.9	17.5	4.8	22.3	4.8	100.0
학력									
중학생	(32)	12.4	40.2	52.6	31.9	12.5	44.5	2.9	100.0
고등학생	(58)	12.8	42.6	55.4	29.9	12.9	42.8	1.8	100.0
대학생	(113)	10.4	46.0	56.3	33.7	9.1	42.8	0.9	100.0
중졸이하	(189)	11.9	60.3	72.3	16.9	4.9	21.8	5.9	100.0
고졸	(503)	14.2	56.7	70.9	20.6	5.5	26.1	2.9	100.0
대졸 이상	(367)	14.1	49.9	64.0	26.1	7.2	33.2	2.8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0.0	54.2	64.3	19.8	11.2	31.0	4.8	100.0
101-200만원	(272)	9.9	59.0	68.9	22.1	6.0	28.1	3.0	100.0
201-300만원	(388)	12.6	54.3	67.0	23.5	6.7	30.2	2.8	100.0
301-400만원	(257)	19.3	48.9	68.1	22.6	5.7	28.3	3.6	100.0
401만원이상	(156)	14.0	49.1	63.0	27.4	8.3	35.7	1.3	100.0
모름/무응답	(108)	12.5	50.7	63.2	26.3	5.9	32.2	4.6	100.0

9. 성별로 인한 차별

▣ 성별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23.6%, 전문가의 50.0%,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77.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23.6%만이 성별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1.0%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2명 정도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21.3%)보다는 여자(25.9%)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9-9〉 성별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별로 심각하지 않다 (B)	심각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C)	매우 심각하다 (D)	심각하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16.8	54.3	71.0	18.9	4.7	23.6	5.4	100.0
성별									
남자	(626)	18.0	55.2	73.2	17.5	3.8	21.3	5.5	100.0
여자	(637)	15.5	53.3	68.8	20.3	5.6	25.9	5.2	100.0
연령									
15-19세	(103)	17.3	53.9	71.1	17.6	7.2	24.8	4.0	100.0
20대	(260)	16.5	48.8	65.3	25.0	7.7	32.7	2.0	100.0
30대	(290)	13.9	54.0	67.9	21.9	4.5	26.4	5.7	100.0
40대	(264)	20.4	54.3	74.8	17.3	2.9	20.2	5.0	100.0
50대이상	(346)	16.4	58.6	75.0	13.5	3.3	16.7	8.2	100.0
학력									
중학생	(32)	15.6	52.5	68.1	20.9	8.1	29.0	2.9	100.0
고등학생	(58)	19.1	55.1	74.2	13.8	6.4	20.3	5.5	100.0
대학생	(113)	18.4	44.4	62.8	23.6	10.9	34.4	2.8	100.0
중졸이하	(189)	16.7	59.8	76.6	12.6	2.8	15.4	8.0	100.0
고졸	(503)	17.9	52.7	70.6	19.6	3.3	22.8	6.5	100.0
대졸 이상	(367)	14.4	56.5	70.9	20.5	5.3	25.7	3.3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1.2	44.3	55.5	26.1	7.5	33.6	10.9	100.0
101-200만원	(272)	11.7	56.9	68.7	23.1	2.9	26.1	5.3	100.0
201-300만원	(388)	15.0	56.2	71.2	17.6	4.7	22.3	6.5	100.0
301-400만원	(257)	24.3	54.8	79.1	15.1	3.5	18.6	2.3	100.0
401만원이상	(156)	19.2	52.6	71.8	18.3	7.2	25.5	2.7	100.0
모름/무응답	(108)	18.3	49.3	67.6	17.4	6.5	23.9	8.5	100.0

10.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

▣ 정규과목 이외의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에 대해 일반인의 23.5%, 전문가의 6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6.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23.5%만이 정규과목 이외의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7.9%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2명 정도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정규과목 이외의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23.6%)보다 고등학생(28.2)과 대학생(36.9%)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9-10〉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별로 심각하지 않다 (B)	심각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C)	매우 심각하다 (D)	심각하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18.2	49.6	67.9	19.2	4.2	23.5	8.7	100.0
성별									
남자	(626)	19.2	50.6	69.8	19.4	4.3	23.7	6.6	100.0
여자	(637)	17.3	48.7	66.0	19.0	4.2	23.3	10.8	100.0
연령									
15-19세	(103)	16.0	53.3	69.2	20.5	6.4	26.9	3.8	100.0
20대	(260)	17.2	47.4	64.6	26.7	6.3	33.0	2.4	100.0
30대	(290)	18.9	45.2	64.1	20.6	5.6	26.2	9.7	100.0
40대	(264)	17.6	50.4	68.0	20.7	3.2	23.9	8.1	100.0
50대이상	(346)	19.6	53.3	72.9	10.8	1.8	12.6	14.5	100.0
학력									
중학생	(32)	15.7	51.4	67.1	21.5	2.2	23.6	9.2	100.0
고등학생	(58)	16.8	53.2	70.0	18.1	10.1	28.2	1.7	100.0
대학생	(113)	13.7	45.7	59.4	27.7	9.2	36.9	3.7	100.0
중졸이하	(189)	18.0	54.5	72.4	11.4	0.5	12.0	15.6	100.0
고졸	(503)	19.9	51.6	71.5	15.7	3.5	19.2	9.3	100.0
대졸 이상	(367)	17.9	45.0	62.8	25.3	4.9	30.2	6.9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0.7	53.8	64.5	14.8	2.4	17.2	18.3	100.0
101-200만원	(272)	15.0	50.6	65.6	19.1	4.0	23.1	11.4	100.0
201-300만원	(388)	19.1	51.5	70.6	19.2	2.9	22.0	7.3	100.0
301-400만원	(257)	24.2	49.7	73.9	17.1	2.0	19.1	7.0	100.0
401만원이상	(156)	19.3	44.2	63.4	23.3	9.2	32.5	4.0	100.0
모름/무응답	(108)	13.4	44.9	58.2	22.2	9.3	31.5	10.3	100.0

11. 선생님에 의한 체벌

▣ 선생님에 의한 체벌에 대해 일반인의 20.2%, 전문가의 5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78.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20.2%만이 선생님에 의한 체벌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8.3%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2명 정도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선생님에 의한 체벌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17.1%)는 여자(23.3%)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46.0%)과 고등학생(31.1%)의 심각하다는 응답이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이 두드러진다.

〈표9-11〉 선생님에 의한 체벌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별로 심각하지 않다 (B)	심각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C)	매우 심각하다 (D)	심각하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8.8	69.5	78.3	18.2	2.1	20.2	1.5	100.0
성별									
남자	(626)	11.2	71.2	82.4	15.2	1.9	17.1	0.5	100.0
여자	(637)	6.5	67.8	74.3	21.1	2.2	23.3	2.4	100.0
연령									
15-19세	(103)	9.0	57.3	66.3	26.3	5.4	31.7	2.0	100.0
20대	(260)	5.8	64.0	69.8	27.3	2.7	29.9	0.3	100.0
30대	(290)	8.5	67.7	76.2	19.0	1.7	20.7	3.1	100.0
40대	(264)	9.1	74.3	83.5	13.1	2.0	15.1	1.4	100.0
50대이상	(346)	11.0	75.0	86.0	12.1	1.0	13.0	0.9	100.0
학력									
중학생	(32)	13.0	41.0	54.0	34.6	11.4	46.0	0.0	100.0
고등학생	(58)	7.1	58.2	65.3	26.1	5.0	31.1	3.5	100.0
대학생	(113)	5.5	66.3	71.9	25.8	1.7	27.6	0.6	100.0
중졸이하	(189)	9.0	74.9	83.9	12.3	1.8	14.0	2.1	100.0
고졸	(503)	9.2	70.8	80.1	17.4	1.5	18.9	1.0	100.0
대졸 이상	(367)	9.1	70.1	79.2	17.3	1.7	19.0	1.8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8.5	67.2	75.7	19.1	4.0	23.0	1.3	100.0
101-200만원	(272)	7.2	69.6	76.8	20.6	1.8	22.4	0.8	100.0
201-300만원	(388)	8.2	72.7	80.9	16.3	1.3	17.6	1.5	100.0
301-400만원	(257)	11.9	69.3	81.2	16.2	0.8	17.0	1.8	100.0
401만원이상	(156)	7.7	68.9	76.6	18.4	4.4	22.8	0.6	100.0
모름/무응답	(108)	9.8	60.7	70.5	22.5	3.5	25.9	3.5	100.0

12.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

▣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에 대해 일반인의 19.9%, 전문가의 51.1%, 인권·시민 단체 관계자의 80.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19.9%만이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9.6%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2명 정도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16.2%)보다는 고등학생(29.1%)과 대학생(28.7%)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9-12〉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별로 심각하지 않다 (B)	심각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C)	매우 심각하다 (D)	심각하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18.1	51.4	69.6	16.2	3.7	19.9	10.6	100.0
성별									
남자	(626)	18.7	51.9	70.6	17.7	3.7	21.4	7.9	100.0
여자	(637)	17.6	50.9	68.5	14.7	3.6	18.3	13.2	100.0
연령									
15-19세	(103)	15.1	56.0	71.1	15.7	7.3	22.9	6.0	100.0
20대	(260)	18.9	50.0	68.9	22.7	6.2	28.9	2.2	100.0
30대	(290)	19.3	47.2	66.6	20.4	2.4	22.8	10.7	100.0
40대	(264)	17.9	52.0	69.9	14.7	3.3	18.0	12.1	100.0
50대이상	(346)	17.7	54.2	71.9	9.1	2.1	11.1	17.0	100.0
학력									
중학생	(32)	18.5	59.3	77.8	8.2	7.9	16.2	6.0	100.0
고등학생	(58)	13.7	49.9	63.7	18.8	10.3	29.1	7.3	100.0
대학생	(113)	17.4	51.4	68.8	20.9	7.8	28.7	2.5	100.0
중졸이하	(189)	16.1	56.8	72.9	5.5	1.2	6.7	20.4	100.0
고졸	(503)	19.5	50.6	70.1	16.0	2.0	18.0	11.8	100.0
대졸 이상	(367)	18.2	49.3	67.5	20.7	4.6	25.3	7.2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4.5	45.8	60.3	14.8	5.9	20.7	19.0	100.0
101-200만원	(272)	13.7	54.6	68.3	14.5	3.5	18.0	13.7	100.0
201-300만원	(388)	17.7	52.7	70.4	16.3	2.9	19.2	10.4	100.0
301-400만원	(257)	23.4	50.9	74.3	15.1	2.3	17.4	8.3	100.0
401만원이상	(156)	19.9	53.2	73.1	17.7	6.0	23.6	3.3	100.0
모름/무응답	(108)	18.8	41.7	60.4	21.5	5.2	26.8	12.8	100.0

13.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

▣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일반인의 17.7%, 전문가의 56.7%, 인권·시민 단체 관계자의 81.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17.7%가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5.5%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2명 미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소수종교를 가진 응답자(37.9%)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9-13〉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별로 심각하지 않다 (B)	심각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C)	매우 심각하다 (D)	심각하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19.8	55.7	75.5	13.3	4.4	17.7	6.7	100.0
성별									
남자	(626)	19.5	53.0	72.5	16.5	4.8	21.4	6.2	100.0
여자	(637)	20.1	58.4	78.5	10.1	4.1	14.2	7.3	100.0
연령									
15-19세	(103)	24.7	56.0	80.7	11.1	4.6	15.7	3.6	100.0
20대	(260)	16.8	56.5	73.3	16.8	5.7	22.5	4.2	100.0
30대	(290)	17.2	53.0	70.1	16.3	3.4	19.7	10.2	100.0
40대	(264)	25.0	52.6	77.6	10.7	6.6	17.3	5.1	100.0
50대이상	(346)	18.8	59.8	78.6	10.9	2.6	13.5	7.9	100.0
학력									
중학생	(32)	24.9	50.7	75.6	18.7	2.8	21.5	2.9	100.0
고등학생	(58)	26.7	58.4	85.1	6.6	4.9	11.5	3.4	100.0
대학생	(113)	13.8	62.9	76.7	13.6	7.0	20.5	2.8	100.0
중졸이하	(189)	20.3	62.5	82.8	7.8	3.1	10.9	6.3	100.0
고졸	(503)	20.8	52.9	73.7	13.8	3.7	17.6	8.7	100.0
대졸 이상	(367)	18.4	54.0	72.4	15.9	5.4	21.3	6.3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6.3	50.8	67.2	16.0	6.1	22.1	10.7	100.0
101-200만원	(272)	15.0	59.6	74.6	15.1	3.4	18.6	6.8	100.0
201-300만원	(388)	20.0	55.2	75.2	12.9	4.6	17.4	7.4	100.0
301-400만원	(257)	26.4	54.9	81.3	9.4	3.5	12.9	5.8	100.0
401만원이상	(156)	18.4	58.4	76.8	13.1	7.0	20.1	3.1	100.0
모름/무응답	(108)	20.2	49.7	69.8	17.9	3.9	21.8	8.4	100.0
종교									
기독교	(327)	18.6	53.8	72.4	14.1	4.1	18.2	9.5	100.0
불교	(325)	22.1	54.5	76.6	12.9	3.7	16.7	6.7	100.0
가톨릭	(103)	23.8	53.4	77.2	13.7	4.0	17.7	5.0	100.0
유교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다른 종교	(13)	15.3	39.7	55.0	23.1	14.8	37.9	7.1	100.0
없다	(494)	18.4	58.5	77.0	12.7	5.0	17.7	5.3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14. 부모님에 의한 체벌

▣ 부모님에 의한 체벌에 대해 일반인의 12.9%, 전문가의 53.3%,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63.4%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 중 12.9%가 부모님에 의한 체벌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84.5%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에서 부모님에 의한 체벌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로는 남자(10.4%)보다 여자(15.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중학생(28.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9-14〉 부모님에 의한 체벌의 심각성(일반인)

(단위: %)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별로 심각하지 않다 (B)	심각하지 않다 (A+B)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C)	매우 심각하다 (D)	심각하다 (C+D)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263)	22.5	62.0	84.5	10.5	2.4	12.9	2.6	100.0
성별									
남자	(626)	25.3	61.9	87.2	8.2	2.2	10.4	2.4	100.0
여자	(637)	19.7	62.1	81.9	12.8	2.5	15.3	2.8	100.0
연령									
15-19세	(103)	23.7	59.6	83.3	7.8	5.3	13.1	3.6	100.0
20대	(260)	25.1	57.6	82.7	12.7	3.1	15.8	1.5	100.0
30대	(290)	19.9	62.9	82.8	10.3	2.4	12.7	4.5	100.0
40대	(264)	20.5	66.9	87.4	9.1	1.6	10.7	2.0	100.0
50대이상	(346)	23.9	61.6	85.6	10.9	1.5	12.4	2.0	100.0
학력									
중학생	(32)	9.7	58.9	68.7	16.6	11.6	28.2	3.2	100.0
고등학생	(58)	31.6	56.1	87.7	4.7	3.0	7.6	4.6	100.0
대학생	(113)	32.9	56.0	88.9	7.7	2.6	10.2	0.9	100.0
중졸이하	(189)	23.2	62.5	85.7	10.0	1.7	11.7	2.6	100.0
고졸	(503)	23.1	60.4	83.5	11.7	2.2	14.0	2.6	100.0
대졸 이상	(367)	17.8	67.1	84.9	10.3	2.0	12.3	2.8	100.0
소득									
100만원이하	(82)	15.6	54.3	69.9	20.4	4.9	25.3	4.8	100.0
101-200만원	(272)	21.9	63.5	85.4	12.0	1.8	13.9	0.7	100.0
201-300만원	(388)	23.7	61.3	84.9	9.6	2.7	12.2	2.8	100.0
301-400만원	(257)	25.8	60.0	85.8	10.0	1.1	11.1	3.2	100.0
401만원이상	(156)	19.2	70.2	89.4	7.3	2.7	10.0	0.6	100.0
모름/무응답	(108)	21.8	60.0	81.8	8.3	3.5	11.8	6.4	100.0

제2절 청소년 인권 사안별 경험 여부

1. 청소년 인권 사안별 경험 여부

■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41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권사안별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학교에서 선생님의 의한 차별’이 46.3%,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이 46.0%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차별(38.8%)’이 높게 나타남.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41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권사안별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의한 차별’이 46.3%,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이 46.0%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차별(38.8%)’이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 등은 15% 내외의 경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동료들에 의한 집단 따돌림’, ‘성별로 인한 차별’, ‘가정 환경으로 인한 차별’, ‘외모로 인한 차별’ 등은 10% 내외의 경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나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에 대한 경험 비율이 11.6%에 불과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4.4%)’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5.1%)’ 등은 경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표9-15〉 청소년 인권 사안별 경험 여부

(단위: %)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419명)
학교에서의 선생님에 의한 체벌	46.3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	46.0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체벌	38.8
학교에서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	16.7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16.6
정규교과목 이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	15.4
학생회 등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	14.8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	11.6
학교에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10.0
학교에서 가정 환경으로 인한 차별	9.8
학교에서 키나 몸무게, 얼굴생김새 등의 외모로 인한 차별	9.5
학교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5.1
학교에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	4.4

2005년 국민인권意識조사 정성보고서(Ⅲ)

2005. 6

국가인권위원회
(주)한국리서치

목 차

제1장 조사개요	1
제1절 조사 목적	1
제2절 조사의 기본방향	3
1. 주요 조사 내용	3
2. 조사체계	4
제3절 자료수집	5
1. 자료수집방법	5
2. 조사대상자	5
3. 조사흐름	5
제4절 표본특성표	6
1. 전문가 조사의 표본특성표	6
2.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의 표본특성표	7
제2장 조사결과 요약	8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8
제2절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처 방안	11
제3절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	15
제4절 사회권 분야에서 시급한 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처 방안	19
제5절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22
제6절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의 국가인권위원회 통합 방안	25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28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인식	30
1.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30
2.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및 효과	32
3.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36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점에 대한 인식	39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	39
2.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43
3.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48

제4장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처방안 ... 51

제1절 외국인 노동자 인권	54
1.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의 인권침해	54
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56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그 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58
4. 불법체류자 인권 보장이 필요한 이유	60
5. 기타	62
제2절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63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63
2.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65
제3절 빈곤층 인권	69
1. 빈민들의 인권 실태	69
2.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	70
제4절 장애인 인권	73
1.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73
2.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기타의견	76
제5절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생활인 인권	78
1. 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문제	78
2. 복지 수용 시설에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80
제6절 북한 인권	82
1. 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아 온 것에 대한 평가	82
2.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84
제7절 기타	86
1. 여성 인권	86
2. 구금시설과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87
3. 청소년과 아동의 인권	89
4. 군대에서의 인권침해	91
5. 국내 체류 조선족 동포	92
6. 학력·학벌 차별의 시정	93
7. 국가보안법 폐지	95
8. 그 밖의 소수의견	95
제8절 인권문제 전반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제언	98
1. 교육과 홍보	98
2. 실태조사	100
3. 전문성 확보	101
4. 국가인권위의 권한 확대 의견과 반대 의견	102
5. 국가인권위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제언과 반대의견	104

제5장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	106
제1절 정보인권	109
1. 정보화 시대와 정보인권 문제의 대두	109
2.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111
제2절 외국인 노동자 인권	115
1. 향후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이유	115
2.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방안	116
제3절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119
1. 더욱 문제가 심각해 질 가능성이 있는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119
2.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21
제4절 성적 소수자 인권	122
1. 성적 소수자 인권문제의 대두	122
2.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124
제5절 북한 인권	125
1. 탈북자 인권 문제의 대두	125
2.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개입	126
3. 통일 이후 이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마련	127
제6절 외국인 인권	128
1. 국내 체류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지적	128
2. 혼혈아동에 대한 관심과 교육	129
3. 국제결혼여성의 인권침해 구제	129
4. 재외동포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초 조사	130
제7절 노인 인권	131
1. 고령화 사회와 노인인권 문제의 대두	131
2. 노인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133
제8절 장애인 인권	134
1. 장애인 인권 문제의 본격적인 대두	134
2. 장애인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135
제9절 환경과 인권	136
1. 환경 문제의 대두	136
2.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137
제10절 과학기술과 인권	138
1.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권 문제의 대두	138
2. 과학기술 관련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139
제11절 기타	141
제6장 사회권 분야에서 시급한 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처 방안	144
제1절 빈곤층	146
1. 빈곤층의 문제와 사회적 안전망	146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48
제2절 외국인 노동자	151
1.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인권위원회의 역할	151
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152

제3절 비정규직 노동자	155
제4절 장애인	158
제5절 성적 소수자	160
제6절 아동과 청소년 문제	163
1.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이유	163
2.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문제	164
제7절 기타	166
1. 환자 관련 인권 문제	166
2. 노인 관련 인권 문제	167
3. 토지수용자 관련 인권 문제	168
제8절 사회권 전반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제언	170
1. 인권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 방향에 대한 제언	170
2. 인권위원회와 사회권	172

제7장 인권 ·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173

제1절 인권 ·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175
1.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관계	175
2. 중도적이며 객관적인 협력관계	176
3. 감시와 견제를 통한 긴장관계	178
제2절 인권 · 시민단체와의 구체적 협력 방안	180
1. 제도적 측면	180
2. 운용적 측면	184
3. 관계적 측면	183

제8장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의 국가인권위원회 통합방안 191

제1절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의 국가인권위원회 통합방안	193
1.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 통합에 대한 긍정적 견해	193
2.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 통합에 대한 부정적 견해	197
제2절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	202
1. 제도적 측면	202
2. 운용적 측면	206
2. 관계적 측면	212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 목적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민주적·반인권적 문화의 청산과 인간다운 삶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들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적, 일시적인 활동에 그침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인권상황 개선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에 대한 기초 자료가 필수요소이다.

우리 사회 인권상황의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 국민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의 인권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명확히 알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우선하는 선결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국민 및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를 기획하였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일반국민들의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한 일반적인 의식수준 및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파악
- 인권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권현안 및 인권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심층적으로 파악
-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및 인권문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집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 조사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수준을 파악하고, 인권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기초 자료로 활용
- 기존의 각종 실태조사와 실증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
- 우리나라 인권수준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인권관련 인식과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향상시킬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일반국민과 인권관련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인식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원년 자료로 활용

제2절 조사의 기본방향

1. 주요 조사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및 그 이유
 -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점 및 그 이유

-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점 대응 분야 및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인권분야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 향후 새롭게 대두될 인권문제 및 대응방안
 - 향후 새롭게 대두될 인권문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 사회권 분야의 과제 및 대응방안
 - 사회권 분야의 시급한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 간 협력의 대상 및 방법

- 개인정보보호업무와 차별시정업무의 인권위 통합 문제
 -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

2. 조사체계

〈표 1-1〉 조사 체계

조사 체계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대상	인권관련 연구자 및 활동가	전국 주요 인권·시민단체 상근 간부 및 대표
유효 응답자수	90명	50명
조사기간	2005. 2. 2 - 3. 11	2005. 2. 2 - 3. 11
조사방법	심층면접조사(Depth-Interview)	심층면접조사(Depth-Interview)
실사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제3절 자료수집

1. 자료수집방법

정성 조사의 경우, 조사원이 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를 대상으로 30분 - 1시간 정도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조사대상자

전문가 조사는 사전에 확보한 전문가 명단에 기재된 응답자 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는 해당 인권·시민단체의 상근하는 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3. 조사흐름

조사 과정은, 전문 조사원의 사전 연락 →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뷰 진행 → 인터뷰 내용 녹음테이프 수거 → 녹음폴이 전문가에 의한 녹음폴이 → 담당연구원에 의한 내용 점검 → 재조사 및 보완조사 실시 → 최종 자료검증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제4절 표본특성표

1. 전문가 조사의 표본특성표

〈표 1-2〉 전문가 조사 표본특성표

		응답자 수 (명)	구성비 (%)
전 체		90	100.0
성별	남자	79	87.8
	여자	11	12.2
연령	30대	11	12.2
	40대	56	62.2
	50대이상	23	25.6
직업	대학교수	54	60.0
	연구소 연구원	8	8.9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9	10.0
	변호사	10	11.1
	공무원	3	3.3
	의사	3	3.3
	기타	3	3.3
	전문분야	시민적/정치적 권리	3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26	28.9
차별 및 사회적 소수자		26	28.9
기타		3	3.3
권역	서울	60	66.7
	인천/경기	4	4.4
	대전/충청	8	8.9
	광주/전라	6	6.7
	대구/경북	6	6.7
	부산/울산/경남	6	6.7

2.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의 표본특성표

〈표 1-3〉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조사 표본특성표

		응답자 수 (명)	구성비 (%)
전 체		50	100.0
성별	남자	35	70.0
	여자	15	30.0
연령	20대	2	4.0
	30대	31	62.0
	40대	13	26.0
	50대이상	4	8.0
권역	서울	36	72.0
	인천/경기	6	12.0
	대전/충청	3	6.0
	광주/전라	2	4.0
	대구/경북	3	6.0
	부산/울산/경남	0	0.0
회원수	100명이하	6	12.0
	101-300명	10	20.0
	301-1000명	8	16.0
	1001-10000명	8	16.0
	10000명이상	3	6.0
	모름/무응답	0	0.0
상근자수		6	
	2명이하	18	36.0
	3-5명	10	20.0
	6-10명	8	16.0
	11-20명	8	16.0
	20명이상	11	22.0
	모름/무응답	1	2.0

제2장 조사결과 요약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인식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온 역할과 활동과정에서 성과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응답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차원에서 세 가지 의의를 지적하고,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및 효과 차원에서 긍정적 성과를 지적하였으며, 셋째,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해온 정책 사안들에 대한 점들을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성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의를 지적하였다. 29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적 차원의 독립영역으로서 인권 영역이 확보되고 자리매김한 점을 지적하였고, 두 번째로 23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자체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8명의 전문가가, 인권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 요청기구가 생성된 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이자 대한민국 인권사의 중요한 전환기적 특징으로 인식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및 효과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지적하였다. 첫 번째로 56명의 전문가는 인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지적했고, 두 번째로 26명의 전문가들이 이슈나 사안들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세 번째로 12명의 전문가들이 실제 인권상황 개선 및 법령제도 개선을 지적했다. 네 번째로는 6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진보적 관점의 접근을 지적했으며 다섯 번째로 5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여섯 번째로 3명의 전문가들이 국민들 사인간의 중재 효과를 언급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사안과 관련하여 첫째, 51명의 전문가들이 △국가보안법 △구금시설 인권문제 △네이스 문제 등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성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18명의 전문가들이 △장애인 차별 △성차별 △고용관련 차별 등의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조치를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 14명의 전문가들이 △성적 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사안 등의 사회적 소수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처를 언급하였고, 마지막으로 10명의 전문가들이 △본인의 직접적인 구제 경험들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점에 대한 인식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온 역할과 활동과정에서 개선점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 차원,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차원,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차원에서 개선점을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개선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차원의 개선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34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의 한계를, 둘째, 10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제도적 미비를 지적했다. 셋째, 8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구성의 문제를 언급했고, 넷째, 6명의 전문가들이 전문성 부족을, 다섯째, 4명의 전문가들이 행정 관료화 경향을, 여섯째, 3명의 전문가들이 지방사무소 설치 문제를 개선점으로 언급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27명의 전문가들이 진정처리기간의 지연 및 소극적 대응을, 둘째, 16명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추가대응 및 후속조치의 부재를, 셋째, 14명의 전문가들이 정책 및 법령개선 미흡을 지적하였다. 넷째로는, 14명의 전문가들이 인권단체 및 인권사안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부족을, 다섯째, 13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민 홍보 부족을, 여섯째, 10명의 전문가들이 전시행정, 심도 있는 사안접근 부족을 언급하였다. 일곱째, 8명의 전문가들이 인권문제 사전 대처를 위한 적극성 부족을, 여덟째, 6명의 전문가들이 정치적 중립화 실패를, 아홉째, 3명의 전문가들이 진정사안 결과 공개 방식 문제 등을 개선점으로 언급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점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39명의 전문가들이 편향적인 정책설정으로 인한 다양한 인권 사안 발굴 부족, 둘째, 11명의 전문가들이 과도한 진보성을, 셋째, 7명의 전문가들이 인권감수성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넷째, 5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침해 및 차별 등 인권 사각지대의 현존, 다섯째, 5명의 전문가들이 인권교육 등 인권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부족을 언급하였다.

제2절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처 방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침해나 차별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30명)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23명) △빈곤층 인권(16명) △장애인 인권(16명)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생활인 인권(12명) △북한 인권(11명)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 외에도 전문가들은 △여성 인권 △구금시설과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청소년 인권 △군대 내에서의 인권침해 △국내 체류 조선족 동포들의 인권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한편 △환자 정보 보호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신원확인서에 대한 문제제기 등과 같은, 특이한 소수 의견이 있었다.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내용 설명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국인 노동자 인권

전문가들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항으로,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인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 △법무부나 출입국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받는 인권침해 △체포된 후 본국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수용되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취할 대응방안으로는, △산업연수제 폐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여론 환기 △아동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 의식 개선 교육 실시 등을 제언하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점 △국내인권문제가 곧 세계인권문제가 되는 현실 등을 지적하며,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생존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점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것을 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실태조사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시정 요구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 빈곤층 인권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빈곤층에 속한다고 지목한 사람들은 △노숙자,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결식아동, △신용불량자, △실업자, △극빈자, △수도세나 전기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등이었다.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사회 복지의 확충,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빈곤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할 것을 제언하였다.

○ 장애인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방안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과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가 국가경쟁력 강화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생활인 인권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중 특히 △미신고 시설 △정신요양원 △소년수 생활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였다. 국가전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부패 감시 등을 제언하였다.

○ 북한 인권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한 전문가들의 응답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고, 둘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발굴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족 화해와 협력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라는 것이다.

○ 기타

- 여성 인권

국제결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불법적 결혼 알선 행태의 차단 △외국인 신부와 그의 남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외국인 여성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

- 구금시설과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 △경찰의 수사기록 공개 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 청소년 인권

청소년 인권 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교사에 의한 인권 침해 △왕따 문제 △아이들의 폭력 문제 등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서 겪는 인권 침해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권 상담센터를 학교 등에 설치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고,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해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군대에서의 인권 침해

△군대 내 인권침해 사례들의 수집 △국방부의 군대 내 인권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군 의문사 사건의 예방과 사후조사를 위한 조치 등을 제언하였다.

- 국내 체류 조선족 동포의 인권

△재외동포법 개정에 부응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 △조선족 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 △순환제식 취업제도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 학력·학벌 차별의 시정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력·학벌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한 전문가는 학벌(학력)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다른 전문가는 법률적인 대응보다는 인권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대비책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진정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정책적 권고 등의 지속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은 인권문제 전반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 강화 △실태조사 내실화 △전문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인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나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위의 권한과 조직의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일부 존재했다.

제3절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정보 인권(28명) △외국인 노동자 인권(25명)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20명) △성적 소수자의 인권(15명) △북한 인권(13명) △외국인 인권(13명) △노인 인권(11명) △장애인 인권(7명) △환경 인권(6명) △과학기술과 인권(5명) 등을 꼽았다.

그 밖의 소수 의견으로 △개인 인권 간의 충돌 △국제인권 △기호의 권리 △재난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역차별 △일상생활 속의 차별 △외모차별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내용 설명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 인권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보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보격차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한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률 개정 및 관리 △개인정보 관련 정책 제시 △적극적인 실태 조사 △정보인권의 개념 확립 △사전예방시스템 도입 △정보인권 보호 프로세스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3D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에 따른 특정 부문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 △외국인인력관리제도의 미비로 인한 불법체류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미래에도 계속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응 방안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편협한 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와 관계되는 사회보장제도 절차 개선 △외국인력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과 계획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재편, 경쟁의 심화와 같은 경제적·사회적 변화 때문에,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빈곤층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인권 감수성의 견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권고 △실태파악 △복지제도 강화 등을 제시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차별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한 전문가는 구체적인 문제 사례들을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빈곤층의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성적 소수자의 인권

성적 소수자 인권문제가 대두되는 방식으로 전문가들은 △다양한 차별 영역과의 맞물림으로 인한 성적 소수자 문제의 확대 △성적 소수자 개념의 분화 △청소년 성적 소수자 문제를 언급했다.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방안으로는 △제도개선과 의식 개혁을 지적했다.

○ 북한 관련 인권

북한과 관련한 인권 문제는 첫째, 탈북자의 인권 문제 해결, 둘째,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루는 것에 대한 제언, 셋째, 통일 이후 이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탈북자와 관련해서, △탈북자들을 위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전문가가 있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다루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 △'내재적 접근법' 등을 활용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이북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준비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외국인 인권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조선족 동포 문제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동포 문제, 혼혈아동이나 국제결혼여성 문제 등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향후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로 언급하였다. 구체적인 제언 내용은, △국내 체류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지적 △혼혈아동에 대한 관심과 교육 △국제결혼여성의 인권침해 구제 △재외동포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초 조사 등이다.

○ 노인 인권

노인 인권 문제는, 구체적으로 △빈곤 문제와 일상적인 인권침해 △노동시장에서의 퇴출과 관련한 차별 △노인복지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일상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사전 예방 조치 등이 지적되었다.

○ 장애인 인권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존재하는 장애인들이 사회가 변화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등 장애인 문제가 보다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 교육권 확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기반을 둔 장애인 차별 권리구제 업무 준비를 지적했다.

○ 환경 인권

전문가들은 환경문제가 인권 문제에 속하는 이유로, △환경오염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인간의 권리와 관계가 있다는 점, △사람의 권리를 생물의 권리까지 확장시켜야 된다는 점을 들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환경권 개념의 연구 및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상위법 체계 개정 노력 △환경 분쟁기구와의 교류와 정보 교환 △환경문제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것 등을 제언하였다.

○ 과학기술과 인권

구체적인 과학기술 관련 인권 문제로 △유전공학과 복제기술과 관련된 생명윤리, 인권침해 논란 △생체인식 기술 발달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관련 사안들이 대두 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한 전문가는 현재 배아 실험과 인공수정에 대한 규제가 매우 미비하며 이에 따라 거의 '생체실험' 수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같은 생명윤리 논란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관련 법률 정비 △장기적인 인권 계획 수립 등을 제언하였다.

제4절 사회권 분야에서 시급한 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처 방안

사회권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이 △빈곤층 문제(22명) △외국인 노동자 문제(16명)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14명) △장애인 문제(14명) △성적소수자 문제(9명) △아동과 청소년 문제(8명)를 꼽았다. 그 외에도 전문가들은 △환자와 관련한 인권 문제 △노인과 관련한 인권 문제 △토지수용자와 관련한 인권 문제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언급하였다.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내용 설명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빈곤층 문제

전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최저생계비 인상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한편 빈곤층에 이미 떨어진 사람과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각각 서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인권의 관점에서 관련 부처의 업무에 대해 견제할 것 △빈곤층에 대한 실태 파악 △선진국 복지제도에 대한 검토 △존재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 외국인 노동자 문제

△산업연수제의 폐지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권 보장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향유권 배려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차별적 시선 교정 △불법체류자 자녀의 인권 보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에 대하여 홍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임금차별 △고용불안 △노동3권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체적으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확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고용 기업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발언과 검토 의견 제시 등을 제언하였다.

○ 장애인 문제

장애인 인권 문제의 대응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사적 부문에도 적극 개입할 것 △장애인들의 취업 문제에 집중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정부 부처에 장애인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 등을 제언하였다.

○ 성적 소수자 문제

대응방안으로, △학교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 관련 교육 실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범죄나 차별을 막기 위한 법안 마련 △동성애자를 배려한 호적제도 마련 △성전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정신과 진단과 보험처리 실시 등을 제언하였다.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문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이유로,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인권 보호가 갖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 △아동의 인권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아동과 청소년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인권 침해 △학교 생활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 등을 지적하였으나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 기타

- 환자 인권 문제

△한센병이나 에이즈 질환자에 대한 편견 교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빈곤층의 의료권 보장에 대하여는, 상이한 의견들이 있었다.

- 노인 인권 문제

△채용과 해고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을 해소할 것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노인들에게 문화생활을 제공해 줄 것 등을 제언하였다.

- 토지수용자 인권 문제

생활 근거지와 공동체를 잃게 되는 토지 수용자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전문가들은 사회권 문제 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입법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인권침해와 차별의 기준 제시 및 차별 기준 자료집 배포 △다수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인권·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사전 예방적 활동과 대안 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사회권 분야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 전문가가 있었다. 반면에 다른 전문가는 사회권 중 생활권 보호 문제가 재정(財政)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5절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 정립을 논의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중도적이며 객관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가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한 긴장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세 가지 관점의 이유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지적하였다. 첫째, 23명의 전문가들이 현실과 근접한 인권·시민단체의 인권감수성을 활용하고 현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13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시민단체의 운동성과 활동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 중도적이며 객관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권·시민단체와 중도적이며 객관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였다. 첫째, 24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의 이념적 지형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8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의 규모와 성격이 지나치게 차별적이라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차별성을 감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협력 지원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인권·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은 감시와 견제를 통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10명의 전문가가 언급한 그 이유는 인권·

시민단체가 이익단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다. 그들은 인권·시민단체와의 무분별한 협력 관계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대안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둘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용적 측면에서 협력 방안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는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협력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세 가지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의 협력방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마련할 수 있는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방안으로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사업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고 공개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것을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4명의 전문가들이 지역사무소 설치 등을 논의했고, 기타의견으로는 △인권 상담사 인증 체제 도입 △인권·시민단체 전담 인력 확충 △사안별 태스크 포스 운영 △인권·시민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참여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화 등을 언급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의 협력방안으로 운용적 측면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총 31명의 전문가들이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의 공동 사업 진행을 제언했고, 두 번째로 24명의 전문가들이 정보공유 및 정책 피드백을 위한 일상적 의사소통 채널 확보를 제언했다. 다음으로는 21명의 전문가들이 정기적인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개최를, 8명의 전문가들이 인권 교육 및 캠페인 공동개최를, 6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또 다른 6명의 전문가가 법제 연구 등을 통한 정책 대안 개발 지원을 제언했다. 기타의견으로 인권·시민단체를 통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도 등이 있었다.

-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은 다음과 같았다. 23명의 전문가는 인권·시민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했고, 둘째로 15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와의 선별적 협력을, 셋째로 9명의 전문가가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했다. 기타의견으로는 △국가와 인권·시민단체 연결자 역할 담당 등의 의견이 있었다.

제6절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의 국가인권위원회 통합 방안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차별시정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각의 업무별로 통합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였다.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차별시정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그 사유, 부정적인 견해와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 통합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두 업무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통합되어야 하는 공통적인 이유로 첫째, 14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적 차원의 접근 필요성을 꼽았고, 둘째, 6명의 전문가들이 업무 일원화를 통한 사안 효율성 증대를, 셋째, 6명의 전문가들이 행정비용의 간소화를, 넷째, 2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의식 환기 및 홍보효과를, 다섯째, 1명의 전문가가 접근거리의 단축을 꼽았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업무만 통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는 4명의 전문가들이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 침해에 대한 감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반면, 차별시정업무만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는 25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차별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 통합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두 업무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적인 이유로 첫째, 32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둘째, 21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및 업무 처리 역량 부족을, 셋째, 13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비대화를 지적하였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9명의 전문가들이 관련 부처의 축적된 노하우 손실 및 기술 인프라 부족을, 둘째, 5명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보호업무 성격과 국가인권위원회 성격의 불일치를, 셋째, 2명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 공존이 있음을 말하였다.

반면, 차별시정업무 통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는 첫째, 5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분야 전문성 부족을, 둘째, 한 전문가가 차별시정업무 독점화로 인한 견제와 균형관계 소멸을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할 것을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의 기능과 역할, 둘째, 운용적 측면의 기능과 역할, 셋째, 관계적 측면의 기능과 역할이 그것이다.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각 측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도적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기구와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첫째, 33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의 확대를, 둘째, 31명의 전문가들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확충을, 셋째, 18명의 전문가들이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기구화를, 넷째, 12명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률 개정 및 차별시정정책의 제도화를, 다섯째, 11명의 전문가들이 통합을 위한 구체적 제도 및 기준 마련을 언급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지방사무소 설치를 제안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것을 제안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로 운용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15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 및 권리구제를 지적했고, 둘째, 12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사례조사를, 셋째, 12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유형정리 및 개선책 제시를, 넷째, 6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보호 및 차별 예방 교육을, 다섯째, 5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유출방지 업무를, 여섯째, 3명의 전문가가 차별시정업무의 범위 확대를, 일곱째, 3명의 전문가가 발 빠른 대응, 개방적 자세, 홍보강화를 언급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개별사건 매몰이 아닌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 지향 △사인(私人)간의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관한 공정한 판단기준 견지 △침해사례 구제만으로 제한된 소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관계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개인정보 보호기구와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7명의 전문가가 국가기관에 대한 내부조정자 및 감시자 역

할을 언급했고, 둘째, 5명의 전문가가 관련부처와의 협의 조정의 역할을 지적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인권 총괄기구로서의 기관업무 통합 △인권·시민단체와 국가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지적했다.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 결과 요약 >

-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온 역할과 활동과정에서 성과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나
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성과를 지적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의의를 지적하고, 둘째, 국가인권
위원회의 운영 및 효과에 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였으며, 셋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해온 정책 사안들에 대한 점들을 성과로 지적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성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의를 지
적하였다. 29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적 차원의 독립영역으로서 인권 영역이 확보되고
자리매김한 점을 지적하였고, 두 번째로 23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자체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지적하였으며, 그다음으로 18명의 전문가가, 인권문제
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 요청기구가 생성된 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이자 대한민
국 인권사의 중요한 전환기적 특징으로 인식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및 효과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지적하
였다. 첫 번째로 56명의 전문가는 인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성과로 지적했고,
두 번째로 26명의 전문가들이 이슈나 사안들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세 번째로
12명의 전문가들이 실제 인권상황 개선 및 법령제도 개선을 성과로 지적했다. 네
번째로는 6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진보적 관점의 접근을 지
적했으며 다섯 번째로 5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여
섯 번째로 3명의 전문가들이 국민들 사인 간의 중재 효과를 성과로 언급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사안과 관련하여 첫째, 51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국가보안법, 구금시설 인권문제, 네이스 문제 등을 잘한 점으로 지적하였고, 그 다
음으로 18명의 전문가들이 차별관련 사안으로 장애인 차별, 성차별, 고용관련 차별
등에 대한 권고 조치를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 14명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소수자
관련 사안으로 성적 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사안 등에 대한 대처를 언급하였고, 마
지막으로 10명의 전문가들이 직접 구체 경험들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긍정
적으로 인식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온 역할과 활동과정에서 개선점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 차원,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차원,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차원에서 개선점을 지적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34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의 한계를, 둘째, 10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제도적 차원 미비를 지적했다. 셋째, 8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구성의 문제를 언급했고, 넷째, 6명의 전문가들이 전문성 부족을, 다섯째, 4명의 전문가들이 행정 관료화 경향을, 여섯째, 3명의 전문가들이 지방사무소 설치 문제를 개선점으로 언급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27명의 전문가들이 진정처리기간의 지연 및 소극적 대응을, 둘째, 16명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추가대응 및 후속조치의 부재를, 셋째, 14명의 전문가들이 정책 및 법령 개선 미흡을 개선점으로 지적하였다. 넷째로는, 14명의 전문가들이 인권단체 및 인권사안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부족을, 다섯째, 13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민 홍보 부족을, 여섯째, 10명의 전문가들이 전시행정, 심도 있는 사안접근 부족을 언급하였다. 일곱째, 8명의 전문가들이 인권 문제 사전 대처를 위한 적극성 부족을, 여덟째, 6명의 전문가들이 정치적 중립화 실패를, 아홉째, 3명의 전문가들이 진정사안 결과 공개 방식 문제 등을 개선점으로 언급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점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39명의 전문가들이 편향적인 정책설정으로 인한 다양한 인권 사안 발굴 부족, 둘째, 11명의 전문가들이 과도한 진보성을, 셋째, 7명의 전문가들이 인권감수성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넷째, 5명의 전문가들이 인권 사각지대의 현존, 다섯째, 5명의 전문가들이 인권교육 등 인권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 부족 등을 개선점으로 언급하였다.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인식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온 역할과 활동과정에서 성과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성과를 지적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의의를 지적하였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및 효과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를 언급하였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해온 정책 사안들에 대한 점들을 성과로 지적하였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의를 지적하였다. 첫째, 29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적 차원의 독립영역으로서 인권 영역이 확보되고 자리매김한 점을 지적하였고, 둘째, 23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자체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지적하였으며, 셋째, 18명의 전문가들이 인권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 요청기구가 생성된 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이자 인권사의 중요한 전환기적 특징으로 인식하였다.

1) 국가적 차원의 독립영역으로서 인권 영역 확보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29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적 차원의 인권기구 수립을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관심을 가지게 된 점을 주요한 의의로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1기 국가인권위원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국민들 사이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파악해야 될 적극적 업무를 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그 와중에서 나름대로 국민들 사이에 예외적인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고...” (전문가 10, 법학 교수)

“특히 이제 정부라는 인권 관련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족했는데 인권위원회가 국가 기구로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서 국민들이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었고 실질적으로 연구나 정책 그리고 인제 각종 권고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권 정책 내지 보장에 어떤 출발점을 확고하게 했다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잘한 거 같아요.” (전문가 73, 교육 부문 연구원)

2)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자체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

또한 23명의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자체가 인권의식의 성장 및 한국 인권상황의 개선과 관련하여 인권사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고 보고 그 긍정성을 인식했다.

“일단은 1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선 설치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인권이라는 부분에서 우스갯소리로 인권위원회를 만든다면 다른 정부 기관은 반인권 기관이냐 라는 반발도 있었는데, 인권위원회는 우리의 인권 의식이 굉장히 신장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치 자체에 의미를 두고...” (전문가 32, 노동 부문 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공식적인 조직으로 발전이 돼서 국가가 이러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결에 나섰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상징적 의미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21, 경찰행정학 교수)

3) 인권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 요청기구의 생성

18명의 전문가들은 침해나 차별을 당한 국민들이 그동안 사법기관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긴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접적으로 진정요청을 할 수 있는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가 구체적인 사안들을 여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쉽게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인권 보호의 통로로서 역할한 점 역시 높이 인식했다.

“우리가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침해당한 구제를 위해서 거칠 수 있는 수단, 사법적 권리 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거치는 절차상, 시간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요구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인해서 인권 보호 기관이 직접 조사를 한다던지 그런 개입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인권을 구제하는 그런 것이 가능해 졌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87, 헌법 재판 부문 연구원)

“제가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으로, 시민으로 생각할 때 예전에는 인권의 침해를 당했다거나 그럴 때 고소나 고발이나 법적인 절차,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기 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을 때 인권위원회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언론에 여론화도 시키고 그런 작업들을 언론 보도를 봤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게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인권·시민단체 4, 노동 부문)

2.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및 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및 효과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지적하였다. 가장 많은 56명의 전문가가 지적한 점은 인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이다. 그 다음으로 26명의 전문가가 이슈나 사안들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셋째, 12명의 전문가가 실제 인권상황 개선 및 법령제도 개선을, 넷째, 6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진보적 관점의 접근을, 다섯째, 5명의 전문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여섯째, 3명의 전문가가 국민들 사인 간의 중재 효과를 성과로 언급하였다.

1) 인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56명의 전문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및 효과 차원에서 성과로 지적한 점은 인권에 대한 국민의식이 제고되고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일상사에 확장되기 시작한 점이다.

“전반적으로 인권위원회 1기 활동을 살펴봤을 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됐던 인권의 개념과 그 개념의 범주와 폭에 대해서 확장을 많이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이라는 부분들을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이해했었는데 우리 실생활 속에서의 인권문제 뿐만이 아니고 잘 모르고 있던 범주에까지 인권이라는 개념을 많이 확장시켰다고 생각하고요.” (인권·시민단체 50, 생태환경 부문)

“그런 점에서 인권위원회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의식개혁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왔고, 그런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인권의 중요성 문제를 환기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 86, 지역연구센터 교수)

2) 이슈나 사안들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

두 번째로 26명의 전문가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및 효과 차원에서 성과로 지적된 점은 이슈나 사안들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는 점이다. 출범하고 조직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왔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절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점에 대한 인식에서 소극적이었다고 지적되는 등의 반대의 인식도 받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역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수행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많은 부분에서 묻혀 있던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발굴되고 그래서 시비가 가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권 침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억울함,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은 큰 성과로 보여지구요.” (전문가 7, 행정학 교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에는 어느 선까지 건드리고,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심층적인 부분에서 많이, 굉장히 이슈화시키고, 국가보안법이나 병역 거부 같은 것에 사람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인권·시민단체 3, 민족/평화/통일 부문)

3) 실제 인권상황 개선 및 법령제도 개선

다음으로는 12명의 전문가가 실제 인권상황 개선이 되고 법령제도가 개선이 되는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더 좋아졌다는 하였다.

“우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나 과거에 국가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됐던 사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시정공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인권·시민단체 19, 시민감시 부문)

“그 동안 다른 어떤 한 분야에서 해 왔던 인권 신장이나 인권 보호에 대한 노력들을 국가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 16, 의사)

“법령 및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사업이 있었어요. 국가 보안법 폐지 권고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 표명, 테러 방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 표명 등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인권 측면에서의 대응이 인권에 대한 이해가 미친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 사안의 해결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19, 종교인)

4)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진보적 관점의 접근

또한 6명의 전문가에 의해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 진보적 관점의 접근을 견지한 점들 역시 성과로 지적되었다.

“각종 실태 조사 및 연구 사업, 기타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인권 단체, 또는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사업이 개별 인권 단체들의 자생력을 도와주기도 하고, 정부 내 어떤 기관보다 현장 파악 및 협력이 절실한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아주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봅니다.”(전문가 19, 종교인)

“인권위에서 장애 관련이나 인권 문제 관련 결과를 발표할 때 기존 인권 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관련 쪽 입장과 다른 입장들을 많이 발표하는데 인권위에서는 평가의 기준이나 방향 자체가 관련단체들도 원하는 상당히 일치하는 발표들을 해줬었기 때문에.” (인권·시민단체 47, 장애인 부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될 때 보면 독립적인 국가 위원회로서 구성원들이 GO 사람들, NGO 사람이 같이 합해져서 일을 한다는 점은 처음 시작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기구가 갖고 있는 좋은 점, NGO가 갖고 있는 자유롭고 다면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국가 인권 위원회의 개념이나 활동의 영역을 결정하는데 밑바탕이 되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76, 여성 부문 연구원)

5)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적극적 홍보

5명의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를 알리고 홍보한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냈다는 것.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권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잘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시민단체 49, 시민감시 부문)

6) 국민들 사인 간의 중재 효과

마지막으로 3명의 전문가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사안만이 아니라 국민들 사인간의 중재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점을 성과로 언급하였다.

“특히 인권위원회 법에 보면 통상 인권 침해 문제가 전통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침해 되는 것만 관심이 되고, 개인간의, 사인과 사인 간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은 양쪽 당사자 모두가 기본권의, 인권의 주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는 개입 가능성을 열어 놨거든요.” (전문가 87, 헌법 재판 부문 연구원)

3.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사안과 관련하여 첫째, 51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국가보안법, 구금시설 인권문제, 네이스 문제 관련 활동을 성과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둘째, 18명의 전문가들이 차별관련 사안으로 장애인 차별, 성차별, 고용관련 차별 등에 대한 권고 조치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셋째, 14명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소수자 관련 사안으로 성적 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사안 등에 대한 대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마지막으로 10명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직접 구제 신청 경험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1) 인권침해 사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사안 가운데 51명의 전문가들이 성과로 지적한 것은 국가보안법 문제, 구금시설 인권문제, 네이스 정보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킨 점이다.

“잘 한 점은 국가 보안법 관련해서 권고안 낸 거. 국가 보안법 완전 폐지 권고안 낸 부분이 우리 사회 분단에 의한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서 자리 매김할 정도의 발언을 했다는 측면에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 35, 변호사)

“아무래도 교도소, 구금시설 인권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사각지대인 그곳에 인권 개념을 깨우쳐 준거, 그것이 가장 잘 한 점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전문가 6, 법학 교수)

2) 차별관련 사안

그 다음으로는 18명의 전문가들이 차별관련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았다.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 차별, 성차별, 고용관련 차별 등에 대한 권고 조치 등이 있다.

“근로 조건 관련해서 채용의 문제, 장애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워낙 전문분야다, 그 업체의 재량권을 많이 보장해야 된다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과는 달리 그런 측면을 강조하다보면 사실 인권위원회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좁은데 그런 것들을 과감히 탈피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전문가 34, 변호사)

“차별과 관련된 문제는 장애인의 문제나 여성과 학력의 문제라던가, 연령의 문제는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걸 확산시켜서...” (인권·시민단체 46, 여성 부문)

3) 사회적 소수자 관련 사안

14명의 전문가들은 사회적 소수자 관련 정책 사안으로 성적 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관련 문제들을 제기한 점을 성과로 지적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산업 연수생에 대한 차별, 크레파스나 물감을 살색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색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을 시정 권고를 내린 일들...” (전문가 55, 종교인)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보호법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 하는 거나 사전에 있어서의 동등의 개념 용어 정리를 조정하면서 없애 지기도 했던 것들, 그리고 헌혈하는 경우에 성 접촉 여부를 동성애와 이성애를 구분해서 다르게 묶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 51, 여성 부문 연구원)

4) 직접 구제 경험

마지막으로 10명의 전문가들은 직접적으로 진정 구제 경험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조치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1기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진정을 받고 권고사안을 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동성애자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법상에서 동성애자 조항에 대한 삭제 권고를 냈잖아요. 삭제가 됐고, 그런 점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인 것 같고, 동성애자 할 때 있어서 헌법에 대한 부분도 삭제하라고 권고했었는데 그 두 부분의 활동이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이었고...” (인권·시민단체 43, 성적 소수자 부문)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점에 대한 인식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온 역할과 활동과정에서 개선점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 차원,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차원,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차원에서 개선점을 지적하였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34명의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의 한계를, 둘째, 10명의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제도적 차원의 미비를, 셋째, 8명의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구성의 문제를, 넷째, 6명의 전문가들은 전문성 부족을, 다섯째, 4명의 전문가들은 행정 관료화 경향, 여섯째, 3명의 전문가들은 지방사무소 설치 문제 등을 개선점으로 언급하였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의 한계

첫째, 가장 많은 34명의 전문가들은 지난 1기 활동의 개선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와 같은 한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및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조사권만 있고 수사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할 때 가령 경찰과 같이 강제로 탐문수색을 하거나 하는 권한이 많이 없어서 조사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업무나 시정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권한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아

직은 충분하게 있지 않아서 그런 데에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권고라는 것도 어차피 권고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지 인권시정 권고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경찰이 어떤 인권문제를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시민단체 2, 인권 부문)

2)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제도적 차원의 미비

둘째, 10명의 전문가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제도적 차원의 미비한 점이 지적되었다. 위원회 구성원 간의 내부적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무는 업무처리의 미흡함으로 드러났다고 인식되었다.

“제가 알기로는 인권위원회가 그 인권위원회 구성하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만두고 여러 가지 좀 내부적인 조율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출범을 하는 과정에서 인적 구성원들의 안정감을 받지 못했다는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국가기구라는 어떤 틀에 따른 제약이 있었겠지만...” (인권·시민단체 40, 지역 부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국가 기구에 들어와서 실무적으로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기는 쉽지 않겠죠. 트레이닝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무원 출신도 각 부처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온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별로 조직 내부가 썩 잘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전문가 12, 사무관)

3)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구성의 문제

셋째, 8명의 전문가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구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위원들의 잦은 교체 △위원 위촉과정에서의 비공개 문제 △정치적 인사추천을 통한 독립성 훼손 △구성인력의 특정 직종(법조인력) 편중 등을 문제점으로 보았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자체도 제가 듣기로는 정당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에 많이 좌우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구성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기능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고 들었어요.” (인권·시민단체 2, 인권 부문)

“위원들이 너무 자주 교체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잦은 교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된 인권위원회 운영 전략 수립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을 텐데 그러지 못 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각계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는 것, 개별 위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추천되고, 내정되는 과정이 철저히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운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인 인사를 추천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많이 훼손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직업에 치중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직업군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업 성격이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으로서 보다는 인권 침해 사건을 심판하는 기구 성격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인권사안을) 법해석의 문제로만 협소화 했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19, 종교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자체는 인권 전문가들이 더 많아야 하는데, 전에 제도권 내에 있던 사람들이나, 법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권적 관점에서 내려야 할 판단하고, 적법이나 합법이나 그런 법률가적 관점에서 내리는 판단은 꼭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려면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가들, 또 보통 사람들보다는 인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9, 법학 교수)

4) 전문성 부족

넷째, 6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개선점으로 언급했다. 전문성 부족은 사안처리 능력의 부재로 이어져 결국은 조사지연, 제한적 인권문제 처리 등 전반적인 인권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에 하나의 케이스를 갖고 그 케이스가 본질적으로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에 접근을 해서 개선을 한 점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는지 부족들이 왜 생겼느냐를 고민

하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습 건이 진정 들어와야지만 비로소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케이스를 다루더라도 그 케이스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전문가 34, 변호사)

5) 행정 관료화 경향

다섯째, 4명의 전문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료화 경향을 문제점으로 보았다. 이는 시급하고 민감한 인권 사안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일단 너무 형식적이고 관료적이라는 것. 국가인권위원회 안에도 역시나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상담원 내지 조사원들이 있을 것이고,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활동가들은 활동가들 나름의 갖고 있었던 마인드가 관료화된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최대한 빨리 시급성을 갖고 처리되어야 하는 것들도 관료성, 행정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포기되거나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 아니면 사무총장 등등의 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깨치고 정말 이후에 어떻게 해나가느냐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중에 부딪치더라도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과 행정상의 문제를 먼저 앞세워서 얘기하는 거랑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권·시민단체 11, 성적 소수자 부문)

6) 지방사무소 설치 문제

여섯째, 3명의 전문가들이 지방사무소 설치 문제 등을 개선점으로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지방 인권·시민단체들은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적 연계가 힘든 점을 문제점으로 언급하는 특징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자들, 국민의 입장에서 이용하긴 어려워요.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직접 오거나, 인터넷을 하고 해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

된 거나 문제 차별이나 침해 문제에 대해서 하는 가시적인 몇몇 중요한 사례들을 발표 한다던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서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편의성의 측면도 중요하게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장치들을 만들 것인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1기가 서울에만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인권·시민단체 46, 여성 부문)

2.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27명의 전문가들이 진정처리기간의 지연 및 소극적 대응을, 둘째, 16명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추가대응 및 후속조치의 부재를, 셋째, 14명의 전문가들이 정책 및 법령 개선 미흡을, 넷째, 14명의 전문가들이 인권단체 및 인권사안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부족을, 다섯째, 13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민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여섯째, 10명의 전문가들이 전시행정, 심도 있는 사안접근 부족을 언급했으며, 일곱째, 8명의 전문가들이 인권문제 사전 대처를 위한 적극성 부족을, 여덟째, 6명의 전문가들이 정치적 중립화 실패를, 아홉째, 3명의 전문가들이 진정사안 결과 공개 방식 문제를 개선점으로 언급하였다.

1) 진정처리기간의 지연 및 소극적 대응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27명의 전문가가 지적한 개선점은 인권사안에 대한 진정처리기간이 지연되고, 각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야기 하거나 진정하면 해결이 될 거라는 기대심리가 큰 건 사실이에요. 기존에 여러 가지 기관이나 기업에서 인권 침해가 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인 게 일반 시민들이에요. 사법부분은 꽤 길게, 시간이 길어지고, 금전적인 문제가 많아서 꺼려하지만 값 싸게, 손쉽게, 그리고 빨리 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통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기대에 있어서 진정 기간이 급박히 요구됨에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오래 끌거나, 진정 시기부터 결과까지가 길거나,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이 약하다, 권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약했다는 것들...” (인권·시민단체 6, 인권 부문)

2) 지속적인 추가대응 및 후속조치의 부재

둘째, 16명의 전문가에 의해 지적된 것은 인권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가대응과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각 사안의 처리과정에서 정책 및 법령개선이 라는 실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우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권이 없는 기관이고, 또 침해사례가 신고 되었을 때 그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시정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는 후속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특히나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가 됐던 네이스 문제 등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인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대응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또는 그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부족한 점들을 빨리 극복해나가야 된다고 보죠.” (인권·시민단체 19, 시민감시 부문)

3) 정책 및 법령 개선 미흡

셋째, 14명의 전문가들에 의해 실제적인 정책 및 법령 개선이 미흡하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의식개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그런데서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법적인 대응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시민단체 42, 교육 부문)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해서는 취약한 수준인데 그것을 좀 제도화시키지 못한 것, 각 관련된 영역에서 법률이나 또는 행정 과정에 있어서 인권을 고려한 행정이나 인권을 고려한 정책 집행, 이런 부분을 좀 제

도화 시키지 못 한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 31, 사회학 교수)

4) 인권단체 및 인권사안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부족

넷째, 14명의 전문가에 의해 인권단체 및 인권사안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부족하여 인권 사안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해결이 부족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부족한 점은 무엇보다도 인권 단체들과 NGO와의 관계 설정에서 유기적인 결합을 하지 못 한 점, 그러므로 향후 NGO와의 상호 보완과 NGO의 역동성,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39, 변호사)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권위원회가 행정 부서로 보면 인권위원회는 아주 작은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거에 관해서 인권위원회만으로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부처와의 협력관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지자체와 관련된 활동들은 없었고 침해라던가 그런 문제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지자체 관련된 공무원에 관한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인권·시민단체 46, 여성 부문)

5)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민 홍보 부족

다섯째, 13명의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여 아직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요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직도 홍보는 많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좀 더 광범위하게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인권 구제요청 같은 것이 손쉽게 되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48, 사회과학부 교수)

6) 심도 있는 사안접근 부족

여섯째, 10명의 전문가는 일종의 전시행정으로 심도 있는 사안접근 태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였다.

“긍정적인 측면과 연계되는 측면들인데 오히려 전시행정들이 많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기라는 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가지는 것일 수밖에 없겠지만 1기로서 처음 등장한 독립되어 있는 국가기구로서 우리 사회에 이런 기구가 존재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공고나 대안을 모색했지만 너무나 다양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특정한 분야를 파고드는 부분은 미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측면에서나 민간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국가기관으로서의 전시행정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권·시민단체 50, 생태환경 부문)

7) 인권문제 사전 대처를 위한 적극성 부족

일곱째, 8명의 전문가는 인권문제의 사전적 대비 및 대처를 위한 장기적 안목, 적극성, 운동성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주로 진정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구제라거나, 정확하게 법률 쪽은 모르는데 주로 심사위주로 잡고 판단하는.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적 사항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림으로서 그것들이 기준을 만들고, 사회의 반영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심사 위주가 아니라 조금 더 캠페인성의 활동들을 해내가는, 그런 운동성을 강화시키는 점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2기가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다뤄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29, 언론인)

8) 정치적 중립화 실패

여덟째, 6명의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에 대한 눈치 보기로 정치적 중립화에 실패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안사태 당시 경찰의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권한의 침해 부분들을 제기했었는데, 물론 이것이 반년 이상이 지나간 다음에나 그것이 판가름되고 결론이 내려졌던 것들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눈치를 봤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독립되어있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이나 국가의 방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의 중단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들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인권·시민단체 50, 생태환경 부문)

9) 진정사안 결과 공개 방식 문제

아홉째, 3명의 전문가는 진정사안 처리 결과가 공개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구속력은 없지만 그게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결정이 중요한 요인을 갖고 있는데, 이 결정의 공개 방식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정인이 진정한 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인권침해라고 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권고나 공표를 하기도 하고 기사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각한 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제가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 케이스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진정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거든요. 그 기각 결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한데 그게 있는지조차 우리는 모르는. 결국은 진정인과 피진정기관만 아는, 그래서 법무부가 오히려 진정인의 진정이 기각됐다는 걸 자료 제출하면서 인권단체의 입을 막아버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받아들인 건지 받아들이지 않은 건지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요.” (전문가 34, 변호사)

3.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점들이 언급되었다. 첫째, 39명의 전문가들은 편향적인 정책설정으로 인한 다양한 인권 사안 발굴 부족을, 둘째, 11명의 전문가들은 과도한 진보성을, 셋째, 7명의 전문가들은 인권감수성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넷째, 5명의 전문가들은 인권 사각지대의 현존을, 다섯째, 5명의 전문가들은 인권 교육 등 인권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 부족 등을 개선점으로 지적하였다.

1) 편향적인 정책설정으로 인한 다양한 인권 사안 발굴 부족

첫째, 39명의 전문가들이 정책 차원에서 지적한 점은 편향적인 정책설정으로 인하여 다양하고도 대중적인, 일상적인 인권 사안 발굴이 부족했다는 점이었다. 이와 연결되어 북한인권 문제, 소수자 인권 문제, 아동인권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사안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너무 교도소의 인권 침해 문제만 치중을 해서 다른 부분의 인권 침해 문제는 등한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70, 법학 교수)

“그 발등에 불이라고 할까 아주 급한 인권문제만 신경 쓰다가 보니까 널리 퍼져있는 어떤 보편적인 차별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약간 미흡했다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차별과 인권 침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눈에 띄는 아주 현저한 어떤 측면을 다루고... 개개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차별문제, 인권침해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그거 활동이 부진했다 이렇게 봐요.” (전문가 73, 교육 부문 연구원)

“부족한 것은 좀 소극적이었던 분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북한 인권 문제, 현재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라든가, 불법체류자 같은, 우리 국민이 아닌 경우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소홀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78, 법학 교수)

2) 과도한 진보성

둘째, 11명의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향이 지나치게 진보적이라는 것을 개선점으로 지적하였다. 인권·시민단체적인 진보성이 그대로 여과되지 않은 채 정책화된 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급진적, 좌파적인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치적인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당사자가 그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압

박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없지 않았다고 봐진단 그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냉정하게 법을 중심으로 수용해주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 66, 법학 교수)

“국가 기관이고, 일반 시민 단체와는 차별적이어야 하는데 사실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그대로 여과되지 아니한 채 국가인권위원회 쪽으로 바로 전달 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가 기관으로서 타 국가 기관과 자주 마찰이 빚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국가 기관 전체에서 혼선이 이런 게 빚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전문가 10, 법학 교수)

3) 인권감수성의 부재

셋째, 7명의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이 인권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

“기본적인 인권사항에 대한 관점이 좀 부재한 것들이 좀 있구요. 인권 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왜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역할이나 활동 과정에 대한 부분 평가보다는 그것이 어떤 식의 인권 문제와 부딪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많은 활동이 가능할 텐데, 그런 인식기반을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넓히는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잘 감지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런 것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인권·시민단체 41, 인권 부문)

4) 인권 사각지대의 현존

넷째, 5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 사각지대가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시한 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계층이 많다는 점에서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아직은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들 또는 외국인 노무자들이 국내법상 위법했다 하더라도 인권위원회나 인권재판소의 보호하는 수준 정도를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위 안티코리아를 조직할 정도로 심각한 점을 인권위원회에서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문가 26, 법학 교수)

5) 인권교육 등 인권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 부족

다섯째, 5명의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안되고, 인권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인권 교육 분야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 교육 분야를 주체적인 정책을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인권 교육 자체가 특히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은 권력 집행 이런 쪽의 교육을 할 때 사실 권력집행 공무원들이 반발이 심할 겁니다. 왜냐면 권력 집행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인권 침해가 있고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서베이가 없는 것 같고...인권 교육이 부실한 것은 그 전단계로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활동가,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권 단체들과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권이라고 할 때 최대 맥시멈을 할 것인지, 단기별로 어떤 목표로 달성할 것인지...” (전문가 59, 법학 교수)

제4장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처 방안

< 결과 요약 >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침해나 차별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30명)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23명) △빈곤층 인권(16명) △장애인 인권(16명)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12명) △북한 인권(11명)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 외에도 전문가들은 △여성 인권 △구금시설과 수사기관에서의 인권 침해 △청소년 인권 △군대 내에서의 인권침해 △국내 체류 조선족 동포들의 인권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한편 △환자 정보 보호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신원확인서에 대한 문제제기 등과 같은, 특이한 소수의견이 있었다.

■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내용 설명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국인 노동자 인권

전문가들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항으로,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인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 △법무부나 출입국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받는 인권침해 △체포된 후 본국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수용되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산업연수제 폐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여론 환기 △아동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 의식 개선 교육 실시 등을 제언하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점 △국내인권문제가 곧 세계인권문제가 되는 현실 등을 지적하며,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생존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점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것을 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실태조사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시정요구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 빈곤층 인권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빈곤층에 속한다고 지목한 사람들은 노숙자,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결식아동, 독거노인, 신용불량자, 실업자, 극빈자, 수도세나 전기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등이었다.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사회 복지의 확충,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빈곤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장애인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방안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과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가 국가경쟁력 강화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인 인권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중 특히 △미신고 시설 △정신요양원 △소년수 생활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였다.

국가전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부패감시 등을 제안하였다.

○ 북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한 전문가들의 응답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짚막하게 언급한 것이고, 둘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발굴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응답이다. 마지막은, 민족 화해와 협력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라는 대답이다.

○ 기타

- 여성 인권

국제결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불법적 결혼 알선 행태의 차단 △외국인 신부와 그의 남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외국인 여성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 구금시설과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 △경찰의 수사기록 공개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 청소년 인권
 - 청소년 인권 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교사에 의한 인권 침해 △왕따 문제 △아이들의 폭력 문제 등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서 겪는 인권 침해를 언급하였다.
 -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권 상담센터를 학교 등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고,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해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군대에서의 인권 침해
 - △군대 내 인권침해 사례들의 수집 △국방부의 군대 내 인권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군 의문사 사건의 예방과 사후조사를 위한 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 국내 체류 조선족 동포의 인권 문제
 - △재외동포법 개정에 부응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 △조선족 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 △순환제식 취업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 학력·학벌 차별의 시정
 -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력·학벌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한 전문가는 △학벌(학력)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다른 전문가는 법률적인 대응보다는 △인권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진정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정책적 권고 등의 지속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전문가들은 인권문제 전반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 강화 △실태조사의 내실화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인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나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위의 권한과 조직의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일부 존재했다.

제1절 외국인 노동자 인권

전문가들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항으로,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인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 △법무부나 출입국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받는 인권침해 △체포된 후 본국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수용되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지적하였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고, 소수의견으로 △고용허가제 개선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과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점 △국내인권문제가 곧 세계인권문제가 되는 현실 등을 지적하며,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1.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 문제가 무엇인냐는 질문에, 140명의 전문가 중 30명의 전문가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언급하였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하였는데, 전문가가 제시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항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인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 △법무부나 출입국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받는 인권침해 △체포된 후 본국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수용되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인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나 사기, 폭행을 당해도,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의 불법적인 지위가 드러나서 본국으로 추방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는 각종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하였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는 약점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사기,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서 도망을 쳐야 되고,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신고를 하기는커녕 거꾸로 사업주들한테 더 매달려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부분들이고.” (전문가 55, 종교인)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 이 사람한테 남아있는 건 체류자격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그걸 공식적인 국가 라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못한다는 거죠.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하면 노동부에서 진정문제를 받아주지만 불법체류자니까 출국사무소에 넘겨서 출국시키겠다고 나오고. 폭행이 있을 때 자기가 형사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가서 얘기를 하면 경찰에서 사건 조사는 하겠지만 끝나면 너는 불법체류자니까 나가라.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강제 출국을 감수하고 자기 권리를 찾아보겠다고 노력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걸 그대로 방치되는 거죠. 인권침해가 완전히 사각지대로 몰려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전문가 79, 외국인 노동자 부문 연구원)

2) 법무부나 출입국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받는 인권침해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물이나 가스총을 사용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불법체류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체포할 때)가스총을 쓰거나 그물을 던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권·시민단체 50, 생태환경 부문)

3) 체포된 후 본국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수용되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한 전문가는 불법체류자들이 체포 후 본국으로 추방되기까지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수용되어 있던 외국인 노동자는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므로, 인권침해 사실이 쉽게 밝혀지지 않는 점도 지적하였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시키기 위한 출입국 사무소의 보호실이나 또는 외국인 보호소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불법체류자이고 한국 국민도 아니고, 또 수감된 상태에서 바로 추방당하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고 또 한국을 떠나고, 한국의 제도나 법률이나 자신들의 권리를 알지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호소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도 이게 한국사회에 고발되거나 알려지거나 하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전문가 55, 종교인)

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다수의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산업연수제의 폐지를 제언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맡아야 할 역할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산업연수제 폐지를 권고한 적이 있음을 언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산업연수제 폐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1) 산업연수제 폐지

먼저 산업연수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산업연수제 아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제도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산업연수제 하에서 불법체류자가 많이 생겨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송출업체 등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점, 외국인 노동자가 자기 의사대로 쉽게 일터를 옮길 수 없는 점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급여가 계속 밀린다거나 아니면 사업장 내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참을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거나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 경우에 거의 상당히 많은 수가 사업주가 그걸 수궁하고 그러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싫으면 나가라 이런 말이 일방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는, 그것도 일종의 또 다른 인권 침해죠. 그러니까 침해를 받았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있느니 차라리 나가서 미등록으로 있더라도 이런 무시 받고 하는 건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급여 이렇게 못 받을 바에. 몇 개월씩 급여가 밀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게 생활이거든요, 한국에서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생명과 같은 돈을 사업주가 계속 밀린다거나 아니면 자기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인격에 심각한 모독을 받고 있다거나 인권에 위기감을 느낄 때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호소를 했을 때 사업주라든지 연수생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송출업체 같은 데서 그리고 관리업체 같은 데서 일방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내린단 말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그런 상태인데, 불리한 조치를 수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주노동자는 거의 없어요. 그럴 때 도망이라도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결과는 당연히 미등록, 불법체류를 감수하는 거예요.” (전문가 79, 외국인 노동자 부문 연구원)

그리고 전문가들은 산업연수제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그것이 산업연수제를 폐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하였다.

“실제로는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분명한데 연수생이라는 이름 붙여 놓고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악랄한 제도이고, 또 구체적인 비난거리이기도 하고. 오죽하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까지 비난을 받는 부분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표리부동한 연수생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문가 55, 종교인)

산업연수제 폐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과 관련해서는, 한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산업연수제의 불합리한 점을 여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산업연수제에 대한 폐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권고안도 내리고 했는데 그거에 그친 거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 조사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산업연수제라는 것이 한국 외국 인력 제도로서 너무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론화, 환기 시키는 작업들도 필요하고.” (인권·시민단체 4, 노동 부문)

2) 고용허가제의 개선

한편 한 전문가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노동자가 일자리를 옮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등은 산업연수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직장을 옮기는 횟수에 제한을 두는 점도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고용 허가제도 지금 만족스러운 제도가 아니거든요... 사업장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옮길 수 없는 거. 아무리 여기서 인권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월급이 두 달 밀렸다, 내가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 사람들이 나에게 차별도 하고 그래서 옮긴다,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횟수 제한도 되고, 3번 이상은 안 되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1회 더 한다, 만약에 1년씩 3번, 총 3년이거든요. 3년 사이에 3번 옮기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두 달 치 월급 못 받아서 다른데 옮겼다, 또 못 받아서 다른데 옮겼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못 옮기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인권·시민단체 4, 노동 부문)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그 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우선, 우리나라 국민의 차별적인 시선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특히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사람들을 멸시하는 의식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별적인 시선이나 배타적인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 아래 초등학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이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을 소개하며, 그 효과가 상당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접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전문가도 있었다.

1)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열등하게 취급하는 등 차별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저희가 작년에 ‘타문화 이해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하면서 느낀 게 선생님들이나 어린이들도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심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사업주나 회사 사람들하고 접할 때는 차별 의식이 더 심하고, 열등하게 취급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국인들의 고질적인 그런 거, 한국인 의식들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전한 모습도 많거든요.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의식이 있어서.” (인권·시민단체 4, 노동 부문)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교육과 홍보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를 이해시키는 교육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의식 교육 등을 제언하였다.

“2004년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 실천 프로그램에 제안을 해서 초·중·고등학생 차별 의식 해소를 위한 ‘타문화 이해 교실’을 진행 했었어요... 수업에서 외국 문화 소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 나라의 문화 같은 거 소개 하면서, 직접 외국인이 가서 자기나라 문화 소개하고 물품들도 전시해서 보게 하고, 의상도 입고 사진도 찍어 보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 나라 놀이도 해 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우선은 흥미로워 하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나라에서 왔고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한국에 일하러 왔지만 그 나라도 소중한 문화를 가지고, 후진국, 열등한 나라가 아니라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고, 좋은 문화를 가진 사람이다, 같은 이웃이다... (아이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사전에는 설문 조사를 했었는데 사후에는 안 했어요. 사전에 설문조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인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부류로 취급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보였어요, 설문에서. 이후에 선생님들을 불러서 평가를 했는데 선생님들도 역시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고 하고, 아이들도 그

이후에 많이 흥미가. 우선 시작이었던 거 같고, 아쉬운 것은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면 아이들의 의식 개선에 분명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했었어요.” (인권·시민단체 4, 노동 부문)

“고용주가, 외국인이 인간으로서 어떤 대우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국가가 이렇게 행동하라고 강제할 수 있으니까 국가가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 실제로 같이 생활하는 시민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면이 있는데 그것도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막아야 한다.” (전문가 43, 법학 교수)

4. 불법체류자 인권 보장이 필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교수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 인권보장의 당위성을 설명한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국적, 또는 합법 여부와는 다른 차원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내인권문제가 곧 전 세계의 인권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합법불법이나 국적을 불문하고 인권문제를 바라 봐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권문제와 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이라는 이번 장의 주제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준다는 의미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1) 국적과 불법·합법의 문제를 초월하는 ‘인권’

먼저, 전문가들은 ‘인권’은 기본적으로 국적과 합법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당연히 가지는 권리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자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적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상관없이 인간이 당연히 가지는 권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한 인권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라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는 법률에 의해서 단지 일시적으로 신분 안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 사람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인권 침해의 주요 논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권위원회에서 보다 명확하게 거기에 유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처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가 4, 법학 교수)

"불법으로 왔던 아니던 간에, 특히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보호할 때는 불법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48, 사회과학 교수)

2) 인권의 세계화 경향

한편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인권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불법체류자의 인권 침해가 국제 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전문가는 △국제적인 인권재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실례(實例), △인권 침해 사실이 무역 장벽으로 이어지는 사례 △한국 정부의 불법체류자 인권 침해가 나중에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를 하나 예로 들면 우간다 여성이 에이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불법 체류를 했었습니다. 유럽인권위원회는 유럽에서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간다의 불법체류여성은 영국이 추방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결국 2년 동안 에이즈 치료를 받고 보호를 받는 수준까지 봤었거든요.” (전문가 26, 법학 교수)

“인권이 보호되지 아니하고 어떤 기업도 어떤 국가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과거의 교도소 재소자들이 만든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말이죠. 지금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거든요. 또한 인권을 유린한 어떠한 국가기관도 이제 존재가치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전문가 26, 법학 교수)

“나중에 태국이나 필리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나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필리핀과의 조약에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한다’라는 조약도 있고. 이럴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는 할 것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26, 법학 교수)

5. 기타

그 밖의 의견으로,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문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부처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준다던가 권고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은 아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죠.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학교에서 받아 줄 수도 있지만 교장이 못 한다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보호되어 있지 않거든요. 교장이 학교에서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받아들이려면 여러 가지 특별히 방과 후에 지도할 교사가 더 필요하더던가,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게 학교 재량에 맡겨, 그럼 학교가 우리는 그럴 여건이 안돼, 그러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조차 가능할 수 있도록 교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계 당국에,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리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걸 관계 부처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준다던지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인권·시민단체 26, 아동 청소년 부문)

“외국인 당사자들에게 당신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교육 작업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고용 허가제가 들어와서 그 교육적인 시스템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2박 3일 동안, 해당 언어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들어오고 나면 재교육이나 그런 것은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 기준법 전면 적용, 한국에 있는 모든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그 시스템을 몰라서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는 힘들고 법무부나 외국인의 도입 단체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요구하고 권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권·시민단체 4, 노동 부문)

제2절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점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것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맡아야 할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의 권고 △실태조사 △비정규직 차별의 기준 마련 △비정규직 차별 금지 법안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문제가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해, 13명의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문제의 구체적인 예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존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점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1)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존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점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존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빈부격차의 확대와 비정규직의 증가가 같은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제적 상황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큰 문제 중 하나가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실에서 말도 안 되는 차이와 차별이 자행되는 현실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19, 종교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은 생존권에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갈수록 확산 될 것이고, 이 비정규직 문제에는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권·시민단체 42, 교육 부문)

그리고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하여, 가족이 파괴되고 다른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비정규직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에서 차별을 없애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비정규직들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들이 대규모의 실업자나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가정, 가족 구조의 파괴로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아동 문제라든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문가 31, 사회학 교수)

2)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

한편 한 전문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문제가 울산의 경우는 현대 자동차 노동조합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데 노동조합의 구성 자체, 활동 자체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잖아요... 비정규직이 고용 불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노동자들의 권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고용불안이 기본인데, 어떻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인권·시민단체 24, 인권 부문)

2.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줄여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로, △실태조사 △정책적 권고 △비정규직 차별의 기준 마련 △비정규직차별 금지 법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먼저 어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점차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에서 50%가 넘어서는데,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 3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나, 고용 문제, 고용 안정을 전제로 할 때 노동3권도 보장 되는 거기 때문에...”(인권·시민단체 24, 인권 부문)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은 사기업으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행정권적인 부분에서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 논리로 인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러한 문제가 정당화 되는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되도록은 정규직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일단 사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걸 감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국가 기관을 먼저 국가 기관의 실태 조사를 해서 국가 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들, 그런 부분에서 인권

위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전문가 65, 법학 교수)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줄여나갈 것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는 달리,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용시장은 유연하게 해 주되 그것이 임금 착취라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부 전환해야 한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일시적인, 비정규직인 고용 형태라는 것은 보장을 해 주되 대신에 그것이 착취가 되지 않도록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동 보장을 국가가 해줘야 한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43, 법학 교수)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대신 일정기간 비정규직으로 일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 측에서는 선호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다 합시다 하기는 어렵기도 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은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견근로자보호법 인가요 거기서도 한 것처럼 일정 기간 이상이면 정규직화 하는 그런 가능성을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처우, 그 다음에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걸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27, 사회복지학 교수)

또 한 전문가는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차별을 축소시킨다고 하면서 더 비정규직 업무 분야를 늘리고 있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비정규직을 둘 수 있는 경우를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봐요.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한정적으로 해 주고.” (전문가 36, 법학 교수)

3)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주로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실태조사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나 차별시정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상을 폭로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비정규직의 실태를, 비정규직의 생활, 비정규직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인권의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가족이라면 그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가족이 어떻게 비정규직이라는 상황에 적응하고, 서서히 침몰해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잘 추적해서 밝혀주는 것이 인권위원회가 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이야기 하지만 비정규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통계적인 숫자, 일부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뿐이고 그 사람들의 몰락해가는 생활사를 철저하게 밝혀 줌으로서 우리 사회에다가 비정규직이 겪는 고통을 철저하게 폭로시켜주는, 그럼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어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폭로를 시켜 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러한 꺾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해 주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전문가 31, 사회학 교수)

(2)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시정 요구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법안이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권고안에서부터 발휘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 의견도 내야하고.” (인권·시민단체 24, 인권 부문)

(3)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기준마련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기준 마련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과 같은 법률적인 차별금지 방안 마련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노동에 대해선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원칙은 그렇다고 치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데 뭐가 동일노동인지… 같은 직장에 같이 일했다고 해서 이게 동일노동인지 아닌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앞에 텔러는 똑같이 지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인권위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쪽 판단해서 일종의 법원이 그렇듯이 판례 같은 걸 주로 만드는 기능이 더 많은데…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거나.” (인권·시민단체 49, 시민감시 부문)

“재정부나 이런 쪽의 입장을 간곡하게 반대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단체가 인권위기 때문에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그런 법률적인 차별금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인권·시민단체 42, 교육 부문)

제3절 빈곤층 인권

전문가들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난 때문에 기본적인 인간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빈곤층에 속한다고 지목한 사람들은 △노숙자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결식아동 △독거노인 △신용불량자 △실업자 △극빈자 △수도세나 전기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의 확충, 사회적 안전망의 마련 등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부서가 되는 것 △빈민과 관련한 정책 권고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빈곤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 ‘심층적이고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말을 했을 뿐 구체적이고 특별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1. 빈민들의 인권 실태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문제로, 총 16명의 전문가들이 빈곤층의 생존권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노숙자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매우 가난하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을 지적하였다.

“사회에서 제공하는 권리와 혜택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노숙자, 그리고 노숙상태는 아니어도 쪽방 등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그렇다고 해서 생활 보호 대상자로 편입도 되지 않고, 아주 공백 상태에 있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전문가 7, 행정학 교수)

“사람들에게 결식아동이 얼마나 되냐고 생각을 하나 라고 하면 30만 명이라고 하면 놀라거든요. 우리나라 일을 갖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말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라 버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도 심각하거든요.”(인권·시민단체 28, 인권 부문)

“요즘 빈곤층들이 늘어나는데 빈곤층도 더 극빈자들, 주거권이라든지,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 단수가 되고, 단전이 되는...” (인권·시민단체 44, 종교 부문)

그리고 특히 한 전문가는 여성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몰락하면서 빈곤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여성문제와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빈곤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회의 양극화와 소득 격차의 확대라고 하는, 현시대의 양극화된 경제 구조 속에서 상당히 다수의 층들이, 빈곤층, 실업층, 비정규 노동자층, 여성층 그런 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의 밑바닥으로 추락을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33, 노동부문 연구원)

2.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

빈곤문제를 언급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빈곤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복지혜택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기상황으로 보니까 그에 따른 인권침해 현안으로서는 빈곤층의 사회적 권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완해주느냐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복지혜택을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가 23, 법학 교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와 함께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체계적인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국가와 함께 사회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시급히 도와줄 사람들을 항상 체크했다가 극단적인 방법까지 쓰지 않게끔 사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용역을 주든지 방법을 통해서 정말 막바지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하는 걸 막아주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국가인권위 주도하에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전문가 68, 언론인)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빈곤층이 나오게 됐을 때 그들이 희망을 포기하는 부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빈곤 계층이 형성되는지 추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야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게 되었는지, 그 프로세스를 분석해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만들고 그 안전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 할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 59, 법학 교수)

참고적으로 덧붙인다면, 빈곤층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것은 제언한 전문가는, 이러한 일을 할 때 민간단체들이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를 관리하면서 민간단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권고, 국가적인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전문가 68, 언론인)

빈곤층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또 다른 대응방안으로, 한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부서가 될 것을 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빈곤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할 일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각 부분, 보건복지부, 경찰, 검찰, 하다못해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모든 부분이 다 정부의 각 부분이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권고하는 형태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 빈곤의 해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 100가지를 제시하고,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국방부 같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부처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보는데, 매우 중요한 인권 현안이고,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해야 할 일, 10가지, 100가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난의 문제에 대한 매우 집중적인 논의, 토론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가난 문제 해결 전담 부서라는 위상을 갖고.” (인권·시민단체 27, 인권 부문)

그 밖에 전문가들은, 빈곤층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할 것을 제언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정책의 아이디어까지 제시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생활 보호 대상자로 편입도 되지 않는 공백 상태의 영역에 있는 빈곤층 문제는)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일시적인 쉼터를 제공해 주고 그런 걸로 해결 될 것은 아니거든요. 인권위원회 2기에서 인권 차원에서, 생존권, 사회권 차원에서 이런 사회적 배제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이고 다각적이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7, 행정학 교수)

제4절 장애인 인권

전문가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동권 보장 △차별기준 마련을 제언하였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두 명의 전문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다른 한 명의 전문가는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가 국가경쟁력 강화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1.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총 16명의 전문가들이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그들의 인권침해 사례보다는 장애인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나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였다. 그래서 본 절에서도 장애인 문제 해결에 관한 제언들을 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전문가들이 제언한 방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 차별 기준 마련 △독자적인 장애인 차별 금지 법안마련과 장애인 전담기구의 설치이다. 단, 독자적인 장애인 차별 금지 법안과 전담기구 설치에 관하여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1) 이동권 보장

우선 전문가들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것을 위해 정부 부서에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가 더 확충됐으면. 아직은 미비하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요. 어디 이동하거나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어디 물건을 사러 가든 어디 가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갈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걸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인권·시민단체 33, 민중 부문)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탈 때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이나, 기차를 탈 때 장애인이 불편한 점, 건물을 올라갈 때 불편한 점, 이런 부분이 모든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개별 부처에서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인권위원회가 검토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급해야 할, 그동안 해 왔던 거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75, 경제 부문 연구원)

2) 장애인 차별 기준 마련

그리고 한 전문가는 노동시장, 교육 현장 등 각 분야 별로, 어떤 행위가 차별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장 해야 할 일은 어떤 행위가 침해이며 차별이나 하는 거죠. 모든 현장에서 다 그런 것이 마련되면, 노동 시장에서 어떤 행위가 차별이고 인권 침해인지, 학교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는 가운데서, 공공기관에서 민원 업무를 보는 공무원의 자세, 그런 모든 영역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인권 침해고 차별이냐에 대한 기준 설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 18, 직업 재활학 교수)

3) 독자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안 마련과 장애인 전담기구의 설치에 대한 찬반의견

차별 금지 법안, 장애인 인권 전담 기구와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차별금지기본법’만으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 한 명의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못 믿겠다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을 다루는 전담기구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금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차별금지 기본법만으로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시민단체 29, 장애인 부문)

“우리는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장애인 차별 시정위원회 이름이 어떻게 됐던, 장애인 관련 차별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의견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많은 공약 중에 추려서 10대 국정 과제로 하신 거에 차별금지법이 있었는데 거기엔 아까 얘기했던 5대 차별 금지법을 함께 묶어서 하겠다는 거고 그것의 현실적인 주무 실무 담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빨리 입장을 발표 해줘야죠. 근데 18개를 다 포괄해서 하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각 차별의 대상 집단이 느끼는 체감지수나 차별의 메커니즘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18개를 다 묶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 18개를 묶어서 수행하고 있는 집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18개를 다 같이 담을 수 없다는 게 우리들의 입장이에요.”(인권·시민단체 48, 장애인 부문)

반면에 다른 전문가는 장애인만을 다루는 특별법이나 전담기구 설립의 효과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부서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계에서 장애 차별이나 인권 침해만을 다룰 수 있는 독립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이미 장애계에서는 독립된 특별 법안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장애에 대한 인권 침해나 차별 문제가 해결 될 것인가는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왕 영역별로 인권 침해나 차별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독립된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 있는데, 정해진 자원이라는 측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타겟이 장애인인데 장애만 별도로 독립된 기구와 독립된 법률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이게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겠죠. 장애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관련된 부서의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도 장애나 정신 질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 간접적 차별을 다룰 수 있는 상세한 매뉴얼, 이런 것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접근돼야 장애나 정신 질환자들의 인권침해나 차별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이런 일들이 구체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18, 직업 재활학 교수)

2.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기타의견

한편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과 같은, 장애인 문제와 관련한 좀 더 넓은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먼저 장애인을 '사회로 불러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하였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 생산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축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인권 침해나 차별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이 사회로 나와야 합니다. 노동 시장으로, 지역 사회로 나와야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 커지는 거고.” (전문가 18, 직업 재활학 교수)

“우리 사회가 국민 지엔피가 만 불에서 이만 불로 도약하려고 하면 사회가 합리화 돼야 합니다. 인권이 전반적으로 삼투돼야 하고, 그것이 단순히 소극적 의미의 인권 시정, 인권 억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리화 돼야 한다는,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인력, 장애자들의. 그래서 여성과 장애인의 능력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꽃피울 수 있도록 되어야, 그런 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 5, 정치외교학 교수)

그리고 한 전문가는 사람들이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 때 남자용, 여자용 두 개로 따로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예를 들면서, 실제 존재하는 구체적인 장애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듯한, 세심하지 못한 법률 및 정책에 대해 비판하였다.

“장애인 문제는 사실 존재의 문제거든요 being의 문제죠. 있다는 것만 알려지면 장애인도 있어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층중에, 예를 들면, 뭐하면 화장실 만들 때 남자화장실이랑 여자화장실 당연히 따로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요새에 만든 것,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 만든 것은 개보수는 못 할지언정 앞으로 만들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 화장실도 만들어요. 근데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따로 만들 생각은 못하더라구요.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저는 저와 함께 업무 보는 활동가들이나 언니들이나 남자 선배들 모시고 가거나 장애인 분들, 저희 회장님이 시각 장애

인이시거든요 참 민망한 거예요, 화장실 같은데 제가 케어해서 가면 그 가운데만 있어도 사실은 괜찮은데 이용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찝찝하긴 하죠. 우리도 가끔 호프집 같은 데서는 남녀 공용이니까 화장실 가면 불편하잖아요, 남자들 들어오고, 밖에 있고 그러면... 하나 만들 걸 두 개 만드는 거랑 세 개 만드는 거랑 가격이 다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정책이나 이런 관련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장애인이 수혜집단이나 대상 집단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진짜 달라져요. 근데 우리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입법 절차 과정에선 그걸 계속 놓치는 거예요... 어쨌든 최소한 우리 사회에 그러한 존재(장애인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인권·시민단체 48, 장애인 부문)

제5절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생활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특히 △미신고 시설 △정신요양원 △소년수 생활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복지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실태조사 △복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복지시설의 부패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1. 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문제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 8명의 전문가들이 보육원, 경로원, 보호시설 등의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설이건, 미신고 시설이건, 복지시설은 감시의 눈에서 벗어나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미신고 시설, 사립 시설에서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복지시설 생활인들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정신요양원과 소년수 생활시설에서의 문제를 언급한 전문가들이 있었다.

우선 복지시설에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선택권이 있는지도 모른 채 복지 시설에서 여생을 마치기도 한다고 언급하며 복지시설이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말하였다.

“사회 복지 시설에 있는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생활하다가 거기서 생활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릅니다. 국가가 그걸 시설을 통해서 자금을 주고, 그 자금을 통해서 생활하는데 그거는 시설에게 주는 거지만 사실은 생활하는 생활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주는 겁니다. 내가 '에이 시설이 마음에 안 들어'하면 비(非)시설에도 갈 수 있

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활인들의 인권 차원에서 시설이 군대, 교도소 못지않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전문가 83, 재활학 교수)

“지금 국가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는 감시하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기자들이나 시민 단체 다 감시의 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감시의 눈에서 비껴나 있는 복지 시설 말이죠, 거기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중점적으로 말이죠.” (전문가 2, 법학 교수)

그리고 전문가들은 복지시설 중에서도 미신고 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미신고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시설 노동자들이 생활인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평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83, 재활학 교수)

“사적인 구금시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좀 깊이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정신병자들 수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사적인 시설.” (전문가 56, 법학 교수)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항과 관련하여,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 등에 의해 정신요양원에 수용된 사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소년수 교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한 전문가들이 있었다.

“정신요양시설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완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시설실태라든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정신과 진단을 정확히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 있는 지 아니면 집에서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넣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권·시민단체 2, 인권 부문)

“나도 소년수들에게 들은 건데, 소년수가 오히려 있을 때 더 편한데, 다른 데 더 좋은 데로 보내는 데가 있다고 그래, 거기서 하루 종일 서 있는 다든지, 하루 종일 성경책 읽으라든지, 하루 종일 눈을 감으라든지, 움직이지 못 하고 밥도 안 주고, 이런 걸로 벌주는, 그런 것을 지금도 하고, 국가에서

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소년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못 하거든요.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애들 있으면 다 이야기 해 주는 거지.” (인권·시민단체 36, 인권 부문)

2. 복지시설에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 예산이나 지원금을 착복하는 등의 부패문제를 감시하여, 복지시설 생활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 실태조사

먼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신요양원에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엄밀히 말하면 복지 시설은 아니지만, 이유 없이 수감된 사람은 없는 지에 대해 정신병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사회 복지 시설에 억울하게 감금된 사람은 없는지... 물론 그 복지 시설은 의료 시설도 포함되죠. 정신병, 이유 없이 정신 병동에 수감된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을 2기에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2, 법학 교수)

“전국적인 정신요양원 시설들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활동이 이뤄지고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권·시민단체 2, 인권 부문)

2)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한 전문가는 인권 문제를 고려한 구체적인 활동지침을 마련하고 그것을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인권기준을 잘 지킨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 하는 사람들이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인권을 꼭 해야 한다, 그런 활동 기준이나 지침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을,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극단적으로 어디에 가둔다든지 그런 것에서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아주 사소하게,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아주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사자들이 인권 침해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인권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교육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시설들이 지키도록 좀 더 제도화하는, 인권과 관련해서 보호를 잘한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좀 더 사회복지 시설들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가 31, 사회학 교수)

3) 복지시설의 부패 감시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의 지원금 착복과 같은 부패 문제를 언급한 전문가들이 있었다. 복지시설의 부패 감시는 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의견도 소개하도록 하겠다.

“보호시설, 수용시설, 그리고 사회 복지 시설, 경로원이나 고아원,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쪽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착복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고발을 해서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쪽에 봉사를 하면서 보고하는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 고아원에게 돌아가는 것들은 미미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 그런 쪽을 함으로서 국가 예산도 밖으로 세어나가지 않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전문가 67, 산림자원조경학부 교수)

제6절 북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총 11명의 전문가가 북한 사람들의 인권문제를 언급하였다.

이 11명의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어떻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짚막하게 언급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참상을 조사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또한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도록 권고할 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셋째, 북한 인권 문제를 민족 화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한 전문가가 있었다.

본 절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속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아 온 것에 대한 평가

다수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였는데, 그 중 어떤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하여 특별한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비판적으로 인식한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남북관계 개선에 신경을 쓰느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이념적 편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지금부터,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몇몇

전문가들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침묵한 것이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단순히 자료 부족, 우리 남북 간 관계 발전을 위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게 입장을 취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김정일로 하여금, 현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역할 뿐이 안 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보다도 북한의 인권 유린과 김정일과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와 같이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인권 유린을 할 수 없도록, 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상상은 적어도 갖지 못하도록 입장을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가 5, 정치외교학 교수)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라든가 남북 간의 관계 때문에 소홀히 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에 개선하기를 촉구하게끔 하는 조치라든가 이런 걸 취할 수가 있죠.” (전문가 68, 언론인)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아주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듯 한 그런 인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는 방향 전환 차원에서 좀 주의되어야 될 것 입니다.” (전문가 21, 경찰행정학 교수)

이와 함께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과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인권침해를 파헤치는 것, 두 개를 비교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자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국민들 또는 보수진영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념적 편향을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더 성의 있게 다뤄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민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내부적으로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업적을 발표한 사례가 없습니다.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국민이나 또는 중도적 입장을 가진 국민이 볼 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북한 인민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노선까지도 시비를 걸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77, 신문방송학 교수)

“보수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치 무슨 좌파의 이념을 갖고 남한의 잘못된 것만 파헤치려고 한다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인권의 공정한 잣대를 갖고 북한도 바르게 보면서 남한에 권고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을 갖고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한다는 식이라든가.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 68, 언론인)

2.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해야 할 역할로,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꼽았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하도록 권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 그리고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라든가 남북 간의 관계 때문에 소홀히 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에 개선하기를 촉구하게끔 하는 조치라든가 이런 걸 취할 수가 있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북한 인권 문제를 발굴하고 발표하면 북한도 그만큼 개선은 안 하겠지만 약간 개선하려는 눈치는 보고 있겠죠.” (전문가 68, 언론인)

이와 함께 한 전문가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어렵다면, 기아 문제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은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라던가, 참상, 이런 것은 (조사하고 알려야 한다)” (전문가 77, 신문방송학 교수)

한편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전문가들과는 다른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전문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때, 북한과 대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국제 사회에서 고

립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전문가는 북한에서 집단적인 낙태나 신생아 살해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는 소문을 믿지 않고 있으며, 그 전제 하에서 이와 같이 대답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북한의 인권을, 북한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족 화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고 북한 인권 문제가 악용 되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나 실태에 대해서 접근하고 북한을 국제 사회로 견인해 나가는 역할도 해야 하고, 정부가 하고 있는 화해 정책, 햇빛 정책 같은 것을 인권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에도 인권을 담당하는 기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처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생기지는 않을 테니까, 최소 그런 데랑 접촉을 해서, 햇빛 정책하고 유사하다는 것은 북한이 인권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막아주기도 하고, 북한을 설득해서 국제 사회로 인권이라는 문제를 갖고 나와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엔 인권위원회도 들어가서 발언하게 하고, 인권 회의를 한다고 하면 북한도 와서 이야기 할 정도로, 지금은 폐쇄되고, 미국이 이야기 하듯이 폭정의 전초기지처럼 돼서 인권이라는 것은 없는 나라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진정한 화해 정책을 편다면 끌어 들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남쪽의 국가인권위원회랑, 저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권으로 접근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쪽 입장이 북한 민주화 운동론적인 입장이 아니고 북에도 도움이 되고 한반도 평화나 화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권 문제를 잘 이용한다면 현명한 대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전문가 62, 변호사)

제7절 기타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문제가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앞에서 다룬 내용들 이외에, △여성 인권 △구금시설과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청소년과 아동의 인권 △군대에서의 인권침해 △국내 체류 조선족 동포의 인권 등을 언급하였다. 한편 △환자 정보 보호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등과 같은, 특이한 소수 의견이 있었다.

1. 여성 인권

여성의 인권문제를 언급한 전문가들은, 크게 △일반적인 성차별 △국제결혼여성의 인권 문제 △여성 관련 차별시정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합시키는 것에 대하여 말하였다.

성차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자세한 의견을 내지 않고 언급만 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국제결혼여성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한 전문가가 △결혼할 여성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태 차단 △외국인 신부와 한국인 남편에 대한 교육 △국제결혼여성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제공 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국제결혼 여성이다 하면 그걸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모집단계에서 불법적인 그런 걸 차단하는 거에서부터 실제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결혼해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야 하고, 외국인 여성도, 남성도 교육을 해야지 원만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제공하고 그런 걸 해야 하는데...” (인권·시민단체 4, 노동 부문)

덧붙여, 위와 같은 제언을 한 전문가는, 자신이 설명한 제언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두 맡아서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제결혼여성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인권·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안이 들어오거나 할 때 그런 영역들을 순위로 넣어 두는 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인권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국제 여성 관련 지원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런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지원을 요청할 때 그런 것이 한 영역으로 놓이는 거, 설정되는 거, 중요한 인권의 차원으로 놓이는 거, 설정되는 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인권·시민단체 4, 노동 부문)

여성 차별 시정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합시키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다수의 전문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시하였다.

“여성의 문제에 독특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 바라 볼 수 있거든요. 해결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인권·시민단체 46, 여성 부문)

2. 구금시설과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전문가들은 구금시설과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로 꼽았다

구금시설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1기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계속 소홀함 없이 구금시설의 인권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인권위원회 2기가 해야 할 것은 1기에서 많이 했던 거, 구금 시설 진정 사건이 주류를 이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고 봐요. 계속 해서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 그런 건 아니고.”(전문가 6, 법학 교수)

“제가 관심이 많아선지 그래도 구금시설 쪽이 많이 진정도 많고 권고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현실에서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는 구금시설 영역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 78, 법학 교수)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기소독점 문제, 경찰의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먼저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결한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형사 사건에서 원고는 검사고, 일반 국민은 피고의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 검사의 기소권 독점과 남용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피해자들은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은 진정서만 제출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지적하고,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첫 번째, 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 피해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개시 하거나 이미 수사를 종결한 인권 침해 사항을 통째로 제외한 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사, 차단 장치는 인권 피해를 인권위원회가 빠짐없이 구제해 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엄청난 기대를 짓밟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개선이 돼야 되겠고.” (전문가 60, 행정학 교수)

다음으로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에게 수사 내용이나 기록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찰의 경우는 수사의 기본 원칙인 피해자, 가해자, 고소나 고발, 진정인들에게 수사 내용 기록을 보여줘야 하지만 거의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의 노출이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당사자로서 그것을 볼 권리도 있다고 보이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시정돼야 하고, 더 개선되는 조치로서 인권위원회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권·시민단체 17, 지역 부문)

3. 청소년과 아동의 인권

전문가들은 △교사에 의한 인권 침해 △왕따 문제 △아이들의 폭력 문제 등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서 겪는 인권 침해를 언급하였다.

“가장 많은 것이 저는 폭력이라는 것은 선생님에게 당하는 폭력, 동료 학생에게 당하는 폭력, 애들이 돈 뺏어가고 그런 거, 집단 따돌림 같은 거, 교육의 이름 하에서 생각하는 폭력, 선생님이 체벌하는 거, 그런 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 43, 법학 교수)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전문가들은 학생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권 상담 또는 신고 센터를 학교나 시도교육위원회 또는 인권 위원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교에서 인권침해적인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간편한 구제 방법으로 학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지는 시도교육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런 차원에서 요걸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방법... 이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을 보면 제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전문가 40, 변호사)

“비밀을 잘 보장하고, 학생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접수 기관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그것을 인권위원회가 주도해서, 인권위원회 내에 두어도 되고, 학생 인권을 전담하는 센터를 두어서 학생들이 전화해서 선생님에게 이러이러하게 당했습니다, 다른 보통의 인권 침해 사례하고는 좀 다른 절차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선생님들의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에도 상처가 가지 않도록 그런 기구를 하나...” (전문가 43, 법학 교수)

한편 전문가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곳이 바로 학교라고 지적하였다. 선생님에 의한 체벌이라던가, 또래 그룹 사이의 힘 또는 연령에 의한 위계질서, 아이들 간의 폭력 등이 가벼운 문제로 취급되며 하나의 인권 문제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굉장히 일상적으로 예민하게 침해를 당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곳이 학교 아니냐는 거죠. 이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왜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맞고 그래도 별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딱 대학교 들어와서 몇 달만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고등학교 때 맞은 기억이 나 도대체 내가 왜 맞고 가만히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게 되지 않으면 인권위라든가 다른 어떤 영역으로 확산되기 어려울 것이고 실제로 사회에 나와 있을 때 겪지 못하는 많은 침해들, 일상적인 침해들이 학교에서는 침해받는 게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그래서 아동 청소년 침해 쪽에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인권·시민단체 49, 시민감시 부문)

“가정이나 뭐 초. 중. 고등학교처럼 학교나 군대나 이런 데처럼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탄압이 아니라 조직, 작은 그룹, 뭐 이런 작은 집단 안에서 이뤄지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연령이나 성, 아니면 힘, 이런 차이에 의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위계질서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전문가 40, 변호사)

“생활 문화 속에서 인권을 소중하게 해주는 거. 이를테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구타나 체벌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든가 그 다음에 왕따 문제, 아이들의 폭력문제도 아이들이 인권 개념을 생활 속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전문가 8, 문화예술경영학 교수)

4. 군대에서의 인권침해

전문가들은 군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로 꼽았다. 한 전문가는 대다수의 남성이 군대에 간다는 점에서, 군대 내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전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군대가 인권의 사각지대기도 하면서 너무나 젊은 나이에 국가에 봉사를 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도 받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군대에서의 인권이 시정이 되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군대의 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지 않을까, 현재 인분 사건에서 나오듯이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어 있을 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업무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와 군대,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학교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군대가 더 심각하고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군대를 개선하고 나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죠.”(전문가 12, 사무관)

군대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 △인권침해 사례들의 수집 △국방부 등의 주무부서가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평가 작업 등을 제언하였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나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주무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추적해서 평가하는 작업.”(전문가 9, 법학 교수)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군대 내 의문사 사건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사후 조사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군대, 경찰 그런데 가서 훈련 받다가 구타를 당했다, 자살했다는 의문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빈번하게 일어난다. 의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물론 인권 교육이 일반화되어야 하고, 군대, 경찰 등 훈련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근절되어야 되고, 사건

이 발생하면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모두 필요하다.”(전문가 14, 법학 교수)

5. 국내 체류 조선족 동포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선족 동포를 동포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고, 그것 때문에 조선족 동포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선 한 전문가는, 조선족 동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던 조상의 후손이라는 점, 조선족이 우리의 민간외교관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환기하며,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제언하였다.

“뿌리를 살펴보면, 일제에 항의했던 선조들, 대부분의 경우는 국내에서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지만 사실 중국에 갔다든지 만주별관에 갔다든지 하얼빈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중 일부분들은 미국에 갔겠지만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 한 분은 거의 없고, 사실 실질적으로 해왔던 것은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이거든요. 현재도 2백만 이상의 동포들이 살고 있잖아요. 소위 조선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도 앞으로 중국에 2백만 이상의 소위 민간외교관, 동시통역을 할 수 있는 외교관들이 있다고 보고, 또 그 분들은 사실 건국에 기초를 하면서 큰 역할을 했던 우리 선조들의 자손들이고 우리 형제들이란 말이죠. 저는 절대 이것에 대해서 불리한 조치, 차별적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 동포들 못지않게 대우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 26, 법학 교수)

전문가들은, 조선족 동포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외동포법 개정에서 부응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 △조선족 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노동시장에의 충격을 줄이면서 조선족 동포의 합법적인 취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순환제식 취업제도 등을 제언하였다.

“재외동포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위반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개정했고 개정안을 대통령이 공포했어요. 그럼 법무부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걸 안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 동포들은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도 체포당하고 추방당하고 있는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도 체포당하고 수감당하는 동포들이 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역사 속에

서 제 동족을 불법체류자라고 낙인찍고 체포하고 추방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법무부는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 55, 종교인)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먼저고 출입국상에서 풀어야 할 것이 동포 체류 비자를 제대로 발급을 해 주어야 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고... 일정정도 들어와서 순환제식으로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지금은 단순노무직이나 이런 정해진 몇 가지 직종에는 동포들이 취업을 아예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동포들이 들어와 있어도. 그 부분들이 국내 취업인구들, 만약에 취업, 국내취업이 없을 경우는 뭐 이렇게 일부 가능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노동시장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취업에 대한 부분을 열어주고 대신 여기서 순환 식으로 어느 정도 숫자 이상이 들어올 때는 먼저 들어온 사람이 교체가 된다는가 하는... 우리의 기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방법들을 해주면 취업문제는 해결이 되고” (인권·시민단체 35, 기타 부문)

한편, 한 전문가는 조선족 동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지만 해결 되지 않은 사례를 얘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였다.

“물론 동포 분들 중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던 분이 꽤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에 말했듯이 조사 실질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 체류문제로 제소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법무부나 그런 관리하는 노동부나 그런 정부부처에 먼저 질의 요청을 하고 정부부처에서 온 답변이라는 건 항상 뻔 하거든요. 비슷한 답변 원칙적인 답변 그런 일 없다는가 시정조치 하겠다는 그런 간단한 답변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형식적인 정부부처의 답변으로 일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권·시민단체 35, 기타 부문)

6. 학력·학벌 차별의 시정

전문가들은 학력이나 학벌이 낮은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학력이나 학벌에 의해 사람들을 차별하는 행태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특히 학벌 차별과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그러한 차별이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체념의 상태’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차별을 당해도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것이다.

학력·학벌과 관련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두 명의 전문가가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우선 한 전문가는 학벌(또는 학력)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학력과 학벌의 문제는 사회 권력의 문제예요. 공부 잘하는 만큼 보상받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승진해서 위로 올라가면 특정한 학벌 출신이 60%이상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후배를 키워주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인권위원회가 학벌 차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인권위원회에서 학벌 차별 금지법을 빨리 가속화 시켜서, 제정해서 구현해 내기를 바라죠... 법안 내용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위 직급에 대하여 학교 별로 쿼터를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권·시민단체 42, 교육 부문)

이에 반하여 다른 전문가는 학력이나 학벌에 의한 차별은 법률 제정에 의해 쉽게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다. 특단의 조치보다는 인권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학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지적하였다.

“법률적 문제 보다는 사회의 분위기 문제 것 같아요. 그건 각 기업이 학력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그런 것은, 이력서에 학력 란을 없애거나 출신대란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렇게 확대되고, 되어야죠. 능력에 의해서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하니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인권 교육을 통해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해 내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로 성숙해 가는 것과 비례하여 학력이나, 학벌 사회 이런 것이 해소될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권 의식이 성숙 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걸 해소하려고 특단의 조치 그런 것이 따로 있을까 싶기도 한데... 차이, 차별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하게 하고, 인권 의식이 높아지는 사회적인 성숙을 이루어내기 위한 꾸준한 노력 속에서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시민단체 24, 인권 부문)

7. 국가보안법 폐지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일을 높이 인식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진정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정책적 권고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여전히 국가 보안법과 관련해서도 한번 잘 했다고는 평가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권고라던가, 차별 문제로서의 진정 사건이라든가 침해 사건으로 진정된 부분에서는,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구제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 35, 변호사)

그리고 한 전문가는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보안관찰법, 집시법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나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국가 보안법 문제, 작년에 공고히 하기도 했지만, 현재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 보안법, 보안 관찰법, 집시법 그런 것들, 다시 말하면 국가 기관에 의한, 국민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인권위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구요.” (인권·시민단체 14, 인권 부문)

8. 그 밖의 소수의견

한 전문가는 환자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면, 이전 병원이 그 환자에 대해 갖고 있는 의료 정보를, 환자가 새로 옮긴 병원이나 환자 본인에게 모두 넘겨야 한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이견회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하게 돼 있어. 그런데 환자들의 기록은 어느 누구나 전부 다 노출이 되게 돼있어. 결국은 다 알게 돼. 그것도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서 내 기록은 내가 갖고 다니게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의 기록은 당신이 갖고 다니라는 얘기가. 당신이 A라는 병원을 가고, B라는 병원을 갈 거 아냐. 그럼 A라는 병원에서 갖고 있는 기록을 당신이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그리고 A라는 병원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것을 B라는 병원에 가져갔을 때는 당신 기록은 당신이 가져가서. 요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환자의 기록이 노출 안 되도록. 내가 애를 못 낳는다, 그런데 애를 기르겠다고 하면 입양하겠다는 얘기 아냐. 입양했다는 얘기를 당신만 알고 있게, 본인만 알고 있게, 그리고 해당되는 병원만 알고 있게. 병원을 옮겼으면 이 병원 것은 자동으로 없어져버렸으면 좋겠어. 당신이 이제 이 병원 안다녀 하고 B병원으로 갔으면 이 병원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쪽으로 가버리게. 이 기록이 없어지게.” (전문가 53, 의학 교수)

그리고 디지털 정보 격차의 문제를 언급한 전문가가 있었다.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세대와 거의 이용하지 않는 세대는 서로 공유하는 정보가 다르므로,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요새 신문 보도에도 나오는데, 20대와 30대는 80~90%가 인터넷을 쓴다, 모바일로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런데 40대 후반으로 가면 일체 퍼센트가 2~30%로 낮아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나온 인쇄매체를 통한 정보 밖에는 보지 못 하니까,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정보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면 흑인, 백인 정도가 아니라 언어를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 버릴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 한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아들딸이 알고 있는 게 달라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집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이 증폭되고, 그것이 각종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선거권에 나타나고, 그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18~9세기의 종교문제, 아랍세계는 현재도 종교 분쟁이 야기되지만, 그런 종교상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흑백문제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점 때문에... 문제점이 점점 불거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인터넷 정보 격차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하고 실천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법률가만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인터넷 관련 사회학자만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고, 정보에 관련한 사람만 들어가서도 안 되고,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망라해서, 아날로그 인권이 아닌 디지털 인권으로 새로 제기 되는 문제, 새로 제기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다 리스트를 뽑아서 정리해서 인권 의제로 만들어야죠.” (전문가 84, 변호사)

한편 한 전문가는 범죄피해자들의 문제에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여성 성폭력 피해자, 아동 학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범죄 피해자, 전통적으로 봐서 인권 접근을 할 때 정치적, 권력적 작용의 피해자에는 중점을 두어 왔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을 안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위원회가 그야말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인권을 침해받은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속하는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들인데 그들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여성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각기 다른 여성 단체나 아동 보호 단체 같은데서 좀 이루어졌지만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고, 조사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7, 행정학 교수)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신원확인서를 요구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해서 국가의 국민 감시 시스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여연대가 그전에 제시한, 국정원이 운영하는 보안 업무 규칙상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원확인서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이게 대단히 잘못 된 것이라는 취지로 결정을 내리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한 번 했습니다. 그 권고가 가지는 중요성을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게 뭐냐면 그 권고대상이 됐던 신원확인서라는 양식이 거의 모든 기업의 샘플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가족관계, 친구 관계 등등 쓰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연좌제에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취업하는데 왜 친구 관계를 회사가 알아서 뭐 할라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전혀 못 한다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게 중요하게 결정이 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현재의 남아 있는 국가의 국민 감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전문가 32, 노동 부문 연구원)

제8절 인권문제 전반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제언

전문가들은 인권문제 전반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 강화 △실태조사의 내실화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인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나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위의 권한과 조직의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일부 존재했다.

1. 교육과 홍보

전문가들은 인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과 캠페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활동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TV·라디오 등의 대중 언론 매체를 이용한 홍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홍보 △인권 관련 자료집을 정부 기관이나 도서관에 배치하는 것 등을 제언하였다.

“가장 좋은 것은 대중 언론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고, 특히 티브이나 라디오의 경우는 일정한 시간을 할애 받아서 그 경우에 10분이던, 1시간이던 고정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서 계속 알리는 방법. 때로는 신문의 경우는 광고성 홍보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해결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그런 기구가 있구나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를 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에 있을 때도 얼마든지 이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인권 침해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해진 기구나 기관이나 사람의 경우에도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대중 매체를 많이 이용하는 방법, 이비에스 같은 경우에 인권 교실 그렇게 해서 그걸 정기적으로 방영한

다던지, 그리고 인권 관련 자료집 같은 것을 전국에 모든 시설이나 기관, 도서관에 다 배포를 해서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제도가 있고.”(전문가 41, 법학 교수)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했던 인권 교육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홍보 자료를 보면 인권 교육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인권위는 말하고 있는데 상당히 자족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인권위에서는 그냥 강좌를 열거나 형식적인 접근, 인권을 거론한 것 자체에 만족을 하는 이런 측면의 강좌나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것, 특히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 지금 현재 성인들이나 이 사람들에 좀 이런, 윗사람들에 대한, 사회주도층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차별 대상자. 성적 소수자, 혼혈,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이 차이이지 차별이 아니다 라고 느끼게끔 자라게 하는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 현장감 있는 인권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모든 학교를 다 개별 학교를 들어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매뉴얼 내지는 지침서, 교육 책자 같은 거를 정말 잘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선생, 피교육자라고 하지요,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 교육을 강화 시켜야 합니다.” (인권·시민단체 40, 지역 부문)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과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흔히 도덕이라든가 윤리를 통해서 인권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그건 전무한 일이고, 인권에 관한 과목을 대학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 구청별로 인권에 대한 걸 의무조항으로 넣어서 아이들 기초교육부터 집어넣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시민단체 30, 교육 부문)

“학교 교육이라는 게 커리큘럼 속에 끼어있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그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소화해 주시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저희(단체)가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니까, (학교 선생님께서도 하여금 그 프로그램을 갖고 수업을 하게 하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날그날 내가 꼭 해야 할 일, 꼭 가르쳐야 할 내용도 소화하기가 바쁜데 그냥 하면 좋을 정도의 이야기, 좋긴 좋군요, 이런 것들을 몇 분이나 과연 능동적으로 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다고는 하시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책만 드러서는 절대로 안 할 거다, 최소한 능동적으로 하시도록 하려면 연수라도 해 줘야 한다, 그래야 당신과 직접 관련된 분야라도 빼서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인권·시민단체 26, 아동 청소년 부문)

그리고 △각 인권문제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교육 △지방에서의 인권 교육 강화 등의 제언이 있었다.

“인권 교육을 한다고 하면 관련된 집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들 고용한 그런 기업체, 예를 든다면 대기업은 아니고 거의 중소기업일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있는 경영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될 것 같구요. 성적 소수자라고 한다면 관련 기관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달리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 공무원 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구요 그리고 국제결혼을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민 단체에서 국제결혼 가정 폭력을 다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 문제를 전담하게 될 경찰이라든지, 재판을 하게 된다면 재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의 인권 문제...” (전문가 49, 사회복지학 교수)

“지방 소도시나 아니면 농촌들 이런 데는 정말 교사들이나 어른들도 이런 부분에 인권교육에 접근하기가 되게 상당히 힘든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좀 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나가서 다른 피교육생들에 대해 교육해서 이런 인권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서 정말 실천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좀 인권위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인권·시민단체 40, 지역 부문)

2. 실태조사

전문가들은 현장에 밀착한 실태조사, 특히 군대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가장 우리 사회적 약자, 소수자, 심지어는 교도소에 수감된 자들도 스스로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소소한 문제까지도 인권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현장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돼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가장 중요한 게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와 면밀한 연구와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 82, 복지 부문 연구원)

"또 경찰이나 군대 같은 데서 수사를 하거나, 군과 같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그런 곳에서 인권 침해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 단체 기합주면서 인분을 먹게 했다, 그런 것은 병산의 일각일 겁니다.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군인들 간의 성추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통상 우리가 개방되어 있는 사회의 일정 영역에서는 인권 침해 문제가 바로 노출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들의 인권 침해 문제는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는 정보 수집이 중요하죠.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으니까."(전문가 87, 헌법 재판 부문 연구원)

3. 전문성 확보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을 인권 영역별로 특화시키거나 각 분야의 인권·시민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민간단체에서는 합의된 의견은 아닌데, 업무분야가 좀 구별되고 전문성이 강화돼야 되는 방향을... 그 분야별, 집단별 특성들이 있으니깐 여성차별이나 성적 소수자들, 노인 문제, 노령 차별, 이주 노동자 문제 이런 거는 저도 장애인단체에서 일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다른 분야의 인권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조사관들이나 여기 전원위원회,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분들도 자기 전문분야가 좀 독자적으로 있거나 사람으로 볼 때 그 위원들인 거고 아니면 구조적으로 볼 때는 위원회 별로, 예를 들면, 여성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의 분과들이 좀 특화되는 것이, 특화되고 전문화되는 게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인권침해나 차별의 그 개선의 측면에서 볼 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인권·시민단체 48, 장애인 부문)

"지금은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주로 여러 가지 판단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면서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단체나 학계에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상시적으로, 특정 사안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인권위원회의 업무 부담도 줄이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권고나 결정을 할 때 좀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78, 법학 교수)

4. 국가인권위의 권한 확대 의견과 반대 의견

많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의 조직이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반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위원회'로서의 기능으로만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적으로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소수지만 존재하였다.

우선 전문가들은 인원부족 등으로 인해 진정 사항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덧붙여 쉼터나 인권보호 시설과 같은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인원에 그 규모 가지고서는 한국 내의 엄청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다 단속할 수도 없고, 요즘 진정서 내놓으면 몇 달 가야 연락도 안와요. 조사도 안하고, 대충 시정 권고를 내든지 아니면 각하결정을 내리든지 반려시키든지. 업무 자체를 소화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이란지 조직이 확대되고 좀 더 활동가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돼요.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소수자들이 보호를 요청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쉼터도 없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예를 들어 거기에 농성하러 왔다면 감당을 못해요. 그런 면에서는 교정시설이나 구금시설이 있듯이 인권보호시설도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 55, 종교인)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항이 아닌 점을 한 계로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국가법에, 국가 기구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 거, 이러이러한 것, 차별 문제 이러이러한 것, 정해져 있어서, 비정규직문제,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장애인들의 노동권,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걸 해결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현재로는. 그야말로 국가인권위원회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려고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확대 해 나가야 한다, 법적인 근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하는 것이 심각하구요. 실제적으로 비정규직이나 노동계 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진정 사안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기업 내에서 부당 해고 되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하게 된다면 웬만해서는 진정 사안이 안 되는..."(인권·시민단체 28, 인권 부문)

반면에 소수의 몇몇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문제제기와 국가 정책의 방향 조절 정도로 한정돼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이 장기적으로는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실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체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줘야 하고. 사실 위원회라고 하는 구조가 방대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문제 제기의 차원이어야 될 텐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구조도에서 보면 현재 영역이 지나치게 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쨌든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일정부분 역할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구가 방대해지기보다는 사실 그런 영역을 적절히 하면서 국가정책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회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은 자문기구 내지는 연구기구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58, 문화 부문 연구원)

“벌써 국가인권위원회가 2기로 접어들고 설립한지 꽤 됐는데 아직도 부패방지위원회 따로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재경부 산하에 있는 기관 외에도 금융감독원이라든지 하는 게 산재해서 여러 가지로 있다는 건 우리 행정조직의 효율성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차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현안으로 생각하고 그 활동을 정식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아마 2기는 아닐 거예요, 3기나 4기 정도 되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돼서 각 고유의 영역으로 있었던 전통적인 기관으로 합쳐지는 게 오히려 우리 국가의 인권상황이 나아지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전문가 88, 형사정책 부문 연구원)

5. 국가인권위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제언과 반대 의견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문제에 있어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그러나 선도적인 문제제기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기다릴 것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정확한 인권 논리를 제시할 것을 제언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을 정하고 나서야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기보다, 선도적으로 의제를 설정해 나갈 것을 제언하였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은 많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국가 보안법도 계류가 되어있고, 비정규직 문제도 현재 논의 중이고. 지금 인권위원회 활동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다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오히려 인권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전문가 36, 법학 교수)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뉴스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력 다툼의 소재가 되서는 안 되겠지만, 인권 문제에 있어서 정말 국가인권위원회는 뉴스 메이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소위 말하는 의제에 의한 설정 기능,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데, 의제의 설정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제의 설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회적인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정하는 의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32, 노동 부문 연구원)

그리고 한 전문가는 ‘사회권’과 ‘사회정책’을 구별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과 같은 정책 결정의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 없이, 인권에 대해서 발언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을 펴는 건 아니죠. 정책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인권위원회는 사회권 측면에서 봐야지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그건 행정부가 하는 일이죠. 인권위원회는 행정부가 아니에요. 독립기구로서 인권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야지 그걸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다 수용이 되죠. 경제적인 문제,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이거 다 수용해야 된다면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없죠.” (전문가 61, 장애 부문 연구원)

반면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전문가들은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해,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권위원회가 시대와 변화의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일을 게을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대의 흐름에 편승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사회 현상이 생기면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느끼며 판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합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반응을 지켜 본 후에 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보다 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할 수 있으며 또한 국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인권위원회는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 60, 행정학 교수)

그리고 인권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세부적인 지침 같은 거, 각각의 차별에 대한, 이게 왜 차별인지에 대한 논리 같은걸 정확하게 세우고 논리 같은걸 정립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차별 이라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말이죠. 갈등 요소들을 사회적 합의로 끌어낼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내는 거죠. 차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군가산점 제도 같은 것도 위헌 판결을 현재에서 하긴 했지만 이런 것도 분명히 인권위원회나 그런 데가 진정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커다란 화두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적인 논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별적인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이게 인권침해 논란이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게끔 하는 논리를 인권위원회에서도 제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전문가 69, 사회학 교수)

제5장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

< 결과 요약 >

■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정보 인권(28명) △외국인 노동자 인권(25명)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20명) △성적 소수자의 인권(15명) △북한 인권(13명) △외국인 인권(13명) △노인 인권(11명) △장애인 인권(7명) △환경 인권(6명) △과학기술과 인권(5명) 등을 꼽았다.

그 밖의 소수 의견으로 △개인 인권 간의 충돌 △국제인권 △기호의 권리 △재난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역차별 △일상생활 속의 차별 △외모차별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내용 설명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 인권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보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보격차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률 개정 및 관리 △개인정보 관련 정책 제시 △적극적인 실태 조사 △정보인권의 개념 확립 △사전예방 시스템 도입 △정보인권 보호 프로세스 마련 등이 제언되었다.

○ 외국인 노동자 인권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3D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에 따른 특정 부문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 △외국인력 관리제도의 미비로 인한 불법체류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미래에도 계속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응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자기 민족 중심적인 의식의 개선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회보장제도 절차의 개선 △외국인력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과 계획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재편, 경쟁의 심화와 같은 경제적·사회적 변화 때문에,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빈곤층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인권 감수성의 견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권고 △실태파악 △복지제도 강화 등을 제시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차별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한 전문가는 구체적인 문제 사례들을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빈곤층의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성적 소수자 인권

성적 소수자 인권문제가 대두되는 방식으로 전문가들은 △다양한 차별 영역과의 맞물림으로 인한 성적 소수자 문제의 확대 △성적 소수자 개념의 분화 △청소년 성적 소수자 문제를 언급했다.

성적 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제도개선과 의식 개혁을 지적했다.

○ 북한 인권

북한과 관련한 인권 문제는 첫째, 탈북자의 인권 문제 해결, 둘째,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루는 것에 대한 제안, 셋째, 통일 이후 이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탈북자와 관련해서, 탈북자들을 위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전문가가 있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다루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 △'내재적 접근법' 등을 활용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이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외국인 인권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조선족 동포 문제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재외동포 문제, 혼혈아동이나 국제결혼여성 문제 등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향후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로 언급하였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국내 체류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지적 △혼혈아동에 대한 관심과 교육 △국제결혼여성의 인권침해 구제 △재외동포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초조사 등 이다.

○ 노인 인권

노인 인권 문제는, 구체적으로 △빈곤 문제 △일상생활에서의 인권침해 △노동시장에서의 퇴출과 관련한 차별 △노인복지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일상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사전 예방 조치 등이 지적되었다.

○ 장애인 인권

사회적 약자로서 존재하는 장애인들이 사회가 변화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등 장애인 문제가 보다 크게 부각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 교육권 확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기반한 장애인 권리구제 업무 준비를 제언하였다.

○ 환경 인권

전문가들은 환경문제가 인권 문제에 속하는 이유로, △환경오염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인간의 권리와 관계가 있다는 점, △사람의 권리를 생물의 권리까지 확장시켜야 된다는 점을 들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환경권 개념의 연구 및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상위법 체계 개정 노력 △환경분쟁기구와의 교류와 정보 교환 △환경문제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것 등을 제언하였다.

○ 과학기술과 인권

구체적인 과학기술 관련 인권 문제로 △유전공학과 복제기술과 관련된 생명윤리, 인권침해 논란 △생체인식기술 발달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관련 사안들이 대두 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한 전문가는 현재 배아 실험과 인공 수정에 대한 규제가 매우 미비하며 이에 따라 거의 '생체실험' 수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생명윤리 논란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관련 법률 정비 △장기적인 인권 계획 수립 등을 제언하였다.

제1절 정보인권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28명의 전문가가 정보인권 사안을 지적했으며,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정보 인권 문제가 △개인정보 유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보격차 △저작권 과잉보호의 문제 등을 통해 표면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률 개정 및 관리 △개인정보 관련 정책 제시 △적극적인 실태조사 △정보인권의 개념화 △사전 예방 시스템 도입 △정보인권 보호 프로세스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1. 정보화 시대와 정보인권 문제의 대두

인터넷의 빠른 확산과 더불어 다양한 사유를 통해 개인정보에 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28명의 전문가들은 보았다. 주로 △개인정보 유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보격차 △저작권의 과잉보호 문제 등을 통해 개인정보 인권침해는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 개인정보 유출

먼저 개인정보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 유포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한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로는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나오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 정보 유출의 문제,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사적이고 경

제적인 활동들이 다 노출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터넷 같은데 거짓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허위사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본 자가 생길 것 같고.” (전문가 71, 심리학 교수)

2)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통합관리

또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통합관리가 국가에 의한 핵심적인 인권침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국가의 개인정보 통합시스템은 보다 심각한 차원에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부분들이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 정보들도 다 되고 있고, 금융 정보들도 그렇고, 신용불량자가 생기면서 개인의 신용 평가를 위해서 많은 개인의 금융 정보도 축적되고 있고, 조만간 전자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 선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축적이 되고, 여러 행정 기관에서 많은 개인의 정보들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인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전문가 44, 변호사)

“주민등록 번호를 불심검문 같은 것도 엄청난 인권 침해거든요. 주민등록 번호 하나로 나이, 성별 다 나오는 상태인데, 그런 거조차 일상적으로 잘못 만드는 상태에서 정보인권 문제가 대두되는, 주민등록 번호가 도용되고 남용되는 사태도 그런 걸로 만든 건데, 자신들의 기본 입장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새롭게 대두될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까 문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권·시민단체 25, 종교 부문)

3) 정보격차

한편,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를 떠나서 인터넷이나 통신기기를 통한 정보 접근 가능성의 차이로 인해 계층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적인 정보접근성으로 인한 정보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는, 인터넷이라던가, 각종 통신 기기나 그런데 접근할 가능성이 없는, 정보화 시대에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 9, 법학 교수)

4) 저작권의 과잉보호 문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정보공유권’, ‘정보접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새로운 저작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영리적으로 할 목적도 아니고 글이 좋아서 어디에서 퍼다 게시판에 옮겨놔도 새로운 저작권 법안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조치 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인권·시민단체 23, 외국인 노동자 부문)

2.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새롭게 대두될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법률 개정 및 관리 △개인정보 관련 정책 제시 △적극적인 실태조사 △정보인권의 개념 정의 △사전 예방 시스템 도입 △정보인권 보호 프로세스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1) 개인정보보호 법률 개정 및 관리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모든 개인정보 관련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공공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확대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 외에도 각종 현재 인터넷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이트까지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들, 여러 가지 법들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법률로 묶어서 일괄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지금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입안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되고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고민하는 걸로 아는데, 확대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 좀 묶어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싶습니다.” (인권·시민단체 17, 지역 부문)

2) 개인정보 관련 정책 제시

한편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책적인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아주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인터넷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기준이 모호한 것도 많고, 국회에서 제출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안 이런 것도 사실은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좋아진 것도 많지만, 아직 보완되어야 할 것도 많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그런 것은 정책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인권·시민단체 24, 인권 부문)

3) 적극적인 실태조사

또한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침해 사례의 규모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일단 국가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국가기관 같은 데서 회원가입을 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꼭 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현황 실태 조사를 확실히 해서...” (인권·시민단체 2, 인권 부문)

4) 정보인권의 개념 확립

무엇보다도 새롭게 대두되는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인권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신들의 기본 입장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새롭게 대두 될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까 문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원칙들을 정해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해석을 낼 수 있고, 국가에 건의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정보 인권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려면 정보 인권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념 정리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권·시민단체 25, 종교 부문)

5) 사전 예방 시스템 도입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와 같은 것을 실시함으로써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일부 사례의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시스템 정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한번 침해가 되면 전산망의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개인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금융 정보를 축적하고, 선거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거나, 재산 관련된 정보를 축적할 때는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하는 인권 영향 평가와 같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 44, 변호사)

6) 정보인권 보호 프로세스 마련

마지막으로 정보인권 보호 프로세스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보 인권 문제는 아마 상당히 대규모의 조직 인력 확보를 통해서 정보 인권 문제에 대한 입법 과정, 현황 조사, 연구, 대안 마련,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다 마련해야죠. 매뉴얼, 지침도 마련하고, 교육도 필요하구요” (전문가 7, 행정학 교수)

제2절 외국인 노동자 인권

25명의 전문가들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한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와 3D업종 기피 현상에 따른 특정 부문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 △외국인력제도의 미비로 인한 불법체류자 수의 증가이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편협한 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회보장제도 절차의 개선 △외국인력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과 계획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1. 향후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이유

25명의 전문가들이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3D업종에 대한 기피가 심해지고, 그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둘째, 외국인인력제도의 미비로 불법체류자가 계속 양산되고 그에 따른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는 점이 언급되었다.

1) 고령화와 3D업종의 기피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3D산업 등 사양 산업에의 취업 기피 현상을 지적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노령화 되고 있고, 그리고 3D 현상이라고 해서 사양 산업에 대한 노동력이 약화 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건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낮은 임금으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소비 수준이나 소득 수준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산업으로 일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일 것입니다.” (전문가 25, 사회복지학 교수)

2) 불법체류자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에 의해 불법체류자가 계속 양산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인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어차피 예상되는 문제지만, 예상 됐던 문제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 고용허가문제, 이 부분이 한시적 고용허가제로 인해서 그렇게들 많이 얘기 했지만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양성 하는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좀 더 심하게 우리나라에서 사회에서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인권·시민단체 40, 지역 부문)

2.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방안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편협한 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회보장제도 절차의 개선 △외국인력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과 계획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1)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기 민족 중심적인 의식 개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단일 민족이라는 미명 하에 자기 민족 중심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와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들과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지구촌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이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창피한 분야거든요. 우리 민족끼리만,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고, 유일한 혈통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지금같이 세계화 된 사회에서는 이게 약점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시각도 많이 교정해야 하고.” (전문가 76, 여성 부문 연구원)

“외국인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지구촌적인 사고, 예전에 30년 전의 한국 사회를 인식하는 공간 의식과 지금 전 세계가 이제는 30년 전 한국 사회 정도의 좁은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들을, 세계인으로서의 사고를 가졌으면 하는 게 중요하고.” (전문가 25, 사회복지학 교수)

2) 외국인 노동자와 관계되는 사회보장제도 절차 개선

한편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보험 처리라든가, 산재 보험 처리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한 전문가는 얼마 전 문제가 된, 직업병에 걸린 태국 여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유연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그 전문가는 사회 보험 처리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배타적인 의식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거주에 있어서의 활동의 편의성, 고용 보험이나 사회적 보장의 문제, 직업병에 걸렸을 때의, 이번에 태국 노동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미흡하고 거칠었죠. 외국에 대해서 얼마나, 어차피 그렇게 해주면서도 그 과정이 거칠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갖는 유연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한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점이죠...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회 보장적인 고용적인, 퇴직금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들, 그런 것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 25, 사회복지학 교수)

3) 외국인력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과 계획 마련

한 전문가는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 그리고 그 사람들을 활용한 국가 유지'라는 커다란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전문가는 외국인력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개방된 마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이것이 대부분 우리 한국 사회의 약점을 보완해서 한 단계 뛰어 넘는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 그리고 그 사람들을 활용한 국가의 유지, 이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이러한 것은 미국,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런데서 겪어 온 일이고, 프랑스의 알제리 인구에 대한, 독일의 터키 이주자에 대한 활용(이 그 예입니다.)” (전문가 25, 사회복지학 교수)

“이런 것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단순히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국가의 활력 유지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대처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 그 유입, 얼마나 수요가 될 것인가, 그 규모에 따라서 활동 분야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중장기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 25, 사회복지학 교수)

제3절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재편, 경쟁의 심화와 같은 경제적·사회적 변화 때문에,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한 전문가는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 해당 문제의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제 사례들을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1.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20명의 전문가가 실업자, 노숙자 등의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들은 이미 충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재편, 경쟁의 심화 등 이런 문제를 심화시킬 경제적·사회적 변화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 빈곤층의 인권 문제

우선 빈곤층의 인권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말한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겠다. 한 전문가는 국제 경쟁의 가속화,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으로 빈곤층이 대량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덧붙여 이 전문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제 경쟁이 가속화되고 경제 성장이 이제 좀 지지부진해지고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닥쳐오게 되면... 못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한 인간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고용을 이제 받지 못해 가지고 생계유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대량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문가 73, 교육 부문 연구원)

한편 빈곤층과 관련하여 특히 노숙자 문제를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최근에... 노숙자들이 양산되고...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적절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하고.” (전문가 35, 변호사)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문제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속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 한 전문가는 ‘휴일도 반납하고 퇴직금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언급하였다.

“신자유주의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인간이라는 삶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휴일도 반납해야 되고 퇴직금도 없이 12시간 넘는 장시간 고된 노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없어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권·시민단체 31, 민중 부문)

“노동 시장에서 급격하게 질서가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가 가장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인권·시민단체 18, 노동 부문 연구원)

2.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전문가들은 빈곤층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인권 감수성의 견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권고 △실태파악 △복지제도 강화 등을 제시하였고,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제언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언들은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 중에서 좀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보면, 한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빈곤층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인권 문제의 실제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때에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문제화'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를 위해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함도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켜내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문제들을 현실감 있게 구체적인 문제들을 드러낼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 보안에 관련된 피해 사례가 이렇고, 이런 것이 드러날 때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마찬가지로 약자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문제화되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드러낼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주기적으로, 조사도 하고.” (인권·시민단체 7, 지역 부문)

제4절 성적 소수자 인권

15명의 전문가가 성적 소수자 문제를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다루어져 온 단순한 성적 지향의 차이를 넘어, 다양한 차별영역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가 구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성적 소수자 인권문제가 대두되는 방식으로 전문가들은 △다양한 차별영역과의 맞물림으로 인한 성적 소수자 문제의 확대 △성적 소수자 개념의 분화△청소년 성적 소수자 문제를 언급했다.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의식 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적했다.

1. 성적 소수자 인권문제의 대두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로 전문가들이 지적한 성적 소수자 문제의 특징은, 점차 성적 소수자 인권영역의 측면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차별영역과의 맞물림으로 인한 성적 소수자 문제의 확대 △성적 소수자 개념의 분화 △청소년 성적 소수자 문제를 통해서 성적 소수자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것이라고 보았다.

1) 다양한 차별영역과의 맞물림으로 인한 성적 소수자 문제의 확대

전문가들은 각 차별영역마다 새롭게 대두되는 차별 문제들과 성적 소수자 문제가 접목되면서 보다 중층적인 성적 소수자 인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성적 소수자 문제의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저는 동성애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차별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 안에서도 새롭게 대두될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인권위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시급하게 반응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성적 지향 안에서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 성적 지향 안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 성적 지향 안에서 기혼 동성애자에 대한 부분들, 성적 지향 안에서 성 소수자 가족에 대한 부분들, 성적 지향 안에서 결혼에 대한 부분들. 이렇듯 많은 것들이 나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권·시민단체 11, 성적 소수자 부문)

2) 성적 소수자 개념의 분화

한 전문가는 ‘동성애자 인권문제’가 ‘여성동성애자 인권문제’, ‘남성동성애자 인권문제’, ‘트랜스 젠더의 인권문제’ 등으로 분화되면서, 성적소수자 인권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라기보다 기존에 하나로 취급되어 있던 문제가 좀 더 분화할 것이고, 그 분화하는 각 이슈에 대해 인권문제들이 개발되겠죠.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었다면 그 성적 소수자에는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소위 양성애자, 소위 무성애자, 트랜스 젠더 등등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무슨 성적 소수자가 들어가 있을 터인데 사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같은 선상에서 취급할 수가 없고, 또 동성애자이지만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와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이 갖고 있는 엄청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희석되어서 성적소수자 하나로 개념화 된 거잖아요. 게다가 레즈비언의 경우는 성적 소수자로 묶였을 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정말 성적인 문제인가, 안 그럴 수 있다는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개념의 분화들이 있을 것이고...” (인권·시민단체 45, 성적 소수자 부문)

3) 청소년 성적 소수자 문제

한편, 청소년 동성애자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사안으로 파악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청소년 동성애자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얻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것은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요새 청소년 동성애자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사는 호기심 차원이 많은 것 같고, 청소년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전혀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수용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동성애자 문제도 앞으로, 그게 또 활발하게 된 계기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 동성애자 삭제해라 라고 난 다음에 더 그게 활발해진 부분도 있거든요. 청소년 동성애자 문제가 동성애자 내부도 그렇고 앞으로는 좀 주목하고 확대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인권·시민단체 43, 성적 소수자 부문)

2.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이와 같은 성적소수자 인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이 제언되었다. 성적 소수자 인권문제의 경우 유교적인 한국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잘 수용되지 않는 특성이 지적되면서 인권교육을 통한 의식 개혁이 강조되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진 뒤에 실제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하나는 인권 문제 관련해서 사회 문화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이전에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한데, 그런 분야 하나하고. 실제로 그것이 개선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사실 사회 전반에 퍼진 문제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보고, 다만 그 문제 관련해서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인권위원회가 의식 개혁 차원에서 그런 활동들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분야에 문제의 심각성,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걸 제안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권·시민단체 1, 시민감시 부문)

제5절 북한 인권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문제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13명의 전문가가 북한 인권을 꼽았다.

북한과 관련한 인권 문제는 첫째, 탈북자의 인권 문제 해결과 둘째,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루는 것에 대한 제언, 셋째, 통일 이후 이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탈북자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을 위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 △'내재적 접근법' 등을 활용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이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준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1. 탈북자 인권 문제의 대두

전문가들은 탈북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탈북자 인권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탈북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의 지원 정책이 축소되고 있다며,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국가의 지원 정책도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는 실정이구요. 일단 전면적으로 정착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에서 정책 단계나 취업 여부에 따라서 정착금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재교육 기회라던가, 또는 다시 한 번 교육할 수 있는, 희망자에 한하더라도 다시 한 번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부족하고, 교육 기간 자체도 짧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경쟁사회에서 그대로 노출 됐을 때는 열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취업 교육을 확대 한다든가, 예비 학교를 구성, 운

영하던가... 그런 쪽에 교육 문제도 같이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86, 지역연구센터 교수)

2.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개입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 원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 △‘내재적 접근법’ 등을 활용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원론적으로 언급한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동포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적어도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지만 꾸준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가 21, 경찰행정학 교수)

“북한 인권문제가 계속적으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진작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죠.”(인권·시민단체 19, 시민감시 부문)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을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민족이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거론하고 북한의 개선도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인권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때도 북한

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문가 68, 언론인)

반면에 다른 전문가는 세심한 배려 없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자칫 북한의 오해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여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이 전문가는 ‘내재적인 접근 방식’을 기술적 접근을 위한 한 관점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송두율 교수가 이야기를 했던 내재적인 접근 방식 같은 것도 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사회주의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권을 보고 있고, 사회주의권에서 바라보는 인권은 무엇인지, 그 사람을 내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 자유주의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인권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연결 고리나 논리 없이 맞바로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문제제기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면 사회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사회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괴멸시키려고 하는 의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한 인권 문제라는 논란이 엉뚱한 쪽으로 번져서 굉장히 소모적이고, 그러다 보면 흑백논리나 여러 가지 이념과 사정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될 수가 있고... 제기 방식은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미세적인 연구를 거듭해서 아주 기술적으로 잘 해야 하는 것이지 단도직입적으로 북한 인권 어찌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제기 안 하느니만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84, 변호사)

3. 통일 이후 이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마련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이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준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탈북자 숫자가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늘어나고 있는데, 분단 상태가 계속 될 경우에 탈북자 문제도 새로운 인권 문제가 될 것이고,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출신, 이북 사람들에 대한 차별 문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준비가 있다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시민단체 22, 언론 부문)

제6절 외국인 인권

13명의 전문가들이 앞 절에서 언급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나 앞 장에서 다룬 바 있는 조선족 동포 문제 말고도, 전체적인 동포 문제, 혼혈아동이나 국제결혼여성 문제 등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앞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문제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은, △국내 체류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지적 △혼혈아동에 대한 관심과 교육 △국제결혼여성의 인권침해 구제 △재외동포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초 조사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국내 체류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지적

한 전문가는 국내 체류 동포에게 주어지는 주민등록증이 ‘버섯증’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실을 소개하며,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은행 통장을 개설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였다.

“국내 체류 중인 재일 동포들이, 중국 말고, 미국 재미동포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동포들이나, 국내에 유학을 와 있거나 사업으로 와 있거나 하는 분들이 인권침해라고 봐야 할 텐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동포들이 와 있으면 버섯증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증을 받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만약에 76년생이면 76 뭐뭐뭐 하고 뒷자리가 1이나 2, 3이나 4까지는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이 외국인은 5하고 6인가? 6하고 7로 구분되어 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는 가입이 안돼요. 말도 안 되는 번호가 되는 것이니까 그 시스템이 출국 관리나 이런 쪽에서는 관리가 되는데 생활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은행에 통장을 만들기도 힘들고, 핸드폰을 개통하기도 힘들고.”(인권·시민단체 35, 기타 부문)

2. 혼혈아동에 대한 관심과 교육

혼혈아동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코시아'라고 불리는, 동남아시아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농촌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하며, 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 전문가는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진 두 가지 국가의 문화 모두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혼혈아동들을 '지적 인프라가 낮은', 우리 민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량(棟梁)이자 자원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동남아 중심으로 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현재 한국인과의 혼인이 성사가 되고 제 2세가 성사가 되는, 흔히 코시아라고 하죠. 코리아 플러스 아시아라고, 코시아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친구들, 또는 아이들, 이런 혼혈, 우리가 지금 새롭게 혼혈에 대한 혼혈 다루는 명칭인데... 점점 더 특히 농촌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텐데 이러한 혼혈아이들, 코시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할 것 같구요”(인권·시민단체 40, 지역 부문)

“만약 학교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면, 인권위원회 차원에서의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와 자기 엄마 나라의 이중문화를 자기가 같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혼혈아들을) 미래의 동량을 키워낸다는, 어찌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국제화 사회라고 하지만 외국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전혀 없거든요. 완전히 배타성으로만 똥똥 뭉쳐있는 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의 지적 인프라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혼혈아들이)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원이거든요.” (전문가 79, 외국인 노동자 부문 연구)

3. 국제결혼여성의 인권침해 구제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동남아국 여성의 인권문제를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국제결혼 문화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여성들이 결혼 후에 무시와 차별,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동남아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여성들을 돈 주고 사오는 형식의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결혼문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그리고 한국 내에서 남편 집에서 그 여성에 대한 무시와 차별, 그리고 학대, 성적인 학대겠죠, 성폭행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굉장한 국가적 오명이에요. 여성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랑을 전제로 한 가정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돈 주고 필요한 식모와 필요한 성적 노리개로 사온다는 개념 이상이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전문가 79, 외국인 노동자 부문 연구원)

4. 재외동포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초 조사

마지막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가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한 전문가가 있었다.

“우리나라 밖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권적인 침해사례가 연구조차 안 되어 있거든요. 중국 동포, 재일 동포, 소련의 동포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정확한 인권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조차 연구가 되어있지 못하고 있는데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먼저 나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65, 법학 교수)

제7절 노인 인권

11명의 전문가가 노인인권 문제를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로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노인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다양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인인권 문제로는 주로 △빈곤노인 문제 △일상생활에서의 노인인권 침해 △노동시장에서의 퇴출과 관련한 차별 △노인복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노인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일상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점진적 접근 △사전 예방 조치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1. 고령화 사회와 노인인권 문제의 대두

고령화 사회가 되고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빈곤노인의 문제 △일상생활에서의 노인인권 침해 △노동시장에서의 퇴출과 관련한 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노인복지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등, 노인인권 문제가 중요한 인권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1) 빈곤 문제와 일상적인 인권침해

전문가들은 빈곤노인, 버려지는 노인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노인을 비하하는 태도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노인인권 침해 문제를 언급하였다.

“노인에 대한 인권부분이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특히 노인문제가 시급하다고 하면 노인 복지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말고, 버려지는 경우라든가 노인에 대한 언어적인 폭력이나 노인들을 비하하는 사람들의 태도들. (그게 문제이지요.) 그것에 대한 노인의 인권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고.” (인권·시민단체 10, 여성 부문)

2) 노동시장에서의 퇴출과 관련한 차별

한 전문가는 승진을 못한 사람의 경우, 50세만 되어도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에는 간접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안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본다면 60세 이상이 노령이 아니고, 준 노령이라고 할 수 있는 55세 이상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지금도 민간 기업에서 50세가 되기 전에 직위를 갖지 못 하면 누가 퇴직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퇴직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 보면 헌법 차원에서 보면 인다이렉트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다는 증거죠. 앞으로 대두 될 문제는... 세대 간의 차별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18, 직업 재활학 교수)

3) 노인복지 문제

전문가들은 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노인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면서 노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해주는 복지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것이라고 보았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노인의 인권문제도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 앞으로 점차 노인 인권문제가 사회적인 비중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구성 자체가 노인들의 상대적인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노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그 속에서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을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인권적인 요소들을 뽑아내서 노인들의 인권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전문가 89, 환경 부문 연구원)

2. 노인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한편 전문가들은 노인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사전 예방 조치 등을 제언하였다.

한 전문가는 일반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을 조사함으로써 인권침해 실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과거의 인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나오긴 했었는데 그건 시설 생활자 중심으로 한 것 같던데, 그거 말고도 일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어떤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31, 사회학 교수)

또 한 전문가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영역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예측되는 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조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발생 가능한 세대 간의 침해문제, 세대 간의 차별 문제를 점차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사실은 장애인 여성도 마찬가지로 세대 간 침해문제, 세대 간 차별의 영역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지역 사회의 참여,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영역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방 조치를, 한 단계 더 나가서, 차별이랑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리액션 같은, 긍정적인 조치들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아마 시작이 돼야 하고.” (전문가 18, 직업재활학 교수)

제8절 장애인 인권

7명의 전문가는 장애인 문제를 더욱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로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인권 문제가 지금도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서 존재하는 장애인들이 사회가 변화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등 장애인 문제가 보다 크게 부각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 교육권 확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기반을 둔 장애인 권리 구제 업무 준비를 지적했다.

1. 장애인 인권 문제의 본격적인 대두

전문가들은 장애인 인권 문제는 현재도 대두되고 있지만 향후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대두될 사안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아직도 장애인 인권 상황은 미흡하고,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인권운동으로 장애인 인권 문제는 성장해 갈 것으로 보았다.

“저는 일단 장애인 문제가 아마 앞으로는 심각하게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기되고 있지만 더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구요.” (전문가 27, 사회복지학 교수)

“앞으로 새롭게 대두될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지금도 많이 대두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흡하잖아요. 장애인 문제나 동성애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분야들에 대한 사람들이 점점 더 예전에는 자기들의 인권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처럼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가 갈수록.” (인권·시민단체 4, 노동부)

2.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장애인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이동권의 확보, 교육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굉장히 나아진다고는 하더라도 우선은 이 사람들이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권리조차도 이용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장현수 위원이 국회에 들어감으로 해서 국회 의사당이 비로소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고치게 된 거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시작 단계라고 봐요.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어디를 다니더라도 자기네들이, 식당을 가던, 쇼핑을 가던 얼마든지 자기들이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 49, 사회복지학 교수)

그리고 또 한 전문가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통과와 함께 장애인 차별 관련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 통합된 업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대응을 연구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법안에 제출되어있거든요. 제출되면 장애인 차별이 이뤄졌을 때 권리구제기관으로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인권위원회에 통합해서 관할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제가 법률안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인권위원회에서 이걸 하지 말고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기 힘들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인권위원회에서 통합 관할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그럼 이 업무는 무지하게 크다고요. 업무가 활동되는 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인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직상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잘 알아봐야 될 거예요, 연구를 해봐야 될 거예요.” (전문가 52, 법학 교수)

제9절 환경 인권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현안으로 6명의 전문가가 환경 문제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환경문제가 인권 문제에 속하는 이유로, 첫째 환경오염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과, 둘째 사람의 권리를 생물의 권리까지 확장시켜야 된다는 점을 들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환경권 개념에 대한 연구 △상위법 체계의 개정 △환경 분쟁기구와의 교류와 정보 교환 등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환경문제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량적 데이터 수집과 실태조사가 제안되었다.

1. 환경 문제의 대두

환경문제가 어떻게 인권문제로 재정의 될 수 있을까? 환경문제를 새롭게 대두될 인권문제로 꼽은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환경오염이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의 권리를 생물의 권리까지 확장시켜야 된다는 논리이다. 각각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문제도 인권으로서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어떤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접근 안됐던 거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 대기오염, 수질 오염 문제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삶의 질하고 연결이 되는데, 경제적인 발전에 비해서 환경 분야가 뒤쳐진 것 같고, 그 문제를 건드려야 하지 않을까,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이구요.”
(전문가 78, 법학 교수)

“물론 인권이라는 건 사람의 권리죠, 그런데 ‘사람만 권리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 우리 환경 쪽에서는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어요.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생물들의 권리는 인권이라는 범주를 아주 도식적으로 설정

하면 포함되지 않을 부분이지만 영역을 좀 넓히자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당연히 인간뿐만 아니고 다른 생물들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아닌 일반 생물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전문가 89, 환경 부문 연구원)

2.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 △환경권 개념의 연구 및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상위법 체계 개정 노력 △환경 분쟁기구와의 교류와 정보 교환 △환경문제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것 등을 제언하였다.

“인간 중심의 환경뿐만 아니라 일반 야생동식물까지 포함한 아주 넓은 의미의 자연생명에 대한 환경권까지의 개념들을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국가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으로서는 관철이 될 수 있게끔 상위법 체계들을 바꾸는 노력들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권위가 환경 관련된 기관들, 예를 들어서 환경 분쟁과 관련된 기관들과의 상당히 많은 교류와 내용의 획득 등이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권·시민단체 50, 생태환경 부문)

“환경 문제로부터 침해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 이런 경우에는 과학 기술적인 정량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내가 어느 정도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전문가 72, 행정학 교수)

제10절 과학기술과 인권

5명의 전문가가 과학기술과 관련한 인권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문제라고 보았다. 전문가들은 주요 현안으로 △유전공학과 복제기술과 관련된 생명윤리, 인권침해 논란 △생체인식 기술 발달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관련 사안이 대두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한 전문가는 현재 배아 실험과 인공 수정에 대한 규제가 매우 미비하며 이에 따라 거의 '생체실험' 수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생명공학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 논란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관련 법률 정비 △장기적인 인권 계획 수립 등을 제언하였다.

1.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권 문제의 대두

전문가들은 유전공학과 복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논란 또는 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

“생명 윤리 보호법도 제정되고 그랬는데, 그럴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공학을 이용해서 새로운 유전적 연구를 할 때 과연 그게 인권 침해를 일으킬 요소는 없는지,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할 때 과연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없을 것인가, 그런 문제도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인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문가 87, 헌법 재판 부문 연구원)

그리고 전문가들은 생체인식 기술이 편리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엄청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생체인식이라든지 홍채인식 이런 것처럼 인식기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게 안전측면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은 기술이지만 또 한편 그걸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인권침해일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 34, 변호사)

한편 한 전문가는 배아 실험과 인공 수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을 지적하였다. 배아와 정자, 난자에 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으며, 실험실에서 배아 관련 실험이 규제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인공수정과 불임시술소에 대한 내용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위임하는 등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착상이 됐건 안됐건 수정이 되면, 그것은 생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였고, 대리모에 대해서도 여성의 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배아 등을 규율하는 유일한 법인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착상이 됐건 안됐건 간에 수정이 되면 성장이 지속되므로, 배아를 생명으로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체실험을 허용하는 국가이다... 인간배아는 실험용 쥐나 마찬가지이다. 인간배아가 그냥 ‘단백질 덩어리’는 아니지 않을까?” (전문가 88, 형사정책 부문 연구원)

“그리고 인간의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자에 대한 제대로 된 규율이 없고, 인공 수정 등을 위한 불임시술소에 대한 규정도 없다... 난자매매와 대리모는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계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율하는 법이 없다.” (전문가 88, 형사정책 부문 연구원)

2. 과학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

한 전문가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방안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지적했다.

“그 다음에 생체실험이 허용되고 있는 게 국가 법률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 88, 형사정책 부문 연구원)

또 다른 전문가는 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장기적으로는 인권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생명권, 유전자, 생체 문제들도 앞으로 닥칠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또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인권 계획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바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인권·시민단체 6, 인권 부문)

제11절 기타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현안으로 소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개인 인권 간의 충돌 △국제인권 △기호의 권리 △재난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차별 관련 소수 의견으로는 △역차별 △일상생활 속의 차별 △외모차별 등이 있었다.

인권 침해 관련하여 새롭게 대두될 것이라고 예측된 사안은 다음과 같았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대(對) 사생활권과 같은 개인 인권의 충돌 △국제 인권 △기호의 권리 △재난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인권 간의 충돌

“과거에는 국가 기관 대 개인에서 나오는 인권 문제가 주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권 간의 충돌, 그런 부분에 대한 인권 문제가 제기 될 우려도 있다 하는 거죠. 즉, 한 사람의 사생활권, 다른 사람에게 안전을 보호 받을 권리에서의 인권, 이런 것들이 서로 대립될 때 그것이 국가 기관이나 권력 기관이나 힘센 조직이나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등한 기관, 같은 개인 간의 다툼, 이 관계 속에서 과연 인권이라는 것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갖는지, 조정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새롭게 대두될 인권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7, 행정학 교수)

2) 기호의 권리

“최근에 대마초 흡연의 권리 같은, 기호의 권리. 피지 말라고 권고하는 선이 아니라 처벌해 버리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지만, 기호의 권리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인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호의 권리, 문화의 권리, 표현의 권리 같은 거요.” (인권·시민단체 39, 시민감시 부문)

3) 재난으로 인한 인권침해

“그리고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넘어갔던 자연 재난이나 인적 재난, 테러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위원회가 새롭게 확대해야 할 업무 분야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구요.” (전문가 72, 행정학 교수)

차별과 관련하여 언급된 사안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할당제에 대한 문제 제기 △일상생활 속의 차별 △외모로 인한 차별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할당제에 대한 문제 제기

“그렇다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남녀평등에서 이제는 남자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구요.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채용되고 승진되어야 하는 거지 할당제를 통해서 한다면 그것도 역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교원은 여성이 90%가 넘는다면 서요. 그런 경우도 남성에 대한 할당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성교사들에게만 배우는 것 보다는 남성에게 배우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라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큰 차이 없다고 하지만 장관을 지역 안배로 해서 경상도 몇 명, 호남 몇 명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 담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거죠.” (전문가 28, 변호사)

2) 일상생활 속의 차별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생활의 행태 속에서 인권 침해 요인은 없는가. 호텔에 큰 차, 작은 차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많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인 변화만큼 큰 과제는 아니겠지만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 83, 재활학 교수)

3) 외모로 인한 차별

“용모와 관련된 차별들 있죠. 이거는 너무나 사회적으로 다 성형 열풍, 외모 지상주의 그런 것에 휩쓸려서 그걸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섞여서 다 거기 휘말려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새로운 방식으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외모, 용모와 관련해서.” (전문가 69, 사회학 교수)

제6장 사회권 분야에서 시급한 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처 방안

< 결과 요약 >

- 사회권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이 △빈곤층 문제(22명) △외국인 노동자 문제(16명)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14명) △장애인 문제(14명) △성적소수자 문제(9명) △아동과 청소년 문제(8명)를 꼽았다. 그 외에도 전문가들은 △환자와 관련한 인권 문제 △노인과 관련한 인권 문제 △토지수용자와 관련한 인권 문제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언급하였다.
-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내용 설명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빈곤층 문제
전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최저생계비 인상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언하였다. 한편 빈곤층에 이미 떨어진 사람과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인권관점에서 관련 부처의 업무에 대해 견제할 것 △빈곤층에 대한 실태 파악 △선진국 복지제도에 대한 검토 △존재하고 있는 복지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 외국인 노동자 문제
△산업연수제의 폐지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권 보장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향유권 배려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우리국민들의 차별적 시선 교정 △불법체류자 자녀의 인권보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에 대하여 홍보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임금차별 △고용불안 △노동3권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적으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확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발언과 검토의견 제시 등을 제언했다.
 - 장애인 문제
장애인 인권 문제의 대응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사적 부문에도 적극 개입할 것 △장애인들의 취업 문제에 집중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정부 부처에 장애인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 △정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 등을 제언하였다.

○ 성적 소수자 문제

대응방안으로, △학교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 관련 교육 실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죄나 차별을 막기 위한 법안 마련 △동성애자를 배려한 호적제도 마련 △성전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정신과 진단과 보험처리 실시 등을 제언하였다.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문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이유로,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인권 보호가 갖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 △아동의 인권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아동과 청소년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인권 침해 △학교 생활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 등이 지적되었으나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 기타

- 환자 관련 인권 문제

한센병이나 에이즈 질환자에 대한 편견 교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빈곤층의 의료권 보장에 대하여는, 상이한 의견들이 있었다.

- 노인 관련 인권 문제

△채용과 해고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을 해소할 것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노인들에게 문화생활을 제공해 줄 것 등을 제언하였다.

- 토지수용자의 인권 문제

생활 근거지와 공동체를 잃게 되는 토지 수용자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전문가들은 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입법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인권침해와 차별의 기준 제시 및 차별 기준 자료집 배포 △다수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 △인권·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사전 예방적 활동과 대안 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사회권 분야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 전문가가 있었다. 반면에 다른 전문가는 사회권 중 생활권 보호 문제가 재정(財政) 문제라는 점에서 인권위가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1절 빈곤층

22명의 전문가가, 사회권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빈곤층의 생존권 문제를 꼽았다.

빈곤층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최저 생계비 인상과 같은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 보장 △빈곤층으로 이미 떨어진 사람과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대책을 세울 것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맡아야 할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인권의 관점에서 관련 부처의 업무에 대해 견제하는 것 △빈곤층에 대한 실태 파악 △선진국 복지제도에 대한 검토 △존재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1. 빈곤층의 문제와 사회적 안전망

사회권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총 140명의 전문가 중 22명¹⁾이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을 꼽았다. 그리고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 생계비 인상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 보장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빈곤층에 이미 떨어진 사람과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한 전문가가 있었다.

1) 사회권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앞에서 물어본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문제'에 대해 대답한 것으로 대신하자고 한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래서 본 절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하여 실제로 대답한 전문가의 숫자는 140명보다 작다.

우선 전문가들은 가난, 그리고 빚 때문에 온 가족이 자살하는 일들을 지적하며,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는 소위 경제사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적 낙오자들 있잖아요. 그 빈곤이 자살로도 가고, 자기만 자살하면 되는데 아들하고 다 같이 자살하잖아요. 대책이 없거든요. 그 분들 빛이 있으면 그 빛을 탕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단 말이에요.” (인권·시민단체 16, 인권 부문)

“개인이 살다 보면 불행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불행을 만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은 갖추어져야 하거든요... 개인의 문제, 개인의 인권 침해 문제를 개별적인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를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빈곤층들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 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은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들까지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인권·시민단체28, 인권 부문)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이 최저 생계비의 인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책정할 때 문화생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덧붙여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맡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사회보장대상자들, 생계보호대상자들의 생계보호급여수준 제고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 (전문가 90, 법학 교수)

“빈곤문제에 있어서 최저 생계비 분야가 있을 텐데요, 최저 생계비가 국가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의 생계비를 어떻게 받을 거냐가 문제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서 과연 국민의 최저 생계비가 얼마일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밥만 먹고 잠만 잘 수 있는 부분이 인간다운 부분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문화생활이라던가, 어떠한 부분들이 해결돼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인권·시민단체 25, 인권 부문)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문제를 언급한 전문가가 있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도 4인 가족에 103만원인가 100만원인가 정도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근골격계의 장애를 앓는 사람은 일반 사람의 두 배의 생활비가 필요하대요. 약값만 해도, 한번 근육이완제 주사를 맞을 때 80만원인가가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잘 보조를 해주거나 하지 않아요. 2, 3백만 원 하는 자동 휠체어를 타는데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인권·시민단체31, 민중 부문)

한편 한 전문가는 차상위계층의 문제를 제기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범위를 넓힐 수 없다면, 별도의 또 다른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기초 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른 법적 대안을 내던지 권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폭을 넓히면 워낙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만일 그게 안 된다면 차상위층에 대한, 기초 생활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또 다른 법적 보호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전문가65, 법학 교수)

마지막으로 또 다른 전문가는 ‘빈곤층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알아야 하며, 그 프로세스의 각 단계 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거는 빈곤층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알고, 프로세스 단계별마다 국가가 개입해야 할 시점들이 어딘가, 이를 통해서 이미 빈곤층에 떨어진 사람하고 떨어지고 있는 사람하고 대책을 달리 세워야 되거든요.” (전문가59, 법학 교수)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앞에서 언급한 대응방안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였다. 전문가들

이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인권의 관점에서 관련 부처의 업무에 대해 견제하는 것 △빈곤층에 대한 실태 파악 △선진국 복지제도에 대한 검토 △존재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등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빈곤층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은 국가인권위원회만의 단독 업무가 아닌, 여러 정부 기관과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그 안에서 인권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사회 보장, 사회 복지 문제들은 보건복지부나 재경부나 여러 가지 걸쳐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인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다만 이것을 인권 문제로 바라보고, 일반 기관이 (빈곤층의 인권) 현안들을 화두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도록 논의하거나, 같이 개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것들도 해야 않나 보고, 그러려면 인권위 차원에서의 자체 조사나,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인권·시민단체6, 인권 부문)

한편 복지문제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편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지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한 전문가도 있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준이라는 게 최저생계비에 적합하게 구성돼 있는지, 물론 일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역할을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책결정기관일 뿐만 아니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집행에 편하게 정책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전문가52, 법학 교수)

그리고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빈곤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역할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래에서 소개할 전문가는, 빈곤층 대책으로 최저생계보장, 주거보장, 의료

보장, 고용보장의 네 가지를 언급하며 이를 위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단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덧붙였다.

“사회권하면... 다음의 4가지, 최저생계 보장, 주거, 의료보장, 그리고 고용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소수자들 문제와 마찬가지로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인권위원회가 그 인력을 가지고 실태 파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실태 파악 없이 추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접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는 일단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실태파악을 근거로 행정부나 입법부에 입법이나 그런 걸 건의하는 그런 역할을 인권위원회가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 11, 법학 교수)

한편 한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진국의 사회적 안전망 체계를 세밀히 연구하고, 그 자료를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우리가 현재 국제기구에 많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수행하느냐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나라의 사회적 안전망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걸 세밀하게 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현실화 시키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프랑스는 한 가정 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 수당, 육아 수당, 교육 수당, 아버지 실직되면 실업 수당, 가족 수당 다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힘들다고 해서 가정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인권·시민단체28, 인권 부문)

마지막으로 결식아동 도시락 사건과 같이 복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이 중간에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도시락 사건 같은걸 봐도, 국가의 손이 못 미치거나 중간에서 변질되는, 그게 실제로 문제가 안 되면 그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런 것이 이슈가 됐을 때만 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걸 체크해서 그런 걸 좀 찾아냈으면 좋겠더라고요.”(전문가48, 사회과학부 교수)

제2절 외국인 노동자

16명의 전문가들이 사회권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꼽았다.

외국인 노동자,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이 아니라 인권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산업연수제 △체불임금이나 산재(産災) 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권 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향유권 문제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차별적 시선 △불법체류자 자녀의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다만 각각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응방안으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제도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1.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사회권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16명의 전문가들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언급하였다. 특히 올해 5월 쯤,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의 관점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불법체류자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최우선에 두고 불법체류자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전문가들 중에서 한 명의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전문가는 우선 법무부가 단속의 관점에서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는 다르게,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다른 부처와 다룰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체류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관점에서만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인권위원회는 다른 부서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인권을 최우선에 두고 이런 문제들에 접근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하고도 다룰 수 있는 자세나 용기도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좀 돈을 풀어서 쓸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하고.”(전문가9, 법학 교수)

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로 △산업연수제 △체불임금이나 산재(産災)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권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향유권 문제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차별적 시선 △불법체류자 자녀의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다만 각각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원론적인 얘기만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선 산업연수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산업연수제 하에서는 불법체류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외국인력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지금 불법체류자가 있는데 새롭게 고용허가제나 산업연수제를 통해서 계속 또 들여오거든요. 그러면서 불법체류자들을 무조건 잡아서 내쫓고 새롭게 들여오겠다고 하는데 산업연수제나 지금 같은 제도 하에서는 계속 불법체류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인권·시민단체23, 외국인 노동자 부문)

다음으로 전문가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체불 임금이나 산재를 당했을 때 불법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 그 사람들이 체불 임금이나 산재라던가 당했을 때도 불법 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그러는데...” (전문가9, 법학 교수)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보호와 관련해서는, 한 전문가는 의료보험 소지 여부, 불법체류·합법체류의 여부를 떠나서 국가가 의료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인권, 내지는 의료권, 이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료권을 위해서는 저는 무조건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아팠을 때는 의료보험 소지 여부를 떠나서, 불법 체류, 합법 체류를 떠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16, 의사)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하는 전문가가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볼 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말하면 보통 이 사람들의 노동권에 집중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역사도 길어졌고 그 사람들의 노동권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이 사람들에게 사회권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제반을 생각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권 혹은 문화권에 대한 측면, 그 다음에 문화향유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그런 쪽의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인권·시민단체21, 외국인 노동자 부문)

다음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불법체류자 자녀가 교육의 기회와 사회복지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들이 피부색이나 외모를 보고 편견을 갖거나 선입견을 갖고 차별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국민 의식을 전환시키고 바뀌어나가는 전반적인 국민의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전문가55, 종교인)

“어른들이 불법체류자면 아이들도 당연히 불법체류자거든요. 그런데 불법체류자의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온 입장이다 보니까 부모가 제대로 못해주면 아이들은 당연히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히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도 발탁당하고 사회복지를 누릴 수 있는 복지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이들에 대한 인권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인권·시민단체20, 아동 청소년 부문)

한편 한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제도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언어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 인권·시민단체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언어 소통의 문제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찾아가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은가, 진정을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전문가6, 법학 교수)

제3절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권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14명의 전문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문제로 △임금차별 △고용불안 △노동3권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4월에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조항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문제로, 다수의 전문가가 임금에 있어서 차별 받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동일 노동·동일 임금의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하였다. 특히 한 전문가는 유럽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 오히려 임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차별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비정규직 문제를 단순한 개별 사업장에 대한 노사 문제 내지는 경제적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역시 동일한 노동을 투하 하는 데에 따른 이런 차별에 대한 문제를 차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좀 시정 할 수 있게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의 문제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좀 그 차별을 시정 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인권·시민단체 40, 지역 부문)

“똑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봉급이 절반 이하... 회사 측에서 받고 있는 복지도 절반 이하 밖에 안 되는... 유럽에서와 같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는... 거꾸로 회사 쪽에서는 자기네가 임시직을 자유롭게 쓰고 안 쓰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도리어 유럽에서라면 임금이 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더 나은 조건으로 쓰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네는 비

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더 좋다는 사람이 나올 만큼 더 동일하게 혜택을 주든가 이분들이 정규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지금처럼 회사가 임금을 깎아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전문가20, 의사)

다음으로,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차별과 더불어 이러한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비정규직 문제에는 우선적으로 고용의 문제가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규직화를 끊임없이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시민단체 34, 인권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또 다른 인권문제로,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불안 때문에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노동3권 행사 문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곧 기업과 관련한 것임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권고할 것을 제언하였다.

“비정규직이 노동3권을 갖고 있어야 혜택이나 법으로 보호되는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고용 불안 속에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나 권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곳이 국가 기관에 없으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걸 해야 하는 거고.” (인권·시민단체 24, 인권 부문)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4월에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법안 중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 발언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본질적으로 기업에게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무제한의 자유를 주고 다만 사후적으로 차별이 있을 경우 구제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사후약방문’ 식의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하였다.

“올해는 비정규직 법안이 4월 달에 처리가 될 건데, 그 처리를 둘러싸고 인권 단체, 노동단체까지 해서 정부 기관하고 심각한 대결 양상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비정규직 법안이 4월로 연기 되었는데 비정규직 법안이 담고 있는 인권 침해가 우려될 수 있는 조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언을 해 줄 필요가 있다.”(인권·시민단체24, 인권 부문)

“(비정규직 법안이) 보호 법안이라고 말은 하는데, 어차피 이제 노동 시장에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는 기업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고, 그럼에도 그걸 새로운 위원회 차원에서, 이전에 노동위원회에서 했던 일부 기능을 더 추가해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구제 신청을 하면 구제 조사도 한다는 사후적인, 양산을 전제하고 차별이 생기면 개별적으로 접수된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구제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사후 약방문 식이고, 근본적으로는 파견 노동자도 양산되고, 비정규직도 마음껏 쓰고, 쓰는데 차별이 있으면 시정해 주겠다 하는데, 사실은 실효성 없는 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전문가 35, 변호사)

제4절 장애인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권 분야의 과제로 14명의 전문가들이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였다. 장애인의 인권 보호 이슈들을 원론적인 수준에서가 아닌, 구체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제언들만 모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사적 부문에도 적극 개입할 것 △장애인들의 취업 문제에 집중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정부 부처에 장애인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 △정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적 부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 전문가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는가, 어린이 집에서 장애 아동을 받아주지 않는다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더욱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사적 부분에서의 차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사인 간에 있는 차별은 별로 규제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주가 내가 내 돈 주고 내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 맘대로 골라서 사람을 쓰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면 딱히 할 말은 없는 거죠. 아주 대기업 같은 경우 기업의 사회적 윤리라든가 이런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나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사인 간에 차별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식의 돌파구를 좀 마련해 줄 수 있기를...어린이 집 같은 데서 애들 안받아 주고 뭐 이러면 그 외에 장애 아동 하나 받아줌으로써 다른 엄마들이 뭐라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엄마는 참...사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개입이 좀 필요하다.” (인권·시민단체 48, 장애인 부문)

장애인 취업 문제를 언급한 전문가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의 30~50%가 차별 때문에 취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차별을 시정하여 장애인의 낮은 취업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고, 인권위원회가 그 법의 제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이죠.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차별이 실제로 통계를 보면 거의 절반 30-50%까지는 차별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차별 문제만 해결이 되더라도 장애인들의 생활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해결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도 살기 때문에 취업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27, 사회복지학 교수)

그리고 한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에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지침과 방안을 제시하고, 인권 침해 상황을 의무적으로 시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이 지침과 방안을 잘 시행했는지에 대해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문제는 전담 부서가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지만 장애인 분야를 돌아보면 보건복지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야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동부, 교육부, 문화, 보건복지 그런 여러 부서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도나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경우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해, 보건 복지부나, 교육부나 노동부 그런 부서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철저하게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상황을, 침해 상황을 발견해서 정리하고, 시정하게 만들어서 각 부처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나중에 잘 되었는지를 정책을 팔로우 업해서 평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전문가31, 사회학 교수)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신체장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한 전문가가 있었다.

“예를 들면 장애자들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은 요새는 소리가 커 졌어요. 우리가 하는 이런 정신 장애자들은 상대적으로 기가 죽어서 텅텅하게 나는데 자신이 없고, 그런데 대해서는 좀 목소리가 별로 없으니까...” (전문가 13, 의료인)

제5절 성적 소수자

9명의 전문가들이 사회권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꼽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학교에서의 동성애자 인권 관련 교육 실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범죄나 차별을 막기 위한 정책과 법안 마련 △동성애자를 배려한 호적제도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한편 한 전문가는 성전환자와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증 번호 변경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정신과 진단과 보험처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먼저 전문가들이 언급한 동성애자 인권 관련 교육은 첫째, 일반 청소년들로 하여금 동성애자를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교육과 둘째,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종류의 교육과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교육 과정 어디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 관련 내용을 교과과정에 포함하라는 권고를 낼 것을 제언하였다.

“학교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언급조차를 안 하니까, 교과 어느 부분에도 동성애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언급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교육을 받고 학생들에게 자기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겠죠... ‘동성애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소수자들도 배려할 수 있게끔 교육 과정을 짜라’ 라든지, 교육 자체는 어쩔 수 없으니까 ‘교과의 어떤 부분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그걸 넣어라’ 라든지, 그런 식의 제안이나 그런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인권·시민단체43, 성적 소수자 부문)

두 번째 종류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동성애자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인지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학교 교육이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외국의 연구 자료만 보더라도 청소년 동성애자들 아니면 성정체성을 인지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약물복용 문제에 있어서 에이즈에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등등 다양하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한다면, 청소년들과 동성애자들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정말 학교 안에서 올바른 교육이 무엇이고 성정체성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들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걸 교육인적자원부에 강제하고 그런 것들이 의무화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권·시민단체11, 성적 소수자 부문)

다음으로는,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나,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정책이나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나 동성애자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받는 차별 등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 정책들... 말하자면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그런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인권·시민단체45, 성적 소수자 부문)

동성애자를 고려한 호적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1인1적제’도 동성 부부를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1인1적제로 바뀌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가족중심이 호적제거든요. 그럼 동성부부는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 호적법 바뀌는 게 형태만 바뀐다고 생각이 들어요. 법이 바뀌고, 대한민국의 근간의 제도가 바뀌는 건데 그것들에 대한 기본입장들을 내야 한다, 그것이 동성애자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텐데 호적법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빠르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시민단체25, 인권 부문)

한편 한 전문가는 성전환자나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선 성전환자가 주민등록번호의 문제 때문에 취업 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좌절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성전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과 의

사들의 진단을 통해 호적을 변경해주고 그럼으로써 성전환 수술을 받을 때 보험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개네들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호르몬이라는 약을 계속 먹고 주사 맞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체형에 변화가 오면서 그 다음에 수술도 받기도 하지만 골다공증도 오고 위축이 와요... 여성다운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호적이 남자 걸로 돼있으니까 안돼. 또 군대문제 걸리지, 비행기를 못타지. 애네 들은 비행기도 못타.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단 말이야. 군대문제도 있지 예비군 문제도 있지.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냐. 그래서 그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미국 같은 데는 범죄 쪽이나 마약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데 당당하게 호적 변경을 해주게 되면 직업도 제대로 얻을 수가 있고 비행기도 제대로 탈 수가 있어, 해외여행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애네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않도록 아까 말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빨리 법으로 만들라는 얘기야” (전문가53, 의학 교수)

“요새는 여자애들이 남자가 되겠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네가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으로 가요. 아무데서나 수술 막 받고 와. 그런데 일시적 기분으로 한 번 수술 받고 나서 이걸 다시 복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건 정신과적인 진단이에요. 정신과 진단이 다 돈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 때 뭐라고 했냐면 정신과 의사 두 사람 또는 정신과 의사 두 사람하고 심리 분석하는 한 사람 해서 이 세 사람의 추천서를 갖고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이걸 갖고 호적을 변경해줘라. 호적 교정을 해주고 이 교정된 호적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수술을 받도록 해줘라. 호적이 변경됐으니까 수술을 받는 단계는 보험이 돼요. 지금은 보험이 안 되지. 호적이 변경됐으면 수술이 가능해진다고... 지금은 암시장에서 막 해요.” (전문가 53, 의학 교수)

제6절 아동과 청소년

8명의 전문가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권 분야의 과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인권 보호가 갖는 파급력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인권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도 지적하였다.

아동과 청소년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인권 침해 △학교 생활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 등이 지적되었다. 단,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1.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이유

8명의 전문가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권 분야의 과제로 지적하였다. 이 전문가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의 인권과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어린이의 인권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굴해내고,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인권을 잘 보호받고, 인권 교육도 충분히 받았을 때 나중에 그들이 커서 자신의 인권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어린이에 관한, 빈곤이든, 차별이든, 다른 성적인 성범죄가 되던 간에 어린이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보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어린이 보호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어느 정도 떨어진 한 부서가 되더라도 상당히 할 일이 많고, 다뤄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있어서 어린이 문제는 좀 언제든지 뒷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런 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하면서...” (인권·시민단체3, 민족/평화/통일 부문)

“청소년 인권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만 이후에 다른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도 보호 될 수 있다. 이거는 왜냐면 사회 구성원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으면 당연히 소수자나 또는 여성, 장애인이던 계속 인권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 미래 세대들의 인권 교육이나 그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나.” (전문가15, 심의관)

2.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문제

전문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침해 문제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인권 침해 △학교 생활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 등을 지적하였다. 단,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우선 종교 문제와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강의석 군의 예를 들면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강의석 군이나,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인권 탄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인권위원회가 개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권·시민단체5, 생태 환경 부문)

학교생활 규정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는 등의 일은 인권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지나친 지도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다.

“용의·복장 규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무차별하게 아직도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밀린다는 지. 머리 긴 아이는 그 몇 년 동안 길렀

던 머리를 그냥 반을 싹둑 자른다면,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선진국이나 인권의식이 형성된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학생은 우리사회에서 약자에 해당이 되니까 교사에 비해서.” (인권·시민단체38, 교육 부문)

제7절 기타

앞에서 언급한 인권 문제만큼 많은 수의 전문가가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고려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의견을 여기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 의견들은 첫째, 환자와 관련한 인권 문제 둘째, 노인과 관련한 인권 문제 셋째, 토지수용자와 관련한 인권문제이다.

첫 번째, 환자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한센병이나 에이즈 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교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생존권 보장의 관점에서 돈 없는 사람의 의료권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되, 그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전문가가 있었다.

두 번째, 노인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에서의 노인 차별 해소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노인들에게 문화생활을 제공해 주는 것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토지수용자의 인권 문제를 지적한 전문가는, 생활근거지와 공동체를 빼앗기는 토지수용자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1. 환자 인권

전문가들은 한센병이나 에이즈 환자와 같은 특수 병력자들에 대해, 일반인이 편견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편견을 교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특히 한센병력자가 반세기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차별을 받아 왔음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한센 병력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특수 병력자들, 한센병이나 에이즈 그런 것처럼 사회적 편견이 심한 (질병이 있는데, 이러한 편견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인권·시민단체39, 시민감시 부문)

“한센 병력자가 반세기 이상 사회와 격리되고 차별되었는데, 그걸 언론이나 그런 것을 통해 수없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을 계몽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해 왔는데 아직도 일반인들의 차별 의식이나 편견은 아직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에요. 인권위원회에서 단지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 보다는 시급하게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실질적인 정책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82, 복지 부문 연구원)

한편 의료보호와 관련하여,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아픈 만큼 치료해 주는 의료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돈 없는 사람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국가경쟁력의 강화 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 의료보호를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희귀 난치병, 병은 걸렸는데 국가의 의료 보험 체계가 미비해서 제대로 안 고쳐지고 있는 병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돈 낸 만큼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해 주는 사회의 의료 시스템, 아픈 사람 방치하는 게 가장 큰 인권 침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인권·시민단체39, 시민감시 부문)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를 인권위원회에서 과연 기여해줄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력, 의료시스템, 의료제도 해서 이런 거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국가경쟁력이 커져야지만 공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텐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적 약자인데 돈이 없으니까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중국 가서 제일 좋은 콩팥 골라잡아서 신장 이식을 받고 오고. 돈 없는 사람들은 만날 국립의료원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서 언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낼 수가 있는 건지.” (전문가 53, 의학 교수)

2. 노인 인권

우선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관련한 노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채용하지 않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규정하였다.

“저는 관심 있는 게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노년 인구에 대한 차별도 굉장히, 일자리에서 차별을 한다던지, 먼저 내보낸다던지, 나이가 들었다고 안 뽑는다던지 그런 게 있을 거구요.” (전문가57, 노동 부문 연구원)

그리고 소일거리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노인들이 보람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제언한 전문가가 있었다. 이 전문가는 특히 인터넷 교육을 그러한 정책 중 하나의 예로 제시하였다.

“노인들이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야 하는데 집에서 며느리 얼굴 보기에 여러 가지 체면이 있으니까 시내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데 대체로 보면 종로3가 쪽이나 종묘 앞에서 잡담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별 의미 없는, 시간 죽이고, 시간 때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의 문제를 다 담당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 교육 같은걸, 이것도 인권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인권 문제인데, 그런 걸 착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77, 신문방송학 교수)

3. 토지수용자 인권

한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많은 개발 사업 속에서, 생활 근거리에서 쫓겨나고 그동안 만들어 왔던 공동체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토지수용자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토지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체가, 경제적 침체로 인해서 개발을 많이 얘기 하고 있는데 도시가 개발이 되던, 주택이 개발이 되던, 아파트가 건설이 되던 이런 상황 속에서 원거주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한 인권적 침해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철거민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텐데, 이것들이 이전에는 철거민이라고 하면 아주 영세한 달동네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로만 인식이 되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농토를 갖고 있거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갖고 있는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동네의 한 부락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뤄서 대대적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도심지 개발을 하고 도시 계획이라는 이름 하에 토지를 수용하고 이러면서 생활의 근거지를 박탈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 나타나는 원주거민에 대한 침해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 왔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고 재산이 있으니까

이런 측면보다는 좀 그래도 기본적인 자기들의 행복추구권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들이나 그 정책을 수립 할 때에 있어서의 좀 의견 수립 과정, 이런 측면들 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님 정부 당국에서 좀 고민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시민단체40, 지역 부문)

제8절 사회권 전반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제언

전문가들은 사회권 분야에 속하는 구체적인 인권 문제가 아닌, 사회권 보장 전반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많은 제언을 하였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인권침해와 차별의 기준 제시 및 차별 기준 자료집 배포 △다수 국민들에게 쉽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인권·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사전 예방적 활동과 대안 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사회권 분야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 전문가가 있었다. 반면에 다른 전문가는 사회권 중 생활권 보호 문제가 재정(財政)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 방향에 대한 제언

우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의견을 말한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는 청소년 스스로가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법을 만든다고 하면 어른들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들의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런데 실제 청소년 관련 기관들 보면 청소년이 없어. 전부 어른들끼리 모여서 청소년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해서 다 청소년을 재단하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어떻게 하면 입법과정에 잘 참여할 수 있겠나...” (전문가, 법학 교수)

인권 침해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는, 한 전문가가 직접적, 간접적 인권 침해나 차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와 함께 그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직접적, 간접적 인권 침해나 차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그 기준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외국을 보면 그런 체크리스트를 개발해서, 노동문제라면 인사 담당자에게 자기 회사에서 과연 그런 인권 침해가 있는지, 차별의 소지가 있는지를 셀프 체크리스트를 하게 합니다.” (전문가18, 직업 재활학 교수)

한편 한 전문가는, 예컨대 동성애자 문제와 사형제 폐지는 다수의 사람에게 쉽게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동성애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수의 사람에 있어서는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사형제 폐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소수자,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사회 이슈화 시키는 그런 것들을 공론화 시키는 그런 것을, 방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39, 변호사)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인권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홀로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련 인권·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러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현재 있는 그런 단체들과 어떻게 긴밀하게 구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인권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인권·시민단체31, 민중 부문)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제기가 아닌 대안제시, 사후구제가 아닌 사전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저는 인권위원회가 해야 하는 것은 문제제기가 아니고 대안 제시라고 생각해요. 예방적인 것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2기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가장 거시적인 표현을 하자면 사후 부정적인 인권 활동에서 사전 예방적인 인권 활동으로 바꾸라는, 지금 교도소에서 침해됐으니까 시정하라 그런 건데... 인권위원회에서 강사들을 내 보내서 특강 형식으로 말도 하고 광고도 내고, 홍보도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절실한 그런 걸 홍보하고...” (전문가45, 검사)

2.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권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분야를 다루는 것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사회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돼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반면에 다른 전문가는 사회권, 그 중에서도 생존권과 생활권 보장은 財政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부분까지 다루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돌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제가 보기에선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들은 널리고 많지만, 오히려 이 질의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분야에 대해서 접근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거든요... 제가 볼 때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1기에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정말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정말로 정면으로 대항할 자세와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사회권 분야나 그런데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분야에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원칙을 세워줘라 그렇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전문가32, 노동 부문 연구원)

“이러한 사람들(비정규직 종사자나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인권보호라는 것은 곧 재정 경제가 따라야, 돈이 있어야 하는 문제인데, 인권위원회에서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해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능력에 대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안별로 인권의 이익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쳐야지, 그걸 생활권적까지도 보상해줘야 한다면 오히려 인권위원회 본연의 목적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소수자를 위해서 생활권적 기본권, 사회권까지 보장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장기적 대안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전문가26, 법학 교수)

제7장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 결과 요약 >

-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 정립을 논의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중도적이며 객관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가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한 긴장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세 가지 관점의 이유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지적하였다. 첫째, 23명의 전문가들이 현실과 근접한 인권·시민단체의 인권감수성을 활용하고 현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13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시민단체의 운동성과 활동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 중도적이며 객관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권·시민단체와 중도적이며 객관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였다. 첫째, 24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의 이념적 지형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8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의 규모와 성격이 지나치게 차별적이라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차별성을 감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협력 지원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인권·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은 감시와 견제를 통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10명의 전문가가 언급한 그 이유는 인권·시민단체가 이익단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다. 그들은 인권·시민단체와의 무분별한 협력 관계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인권·시민단체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대안들을 언급하고 있고, 둘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용적 차원에서 협력 방안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는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협력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 세 가지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시민단체의 협력방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마련할 수 있는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방안으로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사업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고 공개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것을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4명의 전문가들이 지역사무소 설치 등을 논의했고, 기타의견으로는 △인권 상담사 인증 체제 도입 △인권·시민단체 전담 인력 확충 △사안별 태스크 포스 운영 △인권·시민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참여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화 등을 언급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으로 운용적 측면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총 31명의 전문가들이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의 공동 사업 진행을 제언했고, 두 번째로 24명의 전문가들이 정보공유 및 정책 피드백을 위한 일상적 의사소통 채널 확보를 제언했다. 다음으로는 21명의 전문가들이 정기적인 공청회, 간담회, 세미나 개최를, 8명의 전문가들이 인권 교육 및 캠페인 공동개최를, 6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또 다른 6명의 전문가가 법제 연구 등을 통한 정책 대안 개발 지원을 제언했다. 기타의견으로 인권·시민단체를 통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도 등이 있었다.

-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은 다음과 같았다. 23명의 전문가는 인권·시민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했고, 둘째로 15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와의 선별적 협력을, 셋째로 9명의 전문가가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을 제언했다. 기타의견으로는 △국가와 인권·시민단체 간의 연결자 역할 담당 등의 의견이 있었다.

제1절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 정립을 논의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중도적이며 객관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가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한 긴장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1.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지적하였다. 첫째, 23명의 전문가가 현실과 근접한 인권·시민단체의 인권감수성을 활용하고 현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13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의 운동성과 활동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 인권·시민단체의 인권감수성 및 정보성 활용

140명의 전문가 중 23명의 전문가는 인권·시민단체의 현장성을 바탕으로 한 인권감수성과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권·시민단체와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그를 통해 인권사안들에 대한 다양한 리소스를 마련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시민단체가 갖는 장점이라면 현장, 인권 문제를 제시하는 시민단체의 장점은 인권 침해나 차별이 일어나는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인권위원회는 현장과 접촉하는 기회는 별로 없을 텐데, 문제가 제기 된 이후에 액션을 취하는 방법일 텐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단체들이 제기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문제 제기가 대부분 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리소스를 주는 거죠. 인풋 하는 그런 단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민 사회단체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현장성 같은 것을 높이 사고...” (전문가 83, 재활학 교수)

2) 인권 · 시민단체의 운동성 및 활동성 활용

또한 13명의 전문가들은 인권 ·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와는 차별적으로 지닌 운동성과 대 사회적 활동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 · 시민단체의 사회 운동을 기반으로 한 이슈화를 활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사안 구제활동을 펴는 방식의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제안했다.

“인권 피해를 구제하는 게 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해서 구제 자체 보다는 문제를 알리는 경우에는 (인권 · 시민단체가) 사회 운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은 그걸 이슈화 시키고 쟁점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것이 문제되고 이슈가 될 때 책임을 지고 인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 운동, 여성은 여성 운동하고 협조하고, 사회적 소수자 그런 문제는 그런 운동 단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세트 식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협조 체제를 갖추는 게 어떤가...” (전문가 48, 사회과학부 교수)

2. 중도적이며 객관적인 협력관계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 시민단체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 중도적이며 객관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권 · 시민단체와 중도적이며 객관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였다. 첫째, 24명의 전문가는 인권 · 시민단체의 이념적 지형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8명의 전문가는 인권·시민단체의 규모와 성격이 지나치게 차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차별성을 감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협력 지원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1) 인권·시민단체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이해 필요

24명의 전문가는 인권·시민단체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고 인권·시민단체와 객관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인권·시민단체의 진보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인권·시민단체와 연대할 것을 조언하였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념적으로 편차가 크고, 이념적 편차에서, 지금 인권 쪽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좀 굳이 이야기하자면 좀 진보적이고 그런 세력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인권위원회가 사회의 진보적인 세력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사회의 보수적인 입장의 사람들이 보면 마땅하지 않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 동안 과거의 역사 속에서 진보적인 운동을 했던 시민 단체들하고 인권위원회가 관계를 맺었고, 사실상 인권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도 과거의 그런 단체에 몸담은 분들이 많은데, 원론적으로는 시민 단체와 인권위원회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지만, 한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편향적인 협력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이라는 가치를 단순히 진보적인 그런 가치나 이념에 국한시키지 말고... 그래서 협력 관계는 필요하지만 인권위원회가 파악하고 협력해야 할 시민단체의 기준이나 연계에 있어서는 사고의 전환이나 대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 10, 법학 교수)

“시민단체가 지나칠 정도로 인권위원회의 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든지, 인권위원회의 인원, 조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든지, 또는 실제 업무 추진 상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압력을 받는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구요. 국가 기관으로서 인권위원회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추어야 되겠고. 다만 건전한 견제, 비판 세력으로서의 시민단체,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 관련한 사안을 홍보하고 정책적인 응원을 얻고, 공감대를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서로 공감대가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하고,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7, 행정학 교수)

2) 인권·시민단체의 규모 및 성격별 협력 지원체계 설정

그 다음으로 8명의 전문가는 인권·시민단체와의 객관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위하여 다양한 인권·시민단체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차별성을 고려하고 협력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식으로 비 제도권에서 성장해 온 시민단체도 있구요. 같은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가 있으니까 그걸 똑같은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각 시민단체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음이 생각하구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디에 주력해서 할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보다는 인권 단체들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인권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게 제도권에서 성장하던 비 제도권에서 성장하던 구별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점을 말한다면 성격에 따라서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것 하고, 협력 체계 구축 방법도 다르다는 거죠.” (전문가 62, 변호사)

“시민단체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특정한 분야의 인권별로,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권리, 경제문제를 다루는, 정치적인 권리나 시민적인 권리나 그런 것도, 그런 분야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 43, 법학 교수)

3. 감시와 견제를 통한 긴장관계

인권·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로 10명의 전문가들은 감시와 견제를 통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인권·시민단체의 이익단체적인 속성을 지적하며, 인권·시민단체와의 무분별한 협력 관계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긴장관계

10명의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 간의 본질적인 속성상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서로가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 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시민 단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완전한 협력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인권위원회는 국가 전반을 관장하는 인권기구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이어야 하거든요...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단체의 구성원들의 특정한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이상적인 논리를 펴지만, 농어촌 단체인 시민단체가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하고 도시 빈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는 이익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자체가 인권위원회의 콤플렉스라고 봅니다.” (전문가 45, 검사)

“시민단체와 내가 봤을 때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표현은 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와 인권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긴장관계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료화 되지 않는가, 국가 기관으로서 관료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단체가 또 제시하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소화해서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일해져서는 안 되고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기구로 역할을 해야 하고...” (전문가 6, 법학 교수)

제2절 인권·시민단체와의 구체적 협력 방안

지금까지 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인권·시민단체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대안들을 언급하고 있고, 둘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용적 차원에서 협력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는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협력 방안들이다.

1. 제도적 측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마련할 수 있는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방안으로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사업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고 공개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것을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4명의 전문가들이 △지역사무소 설치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인권 상담사 인증 체제 도입, △인권·시민단체 전담 인력 확충, △사안별 태스크 포스 운영, △인권·시민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참여,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화 등이 언급되었다.

1) 사업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 협력 및 공개적 행정처리

전문가 13명이 제도적 측면에서 사업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 협력 및 공개적 행정처리를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으로 꼽았다. 사업계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협력체계의 구축과 사업과정에 대한 공개적인 행정처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권·시민단체들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로젝트 사업이나 협력 사업들 시행 이전 초기 단계부터 내용이나 진행방식 까지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묻고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 양과 예산 규모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19, 종교인)

“국가인권위원회 2기가 이야기 한 것처럼 일의 기획, 상황, 집행 과정에서 함께 협력을 해야 하는데 최근 논산 훈련소 이물 사건, 똥사건, 인분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과정에서도 기획, 상황, 집행에서 함께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2기가 인권 단체와 협력을 하겠다는 것에 진의가 의심돼요.” (인권·시민단체 27, 인권 부문)

2) 지방사무소 설치

4명의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사무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전국적 단위의 인권 현안 처리를 원활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지방 인권·시민단체들과의 협력관계에도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지역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직까지는 지역과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국가 기구로 느껴지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해서 지방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좀 더 확대 되어야 되겠죠. 지역 사무소가 지역에 내려오면 좀 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그런 것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역 사무소가 아무래도 확대가 되면 지역 사회에 있는 엔지오랑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좀 더 효율성이 확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인권·시민단체 7, 지역 부문)

3) 인권 상담사 인증 체제 도입

인권·시민단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인권 민원에 대한 상담처리이다. 일부 전문가는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증 과정 구성과 그를 통한 보다 전문적인 인권·시민단체 상담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우선은 시민단체는 주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 시민단체가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는 또는 인권의 구제나 사회적 차별에 대한 문제들을 직접 다루고 있는 상담기관들이 시민단체들 속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권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갖고 시민에 대한 상담을 추진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교육을 시민단체들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나 보고요.” (인권·시민단체 19, 시민감시 부문)

4) 인권·시민단체 전담 인력 확충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와 협력하는 방안의 하나로 인권·시민단체를 전담하는 인력을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확충하여 상시 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특정 사안이나 특정 대상에 따라서 협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원만히 되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크게 차별도 조사하고 국가 기구 인권 침해도 조사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에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다 영역별로 세분화 되어 있어요. 여성, 장애인, 장애인도 거기서 노동권, 교육권, 교육 문제라고 하더라도 다양하구요.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인권에 관련된 각각의 영역에 전문화된 인원과 조직이 밀집 되어 있다면 시민 단체들과 행복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뭉뚱그려져 있으니, 시민 단체는 분야별로 나뉘져 있고... 일단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외부의 조직 역할의 세분화 그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권·시민단체 28, 인권 부문)

5) 사안별 태스크 포스 운영

지금까지 잘 활용되어온 사안별 태스크 포스팀 운영도 제안되었다. 이는 인권·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간의 사안별 협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예를 들자면 각 영역별로 태스크 포스를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권교육이나 이런 걸 하는데 참여를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사업을 할 때, 공개 모집을 통해서 참여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발전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 40, 변호사)

6) 인권·시민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참여

보다 적극적인 협력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개 인사과정에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과정에 대한 인권·시민단체의 불신이 담겨 있는 제언으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과정을 요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들의 인선 과정에서부터 시민단체, 국민들과의 교감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인선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인 추천과 공개적인 인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추천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전부를 공개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는 인권 침해와 차별의 잠재적인 피해자, 곧 국민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 온 인권 단체들, 광범위하게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 19, 종교인)

7)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화

마지막으로 인권·시민단체 출신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진 되는 것이 인권·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인권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의 경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게 정부 사이드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 사회단체, 시민 단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중화되지 않느냐, 정부 내의 시민 단체로서의 인권위원회가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요.” (인권·시민단체 5, 생태 환경 부문)

2. 운용적 측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으로 운용적 측면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31명의 전문가가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의 공동 사업 진행을, 둘째, 24명의 전문가가 정보공유 및 정책 피드백을 위한 일상적 의사소통 채널 확보를, 셋째, 21명의 전문가가 정기적인 공청회, 간담회, 세미나 개최를, 넷째, 8명의 전문가가 인권 교육 및 캠페인 공동개최를, 다섯째, 6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여섯째, 6명의 전문가가 법제 연구 등을 통한 정책 대안 개발 지원을 지적하였다. 기타의견으로 인권·시민단체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도 등이 있었다.

1)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의 공동 사업 진행

운용적 측면에서는 31명의 전문가가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각종 프로그램 등 공동 사업을 진행함을 통해서 인권·시민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사안별 정보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인권·시민단체와의 공동 사업진행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인권 상황의 정확한 파악에도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는 변호사 단체에 민변과 관련해 보면 저희가 서로 민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해서 교도소 구금시설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했던 걸로 아는데, 각 시민사회단체 특성에 맞는 인권 실태 조사,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인권·시민단체와 서로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조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용역을 주는 방식도 좋고. 사안은 비정규직 문제라면 민주노총이랑 하면 좋겠고. 미군 범죄와 관련해서는 미군 범죄 단체와 했으면 좋겠고, 노숙자 관련해서는 노숙자 지원하는 단체와, 그런 사안들. 국가 보안법과 관련된 양심수, 이러저러한 부분의 단체하고 민가협하고 해서 그런 쪽의 조사를 한다던가.” (전문가 35, 변호사)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하는 방안 식으로 일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권위원장이 시민 단체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인권위가 사사건건 업무에 대해서 인권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한해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 수는 있죠. 인권 침해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 내지는 차별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서 인권 단체와 인권위가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하는 방안을 선별해서 추진하는 방안,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인권·시민단체 14, 인권 부문)

2) 정보공유 및 정책 피드백을 위한 일상적 의사소통 채널 확보

인권·시민단체가 발굴해 낸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일상화하기 위한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24명의 전문가가 응답했다. 이는 긴밀한 관계유지를 바탕으로 한 유무형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공동 연구 조사, 대안 개발, 그런 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지금도 하고 있겠죠.” (전문가 37, 변호사)

“이렇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단체들을 발굴하고, 긴밀하게 이런 것들은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죠. 사각지대 있는 정보 같은 걸 공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직접 루트가 어떻게 있는지 인권위원회에 어떻게 제소해야 하는지 이런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시민단체가 해줘야 할 역할인 것 같아요. 이런 단체들과 뭔가 공개적이고 상시적인 통로 같은 걸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공유하고 반영하고 교류하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69, 사회학 교수)

3) 정기적인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개최

한편 정기적인 공청회·간담회·세미나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21명의 전문가들이 제안하였다. 사안별로 이루어져 있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사례소개, 정책 제안, 활동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하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맥관계를 통해서 교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단체와 사안을 갖고 그런 건 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꼭 어떤 사안이 아니라 저희는 이주노동자 문제, 비정규직 노조 같은 경

우는 비정규직 문제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간담회 형식이 됐건 만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들이 그 때 그 때 사안마다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단체들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제안들이 들어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제안들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그런 제안들이 인권위원회 활동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권·시민단체 23, 외국인 노동자 부문)

4) 인권 교육 및 캠페인 공동개최

또한 8명의 전문가는 인권·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인권교육 및 캠페인을 개최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인권·시민단체의 운동성이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및 홍보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예를 들자면 인권 교육 같은 분야에서는 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관련된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교육을 할 때도 시민단체들이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경찰들 교육시킨다면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인권 교육 분야에서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권·시민단체 2, 인권 부문)

5) 인권·시민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6명의 전문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일선의 인권·시민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이기 보다는 지원이겠는데,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할 것이고,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시민단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 인권위원회가 지금 200억 쓰거든요. 200억을 인권위원회 활동 하나도 안하고 200억을 풀어서 시민단체 도와주는 거 하고 인권위원회 200억 중에서 3억만 도와주고 나머지 197억을 인권위원회에서 쓰는 거하고 어느 것이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조직이라는 것은 비대화 되고 그러는데, 그런 공적인 역할 부분은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인권위원회가 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 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더 잘 한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협력이라기보다는 시민단체의 지원, 예산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해야 할 것 같고, 3억 이면 너무 그러니까 100억 정도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큰 이벤트도 하고, 지원도 받고, 시민단체가 너무 과도하게 인권위원회에 의존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전문가 81, 법학 교수)

6) 법제 연구 등을 통한 정책 대안 개발 지원

또 다른 6명의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단체의 입법 및 법률에 관한 비전문성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인권·시민단체의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법제를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는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향후라고 하니깐 마찬가지로 기존의 법률들을 다 뜯어고치는 것도 계속 있긴 있어야 되요. 그 현존하는 법률들이 다 폐기 전까지는 있어야 되니깐 끊임없이 피드백을 하고, 수정하고 현실에 맞춰서 가는 건 가는 건데 앞으로 새로 제정되는 법률들 있잖아요 입법절차와 관련해서 입법과정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되는 법률들에 관련한 협력체계가 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발표될, 새로 제정할...”(인권·시민단체 48, 장애인 부문)

7) 인권·시민단체를 통한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기타 의견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인권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이전에 일부 인권·시민단체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행해 보고 그 타당성을 미리 점검해 본 후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즉 파일럿 프로그램 형태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각 시민 단체나 기구들이 실제로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굉장히 좋다, 국가 전체적으로 이걸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럼 그런 단계에서 시행이 되도록, 그때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을 해도 늦지 않죠.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것은 시민단체들이 실제로 해 보도록 적극 지원해 주는 게 더 다양하고 활발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인적 자원에는 한계가 있을 텐데, 그거 넘어서는 것은

누가 할 거냐구요. 판단만 하고, 지원 좀 해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가도 하게하고, 거기서 일단 확인된, 정말 파급하면 좋겠다, 확산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경우, 그때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인권·시민단체 26, 아동 청소년 부문)

3. 관계적 측면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23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을, 둘째, 15명의 전문가가 인권·시민단체와의 선별적 협력을, 셋째, 9명의 전문가가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을 언급하였고, 기타 의견으로는 △국가와 인권·시민단체 간의 연결자 역할 담당 △인권·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관계 선행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1) 인권·시민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관계적 측면에서 가장 많은 전문가, 23명이 지적한 바는 인권·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성을 각자의 역할을 살려서 인권 증대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의견이다. 인권·시민단체의 인권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사안의 이슈화가 선행되면, 법률 및 정책적 대안 마련에 보다 우위를 갖추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도화와 법률화를 담당하는 식의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자기 위상 때문에 인권·시민단체, 노동단체하고 목표나 방식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제도권에 상당 부분 걸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그런 사회 운동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만들어 내고,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나의 권위를 회복해서 인권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권위를 가져서 그 제도권 안에 구체적인 제도나 행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 (전문가 33, 노동 부문 연구원)

2) 인권·시민단체와의 선별적 협력

관계적 측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견은 전문가 15명이 응답한 것으로, 인권·시민단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 선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인권·시민단체 지형의 다양성을 먼저 이해하고, 인권·시민단체의 옥석을 가려낸 후 선별적 협력을 이루어 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시민 단체들 중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단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 시민단체에서 10년, 5년간 활동을 벌여온 인권 운동의 내역을 검토한 다음에 그 내용들 중에서 사안별로 협력관계를 맺을 사안이 있으면 협력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일률적으로 하자말자 하기 보다는 시민 단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조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 왔고, 그 사람들의 구성원은 누구고, 시민 단체는 중요한 것이 한 대표자가 10년 20년씩 대표직을 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말이 시민단체지 시민 단체의 허울을 쓴 일종의 관변단체하고도 비슷해요. 시민단체들이 실제로 시민 단체라는 간판을 내걸고서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간판만 건건지,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전문가 84, 변호사)

3)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

9명의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가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기존의 협력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용역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동등하지 못했던 관계를 버리고, 동등한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인권·시민단체들의 역할의 폭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인권위가 일반 시민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자 할 때는 생색내기 형식이 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정한 시기에 은혜 베풀듯이 하는 방식의 협력사업들은 중단 하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의 파트너십 구성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시민단체들이 인권위만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권위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분명히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단지 인권위가 정확히 방향을 잡고 일을 할 때 시민단체는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권·시민단체 50, 생태환경 부문)

4) 국가와 인권·시민단체 연결자의 역할 담당

한편, 기타 의견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 행정을 다루는 국가기관과 인권·시민단체의 연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들이 자신의 민원 제기를 합리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제안을 하는 것이 미숙하고, 현실적으로는 시민 단체가 그런 것을 대변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단체가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해 나갈 때 그런 부분과 행정 기관 사이를 직접적으로 중재해 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구성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 44, 변호사)

제8장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의

국가인권위원회 통합 방안

< 결과 요약 >

■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차별시정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각의 업무별로 통합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였다.

■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차별시정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그 사유, 부정적인 견해와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 통합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두 업무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통합되어야 하는 공통적인 이유로 첫째, 14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적 차원의 접근 필요성을 꼽았고, 둘째, 6명의 전문가들이 업무 일원화를 통한 사안 효율성 증대를, 셋째, 6명의 전문가들이 행정비용의 간소화를, 넷째, 2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의식 환기 및 홍보효과를, 다섯째, 1명의 전문가가 접근거리의 단축을 꼽았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업무만 통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는 4명의 전문가들이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 침해, 차별감시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반면, 차별시정업무만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는 25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차별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 통합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두 업무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적인 이유로 첫째, 32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둘째, 21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및 업무 처리 역량 부족을, 셋째, 13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비대화를 지적하였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9명의 전문가들이 관련 부처의 축적된 노하우 손실 및 기술 인프라 부족을, 둘째, 5명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성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의 불일치를, 셋째, 2명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 공존이 있음을 말하였다.

반면, 차별시정업무 통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는 첫째, 5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분야 전문성 부족을, 둘째, 한 전문가가 차별시정업무 독점화로 인한 견제와 균형관계 소멸을 꼽았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할 것을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의 기능과 역할, 둘째, 운용적 측면의 기능과 역할, 셋째, 관계적 측면의 기능과 역할이 그것이다.

■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각 측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도적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기구와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첫째, 33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의 확대를, 둘째, 31명의 전문가들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확충을, 셋째, 18명의 전문가들이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기구화를, 넷째, 12명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률 개정 및 차별시정정책의 제도화를, 다섯째, 11명의 전문가들이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및 기준마련을 언급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지방사무소 설치를 통한 전국적 기구화를 제안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연 위치 및 역할의 내재화가 언급되었다.

- 개인정보 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로 운용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15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 및 권리구제를 지적했고, 둘째, 12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사례조사를, 셋째, 12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유형정리 및 개선책 제시를, 넷째, 6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보호 및 차별 예방 교육을, 다섯째, 5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유출방지 업무를, 여섯째, 3명의 전문가가 차별시정업무의 광범위한 범위확대를, 일곱째, 3명의 전문가가 발 빠른 대응, 개방적 자세, 홍보강화를 언급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개별사건 매몰이 아닌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 지향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 사안 간 공정한 판단기준 견지 △침해사례 구제만으로 제한된 소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관계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개인정보 보호기구와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7명의 전문가가 국가기관에 대한 내부조정자 및 감시자 역할을 언급했고, 둘째, 5명의 전문가가 관련부처와의 협의 조정의 역할을 지적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인권 총괄기구로서의 기관업무 통합 △인권·시민단체와 국가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지적하였다.

제1절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의 국가인권위원회 통합방안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차별시정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각의 업무별로 통합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였다. 먼저 전문가들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 통합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 통합에 대한 긍정적 견해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 통합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두 업무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통합되어야 하는 공통적인 이유로 첫째, 14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적 차원의 접근 필요성을 꼽았고, 둘째, 6명의 전문가들이 업무 일원화를 통한 사안 효율성 증대를, 셋째, 6명의 전문가들이 행정비용의 간소화를, 넷째, 2명의 전문가들이 인권의식 환기 및 홍보효과를, 다섯째, 1명의 전문가가 접근거리의 단축을 꼽았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업무만 통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는 4명의 전문가들이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 침해의 감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차별시정업무만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는 25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차별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 인권적 차원의 접근 필요성

14명의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차별시정업무를 인권적 차원의 전문기관으로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것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맡을 때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자체에 대해서 감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기관으로 독립되어 통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하는 곳에서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문제, 차별의 문제를 같이 수행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행정의 효율이라는 것은 행정을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행정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차별의 문제는 크게 고려되지 못하고 간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각 행정기관의 부수적으로 되어있는 민원 상담 기구 내지는 차별 시정 기구, 개인정보 보호 부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을 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적 측면에서 견제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전문가 44, 변호사)

2) 업무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업무통합을 찬성하는 전문가들 중 6명은 업무 일원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중요한 통합의 근거로 들었다. 한 기구에서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각 사안에 대한 다면적 접근이 가능하여지고, 그것은 인권구제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것이다.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각 기관이 나눠서 하는 것 보다 전문적인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을 하면 업무에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3, 법학 교수)

3) 비용의 간소화

또한 6명의 전문가들은 각 기구에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통합을 함으로써 간소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공공의 기구에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오히려 전문성이 강화된 분야별 전문가 시스템이 보장된다면 이와 같은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잘할 것 같아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거를 위원회를 각 저기 별로 다 따로 만든다는 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아까 계속 얘기한대로 국가도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구 공공의 기구라고 생각했었을 때 자원의 낭비가 너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무 행정이나 이런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거를 기구들마다 다 따로따로 설치해버리면 그 따로따로 비용이 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인권·시민단체 48, 장애인 부문)

4) 인권의식 환기 및 홍보효과

2명의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확실한 각인과 여론 환기를 하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한 역할로 지적하였다.

“그런 사회 속에서 개인들의 정보 보호를 국가가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연구가 되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정보 보호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단위 속에 들어가 있을 만큼 한 부서만큼의 사이즈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하게 될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 자기 자유권, 자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 특히 인터넷 안에서의 정보침해 사례에 대한 것,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는 못 드릴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심각하게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대두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주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달라고 하면 쥐버리는 사람들에게 아까 교육이 강조됐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인권위원회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인권·시민단체 10, 여성 부문)

5) 접근거리의 단축

한 전문가는 각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된다면 각 부처별로 전문가들이 다루던 전문 분야가 한 기구 안에서 다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나 차별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안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접근 거리가 단축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동안 아마 여성부 안에서는 남녀차별시정,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런 위원회 내지 법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노동부 안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다거나 징계 파면 조치를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구제해줄 수 있는 절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차별시정기구로 통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했었던 공무원 내지 단체 활동가들이 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저는 거리가 상당히 짧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권·시민단체 11, 성적소수자 부문)

6) 국가의 정보침해에 대한 감시 역할 필요

개인정보 보호업무 통합을 찬성하는 4명의 전문가는 사법부 등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을 찬성하였다.

“그리고 권력 기관에서 남용될 소지가 있는 정보유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인권위원회가 그 기능을 가짐으로 인해서 권력기관, 사법 기구라든지 공권력의 권력기관들이 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충분히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차별 시정 업무 그 자체만으로도 인권위원회가 일원화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인권·시민단체 17, 지역 부문)

7)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기구로의 전문화

25명의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로 차별시정업무를 꼽으며 이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이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다.

“차별 시정 업무라고 하면 최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인권위원회로 통합해서 하는 부분은 특별히 인권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아주 부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4, 법학 교수)

“차별시정기구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이어 나가는 측면에서도 인권위원회에서 통합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40, 변호사)

2.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 통합에 대한 부정적 견해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 통합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두 업무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적인 이유로 첫째, 32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둘째, 21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및 업무 처리 역량 부족을, 셋째, 13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비대화를 지적하였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9명의 전문가들이 관련 부처의 축적된 노하우 손실 및 기술 인프라 부족을, 둘째, 5명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성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의 불일치를, 셋째, 2명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 공존이 있음을 말하였다.

반면, 차별시정업무 통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는 첫째, 5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분야 전문성 부족을, 둘째, 한 전문가가 차별시정업무 독점화로 인한 견제와 균형관계 소멸을 꼽았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의 한계

가장 많은 32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의 한계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의 통합을 반대하였다.

“차별 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 만들어 질 때는 국가 기구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권고정도 뿐이 안 되는데, 차별 시정 기구는 그 정도 가지고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차별 시정 기구와 관련된 권한은 다른 법률에서 다루던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을 개선하던 그래서 지금보다 확대를 시켜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차별 업무나 개인정보 보호 업무라는 것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권한 가지고는...” (전문가 27, 사회복지학 교수)

2)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및 업무 처리 역량 부족

통합을 반대하는 21명의 전문가들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및 업무처리 역량이 부족하여 업무 통합을 이루었을 때 각 인권사안들을 소화해 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제점은 이로 인해서 인권위원회의 위원회가 늘어나고, 업무량이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중대하고 많은 업무를 인권위원회가 지금의 인원과 역량으로 잘 소화해 낼지 의문이다라는 거죠. 많은 업무를 확보해서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구요.” (전문가 60, 행정학 교수)

3) 국가인권위원회의 비대화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나치게 비대화 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13명의 전문가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역량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업무 차원에서의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존속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공급차원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차별 시정 업무를 행정부가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인권위원회가 갖게 된다면 인권위원회가 엄청나게 큰 조직으로 거듭날 것 같아요. 그럴 때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너무나 비대해지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 인력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상 같은 걸 밝혀내고, 정부라든지 그런데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 재정적인 지원, 물적 지원, 과연 인권위원회가 그렇게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회의적이에요.” (전문가 66, 법학 교수)

4) 축적된 노하우 손실 및 기술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통합에 대해 반대한 9명의 전문가는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특성상 기술 인프라, 즉 기술적 차원의 전문성 및 축적된 기술제반 사항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라고 보았다.

“인권위원회가 현재 고유한 독자적인 업무에 좀 더 집중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현재 여러 인프라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침해가 행해질 수 있는 인터넷이라던가, 또는 핸드폰 같은 통신이나 그런 기술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인권위원회 보다는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커버하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위원회에서 이거를 다루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전문가 10, 법학 교수)

“그렇다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 기구는 인권위원회가 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전문성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인프라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전문적 지식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오히려 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 보호만을 담당하는 그러한 부서 사이에 협조 체제가 구축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전문가 4, 법학 교수)

5)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성격과 국가인권위원회 성격의 불일치

5명의 전문가는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업무상의 특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이거는 그 상당히 국가기관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시정시키고 그 다음에 민간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깊숙이 개입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처럼 어떤 뭐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민감한 인권 감수성에 기초해서 예방책 개정을 하고 이런 거랑은 업무 성격도 좀 다르고요,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말하자면 굉장히 집행적인 기능이 강한 거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성질상으로 안 맞는 거 같아요.”(전문가 40, 변호사)

6)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 공존

2명의 전문가는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보호에 초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는 활용에도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장, 그거에 초점이 맞추어진 거니까, 정보라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이것은 보호되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은 자기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났을 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정보 보호에 관여할 수는 있는데 정보 활용이라는 부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구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22, 법학 교수)

7)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분야 전문성 부족

5명의 전문가는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 관련 업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별 시정의 문제를 건드릴 수 있잖아요. 여성부의 경우는. 그런데 이게 인권위원회로 가면서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나 그런 게 있겠느냐 그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인적 구성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인권위원회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분들이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바뀌는 거잖아요. 각 분야별 차별에 대한 전문성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피상적인 수준에서 차별 문제를 건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사회적인 갈등만 유발시키고 제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 69, 사회학 교수)

8) 차별시정업무 독점화로 인한 견제와 균형관계 소멸

한 전문가는 차별시정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될 경우 모든 차별 시정 업무가 집중됨에 따른 견제와 균형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여러 부처에 소관 업무로 남아있을 때와 비교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담할 경우 차별시정효과가 그리 개선되지 않아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어떠한 주체들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뭐 말은 뉘앙스의 약간의 차인데 통합 일원화 하면 왠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독점화 이래 버리면 안 좋은 거 금방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독점화 되고 정보가 여기에 집중되고 이러면 다른 애들이 할 수 있는 건강한 견제와 긴장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러면서 독주가 계속되거나 제대로 안 하거나 이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깐 없으면 없는 대로 ‘뭐 너희가 못하면 우리가 한다’ 이게 되는데, 자기가 하기로 해놓고서 제대로 안 하면 그건 참 큰 문제거든요.” (인권·시민단체 48, 장애인 부문)

제2절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차별시정업무의 국가인권위원회 통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긍정과 부정의 견해를 피력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할 것을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의 기능과 역할, 둘째, 운용적 측면의 기능과 역할, 셋째, 관계적 측면의 기능과 역할이 그것이다.

1. 제도적 측면

제도적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기구와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첫째, 33명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의 확대를, 둘째, 31명의 전문가들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확충을, 셋째, 18명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보호기구와 차별시정기구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기구화를, 넷째, 12명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률 개정 및 차별시정정책의 제도화를, 다섯째, 11명의 전문가들이 통합을 위한 구체적 제도 및 기준마련을 언급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방사무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것이 언급되었다.

1)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의 확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의 확대가 전제되어야지만 개인정보 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33명의 전문가는 지적했다. 특별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는 업무 통합을 이룬다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차별시정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데, 권고만 하게 되면 사실 직접적인 시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권고라는 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고, 특히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시정권고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차별금지 기본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들이 만들어져서 사인과 사인 즉, 개인과 개인간의 차별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그런 시정권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역할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권·시민단체 29, 장애인 부문)

2)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확충

개인정보 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또 하나 전제되어야 할 조건으로 31명의 전문가들은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가지 차별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주제들이 있어요. 나이 때문에 학력, 학벌, 또는 외국인 노동자나 장애우들, 여성,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분야 전문가들이 직원 중에 역할분담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사회적 소수자들 중에서 에이즈 환자 문제나 성전환자들 문제나 어린이들 문제나 각 분야별 전문 인력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서 그런 문제일 때는 심도 있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다각도의 조직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문가 55, 종교인)

3)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기구화

개인정보 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18명의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로의 통합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기구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매우 중요한 두 업무에 대해서 한 기구로 통합하는 것 보다 전문화된 독립기구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업무나 차별시정업무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라는 것은 앞으로 엄청나게 큰 분야가 될 것인데, 인권위원회에서도 신경 써야 할 문제지만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문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다 하고 싶으신 건가요?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요구가 늘어날 분야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특별한 전문성과 법적, 행정적인 대책을 가지고 기구가 따로 있어야만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71, 심리학 교수)

“개인정보 보호기구,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다른 인권 문제와 다르게 전문적인 측면이 있고, 또 그자체로 사실 이제는 다른 인권 침해 문제와 다른 기술과 연관성이나 정보 사회에 대한 이해문제라던가, 그런 전문성과 함께 그 자체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국가 인권 기구와 별개로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은 인권위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치하도록 인권위도 그런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런 전문적인 감독 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위 차원에서 개입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같이 협력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전반적인 정보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권·시민단체 37, 시민감시 부문)

4) 개인정보 보호법률 개정 및 차별 시정 정책 제도화

12명의 전문가는 개인정보 보호법률 개정 및 차별시정정책 제도화가 개인정보 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이라고 언급했다. 인권 침해나 차별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 권고와 시정 조치를 취하는 현재의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률을 개정하고 차별시정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까지 그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정보의 무작위한 부분들이 지금 인권 침해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법이 법률로 제정 되어야 하는, 그 법에 대한 권고도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입장들을 개진해주고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권·시민단체 34, 인권 부문)

5) 통합을 위한 구체적 제도 및 기준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로의 통합 이후 두 기구가 실제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통합 이후의 기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11명의 전문가가 지적했다.

“사실은 법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당연히 정보보호는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고,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법적으로 다 제도가 되어 있지만 실행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기구 설치가 된다고 해서 법적인 것이 바뀐다고 할 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다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과를 발휘할 때도, 기초 단계에서부터 이미 정보가 다 유출된 다음에 법이 마련되거나 그런 건 이미 소용이 없고, 기구의 할 일이 없어진다고 봐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가고, 남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홍보하고 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지 현재에 있어서 별로 발전된 방향이 없다면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별 시정 기구도 마찬가지로요.” (인권·시민단체 3, 민족/평화/통일 부문)

6) 지방사무소 설치를 통한 전국적 기구화

개인정보기구와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 이행과 역할 담당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2명의 전문가가 지방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인권침해나 차별의 지역간 격차를 축소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한 대처와 예방을 하기 위해 지방사무소 설치를 통한 전국적 기구화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언급되었다.

“대한민국의 한 50% 이상이 서울, 경기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차별이 가장 많이 발생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인권 침해나 차별은 지역간 격차가 큰 지역일수록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중앙에만 인권위원회가 있으니까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나 차별 문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역할과 기능은 정립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떤 체계에서 구현하느냐는 통합된 체계를 만들고 적어도 시도별로는 이와 같은 기구들이 체계 내에서 만들어 질 필요가 있다...

지방에 적어도 위원회의 하부 구조가 만들어져야 만이 이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18, 직업 재활학 교수)

7)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연 위치 및 역할의 내재화

2명의 전문가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차별시정업무를 통합하기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업무와 역할을 보다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본질적으로 각 업무의 통합기구화라는 것이 지향해야 할 점이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에 대한 분명하고도 체계적인 자리매김 자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가 처음에 설립된 목적이나 의의에 있어서 자리도 못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더 현재 영성함을 내실화를 좀 해 주어야지 자꾸 확장을 시킨다거나 하긴 좀 이른 감이 있어요. 이런 측면인데 향후에는 인권위원회가 명확한 자기 위상과 자기 역할을 갖게 되면 차별시정업무는 인권위원회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따로 독립된 기구로 봤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16-18개의 차별 무슨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충돌이 일어 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시정업무를 통합 되어서 가는 것이 맞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내실화를 시키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인권·시민단체 40, 지역 부문)

2. 운용적 측면

개인정보 보호기구 및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로 운용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15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권리구제를 지적했고, 둘째, 12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사례조사를, 셋째, 12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유형정리 및 개선책 제시를, 넷째, 6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보호 및 차별 예방 교육을, 다섯째, 5명의 전문가가 개인정보 유출방지 업무를, 여섯째, 3명의 전문가가 차별시정업무의 광범위한 범위확대를, 일곱째, 3명의 전문가가 발 빠른 대응, 개방적 자세, 홍보강화를 언급

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개별사건 매몰이 아닌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 지향 △사인 간 차별의 공정한 판단기준 견지 △침해사례 구제만으로 제한된 소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1)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 및 권리구제

먼저 15명의 전문가에 의해서 언급된 것은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인 시정권고 및 권리구제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악용됨으로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라던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차별이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있어서 권리구제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예방책이라던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제도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져야 하고, 두 가지 기능은 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개별 사례에 있어서 권리구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화하는 그런 기능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9, 법학 교수)

2)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사례조사

12명의 전문가는 주요한 기능과 역할로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 실태조사를 꼽았다.

“개인정보 보호는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인권위원회로 통합을 한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통합 자체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통합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통합을 하더라도 인권위원회가 속한 기구에서는 실태조사나 또는 일반인들 실행할 수 있는 기관에 통보해주는 정도, 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56, 법학 교수)

3)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유형정리 및 개선책 제시

또한 12명의 전문가는 각 현황에 대한 유형정리를 통해 적합한 인권 법률 개정안 및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기구와 차별시정기구의 중요한 역할로 지적했다.

“개인정보의 무작위한 부분들이 지금 인권 침해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법이 법률로 제정 되어야 하는, 그 법에 대한 권고도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입장들을 개진해주고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권·시민단체 34, 인권 부문)

4) 개인정보 보호 및 차별 예방 교육

인권침해 실태조사, 유형정리, 개선책 제시, 시정권고 및 구제와 함께 6명의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 및 차별 예방 교육을 중요한 역할로 손꼽았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권리 구제하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 기능, 교육 홍보든 정책 권고든 세 가지 정도로 외국은 다 그렇게 해요. 이런 것들이 어디를 중점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잘 수행되면 전문성을 가지고 좋겠죠. 아까 얘기했던 교육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 51, 여성 부문 연구원)

5) 개인정보 유출방지 업무

5명의 전문가는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기본적인 기능인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장치개발과 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보았다.

“개인정보 보호 기구의 바람직한 기능이라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유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죠. 개인정보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유통될 때 그것이 어떻게 인권 침해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사례를 잘 수습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계몽시키고...” (전문가 43, 법학 교수)

“역할들은 많죠. 일단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거고 두 번째는 도용을 방지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인권·시민단체 32, 언론 부문)

6) 차별시정업무의 광범위한 범위확대

한편 3명의 전문가는 차별시정업무에 대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구제와 요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에 대해서 진정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차별시정 업무는 사인간의 차별을 시정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차별의 기준을 마련해서 제가 외국인 노동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기업주로부터 사회권 노동법 침탈이 있었을 때 이걸 아무데도 진정할 곳이 없어서 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갔는데 이게 본인들의 조사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다는 것. 차별시정 업무에 대한 범위를 광범위하게 늘려서 구제해줄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권·시민단체 21, 외국인 노동자 부문)

7) 발 빠른 대응, 개방적 자세, 홍보강화

3명의 전문가가 통합이 되면 새로운 조직 편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혼란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발 빠른 대응과 함께, 개방적인 자세, 새로워진 기구 체계에 대한 홍보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금은 보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인권위원회, 노동부, 여성부 그 세 파트가 있었는데 인권위원회로 하나가 되면서 이용자 부분에서는 더 협소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요. 그 문제를 극복하려면 인권위원회가 더 발 빠른 대응,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개방적인 자세, 또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요. 예전에는 여성 문제는 여성부로 가겠구나 하는데 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저기 가도 여성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인권·시민단체 46, 여성 부문)

8) 개별사건 매몰이 아닌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 지향

기타의견으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특성상 개개의 사건이 접수되면 진정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개별사건에 매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안 간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을 지향하는 것을 기구가 지녀야 할 또 하나의 역할로 보았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 기구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굉장히 하나하나 개별 사건에 매몰되기 쉬운 영역이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물론 진정인이 진정하는 사건을 처리를 안 할 수는 없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진정인이 진정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안과 없는 사안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봐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정돼야 할 것들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주로 봤으면,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별 사건에 매몰되기 쉬운,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안 되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진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매몰되기 쉬운 분야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구요.” (전문가 37, 변호사)

9) 사인 간 차별의 공정한 판단 기준 견지

역시 기타의견으로 차별 시정이라는 업무는 사인과 사인간의 차별을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한 차별판단의 기준을 견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게 차별 시정이라는 것이 모든 차별을 없앴으로서, 차이를 다 무시해서 획일적인 사회를 건설한다, 그거하고는 달리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물론 부당한 차별, 그것이 부당한 차별인지 정당화 할 수 있는 차별이냐 하는 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겠지만, 그런 양 개념상의 차별 시정이 강제적인 합리화, 획일화를 다루는 당연한 의식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차별을 금지 하도록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로 들어가면 개입할 수 있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잘 하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알고 계시죠.” (전문가 87, 헌법 재판 연구원)

10) 침해사례 구제만으로 제한된 소극적 역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되면 오히려 그와 같은 일원화를 통해 발생가능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침해사례 구제라는 소극적인 역할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또 하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정보를 그 기관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는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적인 조사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개인정보가 더 유출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어떤 역할로서 한다는 건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첨단과학수사연구소나 사이버범죄 연구를 하는 곳, 아니면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측면이 뭐냐면 사이버범죄를 연구하면서 수집했던 사이버범죄의 혐의자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고유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활용하는 경우 또 하나의 인권침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건 상당히 소극적인 활동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예요. 누가 어떤 침해에 대한 사례를 얘기했을 때 그걸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대상 내용만 회복을 해주고 나머지 활동은 자제하는 게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기본적인 기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전문가 88, 형사정책 부문 연구원)

3. 관계적 측면

관계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개인정보 보호기구와 차별시정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7명의 전문가가 국가기관에 대한 내부조정자 및 감시자 역할을 언급했고, 둘째, 5명의 전문가가 관련부처와의 협의 조정의 역할을 지적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인권 총괄기구로서의 기관업무 통합 △인권·시민단체와 국가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지적하였다.

1) 국가기관에 대한 내부조정자 및 감시자 역할

전문가 7명은 국가기관 내부 조정 및 감시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기구와 차별시정기구를 통합할 경우 일원화를 통한 권력화를 방지하고 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시 통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가 국가기관에 대한 내부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기구와 차별시정기구의 통합을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어떠한 상황이 되든 국가기관에 대한 내부조정 및 감시의 역할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중층의 감시 통제 기능이 작동 되어야 하고, 이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층의 감시와 통제는 외부에서 작동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시민 참여형, 시민 통제형 모델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용 되어야 해요.” (인권·시민단체 27, 인권 부문)

2) 관련부처와의 협의 조정

5명의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존의 차별 업무를 다루던 부처들과의 협의 및 조정 기능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통합의 과정에서 기존의 업무를 관련 부처로부터 이관해 오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간주된다.

“특히 차별 시정 같은 경우는 일단 차별 시정에 대한 총괄 업무를 관장을 하되 기존의 차별 업무를 다루는 여성부등의 기관과의 협의, 조정 기능, 이 쪽에 좀 더 중점을 뒀야 하고, 기타의 차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정책, 교육과 마찬가지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전문가 7, 행정학 교수)

3) 인권 총괄기구로서의 기관업무 통합

기타의견으로 각 업무의 총괄기구로서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야할 것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것을 다 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해당되는 기관이나 단체들에 위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총괄 기구로서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분명히 자리 매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 시정 기구도 그렇구요.” (전문가 7, 행정학 교수)

4) 인권·시민단체와 국가 사이의 중재자 역할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기구, 차별시정기구는 인권·시민단체와 국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인권 전반에 대한 사회적 지형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거는 아까 말한 각종 정부 부서들, 복지부, 노동부, 법무부와 의 조율, 국가 기구가 하나의 시민사회단체가 반대도 하고 협의할 일이 많잖아요. 시민단체의 의견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중재하고, 코디네이트 해서 집행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적절한 선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가 83, 재활학 교수)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조사설문지(IV)

2005. 6

국가인권위원회
(주)한국리서치

— 목 차 —

1. 일반인 설문지	1
2. 전문가 설문지	65
3. 인권·시민단체 설문지	88

1. 일반인 설문지

국민인권의식 조사(일반인용)

조사구번호 - 가구번호 ID

안녕하십니까?

한국리서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인권의식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8조와 제9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모아진 설문지는 전국적으로 수집된 다른 설문지와 함께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리서치 전화 02-3014-1000, 02-3014-0085, 이메일 have21c@hrc.co.kr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5. 1 한국리서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19 한미빌딩 2-7층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응답자 주소						
응답자 메일						
면접원 성명		코드		면접일시		
검증원 성명				검증결과		
응답자 거주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응답자 성별	1) 남자			2) 여자		
응답자 연령	1) 15-19세 2) 20-24세 3) 25-29세 4) 30-34세 5) 35-39세 6) 40-44세 7) 45-49세 8) 50-54세 9) 55-59세 10) 60세 이상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질문

※ 먼저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던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1]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잘 모르고 있다
- ④ 전혀 모르고 있다

문2]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③ 대체로 심각하다
- ④ 매우 심각하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3] 선생님께서는 3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나아졌다
- ② 조금 나아졌다
- ③ 3년 전과 마찬가지로이다
- ④ 조금 나빠졌다
- ⑤ 많이 나빠졌다
- ⑥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4]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인권에 대한 침해나 차별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 순서대로 두 곳만 말씀해 주십시오.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군대
- ② 검찰
- ③ 경찰
- ④ 국가정보원
- ⑤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 ⑥ 요양원·복지원 등의 각종 복지수용시설
- ⑦ 방송 및 언론기관
- ⑧ 기업
- ⑨ 학교
- ⑩ 기타

문5]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 집단을 두 곳만 말씀해 주십시오.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수용자
- ② 각종 복지수용시설의 수용자
- ③ 장애인
- ④ 비정규직 노동자
- ⑤ 여성
- ⑥ 외국인 노동자
- ⑦ 노인
- ⑧ 아동
- ⑨ 청소년
- ⑩ 동성애자
- ⑪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 ⑫ 군인
- ⑬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 ⑭ 기타

인권의식에 대한 질문

※ 다음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여쭙보겠습니다. 아래 각각의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6] 여성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한 비율의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7]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8] 민간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9]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0] 장애인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납세, 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1]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예배 등 종교 의식을 학생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2]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검문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3]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4] 동성애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⑨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5]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⑨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6]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⑨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7]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⑨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8] 경쟁사회에서는 출신학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⑨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9]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20]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21]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22]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인권침해에 대한 질문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선생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일치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23] 다음 각각의 사항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①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②번,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③번,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 하지 않다	③ 대체로 심각 하다	④ 매우 심각 하다	⑤ 모름/ 무응답
문23-1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행, 구금, 심문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3-2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3-3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임의로 공개되어 유포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3-4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의 신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3-5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3-6	공공기관이 언론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개인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3-7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3-8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이 개인의 자유로운 학문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4] 다음 기관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①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②번,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③번,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① 전혀심각 하지않다	② 별로심각 하지않다	③ 대체로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⑤ 모름/ 무응답
문24-1	군대	①	②	③	④	⑤
문24-2	검찰	①	②	③	④	⑤
문24-3	경찰	①	②	③	④	⑤
문24-4	국가정보원	①	②	③	④	⑤
문24-5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①	②	③	④	⑤
문24-6	요양원 등 각종 복지수용시설	①	②	③	④	⑤
문24-7	초중고등학교	①	②	③	④	⑤
문24-8	기업체	①	②	③	④	⑤
문24-9	방송 등 언론기관	①	②	③	④	⑤

※ 그럼 다음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이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여쭙보겠습니다. 친척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제외하고, 선생님과 배우자, 가족이 경험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신체의 자유

문25.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수사 활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행이나 구금, 심문을 당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26으로 가시오.

문25-1.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25-3으로 가시오.

문25-2.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26으로 가시오.

문25-3.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사생활 보호

문26.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신문이나 방송 또는 잡지에서 본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공개되어 피해를 받은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27로 가시오.

문26-1.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26-3으로 가시오.

문26-2.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27로 가시오.

문26-3.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문27.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28로 가시오.

문27-1.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27-3으로 가시오.

문27-2.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28로 가시오.

문27-3.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양심의 자유

문28.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에 의해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받은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29로 가시오.

문28-1.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28-3으로 가시오.

문28-2.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29로 가시오.

문28-3.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종교의 자유

문29.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에서 자신의 종교나 신앙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특정한 종교나 신앙 활동을 강요받은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30으로 가시오.

문29-1.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29-3으로 가시오.

문29-2.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 문30으로 가시오.

문29-3.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문30.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가질 자유를 제한당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31로 가시오.

문30-1.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30-3으로 가시오.

문30-2.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31로 가시오.

문30-3.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문31] 이번에는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의 경험이 아닌, 주위 분들을 통한 경험에 대하여 여쭙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 동안 친척이나 친구, 또는 직장동료, 이웃 등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아래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면 ①, 보거나 들은 적이 없으면 ②번으로 말씀해 주세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보거나 들은 것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세요.

		①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②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문31-1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행, 구금, 심문하는 문제	①	②
문31-2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이 공개되는 문제	①	②
문31-3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임의로 공개되어 유포되는 문제	①	②
문31-4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의 신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	①	②
문31-5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①	②
문31-6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①	②

차별에 대한 질문

※ 다음은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특정한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선생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일치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32] 다음 각각의 사항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①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②번,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③번,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 하지 않다	③ 대체 로 심각 하다	④ 매우 심각 하다	⑤ 모름/ 무응 답
문32-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32-2	종교를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32-3	장애를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32-4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32-5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32-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32-7	출신지역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32-8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32-9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32-10	결혼, 미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32-11	한 부모 가족(편부, 편모), 미혼모가족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32-12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32-13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32-14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32-15	과거 또는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32-16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 그럼 다음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이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여쭙보겠습니다. 친척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제외하고, 선생님과 배우자, 가족이 경험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성별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문33.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34로 가시오.

문33-1.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신 것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군대
- ② 검찰이나 경찰
- ③ 행정기관
- ④ 기업
- ⑤ 학교
- ⑥ 종교단체
- ⑦ 병원이나 요양시설
- ⑧ 공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⑨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⑩ 기타

문33-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②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③ 성(性)과 관련한 언어 및 신체 폭력을 경험하였다
- ④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⑤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⑥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⑦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⑧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⑨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⑩ 기타

문33-3.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33-5로 가시오.

문33-4.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34로 가시오

문33-5.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종교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문34.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종교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35로 가시오.

문34-1.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신 것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군대
- ② 검찰이나 경찰
- ③ 행정기관
- ④ 기업
- ⑤ 학교
- ⑥ 종교단체
- ⑦ 병원이나 요양시설
- ⑧ 공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⑨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⑩ 기타

문34-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②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③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④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⑤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⑥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⑦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⑧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⑨ 기타

문34-3.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34-5로 가시오.

문34-4.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35로 가시오

문34-5.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문35.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36으로 가시오.

문35-1.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신 것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군대
- ② 검찰이나 경찰
- ③ 행정기관
- ④ 기업
- ⑤ 학교
- ⑥ 종교단체
- ⑦ 병원이나 요양시설
- ⑧ 공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⑨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⑩ 기타

문35-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②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③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④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⑤ 정보 및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⑥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⑦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접근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⑧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⑨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⑩ 기타

문35-3.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35-5로 가시오.

문35-4.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36으로 가시오

문35-5.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나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문36.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37로 가시오.

문36-1.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신 것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군대
- ② 검찰이나 경찰
- ③ 행정기관
- ④ 기업
- ⑤ 학교
- ⑥ 종교단체
- ⑦ 병원이나 요양시설
- ⑧ 공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⑨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⑩ 기타

문36-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②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③ 직장에서 교육, 훈련, 연수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④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⑤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⑥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⑦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⑧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⑨ 기타

문36-4.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36-6으로 가시오.

문36-5.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37로 가시오

문36-6.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문37.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38로 가시오.

문37-1.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신 것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군대
- ② 검찰이나 경찰
- ③ 행정기관
- ④ 기업
- ⑤ 학교
- ⑥ 종교단체
- ⑦ 병원이나 요양시설
- ⑧ 공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⑨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⑩ 기타

문37-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②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③ 직장에서 교육, 훈련, 연수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④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⑤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⑥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⑦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⑧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⑨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⑩ 기타

문37-3.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37-5로 가시오.

문37-4.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38로 가시오

문37-5.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비정규직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문38.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39로 가시오.

문38-1.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신 것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군대
- ② 검찰이나 경찰
- ③ 행정기관
- ④ 기업
- ⑤ 학교
- ⑥ 종교단체
- ⑦ 병원이나 요양시설
- ⑧ 공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⑨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⑩ 기타

문38-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②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③ 직장에서 교육, 훈련, 연수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④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⑤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⑥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⑦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⑧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⑨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⑩ 기타

문38-3.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38-5로 가시오.

문38-4.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39로 가시오

문38-5.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출신지역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문39.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출신지역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40으로 가시오.

문39-1.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신 것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군대
- ② 검찰이나 경찰
- ③ 행정기관
- ④ 기업
- ⑤ 학교
- ⑥ 종교단체
- ⑦ 병원이나 요양시설
- ⑧ 공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⑨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⑩ 기타

문39-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②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③ 직장에서 교육, 훈련, 연수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④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⑤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⑥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⑦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⑧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⑨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⑩ 기타

문39-3.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39-5로 가시오.

문39-4.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40으로 가시오

문39-5.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문40.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국내에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41로 가시오.

문40-1.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신 것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군대
- ② 검찰이나 경찰
- ③ 행정기관
- ④ 기업
- ⑤ 학교
- ⑥ 종교단체
- ⑦ 병원이나 요양시설
- ⑧ 공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⑨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⑩ 기타

문40-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②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③ 직장에서 교육, 훈련, 연수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④ 언어폭력이나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하였다
- ⑤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⑥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⑦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⑧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⑨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⑩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⑪ 기타

문40-3.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40-5로 가시오.

문40-4.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41로 가시오

문40-5.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신체 조건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문41.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42로 가시오.

문41-1.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신 것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군대
- ② 검찰이나 경찰
- ③ 행정기관
- ④ 기업
- ⑤ 학교
- ⑥ 종교단체
- ⑦ 병원이나 요양시설
- ⑧ 공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⑨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⑩ 기타

문41-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②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③ 직장에서 교육, 훈련, 연수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④ 신체조건과 관련한 언어폭력이나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하였다
- ⑤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⑥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⑦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⑧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⑨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⑩ 기타

문41-3.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41-5로 가시오.

문41-4.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42로 가시오

문41-5.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혼인여부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문42.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43으로 가시오.

문42-1.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신 것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군대
- ② 검찰이나 경찰
- ③ 행정기관
- ④ 기업
- ⑤ 학교
- ⑥ 종교단체
- ⑦ 병원이나 요양시설
- ⑧ 공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⑨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⑩ 기타

문42-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②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③ 직장에서 교육, 훈련, 연수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④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⑤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⑥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⑦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⑧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⑨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⑩ 기타

문42-3.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42-5로 가시오.

문42-4.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43으로 가시오

문42-5.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가족상황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문43.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한 부모(편부, 편모), 미혼모가족 등의 가족상황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44로 가시오.

문43-1.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신 것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군대
- ② 검찰이나 경찰
- ③ 행정기관
- ④ 기업
- ⑤ 학교
- ⑥ 종교단체
- ⑦ 병원이나 요양시설
- ⑧ 공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⑨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⑩ 기타

문43-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②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③ 직장에서 교육, 훈련, 연수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④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⑤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⑥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⑦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⑧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⑨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⑩ 기타

문43-3.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43-5로 가시오.

문43-4.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44로 가시오

문43-5.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사상 및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문44.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의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45로 가시오.

문44-1.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신 것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군대
- ② 검찰이나 경찰
- ③ 행정기관
- ④ 기업
- ⑤ 학교
- ⑥ 종교단체
- ⑦ 병원이나 요양시설
- ⑧ 공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⑨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⑩ 기타

문44-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②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③ 직장에서 교육, 훈련, 연수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④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⑤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⑥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⑦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⑧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⑨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⑩ 기타

문44-3.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44-5로 가시오.

문44-4.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45로 가시오

문44-5.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문45.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전과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46으로 가시오.

문45-1.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신 것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군대
- ② 검찰이나 경찰
- ③ 행정기관
- ④ 기업
- ⑤ 학교
- ⑥ 종교단체
- ⑦ 병원이나 요양시설
- ⑧ 공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⑨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⑩ 기타

문45-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②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③ 직장에서 교육, 훈련, 연수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④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⑤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⑥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⑦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⑧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⑨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⑩ 기타

문45-3.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45-5로 가시오.

문45-4.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46으로 가시오

문45-5.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문46.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47로 가시오.

문46-1.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신 것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군대
- ② 검찰이나 경찰
- ③ 행정기관
- ④ 기업
- ⑤ 학교
- ⑥ 종교단체
- ⑦ 병원이나 요양시설
- ⑧ 공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⑨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⑩ 기타

문46-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②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③ 모욕적인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농담 등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 ④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⑤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⑥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⑦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⑧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⑨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⑩ 기타

문46-3.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46-5로 가시오.

문46-4.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47로 가시오

문46-5.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병력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문47.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에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48로 가시오.

문47-1.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낀 것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군대
- ② 검찰이나 경찰
- ③ 행정기관
- ④ 기업
- ⑤ 학교
- ⑥ 종교단체
- ⑦ 병원이나 요양시설
- ⑧ 공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⑨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⑩ 기타

문47-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②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③ 직장에서 교육, 훈련, 연수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④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⑤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⑥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⑦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⑧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⑨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⑩ 기타

문47-3.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47-5로 가시오.

문47-4.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48로 가시오

문47-5.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문48.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최근 3년 동안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가 경험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 ③ 배우자 이외에 나의 가족이 경험하였다
- ④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49로 가시오.

문48-1.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낀 것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군대
- ② 검찰이나 경찰
- ③ 행정기관
- ④ 기업
- ⑤ 학교
- ⑥ 종교단체
- ⑦ 병원이나 요양시설
- ⑧ 공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⑨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⑩ 기타

문48-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까?(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 ①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②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 ③ 임신과 관련한 언어 및 신체폭력 등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 ④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⑤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⑥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⑦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⑧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었다
- ⑨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⑩ 기타

문48-3.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하였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 ⑧ 기타
- ⑨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문48-5로 가시오.

문48-4. 선생님께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문49로 가시오

문48-5. 선생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 ②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 ③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기타

문49] 이번에는 선생님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의 경험이 아닌, 주위 분들을 통한 경험에 대하여 여쭙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 동안 친척 또는 친구나 직장동료, 이웃 등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면 ①, 보거나 들은 적이 없으면 ②번으로 말씀해 주세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보거나 들은 것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세요.

		①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②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문49-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49-2	종교를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49-3	장애를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49-4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49-5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49-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49-7	출신지역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49-8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49-9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49-10	결혼, 미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49-11	한 부모 가족(편부, 편모), 미혼모가족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49-12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49-13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49-14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49-15	과거 또는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49-16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인권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질문

※ 이번에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국가보안법 관련

문50] 선생님께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최근에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의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잘 모르고 있다
- ④ 전혀 모르고 있다

문51] 선생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의견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이세요?

- ①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 ②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대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 ③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현재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국가보안법은 유지하되, 일부 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 ⑤ 국가보안법을 지금의 형식과 내용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⑥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52] 선생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가 개인의 인권상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53] 선생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제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르고 있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문54] 선생님께서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잘 모르고 있다
- ④ 전혀 모르고 있다

문55]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 ② 반대한다

문56] 선생님께서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① 군복무대신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
- ② 공익요원 근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되 기초 군사훈련을 면제한다
- ③ 위생병이나 취사병과 같이 전투와 관계없는 업무에 배치한다
- ④ 현재와 같이 범법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비정규직 문제 관련

문57] 선생님께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잘 모르고 있다
- ④ 전혀 모르고 있다

문58]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 ② 정규직원과 같은 일을 하면 임금도 같은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 ③ 정규직원과의 임금이나 대우의 차이를 가능한 줄여야 한다
- ④ 비정규직도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 ⑤ 비정규직을 가능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⑥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개인정보 관련

문59] 다음 중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보를 한 가지만 골라 주세요.

- ①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 신상 정보
- ② 가족 구성원의 신상내역 등 가족 관련 정보
- ③ 소유 부동산 내역 등 재산 관련 정보
- ④ 본인의 진료 기록 등 의료 관련 정보
- ⑤ 대출한도나 신용등급 등 신용관련정보 및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 ⑥ 개인의 학력이나 성적 등 교육 관련 정보

문60] 선생님께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어 있는 관련 법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잘 모르고 있다
- ④ 전혀 모르고 있다

문61]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사용에 제약을 느끼거나 망설임 적이 있으세요? 제약을 느끼거나 망설임 적이 있으시면 ①번, 없으시면 ②번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제약을 느끼거나 망설임 적이 있다	② 제약을 느끼거나 망설임 적이 없다	③ 해당사항 없음
문61-1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①	②	③
문61-2	인터넷 동호회에 회원가입을 할 때	①	②	③
문61-3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를 할 때	①	②	③
문61-4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살 때	①	②	③
문61-5	공공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①	②	③

문62] 선생님께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에 본인의 이름은 밝혀야 한다는 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63] 선생님께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전과자의 이름과 주소, 사진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 ② 반대한다
- ③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학력 · 학벌차별 관련

문64] 선생님께서는 학력 · 학벌차별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잘 모르고 있다
- ④ 전혀 모르고 있다

문65]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력에 의한 차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 ③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④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문66]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출신 대학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67] 학력 및 학벌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대출신에 대하여 고용할당제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② 특정 분야에 부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③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을 유보하고, 다른 대안을 우선 시행한다.
- ④ 부작용이 많으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질문

※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68] 선생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잘 모르고 있다 ☞ 문74로 가시오
- ④ 전혀 모르고 있다 ☞ 문74로 가시오

문69] 선생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아래의 여러 경로 중에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TV
- ② 라디오
- ③ 신문/잡지
- ④ 인터넷
- ⑤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 ⑥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
- ⑦ 지인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 ⑧ 기타

문70] 선생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기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① 대통령 직속 기구
- ② 국무총리 직속 기구
- ③ 독립된 국가기구
- ④ 민간 기구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7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담전화 1331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르고 있다

문72] 선생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문73]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인권교육에 대한 질문

※ 이번에는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어떻게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것인지를 교육하는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74] 선생님께서는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 ②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 문77로 가시오

문75] 선생님께서는 받아본 인권교육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과 내용
- ②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구제절차 등에 대한 교육
- ③ 사회적 약자(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등)의 인권에 대한 이해
- ④ 자신이 속해 있는 곳(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과 관련된 인권 내용
- ⑤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현안 및 국제 인권동향에 관한 이해
- ⑥ 인권존중의 태도 및 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방법
- ⑦ 기타
- ⑧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76] 선생님께서는 인권교육을 어디에서 받아보셨습니까?

- ① 학교
- ② 직장
- ③ 시민단체의 행사
- ④ 정부기관의 교육프로그램
- ⑤ 기타

문77]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교육과정에 인권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매우 필요하다고 보시면 ①번, 대체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②번,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③번,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모름/ 무응답
문77-1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	①	②	③	④	⑤
문77-2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문77-3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원 교육	①	②	③	④	⑤

문78]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권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경찰
- ② 교도관 등 구금시설 공무원
- ③ 검찰, 판사, 변호사 등 사법관계자
- ④ 국가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과 같은 행정공무원
- 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 ⑥ 군인
- ⑦ 방송/신문 등 언론인
- ⑧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종사자
- ⑨ 의사 등 인권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문직 종사자
- ⑩ 교사
- ⑪ 학생
- ⑫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 ⑬ 기타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질문

※ 이번에는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79]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①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②번,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③번,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 하지 않다	③ 대체로 심각 하다	④ 매우 심각 하다	⑤ 모름/ 무응답
문79-1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의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79-2	정규교과목 이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	①	②	③	④	⑤
문79-3	학생회 등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	①	②	③	④	⑤
문79-4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의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79-5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	①	②	③	④	⑤
문79-6	학교에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79-7	학교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79-8	학교에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79-9	학교에서 키나 몸무게, 얼굴생김새 등의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79-10	학교에서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79-11	학교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79-12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	①	②	③	④	⑤
문79-13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①	②	③	④	⑤

문80] 선생님은 고등학생이신가요, 아니면 학부모이신가요?

- 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 ②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 ③ ①과 ②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 배문1로 가시오

문81] 그럼 앞에서 불러드린 각각의 상황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여쭙보겠습니다. 친척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제외하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직접 아래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①번, 경험한 적이 없으면 ②번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경험해 보았다	② 경험해 보지 않았다
문81-1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의한 차별	①	②
문81-2	정규교과목 이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의 제한	①	②
문81-3	학생회 등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의 제한	①	②
문81-4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의한 차별	①	②
문81-5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	①	②
문81-6	학교에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경험하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81-7	학교에서 장애로 인해 경험하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81-8	학교에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 경험하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81-9	학교에서 키나 몸무게, 얼굴생김새 등의 외모로 인해 경험하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81-10	학교에서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81-11	학교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문81-12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	①	②
문81-13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①	②

배경질문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배문1.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나요?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② 고등학교 재학 중
- ③ 고등학교 중퇴
- ④ 고등학교 졸업
- ⑤ 전문대학 재학 중
- ⑥ 전문대학 중퇴
- ⑦ 전문대학 졸업
- ⑧ 4년제 대학 재학 중
- ⑨ 4년제 대학 중퇴
- ⑩ 4년제 대학 졸업
- ⑪ 대학원 중퇴
- ⑫ 대학원 재학 이상

배문2. 실례지만, 선생님 직업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 ① 농/축/수산/광업
- ② 자영업 배문3으로 가시오
- ③ 판매/서비스직종사자
- ④ 생산/기능/노무직
- ⑤ 사무직
- ⑥ 전문/관리/경영직
- ⑦ 주부 배문3으로 가시오
- ⑧ 학생 배문3으로 가시오
- ⑨ 무직/퇴직/기타 배문3으로 가시오

배문2-1. 선생님께서는 정규직이신가요, 비정규직이신가요?

- ① 정규직
- ② 임시직
- ③ 일용직
- ④ 계약직
- ⑤ 기타

배문3. 실례지만, 선생님 덕의 한달 가구 소득은 얼마나 되시나요? 월급, 보너스, 저축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세요.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149만원
- ③ 150-199만원
- ④ 200-249만원
- ⑤ 250-299만원
- ⑥ 300-349만원
- ⑦ 350-399만원
- ⑧ 400만원 이상
- ⑨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배문4. 선생님의 종교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기독교
- ② 불교
- ③ 가톨릭
- ④ 유교
- ⑤ 다른 종교
- ⑥ 없다

배문5. 선생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기혼
- ② 미혼
- ③ 이혼
- ④ 사별
- ⑤ 동거
- ⑥ 기타

배문6. 실례지만, 선생님의 출신지역은 다음 중 어디인가요?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 ⑰ 이북
- ⑱ 해외/기타
- ㉹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배문7.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 ① 장애가 있다
- ② 장애가 없다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전문가 설문지

※ 먼저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 전반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문1]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③ 대체로 심각하다
- ④ 매우 심각하다
- ⑨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2] 선생님께서는 3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나아졌다
- ② 조금 나아졌다
- ③ 3년 전과 마찬가지로이다
- ④ 조금 나빠졌다
- ⑤ 많이 나빠졌다
- ⑨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3]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인권에 대한 침해나 차별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 순서대로 두 곳만 말씀해 주십시오.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군대
- ② 검찰
- ③ 경찰
- ④ 국가정보원
- ⑤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 ⑥ 요양원·복지원 등의 각종 복지수용시설
- ⑦ 방송 및 언론기관
- ⑧ 기업
- ⑨ 학교
- ⑩ 기타 ()

문4]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 집단을 두 집단만 말씀해 주십시오.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수용자
- ② 각종 복지수용시설의 수용자
- ③ 장애인
- ④ 비정규직 노동자
- ⑤ 여성
- ⑥ 외국인 노동자
- ⑦ 노인
- ⑧ 아동
- ⑨ 청소년
- ⑩ 동성애자
- ⑪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 ⑫ 군인
- ⑬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 ⑭ 기타 ()

※ 다음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보겠습니다. 아래 각각의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5] 여성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한 비율의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6]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7] 민간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8]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9] 장애인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납세, 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0]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예배 등 종교 의식을 학생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1]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검문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2]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3] 동성애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4]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5]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6]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7] 경쟁사회에서는 출신학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8]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9]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20]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21]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선생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일치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22] 다음 각각의 사항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①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②번,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③번,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 하지 않다	③ 대체로 심각 하다	④ 매우 심각 하다	⑤ 모름/ 무응답
문22-1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행, 구금, 심문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2-2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2-3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임의로 공개되어 유포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2-4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의 신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2-5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2-6	공공기관이 언론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개인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2-7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2-8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이 개인의 자유로운 학문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3] 선생님께서는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한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한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
- ⑧ 기타()

문24] 다음 기관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①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②번,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③번,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① 전혀심각 하지않다	② 별로심각 하지않다	③ 대체로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⑤ 모름/ 무응답
문24-1	군대	①	②	③	④	⑤
문24-2	검찰	①	②	③	④	⑤
문24-3	경찰	①	②	③	④	⑤
문24-4	국가정보원	①	②	③	④	⑤
문24-5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①	②	③	④	⑤
문24-6	요양원 등 각종 복지수용시설	①	②	③	④	⑤
문24-7	초중고등학교	①	②	③	④	⑤
문24-8	기업체	①	②	③	④	⑤
문24-9	방송 등 언론기관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선생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일치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25] 다음 각각의 사항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①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②번,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③번,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 하지 않다	③ 대체 로 심각 하다	④ 매우 심각 하다	⑤ 모름/ 무응 답
문25-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2	종교를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3	장애를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4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5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7	출신지역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8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9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10	결혼, 미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11	한 부모 가족(편부, 편모), 미혼모가족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12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13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14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15	과거 또는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16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6] 다음 기관들의 차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①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②번,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③번,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① 전혀심각 하지않다	② 별로심각 하지않다	③ 대체로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⑤ 모름/ 무응답
문26-1	군대	①	②	③	④	⑤
문26-2	검찰	①	②	③	④	⑤
문26-3	경찰	①	②	③	④	⑤
문26-4	행정기관	①	②	③	④	⑤
문26-5	기업체	①	②	③	④	⑤
문26-6	학교	①	②	③	④	⑤
문26-7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문26-8	공원, 도서관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①	②	③	④	⑤
문26-9	상점, 음식점,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 제공기관	①	②	③	④	⑤

문27] 다음의 차별 유형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①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②번,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③번,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① 전혀심각 하지않다	② 별로심각 하지않다	③ 대체로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⑤ 모름/ 무응답
문27-1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27-2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27-3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	①	②	③	④	⑤
문27-4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27-5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27-6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 이용과 관련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27-7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 임대 등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27-8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27-9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28] 선생님께서는 차별을 당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한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한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
- ⑧ 기타()

※ 이번에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국가보안법 관련

문29] 선생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의견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이세요?

- ①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 ②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대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 ③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현재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국가보안법은 유지하되, 일부 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 ⑤ 국가보안법을 지금의 형식과 내용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⑥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30] 선생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가 개인의 인권상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31] 선생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제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르고 있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문32]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 ② 반대한다

문33] 선생님께서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① 군복무대신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
- ② 공익요원 근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되 기초 군사훈련을 면제한다
- ③ 위생병이나 취사병과 같이 전투와 관계없는 업무에 배치한다
- ④ 현재와 같이 범법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비정규직 문제 관련

문34]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 ② 정규직원과 같은 일을 하면 임금도 같은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 ③ 정규직원과의 임금이나 대우의 차이를 가능한 줄여야 한다
- ④ 비정규직도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 ⑤ 비정규직을 가능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⑥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개인정보 관련

문35] 다음 중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보를 한 가지만 골라 주세요.

- ①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 신상 정보
- ② 가족 구성원의 신상내역 등 가족 관련 정보
- ③ 소유 부동산 내역 등 재산 관련 정보
- ④ 본인의 진료 기록 등 의료 관련 정보
- ⑤ 대출한도나 신용등급 등 신용관련정보 및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 ⑥ 개인의 학력이나 성적 등 교육 관련 정보

문36]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사용에 제약을 느끼거나 망설임 적이 있으세요? 제약을 느끼거나 망설임 적이 있으시면 ①번, 없으시면 ②번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제약을 느끼거나 망설임 적이 있다	② 제약을 느끼거나 망설임 적이 없다	③ 해당사항 없음
문36-1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①	②	③
문36-2	인터넷 동호회에 회원가입을 할 때	①	②	③
문36-3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를 할 때	①	②	③
문36-4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살 때	①	②	③
문36-5	공공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①	②	③

문37] 선생님께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에 본인의 이름은 밝혀야 한다는 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38] 선생님께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전과자의 이름과 주소, 사진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 ② 반대한다
- ③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학력·학벌차별 관련

문39]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력에 의한 차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 ③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④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문40]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출신 대학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41] 학력 및 학벌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대출신에 대하여 고용할당제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② 특정 분야에 부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③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을 유보하고, 다른 대안을 우선 시행한다
- ④ 부작용이 많으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42] 선생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기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① 대통령 직속 기구
- ② 국무총리 직속 기구
- ③ 독립된 국가기구
- ④ 민간 기구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43] 선생님께서는 평소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고 계십니까? 아래의 여러 경로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TV
- ② 라디오
- ③ 신문/잡지
- ④ 인터넷
- ⑤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 ⑥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
- ⑦ 지인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 ⑧ 기타()

문4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담전화 1331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르고 있다

문45] 선생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문46]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이번에는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47]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교육과정에 인권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①번, 대체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②번,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③번,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모름/ 무응답
문47-1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	①	②	③	④	⑤
문47-2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문47-3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원 교육	①	②	③	④	⑤

문48]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권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경찰
- ② 교도관 등 구금시설 공무원
- ③ 검찰, 판사, 변호사 등 사법관계자
- ④ 국가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과 같은 행정공무원
- 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 ⑥ 군인
- ⑦ 방송/신문 등 언론인
- ⑧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종사자
- ⑨ 의사 등 인권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문직 종사자
- ⑩ 교사
- ⑪ 학생
- ⑫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 ⑬ 기타()

※ 이번에는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49]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①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②번,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③번,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 하지 않다	③ 대체로 심각 하다	④ 매우 심각 하다	⑤ 모름/ 무응답
문49-1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의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49-2	정규교과목 이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	①	②	③	④	⑤
문49-3	학생회 등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	①	②	③	④	⑤
문49-4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49-5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	①	②	③	④	⑤
문49-6	학교에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49-7	학교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49-8	학교에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49-9	학교에서 키나 몸무게, 얼굴생김새 등의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49-10	학교에서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49-11	학교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49-12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	①	②	③	④	⑤
문49-13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①	②	③	④	⑤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배문1. 실례지만, 선생님 직업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 ① 대학교수
- ② 연구소 연구원
- ③ 시민단체 활동가
- ④ 변호사
- ⑤ 기타()

배문2. 선생님의 전문분야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시민적/정치적 권리
- ②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③ 차별 및 사회적 소수자
- ④ 기타()

배문3. 선생님의 종교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기독교
- ② 불교
- ③ 가톨릭
- ④ 유교
- ⑤ 다른 종교
- ⑥ 없다

배문4. 선생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기혼
- ② 미혼
- ③ 이혼
- ④ 사별
- ⑤ 동거
- ⑥ 기타

배문5. 실례지만, 선생님의 출신지역은 다음 중 어디인가요?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 ⑰ 이북
- ⑱ 해외/기타
- ㉹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배문6.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 ① 장애가 있다
- ② 장애가 없다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3. 인권·시민단체 설문지



※ 먼저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 전반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문1]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③ 대체로 심각하다
- ④ 매우 심각하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2] 선생님께서는 3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나아졌다
- ② 조금 나아졌다
- ③ 3년 전과 마찬가지로이다
- ④ 조금 나빠졌다
- ⑤ 많이 나빠졌다
- ⑥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3]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인권에 대한 침해나 차별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 순서대로 두 곳만 말씀해 주십시오.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군대
- ② 검찰
- ③ 경찰
- ④ 국가정보원
- ⑤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 ⑥ 요양원·복지원 등의 각종 복지수용시설
- ⑦ 방송 및 언론기관
- ⑧ 기업
- ⑨ 학교
- ⑩ 기타 ()

문4]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 집단을 두 집단만 말씀해 주십시오. (면접원은 아래 항목을 읽어주지 마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수용자
- ② 각종 복지수용시설의 수용자
- ③ 장애인
- ④ 비정규직 노동자
- ⑤ 여성
- ⑥ 외국인 노동자
- ⑦ 노인
- ⑧ 아동
- ⑨ 청소년
- ⑩ 동성애자
- ⑪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 ⑫ 군인
- ⑬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 ⑭ 기타 ()

※ 다음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보겠습니다. 아래 각각의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5] 여성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한 비율의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6]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7] 민간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8]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9] 장애인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납세, 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0]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예배 등 종교 의식을 학생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1]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검문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2]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3] 동성애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4]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5]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6]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7] 경쟁사회에서는 출신학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8]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19]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20]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21]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선생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일치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22] 다음 각각의 사항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①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②번,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③번,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 하지 않다	③ 대체로 심각 하다	④ 매우 심각 하다	⑤ 모름/ 무응답
문22-1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행, 구금, 심문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2-2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2-3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임의로 공개되어 유포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2-4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의 신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2-5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2-6	공공기관이 언론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개인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2-7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2-8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이 개인의 자유로운 학문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23] 선생님께서는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한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한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
- ⑧ 기타()

문24] 다음 기관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①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②번,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③번,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① 전혀심각 하지않다	② 별로심각 하지않다	③ 대체로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⑤ 모름/ 무응답
문24-1	군대	①	②	③	④	⑤
문24-2	검찰	①	②	③	④	⑤
문24-3	경찰	①	②	③	④	⑤
문24-4	국가정보원	①	②	③	④	⑤
문24-5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①	②	③	④	⑤
문24-6	요양원 등 각종 복지수용시설	①	②	③	④	⑤
문24-7	초중고등학교	①	②	③	④	⑤
문24-8	기업체	①	②	③	④	⑤
문24-9	방송 등 언론기관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선생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일치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25] 다음 각각의 사항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①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②번,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③번,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 하지 않다	③ 대체 로 심각 하다	④ 매우 심각 하다	⑤ 모름/ 무응 답
문25-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2	종교를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3	장애를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4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5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7	출신지역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8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9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10	결혼, 미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11	한 부모 가족(편부, 편모), 미혼모가족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12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13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14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15	과거 또는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5-16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26] 다음 기관들의 차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①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②번,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③번,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① 전혀심각 하지않다	② 별로심각 하지않다	③ 대체로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⑤ 모름/ 무응답
문26-1	군대	①	②	③	④	⑤
문26-2	검찰	①	②	③	④	⑤
문26-3	경찰	①	②	③	④	⑤
문26-4	행정기관	①	②	③	④	⑤
문26-5	기업체	①	②	③	④	⑤
문26-6	학교	①	②	③	④	⑤
문26-7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문26-8	공원, 도서관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①	②	③	④	⑤
문26-9	상점, 음식점, 금융기관 등의 대중 서비스 제공기관	①	②	③	④	⑤

문27] 다음의 차별 유형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①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②번,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③번,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① 전혀심각 하지않다	② 별로심각 하지않다	③ 대체로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⑤ 모름/ 무응답
문27-1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과 관련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27-2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27-3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	①	②	③	④	⑤
문27-4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27-5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27-6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 이용과 관련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27-7	상점이나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주택 임대 등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27-8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27-9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28] 선생님께서는 차별을 당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
- ②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한다
-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④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 ⑥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한다
- ⑦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
- ⑧ 기타()

※ 이번에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국가보안법 관련

문29] 선생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의견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이세요?

- ①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 ②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대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 ③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현재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국가보안법은 유지하되, 일부 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 ⑤ 국가보안법을 지금의 형식과 내용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⑥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30] 선생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가 개인의 인권상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31] 선생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제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르고 있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문32]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 ② 반대한다

문33] 선생님께서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① 군복무대신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
- ② 공익요원 근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되 기초 군사훈련을 면제한다
- ③ 위생병이나 취사병과 같이 전투와 관계없는 업무에 배치한다
- ④ 현재와 같이 범법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비정규직 문제 관련

문34]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 ② 정규직원과 같은 일을 하면 임금도 같은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 ③ 정규직원과의 임금이나 대우의 차이를 가능한 줄여야 한다
- ④ 비정규직도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 ⑤ 비정규직을 가능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⑥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개인정보 관련

문35] 다음 중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보를 한 가지만 골라 주세요.

- ①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 신상 정보
- ② 가족 구성원의 신상내역 등 가족 관련 정보
- ③ 소유 부동산 내역 등 재산 관련 정보
- ④ 본인의 진료 기록 등 의료 관련 정보
- ⑤ 대출한도나 신용등급 등 신용관련정보 및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 ⑥ 개인의 학력이나 성적 등 교육 관련 정보

문36]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사용에 제약을 느끼거나 망설임 적이 있으세요? 제약을 느끼거나 망설임 적이 있으시면 ①번, 없으시면 ②번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제약을 느끼거나 망설임 적이 있다	② 제약을 느끼거나 망설임 적이 없다	③ 해당사항 없음
문36-1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①	②	③
문36-2	인터넷 동호회에 회원가입을 할 때	①	②	③
문36-3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를 할 때	①	②	③
문36-4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살 때	①	②	③
문36-5	공공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①	②	③

문37] 선생님께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에 본인의 이름은 밝혀야 한다는 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38] 선생님께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전과자의 이름과 주소, 사진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 ② 반대한다
- ③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학력·학벌차별 관련

문39]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력에 의한 차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 ③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④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문40]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출신 대학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41] 학력 및 학벌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대출신에 대하여 고용할당제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② 특정 분야에 부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③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을 유보하고, 다른 대안을 우선 시행한다
- ④ 부작용이 많으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42] 선생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기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① 대통령 직속 기구
- ② 국무총리 직속 기구
- ③ 독립된 국가기구
- ④ 민간 기구
- ⑤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문43] 선생님께서는 평소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고 계십니까? 아래의 여러 경로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TV
- ② 라디오
- ③ 신문/잡지
- ④ 인터넷
- ⑤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 ⑥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
- ⑦ 지인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 ⑧ 기타()

문4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담전화 1331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르고 있다

문45] 선생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문46]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이번에는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47]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교육과정에 인권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①번, 대체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②번,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③번,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모름/ 무응답
문47-1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	①	②	③	④	⑤
문47-2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문47-3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원 교육	①	②	③	④	⑤

문48]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권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경찰
- ② 교도관 등 구금시설 공무원
- ③ 검찰, 판사, 변호사 등 사법관계자
- ④ 국가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과 같은 행정공무원
- 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 ⑥ 군인
- ⑦ 방송/신문 등 언론인
- ⑧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종사자
- ⑨ 의사 등 인권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문직 종사자
- ⑩ 교사
- ⑪ 학생
- ⑫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 ⑬ 기타()

※ 이번에는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49]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①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②번,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③번,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④번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 하지 않다	③ 대체로 심각 하다	④ 매우 심각 하다	⑤ 모름/ 무응답
문49-1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의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49-2	정규교과목 이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	①	②	③	④	⑤
문49-3	학생회 등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	①	②	③	④	⑤
문49-4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의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49-5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	①	②	③	④	⑤
문49-6	학교에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49-7	학교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49-8	학교에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49-9	학교에서 키나 몸무게, 얼굴생김새 등의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49-10	학교에서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49-11	학교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문49-12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단체 기합	①	②	③	④	⑤
문49-13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①	②	③	④	⑤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배문1. 선생님의 종교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기독교
- ② 불교
- ③ 가톨릭
- ④ 유교
- ⑤ 다른 종교
- ⑥ 없다

배문2. 선생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기혼
- ② 미혼
- ③ 이혼
- ④ 사별
- ⑤ 동거
- ⑥ 기타

배문3. 실례지만, 선생님의 출신지역은 다음 중 어디인가요?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 ⑰ 이북
- ⑱ 해외/기타
- ⑲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마세요)

배문4.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 ① 장애가 있다
- ② 장애가 없다

배문5. 선생님이 속하신 단체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_____ 명

배문6. 실례지만, 선생님이 속하신 단체의 상근 활동가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